아프리카·중동 6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레바논 르완다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메룬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DR콩고 쿠웨이트 튀니지 가봉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요 약

Summary

아프리카·중동 지역은 거대 규모의 개도국 시장과 천연자원 부국 그리고 저개발 후진국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석유 등 자원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또한 건설, 인프라 등 우리나라의 투자·서비스 진출이 유망한 지역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국가별 보고서에서는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레바논, 르완다,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메룬,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DR콩고, 쿠웨이트, 튀니지, 가봉 27개국을 다룬다.(단, 바레인, 카타르, 케냐는 2017년 내용 미수정)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1위의 인구 대국으로 최근 국제유가 상승, 경제구조 개편 추진 등을 통해 경제성장이 회복세를 보였으나, 물가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정국을 보이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수입·수출 금지 품목을 지정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수입 24개 품목, 수출 8개 품목이다.

남아공은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통해 아프리카 내 경제적 위상이 가장 높은 국가로 아프리칸그룹의 주도국이자 BRICS의 회원국이며, 2018년에는 범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창설을 합의하였다. 남아공은 타이어, 방사성물질, 도박기기 등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남아공의 높은 범죄율, 정부부패, 불안한 치안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내 제조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시멘트, 계란, 윤활유, 철망, 카펫, 펜스 및 철조망, 철관 및 황산 등 유치산업보호 품목에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는 관세 및 통관 수수료 부담 외에 추가로 5%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UAE는 세계 6위의 석유 및 세계 7위의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방적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여 정치적 안정, 친기업적 시장 환경, 양질의 인프라, 주변국 시장으로의 접근 용이성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에는 부가가치세 도입,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납, 카드뮴 등 유해 화학물질 사용제한, 외국인투자 100% 허용 분야 확대 등 변화가 있었다.

요 약

Summary

에티오피아는 주변 국가에 비해 석유 등 자원은 부족한 편이나, 인구 1억 이상(아프리카 2위)의 거대 시장이자, 동부 아프리카 물류의 중요 거점으로 최근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8년 취임한 아비 총리는 주변국과의 관계 안정, 경제개발을 위한 외화 확보 등에 집중하고 있어 향후 경제개발정책 추진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건설장비, 자동차, 의약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커피, 참깨 등 농산물이다.

이라크는 ISIS 세력 축출 및 국제 유가 회복 기조 등에 힘입어 최근 재정, 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가 일부 개선되는 중이다. 한편 2016년 전격적으로 도입된 차등관세법(5~35%, 주류 등 일부품목 80%)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면서 2018년부터는 관세를 품목군별로 단순화하였다.

이란은 2018년 미국이 자동차, 원유, 항만, 해운 등에 대한 제재 복원 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다만 한국 등은 한시적인 원유 수입 제재 예외국 인정 받아 이란산 원유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원화결제시스템을 활용, 양국간 일정부분 교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집트는 2018년 출범한 알시시 집권 2기에서 대테러와 국가안보를 중시하며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집권 1기의 정책 노선을 큰 틀에서 유지하는 가운데, 교육, 보건, 사회분야 개혁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통상에서는 수입억제를 통한 무역적자 개선 및 자국 제조업 육성을 목적으로 원자재, 약품 등 기초소비재를 제외한 완제품과 공산품에 대해 많은 부분 관세가 인상되었다.

2018년 12월

아프리카·중동

www.motie.go.kr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산업통상자원부

Contents

2018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PART. I 무역장벽보고서
PART. II 분야별 통상환경
PART. III 아시아 · 대양주
PART. IV 아메리카
PART. V 유럽
PART. VI 아프리카 · 중동

가 나 ····· 2
나이지리아 ····· 31
남아공 ····· 55
레바논 ····· 80
르완다 ····· 113
모로코 ····· 130
바레인 ····· 149
사우디아라비아 ····· 174
수 단 ····· 204
아랍에미리트연합(UAE) ····· 219
알제리 ····· 257
앙골라 ····· 287
에티오피아 ····· 308
요르단 ····· 321
이라크 ····· 353
이 란 ····· 386
이스라엘 ····· 408
이집트 ····· 428
적도기니 ····· 472
카메룬 ····· 499
카타르 ····· 539
케 냐 ····· 567
코트디부아르 ····· 585
DR콩고 ····· 593
쿠웨이트 ····· 626
튀니지 ····· 656
가 봉 ····· 695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www.motie.go.kr

VI

CHAPTER

아프리카 · 중동

가 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레바논
르완다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 단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요르단
이라크
이 란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메룬
카타르
케 냐
코트디부아르
DR콩고
쿠웨이트
튀니지
가 봉

가 나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가나 경제 구조

GDP 개요

가나는 2016년 12월 대선에서 신애국당(NPP: New Patriotic Party)이 승리하면서 8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었다. 신정부는 지역 산업화와 민간분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해결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면서, 가나의 재정적자는 2016년 GDP의 9.3%에서 2017년 GDP의 6%로 감소하였다(World Bank, 2018). 2018년 가나의 총 GDP는 646억 달러, 1인당 명목 GDP는 1,780 달러, 경제성장률은 2018년 6.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가나 통계청, EIU).

특히, 광업과 원유 부문 GDP 기여도는 2016년 3.6%에서 2017년 8.5%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Tweneboa-Enyenra-Ntomme(TEN) 지역 및 Sankofa 지역 유전 가스 생산으로 2019년 경제성장률이 5.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기 유전 및 쥬빌리 유전의 생산량 증가를 감안하면 가나는 앞으로도 수년간 4~6%의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가나 경제는 2011년 쥬빌리 유전의 석유 상업생산 개시에 힘입어 14.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 쥬빌리 유전의 생산 저조로 경제성장률이 9.3%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2013년에는 2012년 대선 전후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한 대규모의 재정적자에 따른 대외 신인도 저하, 세

디화(GHC) 가치 평가절하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7.3%로 성장률이 하락하였다.

세디화는 지난 2014년부터 가치가 하락하여 2018년 9월 현재 달러화 대비 6.9% 평가절하되었으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나의 서비스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율 변동 및 원유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률은 2018년 7월 9.6%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6~10%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EIU).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재정적자가 심해지자, 가나정부는 2014년 9월부터 IMF와 경제 안정화 및 성장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간 9억 1,800만 달러 상당의 IMF 확대금융지원을 약속받고 경제 안정화 및 재정 건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8월 30일, IMF 이사회는 여전히 높은 부채 비율과 추가적인 부채 감소 노력 필요 등으로 인해 IMF의 가나에 대한 확대금융지원을 1년 연장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2018년초 가나 정부는 2018년말까지만 IMF의 확대금융을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IMF는 2018년 9월 가나를 방문한 후 가나 신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에 호의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IMF 관계자는 가나에 대한 확대금융을 2019년 4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확대금융 기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GDP 구성

신정부의 "Planting for Food & Jobs" 농업정책으로 가나의 농업생산량은 2017년 8.36%가 증가하였으나, GDP 구성면에서는 코코아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시장전망 악화로 농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 부문별 GDP 기여도는 서비스 부문이 56.2%, 산업 부문 24.4%, 농업 부문 18.3%로 기록되었다. 2018년 3월 기준으로는 동 기여도가 서비스 부문 5.2%, 상업 부문 9.6%, 농업 부문 2.8%만큼 더 증가한 상태이다(가나 중앙은행).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

재정건전성 및 경제 안정을 위한 IMF의 확대금융지원 연장 결정

가나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공공 부문의 임금 지급액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재정적자(2012년 GDP의 12%, 2013년 10.8%, 2014년 10.2%)와 주력 수출품인 원유, 금, 코코아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전력위기로 인한 국내생산성 하락 및 세수 감소 등 대내외적 악재와 경제개혁 역량 부족으로 인해, 2014년 8월 경제 안정화 및 구조조정을 위한 IMF의 도움을 구하기에 이르렀다. 가나 정부는 2014년 9월부터 IMF와 확대금융지원(ECF: Extended Credit Facility)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여,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간 9억 1,800만 달러 상당의 IMF 금융지원을 받기로 하고, 부채구조 건전화, 세수 확대, 공공부문 인건비 제한, 비효율적 보조금 철폐 등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1월 취임한 신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 민간분야 활성화, 외국인직접투자 증대 등을 위한 정책을 펼쳤으나, IMF는 2017년 8월 30일, IMF의 확대금융 지원기간을 2019년 4월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가나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노력들이 재정적자 감소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부채 비율과 비효율적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추가적인 부채 감소 노력 필요 등으로 인해 IMF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2018년초 가나 정부는 IMF의 지원을 2018년 말까지만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확대금융 지원기간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IMF는 2018년 9월 27일 가나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가나의 경제성장 정책을 통한 제조업 및 농업 육성, 은행 통폐합을 통한 금융 안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8년 9월 국제신용평가기관 S&P는 가나의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상향 조정하였다.

〈가나 정부의 2018년 경제운용 목표〉

2017년 11월 15일, Budget Statement(http://www.mofep.gov.gh/)

◇ 경제성장률: (2017년 실질) 7.8% → (2018년) 6.8%
  * 원유부문 제외시: (2016년 실질) 4.0% → (2018년) 5.4%
◇ 인플레이션: (2017년 실질) 11.6% → (2018년) 8.9%
◇ 재정적자: (2017년 실질) GDP의 4.6% → (2018년) 4.5%
◇ 총외환보유고: 수입액의 3개월분 이상(기존과 동일)

산업화 관련 중점정책사업 추진 및 규제 개혁

신정부는 전국 2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산업화와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는 '1지역 1공장(One District, One Factory)' 정책을 국가 중점 정책사업으로 설정하였다. 가나 정부는 동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1억 달러의 정부 재원, 3.4억 달러의 국내 금융기관 지원금, 20억 달러의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국가 차관을 사업 재원으로 마련하였다. 지역별 사업제안 수요 파악 결과 제조업 공장 설립 제안이 59%로 가장 높은 수요를 기록했으며, 농업관련 사업이 33%로 그 뒤를 이었다. 동 사업은 2017년 말까지 51개 지역에서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www.ghana.gov.gh).

그러나 '1지역 1공장' 정책은 2017년 말까지 난항을 겪은바, 가나 정부는 2018년 7월 가나 수출입은행을 통해 약 9,363만 달러의 추가 재정조달을 승인받았다. 2018년 7월 21일 중간년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검토되면서, 처음으로 15개 공장이 향후 Eastern, Brong Ahafo, Central Accra, Great Accra 지역에 설립될 것으로 계획되었고, 재무부장관은 이를 통해 1만 3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가나 수출입은행은 2018년 10월 '1지역 1공장' 정책에 8,634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2017년 가나 정부의 재정수입은 당초 목표치보다 약 3억 5,500만 달러가 부족하였고, 2018년 1~5월에도 예상보다 약 3억 1,100만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에 2018년 8월 가나 정부는 재정확보를 위해 누진적 세입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여기에는 △고급차량(3.0리터 이상 엔진)에 대한 세율 상향 부과, △10,000 세디(약 2,200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35% 부과,

△중국 기업 Sinohydro사와 보크사이트-인프라 교환(Sinohydro사로부터 20억 달러 수취), △부가가치세(VAT)에서 교육신탁기금(GETFUND) 및 건강보험세(NHIL) 분리, △정부 급여관리의 외부 위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단행

가나중앙은행(Bank of Ghana)은 기준금리를 2017년 21%에 이어 2018년 3월 18%로 인하하였다. 가나중앙은행은 동 기준금리 인하로 가나의 경제활동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정부의 단기채권 이자율도 동반 인하되었으며,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실제로 시중에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를 체감하기 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가나중앙은행).

대외 무역의 호조로 만성적 무역적자에서 흑자 전환

가나 경제는 수출의 확대를 이끌 제조업의 기반이 취약하고 국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1차 산품을 중심으로 수출하는 무역 구조를 보유하여 대외 경제 통상여건의 변화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나의 주요 수출품은 금, 코코아, 원유, 목재, 알루미늄 등 1차 산품이며, 수입품은 자동차, 시멘트, 철강, 산업자재, 부품, 기계 등 자본재, 내구 소비재, 음식료품 등이다(http://stat.wto.org).

최근 경제 성장에 따라 원자재,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주수출품인 1차 산품의 수출 증가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무역적자가 지속되었으나, 2016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무역적자가 지속 감소하였다.

가나의 무역적자는 2013년 38억 달러(수출 138억 달러, 수입 176억 달러)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 14억 달러(수출 132억 달러, 수입 146억 달러), 2015년 38억 달러(수출 102억 달러, 수입 140억 달러), 2016년 21억 달러(수출 112억 달러, 수입 133억 달러), 2017년 9억 달러(수출 134억 달러, 수입 125억 달러)로 감소하였다(http://stat.wto.org).

특히, 신정부는 무역적자 감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주요 수출 상품인 금, 원유, 코코아 등의 생산 물량 증가가 수출 증대로 이어지면서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다. 금, 원유, 코코아 3개 품목은 가나 전체 수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금이 수출액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쥬빌리 유전의 원유 생산 재개 및 TEN 유전의 생산량 증대, Sankofa 유전 원유 생산 개시 등 호조세의 영향으로 2018년 8월 기준 무역흑자는 GDP 대비 2.7%를 기록하고 있다(가나중앙은행).

외환보유고 증가세

가나의 외환보유 총액은 2014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가나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차츰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외환보유고는 2014년 43억 달러에서 2015년 44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48억 달러, 2017년 54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2018년 8월 기준으로는 6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가나중앙은행).

세디화 반등 기대

2018년 상반기 세디화 평가절하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입업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평균 환율은 달러당 4.35세디, 2018년 1월에는 달러당 4.42세디였으며, 2018년 9월 상업은행 보통 환율 기준으로는 달러당 4.9세디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10년간 월별 환율 기록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세디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한편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가나 경제 특성상 내수시장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018년 9월 12일 가나중앙은행은 세디화 가치하락에 따른 투자자 이탈을 막고자 달러 공급 증대를 발표하였다. 2018년 10월 코코아 신디케이션으로 인한 13억 달러 추가 유입이 예정되어 있는바, 세디화 가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상승

2018년 7월 26일 가나 고용노동부, 정부관계자, 고용자협회 등이 소속된 국가 3자위원회(The National Tripartite Committee, NTC)는 가나의 1일 최저임금 인상안에 서명한바, 2018년 10월 현재 1일 최저임금인 9.68 세디(약 2,275원)가 2019년 1월부터 0.65 세디(약 2,503원)로 인상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상승은 물가상승을 초래하나, 가나의 최저임금은 2018년 3월 집계된 OECD 25개국 시간당 평균 최저임금인 8,083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바, 이는 물가상승보다는 일용직 노동 희망자의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GDP 성장에 의한 생활품 공급 안정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 물가안정 또한 기대되고 있다.

역내 단일통화 도입 추진

2017년 10월 24일 니제르에서 개최된 ECOWAS 정상회의에서 가나를 비롯한 15개국 정상은 2020년까지 역내 단일통화 도입을 신속히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18년 2월 동 정상들은 가나 아크라에서 단일통화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까지 정책을 이행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향후 가나에서 서아프리카 단일통화를 도입한다면, 세디화 약세 현상에 의한 내수시장 붕괴 우려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가나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와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의 회원국이다. 가나는 2016년 2월 1일 ECOWAS의 공동역외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의약품 및 비료 등 기초 필수재는 0% 관세, △원자재는 5%, △중간재는 10%, △최종

소비재는 20%, △역내 산업보호를 위한 특수재(감사, 가공 초콜렛, 가공 육류 등)는 3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동시에 ECOWAS 회원국에서 완전 생산되었거나 충분히 변형된 수입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각 상품별 관세율 정보는 세관 관련 공식 웹사이트(www.ghanastradinghub.gov.gh) 및 가나국세청 웹사이트(http://www.gra.gov.g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COWAS는 2014년 7월 가나에서 개최된 ECOWAS 정상회의에서 △2015년 1월부터 ECOWAS 공동관세(CET) 적용(가나는 국회에서 관세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2016년 2월부터 시행), △2020년까지 통화동맹(Monetary Union) 달성, △ECOWAS 회원국민에게 역내 거주허가(residence permit) 폐지 및 생체인증 카드(Biometric Identity Card)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역내 교역자유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1월 출범한 가나 신정부는 민간분야 활성화를 위해 소액소비세(nuisance tax) 및 ECOWAS 공동관세(CET) 하에서 부과되는 일부 관세의 개정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www.ghana.gov.gh).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장소 조명등을 위해 일반시민에게 부과하는 부과금을 5%에서 2%로 감액(Public Lighting Levy)
- ECOWAS 공동역외관세(CET) 하에서 원자재 및 기계류에 부과되는 5%의 수입 관세 폐지
- 석유 소비세 폐지(abolishing excise duty on petroleum)
-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특별세 17.5%에서 15%로 인하

한편, ECOWAS는 2014년 7월 정상회의에서 EU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하기로 하고 2014년 10월 동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회원국별로 서명/발효를 위한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가나는 2016년 8월 3일 EU와 임시적 경제동반자협정(Interim EPA)에 서명하고, 2016년 12월 EU의회가 동 협정을 승인하였다. 현재, 가나와 EU는 양자간 임시 협정을 대체할 서아프리카 경제동반자협정(EPA) 채택을 위해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양자 경제동반자협정의 시행으로 가나와 EU간에는 수입 쿼터나 관세가 상호 부과되

지 않게 되었다(European Commission). 이와 같은 가나의 ECOWAS 공동역외관세 시행과 EU와의 EPA 체결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역외 국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통상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8년 3월 가나 및 여타 아프리카 43개국은 르완다에서 대륙 단일시장 형성을 위한 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AfCFTA) 체제 구축 협의안에 서명하였고, 가나 국회는 이를 비준하였다. 단일시장 구성이 가능할 경우에는 대륙내 거래 상품 90%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무역량이 5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아프리카 내 무역규모는 1700억 달러로 대륙 전체의 18% 수준이다. 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 도입으로 남아공, 케냐, 이집트 등의 제조품 수출국과 가나, 잠비아, 코트디부아르 등 식품 수출국은 높은 관세장벽이 사라지므로 추가적 이익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보호조치(Protection and Contingency Measures)

가나는 2011년 WTO와의 제2차 무역정책검토회의(Trade Policy Review)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반덤핑(anti-dumping), 상계관세(countervailing),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도 발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ECOWAS의 공동역외관세(CET) 적용에 따라 역내 차원에서 향후 최대 10년의 세이프가드, 최초 5년에서 연장가능한 반덤핑, 상계관세 적용 및 추가적인 무역 보호조치들(Import Adjustment Tax, Supplementary Protection Tax)의 발동이 가능하다(EU·ECOWAS·GIZ).

한편, 2018년 3월 냉동 닭고기 수입 증가로 현지 양계산업 상황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내수시장 보호를 위해 해당 제품 수입을 급감시켰다. 2017년 가나는 13만 미터톤의 냉동 닭고기를 유럽에서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76% 상승한 물량이다(가나양계협회). 한편, 가나 정부는 국내의 냉동 닭고기 생산자가 시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동 수입감소 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금 및 수입부과금

가나에서는 수입품이나 자국생산품에 관계없이 12.5%의 부가가치세(VAT) 및 2.5%의 건강보험세(NHIL)가 부과된다. 또한, 2018년 10월 1일부터는 7%의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를 시행하고 있다. 단, △보건부의 승인을 받은 일부 의약품 및 의료장비, △모기장,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자재, △교통요금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세(NHIL)가 면제된다(www.gra.gov.gh).

가나에서는 상품 수입시 0.5%의 비(非)ECOWAS 원산지 상품에 대한 부과금, 0.45%의 관세망(GCNet) 운영에 따른 부과금, 0.5%의 비석유제품에 대한 수출개발투자펀드(EDIF) 부과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면세품목에 대해서도 1%의 통관비가 부과된다(www.gra.gov.gh).

주류(22.5~25%), 담배(175%), 생수(17.5%) 등의 특정상품에 대해서는 0~1750%의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되고 있다. 가나에 수입되는 일반차 및 중고차 관세는 Ghana Trade Hub 웹사이트에서 필요 정보 입력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확인이 가능하다(www.ghanastradinghub.gov.gh). 특히, 수입 차량에 대해서는 1%의 검사비용이 부과되며, 10년 이상 된 중고차에 대해서는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CIF 금액의 2.5~50%의 over-age penalty가 부과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중고차는 가나 수입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품목 중의 하나이다(www.gra.gov.gh).

이와 더불어 2017년 7월 가나는 도소매업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부가가치세(VAT)를 3%로 고정하는 부가가치세 고정요금제(3% VAT flat rate)를 도입하고, △국내항공료, △부동산, △금융서비스, △원유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다(www.gra.gov.gh). 가나 정부는 세수 확대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수입상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3%의 고정요금이 이중 부과되어 가격 부담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수입업자 및 도매업자, 자영업자들은 고정요금제 도입이 비용을 더욱 증가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세금, 부과금 현황

구분	세율(%)	과세기준
Import Duty	0 5 10 20 35	Cost + Insurance + Freight (CIF)
VAT	15.0	CIF + Import Duty
NHIL	2.5	CIF + Import Duty
ECOWAS Levy	0.5	CIF
EDIF	0.5	CIF
Processing fee	1	CIF
Examination fee (Used Vehicles)	1	CIF
Special Import Levy	2	CIF(2019년 12월까지)
Import Excise	20	CIF + Import Duty + VAT
Environmental Tax	10	CIF
GCNet Charge	0.4	FOB
Destination Inspection Fee	1	CIF
Witholding Tax IRS	1	CIF
Overage Penalty (10년 이상차량에 부과) * 앰뷸런스와 농업용트랙터는 제외	2.5~50% (승용차, 버스, 밴, 트럭, 로리)	CIF

통관절차상의 장벽

모든 수입품은 도착지 검사(destination inspection)를 받아야 하며, 검사 비용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금액의 1%이다. 가나 정부의 위탁을 받은 민간업체들이 도착지 검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나, 동 검사 업체들의 서비스 지연, 자의적 가격 산정 등은 수입업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자, 가나 항만청(Ghana Ports and Harbours Authority)은 2017년 9월 1일부터 무서류 통관 시스템(Paperless Port System)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가나로 들어오는 모든 공항 및 항구에서는 전산화된 항만 통관 절차를 밟으며, 통관 품목에 대해 관련 기관이 공동 검사(joint examination)를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장벽과 지연을 줄여나가는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www.ghana.gov.gh). 한편, 가나 정부는 2018년 10월 15일부터는 화물

추적노트(CTN)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년 36 TEUs를 초과하는 물류에 한해 추적노트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가나 정부는 무역 관련 공식 웹사이트인 Ghana Single Window를 개설하고, 교역 및 통관 관련 정보 제공과 온라인을 통한 통관 신청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투자자 및 무역종사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인 www.ghanasinglewindow.com 참고).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현재까지 우리기업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 가나는 ECOWAS 협약에 따라 동 기구 회원 국가에서 전체가 생산되었거나 충분히 변형된 상품(30% 이상 ECOWAS 역내 자원 활용)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국을 원산지로 간주하고 있다.

수입규제

가나는 커피 원료, 음란물, 전염병에 걸린 동물 및 동물사체, 일부 의약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몬트리올 협약, 위험폐기물 바젤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른 위험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가나에서 화폐, 주류, 다이아몬드, 영화 필름, 도박기계, 열쇠 복사기계, 항공우편 용지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화폐나 여행자수표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가나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며, 다이아몬드의 수입 역시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y Process)에 따른 증명서가 요구된다(www.gra.gov.gh).

한편, 가나 보건부는 2017년 5월 10일자 관보 게시를 통해 49개 의약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 조치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나 식약청은 금지된 의약품에 대한 수입 신청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www.moh.gov.gh). 가나 정부는 수입 금지 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가나 국내 제약업체들의 공급망을 통해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국내 제약업체의 성장과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수산분야 조업 규제

가나에는 1970년대부터 우리 원양어업 업체들이 참치조업, 수산가공업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업체 등의 진출로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조업경쟁이 심화되어 각종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EU의 엄격한 규제 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4년부터는 가나 연안의 참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년 중 1~2월에 일정조건에 따라 금어기를 설정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ling, 인증관련 장벽

표준 및 기술 규제

가나기술표준원(GSA: Ghana Standards Authority)이 표준의 제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GSA는 약 2,500개의 국내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44,500개 국제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 전통적으로 영국 표준을 따라왔으나, 최근에는 유럽연합, 남아공 표준을 선호하고 있다. GSA는 국제공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어류(fish) 분야에서 유럽연합, 식품(food) 분야에서 일본과 표준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가나 정부는 모든 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가나기술표준원(GSA) 등록 및 세관에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식품, 의약품, 전자제품, 화학제품 등 고위험 품목(high risk goods)을 수입하려면 공인기관의 적합성 인증서(CoC, certificate of confirmity)를 GSA에 제출하고 도착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15년 3월 1일부터는 국가적으로 Ghana Product Conformity Assessment Programme(G-CAP)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가나로 수입되는 특정 제품이 국가 표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효성 검사, 공급국가 시험검사 실시 및 적합성인증서(CoC)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였다(www.gsa.gov.gh). 만약 적합성인증서(CoC) 없이 수

입된 제품이 적발될 경우에는 CIF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나로의 상품 수출 시 주의가 필요하다. G-CAP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제품군은 아래와 같다.

- △장난감 및 운동용품, △전자제품, △자동차, △화학제품, △기계류, △펄프·제지, △가구류, △섬유제품, △식품류, △건설자재, △일부 의료장비 및 의약품, △중고제품, △석유제품 등

가나 식약청(FDA: Food and Drugs Authority)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등의 제조, 판매를 규제한다. 모든 관련제품은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FDA에 등록되어야 하며, 수입제품의 경우 300 세디, 가나 내 생산품인 경우 100 세디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은 제품 단위로 해야 하며 3년간 유효하다.

Marking, Labelling 규제

1992년 제정된 GSA Labelling 규정에 따라 모든 식약품은 영문으로 제품의 종류, 원산지, 원료, 무게, 용도, 유효기간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에어콘, 배터리, 램프, 페인트, 사료, 화장품 등도 영문으로 Labelling이 되어야 한다. Labelling이 잘못된 제품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판매 28일 전까지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환경보호정책의 집행을 담당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가나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는 '영향 없음', '일부 영향 있음', '영향 있음' 중 하나이며, '영향 있음'의 경우 사업 추진이 불허될 수도 있다.

가나 정부는 기후변화, 위생, 폐기물 처리 등 국가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통

합적인 환경보호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과 기업인들이 친환경적 생활 및 기업운영을 장려하기 위한 관련 세금을 징수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환경세로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에 대한 소비세(excise tax)가 있으며, 2011년 도입 당시 20%였던 동 소비세는 추가 인하를 거쳐 현행 10%의 소비세를 유지하고 있다(가나 재무부).

품목별 장벽

2017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對가나 수출액은 240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3%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205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63백만 달러), 플라스틱 제품(30백만 달러), 일반기계(27백만 달러), 전자제품(16백만 달러), 중고의류(15백만 달러)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코코아(15백만 달러), 폐건전지(11백만 달러), 동제품(2백만 달러) 등이다(KOTRA·한국무역협회 통계).

주요 수출 품목의 하나인 중고차의 경우 10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 CIF 금액의 2.5~50%의 over-age penalty가 부과되고 있다. 기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특별한 장벽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3년부터 가나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여 건전 재정 구현을 목표로 주요 품목에 대해 조세 또는 준조세성 부과금을 도입하여, 은행(지방은행 제외), 비은행 금융기관, 보험회사, 통신회사, 맥주 제조 회사 등 5개 부문의 기업의 세전 이익에 5%의 재정안정 부과금(fiscal stabilization levy)을 부과하고 있다. 통신회사들의 반발과 예상보다 저조한 세입 기여로 2017년 부과금을 폐지하기로 하였지만, 정부의 사회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동 부과금은 일단 2019년까지 연장 부과될 예정이다.

핸드폰 및 무선통신기기에 대해서는 2013년 9월부터 2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ECOWAS 공동관세(CET)에 의하면 동 물품에 대해 10%를 적용해야 하므로 점차 1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5년에는

석유 제품에 17.5 %의 특별세를 부과하여, 2015년 6월 석유가격의 15% 인상을 초래하였다. 이에, 가나 정부는 2017년 특별세를 17.5%에서 15%로 인하하였으며, 2018년에는 다시 13%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가나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은 아니지만, 가나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을 통한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을 제정하였다(2016년 개정). 동 법은 경쟁 입찰, 제한 입찰, 수의계약 등 다양한 입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입찰절차는 발주기관이 공공조달법에 따라 내부적으로 시행하며, 가나 조달청(Public Procurement Authority)은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www.ppaghana.org)에서 얻을 수 있다.

입찰방법 중에는 국제·국내 경쟁 입찰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25,000 세디 이상의 상품 구매, 50,000 세디 이상의 공사 또는 25,000 세디 이상의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국내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하며, 10,000,000 세디 이상의 상품 구매, 15,000,000 세디 이상의 공사 또는 5,000,000 세디 이상의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국제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한입찰 및 수의계약의 경우 조달청 심사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행하며, 조달 성격상 일부 업체만 지원 가능한 특수성이 인정되거나 시간 또는 금액이 제한되는 경우에 가능하다(www.ppaghana.org).

세계은행/IMF, 아프리카개발은행, 프랑스 개발청 등 해외 원조기관의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입찰과는 달리 가나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과정의 투명성이 높지 않고 수주하더라도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부의 제한·독점 무역(금 및 코코아)

가나는 국가적으로 금 및 코코아 수출에 다음과 같은 일부 제한을 두고 있다.

과거 귀금속마케팅회사(PMMC: Precious Mineral Marketing Company)는 소규모 광산업체의 금 수출에 관한 독점권을 가졌으나, 현재는 PMMC의 승인을 받은 민간업체도 수출이 가능하다. 단, 금 수출액 0.526% 상당의 수수료를 PMMC에 지불해야 한다.

가나의 금 수출은 다음 2개 경로를 통해 진행된다. 첫째, 아샨티 골드 등 다국적 기업이 국제 금시장을 통해 수출하는 경로이다. 둘째, PMMC를 통해 수출하는 경로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국적 기업이 아닌 소규모 광산업체도 금 수출 자체는 가능하나 반드시 PMMC의 중개를 통해서만 합법적 수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 외국인이 국제 금시장 또는 PMMC를 통하지 않고 가나산 금을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개인, 광산업체, 공인중개상 등이 PMMC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금을 수출하겠다는 제의는 모두 사기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금과는 달리 가나코코아위원회(Ghana Cocoa Board) 산하의 코코아마케팅회사(CMC)는 아직까지 코코아 수출에 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2018년 9월 12일부터 가나코코아위원회와 코트디부아르 커피-카카오 위원회는 코코아의 최저 세계시장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공기업 관련

가나는 1980년대 말 300여개에 달하던 공기업을 1990년대 Rawlings 정부부터 민영화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수도, 석유, 전기, 광물 등의 분야에 약 30여 개의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력분야 공기업의 경우 인프라 투자 부족 및 비효율적 운영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가나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핵심으로 한 전력분야 구조조정을 목표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간 미국정부로부터 4.98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는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 Compact를 체결하고, 현재 국영가나전력회사(ECG: Electricity Company of Ghana)의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다(www.energymin.gov.gh). 이로 인해 가나 전력분야에 보다 많은 독립발전사업자(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s)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가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 회원국이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등록업무는 등록청(Registrar General's Department)에서, 저작권은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에서 담당하고 있다. 각 상표의 등록료는 150달러이며, 특허 신청 및 유지비용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www.epay.gov.gh).

서비스 장벽

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s)

가나에서는 Vodafone, MTN, Airtel, Tigo, Glo 등의 이동통신사가 활동하고 있다. 2018년 7월말 기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4,009만 명으로 가나 인구 대비 약 137.38%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MTN의 사용자가 약 1,907만 명으로 47.58%의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그 뒤를 Vodafone(약 934만 명, 23.78%), Airtel(약 539만 명, 13.45%), Tigo(약 516만 명, 13.31%), Glo(약 74만 명, 1.88%) 등이 이어가고 있다(www.nca.org.gh).

신규 통신사업자의 허가, 주파수 할당, 불공정 경쟁 감시 등 통신시장 규제는 통신청(NCA: National Communications Authority)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은 경쟁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어 가나 정부는 추가 사업자 선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가나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진흥, 광케이블 건설 등 IT 기반 구축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진흥을 위해 GIFEC (Ghana Investment Fund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을 설립하였다. GIFEC은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정보화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통신사업자의 순익 1%를 출연 받고 있다. 영국, 나이지리아, 가나를 연결하는 2.5 테라바이트급 해저광케이블이 2010년말 설치되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가나 현지기업인 Surfline Communication이 2014년 8월 아크라 및 테마에서 4G LTE 모바일 광대역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MTN, Busy Ghana, Blu 등 업체가 광대역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나는 유선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으나 광케이블 상용화 및 최근 인터넷 데이터 사용 확산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데이터 통신 분야에서 많은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가나 우정공사(G2ana Post Company Ltd: GPC)에서 편지 등 일반 우편 서비스를 독점 제공하며 나머지 택배 분야는 민간에 개방되어 있다. GPC는 사서함 서비스만 제공하고 End-to-End 배송은 하지 않는다. 그 외 민간사업자로 UPS, DHL 등 글로벌 회사들이 택배 및 특송 분야에 진출해 있다.

관광서비스(Tourism Services)

관광업은 금, 코코아, 원유에 이어 가나의 네 번째 외화수입원이다.

2017년 10월 가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95년 연간 28만명 수준이던 가나 방문 해외관광객 수는 2016년 12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직간접적으로 약 4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www.ghana.gov.gh). 그러나 가나의 관광 인프라는 상당히 낙후된 상태로 2017년 여행·관광 경쟁력보고서에서 136개국 중 120위를 기록하였다(아프리카 53개 국가 중에서는 21위, 서아프리카에서는 6위를 기록). 가나의 관광 진흥업무는 관광부 산하 관광청(Ghana Tourism Authority)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나의 주요 관광자원은 과거 노예무역 거점을 쓰였던 해안 성(castle), 축제 등이며 아프리카계 미국인, 영국인, 나이지리아인 등을 주고객층으로 하고 있다.

호텔, 게스트 하우스 등 숙박시설(약 2천 여 개 추정)이나 여행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광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광업체 설립 시 가구, 차량 등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와 더불어, 가나 정부는 수도 Accra에 위치한 코토카 국제공항(KIA: Kotoka International Airport)의 제3터미널을 2018년 완공하였다. 현재 에티오피아 항공, 모리셔스 항공, 아부다비 항공 및 터키 항공으로부터 항공 협력을 제안 받은 상황이며, 가나를 서아프리카 항공 허브로 발돋움시키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바, 향후 항공 및 관광산업 분야 투자 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www.ghana.gov.gh).

기타 서비스 : 유통, 건설 등

도소매업 등 유통산업 진출의 제도적 장벽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인도, 레바논 등 이민 역사가 길고 현지화에 성공한 나라들의 도소매기업 층이 두텁다는 점이 우리기업 진출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Accra Mall, Westhills Mall, Achimota Shopping Center 등 대형 쇼핑몰을 앞세운 남아공계 유통업체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가나 주택시장은 주택 구매력을 가진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투자자금 회수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부 제한된 외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타운하우스 개발이 붐을 이루고 있다. 향후 가나 경제 성장 잠재력(매년 6~9%) 등을 감안할 때 가나 주택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지나치게 과열된 주택경기가 조정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가나는 2010년 석유생산을 계기로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유, 발전 등 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이후 생각보다 저조한 원유 생산량 및 발전 연료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잦은 단전 및 채무 누적 등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갈수록 심화되어 GDP의 70%에 육박하는 정부부채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가나 정부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에너지 분야 채무 변제들 위해 15년 만기 60억 세디 규모의 에너지 채권

(Energy Bond)의 1차 발행을 발표하고(2017년 10월) 미국, 영국, 유럽, 중동 국가 등을 대상으로 채권 투자자를 모집 중에 있다(www.ghana.gov.gh).

가나 인프라 분야 진출의 제도적 장벽은 크지 않으나, 자금조달(financing), 가나 정부측 절차진행, 세금 과다 부과 등이 사업 진행의 큰 관건이 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제도 개요

가나정부는 1994년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본법이라 볼 수 있는 "가나투자진흥센터법(GIPC Act)"을 제정하였다. 2013년에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중소 및 영세 가나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한다는 목표를 표방하면서 기존의 GIPC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은 가나투자진흥센터(GIPC: Ghana Investment Promotion Centre)에서 담당하며, 석유, 광물, 주식 등의 투자에 대해서는 석유부, 광물위원회, 가나주식거래소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가나는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회원국으로서, 국내외 투자자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외국인이 가나에서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의 형태는 합작법인, 외국인소유회사, 무역회사로 구분되며, 회사 형태에 따라 최소 자본금 규모가 달라진다. 외국인의 최소투자금액은 단독투자의 경우 50만 달러 이상 투자가 필요하며, 가나인과의 합작투자(joint venture)는 외국인이 2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가나인의 지분이 30% 이상이어야 한다(www.gipcghana.com).

투자절차 (법인·사무소 설립 절차 등)

회사설립 및 투자승인 절차는 (1)등록청(Registrar General's Department)에 회사설립 신고 (2)투자진흥센터(GIPC)에 투자승인요청 (3)이민국에 이민쿼터 신청(GIPC가 대행) (4)국세청(GRA) 및 VAT사무국 등 세제당국 신고 (5)필요시 환경영향평가 요청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www.gipcghana.com).

등록청에서는 회사 설립 신고 후 회사 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및 회사 개업증(Certificate to Commence Business)이 발급된다.

투자진흥센터는 광업과 석유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다. 신규 투자 승인 이후 2년마다 투자 등록 갱신이 필요하며, 등록 갱신 및 등록증 교체 작업 역시 투자진흥센터에서 처리된다. 외국인 투자 관련 승인 신청비용은 투자 형태 및 업종에 따라 다르며, 2018년 10월 현재 합작투자는 1,000 달러, 외국인 단독 투자는 2,500 달러, 연락사무소는 7,500 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기타 관련 비용 및 상세 내용은 가나투자진흥센터(GIPC) 웹사이트(www.gipcghan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회사설립 및 투자승인 절차

회사설립 신고		투자승인 요청		이민쿼터 신청		세제당국 등록		환경영향 평가
등록청 (Registrar General)	⇨	투자진흥센터 (GIPC)	⇨	GIPC에 신청 이민국 처리	⇨	국세청(GRA) VAT사무국	⇨	환경보호청 (EPA)
5일		5일		1개월 이상		5일		1개월 이상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가나에서 외국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는 10개, 소요시간은 72일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2017년 출범한 신정부는 국내외 투자자 유치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제도·관행 개선 및 세제 개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Ease of Doing Business Report 2017에서 가나는 나이지리아와 코트디부아르를 앞지르며 서아프리카 국가 중 최고의 기업 환경을 갖춘 국가로 선정되었다(2016년 111위에서 2017년 108위로 상승).

투자혜택

가나는 외국인 투자유치 권장 업종인 농업, 농가공업, 제조업, 관광업 등에 대해 법인세 감액, 면제 등 세제를 지원하고 있다. 기본 법인세율은 25%이나 가나의 비주력 수출상품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8%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단, 광업 분야에는 3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업종에 따라 세금 감면(tax holiday)은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가능하며, 자유무역지대(Free Zone) 입주 기업은 최대 18년까지 법인세 면제가 가능하다(www.gipcghana.com).

법인세 제도

구 분	세율(%)
기본 세율	25%
가나의 비주력 상품 수출업체	8%
호텔 및 가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22%
금융기관(농민 대출, 장비임대회사 대출)	20%
광업 분야	35%
광업 로열티	5%

법인세 감면(Tax Holiday) 제도

구 분	기간(운영 개시일로부터)
부동산(Real Estate)	5년
농촌은행(Rural Bank)	10년
농업(Agriculture)	
- 코코아 재배	영구 면제
- 소 방목	10년
- 유실수 재배(커피, 팜오일 등)	10년
- 가축업(소, 가금류 제외)	5년
- 수산양식업, 가금류	5년
농가공(Agro-processing)	5년
폐기물처리(waste processing)	7년
자유무역지대 기업	10년 이상 (최대 18년)

법인세 환급 제도

구 분	적용 내용
제조업체 세금 환급	
- Accra/Tema	25%
- Accra/Tema를 제외한 지역 수도	18.8%
- 기타 지역	12.5%
농가공업체의 법인세(5년 tax-holiday 이후)	
- Accra 및 Tema	20%
- 북부 3개 지역 수도	5%
- 기타 지역	10%
- 북부 3개 지역 제외한 지역 수도	10%

아울러 가나정부는 사업 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수도 Accra 및 항구도시 Tema지역에 외국인 투자가 몰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저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 및 지분소유 제한

일부 유통업의 경우에는 외국인만의 단독투자가 불가하며, 가나인과의 합작투자만 가능하다. 합작투자시 외국인은 2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가나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추후 가나인이 외국인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수출업과 제조업 전문기업에게는 외국인 최소투자금액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GIPC Act). 중소 및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외국인 참여가 제한되는 유통업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노점상 및 가판대 상품 판매
- 택시 영업 및 25인승 이하 차량의 기업형 차량 대여 서비스(외국인이 동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소 10대 이상의 신규차량 보유 필요)
- 미용실 및 이발소
- 휴대전화 충전용 스크래치 카드 제작
- 연습장 등 기초 학용품 생산
- 의약완제품 소매 판매
- 봉지 포장된 생수(sachet water)의 생산, 공급, 소매 판매
- 복권 및 도박업(축구 베팅 제외)

수산업의 경우 외국인 소유를 불허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은 물고기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치잡이 어선의 50%까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외에 △통신, △은행, △광업, △석유, △부동산업 등에는 외국인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가나는 많은 토지가 구획되어 있지 않고 토지 소유 문서 자체도 없는 경우가 많다. 수도 아크라를 제외할 경우 대부분의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단일화된 토지 이전절차도 없어 거래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공무원 부패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토지 등록기간이 대개 1년 넘게 소요된다.

가나는 헌법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불허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최대 50년의 임차권(연장 가능)만을 가질 수 있다. 가나의 토지는 국가, 추장, 개인 소유로 분류되며 70% 이상의 토지가 추장 소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족장으로부터 토지를 임차 시 족장에게 'stool money'라고 불리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다. 일반적으로 투자개발을 위한 외국인 장기 임차 토지의 경우, 산업용 토지 이용료는 에이커 당 3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선이며, 농업용 토지 이용료는 월간 35달러에서 50달러 선이다(www.gipcghana.com).

가나는 토지 소유권 및 임차권 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테마 지역의 경우 테마개발회사(TDC)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 기타 지역의 경우 자유무역지대 토지 등 국가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금융상의 제한

가나는 외국투자자의 투자 수익, 배당금 등에 대한 송금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10,000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이 가나중앙은행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10년부터는 가나중앙은행에 자금세탁 모니터링 부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들어 외환거래를 규제하여 달러화 유출을 막기 위해 달러화 계정에서의 현금인출 가능 금액을 여행용에 한해 1,000불로 제한하는 등 인위적 규제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나,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하반기 들어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가나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은 편이다.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이자율 때문이다. 대출이자율이 25~30%에 이르고, 달러 대출이자율도 15% 내외여서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할 실익이 매우 낮다.

세제상의 제한

가나 국세청(GRA)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국가별로 개인소득 추정액을 정해놓고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 1인당 월 3,000달러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가나 정부는 2018년 8월 1일부터 1만 세디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3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외국인에 대한 증세로 평가된다.

가나 국세청(GRA)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를 추정매출액에 기반하여 사전 징수하고 차후 정산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GRA가 과다 징수된 법인세에 대한 정산을 미루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가나 세제당국은 징세실적이 낮을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경쟁 정책

가나는 독점적 지위남용 및 가격담합 등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통신, 은행 등 분야별 입법을 통해 해당 분야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고 있다. 통신위원회(National Communications Authority)에서 방송, 통신 분야를, 가나중앙은행 은행감독부서(Department of Banking Supervision)에서 은행 분야를 각각 감독하고 있다.

종래 휘발유 등의 석유가격을 석유위원회(National Petroleum Authority)가 가격산정공식에 따라 결정하였으나, 2015년 7월 16일 석유시장 내 경쟁 촉진을 위한 석유가격자율화 시행 이래, 30개 석유배급사(Bulk Oil Distribution Companies)와 88여개 석유마케팅사(Oil Marketing Companies)들이 국제유가, 환율, 수입관세, 세금 등 요인을 고려하여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을 자율 산정하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및 체류비자 발급

우리나라와 가나 간에는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즈니스 목적상 가나 입국을 원할 경우 사전에 상용비자를 받아야 한다. 주한가나대사관은 단수 비자의 경우 최대 3개월, 복수의 경우 최대 1년까지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가나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별로 이민 쿼터를 제한하고 있다. △10,000~100,000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1명, △100,000~500,000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2명, △500,000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하서는 4명까지 거주 허가를 인정하고 있다. 투자금액별 이민쿼터가 최대 4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인력의 파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회사들은 필요한 인원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갖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단, 자유무역지대 투자 및 입주 기업에는 노동 허가(work permit) 및 체류증(resident permit) 발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거주허가는 보통 1년, 2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가나에서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는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3개월간 운전이 가능하다. 가나는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온 경우 가나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운전자차량등록청(DVLA: Driver Vehicle and Licensing Authority)은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3개월 마다 갱신이 필요한 임시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늑장 행정 처리로 인해 카드형태의 정식면허증을 발급받기까지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사항

은행 부문

가나 은행 부문은 가나중앙은행(Bank of Ghana)에서 규제하고 있다. 2017년 8월 가나중앙은행은 자기자본침식으로 부실화된 2개 시중은행(UT Bank, Capital Bank)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2018년 8월에는 높은 부채비율 및 부정확한 자산비중 보고 등을 이유로 5개 은행(Soverign, Royal, the Beige, Construction, Uni Bank)을 1개 은행(Consolidated Bank)으로 통합하였다. 2018년 10월 가나에서는 국영은행 4개, 민간은행 11개 및 외국계은행 16개가 영업 중이다. 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며 기업의 은행 설립도 가능하나, 최소 납입자본금은 80백만 달러,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은 10%이며, 매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2017년 9월 가나 정부는 시중 상업은행의 재무건전성 증진을 이유로 은행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을 기존 1억 2천만 세디에서 4억 세디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은행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가나 중앙은행은 2017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23.5%에서 분기당 1~2%씩 인하하여 2018년 3월 기준금리는 18.0%를 기록하게 되었다. 2018년 10월 현재 국채 수익률은 23~24%, 일반 상업은행의 대출금리는 25~30% 수준이다(가나중앙은행).

보험 부문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는 2006년 보험법(Insurance Act 2006, ACT 724)에 의거, 보험위원회(NIC)에서 담당한다.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중개사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NIC에 등록해야 한다. 2018년 10월 현재 28개 비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24개 생명보험사, 3개 재보험사, 81개 중개사, 3개 손해사정사 등 총 139개의 보험사가 활동하고 있다(www.nicgh.org).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은 2006년 폐지되었으나, 모든 보험사는 다른 업종 진출이 제한되어 있으며 동일 회사가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을 겸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자동차, 상업용 건물(건설중인 건물 포함)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증권 시장

가나는 1990년 가나증권거래소(GSE)를 개장하여 주식, 채권, 국채 등을 거래하고 있으며, 증권위원회(SEC)에서 증권시장 성장 촉진 및 규제와 투자자 및 시장보호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09년 초부터 전자거래가 시행되어, 2018년 10월 현재 43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24개 증권사가 주식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2011년 1월부터는 가나 증권종합지수를 개발하여 주가지수를 산정하고 있다. 2018년 10월 현재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588억 세디 수준이다(가나증권거래소). 아직까지 가나 주식시장은 상장기업수가 매우 적고 유동성도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2013년 상반기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Ghana Alternative Market)을 개설하는 등 주식시장의 저변 확대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SEC의 허가가 필요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외국인도 가나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시스템 및 주식거래 면허를 보유한 16개의 주식중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 현황

Ecobank, Zenith Bank, Barclays Bank, GT(Guarantee Trust) Bank, GCB(Ghana Commercial Bank) 등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나, 사용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으며 선불카드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현금인출기(ATM)의 고장이 잦고 현금 위주의 현지 거래관행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이 활발한 편은 아니나, 수도 Accra 지역의 호텔,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에는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어 카드 이용은 차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이지리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경제 동향

나이지리아는 높은 국제유가 등에 힘입어 201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약 6% 대의 높은 실질GDP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부터 국제유가 하락, 경제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2016년 마이너스 성장(-1.58%)을 경험하였다. 이후 국제유가 상승, 경제구조 개편 추진 등을 통해 2017년 다시 플러스 성장(0.82%)으로 전환하였으며, 2018년에도 회복세(1분기 1.95%, 2분기 1.50%)를 유지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GDP는 2014년에 5,685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5년 4,811억 달러, 2016년 4,047억 달러, 2017년 3,758억 달러(World Bank)로 하락세에 있다.

물가는 오일머니 유입, 정부지출 증가, 곡물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연간 두 자리수의 높은 상승률을 지속한 후, 이자율 인상 등 강력한 긴축통화정책과 경상경비 축소, 식료품값의 안정 등으로 2013년 이후 한자리수 물가상승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달러 부족, 수입물가 상승, 식료품값 상승 등으로 2016년 15.7%, 2017년 16.5%, 2018년 9월 현재 11.28% 등 다시 두 자리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공식 환율은 2017년 2월부터 학비, 의료비, 여행 경비 등에 대해 우대 환율로 달러 공급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달러 공급으로 일정 수준(305나이라/$)

을 유지하고 있고, 외환보유고도 원유감산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회복 등으로 인해 2018년 10월 425억 달러(2016년 10월, 240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현재는 차기 대선(2019년 2월) 영향으로 환율이 감소세에 있으며 환율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 지속 여부에 따라 증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대선을 통해 평화적인 정권교체는 이루었으나 반부패 정책으로 인한 국내외 투자 부족, 세계경제 침체 지속, 보코하람 및 니제르델타 어벤저스의 테러 및 치안 불안, 거버넌스의 부재, 만연한 부정부패, 복잡한 통관절차 및 과도한 현지화 요구, 줄지 않는 실업 및 빈곤 등이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상품 수입 시에 부담해야 하는 관세와 세금은 수입관세(Import Duty), 부가가치세(VAT) 그리고 각종 SurCharge(Levy, Excise Duty, 관세연동 부담금 등)로 구분된다. 수입관세(Import Duty)는 CIF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며, VAT는 CIF 가격과 Import Duty, 일부 SurCharge(excise, 관세연동 부담금 등)를 합한 금액의 5%를 부과한다. SurCharge는 특정 품목에 부과되는 Levy, Excise duty, 관세 연동 부담금 및 수수료 등으로 구분된다.

(1) 관세

나이지리아 관세청(Nigeria Customs Service)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세부 품목별 세율(2017년 1월 조정)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ng)에서 검색 가능하다.

- Category 0(관세율 0%) : 필수품(교육자재 등)
- Category 1(관세율 5%) : 기초 원자재와 자본재
- Category 2(관세율 10%) : 중간재

- Category 3(관세율 20%) :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완제품(TV 등)
- Category 4(관세율 35%) :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어 보호가 필요한 완제품

Levy는 CIF 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부과 항목 및 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주요 항목으로는 자동차 최대 35%, 쌀, 담배 및 설탕 최대 60%, 증류주 50%, 밀 최대 65%, 발전기 최대 35% 등이다.

소비세(Excise duty)는 CIF 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5~20%를 부과하며, 부과항목(11종) 및 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주요 항목으로는 향수 및 화장품 5%, 비알콜성 음료 5%, 비누 및 세제 5%, 맥주 20%, 와인 20%, 담배 20% 등이다.

관세에 연동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및 수수료 등은 아래와 같다.

- 항구 개발비(Port Development Fee) : Import duty의 7%
-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부담금(ECOWAS Levy) : CIF 가격의 0.5%
- 검역비(Inspection Fee) : FOB 가격의 1%

특히 2014년 7월 1일부터 해외기업의 나이지리아 현지화를 강화하여 고용창출과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완성자동차 수입(중고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관세는 대폭 인상하고, 현지 조립생산을 위한 부품 수입 관세는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완성차에 대한 관세인상(22%→70%)으로 자동차가격이 단기간에 60% 이상 폭등함에 따라 최근 다시 완성차 수입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품(부품)별 구체적인 인상 관세는 아래와 같다.

- 완성 승용차 : 70%(duty 35%, levy 35%)
- 완성 상용차 : 35%(duty만 적용)
- 완성 트랙터 : 0%
- 완성 그린카 : 35%(duty만 적용)

- CKD(Completely Knock-Down) 부품 수입 : 0%
- SKD(Semi Knock-Down) I 부품 수입 : 5%
- SKD(Semi Knock-Down) II 부품 수입 : 10%
- 현지 조립 설비 장비 : 0%
- 타이어 수입 : 25%(duty 20%, VAT 5%)
- 타이어 생산 기계·장비 수입 : 0%

(2) 관세장벽 문제

관세는 원유 수출 다음으로 나이지리아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전체 정부 수입의 약 10%)이라 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의 현행 관세율은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관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완제품에 대한 관세는 강화하고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은 10%에서 5%로 완화하여, 해외기업의 현지화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빈번한 수입정책 변화와 일관성 없는 관세 징수로 인해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종종 심각한 상업적 병목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나 완성품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여 해외 수출업체나 국내 생산업체들에게 많은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나이지리아의 고질적인 부두 악습관행(port practices)이 주요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장기간의 통관 절차로 인한 정박 및 하역비용이 매우 높으며, 통관 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은 수입품 밀수나 고의적인 저평가(under valuation)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100% 직접 검사 프로그램의 시행을 한층 더 강화하였으나, 사실상 모든 반입 컨테이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만한 시스템이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스항의 경우 2009년 하역설비를 개량하여 하역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관은 최대 45일까지 소요된다.

한편, 나이지리아 정부는 48시간내 통관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목표아래 항구 통관에 관여하던 15개 기관 중 관세청 등 꼭 필요한 기관만 남기고 표준원(SON), 식약청(NAFDAC) 등 10여개 정부기관을 모두 철수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수입 규제

나이지리아 정부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 국민 건강과 안전 등을 위해 2005년 4월 이후로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현재 24개 품목이 수입금지 물품으로 고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제조되는 제품은 대부분 품질이 조악하여 고급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인근 국가를 통해 밀수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나이지리아 정부는 관세수입 증대를 위해 수입금지 예외규정을 두어 수입을 허용하기도 한다.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수입규제 초기에는 8년 초과 된 자동차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현재는 15년으로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2015년부터 시행된 신자동차 정책에 의해 완성차 수입관세를 최대 70%까지 올리는 정책을 2015년 7월부터 시행중에 있다(중고차에 대한 관세인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우리나라의 대 나이지리아 최대 수출 품목이었던 자수직물의 금지는 계속 유효하다.

2009년 10월에 새로운 시멘트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핵심은 자국내 시멘트 산업 육성을 위해 포대 시멘트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시멘트 설비기계와 석고와 같은 원재료에는 면세혜택까지 주어 수입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전력·농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2012년 1월 31일부터 이 부문 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수입금지 품목(24개, 2018년 10월 기준)

* https://www.customs.gov.ng/ProhibitionList/import.php

1. 살아있거나 죽은 조류(냉동가금 포함)
2. 돼지고기, 소고기(육과 식용 설육)
3. 새의 알(계란 등)
   * 부화용 알 제외
4. 정제된 식물성 기름 및 지방
   * 아마인유, 아주까리기름, 올리브유는 제외. 식물성 기름 조유(Crude vegetable oil)는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
5.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 설탕, 그리고 순수 자당
6. 코코아(버터, 분말, 케이크)
7. 스파게티, 라면
8. 과일주스(소매포장)
9. 물(생수 및 설탕,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탄산수), 기타 알코올 미함유 음료 및 맥주류
   * 에너지, 건강음료는 제외
10. 포대 시멘트
11. 의약품(아스피린 등 HS Code 3003, 3004 14개 품목)
12. 폐 의료용품
13. 비누 및 세제
14. 모기(퇴치)향
15. 재생 및 중고 타이어
    * 트럭용 중고 타이어(사이즈 11×20)는 제외
16. 골판지, 골판지 상자, 화장지, 티슈
    * 아기 기저귀, 어른용 기저귀는 제외
17. 전화기 충전카드 및 바우처
18. 카펫 등 섬유직물 및 섬유사
19. 신발 및 가방(가죽제 또는 플라스틱제 여행가방 포함)
    * 석유산업에서 사용하는 안전화, 스포츠화 등은 제외
20. 빈유리병(150ml 이상으로 음료, 주류회사에서 사용되는 제품)
21. 중고컴프레서, 중고에어컨, 중고냉장·냉동고
22. 중고차(제조년도 기준 15년 초과)
23. 볼펜
24. 토마토 페이스트 또는 농축물

한편, 나이지리아는 자국의 식량안보, 산업진흥, 자원보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출금지 품목을 지정하여 단속하고 있다. 수출금지 품목(2018.10월 기

준)은 옥수수, 원목, 생가죽, 고철, 처리되지 않은 생고무, 유물 및 골동품,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제품(악어, 코끼리, 도마뱀, 독수리, 원숭이, 얼룩말, 사자 등), 모든 수입물품 등 8개 품목이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인을 상대로 한 국제무역사기의 대상이 되어 문제를 야기하는 품목이 고철(폐철도레일 포함)이다. 나이지리아로부터 폐철도레일 또는 고철 수출을 미끼로 한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수출금지품목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v.ng/ProhibitionList/export.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특기할 사항은 없으나, 나이지리아는 WTO 회원국으로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지양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 관련 장벽

SPS 기준/시험/라벨링 관련 규정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수입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물, 약품, 화장품 및 살충제는 제조업체와 적절한 국가기관이 발행한 분석확인증(certificate of analysis)을 구비
- 특정 동물 제품이나 식물, 씨앗, 토양 등은 반드시 적절한 검사 확인증을 수반
- 나이지리아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미터법(the metric system)으로 표기된 라벨을 부착

고관세와 일관성 없는 수입 및 라벨링 규제 적용은 고부가가치의 시한성 제품(perishable products) 수입에 막대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으며(규정의 해석에 관한), 빈번한 부처 간 분쟁 및 통관 가이드라인의 변경은 나이지리아에 입항하는 물류의 지연원인이 되고 있다.

2006년 1월 1일부터는 나이지리아로 수입되는 개인사물, 중고자동차와 병아리, 백신, 이스트 등 상하기 쉬운 품목과 잡지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도착지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나이지리아 표준국(SON)은 2005년 9월 1일부터 필수제도의 하나로 표준품질검사(SONCAP 증명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중요 공산품 및 기계류 제품들은 출발지에서 나이지리아 표준국이 지정하는 검사기관(나이지리아 표준국 해외사무소)으로부터 SONCAP 증명서를 발부 받아 도착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이지리아 표준국은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판매되는 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공식 명칭은 Standard Organization of Nigeria(SON)이다. 표준 품질 검사의 대상 품목, 절차 등 주요 정보는 동 기관 홈페이지(http://son.gov.ng)에서 얻을 수 있다.

나이지리아 수입상들은 은행을 통해 Form M을 작성하여야 하고, 은행은 나이지리아가 지정한 검역기관에 Form M을 송부해야 한다. 은행을 통하여 검역기관에 전달된 Form M과 제반 서류들은 외환송금여부에 따라 'Valid for Forex' 혹은 'Not Valid for Forex'로 명시된다(Not Valid for Forex의 경우는 수입상이 외환송금을 책임지고 은행은 서류대행). Form M과 Proforma Invoice에는 수입물품의 정확한 명칭 및 세부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Form M은 선적 전 검역기관, 수입상 은행, 나이지리아 세관 및 나이지리아 해운협회(NMA)에 각각 1부씩 보내져야 한다. Form M은 선적 전 검역기관 사무소나 나이지리아 대사관, 국내은행, 나이지리아 은행 해외 지점 및 관련 은행에서 구할 수 있다. 외국에서 작성된 Form M은 외국소재 선적 전 검역기관을 통해 나이지리아의 지정은행 혹은 수입자 은행에게 보내지게 된다. 검역제외품목과 재무장관 승인품목 이외의 모든 수입품은 검역기관의 CRI(Clean Report of Inspection)의 발행이 필수적이다.

수입상은 선적전 검사기관이 검사를 종결 후 CRI(Clean Report of Invoice)를 발급 할 수 있도록 수출상에게 72시간 내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선적전 검사기관에 제출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수출상은 선적 전 검사기관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고 선적 전 검사 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때는 최소한 3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검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순수 검사수수료 제외)은 수출상이 부담하여야 한다. 검사통지를 받은 선적전 검사기관 요원이 검사를 하고자 했을 때 검사준비가 미흡하여 검사 할 수 없어 검사시점을 연기하거나 다시 검사해야 할 경우, 추가로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출상이 부담하여야 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나이지리아는 각 기관별로 사전에 등록된 CONTRACTOR제도를 운영해 왔다. 입찰시에는 동 CONTRACTOR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응찰자격을 제공하는 제한경쟁입찰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이로 인해 실력자의 요청에 따라 수의계약형태로 구매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국영석유공사(NNPC), 국영전력공사(PHCN) 등 주요 정부기관 구매 입찰은 최고 실력자의 의향에 따라 계약자가 선정되어 왔다.

그러나 1999년 5월 29일 출범한 민선 정부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구매에 공개경쟁입찰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실제로 전력공사, 석유공사 등의 입찰이 신문에 공고되고 있다. 하지만 공고 후 입찰준비기간이 약 2~3주일 이내로 매우 짧아 발주처에서 기존의 CONTRACTOR들에게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형식적인 공개입찰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제입찰 공고 후 입찰서류는 건당 약 200~300달러에 달하며 대형 입찰은 10,000달러 이상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제도의 불이익을 타파하고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지사 및 법인 설립을 하고 정부기관에 관련 제품 납품자로 등록을 하거나 정부기관에 납품자로 등록된 현지 회사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하는데, 현지에 근거지가 없을 경우 시장개척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업체 입찰참여 제약

상기의 입찰자격이나 사전자격검사(P.Q) 심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일단 선정대상에 들어갈 수 있으나, 최근에는 낙찰자의 자체 Financing(공급자 금융) 제공여부가 매우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현지 유력인 또는 관련 업체와의 합작이나 컨소시움 구성이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발주의 프로젝트는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 측면에서 현지인과의 합작투자가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일례로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등 특정 은행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입찰 공고시 이슬람국가의 기업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나이지리아가 이슬람 국가에 포함되어 나이지리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한국 기업의 경우 입찰참여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현지인이 현지법인의 지분 50%이상을 보유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주재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 지상사는 대부분 법인 지분의 50%이상을 현지인(법인)이 보유하도록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 지분 구조를 변경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현지화정책 추진

석유 및 가스 생산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나이지리아 정부 및 국영석유회사는 2010년 4월 시행된 The Nigerian Oil and Gas Industry Content Development Act 2010(Local Content Act)에 따라 국산화(현지화) 강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공사비를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인력·장비·설비·서비스를 나이지리아 내에서 조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은 석유 및 가스 관련 사업에서 인력, 구매, 조달, 건설, 설계뿐만 아니라 법률, 금융, 보험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국영석유회사 및 합작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안내 또는 사전자격심사초청 등의 공고에 있어서 현지화정책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인력채용에 있어서 자국인을 우대하기 위하여 다국적 석유기업의 경우 모든 직위에 대하여 자국인 채용가능성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자국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채용기간을 명시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산화규제위원회(NCDMB, Nigerian Content Development & Monitoring Board)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체 경영진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5%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이민법상 외국 인력 1명 고용시 현지 나이지지라인 2명(Understudy)을 고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많은 인력을 고용해 이로 인한 인건비 지출, 성과물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석유 및 가스관련 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자국화 비율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해양석유가스시설의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 90%
- 가스액화시설(LNG)의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 50%
- 가스수집시설의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 90%
- 심해석유시설의 상부구조물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 80%
- 부유식 콘크리트 구조물 : 80%

※ 100% 국산화 분야 : 강철 합판, 파이프라인, 각종 쓰레기 처리, 운송서비스, 뱅킹·보험 서비스, 케이터링, 세탁 서비스, 크레인, 감사 서비스, 지질·해양 탐사 등

또한, 다국적 석유기업이 발주하는 건설공사(1억 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공사에 참여하는 자국민의 최소한도를 명시한 노무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원청자 및 하청자 그리고 물품구매실적을 규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건설공사 입찰시 응찰자는 입찰금액의 1%를 감시위원회에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의 현지화(국산화)정책은 자국 내의 설계기술 및 제조업 기반의 취약한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되는 것이어서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지화(국산화)정책을 둘러싸고 외국계기업과 나이지리아 정부 및 국영석유회사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도 무리한 현지화추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한편 EU와 미국은 나이지리아의 Local Content Act에 대하여 요구하는 국산화 비율(특히 파이프라인 및 판넬, 감사서비스 등은 100%의 국산화 비율 요구)과 현지인 채용비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U 등은 본 정책을 해외자본의 자유로운 투자를 저해 하는 대표정책(Local Content Requirements)으로 판단하고, 본 규정이 WTO 규범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나이지리아 정부측에 해명을 요청하고 있다.

2013년 12월부터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 Local Content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하드웨어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 자료·정보 관리, 정보통신 인력 개발 등의 분야별로 생산기업, 정부기관, 나이지리아 정보통신진흥원(NITDA) 등의 역할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재국 정부에서 구매하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하드웨어 제품은 주재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부납품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향후, 주재국내에서 Local Content 정책은 건설, 항공, ICT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나이지리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의 발생과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협약 가입현황

나이지리아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 및 조약에 가입하고 있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제도는 외형상으로 잘 갖추고 있다.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저작권 조약(UCC)
- 베른협약
- 로마협약
-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상표법(2004), 저작권법(2004), 특허 및 디자인법(2004) 및 상품표기법(Merchandise Marks Act, 2004) 등이 제정되어 법적 기반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이를 실행할 행정역량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부품, 약품,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및 기타 소비제품의 복제품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서적류의 불법복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특허권 및 상표 관련 법집행도 미약한 상황이고 법절차의 진행도 느리며 부패의 개연성도 상존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방송법은 국내 방송사가 외국 방송사와 제휴 관계(joint venture)를 맺지 않더라도 외국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으며 나이지리아 방송강령(Nigerian Broadcasting Code)은 나이지리아 정부정책에 반하지 않는 한 외국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오일가스, 무기제조 등 일부 분야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에 투자가 가능하며, 50% 이상의 지분 확보도 가능(은행,

보험, 광산업 포함)하다. 오일가스부문은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와의 합작투자가 필수적이다.

※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 무기 및 탄약 제조,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물질 제조

오일가스부문의 제한

오일가스부문에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지만 특히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장벽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오일가스회사가 나이지리아인이 아닌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석유투자관리사무소(NAPIMS)에 이에 대한 소명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지분소유 제한

1995년까지 나이지리아는 자국인 참여 확대를 위해 '기업진흥법(Nigerian Enterprises Promotion Decrees)'에 따라 기업의 중요도 등을 고려, 외국인 투자지분을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1995년 9월 '외국인 투자진흥법(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Decree)'에 따라 무기 생산 등 일부 'negative list' 업종을 제외하고는 100% 외국인이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투자범위 및 지분

- 석유가스와 일부분야(무기, 마약 등)를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에 투자가 가능
- 은행, 보험, 광산업을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 투자사업에서 50% 이상의 지분 확보도 가능
-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매매 가능
- 자유로운 양수, 양도 보장

○ 합작투자

- 외국인이 현지 투자가와 합작 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여야 하며 현지 파트너의 지분은 자본금의 5% 이상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외국회사는 나이지리아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 및 계약행위를 할 수 없으며, L/C 개설 및 협상도 불가하다. 대표사무소는 오직 홍보 및 연락 기능만 할 수 있으며, 현지 운영경비는 해외 본사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거 반입되어야 한다.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기업등록위원회(CAC: Corporate Affairs Commission)에 등록해야 한다.

국산화 및 수출의무 부과

석유 및 가스산업 분야는 Local Content Act 2010에 따라서 현지화 비율이 강제된다. 이외에 다른 분야에 대한 특기사항은 없다.

투자허가 등 절차상의 문제

나이지리아에 대한 외국인의 현지 투자를 관장하는 기관은 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Commission(NIPC)이며, 투자제한 대상이 아닐 경우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 진출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 투자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절차가 필요하다.

○ 사전심사 제출서류

- 설립자/주주 및 보유지분 현황
- 회사명 및 설립자본금, 설립목적
- 100% 외국인 투자가 아닐 경우 합작투자 계약서
- 회사정관
- 이사회 구성현황 및 명단
- 이사회 이사 선임 증명서
- Notice of Address of Registered Office(회사 위치 통보서)
- CAC 등록 수수료 영수증
- TAX Clearance Certificate

○ 심사 후 제출서류

- NIPC 소정 양식 기재 후 사본
- NIPC 소정양식 구매 영수증 사본
- 회사 설립 등록증 사본
- TAX Clearance Certificate 사본
- 회사정관 사본
- 회사지분 구성확인 서류 발급 시 Stamp Duty 지급 영수증 사본
- 합작투자계약서 사본
- 사업계획서 사본(필요설비 목록 포함)
- 회사위치 확인서(공장 또는 사무실 임대계약서로 대체가능) 사본
- 이사 구성 현황 및 명단(성명, 주소, 국적, 직책)
-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직위 현황표
- 외국투자회사의 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사본

상기 구비서류를 절차에 따라 NIPC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제출하면 심사 후 허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 Business Permit and Expatriate Quota
- Pioneer Status and Other Incentives

이상의 절차를 통해 NIPC로부터 투자승인 및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해외로부터 자본금 송금 및 납입
- 은행으로부터 자본금 송금관련 증명서(Certificate of Capital Importation) 발급
- Work Permit(근로허가) 발급 및 체류비자 발급

투자 유망 분야

나이지리아는 청량음료, 섬유, 신발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산업의 다양성이나 기술수준이 아직도 초기 단계에 있다.

합작투자 유망분야는 나이지리아 투자촉진위원회법(NIPC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향유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나이지리아 기업진흥법(Nigerian Enterprises Promotion Act, 77)에서 정의한 투자 유망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한국에서 점차 사양화 되는 노동집약산업(섬유, 신발)
- 생산기지의 이전이 시급한 산업(금속가공, 석유화학)
-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산업(인프라, 전력)
- 자원 개발, 확보에 필요한 농·임·광업 분야
- 유럽 등 선진국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 등

투자촉진위원회(NIPC)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확대를 위해 iGuide Nigeria(http://theiguides.org)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노동 조건, 세금, 인센티브 등 투자 기업이 관심 있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하에 외국 자본의 나이지리아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원스톱 투자센터(OSIC)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투자자를 위해 각종인허가와 민원을 48시간안에 처리하고,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패 없는 조직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는 1998년 3월 27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고, 1999년 2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나이지리아는 2018년 10월 현재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28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 간의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내국인 대우, 최혜국 조항 및 투자회수와 과실송금이 보장되고 있다.

사업 환경(doing business)

2017년 10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 보고서(Ease Doing Business 2018)'에 의하면 조사대상 190개국 중 나이지리아는 145위로 전년(169위) 대비 24계단 상승하였다. 분야별로는 자금조달(6위), 소액투자자 보호(33호)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통관행정(183위), 재산권 등록(179위), 세금납부(171위), 전력공급(172위) 등이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야별 순위

분류	순위	분류	순위
창업	130	소액투자자 보호	33
건축 인허가	147	세금납부	171
전력공급	172	통관행정	183
재산권 등록	179	법적분쟁해결	96
자금 조달	6	퇴출	145

나이지리아의 총 37개 주(36개 주 + 수도 FCT)에 대해 4개 분야(창업, 건축 인허가, 재산권 등록, 법적분쟁해결)를 평가한 세계은행의 '나이지리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Ease Doing Business in Nigeria 2018, 2018년 9월 발표)에 따르면, 주별 순위는 Kaduan주가 전체적으로 가장 기업환경이 좋고, Cross River주가 가장 기업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수도인 FCT(Abuja)는 9위, 경제수도인 Lagos주는 28위로 나타났다.

투자 인센티브

나이지리아 투자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와 적용 대상 등은 투자촉진위원회(NIPC) 홈페이지와 iGuide Nigeria 웹사이트 등에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다.

세금 인센티브는 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자본이득세, 소득세, 관세 등과 관련하여 인정된다. 법인세(30%)는 선도기업(pioneer industries)에 최대 5년(시작 3년, 추가 최대 2년)간 면제되며,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20%),

농촌투자 세액감면(15~100%) 등이 적용되며, 매출이 작은 회사의 세율은 20%이다. 부가가치세(5%)는 의료용품, 비료, 의료 서비스 등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면제되며, 증권거래소 거래 수수료에 대해서도 2019년까지 면제된다. 자본이득세(10%)는 기업 인수합병, 재투자 수익금 등에 면세되며, 소득세는 회사 자본금의 10%이상 소유자 등의 배당금에 대해 면제된다.

업종별 주요 인센티브는 농업에는 투자 초기년도 자본공제(95%) 등이 있으며, 오일&가스 산업은 차별화된 로열티(0~20%), 생산물분배계약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50%) 등이 적용된다. 광업은 초기 3년간 법인세 면제, 초기년도 자본공제(95%) 등이 인정된다.

수출자유지역은 외국인 쿼터 면제, 각종 세금 면제, 건설단계에서 토지 임대료 면제 등의 일반적 인센티브 이외에 플랜트 등에 지출된 비용에 대한 100% 자본세액감면 등 광범위한 인센티브가 인정된다.

토지 취득상의 제한

1978년 제정된 토지이용법(Land Use Act)에 따라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주지사의 승인을 얻어 일반적으로 99년까지 점유(occupancy)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끔 주정부에서 25년간의 점유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점유기간 만료 후 갱신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정부마다 외국인의 토지 점유에 대해 상이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해 토지가 위치한 주정부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라고스 주의 경우 3년 이하의 토지 점유의 경우 주지사의 승인이 필요 없으나, 점유기간이 그 이상인 경우 주지사의 승인이 없는 경우 토지 취득이 금지된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이 사업을 통해 얻은 과실송금 관련하여 송금액, 송금세, 재투자 등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과실송금에 대하여 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하다.

본국 또는 제 3국의 자금차입에 대한 한도나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금융서비스의 범위 제한)은 없으며, 수출대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외환구좌의 보유제한 등도 없다.

환율은 중앙은행(CBN)의 외화경매에 따라 결정되는 환율이 공식 환율로 인정되어 오다가 2016년 6월 20일부터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암시장(2017년 10월 기준, 약 360나이라/1$)과 공개시장(약 305나이라/1$)의 환율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기존의 고정환율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회보장세 납부를 요구하는 등의 세제상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부가세 및 사치세 등의 과세 강화 및 국세청의 탈세에 대한 조사,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세원 확대를 위해 1999년 1월 1일부터 25%를 환급해주던 관세 환급금 제도를 폐지하고 담배 및 주류에 대한 이행관세를 부활시켜 시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주요 산업 부흥을 위해 세금우대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석유 및 가스 개발 관련 기업체에 대한 세금 우대조치
- 외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한 투자 유치 강화

* 우리나라는 나이지리아와 2006년 11월 이중과제방지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 4일 국회비준을 완료하였으나, 나이지리아는 2018년 10월 현재까지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동 협정이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 천연가스 개발 사업자에 대한 세금 우대
- 광물개발 사업자에 대한 세금 우대
- 2004년부터 국내 제조 산업과 관련된 기계류, 플랜트,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및 한시적 면세 제도 시행

기타 장벽

외국인 쿼터 및 비자-현지법인 설립관련 비자 쿼터제도

NIPC가 현지법인 설립을 허가하면, 외국인 채용을 위한 외국인 쿼터(EQ, expatriate quota)를 내무부에서 결정한다. EQ에 대해서는 업종마다 특별한 기준이 없으며 해당직위에 외국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justify)하여야 한다. EQ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후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오일&가스 분야에서는 EQ를 위해 국산화규제위원회(NCDMB)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추가적인 제약이 있다.

STR(Subject to Regularization) 비자는 나이지리아에 등록된 회사의 EQ를 토대로 발급되며, 입국 후 거주허가(Residence Permit)와 외국인 신분증(Aliens Card)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STR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현지 나이지리아에서는 불가능하며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금융기관의 나이지리아 진출과 관련된 사항

나이지리아 금융시장 현황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Nigeria)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5년 말까지 84개가 난립하던 은행을 통폐합하여 현재는 27개의 은행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중 상업은행의 최소자본금은 250억 나이라(약 2억 달러)로 확대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강화되었다. 기준 금리는 인플레이션 압력, 취약한 경제지표 등을 이유를 2016년 7월 이후로 2018년 10월 현재까지 14%를 유지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외환 암시장(Parallel Market)은 수입금지 품목 수입업자들의 달러 수요와 상업은행을 통한 외환 확보의 복잡성으로 인해 번성을 하였으며, 나이지리아 금융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해 왔다. 이에 나이지리아 중앙은

행은 암시장을 없애고 외환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은행 구조개혁을 단행하였지만, 외환당국이 환율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시장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시중 외환거래는 암시장 가격이 통용되는 상황이다.

금융기관의 나이지리아 진출과 관련된 장벽

외국 금융기관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하는데 있어 특기할 만한 장벽은 없다. 다만, 금융기관 진출을 위해서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자본금 및 부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이지리아 금융기관의 주 고객은 기업이며 개인들의 경우 대부분 현금거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정부는 2013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 7월 1일부터 Cashless Policy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은행들이 온라인·모바일 거래와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국적 은행들은 기술우위에 있는 온라인 거래, 인터넷 뱅킹 등의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여 대규모 자금력을 가진 현지 로컬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사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사례는 없으며, 현재 Standard Chartered, City Bank, Stanbic IBTC 및 Ecobank 등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해 있다.

개선실적 및 정책동향

원스톱 투자 서비스

1995년 나이지리아의 기업진흥법 제정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였으며, 이로써 그전에 존재하던 외국인 투자한도 규제 및 진출금

지 분야에 대한 규제가 석유산업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면 철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은행, 운수업, 전력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되었다.

2006년 나이지리아 투자 촉진위원회(NIPC)에 '원스톱 투자센터'를 설치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원스톱 투자센터에는 외국인의 법인설립과 관련된 26개 기관의 관계자가 근무하면서 즉각적인 현지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iGuide Nigeria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외국인 투자 관련 각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부정부패 추방

부하리(Buhari) 정부는 부정부패 추방을 국정 운영의 기초로 삼아 EFCC (경제재정범죄위원회) 및 회계감사반 등에 강력한 힘을 부여하여, 이전 정권 및 모든 부문의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과거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 바 있는 국가 수입계정을 정리하여, 모든 국고 수입, 즉 석유에서 발생되는 수입, 세수 등을 1개 계정으로 단일화(TSA, Treasury Single Account) 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2015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각종 개혁정책 추진

부하리 정부는 경제 회복 및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2017년 3월초 "경제회복 및 성장 계획(2017~2020년, ERGP)"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다. ERGP의 주요 내용은 ①경제회복과 안정(재정/금융/대외수지), ②성장세 회복(6개분야 중심 경제 다각화), ③경쟁력 강화(인프라 확충, 기업환경 개선), ④포용적 성장(보건, 교육, 일자리 창출 등), ⑤거버넌스 구축 및 집행력 확보(계획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12개 우선추진 정책 설정 등)이다. 이를 통해 4년(2017~2020년)간 평균 4.6%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12개 우선 추진 정책 : ①조속히 오일 증산, ②국가자산 민영화, ③비오일 수입 증대, ④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비용 절감, ⑤재정, 금융, 수출 정책 조화, ⑥전력 등 인프라 확충, ⑦정유공장 개보수, ⑧기업환경 개선, ⑨사회보장책 시행, ⑩농업 개혁 정책 시행, ⑪제조업 개혁정책 시행, ⑫ERGP 집행조직 신설 및 집행

부하리 정부는 인프라 부족과 함께 제조업 육성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심각한 전력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7년 3월 "전력 활성화 정책(2017~2021년)"을 발표하고 전력 분야 투자 확대, 전력 공급 능력 확대, 전력 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주기적인 휘발유 공급 파동에 대응하고 정유 수입 대금으로 지급할 부족한 외환 절약 등을 위해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국내 정유공장의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기업도 주재국 사하라 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참여를 추진 중에 있다.

남아공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통상환경 개관

남아공은 1993년 UN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통해 세계 경제에 편입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계 동참 및 각종 양자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남아공 대 세계 교역 개요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남아공은 대세계 수출 890.4억 달러, 대세계 수입 1,013.3억 달러를 기록하여 약 122.9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2017년도 남아공의 상위 5대 수출 대상국은 EU (21.7%), 중국(9.8%), 미국(7.5%), 일본(4.7%), 인도(4.7%), 기타 국가들(51.5%)순이며, 남아공의 상위 5대 수입 대상국은 EU(30,8%), 중국(18.3%), 미국(6.6%), 인도(4.7%), 사우디아라비아(4.6%), 기타 국가들(35%) 순이다. 남아공의 對한국 수출, 수입 비중은 각각 2.4%, 1.2%이다.

2017년 기준 남아공의 주요 수출품은 보석, 귀금속류(16%), 광, 슬랙 및 회(13%), 광물성 연료(12%), 자동차(11%), 철강(6.8%), 기계류 등 (6.1%), 과일 채소(3.8%) 등의 순이다. 같은 기간 주요 수입품은 광물성 연료(15%), 기계류(13%), 전기/전자 장비(10%), 자동차(8.4%), 생필품(8.2%), 플라스틱(3%),

의약품(2.7%), 안경/사진/의료기기(2.6%) 등 순이다(자료원: UNCTAD, Trading Economics).

한-남아공 교역관계

2017년 우리나라의 대남아공 수출은 9.9억 달러, 수입은 19.5억 달러로, 우리나라는 약 9.6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차량 (29%), 기계 및 보일러(19%), 전기/전자장비(11%) 등을 남아공에 주로 수출했으며, 남아공으로부터는 광물성연료(32%), 광·슬랙 및 회(27%), 철강(18%) 등을 주로 수입했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외교관계가 수립된 1992년 8.4억 달러에서 2017년 29.4억 달러로 약 3.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양국 수교 25년 만에 한국은 남아공의 교역 대상 아시아 국가 중 네 번째 국가로 자리 잡았고, 남아공은 한국의 교역 대상 아프리카 국가 중 최대 교역국이 되었다(자료원: WTA, Trading Economics).

남아공의 다자무역 및 자유무역협정 관련 정책

아프리카 대륙내 경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남아공은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아프리칸 그룹(African Group)의 주도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남아공은 BRICS의 회원국이자, 아프리카 국가중 유일한 G20 회원국으로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남아공은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남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등의 경제협력체 창설을 주도하였다. SACU 5개 회원국(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랜드, 나미비아)은 2002년 개정된 SACU 협정문에 따라, 역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적용하고 있다. SACU 회원국간에는 공동통화지역(CMA: Common Monetary Area)이 설립되어 나미비아, 레소토 및 스와질랜드의 통화가 남아공 통화인 랜드

(Rand)화와 1:1로 연계되어 통용된다. 남아공 GDP는 SACU 회원국 전체 GDP의 90%를 차지한다.

SACU 5개 회원국은 또한 제3의 당사국과 새로운 특혜무역협정 협상을 출범하거나 기존의 특혜무역협정을 개정하는 경우, SACU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SACU 협정문 제 31조를 근거로, 여타 국가와의 특혜무역협정 추진 또는 기체결 특혜무역협정 개정을 검토한다.

남아공은 SACU 역내 무역원활화 및 아프리카 대륙내 무역자유화를 통한 지역경제 통합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SACU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과의 자유무역협정을 2008년에 발효하여 남아공을 비롯한 모든 회원국은 공산품과 농산품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ing Area)이 2016년 10월 21일 공식 발효되어(특혜 마진: 10%~100%) 남-남 협력 증진이 가능해졌다.

SADC는 남부아프리카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 위해 1992년 창설되었으며 역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여 자유무역지대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8월 남아공에서 개최된 SADC 정상회의에서는 코모로가 새롭게 가입하여 회원국 수가 총 1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남아공은 1996년 협정 서명 후 2000년부터 관련 협약을 이행하고 있으며, SADC FTA는 2012년 이래 전면 시행되어 전체 생산라인의 90% 이상에 대해 수입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2016년 6월 10일, 보츠와나 카사네에서 SADC와 EU가 경제동반자협정(EPA)를 체결했다. EU는 SADC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해 불균형 관세제도를 도입하여 SADC 국가들은 EU로 100%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반면, EU는 대 SADC 국가 수출품 중 86%만 무관세로 수출한다. SADC-EU EPA 회원국들은 자국 산업의 위협이 있다고 판단 시, 대 EU 수입품에 대한 5개의 세이프가드 규제를 발동할 수 있으며(양자 세이프가드 협정), SADC산이 아닌 수입 원단으로 제작한 의류의 수출도 EU 무관세 혜택(원산지 규제 유연

성)을 받을 수 있다. 남아공은 2016년 10월 10일부로 동 EPA 시행이 발효되었으며, 타 SADC 회원국과 달리 남아공의 대 EU 수출시 관세 면제율은 98.7%이다. 기존 남아공은 EU와 교역, 발전 및 협력 협정(TDCA: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1999년 타결한 바 있으나, SACU-EU 간 EPA 시행으로 보다 발전된 수준의 EU 시장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농수산물 분야에서 EU의 시장개방 확대를 달성하였다.

2015년 6월 10일 이집트 엘세이크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26개국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SADC-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남동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간 3자 자유무역협정(TFTA: Tripartite Free Trade Area) 출범에 합의했다. TFTA는 2017년 9월 기준 남아공을 포함하여 총 20개 국가가 서명을 완료하였고 14개국에서 비준할 경우 발효하게 된다. 2018년 6월 기준 이집트, 우간다 등 2개국만 비준한 상태이다.

TFTA 협상은 아프리카 최대 자유무역지대를 위한 "범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협상 시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2018년 3월 21일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아프리카연합(AU) 제10차 특별정상회의에서 44개 회원국이 '자유무역지대(AfCFTA) 선포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2018년 7월 기준으로 남아공을 포함하여 총 49개국이 서명한 상태이다. 동 협정은 22개국에서 비준할 경우 발효가 되는 데, 2018년 7월 기준 케냐, 가나, 르완다, 니제르, 차드, 에스와티니 (구 스와질랜드)등 6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다.

이외에도 남아공은 SACU-인도간 PTA 및 SACU-미국간 FIDCA 등협상에 참여 중이나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자료원: 남아공 통상산업부(www.thedti.gov.za),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https://www.sadc.int/), Tralac).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남아공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수입대체 정책에 따라 높은 관세율과 수입쿼터 제도 등을 통해 섬유, 자동차 등 주요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왔으나, 1994년 민주정부 수립과 1995년 WTO 가입 이후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세장벽을 꾸준히 철폐해 오고 있다.

남아공은 WTO 가입 당시 전체 상품의 96.1%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는 양허안을 제출하였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실행관세율(Simple Average, MFN 적용 기준)을 1996년에 13.82%에서 2016년에 7.7%로 인하했다. 농산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의 경우 2016년 8,5%, 비농산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은 7.5%가 적용되었다(자료원: WTO ITC UNCTAD).

우리나라의 대남아공 최대 수출 품목인 승용차에 대한 수입관세는 인하되는 추세로, 1999년 50.5%에서 2006년 32.2%, 2007년 30%, 2008년 29%, 2010년 27%, 2016년에는 20~25%까지 인하되었으며 동일 수준의 관세율이 2020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이러한 관세인하 추세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정부가 제조업 육성, 고용창출 등 국내경제정책의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정품목의 실행관세율을 WTO 양허관세율까지 인상시키는 등 특정산업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는 2015년 2월 18일 우리나라 등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5%에서 WTO 양허세율범위내인 1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7년 8월 11일 자국 내 철강업계 보호를 목적으로 열연코일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다(자료원: 남아공 국세청(www.sars.gov.za), 무역관 자료).

수입규제 및 금지

남아공 정부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바젤 협약,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1998 UN 협약 등 국제 협약이 규정하는 품목 및 중고품의 수입을 국민보건, 환경보호, 안전 등의 이유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 규제 품목으로는 차량용 신품 압축타이어, 중고 전자제품, 중고 의료기기, 중고차량, 중고항공기, 폐기물, 방사성 화학 물질, 사행성 도박기기 등이 있다.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에 따르면, 통관분류대상 총 6,650개 품목 가운데 276개 품목이 수입 통제 대상이며, 구체적인 품목목록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 홈페이지(www.itac.org.z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입통제 대상 품목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의 특별허가를 얻을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 ITAC는 177개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되는 품목은 주로 ▲호안석 (Tiger's eye) 등 희귀 광물 ▲제조업을 위한 원자재 ▲범죄예방을 위한 전략 지원을 위한 품목 (도난 차량 수출을 예방하기 위해 중고차량의 수출 금지 등) 등임

남아공 수입통제대상 품목 예시

품 목	수입 규제 사유
방사성 화학물질(Radioactive Chemical Elements)	국민보건
신품 압축타이어(New Pneumatic Tyres)	안전기준
1998년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Chemicals liste in the 1998 Convention)	협약 준수
화석연료(Fossil Fuels)	효율적 제조 필요성, 소기업 보호
무기 및 탄약(Arms and Ammunition)	국민안전
도박기기(Gambling Services)	사회질서 유지
중고품(전자제품, 의료기기, 자동차, 항공기, 폐기물 및 스크랩 등)	국내산업 보호 및 환경 보호

자료원: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통관절차상 장벽

남아공 국세청 홈페이지(www.sars.gov.za)는 항공 화물통관은 약 1일, 해운 화물통관은 약 2~3일이 소요된다고 공지하고 있으나, 공항 및 항구에서의 통관지연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또한, 남아공 세관은 수입 화물이 남아공 표준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별하기 위해 해당 물품을 반출대기 할 수도 있다.

남아공에서 특정 공정, 수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된 품목이나, 수출용으로 수입된 품목의 경우,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면제되며, 산업개발지역(IDZ: Industrial Development Zone) 유입물품의 경우에도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남아공에 수입되는 물품중 SACU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 보세구역이나 세관통제구역에서 사용될 수입 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이 가능하며, 관세환급 신청절차는 약 4개월가량 소요된다.

한편, 세관수입신고 과정에서 인보이스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세관 직원들에 의한 절도행위, 까다로운 수입허가 절차, 불필요한 전수검사, 과도한 규제 등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여 통관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입에 필요한 국가규제기관(NRCS)의 인증서(LoA, Letter of Authority) 발행이 지연되는 문제도 있다. 정상 소요기간은 규정상 최대 120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발행까지는 약 6개월에서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해당 인증서는 제품 통관을 위해 수입업자들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로 절차가 지연되면 제품을 항구에 보관하면서 보관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다른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자료원: NRCS (www.nrcs.org.za), 무역관 자료).

무역구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남아공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검토를 거쳐 통상산업부(DTI) 승인을 통해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를 취한다.

2017년 6월 30일 기준 WTO에 통보된 자료에 따르면 28건의 반덤핑 조치가 발동 중인 가운데 수입규제 대상 국가 및 품목 현황의 경우, 중국(9건), 인도, 인도네시아(각 3건), 브라질, 네덜란드, 대만, 미국(각 2건)의 순서로 수입 규제가 발동되고 있다.

남아공의 2016/2017년 ITAC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철강 볼트, 너트 등에 부과되었던 반덤핑 부과 종료, ▲인도산 지(紙)절연 케이블(Paper Insulated Lead-covered Cable) 반덤핑 부과 종료 ▲인도산 틀을 갖추지 않은 유리거울에 대하여 2016년 2월부터 시행된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반덩핑 유지를 권고, ▲중국,인도,대만, 한국산 폴리에틸렌수지용기(PET)에 대한 반덤핑 유지를 권고하였다.

남아공 가금류 산업협회는 국내 양계업계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 관세율을 37%로 인상을 요청한 바 있으나, 남아공 산업통상부는 EU와의 체결한 파트너십 협정(EPA) 등의 이유로 2017년 8월 28일 유럽산 닭고기 수입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13.9%의 관세 부과만을 승인하였다.

중국산 저가 철강 수입 급증에 대응하여 남아공은 수입산 열연코일에 대해 2017년 8월부터 3년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이러한 추세는 남아공의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철강, 섬유산업 등과 같이 고용규모가 큰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8월 기준 남아공의 대한 수입규제는 전체 2건으로, 세이프가드 조치 1건과 반덤핑 조치 1건 규제 시행 중이며, 냉연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2016년 7월 29일 개시되었다. 특별히 예상되는 대한 수입규제 품목은 없으며, 한국의 대 남아공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류 및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자료원: WTO, ITAC).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 · 검사

남아공 표준청(SABS)은 국내물품이 표준·검사관련 규제를 받는 경우 동종 수입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농업부, 보건부, 노동부, 수자원위생부, 환경부, 교통부, 통상산업부가 각종 기술관련 규제가 포함된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남아공 표준청 산하 필수규격규제기관(NRCS)은 국민의 공공보건 및 안전, 환경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필수규격 관련 법령의 이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필수규격규제기관법에 근거하여 2008년 설립되었다. 모든 수입품과 남아공 현지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은 필수규격규제기관이 정한 필수규격에 부합해야 하며, 각종 필수규격에 관한 정보는 필수규격규제기관 홈페이지(www.nrcs.org.z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수규격규제기관은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라이닝, 헤드라이트 등), 모터사이클 헬멧 관련 품목, 전자제품, 전선, 전기플러그, 건축용 자재 등 다양한 품목에 걸쳐 필수규격을 정하고 있다.

위생 · 검역

농축산물, 농수산가공품, 주류 등이 위생·검역 규제의 대상이다. 농축산물 수입에 있어서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으며, 방사선 처리를 거친 육류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사과, 체리, 배 등의 과일류를 남아공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밟아야 한다.

남아공은 유전자변형식품(GM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유전자변형식품법(The GMO Act)'을 제정하였다. 유전자변형식품이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생명공학 제품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생명공학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라벨링(labeling), 포장 등

모든 제품의 라벨링 및 포장 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수입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함유물의 중량표기는 남아공의 계측시스템에 맞추어야 한다. GM 재료가 함유된 제품은 반드시 그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新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수입된 직물 원재료를 남아공에서 가공해서 만든 제품은 'Made in South Africa from imported material'이라고 라벨에 표기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섬유제품 라벨에 표시되는 원산지 표시(예: Made in South Africa)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필수규격규제기관(NRCS)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2014년 11월 28일 에어컨, TV, 셋톱박스 등 시청각 기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및 냉장고, 전기오븐, 세탁기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필수규격 및 라벨링 제도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해당 가전제품들은 제품군별로 최저 에너지효율 등급을 만족해야 하며 그에 따른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동 발표일 이후 품목별로 6개월(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9개월(냉장고, 세탁기, 식시세척기 등), 18개월(에어콘 등) 순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자료원: NRCS, 무역관 자료).

품목별 장벽

남아공 정부는 국내 자동차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고 자동차 및 중고 자동차 부품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중고차량 수입을 위해서는 허가증이 요구되며 경주용 자동차, 수집용 빈티지 자동차 등 특정 용도의 중고 자동차는 국제무역행정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수입이 허가된다. 한편, 좌측 핸들 자동차는 도로교통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외국 자동차 업체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아공은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산업개발계획(MIDP: Motor Industry Development Program)을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하였

다. 이 계획은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현지부품 사용비율에 따라 관세환급 등의 관세혜택을 부여하였다. 자동차산업개발계획은 2013년부터 자동차생산개발계획(APDP: Auto Prod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2020년 종료 예정이다. 자동차 생산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특혜관세 적용, ②자동차 조립시 현지 부품 사용 비율에 따른 무관세 혜택, ③생산장려정책 및 ④자동차 분야 활발한 투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남아공산 제품 사용비율 및 생산장려정책 등의 혜택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남아공에 진출한 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2012년까지 시행된 MIDP 보다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2015년 11월에 발표된 APDP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APDP 수혜 자격 완화: 국내 자동차 최소 생산량 연간 5만대 이상 → 1만대 ②자동차조립보조금에 차등제 적용 ③부품공급회사에 대한 자격 강화 (비핵심 자동차 제품의 APDP 혜택 수혜 방지) ④자동차 툴링에 대한 투자 확대

또한 2017년 6월 남아공 자동차제조사협회(Naamsa, National Association of Automobile Manufacturers of South Africa)는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2035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연간 생산 규모를 60만대에서 140만대, 현지 생산 부품 사용 비율을 38%에서 60%로 높이는 계획을 발표하며 자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자료원: 남아공 자동차제조사협회, www.naamsa.co.za).

지식재산권 보호

남아공은 위조품 단속법(Counterfeit Goods Act)과 지식재산권 개정법(Intel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 Act)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남아공 지식재산권법에서 명시하는 보호대상 지식재산의 범주는 특허, 등록된 디자인,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포함한다. 특히, 남아공 Jacob Zuma 대통령에 의해 2013년 서명된 지식재산권 개정법은 전통지식 및 전통지식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아공내 루이보스(Rooibos) 및 허니부시(Honeybush)를 남아공 상표법에 따라 승인없는 상표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남아공의 특허, 등록된 디자인,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법의 전반적인 이행은 통상산업부 산하 회사 및 지식재산 위원회(CIPC)에서 담당하고 있다. 남아공 지식재산권법은 지식재산권 침해시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그러나 민형사 소송 등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지식재산 소유자 대다수의 경우는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모조품과 해적판 소프트웨어 불법 유통 등으로 적발된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어, 남아공 통상산업부와 국세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남아공 통상산업부는 현 저작권법(1978년 제정)을 디지털화에 따른 세계적 추세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 2015년 7월 '저작권법 개정안 2015(Copyright Amendment Bill 2015)'를 발표하고 같은 해 하반기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이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특히 동 개정안에 포함된 공정사용(fair use)에 대하여 전통적 저작권 보호를 옹호하는 작가, 음악인, 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예술인을 중심으로 개정안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현재의 남아공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적 복제, 교육과 연구목적, 평론, 비평, 언론보도 등과 같은 특정목적 가운데 소량의 저작내용 인용 시 공정취급(fair dealing)으로 저작권자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하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공정취급을 공정사용(fair use)으로 대체하고 공정사용 개념 정의를 생략하고 8가지 공정사용(예를 들어 리서치, 사적 공부 및 개인용도, 저작물에 대한 비평 및 리뷰, 학문(scholarship), 수업(teaching), 교육(education)용, 최근 사건에 대한 보도 등)의 경우 저작권자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남아공 통상산업부는 개정안 2015를 수정한 개정안 2017(Copyright Amendment Bill 2017)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사 과정에서 다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일어나, 의회는 발의안을 남아공 통상산업부로 돌려보내어 모든 쟁점이 합의된 수정안을 재상정할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참고로 남아공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이지만 저작권과 관련하여 베른협약에만 가입하고 있고, WCT 및 WPPT에 대해서는 서명만 한 상태이다.

서비스 장벽

남아공은 대부분의 서비스 시장을 자유화하고 있으나 WTO/GATS에 의한 구속력 있는 시장 개방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서비스 시장은 과거 인종차별정책 및 무역제재 조치의 영향으로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어 있어 외국 기업이 신규로 진입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편, 남아공 정부는 2013년 9월 SADC 서비스 무역자유화 의정서(SADC Protocol on Trade in Service)를 비준하였다. 동 의정서는 SADC 회원국 간 서비스 분야 개발, 투자 촉진 및 건설, 교통, 에너지, 관광 분야 등의 서비스 무역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

유선통신서비스 시장은 국영전화회사(Telkom)가 독점하고 있으며 Telkom의 최대주주인 남아공 정부는 51%의 지분(직접 39.8%, 여타 지분은 공공투자공사(PIC)를 통한 간접 방식)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의 남아공 유선통신시장 진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유선통신시장 독점으로 인해 통신비용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은 Vodacom, MTN, Cell C 등 민간기업들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외에 위성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도 투명하지 않아 외국계 위성통신 사업자에게 매우 높은 사업면허 취득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유통 서비스

유통서비스 시장은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내 및 유럽계 외국기업(Makro, SPAR, Woolworth 등)이 구축하고 있는 유통망 이외에 새로 유통망을 구축하여 참여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과점 구조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유통 마진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아공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2018년 8월 기준 7억 1,500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남아공 밀레니얼 세대(1982년~2000년 사이에 태어난 젊은 층)는 소셜 미디어,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선진국 밀레니얼과 취향을 공유하며 온라인 유통망 사용을 주도하고 있어 남아공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 성장이 기대된다(자료원 : BMI, 무역관 자료).

정부조달 관련 장벽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

남아공 정부는 1994년 민주정부 수립 이전 인종차별정책(apartheid)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역사적 소외집단(Historic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으로 분류된 흑인, 인도인, 혼혈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흑인경제육성정책(BEE: Black Economy Empowerment) 위원회를 1998년 발족시켰다.

흑인경제육성위원회의 2년여 간의 연구조사 결과 끝에, 남아공 정부의 흑인경제 육성정책 전략과 방향을 담은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 Broad- 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Act)이 2004년 1월 공표되었다. 또한 BBBEE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모범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이 2007년 2월 발효되어, 총 7개 요건에 대한 배점을 부여하였으나, 이후 남아공내 기업의 흑인경제 육성법의 이행 촉진을 위하여 2007년 발효된 실천규약을 한층 강화시킨 개정 BBBEE 모범실천규약이

2013년 10월 발표되면서 2015년 5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개정 B-BBEE 모범실천규약은 정부조달, 정부허가 등에 있어 흑인 기업의 지분 소유 수준별 가산점을 부여를 포함하고 있어 남아공 정부조달시장 참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개정 규약은 기존 7개 요건을 5개 요건으로 통합하고, 전체 배점을 기존 100점에서 109점으로 부여하였다.

개정 규약에 따르면 기업은 3단계로 구분되는 바, 면제된 영세기업(EME, 연매출 1,000만랜드 이하), 소규모 기업(QSE, 연매출 1,000만랜드~5,000만랜드), 그리고 연 매출액이 R50 million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Large Entity)으로 분류된다. '대기업 일반 흑인 경제육성 점수 채점표(Generic B-BBEE Scoreboard)'는 아래와 같다.

평가요소	배점
흑인의 지분소유권 (Black Ownership)	25점
경영권(Management control))	19점
기술 향상 (Skills development)	20점 + 보너스 5점
기업 및 공급자 개발 (Enterprise & supplier development)	40점 + 보너스 4점
사회·경제적 발전(Socio-economic development)	5점
총점	109점 +보너스 9점

위의 일반 흑인 경제육성점수 채점표는 농업, 정보산업, 부동산, 건설 등 독자적으로 점수표를 갖고 있지 않는 업체에 적용이 되며, 독자적 산업군 점수표를 갖고 있는 경우 업종에 따라 점수 배정이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산업군 점수표를 확인해야 한다.

B-BBEE 등급의 증명은 최근 개정을 통해 인증업체(SANAS Accredited B-BBEE Verification Agency)의 평가를 받거나, 자체 평가를 한 후 'B-BBEE Codes of Good Practice'에서 제시한 '진술서(affidavit)'로 대체할 수 있다. 위의 점수표에 배정된 5가지 구성 요소에서 얻은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이 부여되며, 개정된 B-BBEE 등급은 아래와 같다.

분류	기존 합산 점수	개정 후 합산 점수	인정 등급
1등급	100점 이상 획득	100점 이상 획득	135%
2등급	85점 - 100점 획득	95점 - 100점 획득	125%
3등급	75점 - 84점 획득	90점 - 94점 획득	110%
4등급	65점 - 74점 획득	80점 - 89 점 획득	100%
5등급	55점 - 64점 획득	75점 - 79점 획득	80%
6등급	45점 - 54점 획득	70점 - 74점 획득	60%
7등급	40점 - 44점 획득	55점 - 69점 획득	50%
8등급	30점 - 39점 획득	40점 - 54점 획득	10%
미준수	30점 미만 획득	40점 미만 획득	0%

남아공의 정부조달은 사회적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남아공 정부는 "흑인 우대 구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흑인 우대 구매는"우대 구매 시행령 2011"이 규율하며, 최근 "우대 구매 시행령 2017"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구매 대금에 따라 B-BBEE 등급 점수가 적용되며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가 격	절 차	참 고 사 항
R2,000 미만	소액 결재	견적 불필요
R2,000-R10,000	최소 3개 견적	구두 견적 가능
R10,000-R30,000		서면 견적
R30,000-R200,000		서면 견적, 7일이상 조달 공고 80/20점수제 (80%가격+20% B-BBEE 점수)
R200,000-R50 m	공공 입찰을 통해 구매, 공급 조달	80/20 점수제 최소 14일 이상 광고.
R50 million 이상		90/10 점수제 (90%가격+10% B-BBEE 점수) 최소 30일 이상 광고

입찰 심사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 심사는 서류 심사로, 공고된 대로 입찰 서류 및 정보 제출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기업의 등록 정보 및 등록 서류 사본 제출, B-BBEE 등급 관련 서류 제출, 세금 관련 서류 등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

2단계는 해당 업체가 수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무 능력, 인적 능력, 기술적 경험 보유 여부 등을 파악하는 기능성 심사이다. 최종 경합에서 동점이 발생할 경우 기능성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유리하다.

3단계는 가격 및 B-BBEE 등급 점수를 계산하는데, 입찰 가격에 따라 80/20 점수제(80% 가격 +20% B-BBEE점수) 또는 90/10 점수제(90% 가격 +10% B-BBEE점수)를 통해 입찰 점수를 계산하여 이 점수를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입찰 업체를 선정한다.

남아공 입찰 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유의해야 한다. '우대구매시행령 2017'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입찰 공고 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B-BBEE 1등급 또는 2등급만 참여가 가능하다든지, 면제된 영세 기업(EME) 또는 소규모 기업(QSE)만 참여할 수 있다든지, 또는 입찰 참여자는 전체 공사에 대하여 적어도 30% 하청계약을 흑인·흑인청년·흑인여성·흑인장애인·흑인퇴역군인이 51%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면제된 영세 기업(EME)' 또는 '소규모 기업(QSE)'과 체결해야 한다든지 등을 요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우대 구매 시행령 2017에 따르면 발주처는 남아공 통상산업부와 협의하여 특정 산업군에 대해 현지 생산품이나 현지 부품(로컬 콘텐트) 사용을 의무요건으로 할 수 있다.

입찰 금액이 3,000만 랜드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30% 하청업체 고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지정된 그룹(designated groups)을 하청업체로 선정해야 하는데, 지정된 그룹에는 면제된 영세 기업(EME) 또는 소규모 기업(QSE), EME 또는 QSE로서 흑인 보유 지분이 최소 51% 이상인 기업, EME 또는 QSE로서 흑인 청년 (black people who are youth) 보유 지분이 최소 51% 이상인 기업 등이 있다.

또한 수주 금액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B-BBEE 등급보다 동등하거나 높은 하청업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들 중 하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없는 경우 B-BBEE 등급과 상관없이 하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보유한 EME을 하청업체로 사용할 수 있다.

하청업체는 남아공 재무부(National Treasury)에 서비스나 물품 공급업체로 등록이 된 업체 가운데서 선정해야 한다. 입찰 시 하청업체를 미리 지정해야 하고, 수주 후에는 발주처 동의 없이는 하청업체를 임의로 바꿀 수 없다.

2015년 4월 1일부터 남아공 재무부는 중앙 공급자 데이터베이스(Central Supplier Database)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급자는 전자 조달 포털에 접속하여 중앙 전산 시스템에 공급자로 등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공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전자 조달 포털을 통해 입찰 공고, 입찰 마감 후 참여 업체 이름 및 가격 공고, 수주 확정 후 수주 업체 이름 및 가격 공고 등의 정보 접속이 가능하다.

투자 장벽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은 기업의 흑인지분 비율, 흑인 간부 및 종업원 비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BBBEE는 민간 기업에게는 원칙적으로 준수 의무가 없으나, 남아공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기업에게 BBBEE는 필수 고려조건이 되었다.

특히, 남아공 정부입찰이나 정부로부터 사업면허(통신, 광업 등)를 발급받아야 하는 기업은 반드시 BBBEE 정책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는 자칫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2015년 5월 1일부터 적용중인 개정 BBBEE 모범실천규약은 흑인의 지분소유권에 대한 배점을 기존 20점에서 25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외국계 및 백인계 기업들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2017년 6월 15일 남아공 광물자원부는 흑인소유지분 요건을 기존 26%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3차 광업헌장을 발표하였으나, 동 헌장이 광업활동을 과도히 규제하고 재산권 일부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과 일부 소송 제기 등으로 시행이 유예되었다.

한편 2018년 2월 라마포사 대통령은 개정안 재검토를 지시하였고, 광물자원부는 7개월간 광업기업, 투자자, 광산 노동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8년 9월 27일 관보에 개정된 3차 광업헌장을 고시하였다. 개정 내용에는 흑인지분 30%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광업권 신규 신청 시 흑인 지분 30%을 포함하여야 한다. 3차 광업헌장 시행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광업권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30%로 상향조정 하여야 한다.

이처럼 BBBEE는 남아공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중인 외국기업에게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남아공 시장에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BBBEE는 무시할 수 없는 정책이므로 BBBEE를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자료원: www.dml.gov.za).

외국계 기업의 자금차입 제한

합작투자 기업 중 외국인 지분이 75% 이상인 경우는 남아공 국내은행으로부터의 대출시 대출 가능 금액에 제한이 있으며, 외국계 기업들이 자금차입을 통해 투자 진출할 경우에는 남아공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외환관리

외환관리는 매우 엄격하며 모든 외환거래는 공인딜러만이 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딜러를 통해서만 외환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 국적의 기업이나 거주자는 외환 취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인딜러에게 매각해야 하는 등 외환보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수입대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남아공으로 반입되어야 하나, 자본재 수출 등 특수한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 동 기간을 12개월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남아공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금 지불은 별도의 승인이 필요 없으며, 사업 청산이나 폐업 등에 따른 배당금 지불은 사실 입증 후 송금이 가능하다. 개인은 총액 75만 랜드를 초과하여 해외로 반출할 경우, 남아공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기업의 경우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투자는 20억 랜드, 아프리카 이외의 국가에 대한 투자는 10억 랜드까지 반출이 가능하다.

과실송금 보장제도

해외 투자자가 남아공에 설립한 법인 또는 지사의 영업이익이나 자산매각 차익의 해외송금에는 일부 제한이 있다. '배당금/수익분배금 해외송금 이전 자본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불능력 및 유동성 (solvency & liquidity) 테스트'를 통과한 경우에만 해외송금이 가능하며, 자산매각시는 양도소득세(CGT)의 적용을 받는다. 배당금 또는 수익분배금이 선언되어 이를 남아공 비거주자가 받게 될 경우, 해외송금은 시중 외환거래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적재산권의 해외 이전 또는 양도시는 외환거래 시중 은행의 승인을 득하여야 해외송금이 가능하다(과거에는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

지적재산권 관련 라이센스 비용이나 로열티의 해외송금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남아공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된 라이센스 비용의 해외송금은 남아공 통상산업부(DTI)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경쟁정책

인종차별정책 기간 동안은 경제제재로 인해 외부와의 교역에 제한을 받았으므로 경쟁이 없는 국내시장에서 자연스레 독점기업이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인종차별정책 철폐 이후 외국 기업의 남아공 진출, 흑인기업 출현 등으로 남아공에도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에너지, 물류, 교통, 통신부문은 아직도 사실상 독점시장으로 남아있다.

남아공 경쟁정책위원회가 독과점 기업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노력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산업 전반의 경쟁정도는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2016년 남아공 경쟁위원회는 오랫동안 장강(long steel)과 철 스크랩에 대한 담합 행위를 해온 ArcelorMittal 철강社에 남아공 기업에 대한 역사상 최대 과징금인 15억 랜드(약 1억 달러)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환경 정책

국립환경관리법이 남아공 환경관련 법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동 법은 협력적인 의사결정, 포괄적 환경관리, 환경관리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범규약, '오염유발자 부담'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환경관리법에 규정된 위반사례 적발시, 5백만 랜드 미만의 범칙금 또는/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남아공은 기후변화문제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2015년 파리협약하에서 2015-30년 기간 동안 398-614 메트릭톤 CO2 상당치(MtCO2e)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남아공 정부는 2015년부터 이산화탄소 1톤당 120랜드의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향후 탄소세 도입으로 유발될 전기세·유류세 인상 및 기업부담 등을 고려하여 탄소세 도입을 연기하였으며, 2019년 6월부터 도입예정이다. 2016년 6월에는 탄소상쇄제도를 발표하며 공개의견 수렴을 시작했는데, 발표된 탄소상쇄제도에 따르면 기업들이 탄소 흡수 및 저감 분야에 투자할 경우 탄소세 중 5%~10% 가량이 절감 가능하다(대표적 탄소 흡수 및 저감 분야 : 농업, 대중교통, 임업 및 수거폐기사업 등).

또한 2016년 11월 남아공 재무부는 탄소세 견본 보고서를 통해 탄소세 도입으로 2025년까지 13%~14.5%, 2035년까지 33%의 탄소 배출량 감소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대기질법은 주요 대기오염물질을 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물질을 연간 0.1 메가톤 이상 발생시키는 업체는 환경부 장관에게 대기오염방지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남아공 국영전기회사 Eskom의 발전 중 90%가 화력발전으로, 탄소세 도입 시 남아공 기업들의 운영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아공 에너지부는 환경과 관련하여 향후 석탄발전소 개발을 자제하고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53개 신재생에너지 IPP 프로젝트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 4월 4일 27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발전용량 2,300MW)에 대해 국영전력회사 에스콤(Eskom)과 IPP 사업자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향후 22개 프로젝트 더 추진하는 등 총 102개 신재생에너지 IPP 프로젝트를 운영을 통해 총 17,000MW의 발전용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자료원: 남아공 환경부 (www.environment.gov.za), 남아공 재무부 (www.treasury.gov.za), 남아공 에너지부(www.energy.gov.za)).

전자상거래정책

남아공 전자통신거래법이 전자상거래를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서명에 대한 정부 승인 요구, 기업에 대해 "-.za" 인터넷 도메인 할당시 정부 규제,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 많은 내용을 약관으로 표기하게 하는 등 전자상거래 정책에 대한 정부의 규제사항이 많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남아공 Jacob Zuma 대통령이 2013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에 서명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에 명시된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12개월 이하의 징역(범칙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범칙금)으로 처벌한다.

기타 장벽

투명성 부족, 부패, 범죄

남아공 통상산업부 산하 국가브랜드 위원회(Brand SA)가 2014년 4월 발표한 투자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들의 남아공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3대 요인으로 높은 범죄율, 정부부패, 불안한 치안이 지목된바 있다.

남아공 정부는 공무원들의 부패척결을 위해 법률제정, 사정기관 확충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높은 범죄율 해소에 대다수의 사법기관이 매달리고 있어 부패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아공의 높은 범죄율은 부패나 정치스캔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며 남아공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남아공 경찰은 경험 미숙과 교육 부족으로 인해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복잡한 건설 인허가 절차

남아공 내 건설 인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 각각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각각 상이한 건축 인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인허가 취득절차도 상당히 복잡하여, 건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개정 이민법

2014년 5월 공포된 남아공 개정 이민법으로 남아공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이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방문자 비자로 입국하여 남아공 내에서 취업 비자 또는 학생 비자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였으나, 개정 이민법은 비자 신청인이 남아공 이외의 국가에서 비자 전환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 6월 2일부터 이민 관련 비자 신청 등을 직접 이민국 사무실을 방문하여 접수하지 않고, 비자 업무 대행 아웃소싱 업체인 VFS를 통해서만 접수받는다. VFS는 비자 신청서류 접수 대행업체로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며, 접수 받은 서류를 스캔하여 이민국으로 송부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자문역할은 하지 않는다. 서류가 거절되어 다시 신청하는 경우 신청 시마다 서비스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2014년 개정 이민법은 비자 기간 만료 이전에 출국하지 않고 체류한 경우 불법체류자로 규정하고, 1~30일 불법체류한 경우 12개월간, 24개월 내 2회 불법체류가 적발된 경우 2년간, 30일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 5년간 재입국을 금한다. 또한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남아공 출입국시 여권 이외에 출생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남아공 이민법은 개정을 거듭할수록 강화되고 있어 외국 투자자 또는 이민 사업가의 경우 노동 비자 또는 비즈니스 비자 취득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비즈니스 비자는 통상산업부의 추천서 첨부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통상산업부는 해당 비즈니스 분야가 남아공에 어떠한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여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통상산업부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남아공 이민국에 통보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7년 3월 30일부터 절대기술부족군(critical skills)에 해당하는 대학 졸업자의 경우 취업 유무와 상관없이 학위를 기반으로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게 하였다.

주재원 비자는 2014년 개정을 통해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비자 갱신이 불가하다. 5년 파견근무의 경우 일반 노동비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복귀하여 서류 준비를 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주재원 비자 신청인은 최소 6개월 본사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일반 노동비자 신규 신청이나 연장 시 노동부 추천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노동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 노동부로부터 추천서 발급에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부정적 견해로 발급된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 추천서 발급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출국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남아공은 비자 발급이나 연장이 까다롭기 때문에 비자 발급을 빌미로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남아공 정부는 향후 국경관리청을 신설하여 외국인의 출입국 통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2018년 취임한 라마포사 대통령은 해외투자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이민법 일부 개정을 시사하였고, 2018년 9월 25일 남아공 내무부는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국가들과 비자면제협정체결이 진행 중임을 발표하였다. 아프리카 국적의 방문객들에게는 장기 복수 비자를 발급해주며, 2018년 10월부터 중국과 인도 국적의 여행객들에게만 완화된 이민법 규정을 제한

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한국국적 관광객에게는 미적용). 남아공 내무부는 또한 향후 비자발급 및 출입국 심사의 전산화 도입을 예고하였다.

엄격한 노동법 및 강성 노조

'A Global Employment Guide to Redundancies and Reductions in Force'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남아공의 노동법 수준은 세계 최상으로 프랑스, 영국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노동법은 과거 인종차별정책이 종료된 이후에 제정되어, 투자유치나 소규모 사업자의 입장보다는 근로자 지위 향상과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14'에 따르면 채용 및 해고가 용이한 정도에 있어 남아공은 148국 중에서 147위를 차지할 정도로 까다롭다. 또한 강성 노조로 인하여 임금 인상 요구 등과 관련된 파업 등이 자주 발생한다. 남아공의 노조원의 수는 전체 근로자의 25% 정도에 해당한다. 남아공의 노조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며, 남아공전국노총(COSATU) 출신들이 현 집권당(ANC)과 남아공 공산당의 연립정부에 참여하여 노동정책 수립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외국인 농지 소유 제한

2017년 3월 남아공 농촌개발 및 토지개혁부는 "농지시행령 법안(Regulation of Agricultural Land Bill)"을 공시하였는데, 동 법안에 따르면 동법시행일로부터 외국인의 농지매입이 금지된다. 외국인의 경우 농지장기임대차(30년, 연장 시 최대 50년)만 허용되고, 외국인 농지소유 상한선 또한 설정하였다. 현재 최종법안 상정을 기다리는 상태이다.

레바논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레바논은 지중해에 위치한 조그마한 나라로서 우리나라 경기도 면적과 비슷한 크기(10,452㎢)에 약 450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십여 년 전까지는 우리나라와의 지정학적 원거리 등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레바논 남부지역에 UNIFIL 소속 우리 동명부대가 주둔하면서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의 절반이상이 해발 1천 미터 이상의 산악지형으로 경제성 있는 광물은 거의 없으며, 제조업 또한 전무한 실정으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레바논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1천5백만 재외동포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송금과 관광수입으로 적자를 해소해 나가고 있으나, 최근 인근 시리아 사태의 영향으로 관광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레바논 경제는 지난 1980~1990년대 내전 및 2006년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과의 전쟁 등으로 인한 심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 2009~2010년 기간 동안 연 7~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1년부터 시작된 인근 시리아 사태의 영향으로 대규모 시리아 난민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사회 인프라가 현저히 약화됨에 따라 경제 전반이 위축되면서 2012~2017년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이 1~2%에 머물렀다. 2018년에도 국내 및 지역정세 불안,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공공부채, 열악한 인프라, 비즈니스 환경의 지속적인 위축 등 불리한 요소가 여전해 실질 경제 성장률은 2%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레바논 전후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레바논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다. 2007년 1월 개최된 Paris III 원조국 회의 개최 이후, 11년 만인 2018년

4월 파리에서 프랑스 및 레바논 공동 주관으로 레바논 경제재건 국제회의(CEDRE)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레바논 Hariri 총리는 연설을 통해 △레바논에 대한 공공과 민간투자의 증대, △재정안정을 통한 대외신인도 확보, △구조적 개혁의 지속 추진, △산업 다변화를 위한 전략 입안의 4개 중점 분야를 통해 정국의 안정과 성장 추구 및 고용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레바논은 2011년 정부의 숙원 사업인 전력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5년에 걸쳐 12억불을 투자하는 발전소 건립 계획을 승인하였다. 2013년에는 전력선(270MW)이 도입되어 전력 공급문제가 다소 해소되고 있으나, 만성적인 전력 부족과 단전 현상은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다.

레바논 정부는 국토 연안의 석유 및 가스 탐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노르웨이 PSG사의 지질 탐사 및 2010년 미국 ION사의 탄성파 측정 등에 따르면 연안에 석유 660만 배럴, 가스 850만 큐빅미터가 매장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레바논 정부는 석유 및 가스 탐사 업체 선정을 위해 2013년 4월에 사전적격심사(PQ)에서 12 operators 및 34 non operating 업체를 발표하였다. 이 중에 미국의 ExxonMobil 및 Chevron, 우리나라의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포함된바 있다. 이후 레바논 정부는 2014년에 입찰사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법령 미비로 입찰 진행이 중단된 채 4년여 기간이 경과되었다. 2017년에는 첫 번째 내각회의(1.4)에서 석유·가스 개발 선결과제였던 2개 행정령(석유개발규정, 자원탐사 및 생산규정)을 통과시켰다. 2017년 5월에는 사전적격심사(PQ)에 통과한 51개 업체(우리나라 참여 업체 없음)를 발표하였으며, 입찰 기한을 2017년 9월 15일에서 2017년 10월 12일로 연장하면서 관련 업체의 참여를 기대하여왔다.

레바논 연안 10개 광구 가운데 우선 5개(1,4,8,9,10)광구 개발이 추진되었는데, 이 중 3개 광구(8,9,10)는 이스라엘과 해안 영역 분쟁중이다. 레바논 정부는 2017년 10월 12일 입찰 마감 후 심사를 거쳐, 3개의 국제석유회사들로 구성된 콘소시움에 대해 자국 인근 연안 10개의 석유·가스 광구 중 북쪽의 4광구, 남부 레바논의 9광구에 대한 개발 사업권을 승인하면서(12월 14일) 자국도 석유·

가스 생산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기대감을 표명하고, 레바논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이 개선되기를 희망하였다. 레바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시추는 2019년도에 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탐사는 적어도 5~6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석유·가스 개발은 생산된 석유가스의 상업적 이윤 가능성, 국제 유가의 변동 가능성, 이스라엘과의 분쟁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레바논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레바논 간에 특별한 현안사항으로서 당장 문제시 되는 것은 없으나, 잠재적으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오고 있는 무역역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017년 우리나라는 레바논에 대해 자동차, 전자제품, 휴대폰 등 연간 1억 8천9백만 달러를 수출하였으나, 수입은 4천2백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입품목 대부분은 동과 알루미늄 스크랩으로 기타 제품의 수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기에 레바논 정부는 이 문제를 거론 할 수 있다. 다만, 레바논의 무역역조가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레바논의 수출 상품이 농수산품과 일부 제조업 제품(보석가공 등)이기는 하나 그 품목 구성에 한계가 있어 급박하게 풀어야 할 시급한 현안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와 레바논은 2005년 1월 무역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6년 5월에는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등 무역교류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양국 정부대표단의 2009년 1차 협상 개최 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1차 협상 결과 레바논측은 금융정보교환이 어려워 부정적인 입장이며, 우리측(기획재정부) 또한 레바논이 저세율 국가이고, 특정 지역 투자시 모든 법인세가 면제되어 조세회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레바논은 내전발발 이전에는 우리나라 상사, 은행, 항공사 지점 등이 대거 진출했었으나 1975~1990년 기간 동안 내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사 및 사무소가 철수한 이후 한·레바논 간 기업진출 및 투자협력 관계가 다소 침체된 실정이며 대부분 인근 UAE나 요르단 주재 아국 지상사에서 레바논을 관할하고 있다.

레바논 내전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은 1994년 현대건설이 송전시설 복구공사(8,000만 달러), 극동건설이 상수도시설 복구공사(1,200만 달러)를 수주, 공사를 완료하여 철수한 사례가 있다. 또한 2005년 상반기에는 LG전자 지점 개설, 2013년에 KT&G가 사무소 개설후 2016년 2월 철수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지점을 개설하였다. 2006년 1월초에는 한국전력이 레바논 전력청의 발전소운영에 관한 국제입찰에 낙찰되어 5년간 레바논 전력청과 계약, 현지 법인(KEPCO Lebanon Sarl)을 설치하여 2011년 2월까지 디아르 아마르(북부) 및 자라니 발전소(남부) 두 곳을 운영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레바논은 내전과 전쟁 등을 겪으면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으나, 레바논은 2009년 총선 실시 및 신정부 구성 등을 통해 경제 개혁을 통한 성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고조되어 2010년도에 7%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2011년부터 시작된 인근 시리아 사태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주춤하여 2013년 1.3%, 2014년 2.0%, 2015년 1.5%, 2016년 1%, 2017년 1.2%에 머물렀고, 2018년에도 2% 이내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레바논은 2018년 5월 총선을 실시하면서 신정부가 구성되는 등 국내정세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공항 확장, 전력, 도로 등 경제 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가 이미 시행되거나 추진 예정에 있다.

한편 레바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부가 를 이란, 헤즈볼라 및 러시아의 본격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1년 내전 발발이후 상실한 영토에 대해 2018년 10월 현재 시리아 북부 일부 및 북동부를 제외하고 상당부분 회복하면서 내전이 끝을 향해가는 시점에 있다. 향후 지역정세 및 정국이 안정되면 전쟁으로 파괴된 주요 인프라의 복구 등 전후 재건 복구 프로젝트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2007년 베이루트 무역관을 폐쇄했던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18년 8월 베이루트 소재 주레바논대사관내에 상주 직

원을 파견하였다. 베이루트는 레바논의 대표적 항구도시이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잇는 지중해의 금융·통상 요충지인바, 향후 베이루트에 무역관이 재개설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전시회 참가, 레바논 경제사절단 및 바이어 방한 초청 등을 통해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향후 시리아 내전 복구를 위해 도로, 교통망, 학교, 병원, 발전·전력, 정보통신 등 제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발주할 것에 대비하여 각종 정보 수집, 자료 제작 및 배포, 상담회 및 전시회 참가 안내 등 우리 기업의 수주 및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1) 관세제도

레바논은 2001년 5월 24일 발효한 신관세법에 따라 통관에 따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종전 주한레바논대사관의 인증 및 상공회의소 인증절차가 폐지되었다.

관세청이 수입품에 대해 'Under Value'로 간주할 경우 일방적으로 적용한 벌금부과도 자체 위원회가 아닌 민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수입업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품목분류체계는 HS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관세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 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개발한 통관과정 자동화 프로그램인 ASYCUDA(Automatic System for Customs Data) 시스템을 설치, 운영 중이다.

레바논 정부의 무역정책은 관세율 인하를 통해 무역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레바논의 관세는 수입품목에 따라 5%이내에서 80% 이상 등 다양하게 관세율을 적용하는데, 전자제품의 경우 평균 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치품에 대해서는 최고 100%까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레바논-시리아 양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관세율을 매년 낮춰, 2005년부터는 무관세 교역을 하고 있다. 2017년 관세 징수액은 14.33억 미국달러로, 정부 총 수입액(82.04억 미국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47% 이다. 그러나 관세제도보다는 세관의 절차가 복잡하고 부패도가 높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관세율표

관세율 확인을 위해서는 레바논 관세청 홈페이지를 방문, HS Code를 입력하고 확인하면 된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관세율 이외에도 무역통계, 무역관련 규정, 관세법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 레바논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v.lb
- 수록 정보: 관세율, 양자 및 다자간 협정, 무역통계 등

통관절차상의 장벽

(1) 통관절차

가. 수출절차

레바논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출 절차 외에 정부의 특별한 규제는 없는 편이다. 경제무역부, 산업부 및 농업부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예컨대 밀, 올리브유, 원피, 견사, 누에고치, 씨감자, 솔씨 등 20여개)에 대해서는 수출승인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품목의 경우 수출에 대한 규제가 없다.

수출절차도 비교적 간단하여 외국 수입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외화입금 혹은 L/C를 수취하며, 수출업자는 수출물품을 확보, 통관 및 선적, 운송의 과정을 거치면 수출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외환거래 및 보유가 자유롭기 때문에 구태여 수출 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매각할 필요가 없다.

나. 수입절차

경제무역부로부터 무역업허가를 받은 수입자는 외국의 수출자와 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High Customs Council 혹은 관련부처의 수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통상 수입승인은 신청하는 대로 발급되는 것이 관례이나, 이스라엘 보이코트 대상 품목이거나 석유나 석유부산물처럼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과 농산물 등은 예외이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외환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통상 거래은행에 개설된 수입자의 외화 구좌로 대금을 결제하거나 혹은 거래은행으로부터 Credit Line을 받아 한도 내에서 수입을 할 수 있는데, 통상 후자의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다. Credit Line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이 신용도와 담보력을 평가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베이루트항 개발청은 통관시 관세와 인지세 외에 소액의 통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산정은 BDV(Brussels Definition of Value)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란산 카페트, 중고 자동차, 중고서적에 대해서만 최소 관세액을 정하고 있고, 중고차량의 경우 차종과 차령에 관계없이 차량 가격이 2천만 레바논파운드 이하(13,333불)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대당 500만 레바논파운드(3,333달러)의 관세와 10%의 부가세를 부과한다. 차량 가격이 2천만 레바논파운드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500만 레바논파운드의 관세와 10%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차량가격에서 2천만 레바논파운드를 초과하는 금액의 5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있다.

승인(면허)대상 품목은 수입면허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수입을 조절하고 있는데 고등관세 위원회(High Customs Council)나 관련부처에 위임되어 있다.

수입금지 품목은 마약류, 무기, 폭약류, 8년 이상된 중고차량, 공중도덕을 해치는 물건, 공중보건을 해치는 물건과 일부 농산물 등이다. 농산물의 경우 감자, 양파, 마늘처럼 계절 면허가 필요한 품목과 올리브유, 솔씨처럼 연중 면허가 필요한 품목, 그리고 토마토처럼 수입이 완전히 금지된 품목으로 나누어진다. 신용장 개설 혹은 수입 심사시 아랍보이코트 조항이 반드시 포함

되어있기는 하나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 타결시 아랍보이코트 조항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이나 식료품 수입시에는 반드시 라벨규정을 지키도록 되어있는데 제품의 제조일 및 유효기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며 준수치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된다. 또한 현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사품이나 이미 보호 중인 라벨과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담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독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담배 조차도 밀수에 의해 독점적인 지위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법령 제31호에 의해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제도가 있으며 세관당국 혹은 이해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조사 및 적용이 가능하긴 하나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국제계약은 극히 자유로운 편이며, 수입자들은 C&F, CIF, FOB 중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계약하는데 대금지불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는 편이나 신용장 베이스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적당량의 샘플이나 홍보용 물건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나, 이를 초과할 경우 은행 보증을 요구하거나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통관시 선적서류와 인보이스 원본(총 6부 소요)을 제출해야 하며 기타 원산지 증명서, 패킹 리스트 등은 여타 국과 동일하다.

한편, Under Value 혹은 Over Value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품 가격 산정 시 로컬 업체들을 자문위원으로 선정, 그들로부터 인보이스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관세부과를 둘러싼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관세청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의적인 Under Value 판정사례는 줄어들었고, 국내 수출업체들은 수출시 상업송장의 상공회의소 확인 및 주한 레바논 대사관 공증절차도 없애는 한편, 통관에 따른 불편 해소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수입규제

(1) 규제제도

레바논은 자유무역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거의 없으며, WTO 가입에 대비하여 국내 무역법규를 WTO 요구 수준에 부합하게 제정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유로-지중해 파트너쉽(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협약 체결로 EU와의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레바논은 아랍연맹 회원국으로서 아랍 국가들과 쌍무 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일부 동유럽국가, 터키, EU회원국과도 쌍무협정을 맺고 있다. 전후 가장 특기할 만한 쌍무협정은 시리아와 맺은 형제 관계 협정으로서 동 협정에 의거, 양국간 무역은 준국내거래로 간주되어 상품 및 인적교류가 자유롭다.

수입과 마찬가지로 수출에 대해서도 규제가 없는 편이며 다만,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면허제도(Export License)를 채택하고 있다.

○ 수입 면허 필요 품목

- 마약류
- 생산된 지 8년 이상이 지난 자동차
- 트럭이나 픽업, 밴, 버스 등 디젤엔진 차량의 경우 5년 이상된 차량
- 공중보건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품목 등

○ 수출 면허 필요 품목

- 대외무역성 승인품목 : 밀, 밀 부산물, 올리브유, 콘크리트, 부탄가스, 하이드로카본, 액화가스통
- 공업성 승인품목 : 가공 안 된 원피, 가공 안 된 실크, 종이, 카드보드, 누에고치, 타르
- 농업성 승인품목 : 씨감자, 계란, 솔씨(Pine Seeds)

한편, 레바논은 현지 업체들의 수출시 어떠한 보조금도 지원하지 않으며, 수출촉진을 위한 제도가 없다.

(2) 수입규제 동향

현재 규정상 수입규제 및 차별적 제한조치는 없다. 다만 공공구매 입찰 등의 경우 보통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나 혹은 관련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프로젝트 자체의 설계나 관련 소요물품의 스펙을 정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 경우 담당자가 특정기업과 결탁하여 담합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스라엘 보이코트 조항이 있어서 자국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이스라엘 기업이나 국가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선박의 경우도 이스라엘 항구에서 기항한 경우 레바논으로 입항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규제나 금지품목 이외에, 특별히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는 없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통관시 선적서류와 인보이스 원본(총 6부 소요)을 제출해야 하며 기타 원산지 증명서, 패킹 리스트 등은 여타국과 동일하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 관련

의약품이나 식료품 수입시는 반드시 라벨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제품의 제조일 및 유효기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준수치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되며 현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사품이나 이미 보호 중인 라벨과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의료 기기의 경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 수입을 위해 공중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중보건부는 전문가(약학자와 의사 등)로 하여금 수입 기기를 조사,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가정용 전자제품, 배터리, 완구, 세라믹 대리석, 화장품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하다.

환경관련 규제

레바논 정부는 2004년부터 디젤유를 사용하는 10~15인승 마이크로버스와 2톤 이하의 소형트럭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와 사륜구동 차량의 수입도 금지된다.

또한, 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디젤유의 질을 높이고, 휘발유도 유연에서 무연으로 바꾸어 나가는 한편, 가솔린과 디젤 차량을 천연가스 차량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어 향후 차량 수입에서 환경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경제무역부 산하 지적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전담기관(IIPO: Intellectual and Industrial Property Office)은 빈약한 시설과 근무인력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찾아내거나 시정할 능력이 뒤떨어지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에 이르기까지는 수년이 걸려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특히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보장받기 어려워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외국 대사관, 국제법 전문가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외치고 있으나 경제무역부에서는 거의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인 송사로 번질 경우에만 마지못해 형식적인 리포트를 제출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려고 한다. 컴퓨터, 오디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는 물론 TV 프로그램에서 조차도 지적재산권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미국의 국제지식재산권 연맹IIPA(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은 2013년「Special 301보고서」에서 레바논 정부가 계속적으로 국제저작권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레바논을「301감시대상국명단」계속 남겨둘 것을 권고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레바논 내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유통으로 인해 미국의 소프트웨어 생산, 판매 기업들의 손실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바논 정부가 온라인을 비롯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 장치 마련과 해적판매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레바논은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점유율이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70%를 상회하고 있어 중동, 북아프리카 MENA지역 17개국가중 상위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적판 서적은 인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으로 수출되는 등 불법적인 CD 음반, 소프트웨어 및 게임, 서적 복제 및 유통으로 인한 미국 업계의 총 손실은 2011년 52백만 달러에서 2013년부터 2015년에는 매년 각각 65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레바논에서의 이러한 문제는 법률에 있기 보다는 법의 적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999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권 보호법에 따르면 위반행위 적발시 벌금은 5백만 내지 5천만 레바논파운드의 벌금을 물거나, 심한 경우 3개월에서 3년까지 구속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법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지식재산권 침해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IIPR) 관련 법적 근거

- 1924년 1월 17일에 제정된 Decree No.2385: 상표권, 저작권, 산업 디자인권을 규정.

- 1946년 1월 26일, 칙령(Decree)에서 법제화(registration)된 후 198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개정
- 지식재산권은 레바논 형사법(제701 및 제721조)에 의해서도 보호 받게 됨.
- 국제적으로 레바논은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에 관한 베른협약, 파리협약 및 마드리드 협약에 가입되어 있음.
- 독일회사의 산업재산권은 1955년 3월 8일 체결한 양국 간 협약에 의해 보호됨.
- 1960년 1월 25일 경제무역부 장관은 칙령 93/57호를 통해 외국 상표의 라이센스 사용에 대한 지침을 발표
- 1999년 4월 3일 법령 75/99호로 문학작품 및 예술작품에 대한 보호법 제정
- 2000년 8월 7일 법령 240/2000호로 특허법 시행

전술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IIPO가 보호, 감독기능을 갖고 있다. 상표권(trademark) 및 의장권(patent right)을 보호받기 원하는 외국기업은 상표권과 의장권을 IIPO에 등록하고 공식 간행물에 게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레바논은 영·미 법체계와 달리 프랑스 방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IIPO는 신청서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으며, 등록했다고 해도 처음 5년간은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투자 장벽

투자매력도

레바논은 부동산 및 일부 금융부문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로컬 원자재 의무 사용(Localization) 강

요라든지 과실송금 규제, 수출의무 비율 지정 등 규제 내지 차별적인 조항이 없다.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해서 회사 설립에 제한을 가하지도 않는다.

다만 토지소유에 대해서는 구입은 가능하나 소유면적에 제한이 있다. 외국인의 재산 취득은 2001년 4월 3일 개정된 법 제296호에 따른다. 이 개정법은 재산권 취득에 있어 아랍인과 외국 국적 소유자사이에 차별을 폐지하였다. 부동산 등록세를 내국인 6%, 외국인 16%에서 내·외국인 모두 5%로 낮췄다.

이 법은 허가 없이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 규모를 3,000㎡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이 3,000㎡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정부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들은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레바논 전국토의 3% 미만을 소유할 수 있으나, 전 국토의 3% 이상 그리고 베이루트시의 10% 이상 초과하여 소유할 수는 없다.

레바논은 중동국가 중에서 교육수준이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기 때문에 고급, 숙련 노동자도 풍부하고 대학 졸업자는 보통 영어, 불어, 아랍어 3개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한다.

레바논은 금융, 서비스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은행도 비밀 보장이 잘 되고 시스템이 발달되어 시리아 무역상들 다수가 레바논에서 L/C 개설을 하고 있다.

레바논 정부의 누증되고 있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2002년 2월부터 신설한 부가가치세를 통해 세율이 인상되는 추세에 있고, 행정지연(관료주의), 공무원 부패가 여전한 상황이다. 또한 인프라 시설(전기, 상수도 공급, 인터넷 등)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조업 투자시 간접비용이 많이 든다.

국내정세가 불안하고 시리아 등 주변 정세의 악화로 투자에 필요한 '안전도(Stability)'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소비 인구가 약 450만 명에 불과하여 현지 시장을 겨냥한 제조업 투자 대상 지역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외국인 투자도 제조업보다는 부동산, 관광·서비스 및 유통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을 뿐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투자업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외국인 투자유치가 중요함을 인식, 잠재적인 해외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one-stop service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레바논은 내수시장 규모, 정치적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체로 잠재적인 투자가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정책개발, 승인 및 사후관리 책임은 대부분 투자청(IDAL)에 일임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청을 통하여 대부분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레바논은 외국인 투자한도, 투자대상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등 내·외국인 투자를 차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기업 설립 조항은 상법에 규정한 4가지 기업 형태에 포함되어 있으며, 외국인 지사 설치에 대해서는 상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외국인의 투자보장을 위한 조치로 '전쟁·내란·몰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NIIG(National Institute for Investment Guarantee)가 설립되었으며 또한, '외화송금 및 전쟁 리스크'로부터 보호해주는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에 가입되어 건당 최고 5,000만 달러까지 보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무엇보다도 열악한 인프라 기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한송전 및 단전이 잦은 편이며 도로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이 중 80% 이상이 왕복 2차선인데다 도로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면 및 포장 상태가 열악한 편이다.

레바논으로의 투자 진출에는 정치적 불안정을 고려해야 한다. 내전 재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지만 각 정파, 종파 간 대립구조와 2005년 2월의 하리리 전총리 암살, 2006년 7~8월 중 발발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쟁 등으로 인해 경제 침체가 있었다. 2009년 이후에는 평화적 총선개최 및 신정부 구성으로 외국인의 직접투자액이 2010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근 시리아 내전, 2014년 5월 이래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행정부 및 의회 기능 약화, 치안불안 지속 등으로 정세 불안과 경제적 하강 국면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레바논은 주변국가에 비해 고급·숙련노동자가 많은 편이긴 하나 일인당 명목 국민소득이 2017년 말 기준 12,450달러에 이르는 등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현지 기업들은 시리아를 비롯한 이집트, 아프리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으나,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많아 외국인 회사가 이들을 채용하는 데는 다소 위험이 따른다.

레바논은 제조(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중간재 및 기계류 수입은 4%의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기업 법인세도 10년간 면제,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관세유예 등의 제조업 우대조치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요소가격은 원칙적으로 경쟁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료주의, 행정 편의주의, 통관 지연 및 급행료 등의 부패적 관행이 상존하고 있어서 간접비용이 적지 않다. 더욱이 부지(토지)가격과 생산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수준이 인접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주변산업이 발달되지 않아 투자자의 부담이 큰 것이 문제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담요공장을 건설할 때 염색공정은 외주에 의존할 수 있으나, 레바논의 경우 염색산업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가 염색공장까지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제품 판매시 외국인 투자사도 국내업체와 동일한 법적 대우를 받으며, 외국인 투자법인에게 가하는 특별한 규제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수입장벽이 매우 낮고 또한, 인구 450만 명의 작은 로컬 시장을 놓고 외국산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외국기업 투자동향

(1) 레바논 투자청 외국인 직접투자액 통계

WORLD BANK 발표에 따르면 레바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2006~2010년 기간 동안 매년 증가하여 2010년에 49억 달러였으나, 2011년에는 전년대비 14억 달러 감소한 35억불이었다. 레바논 투자청(IDAL)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액은 2012년 37.9억 달러, 2013년 28.3억 달러, 2014년 31억 달러이며, 2015년에는 23.4억 달러로 지역정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23%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6년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9%가 증가한 25.6억 달러, 2017년에는 26.2억 달러에 이르렀다.

우리기업 투자동향

레바논은 적은 인구와 협소한 시장, 발달이 부진한 제조업 등의 영향으로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진출 신고건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1994년 현대건설이 송전시설 복구공사(8,000만 달러), 극동건설이 상수도 시설 복구공사(1,200만 달러)를 수주 및 공사완료 후 철수한 이래 현지 지상사는 전무한 실정이었으나, 2005년 상반기 LG전자 지점 개설, 2013년 KT&G가 사무소 개설(2016년 2월 철수)하였고, 2014년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지점을 개설하였다. 또한 지난 2006년 1월~2011년 2월까지 5년간 한국전력이 레바논 북부 및 남부 발전소를 운영한 바 있다.

(1) 한국과의 투자관계

레바논 내전 기간 중 아국업계의 철수 이후 한·레바논간 기업 진출 및 투자 협력 관계가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에 양국 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2005년 1월 27일에 한·레바논 무역경제협력협정(Agreement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양국 간 최초로 이루어지는 경제 협정으로서 향후 양국 간의 투자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6년 5월 5일에는 한·레바논 투자보장협정(Agreement on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을 체결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바 있다.

(2) 對레바논 투자진출전략

한국 기업으로서는 레바논의 유망 분야를 선정, 이라크, 시리아, 아프리카 등 인근 시장을 포함한 거점 시장으로 진출을 위해 현지 투자를 검토해 볼 만하다.

다만, 주변 시리아 사태의 악화 및 인건비가 높고 발전용량과 전력공급의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전력 인프라가 미비되어 있으며, 인터넷 환경도 아직은 전화다이얼업에 의한 송수신 속도에 머무는 등 경제 활동 인프라 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으므로, 레바논 진출시 여러 사항을 면밀히 고려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망된다.

또한, 레바논 시장이 인구가 450만 정도로 크지 않고 국토 면적도 약 1만㎢에 불과하여 시장이 협소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 현상에 따라 저가의 중국 산제품 등이 범람하고 있는 시장여건을 감안할 때, 현지 투자는 일반적인 제조업분야의 투자보다는 기술 집약적인 소비재 분야에서의 투자가 보다 유망하다.

레바논 투자청(IDAL)은 투자법을 개정하고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노력 중이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력공급 사정, 인건비 등 제조 인프라가 인근 국가에 비해 열악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레바논 투자청은 one-stop service를 실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는 www.idal.com.lb 이다.

주요 투자법 내용

(1) 투자 인센티브

레바논의 투자 인센티브는 레바논 투자청(IDAL)에 의해 부여된다. 레바논은 3개 지역으로 국토를 구분하여 각각 인센티브를 달리하고 있다.

※ Category

A Category(지중해 연안지역)
- 종업원 노동허가(레바논 종업원 2인당 외국인 1인)
- 2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B Category(내륙지역)
- 종업원 노동허가(레바논 종업원 2인당 외국인 1인)
- 2년간 소득세 면제
- 초기 5년간 법인소득세 및 배당세 50% 감면

C Category(남부 및 북부 산악지역)
- 종업원 노동허가(레바논 종업원 2인당 외국인 1인)
- 2년간 소득세 면제
- 초기 10년간 법인소득세 및 배당세 50% 감면

한편, 레바논 정부(IDAL)가 지정하는 특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시 '패키지 딜 콘트랙트'(Package Deal Contract)라고 하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다. 이는 레바논 투자청(IDAL) 이사회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한 뒤 인센티브 제공여부를 결정하며 인센티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기 10년간 법인소득세 및 배당세 면제

○ 레바논 종업원 2인당 외국인 1인에 대한 노동허가

○ 노동허가 및 체류허가 소요비용의 50% 감면

○ 패키지 딜 콘트랙트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 시 이사회 이사진의 레바논 자국인 지명 의무조항면제

○ 프로젝트를 위해 수반되는 건축 관련 인가수수료의 50% 감면

○ 부동산 등기소 토지등기 수수료, 임대차 계약관련 등록비 등의 면제

○ Package Deal Contract 적용대상 분야

- 제조업, IT분야, 농업, 기술, 통신, 관광업, 언론출판 등

(2) 투자관련 정부기관

레바논은 특별법인 투자법 제360호(2001년 12월)에 따라 총리직속 독립정부기관으로서 IDAL(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of Lebanon)을 설립하고, 1995년에 Decree 5887호(1994년 10월 11일)에 의해 설립된 기존의 투자유치담당기구의 조직과 인력을 흡수하여 2002년 7월부터 공식 출범하였다.

해외투자자들에게 레바논이 갖추고 있는 투자상의 이점을 적극 홍보하고 가급적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투자 절차를 간소화, one-stop service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레바논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기업은 IDAL(투자청)을 접촉, 투자절차 및 투자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출형태별 절차

외국인의 레바논 내 사업 진출방법은 현지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Offshore Co.(제3국 영업만 허용)의 4가지 형태가 있다. 진출형태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현지법인 설립

가. 투자허용기준 및 업무범위

무역, 제조업, 금융업 분야로의 진출과 지사 설립이 가능하며, 현지 등록시에는 영업의 형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등록은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지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고 지연이 될 경우 수수료 100,000 레바논파운드(약 67달러)를 포함한 벌과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영업활동 개시 이전에 개인은 레바논정부 General Security와 노동부를 통해 체류허가를 얻어야 한다.

나. 투자절차 및 구비서류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현지 자회사 설립을 통한 투자는 레바논 투자법 LAW NO. 제360호(2001년 8월 16일) 및 상법의 규정에 적용되며 내국 법인으로 취급된다.

레바논의 상법상 등록(Register of Commerce)은 개인, 회사, Holding Company, Offshore Company의 등록과 소유권(Proprietorship)의 등록으로 구분된다.

법무부 산하 Register of Commerce에 등록을 해야 하며, 지역별로 별도의 등록기관이 있다(예: 베이루트지역 등록처 전화번호: 961-1- 427793).

신청인은 소정의 신고서 2매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서류로 회사정관을 요약(일정한 양식은 없음),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필수기재사항은 회사 소유주, 상호, 회사형태, 주사무소 및 지사의 위치, 영업목적, 주사무소 위치 또는 에이전트 소재지, 주소, 자본금, 설립연도 및 영업기간 등이다.

등록 3개월 후에는 사회보장기금 납부 증명을 법무부 산하 Register of Commerce에 제출, 허가를 득해야 한다.

레바논 국적인 사람은 자기 회사 등록이 가능하나 회사는 통상 법에 따라 변호사를 등재해야 하므로 변호사가 수속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다. 세금관련 사항

현지법인과 지사의 경우 영업소득세 15%, 부가가치세 11% 등 각종 세금 납부 의무가 있으며 연락사무소의 경우 소득세 의무가 없다.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원의 소득 수준을 토대로 고용주와 고용원의 분담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라. 기업 활동 법적 의무사항

영업에 따른 영업 소득세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현지인 고용 시 고용주세 납부가 주된 의무이다. 기타 의무사항은 법률에 따르며 외국기업이라 하여 별도로 정한 특별한 의무사항은 없다.

마. 기타 모회사로의 자금 송금

레바논은 개인구좌 비밀보호가 철저하며 개인의 외환송금이 자유롭고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모회사로 자금송금에는 제한이 없으며, 회사자산의 경우도 이자, 배당의 송금에는 제한이 없다.

(2) 지사(Branch) 설립

가. 지사설치 절차

외국회사가 시장관리를 위해 등록할 수 있는 형태는 지사 설립과 연락 사무소(대표부) 설립의 2가지로 대별 할 수 있다. 지사의 경우는 제조, 무역, 금융 등 관련 모든 법적 행동이 가능하며, 영업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고, 경제통상부(Ministry of Trade)에 등록을 요한다.

나. 등록 구비서류

경제무역부 무역국(Trade Department)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 지사장 또는 에이전트가 서명 후 지사장 또는 에이전트가 직접 제출하거나 혹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제출 가능
- 외국회사 등록 증명서 : 진출 모기업(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내 모기업)이 해당 국가 내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국내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국가의 레바논대사관(주한레바논대사관)의 영사 확인 및 레바논 외무부 공증이 된 서류
  - 외국회사 등록 증명서를 아랍어로 번역하여 번역공증 필요
- 모기업(한국 회사)의 이사회 결의서류

• 지시설치 결의를 증명하는 이사회 회의록 등 증빙을 요구하나, 통상은 모기업의 지사장 임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주한 레바논대사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

• 이사회 결의 서류를 아랍어로 번역하여 번역공증 필요

- 법적 위임장(Power of Attorney): 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할 경우 혹은 레바논내에 소재하는 모기업이라도 법적 대리인을 통해 수속을 진행할 경우, 대리인이 법적으로 대리권을 지님을 입증하는 공증 서류

경제무역부 무역국의 등록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7일이다. 신청서가 구비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등록수수료를 재무부에 제출하고 영수증(blue copy)을 받아 이를 경제무역부에 제출한다. 신설 기업은 레바논 관보에 기업 신설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므로, 관보 게재비를 지불(라인당 5,000LL, 약 3.33달러)해야 하며 경제무역부는 관보에 게재하고 공고 사본을 10일 이내에 해당 기업에 제공한다.

- 등록비: 1,200달러

다. 사업자 등록(TRADE REGISTER) 확정

경제무역부의 관보 공고 이후 Trade Register와 경제무역부에 관보 공고 실물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음으로써,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3일 이후 지사 설립이 완료된다.

- 등록비: 600달러

라. 소득세: 순수익의 15% 세금 납부

마. 국립투자보장회사(NIGC): 신규 투자 촉진 업무

바. 투자보장협정 체결

레바논은 25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2006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사. 사유재산 보호

레바논은 헌법에 따라 사유재산이 보호되며 국유화는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도 레바논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에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레바논의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아. 세금관련 사항

현지법인과 지사의 경우, 영업소득세 15%, 부가가치세 11% 등 각종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고용원의 소득 수준을 토대로 고용주와 고용원의 분담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자. 기업 활동 법적 의무사항

영업에 따른 영업 소득세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현지인 고용시 고용주세 납부가 주된 의무이다. 기타 의무사항은 법률에 따르며 외국기업이라 하여 별도로 정한 특별한 의무사항은 없다.

차. 영업 및 광고판촉 활동 가능여부 및 업무범위

지사는 영업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영업 및 광고 판촉 등 모든 활동이 가능하며 영업에 대한 제한이 없다.

(3)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

외국 회사가 레바논 내에서 실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본사와의 업무연락, 시장조사, 홍보 등 비영업적 활동에 국한된 활동만을 수행할 경우,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여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경제통상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행위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영업에 따른 세금 납부의 의무는 없다. 대기업의 해외 주재 사무소의 경우 현지법인을 제외하고는 연락사무소로 등록함으로써 레바논의 제세금 납부 문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현지에 별도 에이전트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이므로, 모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단순 연락사무소 형태로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다.

가. 연락 사무소 설치 절차

연락사무소 설치에는 총 2,000달러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

- 등록비(Flat Fee For Registration) : 1,200불
- 관보 게재 : 약 200달러
- 지방법원 등록비(Mutual Fund of Magistrate) : 600달러

통상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회사등록 및 체류허가 갱신 등은 변호사를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소요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최저 200달러에서 1,000달러 가량이다. 레바논은 법과대학 졸업 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법률사무소와 같이 흔하며 각종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나. 세금 관련 사항

현지법인과 지사와 경우, 영업소득세 15%, 부가가치세 11% 등 각종 세금 납부 의무가 있으며,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원의 소득 수준을 토대로 고용주와 고용원의 분담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 기업 활동 법적 의무사항

영업에 따른 영업 소득세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현지인 고용시 고

용주세 납부가 주된 의무이다. 기타 의무사항은 법률에 따르며 외국기업이라 하여 별도로 정한 특별한 의무사항은 없다.

(4) 타외국 회사와 합작 투자 시 법인 및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

타 외국회사와의 합작 투자 시 요령은 상기 언급한 1번과 2번의 요령과 동일하나, 통상 현지 공장설립의 경우가 아니면 법인설립보다는 연락사무소 형태가 용이하다.

(5) 비자 관련 사항

현지법인 또는 지사 등 개설차 입국하는 경우 주한 레바논 대사관으로부터 혹은 공항 이민국 창구에서 3개월의 단기비자 취득이 가능하며, 가족의 경우 레바논내에서 노동허가를 취득한 근무자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레바논 General Security에 제출함으로써 추후 1년 유효기간의 비자로 갱신이 가능하다. 단, 현지 주재 지상사 또는 업체 장기 근무를 위해 부임하는 경우에는 2013년도 출입국 관련규정 변경에 따라 입국전 사전에 주한 레바논 대사관으로부터 장기 워킹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입국 후 노동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 목적을 신고함으로써, 처음에 발부 받은 통상 2개월 유효기간의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을 2개월 연장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중 체류허가를 획득하고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기체류 시(법인 및 해외사무소 동일)에는 현지 노동허가를 우선 취득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1년 유효기간의 체류허가를 매년 갱신 받을 수 있다.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권 유효기간이 18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모회사의 대표부 임명장(통상 한국기업의 지사 발령장)을 주한 레바논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 받고, 아랍어 번역본을 레바논 외무부에서 공증(CERTIFIED) 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외 지사 설치 근거서류 사본, 위임장 사본, 레바논 주택은행의 예치 보증금(1,000달러) 증서 등을 구비 제출해야 한다.

- 노동허가 취득 최소 소요기간 : 9일
- 노동허가 수수료: 1,000달러(LL 1,500,000)

〈체류허가 취득 절차〉
- 여권 유효기간이 18개월 이상이 남은 여권 사본 3매
- 노동허가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모회사의 대표부 설치 증빙서류
- 체류허가 취득 최소 소요기간 : 7일
- 소요비용: 1,200.00달러(LL 1,800,000)

금융 환경

금융업

레바논의 금융역사는 19세기 초 베이루트에서 외환거래소가 처음 생겨나면서부터였다. 지리적 요충지, 대외개방적 국민성 그리고 금융비밀(Banking Secrecy)을 철저히 보장 해주는 법령(1956년)에 힘입은 데다, 특히 1960년대 초반 아랍 오일머니의 대거 유입으로 내전 발발 이전인 1975년까지 중동 최대의 금융센터로 명성을 떨쳤다.

레바논의 금융시장은 아랍지역에서는 가장 선진화된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수년간에 걸쳐 계속된 전쟁과 파괴로 인해 레바논은 더 이상 중동지역의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전쟁의 초기 몇 년간은 다양한 의용군 지원자금의 유입으로 금융조직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은행들은 사업 무대를 해외로 돌리거나, 대차대조표상보다 더 많은 몫의 돈을 미국달러화로 보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존해나갔다. 레바논의 금융조직은 내전기간 동안은 그럭저럭 잘 버티어 나갔으나, 결국 1985년 레바논 은행 1개와 유럽에 진출했던 몇몇 레바논 자회사들이 도산함으로써 내전의 부담이 표출되었다. 이 사건 이후 중앙은행은 은행의 일체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 1990년 내전이 종식되면서 경제 및 재정 상황이 호전되어 금융체계가 개선되었으며, 레바논 파운드화도 안정을 되찾았다.

내전종식 후에는 복구사업 중 가장 성공한 분야가 금융업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활력을 되찾으며 2009~2010년에는 세계적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 10%의 대 성장을 기록하며 지역금융센터로 재 부상할 것으로 보였으나, 인근 시리아 사태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주춤한 상태이다.

레바논의 금융권 종사인구는 2017년 말 기준 26,005명이며 레바논 중앙은행 추산, 금융권 총자산(Consolidated Assets) 규모는 2015년 1,856.8억 달러, 2016년 2,053.32억 달러. 2017년 2,196.07억 달러로 전년대비 10.07% 증가하였다. 자산규모에 의거한 은행순위는 Banque Audi, BLOM Bank, Byblos Bank 순이다 .

보험업

내전 발발 전 베이루트는 금융과 보험산업의 중심지로 많은 국제적인 회사들이 이 지역에 진출했었다. 내전종료 후 국내수요의 증가로 보험사들은 레바논으로 복귀하여 보험산업의 회복에 기여했으나, 인구수에 비해 보험회사가 지나치게 많아 경쟁이 치열하며, 회사 설립 자본금 규모가 150만불로 영세하다. 최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감소 추세에 있다.

보험업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가 느슨한 분야다. 공식적으로는 경제무역부 산하 보험부서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있지만, 내전 와중에 정부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해져 보험업계 자율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의 질서와 규율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민간단체로는 1971년도에 설립된 ACAL(Association of Lebanese Insures)이 있으며 53개 보험회사가 가입되어 있다.

현재 약 50개사에 약 4천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약 3백만 명에 달하는 보험시장을 놓고 보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주변 지역 국가 중 소비자의 선택권이 가장 폭 넓게 보장되는 나라이다. 그러나 최근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인근 시리아 사태로 인해 보험업계에도 타격이 심한 상황이다.

시장 환경

시장 특성

(1) 소비자 특성

일찍이 수많은 국가의 지배를 받아왔었고, 동·서양 문화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이질문화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이고 모방적인 국민성을 갖고 있다. 강자에게는 약한 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국민의 경우에도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소홀히 대하는 편이다. 경제적으로 그들보다 부유하지 못한 국가의 국민들이나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취업자)들을 다소 멸시하는 풍조가 있다.

민족주의 성향은 약한 편이며 상당수 지식층들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부문에서는 인구 구성비에 따라 종파간 안배가 있으나 성차별은 없는 편이다.

레바논 사람들은 다른 중동국가와 달리 서구식 복장과 화려한 장식을 즐기며, 저녁 회식이나 파티 초대하기를 매우 좋아한다. 내실보다는 외형과 겉모양,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자신의 가문이 고상하게 보이기를 좋아한다. 소득수준에 비해 훨씬 높은 문화수준을 누리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즐기는 풍조가 강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수시로 공연을 갖고 있으며 입장료가 상당히 비싼 편인데도 관람객들이 많은 편이다.

(2) 유통구조

유통단계는 품목에 따라 각각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간단한 편이며, 소비재의 경우 전문 유통업자와 슈퍼마켓 용품 공급업체(슈퍼체인점 등)의 주문을 받아 이들 고객의 주문량을 모두 합쳐 수입하는 경우가 있다. 대개 슈퍼마켓 공급업체는 예컨대 세제류, 식기류 등 전문 취급품목이 4~5가지로 한정되어 있으며, 외국제조업체들의 에이전트를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슈퍼마켓 공급업체는 별도의 창고(Ware house)를 갖고 있고 소매영업은 하지 않으면서 도매상을 위한 소규모 전시매장만을 갖추고 있다.

내구성 소비재, 예컨대 가전제품의 경우 에이전트가 도·소매를 겸하는 것이 상례인바 지역별로 대리점(Distributors)을 갖추고 있다. 에이전트는 대개 대리점에 6~12개월 할부로 물건을 넘기기 때문에 대리점은 이를 활용하여 할부 판매하거나 현찰 판매 시에는 에이전트의 판매가격보다 싸게 파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의 경우 에이전트가 딜러쉽을 형성, 지역별 투자자와 자본을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유통경로는 에이전트-딜러망-소비자로 단순하다.

그러나 전문브랜드 제품의 경우 (라코스테 의류의 예를 들면) 에이전트쉽을 보유한 수입상이 소매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판매망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투자자의 지분을 끌여 들이거나 직접 투자하여 1호점, 2호점 분점 형태로 경영하고 있다.

백화점의 경우 직영은 드문 편이며 대부분 임대방식으로 경영하나 슈퍼체인의 경우는 대부분 직영 방식이다. 한국과 달리 백화점에는 채소, 과일이나 식료품 판매코너가 없으며 음식점은 갖추고 있다.

현지 마케팅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상담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마케팅이 없으며 세일즈 출장 또는 전시회 참가가 요망된다. 시장규모가 작고 같은 업종의 바이어들끼리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바이어들과 거래를 지속할 수는 없는 시장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에이전트쉽 방식의 거래가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간의 테스트기간을 거쳐 가장 신뢰할 만한 바이어와 계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A/S가 필요하거나 브랜드 홍보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에이전트쉽 선정이 필수적이며, 에이전트 선정시에도 연간 판매 목표를 수량화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수입상의 판매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아무리 수출업체의 제품 경쟁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대량으로 수입 또는 쌓아 놓고 판매하는 수입상은 좀처럼 찾기 어려운 시장이다. 특히 첫 오더 규모가 만족할 만큼 큰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레바논이 450만 명에 불과한 협소한 시장규모 탓도 있지만 치열한 경쟁구조로 인해 수입상들이 위험도가 높은 재고부담을 떠안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전시회가 유효한 마케팅 수단의 하나이다.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마케팅을 위해서는 전시회 참가가 매우 적절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전시회 참가 6개월 전에 현지 출장을 통해 에이전트를 선정하고 에이전트와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여 전문 전시회에 참가하는 방법과, 아예 전시회 참가를 시작으로 바이어 물색에 나서는 경우로 대별할 경우 전자가 다소 바람직한 방법이다.

바이어 발굴보다 중요한 것은 바이어 관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힘들여 바이어를 발굴해 놓고도 관리에 소홀하여 거래에 실패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특히, 세일즈 출장 시 구두든 문서 편이든 일단 약속한 것은 지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계속 관심을 환기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3) 유망 상품

- 전자통신장비: ADSL 및 인터넷 관련장비, 통신용 각종 케이블, 위성수신기, 핸드폰
- 발전설비와 송·배전설비 및 관련제품: 변압기, 계량기, 전압계 및 전류계, 케이블 등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벨트, 필터, 브레이크, 자동차용 배터리 및 부품, 중장비 및 자동차 정비기
- 유압브레이커, 굴착기 등 건설장비 및 부품
- 전자제품: 핸드폰, 에어컨, TV, DVD 및 기타 소비재 가전제품, LCD 모니터, 게임기 및 컴퓨터 관련 주변기기(MP3, USB)

○ 산업용 원자재: 철강제품(Galvanized Steel Sheet, Pipe 등), P.E. / P.P. Resin 등 플라스틱 원료

○ 의료용품: 의료기기, 치과재료, Disposable Syringe 등 일회용 의료용품

○ 기타 중소기업형 수출유망상품: 정수기, 광학기기, 안경테 및 선글라스, 보안장비, 섬유 직물(담요, 폴리에스터 직물), 전화기, 전기제품, 난방기기, 전기담요, 주방용구, 계측기기, 문구류(필기구, 사무용 소모품 등), 냉동설비, 식품가공기계 및 호텔관련 용품, 가정용 소비재, 공조기기, 운반하역기기, 재생 직물, 여성용 의류, 아동용 의류, 스포츠 레저용품, 금/신변장신구 등

(4) 우리기업 진출시 애로사항 및 유의점

가. 일반적 유의사항

레바논은 아랍 문화권에 속하고는 있으나 동시에 유럽문화의 영향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개성이 뚜렷하여 패션지향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따라서 유럽형과 중동형 제품 모두 통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레바논은 페니키아 상인의 후예로서 상업, 서비스 분야가 국민총생산의 약 7할을 차지할 정도로 상업 의존도가 높으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레바논 상인들과의 연계성이 높아 정보가 빠른 편이다. 시장규모에 비해 참여하고 있는 상인숫자가 지나치게 많아 극히 일부의 독과점 품목을 제외하고는 경쟁이 대단히 치열하다.

나. 건설시장 진출상의 문제점

(낮은 응찰가) 세계 각국의 건설업체들이 레바논 공사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어 대부분의 주요공사들이 초저가 응찰업체들에게 낙찰되고 있는데, 국내 건설업체들은 너무 낮은 가격수준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

(직접적인 해외금융 조달 선호) 레바논 발주처들의 신용도 향상으로 합작투자사업보다는 직접적인 해외금융 조달을 선호한다. 이는 레바논에 진출한

외국건설업체들이 안고 있는 주요 당면과제 중 하나이다.

(BOT공사 발주 증가)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건설업체가 모든 경비를 들여 완공한 후 운영까지 함으로써 수십년동안 비용을 상환받는 BOT공사 발주가 늘고 있다.

(법규의 완화) 지난 20년간 지속된 건설법규들이 완화되어 심지어 건설 진행 중에도 설계변경이 잦다.

(공사대금 지불지연)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대금 지불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다. 경쟁국 진출현황 및 동향

레바논 시장은 2016년 기준, 중국, 이탈리아, 미국, 독일, 그리스, 이집트, 러시아, 프랑스, 터키 순으로 진출해 있다.

전통적으로 이태리, 프랑스, 독일 등 유럽지역의 강세에서 최근에는 중국의 진출이 급신장하여 레바논 수입시장의 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1.17%이다.

라. 우리기업 진출확대 방안

시장진출 장벽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지 Agent를 통한 문제점 파악하고, 레바논 내 각종 상품전시회 참가지원 및 구매단 방한의 적극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 간 민간상공회의소 지원, 동 협회를 통한 기업진출을 도모해야 하고, 도로 건설, 공항 확장, 전력 프로젝트, 레바논 연안의 석유 및 가스 탐사 같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국제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야 한다.

르완다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경제 현황

세계경제포럼의 2018년 세계경쟁력지수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8위(전체 108위), 2018년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18)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2위(전체 41위), 2018 갤럽 조사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중 밤길 걷기 안전한 나라 1위(세계 공동 4위)를 기록하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노사이드의 참상으로만 알려져 있는 르완다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통계의 일부분이다.

르완다는 중동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서 우리나라 경상도 면적과 비슷한 크기(26,338 km2)에 약 1,13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갖고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언덕과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있어 '천개의 언덕의 나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르완다는 안정된 거버넌스와 치안을 바탕으로 높은 원조 효율성을 보내주고 있으며,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DG)의 대부분을 달성할 정도로 원조 효과성이 높은 전도유망한 국가이다. 하지만 내륙국가로서 높은 물류비용, 해외 원조 및 차관에 대한 의존,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 국제시장으로부터의 에너지 및 원료 수입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 高에너지 비용, 여신

(credit) 부족, 농업작물의 다양성 부족, 제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역시 르완다 경제성장의 주요 걸림돌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르완다 정부는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 미래 전략을 수립하였고, 2016년 키갈리 컨벤션 센터 오픈을 기점으로 MICE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아프리카 세계경제포럼, AU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를 연중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르완다는 여전히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1인당 GDP 729달러(2017, IMF)의 최빈개도국(LDC)이다. 인구의 7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가 노동력의 73%, GDP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활동도 산악지형과 낙후된 기술 및 생산방식 때문에 생산성이 낮으며 커피 및 차 생산을 제외하고는 자급자족적 농업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건설 및 광업 포함)은 GDP의 16%에 불과하며, 서비스 분야가 GDP의 약 47%를 점유하고 있다.

르완다는 1994년 제노사이드를 거치면서 경제·사회·지적(知的) 기반이 대부분 파괴되었으나, 이후 경제가 점차적으로 회복하여 2005년 이후 2012년까지 평균8.1%(세계은행)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르완다 정부의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해외원조의 효율적 관리 및 집행, 농업의 생산성 개선, 투자환경 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012년에 정치적 이유로 해외원조가 일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2013년 르완다 경제 성장률은 4.7%로 저하되었는데, 르완다 경제가 2005~2012년간의 고도 성장기 동안에도 경제구조의 취약성(해외원조 의존, 공공분야 비대, 민간투자 부족 등)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르완다 경제는 2017년 수출 증진, 농업활성화, 민간 소비 성장 등에 힘입어 6.1%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다시 견고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현재 목표 경제성장률은 7.2%이다.

르완다의 경상수지는 해외원조액의 꾸준한 증가(2005년 729백만 달러 → 2015년 1,164백만 달러, OECD 통계)에도 불구하고 자본재 및 소비재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해 2005년 65백만 달러 적자에서 2012년 712백만 달러(GDP의 11.3%) 적자로 급증하였다가, 2013년에는 광물 수출 증가에

따라 537백만 달러(GDP의 7.4%) 적자로 다소 감소하였다. 2014년부터는 해외원조 감소에 따라 2016년 1,210백만 달러까지 적자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2017년 999백만 달러로 적자 폭을 감소시켰으며(IMF, National Bank of Rwanda) 정부 예산 중 해외원조 비율을 16%까지 줄이며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르완다는 최근 5년 동안 전반적으로는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중이다. 주요 수출 품목은 차, 커피 등 농산품 및 광물 등이며, 수출 대상국은 UAE, EU, 스위스 및 주변 아프리카국(DR콩고, 케냐 등)에 집중되어 있다.

르완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는 사업비용 감소, 투자자에 대한 세금 혜택 제공 등 공격적인 투자 촉진 정책으로 인해, 2016년 650만 달러에서 2017년 10억 달러(르완다개발이사회)로 급증하면서 최초로 케냐, 우간다에 대한 FDI 액수를 능가하였다. 르완다에 대한 최근 해외직접투자는 부게세라 국제공항 등 건설업, 부동산업, 화수력 발전소, 섬유, 원예 등에 집중되어 있다.

르완다 정부는 르완다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 Vision 2020이라 불리는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했다. Vision2020는 2020년까지 중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 및 농업중심경제를 탈피하여 지식기반경제로 변모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고, 민간 투자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국가 성장목표를 밝히고 있다.

또한 르완다 정부는 Vision 2020의 후속 국가개발정책으로 르완다가 2035년 까지 고중소득국으로 그리고 2050년 까지 고소득국으로의 도약할 것을 골자로 하는 Vision 2050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 전략으로 2017년 10월 경제·사회·거버넌스의 세 분야를 중심축으로 하는 2017년-2024년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인 '경제 7개년 계획: 변화를 위한 국가전략(NST1)'을 발표하였다.

통상 정책

르완다 통상정책의 주무부처는 통상산업부(MINICOM)이며, 재정경제기획부(MINECOFIN), 외교국제협력부(MINAFFET), 농축산부(MINAGRI), 르완다개발이사회(Rwanda Development Board), 르완다조세청(Rwanda Revenue Authority),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Rwanda) 등도 통상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르완다 통상정책은 장기 국가개발 전략인 Vision2020, vision2050과 중기 국가전략인 경제개발·빈곤퇴치전략(EDPRS2, 2013-2018), 경제 7개년 계획: 변화를 위한 국가전략(NST1, 2017-2024)의 체제 내에서 수립되고 있다. 르완다 통상정책은 ① 생산성 및 생산능력 다변화, ② 지역 및 국제 무역체제에 대한 참여 증대, ③ 수출 증대를 위한 해외직접투자 유치, ④ 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⑤ 과학·기술 능력 강화 등을 중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통상산업부는 ① 성장 및 소비자 보호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②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국내 총생산에서의 비중 확대, ③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민간분야 성장 및 고용 창출 지원, ④ 르완다의 무역 수지 균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역, 글로벌 시장에의 무역 통합 심화, ⑤ 효율적인 인적 자원 및 기관 역량 조성 등을 전략적 목표로 채택하고 있다.

르완다는 2007년 동아프리카공동체(EAC)에 가입하였으며, 2009년부터 EAC 관세동맹의 이행, 2010년부터 EAC 공동시장의 이행을 개시하였다. 또한 르완다는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과 대호수경제공동체(ECGLC)의 회원국이기도 한데, 이 두 공동체의 관세동맹은 아직 출범하지 않았다. 2016년 8월 르완다는 2007년 탈퇴하였던 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ECCAS)에 재가입하여, ECCAS 내 경제협력을 가속화해나가고 있다.

EAC는 EU와의 경제협력협정(EPA)를 지난 2014년 협상을 종료하고, 2016년 초 법률 검토 및 번역 작업이 완료되었으나, 자국 산업의 보호를 이유로 탄자니아와 우간다가 협정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협정의 서명 등 체결절차가 지연되었다. 이에 르완다는 2016년 9월 케냐와 함께 브뤼셀을 방

문하여 우선적으로 EU와의 EPA에 서명을 하였다. 관세 동맹 간의 EPA 발효를 위해서는 EAC 회원국 모두가 협정에 서명해야 하는 바, 관련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다.

분야별 무역정책 및 관행

등록·통관·관세평가

모든 수입업자는 르완다개발이사회(Rwanda Development Board)에 등록해야 하며, 납세자확인번호(TIN: Taxpayer's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 받아야 한다.

르완다는 내륙국가로서 인근 케냐 몸바사 및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항구로부터의 운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르완다 정부는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Asy scan, 사전 통관 등을 도입하였으며, 2012년 2월부터는 통관절차를 웹 기반 전자단일창구 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

르완다는 2004년 1월에 WTO 관세평가협정(CVA) 적용을 통보하였으며, 관세평가시 EAC 공동 규칙을 적용하고 있어 수입품의 EAC 국가 항구 도착 시점의 인도가격(CIF)를 근거로 관세평가를 하고 있다.

관세

르완다는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 2004년부터 GATT(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 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EAC(동아프리카공동체)에 가입하였고, 2009년 7월부터 아래와 같이 공동역외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최혜국대우 실행관세(MFN applied rate)로서 적용하고 있다. 또한 EAC 회원국 간 교역품에 대한 관세는 철폐되었다.

EAC 공동역외관세율(CET)

품목	관세율	전체품목 대비 비중
원자재 및 자본재	0%	37.4%
중간재	10%	22.1%
완제품	25%	39.3%
민감품목(58개)	35%~100%	1.1%

주: 세부 항목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CET 문서 참고

수입규제

르완다는 EAC 통관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품목과, 공중도덕, 공공정책, 인간/동식물의 건강 및 생명, 역사적/예술적/건축적 가치를 지닌 국보의 보호 또는 산업/상업정책의 보호 등의 법률 적용을 위해 품질, 포장 등 특정 형태의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으로 나누어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위조지폐, 음란물, 마약류, 독극물, 수은 함유 화장품, 경상용차 및 승용차의 중고타이어 및 지정된 농업용/공업용 화학물질 등이 있다. 그리고 수입 제한 품목으로는 덫, 무기류, 상아 등 동물의 뼈, 몬트리올 협약 및 비엔나 협약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 GMO, 역사적 유물 등이 있다. 전체 목록은 국세청(RRA)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역구제(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관세)

르완다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또는 세이프가드 관련 법령 및 국내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조사 및 실행 사례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EAC 체제로서는 무역구제제도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지역적 차원에서의 무역구제는 시행이 가능하다.

표준 및 기술규격(Standards & Technical requirements)

(1) 표준화 및 기술규정 채택

2013년에 설립된 르완다표준이사회(RSB: Rwanda Standards Board)는 표준장려, 품질관리 및 계측활동 및, 표준 적용 여부를 감시한다. 또한 르완다표준이사회는 르완다의 표준을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및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과 조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EAC 표준의 경우 70% 이상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르완다표준이사회는 1,300개 이상의 국가표준을 소유하고 있으며, 매년 100개 이상의 신규 국가 표준이 개발되고 있다.

르완다의 표준은 민관의 대표로 구성된 르완다표준이사회의 기술위원회(TCs)를 통해 개발되고 있으며, 500여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표준 작업에 동참한다. 르완다는 르완다표준이사회를 통해 10개 이상의 국제표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01년 설립된 르완다 공공시설규제청(RURA: Rwanda Utilities Regulatory Authority)은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① 통신/ICT, 방송 및 인터넷 등 전자기술 수렴 및 시청각 정보 처리 기술, ② 우편 서비스, ③ 재생 및 비재생 에너지, 공업용 가스, 파이프, 저장시설, ④ 수자원, ⑤ 위생, ⑥ 여객/화물 운송 및 ⑦ 기타 규제가 필요한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규제 권한을 위임받았다. 규제청은 정책결정자, 서비스 공급 면허자 및 소비자들 사이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규제청은 총리실에 직접 보고하며, 각 담당 부처들 간의 조정 역할을 맡고 있다.

(2) 부합검사(Conformity testing) 및 인증(certification)

르완다표준이사회는 수입 및 수출품이 르완다의 표준 및 기술규정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한다. 또한 국경에서의 수입품 검사, 르완다 내 산업 조사 및 시장 감시를 통하여 생산, 홍보, 소비의 모든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를 수행하며, 관련 표준을 준수하는 상품 및 시스템에 품질 마크를 표시하는 인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3) 국경 검사

소비자 및 환경에 대한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물품·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르완다표준이사회가 발행한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위탁화물·선적이 르완다의 표준 또는 르완다표준이사회가 인정한 국제, 해외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반드시 물품 도착 사전에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품목, 송장, 수출국이 발급한 검사 증명서 및 육류, 비료, 약물, 생선과 같은 제품에 대한 관련 부처의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식품 또는 식료품을 포함하는 수입의 경우 검사 증명서를 통해 이 식품 또는 식료품이 수출국에서 소비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르완다표준이사회는 전 세계의 모든 인증된 검사 연구소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인정하고 있다.

르완다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은 르완다표준이사회의 감시 하에 재수출 또는 폐기된다.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입업자는 경고, 르완다에서의 상품 판매금지, 물품의 압류 및 폐기, 물품 가치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기업의 일시적인 폐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생 및 검역(SPS)

2016년 8월, 농축산자원부는 농업분야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온라인 검역 및 인증 등 규제 관련 서비스 절차를 온라인으로 자동화한 르완다 농축산검역 및 인증 서비스(eRALIS)[1]를 개시했다.

eRALIS 온라인 포탈은 이용자와 관리자를 위한 상호 연계된 두 개의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축산물 수출입 업자 등 eRALIS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포탈을 통해 SPS 요건 및 무역 규정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검역/인증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자들은 요청된 서비스의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며, 국세청(RRA)과도 동 정보가 공유된다.

1) http://212.22.169.22/ralis/

환경

환경관련규제는 르완다환경관리청(REMA)과 환경법, 그리고 장관 명령에 의해 제시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르완다환경관리청 홈페이지[2]에서 찾아볼 수 있다.

르완다에서는 생분해성이 아닌(non-biodegradable) 플라스틱류, 공중보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 및 건강관련 제품의 수입 규제가 존재한다.

르완다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사막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협약, 바젤협약, 습지에 관한 람사협약,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조약 등을 비준한 상태이다. 또한 국제식품규격의 회원국이다.

마킹, 라벨링 및 포장

상품과 컨테이너는 반드시 라벨 분류 및 관련 정보 표시가 되어있어야 한다. 각 물품의 라벨에는 상품의 이름, 성분, 중량,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포장자, 유통자, 수입자, 수출자, 취급사항 등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이는 영어, 불어 또는 키냐르완다어 중 하나로 작성되어야 한다.

정부조달

(1) 제도

르완다는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2018년 개정)과 공공조달과 표준입찰 제도에 관한 행정법(2008년)으로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을 제외한 용역, 재화, 컨설팅 서비스, 공공기관 서비스 조달에 적용된다. 국영기업의 조달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르완다는 WTO 정부조달협정 등 어떠한 양자 및 다자 협정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2) http://www.rema.gov.rw/

국가입찰위원회를 대체하기 위해 르완다조달청(RPPA: Rwanda Public Procurement Authority)이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동 기관은 조달정책 개발, 규제 감동 및 조달기관의 능력배양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조달방법

관련 법령은 조달업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타 다른 조달방법으로는 제한입찰(restricted tendering), 견적요청(request for quotation), 단일업체조달(Single-source procurement) 또는 직접계약 등이 있다. 국제입찰, 전국경쟁입찰의 경우 국내 등록된 기업에게 10%의 가산점이 허용된다.

(3) 조달절차

개별 조달기관에 의해 조달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르완다조달청(RPPA)도 일부 조달을 시행하고 있다. 입찰공지는 르완다조달청 및 dgMarket 웹사이트(www.market.gov.rw)에 공지되며, 국제입찰의 경우 Business Week에 게재된다. 조달업체는 연간조달계획을 발행해야 하며, 특히 입찰명 및 입찰 수량, 입찰방식, 자금주체 그리고 예상 공시일과 집행일은 반드시 인터넷 혹은 조달업체의 공고판, 르완다조달청 웹사이트 그리고 독자층이 두터운 신문에 게재되어야 한다.

(4) 심리요건

입찰자는 조달절차 진행 중 언제라도 조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심리요청은 심리가 필요한 상황을 인지한 후 7일 이내 그리고 낙찰 이전에 서면으로 조달업체 대표에게 요청되어져야 한다. 심리요청 시, 조달업체 대표는 조달절차를 중지해야 하며, 요청접수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유와 사정을 설명하고 심리요청이 타당한 경우 시행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조달업체의 대표가 심리요청 7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입찰자가 심사에 불복하는 경우 입찰자는 독립심리심사단(independent review panel)에 요청할 수 있다. 독립심리심사단은 국립기관으로 심사단

은 민·관·시민사회조직 출신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독립적으로 요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조달절차의 문제점을 감독한다. 2017/2018 회계연도에 68개의 심리요청이 심사단에 접수된 바 있다.

경쟁정책

르완다의 경쟁정책은 '국내교역법'(Law No.15 of 28 January 2001)에 의해 규율되다가, 충실한 경쟁정책 수행을 위해 2012년 경쟁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다. 이어서 2013년에는 경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독립 기관인 르완다 조사·경쟁·소비자보호청(RICA: Rwanda Inspectorate,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uthority) 설치 법률이 채택되었으며 2018년 8월 기준 총리령으로 조직구조·급여·부가혜택 등의 사한이 정해진 상태이다(No 116/03 of 06/08/2018). 동 기관이 설립되면 반경쟁 행위, 합병통제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게 되며, 르완다표준이사회(RSB)는 표준의 이행에 대한 조사 등 권한을 이양하고 표준 설립에 집중하는 등 업무 영역이 조정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르완다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등의 회원국이다. 르완다는 지역차원에서도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권기구(ARIPO)의 하라레 의정서에 2011년 6월 가입서를 제출, 17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르완다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9년 10월 발효)하고, 지식재산권 정책을 발표(2009년 11월)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르완다 통상산업부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 수립 및 법률 제정의 중추기관이며, 문화체육부는 저작권과 관련한 중추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르완다개발이사회(RDB)는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 보안거래 등과 관련한 사안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르완다 지식재

산권 체제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 직접회로 레이아웃 디자인(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상표, 지리적 표시, 저작권 등을 보호하고 있다.

르완다 지식재산권 체제는 "선출원주의(First-to-File Principle)" 원칙을 고수하는데, 이는 따로 증명치 않는 한 처음으로 지식재산권을 신청한 사람이 유효한 청구인으로 간주한다. 신청서는 반드시 영어, 불어 혹은 키냐르완다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 신청자의 경우 르완다정부에서 승인받은 산업재산 에이전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르완다에는 특허 심사 기관이 없으며, 르완다 개발이사회와 APIPO(아프리카 지역 지적 재산권 협회)간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특허 관련 심사를 하고 있다.

국영기업(SOEs), 국유 및 민영화

르완다 경제에서 특정 국영기업이 특정 분야를 독점하거나 특정 기업이 수출입에 대한 독점권을 소유한 경우는 없으나, 르완다 정부는 여전히 르완다 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수도전기, 건설, 농업, 광업, 숙박업, 금융 및 보험 분야에서 8개의 국영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 기준으로 점차적인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다. 1996년 민영화 및 공공투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재정경제기획부가 전전반적인 민영화 사업 및 매뉴얼을 주관하며, 르완다개발이사회가 민영화 프로그램 실행·감사·고문를 담당하고 있다.

기타 무역장벽

(1) 육상무역의 한계

르완다는 바다에 접해있지 않은 내륙국이기 때문에 주변국의 항구 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약 40%의 수입품 가격이 운송비와 관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국경 지역과 항구로부터의 운송의 행정 체계 그리고 행정 절차 상의 부정부패와 같은 비관세장벽은 비용 및 통관 소요 시간, 총 매출량 등에도 영향을 미쳐 교역 과정에서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2) 인프라 부족

르완다는 에너지의 발전량 부족과 접근성에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민간 사업, 투자, 통상에 대한 비용 상승의 요인 중 하나이다. 르완다는 2018년 10월 기준 전체 가구의 46.4%의 인구만이 전력 접근성을 갖고 있다.

르완다는 아프리카에서 도로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국내 도로 인프라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철도나 항구가 없어 운송에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르완다 정부는 항공 교통 발전을 위한 키갈리 국제공항 확장 사업과 르완다항공의 취항지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부게세라 신공항 건설 사업과 탄자니아-르완다 표준궤열차 등 철도를 항구에 접해있는 주변국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통해 수출입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르완다의 투자 환경 및 제도

투자매력도

르완다는 세계 여러 기관으로부터 투자 환경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18년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계 각국 사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Report)'는 르완다를 세계 제41위의 사업하기 좋은 국가로 평가했으며, 이는 주변국가(우간다 122위, 케냐 80위, 탄자니아 137위, 부룬디 164위)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가이다. 세계경제포럼의 2017/18년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는 르완다를 세계 58위(사하라이남 국가 중 모리셔스를 이어 2위, 동아프리카에서는 1위)로 평가하였다. 2018년 10월 기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르완다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은 아래와 같다.

르완다의 신용 평가 등급

	Moodys	Standard & poor's	Fitch Rating
르완다	B2	B	B+

한편 르완다의 국가 신용도를 B+로 평가한 Fitch Rating은 르완다가 우수한 빈곤 감소 기록과 부정부패 관리 능력을 보임에 따라 르완다 정부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계속 될 것이라고 예측(central scenario)한 바 있다.

투자 제도

르완다의 투자 제도는 '투자 및 수출 진흥 촉진법'(LAW N° 06/2015 OF 28/03/2015)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토지는 국가 소유이나, 투자자는 최대 99년 기간의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르완다 정부는 안정적인 투자 및 수출환경의 조성과 해외 투자의 유치를 위해 종합투자법(Investment Code)을 2005년에 발표하였으며, 2015년 7월에는 전략적 투자진흥 시스템 강화,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형평성 제고, 비효율적 투자유치 인센티브 폐지 및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인센티브 도입 등을 위해 新투자법인 투자진흥촉진법(The Law on Investment Promotion and Facilitation)을 제정하였다.

2008년에는 르완다개발이사회(Rwanda Development Board)가 설립되어 르완다에서 투자자들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르완다개발이사회는 투자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법, 정책, 인센티브와 투자환경, 트렌드, 투자 기회 및 토지 확보 지원, 각 산업부문의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르완다개발이사회 내의 원스탑센터(One-stop center)에서는 노동 허가증과 비자, 세금 감면 및 납부, 환경 규제, 토지 이용 및 건축 허가, 공공시설이용과 공증 서비스가 가능하다.

투자에 대한 제약

르완다는 투자환경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러 투자에 대한 제약요소를 가지고 있다. 도로 및 전기 인프라는 열악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연료와 전기의 가격도 높은 편이다. 또한 콩고민주공화국 및 부룬디 등 주변국의 정치적 불안정도 투자에 대한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주변국에 비해 작은 시장규모(1200만여명) 및 숙련된 노동인구의 부족 또한 대르완다 투자의 장애물로 꼽히고 있다. 2017년 등록기준 대학생은 전체 학생의 2.2%에 불과(2017, 르완다교육부)하며, 2017년 2월 기준 전체 노동인구 중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비율은 16%에 그친다(르완다국립통계연구원, 2017). 르완다 농산물은 커피, 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자급자족 위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에서도 호텔과 관광산업이 각광받고 있으나, 주변의 관광 대국들(케냐, 탄자니아)에 비해 규모는 작은 수준이다. 광업의 경우 주석, 콜탄, 텅스텐, 보석류(gemstone) 등이 발굴되고 있다.

르완다 新투자법 주요 내용

◆ 법인세 감세 제도 조정 : 기존 고용 및 수출 실적에 따른 혜택(2%~7%)을 폐지하고, 수출, ICT, 에너지, 물류, 금융서비스 등 중점 분야에 대해 일괄 감세(15%) 제도 신설

- 르완다 소재 본부(headquarters)에 대한 법인세 면세 혜택은 유지

◆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 에너지, 제조, 관광, 보건, ICT 분야 5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7년간 Tax Holiday 부여- 단, 내각 결정에 의한 추가적 인센티브 부여 제도는 폐지

◆ 자본소득세 면제 혜택 신설(단, 상업용 부동산은 제외)

◆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 폐지(단, 부가세 신속 (15일 이내) 환급 제도 신설)

◆ 법인세 가속 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제도 정비 : △각 사업 당 5만 달러 이상 투자한 투자자, △수출·제조·통신·농산물가공업·교육·보건·대형교통·관광·건설 등 특정 분야 투자자의 신규/중고 자산에 대해 최초 1년간 50%의 가속 감가상각

◆ 투자 자산보호 강화 : 투자자의 자본, 자산 및 지재권 등에 대한 보호 강화

◆ 투자 등록 기간 단축 : 기존 10일 → 2일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 등록 요건(25만 달러 이상) 폐지

◆ 건설 분야 투자에 대한 특혜(부가세 및 관세 5%) 폐지

◆ 기계 및 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특혜 폐지

투자관련 분쟁해결

르완다는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및 아프리카 무역보험기구(ATI)의 회원국이다. 르완다는 ICSID의 공식문서에 1978년 4월 21일 서명했으며, 1979년 11월 14일 비준하였다. 르완다는 다른 회원국의 국가 및 국민들과의 투자 관련 분쟁해결의 틀에 관한 1965년 3월 18일 협정의 서명국으로 1979년 7월 16일자 법령에 따른다.

키갈리 국제분쟁조정센터(Kigal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ttp://kiac.org.rw)는 2012년 5월 설립되어 르완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투자자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책임진다.

한·르완다 교역 및 투자 현황

한국의 르완다 투자 진출은 2012년까지 10건 40만 달러 규모에 불과했으나, 2005년 경제, 과학, 기술 협력 협정 체결, 2013년 투자보장협정 및 개발협력 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향후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통신기업인 KT가 2013년 6월 르완다 정부와 4G LTE 기술 기반 초고속 무선 브로드밴드망 구축키로 합의하고, 4G LTE 도매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합작회사(KTRN: KT Rwanda Networks)와 르완다 정부의 ICT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정보통신 합작회사(AOS)를 설립하면서(약 9천만 달러 투자) 한국 기업에 의한 대르완다 투자가 급증하였다. KTRN은 2018년 10월 현재 르완다 내 LTE/4G 네트워크 전국망 구축을 완료한 상태이다.

한편 2017년 기준 우리나라와 르완다의 교역량은 7,371만 달러(수출 7,180만 달러, 수입 191만 달러)로, 2018년 6월까지 우리의 투자현황은 47건, 681만 달러 규모(KT 투자금액 미포함)이다.

한편 동아프리카 및 동남아프리카의 지역 통합은 르완다의 기업 및 투자자들의 투자시장 접근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동남아프리카 지역까지 투자자들의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로코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모로코는 대외개방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아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의 적극적 추진과 병행하여 최혜국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관세 부담으로 인해 수입현장에서 가격조작(undervalue) 관행이 성행하는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모로코 대외교역은 2008년 이후 연평균 15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무역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모로코 정부의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출 진흥 정책 및 제조업 육성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과 모로코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최근 무역적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모로코 무역청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약 100억 달러(전년 동기 7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모로코의 수입관세는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공산품에 대해서 제품의 특성과 자국 산업 발달유무에 따라 0%부터 최고 25%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 밀(73%), 설탕(60%) 등과 같은 농산품 및 기초 식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국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주요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 가공단계가 높아질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사

관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로코는 2009~2012년간 자발적으로 진행한 자발적인 최혜국 실행관세 인하 프로그램에 따라 현행 공산품 수입에 부과되는 30%의 최고관세를 2012년까지 25%로 낮추고 관세부과 단계를 2008년 7단계에서 2012년 4단계로 조정하였다

모로코는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미국, 터키, 튀니지, 이집트, 요르단, UAE, 여타 아랍국가 등 57여개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모로코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EU와는 2012년, 미국 및 터키와는 2015년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철폐가 완료되었다. 따라서 상기 최혜국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특혜 및 최혜국 관세 간 격차가 커져 자동차 등 한국산 주력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모로코는 캐나다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으나, 모로코 농업 및 공공사업 부문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항 등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모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양측은 현재 통관수속, 위생조치,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협상이 진행 중이다. 또한 모로코 정부 일각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자국 제조업 기반이 약해지면서 교역과 산업 구조가 더욱 악화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모로코의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서 지난 2000.3.1일부터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이 발효되어 관세철폐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2012년 3월 1일자로 완전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였다. 유럽연합(EU)은 2008년 10월 모로코에 '진전된 지위(Advanced Status)'를 부여함에 따라, 모로코는 유럽자유무역지대(EFTA)에 준하는 지위를 유럽연합(EU)에 대하여 누리고 있다. 또한 2013년 시작된 유럽연합(EU)과 모로코 간 심화·확대된 자유무역지대(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구성을 위해 8차례 협상이 실시되었다. 서비스무역, 투자 보호, 국가조달, 비관세장벽 철폐 등과 함께 양국 간 제도적 근접성을 확보하여 모로코가 EU 시장에 점진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위생 기준, 공업 표준 등의 일원화와 같은 안건이 논의되고 있다. 2012년 2월에 발효된 농산물 협정은 유럽에서 가격 탄력성이 높은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로코 산 농산품을 유럽으로

수량 제한 없이 수출을 허용한다는 조항과 향후 10년간 유럽에 대해 모로코 식품류 시장을 개방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모로코-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은 2004년 6월 15일 타결된 후 200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95% 이상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2015년에 완전 철폐되었다. 이는 미국이 아프리카 국가 중 처음으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기도 하다. 미국의 대모로코 수출은 2005년에 비해 2017년 약 286%, 모로코의 대미국 수출은 약 125% 증가했다. 미국의 주력 수출 품목은 원유, 항공부품, 기계류이며, 모로코의 주력 수출품목은 비료, 전자기계, 농산품, 인광석, 의류 등이다.

2006년 1월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터키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15년 철폐되었다. 터키는 세계 2위 섬유산업 강국이어서 터키산 섬유 및 의류 제품의 모로코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터키는 모로코 주요 수출국으로 수출대상국 중 5위를 차지하며, 평로선철, 강철, 자동차 등이 주요 거래 품목이다. 모로코-터키 상호 연간 무역액은 2017년 약 2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7년 대비 약 4배, 2010년 대비 약 2.5배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모로코의 대터키 수출은 지난 10년간 19.7% 증가한 반면, 수입은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로코, 이집트, 튀니지, 요르단 등 4개국이 2004년 2월 25일 체결한 '아가딜 협정(Agadir Agreement)'은 2006년 7월 6일 발효되었다. 협정 발효 즉시 모든 공산품과 농산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수량제한 등 비관세 장벽도 제거되어 지중해 아랍권 4개국 간 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되었다.

모로코는 또한 서아프리카 국가들 간 노동, 자본, 상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역외 공통관세 시행을 통한 공동시장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가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6월 4일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회원국들은 모로코 가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나이지리아 등 일부국가의 반대에 부딪혀 가입이 지연되고 있다.

수입부과금

모로코에서는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품에 대해 0.25%의 수입세(PIT: Parafiscal Import Tax)가 부과되고 있으며, 국내 생산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일반제품에 대하여 20%)와 국내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투자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본재와 부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4년에는 농업용 기기, 농·축산품, 어망, 파라핀 등 기존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낮게 부과되었던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상했다. 그러나 모로코에서 제3국으로 상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업체의 국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나 면제는 불가능하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수입상품의 통관은 수입신고, 물품검사, 관세납부, 그리고 물품반입 등의 절차로 구분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Engagement), 수입화물도착서류(Bon de Delivery), 선하증권(Bill of Lading),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의 제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세금감면 대상 수입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모로코 세관의 통관절차는 상품 도착 후 24시간 내에 총 8부로 구성되어 있는 통관 신고서를 제출하고 통관신고서를 증명하기 위해 특정 규정이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한 후 관세를 지불하면 수입상품이 통관된다. 수입 면장과 수입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세관 통과기준 6개월이다. 이 기간의 기산 일자는 수입약정서의 경우 지급은행에 신청할 때부터이며, 수입 면장은 상공부 장관이 발급한 시점부터이다. 그리고 수입 사전신고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물품검사는 송장에 명기된 각 항목에 대해 수량, 품목, 규격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견본(Sample) 검사로 대체하기도 한다. 가격조작(Undervalue)에 대한 세관당국의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적발 시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을 적용한 추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관과 금융기관 간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을 통해 관세를 이체하면 세관이 납부증빙을 발부하게 되어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었다. 또한, 물품을 먼저 통관하고 추후에 관세를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는 신용통관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모로코 세관은 웹사이트에서 HS코드를 통해 관세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http://www.douane.gov.ma/adil/)와 수출입업자가 온라인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http://badr.douane.gov.ma)를 제공하고 있다.

모로코 수입통관절차는 전체적으로 간소화되고 있지만, 세관당국의 관료주의로 인한 급행료 요구, 세관당국의 자의적인 과세 기준가격 결정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농산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고 작성이 까다로워 수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의 경우 검역과 통관에 약 1개월이 소요되어 한국에서 모로코까지 해상운송에 소요되는 2개월을 더할 경우 총 3개월이 걸리는 실정이다.

수입규제

수입 수량제한 대상 품목은 화기, 폭발물 등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나, 공중보건 및 안전상의 이유로 중고의류, 중고 타이어 등에 대한 수입허가가 사실상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모로코에는 수입 규제 제도가 없으나 국가 경제 정책상 농수산업 보호차원에서 농업 분야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 외 사치품 등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비재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사실상 수입을 억제하는 관리정책을 취하고 있다.

모로코는 국토면적과 인구에 비해 구매력 있는 중산층이 적어 내수시장이 제한되어 있다. 특히, 고급 소비재와 산업 설비재는 유럽을 비롯한 세계 유명 브랜드 물품이 수입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한 반면, 일반 공산품은 중국, 이집트, 터키 등으로부터 중저가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전자제품 등의 경우에는 스페인령 세우타나 메릴라를 통해 밀수입되는 경우도 많아 일반적으로 수입규모가 적고, 가격 민감성이 큰 편이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생산자, 수입업자, 산업협회, 관련 당국 및 소비자는 원산지 국가의 덤핑,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동 제품 수입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가져온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외무역부에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대외무역부는 이를 관할부처에 통보하여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관할부처가 덤핑, 보조금 지급,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는 경우, 재무부령으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2012년 이후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가 꾸준히 취해지고 있다. 2012년 8월 중국산 베니어합판에 대해 25%, 2013년 12월 미국산 PVC에 최대 56.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 더불어 유럽 및 터키산 철강합판, 덴마크의 인슐린, 포르투갈의 A4용지 등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모로코 산업계에서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실행관세 인하에 따라 국내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하면서, 모로코 대외무역부는 무역구제수단 적용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엄격한 적용을 천명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14년 6월에는 2012년 이후 수입량이 100% 이상 증가한 유럽 및 터키산 열연강판에 대해 자국 철강기업 Maghreb Steel이 제출한 긴급수입제한조치 탄원서에 따라, 2014년 9월 26일부터 5년간 기업들에게 11.00~11.0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2015년 냉연강판, 도금강판 및 도장강판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22%로 부과되며 2016년 20%, 2017년 18%, 2018년 16%로 부과한 뒤 2019년부터 해제된다. 2015년에는 이집트산 각목합판에 5년간 28.12%에 달하는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한편 2016년 자국 냉장고 생산기업 MANAR가 제출한 탄원서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 향후 5년간 중국산 제품에 27.56%(기존 25%), 태국산에 18.15%(기존 25%), 터키산에 16.94%(기존 0%)의 추가 반덤핑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모로코는 기술표준의 경우 국제표준기구(ISO), 유럽안전인증(CE), 프랑스 표준협회(AFNOR) 등 유럽 표준, 식품의 경우 Codex 등의 국제 표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모로코 국가 기구로는 모로코 표준화 연구소(IMANOR)와 국립검사청(LPEE)이 자체적인 표준 및 검사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모로코 표준화 연구소(IMANOR)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표준과 규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립검사청(LPEE)은 ISO/IEC에 의거하여 제품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모로코는 WTO 기술장벽협정(TBT)의 당사자로서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표준, 기술, 규격 등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가의 자문을 받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동통신제품과 식품에 대해서는 각각 모로코 통신감독위원회(ANRT) 및 수입관리청(EACCE)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와 인증을 거쳐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모로코는 종교적 문장이나 표시가 되어 있는 물품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라벨링은 일반적으로 불어 또는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원산지국가를 명기해야 한다. 식품의 경우 라벨이 반드시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생산일자와 소비 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품목명, 내용물, 생산자 또는 포장자의 회사명 및 주소, 원산지국명, 내용물 중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조일, 유효기간, 약품명, 성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모로코에 할랄(Halal)을 의무화 하는 검사 또는 인증 규정이 없었으나 2012년 9월 메크네스에서 열린 국제 할랄 엑스포에서 모로코 당국은 모로코 할랄 인증을 공식 발표하였다. 모로코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한 육류를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할랄 처리되지 않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류 제품의 수입도 일부 허용되고 있다. 모로코는 유럽과 아프리카 할랄 시장

에서 지역 허브 역할을 모색하고 있으며, 모로코 표준화 연구소(IMANOR)가 할랄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할랄 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바젤 협약, 스톡홀름 협약, 로테르담 협약 등 환경협정에 따라 멸종위기 동식물, 유해 폐기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특정 유해화학물질 등은 수입허가 또는 수입금지 대상이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의 수입을 2015년 완전히 금지하였다. 한편 모로코 정부는 2016년 11월 마라케쉬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2)를 개최하는 등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모로코는 수출 증진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부가세 환급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수출기업에 대해서 처음 5년간은 법인세 100%, 이 후 5년간은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모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고 전자조달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조달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조달관련 중앙행정기구가 없는 반면, 각 부처, 국영기업, 지방행정기관 등이 각각 조달 업무를 이행하

며, 재정경제부 및 회계감사원(Court of Audit)이 정부조달 계약의 감시와 통제를 담당한다.

모로코는 정부조달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2007년 10월 19일 발효된 정부조달에 관한 Decree No.2-06-388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제81조는 경쟁 입찰에 참여한 내국인에 대해서 외국인에 비해 입찰가액의 15%를 우대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낙찰자의 하청계약금액의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모로코가 정부조달 제도개선 및 투명성 강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실제에서는 과거 거래 경력과 인맥이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물품조달이나 입찰이 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부적으로 인맥을 통해서나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결정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정부조달 입찰 공고와 제출서류가 아랍어 또는 프랑스어로만 진행되고 있어 영어권 서류작성에 익숙한 기업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경우에, 공고 후 입찰까지 준비기간이 3개월 정도로 촉박하다는 점과 사업성 검토 및 입찰서 작성을 프랑스어로 해야 하기 때문에 비불어권 국가 기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일부 사업의 입찰서류를 영어로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14년 9월 산업·통상·투자·디지털경제부 장관은 산업화 촉진 전략에 따라 산업보상 정책을 활성화여 국방부, 인광석공사(OCP), 모로코항공(RAM), 철도청(ONCF) 등에서 발주한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기술이전, 모로코 내 생산시설 설립 등 산업보상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산업보상 정책이 이행된 경우는 모로코 내 고속철도(TGV) 건설 계약 관련 프랑스 Alstom 사와 체결한 산업보상 합의가 유일하다. 고속철 계약을 수주한 후 Alstom 사는 철도분야 교육기관 설립, 10년간 5천 명 고용을 창출하는 케이블 및 전자부품 생산 공장 건설 및 모로코 납품업체로부터의 구매 확대 등의 산업보상을 약속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

모로코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며, 자국 법규를 국제의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지식재산권 위반 시 처벌 규정 강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관련 업무는 모로코 특허청(OMPIC: L'Office Marocain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Commerciale)에서 주관하고 있다. 산업·통상·투자·디지털경제부 산하기관으로 있는 OMPIC은 산업재산권 신청(발명특허, 상표권, 의장등록) 접수, 등록, 교부 및 공표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경제 주체에게 인식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다.

모로코 특허청은 특허권에 대한 자료, 상표권에 관한 국가 색인표, 상표권 및 의장등록에 관한 등록 장부, 재산권에 관한 연례 통계, 특허권에 관한 분기별 통계, 연구자료, CD-ROM에 수록된 외국특허(ACCESS, WORLD), CD-ROM에 수록된 국제적 상표(ROMARIN) 자료를 비치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웹사이트(http://www.directinfo.ma)를 개설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모로코 특허청은 아랍 연맹, 아프리카 국가의 특허청과 연계해 특허 관련 협력을 하고 있으며 아랍 연맹과는 특허 관련 전략에 관해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하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허의 경우 개인 혹은 법인체는 독일 뮌헨에 있는 유럽 특허청 및 모로코 내의 OMPIC에 특허 신청을 낼 수 있다. 단일종류의 유럽식 특허는 20년 동안 유효하다. 모로코 특허보다 유럽 특허의 신청 절차가 길고 수수료가 비싼 편이나 유럽 특허가 보호범위 측면에서 광범위할 뿐 아니라 뮌헨 협정에 서명한 모든 국가에 이 특허가 적용돼 선호되는 편이다.

모방제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법률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 시 최소 1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도 최소 2천 8백 달러에서 최고 5만 7천 달러가 부과된다.

그러나 모로코의 비교적 잘 정비된 지재권 보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지재권 위반 단속 및 법집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소프트웨어, 음악 CD, 영화 DVD 불법 복제품이 시중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으며, 의류, 가방 등 제품의 상표권 및 산업디자인 위반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모로코 정부는 1993년 민영화법을 제정하여 통신, 금융, 운송, 유통 등 서비스 분야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요기업 지분을 외국기업에 매각한 바 있다. 에너지, 교통시설 등의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는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확대하고 있다. 국영기업 민영화로 인한 재정수입은 세계적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유연한 확대재정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였으나, 민영화로 인한 비정상적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금융서비스

모로코는 지난 2006년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모든 금융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중앙은행(Bank Al-Maghrib, 이하 BAM)에 허가권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이 지점을 모로코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국가 금융당국의 의견서를 중앙은행(BAM)에 제출해야 하며, 중앙은행(BAM)은 해당국가 준거법에 따른 해당 금융기관의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모로코 재경부는 새로운 보험 상품의 출시를 심의할 때, 다른 경쟁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상품이 모로코 금융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하는데, 이 관행이 기존 금융회사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프랑스계 BNP Paribas가 BMCI 지분 66.74%, Société Générale이 SGMB 지분 56.94%, Crédit Agricole이 Crédit du Maroc 지분 77.03%

를 차지하는 등 프랑스의 모로코 기업금융 및 소매금융 부문의 지배력이 강해지고 있다. 또한, 스페인도 Santander 은행이 Attijariwafa 은행 지분 5.26%를 소유하고 있고, 미국 CitiBank Maghreb가 1967년 이래 100% 단독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통신서비스

기간통신, ISDN(통합서비스디지털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며, Maroc Télécom의 유무선망 사용이 의무적이며,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 사업자는 모로코 내 법인 설립을 해야 한다.

모로코 최대 통신회사인 Maroc Télécom의 최대주주는 UAE의 Etisalat (53%)이며, France Telecom은 2015년 Orange(전 Meditel) 지분 9%를 추가 매입하며 총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모로코에서 세 번째로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한 Inwi은 쿠웨이트 통신사 Zain Al Ajial이 69%의 지분(Inwi 산하계열 Wana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관광서비스

관광산업은 인광석 및 자동차 수출에 이은 큰 외화 수입원으로 연간 방문객 수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 1,200만 명을 넘어섰다. 국왕(모하메드 6세) 주재 하에 2010년 11월 30일 선포한 '비전 2020'은 2020년까지 관광객 수를 현재의 두 배인 연간 2000만 명까지 늘려서 세계 20대 관광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8개 신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20만 침상을 신설해 연간 관광 수입 17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으며, 특히 '지속 가능한' 친환경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관광 육성 산업은 관광지의 다양성/관광의 질 향상/지속 가능한(친환경)관광이라는 3가지 실천 축을 기반으로 6가지 세부 실천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6가지 세부 실천계획은 Azur Plan(해안 연안 개발사업), 친환경 개발,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개발, 스포츠&레저, 의료관광, 숙박시설개발(Biladi)이며,

국내외에서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관광개발기금(FMDT)을 조성하는 한편, 유럽과 중동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하는 등 2020년까지 총 120억 달러를 관광산업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 도로, 철도 등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항공사 취항이 늘어나는 등 관광산업 전후방 산업과 관련 서비스 분야의 활동이 촉진되어 궁극적으로 모로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외국 여행사는 모로코 지사 설립 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광 가이드 사업은 모로코 국적을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유통서비스

모로코는 아직까지 '밀수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밀수가 성행하며 밀수품이 유통구조를 왜곡시켜왔다. 주로 알제리 국경과 스페인령인 세우타, 멜리야로 밀수품이 유통되며 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 활동 위축 및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기피를 초래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이런 왜곡된 유통구조를 개혁하고 현대식 유통·물류 시스템을 도입·확산해 내수경기의 활성화와 고용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라와(Rawaj) 계획을 2007년 6월 발표하였다. 2020년까지 유통산업의 GDP 비중을 20%로 확대하고 4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로코 정부는 유통개발기금(Fonds pour le développement de la distribution) 1.2억 달러를 조성했으며, 중소 유통업체, 자영업자, 프랜차이즈업계 등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모로코 소매유통의 현대화(대형-체인) 비율은 중산층의 증가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형유통업계의 영향력 역시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모로코 투자진흥청은 대형유통업체의 매출액이 국가 총생산(GDP)의 11%를 차지했고, 노동가능인구의 13.2%를 고용했다고 분석했다. 대형 유통 매장은 지속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며 지난 5년간 연평균 15%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00년 14개이었던 종합 식품 매장 수는 2016년 기준 60개의 대형 마트(hypermarket)와 400개의 슈퍼마켓(supermarket)으로 늘어났다.

모로코 ONA그룹계열 Marjane, Acima, INA 소속 Aswak Assalam, 프랑스 Carrefour가 투자한 Label'Vie(독일계 Metro합병), Atacadão Maroc 및 터키 BIM 등이 체인 형 유통서비스 시장을 분할하고 있으며, 프랑스 Casino도 시장 진출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투자 장벽

1995년 제정된 '투자헌장(Investment Charter)'이 2011년 개정되면서 특정 분야를 규제하던 법들이 철폐되어 현재는 영역과 상관없이 1,8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행위는 단일 법령에 의해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 대표적 혜택으로는 각종 세금 경감, 등록절차 간소화, 법인세 및 토지 취득 수수료와 부가 가치세 면제, 프로젝트 소요 수입품에 대한 낮은 관세율 부과 등이 있다. 또한 개정안은 전자, 건설, 광업, 수출, 농업, 호텔, 수공예, 섬유, 석유 등 주요 분야에는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동등하게 특별 혜택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 고용인원이 5,000명 이상이거나 2.35억 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특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로코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국제 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IGA)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국제 협약을 따르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 운영 중인 16개 지역 투자센터(RICs: Regional Investment Centers)는 외국 기업에게 모로코 시장 진출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설립된 모로코 투자진흥공사(AMDI:Agence Marocaine de Développement des Investissements)는 투자유치를 위해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적극 개최하는 한편, 투자와 관련된 성과 지표를 분석,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간하면서 투자관련 법안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모로코 투자진흥공사는 모든 투자자에게 전문적인 무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공적인 모로코 투자를 위해서는 언어, 문화, 종교, 제도적 차이를 고려하여 모로코의 문화와 역사를 잘 이해하고 언어(아랍어, 불어, 스페인어) 구사에 어려움이 없는 유능한 현지 파트너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에너지, 수자원, 철도, 운송, 광업, 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모로코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해당 사업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 보험 및 제약업 등 일부 분야에는 특수 규정 및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외국인 고용 제한

자국인 고용 창출을 위하여 외국계 기업이 외국인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의 외국법인 취업을 위한 비자 취득은 해당 외국법인이 300인 이상의 모로코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또는 취업대상자가 보유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모로코 인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로코 노동청(OFPPT)이 인정할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 및 처분

농경지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과 매각대금 해외 송금은 자유롭다. 외국인의 농경지 소유가 제한되어 있으나 임차는 허용되고 있으며, 1970년대 프랑스인들로부터 몰수하여 국유화한 농업용지의 장기임대 공개입찰에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

모로코 현지진출을 위해서는 단독(100% 지분 소유)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 파트너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것인지를 정하게 된다. 또는 국내 모기업의 지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

(1) 현지법인

(1-1) 유한회사 (SARL)

최소 1인에서 최대 50인의 주주와 1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모로코에서 가장 흔한 회사 형태이다. 법인세는 설립 후 5년간 면제되며 법인세율은 35%이다.

(1-2) 주식회사 (Société Anonyme)

최소 5인 이상의 주주와 최소납입자본금(상장사는 3,000,000디르함, 비상장사는 300,000디르함)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 액면가는 최소 50디르함(상장사 최소 10디르함)이다. 큰 규모의 장기적인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할 때 가장 유용한 형태의 회사로 법인세율은 35%가 부과된다.

(1-3) 합자회사 (Société en Commandite)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재산 출자에 한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유한책임사원과 경영을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단순합자회사와 상장합자회사로 구분된다.

(2)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설립이 가장 용이한 형태로서 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한국 본사의 위임장만으로 사무소 설립이 가능하며, 본사 직원을 파견하거나 현지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모회사의 명의와 회계를 사용하여 어떠한 계약 체결도 할 수 없으며, 모로코 내에서 영리활동이 금지되고 시장조사, 홍보, 판매 대리인 관리 등 비영리 활동만 수행할 수 있다.

(3) 프로젝트 수행목적의 한시적 연락사무소

정부발주 입찰에의 참가 또는 수주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형태로서 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한국본사의 설립위임장과 해당 프로젝트의 모로코 발주기관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4) 해외지사

외국법인의 모로코 현지 지점인 해외지사는 모로코 법에 따른 내국인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외국법인으로 취급되며 영리활동이 제한된다. 지사 설립은 일반적으로 한시적인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상업 활동이 없는 경우에 적합한 진출 유형이다. 모로코 현지에서 정상적인 영리활동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조세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현지법인 설립이 보다 적합하다.

노무

모로코의 노무관련 법규와 관행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피고용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형식으로 발전해왔다. 모로코는 지난 2004년 6월 7일 기존 노동법을 보완한 신 노동법이 공표되었다. 노동계약과 관련한 개별 분쟁은 사회재판소(Tribunaux Sociaux)에서 관장한다.

모로코에서 고용은 정규직(상호계약이 파기될 때까지 고용), 계약직(계약기간에 한해 고용, 계약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임시직(한시적으로 고용)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정규직과 계약직의 경우 고용주가 횡령, 배임, 무단결근 등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고용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고용할 수 없다.

고용 계약서는 고용주, 피고용인 모두 배석한 가운데 작성해야 하며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각각 한 부씩 소지해야한다. 고용 형태, 임금, 근로 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피고용인의 서명이 있어야 유효하다. 모든 고용주는 사회보장당국(CNSS)에 가입하여 임금 지급 대상자 리스트에 등록하고, 급여, 고용주세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CNSS 신고기록이 노사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정규직원은 누진제에 따라 산정되는 해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근무기간에 따라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해고의 어려움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크며 이는 생산성 증대 및 투자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조합도 모로코 노동자연합(UMT), 모

로코 노동연맹(UGTM) 등 전국적으로 4개가 존재하며 사회적인 영향력도 상당한 편이다.

경쟁 정책

모로코는 경쟁법을 통하여 자유로운 가격결정, 진입장벽 해소, 투명성, 공정한 경쟁 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민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쟁위원회를 설치하여 카르텔, 우월적 지위남용 등 반경쟁 행위와 동종 업종 기업 간 인수·합병 허가 등에 관해 총리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로 지정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격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정부는 밀가루, 설탕, 석유 등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식수, 전기, 대중교통 등 기초 서비스,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담배 등 독점상품 등에 대해서는 가격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실례로 국내 빵 가격 급등으로 2012년 10월 1일부터 밀가루에 대한 관세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되기도 하였다.

기타 장벽

모로코는 세계경제포럼(WEF)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전년(2016)보다 2단계 상승한 75위를 기록하였으며, 제도와 인프라 분야에서는 54위를 차지하면서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았다. 반면, 국가경쟁력(114위), 노동시장 경직성(119위), 전반적인 사업 환경(99위), 정보통신 환경(93위) 등은 개선해야 할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다.

모로코는 유럽연합(EU)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상품 대금의 계약과 지불이 유로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과의 거래에서도 상당수 바이어들이 유로화 결제를 선호해 왔다.

모로코와 한국 간에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일까지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개선 실적

모로코 정부는 다자간 및 양자 협정체결을 확대하면서 규제완화, 정책투명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친 비즈니스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모로코는 2009~2012년간 자발적인 최혜국(MFN) 실행관세 인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의 경우 2010년에 비해 공산품 품목별로 관세율이 2.5~7.5% 포인트 인하되어 우리 상품의 對모로코 시장접근이 개선되었다.

더불어 전자거래의 확대, 유통 구조개선,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EU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철폐로 승용차, 냉장고 등 품목에 따라 EU산 특혜관세율과 최혜국 관세율 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한국 등 아시아지역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경공업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한국산 경공업 제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소비재 및 중간재 시장은 중저가 제품 유입으로 인해 가격경쟁이 치열하여 한국산 제품의 진출이 쉽지 않은 반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확대되고 있는 중산층 소비시장을 고려하여 선진국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제품의 시장 개척 가능성은 아직 긍정적이다.

바레인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개관

일반 사항

공식국명	바레인 왕국(The Kingdom of Bahrain)
수도	마나마(Manama)
면적	760㎢(서울의 약 1.3배)
인구	150만명 *이 중 바레인 국적자는 68만명(약 45%)
언어	아랍어(공용어), 영어(통용)
종교	이슬람교(약70.3%), 기독교(약14.5%), 힌두교(9.8%) 불교(2.5%) 등
건국일	1971.8.15 영국으로부터 독립, 2002.2.14. 바레인 왕국으로 국명 개칭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국가원수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
입법부	양원제 80의석 (상원 40명, 하원 40명), 임기 4년 2018년 하반기 총선예정
기후	고온, 습한 사막성 기후
시차	한국이 바레인보다 6시간 빠름 (한국시각 오후 7시가 현지시각 오후 1시)
화폐단위	바레인디나르(Bahrain Dinar, BHD), 1USD=0.376BD(고정환율)

한-바레인 관계

수교일자	1976년 4월 17일
공관현황	우리측 : 11년 주바레인대사관 재개설 바레인 : 주중국대사관에서 겸임 (주중국대사관 : 한-바레인 정무, 바레인경제개발청(EDB) 서울사무소 : 한-바레인 경제)
수출입현황(16년)	수출 : 1.8억 달러 수입 : 2.48억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건설수주실적(누적)	55건(56.5억불)
주요진출기업현황 (17.9 현재)	영진공사,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LGCNS, 삼성STP, GSENC, LSCNS, 영풍정밀
양국 주요협정 체결	17.9 한-바레인 통신부간 MOU 15.9 한-바레인 공동위 설립 MOU 13.8 바레인'도시보안 지휘통제센터'구축 MOU 13.8 경제통상/기술훈련협력협정 12.5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상공회의소 협력약정 87.3 문화협정 84.5 통상증진 및 경제기술협력협정

경제 개황

바레인은 면적 760㎢의 작은 국가이지만 걸프협력이사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의 회원국이자 이슬람 금융의 허브로서 역내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형태는 입헌군주제이며 1999년부터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 국왕이 바레인을 통치하고 있다. 2017년 11월 기준 바레인의 인구는 약 150만 명이며(외국인이 약 55%를 차지), 1인당 국민소득은 22,354 미불(2016년, World Bank)이다. 바레인은 자유경제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외국인에 한해 주류 판매가 허락되는 등 이웃 아랍 국가에 비해 비교적 개방적이다.

바레인의 경제는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하며, 석유 및 가스 수입은 정부 수입의 약 80%를 차지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석유 매장량으로 인해 바레

인 정부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경제다각화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바레인의 원유 매장량 및 가스 매장량은 각각 약 6억 3,200만 배럴(2015년 기준, 일일 원유 생산량 약 45,000 배럴), 약 3조㎥(2014년 가스 생산량 169억㎥)로 추정된다.

바레인은 2008년 공공분야 경쟁력 강화 및 민영화 정책을 골자로 한 국가경제 중장기 국가발전계획 "바레인 경제비전 2030(Bahrain Economic Vision 2030)"을 발표하고 교육, 노동, 비즈니스, 연수/훈련 등의 분야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민 고용증대정책(Bahrainization)을 통해 자국민 실업률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바레인 정부는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동의 금융 허브라는 명성에 걸맞게 금융업이 잘 발달되어있다. 현재 두바이 및 카타르 등 이웃 국가와의 경쟁에서 차별성을 두기 위해 바레인 정부는 ▲관광 ▲정보통신기술 ▲의료 ▲교육 ▲비즈니스 ▲금융 서비스 6개 부문의 경제 클러스터 확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바레인 정부는 2016년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3억 1,200만 미불 규모의 제1기 자유무역지구 'Investment Gateway Bahrain'가 출범(9월)하였으며, '비전 2030' 이행을 위한 '정부혁신포럼(9월)' 등 다양한 경제개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국제 유가 하락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책 마련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바레인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 일환으로 2017년 9월 100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2월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2025년까지 국가 에너지 비율의 5%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국가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바레인으로서는 최초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다.

그러나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대두된 일부지역 치안문제,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갈등으로 인한 무력시위, 이란과의 갈등 등은 여전히 국가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가 재정 악화에 따른 공공재 가격인상, 관세 인상, 각종 보조금 폐지 (▲휘발유가격 60퍼센트 인상, ▲담배·주류 관세 인상, ▲수도·전기보조금 폐지) 등을 비롯하여, 2018년 중반까지 VAT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관계당국은 GCC 회원국마다 규정은 달라도 기본 준수사항은 유사할 것이라고 언급(GCC는 VAT 5%의 표준세율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부과예정)하며, 외국자본·기업 유인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

외교관계

한국과 바레인은 1976년 4월 17일에 수교하였다. 한국은 1976년 6월 28일에 주바레인대사관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1999년 3월 20일에 대사관을 폐쇄하면서 대사관 업무를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에서 겸임하였다. 그 후 2011년에 주바레인대사관을 재개설하였다.

한편, 바레인 측은 베이징 주재 바레인대사관에서 한-바레인 외교관계를 관할하고 있으며, 2017년 7월 바레인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서울사무소가 개소되어 한-바레인 경제관계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과 바레인의 교역관계

한국과 바레인 양국 간 교역은 상호보완적 구조의 수출입 거래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국은 바레인에 자동차, 철강,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건설광산기계, 합성수지 등을 수출하고 석유제품, 알루미늄, 질소비료 등을 수입하고 있다. 한국이 바레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90% 이상이 석유제품, 알루미늄 등이다.

2017년 9월 기준 대 바레인 업종별 투자현황(누적)

(건, U$천)

업 종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총계	42	15	252,095	138,31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	2	198,653	91,022
금융 및 보험업	2	2	45,000	45,000
제조업	6	2	4,884	1,157
건설업	14	5	1,197	58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2	393	39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1	1,133	133
도매 및 소매업	2	1	26	26
운수업	3	0	263	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	0	546	0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KOEXIM

한국의 對 바레인 수출입규모(2013~2018년)

(단위: 천달러)

년도	수출	수입	교역수지
2018년	193,412	562,955	△369,543
2017년	289,756	393,886	△104,130
2016년	179,725	248,213	△68,488
2015년	186,802	498,739	△311,937
2014년	275,226	615,508	△340,282
2013년	233,977	598,647	△364,670

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바레인은 2003년 1월 GCC 관세동맹의 일원으로서 관세부과 시스템을 도입했다. 바레인은 428개의 물품(주로 식료품 및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무관

세를 적용하고, 그 외에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술과 담배는 제외). 또한 원칙적으로 원자재 수입이나, 생산에 사용될 반제품들, 혹은 재수출될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각각 125%, 110% 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국제유가하락에 따른 정부 재정적자를 극복할 방안으로 2016년 2월 동 품목들에 대한 관세를 각각 225%, 200%로 인상하였다.

무관세	428개의 품목(주로 식료품과 의료품)
5% 수입관세	428개 외의 모든 품목(술, 담배 제외)
200% 수입관세	담배
225% 수입관세	술

바레인은 GCC 내에서 생산된 모든 물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GCC 내에서 부가가치가 40% 이상 추가된 상품은 국내생산품으로 인정하여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한다. GCC국가들은 GCC 역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공동으로 같은 관세를 부과하며, 해당 물품이 최초로 수입되는 GCC 국가에서만 통관절차를 밟게 하고 그 후 다른 GCC 국가로 이동될시 세관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single-point of entry 제도를 운영 중이다.

수입 시 필요한 세관 서류

수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입세관 신고서(Import Customs Declaration Form; CDF)
- 화물인도 지시서
- 상업 송장(영어 혹은 아랍어) 3부
- 포장 명세서(중량, 물품 분류 등) 2부
- 원산지 증명서(수출국 상공회의소에서 발행된 아랍어 혹은 영어본)

- 보험증명서(해당사항이 있을시)
- 선하 증권(B/L) 원본
- 관련 기관의 수입 승인/허가서 (제한된 물품일 경우)
- 은행지급 명세서 혹은 은행 영수증
- 통계관세 신고(statistical customs declaration): 만일 상품의 최종 목적지가 최초 진입국이 아닌 다른 GCC 국가 중 하나일 경우, GCC 국가 내에 출입국을 표시하는 통계관세 신고를 작성해야 한다.

통관 절차상의 장벽

수입자가 세관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관세 납부, 통관담당자에게 수입 시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해당하는 하역료 지불, 수입품목 검열, 세관통과 등의 통관 수순을 거치게 된다. 2003년 GCC 관세동맹 발효에 따라 수입 물품이 GCC 역내 최초로 진입하는 국가에서 관세를 지불하게 되고, 그 이후로 GCC 내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첫 국가에서 지불한 관세지불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국가들로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바레인은 OFOQ(아랍어로 수평선을 의미)라는 온라인 세관시스템을 통해 비교적 통관절차가 용이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통관수속도 허용하고 있다.

수입금지 및 규제

다음과 같은 품목들은 바레인에 수입이 금지된다.

- 재활용 타이어
- 석면 또는 석면을 포함한 제품
- 야생 상아, 상아로 만든 장식품

○ 살아있는 돼지

○ 마약류

○ 저작권 위반 소프트웨어 및 음란물

○ 야생동물

○ 양식진주

○ 무선조정 모형비행기

○ 염화메틸(methyl chloride)등과 같은 보건부에서 지정한 위험물질이 포함되어있는 장난감

○ 시클람산염(cyclamates)이 포함된 음식이나 과자

다음과 같은 품목들은 수입이 제한되어 관련 부처의 승인이 요구된다.

○ 서커스 용 야생동물, 말 (건설·지자체·도시계획부 승인 필요)

○ 동물, 동물의 생산물, 육류, 생선, 과일, 야채, 나무 (농업부 승인 필요)

○ 순수 알콜·이소프로판올, 철제 수갑류, 무기류 (내무부 승인 필요)

○ 방사선조사식품 및 의약품 (보건부 승인 필요)

○ 잡지, 출판물, 영화 등 저작권과 관련 있는 품목 (공보부 승인 필요)

○ 통신, 라디오, TV 전파 수신 장비(통신 규제청 승인 필요)

그 외 식품의 경우, 시클람산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제조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들은 개별 연구소가 있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수입해야 하며 이러한 제품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한 개 이상의 GCC 국가로부터 승인되어야 한다. 육류에 대해서는 수출국으로부터 안전증명서와 수출국 소재 이슬람센터에서 발행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되었음을 증명하는 할랄 증명서가 요구된다.

표준, 검사, labelling 장벽

바레인은 다른 GCC국가들과 함께 지역 내 통일 규격을 제정하기 위한 걸프 국가 표준화 기구(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Organization for GCC countries)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바레인내 대부분의 표준은 걸프 표준화 및 국제적 표준을 동시에 따르고 있으며, 걸프 표준이 존재하는 한 바레인은 새로운 표준을 만들지 않는다. 또한, 바레인 당국이 제정하는 표준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 하에 만들어지고 있다.

라벨링 부문에서 바레인은 GCC 라벨링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식품의 경우 품목, 브랜드 이름, 제조일자, 유효기간, 생산지, 제조사 이름과 주소, 용량, 원료 등을 표기해야 한다. 라벨링은 아랍어로만 표기하거나 아랍어와 영어를 같이 표기해야 한다. 특히, 돼지고기가 포함된 식품은 반드시 라벨에 돼지고기 포함 사실을 표기해야 하며, 돼지고기가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라벨에 표기하지 않을시 해당 제품은 압수되며 일정기간 수입이 금지된다.

환경관련 규제

바레인은 2011년의 보건부의 각서에 따라 139가지의 화학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모든 종류의 폐기물, 방사선 물질, 투기, 유독성 물질, 석면(asbestos)과 석면부산물의 수입, 제조 및 산업용도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바레인은 2002년 투명하고 제도화된 정부조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새로운

정부조달법을 시행했다. 2003년 바레인 입찰청이 설립되어 BD10,000 이상 모든 정부 입찰과 구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BD10,000 미만의 입찰의 경우 각각의 정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BD1,000,000 이상의 입찰건에 대해서는 입찰청이 다양한 경로로 널리 입찰공고를 전파할 의무가 있다.

입찰이 공고되면, 관심 있는 업체들은 입찰서류(tender document)와 입찰제출증(Bid Submission Form; TB02)을 구비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관련 서류는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수요일 오후 1시 30분 까지 접수를 받는다. 접수된 서류들은 입찰청, 프로젝트 담당 부처 대표, 입찰 참여업체, 계약업체 등 관련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동시에 개봉하며, 입찰서류 개봉의 결과는 즉시 입찰 가격 리스트에 기록되고, 입찰청 게시판 및 웹사이트에도 공개된다. 이러한 입찰 서류 공개 행사는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입찰서류 심사가 끝나면, 관련 담당부처에서 기술과 금융 심사를 거쳐 주요 신문과 입찰청 홈페이지 등에 최종 낙찰 업체가 발표되며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바레인은 1955년 상표권 및 특허 관련 산업재산권법을 제정했다. 지식재산권은 상공부의 산업재산국(Industrial Property Directorate)에서 맡고 있다. 바레인의 산업재산국은 걸프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재산 사무소 중 하나이며, 국제적 인지도 또한 높다. 바레인은 1997년부터 저작권법 위반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비디오, 오디오, 소프트웨어 등을 상업적으로 복사 및 배포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관련 국제기구 및 조약 가입현황

바레인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 및 조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1995)
- WIPO Convention(1995)

- Berne Convention(1997)
- Paris Convention(1997)
- Madrid Protocol(2005)
- Nice Agreement(2005)
- Patent Law Treaty(2005)
- WIPO Copyright Treaty(2005)
-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2005)
- Rome Convention(2006)
- Brussel Convention(2007)
- Patent Cooperation Treaty(2007)
- Trademark Law Treat(2007)
- Budapest Treaty(2012)

서비스 장벽

중동지역의 보험관련 허브로서 바레인의 위치를 강화하고 보험 산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바레인 중앙은행은 보험회사의 소유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과거에는 보험회사 설립 시 51% 바레인인 지분이 요구되었던 것과 달리, 2006년 이후부터는 보험회사 지분의 100%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투자 장벽

투자여건 · 환경

바레인 정부는 외국투자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자유주의 노선을 취하며 외

국 투자가들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힘쓰고 있다. 바레인 내에서는 영어가 널리 통용되며, 오랫동안 중동 지역 무역통상의 중심지로서 개방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사업 및 투자가 용이한 환경을 제공한다. 바레인은 GCC국가들 중 미국과 최초로 FTA를 체결(2006년 8월)한 국가이기도 하며, 미국의 제5함대가 주둔해있는 미국의 주요 역내 동맹국이다. 바레인은 역내 가장 큰 시장인 사우디 동부에 인접해 있으며, 25km의 연륙교인 King Fahd Causeway를 통해 사우디와 연결되어 있다. 2014년 6월 바레인과 사우디는 급증하는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국을 잇는 총 50억 불 규모의 제2의 연륙교(King Hamad Causeway)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24년까지 사우디-바레인 간 4차선 왕복도로 및 왕복철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한 글로벌 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바레인은 2016년 48위에서 4단계 상승해 올해 44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거시경제환경(macroeconomic environment) 및 기술 흡수성(technological readiness)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국가경쟁력지수(GCI)는 국가의 경쟁력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 정책 등의 12개 세부항목을 종합하여 순위를 결정하며, 바레인은 연구기관(23위), 인프라(33위), 거시경제적 환경(108위), 보건 및 초등교육 환경(37위), 고등교육 및 훈련(39위), 상품시장 효율성(23위), 노동시장 효율성(37위), 금융시장개발(46위), 기술 흡수성(31위), 시장규모(90위), 비즈니스(36위), 혁신성(45위) 등의 순위를 기록

또한 바레인은 해외거주자 네트워크 사이트인 인터네이션(InterNations)이 세계 65개 주요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166개국 국적의 외국인 1만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결과 외국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Best Expat Destination)로 선정(△업무 만족도, △정착의 용이성이 높이 평가되어 2016년 19위에서 2017년 1위로 상승되었다.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증가는 바레인 정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이다. 바레인은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6"에서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국가 부문 189개국 중 65위를 기록했으며, 2015년 월스트리트저널과 헤리티지재단이 주관하는 경제자유지표에서는 186개국 중 18위를 기록했다. 바레인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교육, 연수 서비스, 관광, 금융서비스, 보건 서비스와 석유화학 분야에 새로운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다음과 같은 분야는 바레인 내 자국인/외국인 모두 영업이 불가하다.

- 도박, 주류 제조, 담배 제조, 담배 자동판매기 수입, 마약제조, 무기제조
- 모든 종류의 폐기물 수입, 방사선 물질 저장·투기, 유독성 물질 수입, 석면(asbestos)과 석면부산물의 수입·제조, 금지된 화학약품 수입과 산업용도로의 사용
- 제1종 우편 (바레인 우체국(Bahrain Post)이 독점)

다음과 같은 분야는 바레인 내국민과 바레인 기업에게만 영업이 허가된다.

- 어업
- 부기(book-keeping)와 회계서비스(회계감사 제외)
- 레이싱카 연료 수입, 수출, 판매
- 화물 통관

다음과 같은 분야는 바레인 포함 GCC 국민들과 GCC 기업에게만 영업이 허가 된다.

- 부동산 서비스업과 부지와 건물 임대 및 관리
- 언론사와 출판사, TV, 영화, 라디오 연극제작과 관리, 배포관련 업종
- 운수업, 해양 크루즈, 운전 연수, 오토바이 대여, 렌트카, 콜택시

○ 석유관련 제품 공급(주유소 등), 가스분배

○ 공공기관 행정지원 서비스

○ 하지와 움라(이슬람 성지순례) 서비스

○ 외국인 노동력 공급

○ 상업흥신소(commercial agency)

지분 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 상의 제한

2016년 5월 바레인 상원은 외국인의 100% 기업 지분 획득 승인, 외국기업(인) 활동 제한 분야 완화 등을 포함한 국왕의 칙령(Royal Decree No. 28, 2010년 10월)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2001 기업법(2001 Commercial Companies Law)을 일부 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동 기업법 개정에 따라 ▲외국기업(인) 지분 참여 확대(49%→100%), ▲파산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인수, ▲외국인(법인) 회사 설립 기준 완화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으며, 과거 외국기업(인)의 100% 지분 획득이 제한되었던 아래 업종들에 대해 지분 참여 제한이 폐지되었다.

- 외국기업(인) 지분 참여 확대(49%→100%) : (해당업종) 숙박, 요식, 행정서비스, 관광·레저, 예술, 보건, 사회복지, 정보통신기술, 제조, 채석·채굴, 과학·기술, 상수도 등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바레인 국민과 GCC 국민은 바레인 내 모든 지역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2001년 이후부터 비GCC 외국인과 외국기업도 바레인 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졌지만 일부지역에 한정된다. 2006년 이후부터는 비GCC 외국인의 경우 고층의 상업용 혹은 주거용 부동산 소유가 가능해졌으며, 정해진 지역의 상업, 관광, 금융, 보건, 교육 및 연수 센터 등 용도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비GCC 외국인이 상업용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Ahmed Al-Fateh(Juffair)
- Hoora
- Bu Ghazal
- Seef
- Diplomatic Area (북쪽 마나마지역 포함)

비GCC 외국인이 주거용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Durrat Al Bahrain
- Dannat Hawar
- Riffa Views
- Villamar
- Amwaj Island
- Bahrain Financial Harbour
- Bahrain Bay
- Diyyar Al Muharraq
- Norana

Amwaj 섬 프로젝트 개발사인 Oasis Development Company는 Amwaj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특별 거주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된 Durrat Al Bahrain은 600,000m^2 면적의 부지에 총 4,00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 건설 프로젝트이며, 외국인들의 주거용, 상업용 소유가 허가된다. 바레인 내 대부분의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택과, 빌딩, 아울렛, 아파트 등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레인은 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취득과 처분을 용의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주택 대출의 모기지(mortgage) 개념이 존재하나, 모기지 지불 불이행시 대출기관이나 타인이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는 없다.

바레인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2015년 2월에 발효된 부동산개발법에 따르면 건축물 시공시 시공일과 완공예정일이 포함된 계획서를 사전 공지하여 완공예정일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하며, 위반시에는 최대 BD 10,000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바레인 정부는 새로 시행된 부동산개발법이 외국인 투자자의 바레인 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여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는 방법 중에는 정부로부터 임대하는 방법도 있다. 산업용 부지는 최대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상업 임대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분야에 정부소유 부지개발을 위탁해왔다. 쿠웨이트 파이낸스 하우스(KFH)가 개발한 히드 산업공단(Hidd Industrial Park)이나 Tameer가 설립한 Bahrain Industrial Wharf 등이 대표적인 산업용 부지 개발 사업으로 꼽힌다.

상업용/공업용 부지 매입/건축가

산업용 부지	연간 $3.90/m²
산업용 건축시공 가격(격납고식 구조)	$352/m²
창고(격납고식 구조)	월 $5-$80/m²

월평균 주거 임대료

방 2개 아파트	$1,440
방 3개 빌라	$1,920

사무실 월 임대료

구분	위치		
고급 사무실	World Trade Center	$24/m²	15%의 관리비 별도
	Financial Harbor	$24/m²	
	Seef	$19/m²	
	마나마 혹은 Diplomatic Area	$19/m²	

상가 임대료

평균(제곱 미터 당)	월 $42.55
Seef Mall(제곱 미터 당)	월 $53.2

그 외 전기, 가스, 수도요금

바레인 정부는 국제 유가하락에 따라 누적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3월 1일부터 향후 4년간 점진적으로 전기·수도 보조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바레인 거주 외국인, 2주택 이상 소유 바레인인 및 대형 기업의 전기·수도 사용에는 아래 인상된 요율이 적용된다.

○ 상업용

종류	현행 (2016년 이전)
전기	$0.04/kWh
수도	450m³ 까지: $0.8/m³
	그 이상 추가: $1.06/m³

사용량	2016	2017	2018	2019
1-5,000 kWh 까지	$0.04			
5,001-250,000 kWh 까지	$0.05	$0.06	$0.07	$0.08
250,001-500,000 kWh 까지	$0.06	$0.065	$0.072	
500,001 kWh 이상	$0.08			
1-450m³	$1.06	$1.46	$1.72	$1.99
451-1,000m³	$1.33	$1.59	$1.86	
1,001m³ 이상	$1.99			

○ 주거용

종류	현행(2016년 이전)		2016	2017	2018	2019
전기	1-3,000 kWh	$0.01	$0.02	$0.03	$0.06	$0.08
	3,001 - 5,000 kWh	$0.02	$0.03	$0.05	$0.062	
	5,001 kWh 이상	$0.04	$0.05	$0.06	$0.07	
수도	1-60 m^3	$0.07	$0.21	$0.53	$1.19	$1.19
	61-100 m^3	$0.21	$0.53	$0.8	$1.33	
	101 m^3	$0.53	$0.8	$1.06	$1.59	

제1기 자유토지보유 무역지대 출범

바레인 노동·지자체·사회개발부는 2016년 9월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3억 1천2백만 미불 규모의 제1기 자유무역지대(Freehold Trade Zone) 'Investment Gateway Bahrain' 프로젝트의 출범을 발표하였다. 바레인 북동부연안 히드(Hidd) 지역에 설립된 무역자유지대는 300구역으로 이루어진 총 6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자에 따르면 약 95퍼센트가 사전 거래되었다고 한다. 한편, 노동부는 제1기 자유무역지대의 성공적 출범에 힘입어 2018년까지 총 2백만 제곱미터 규모의 제2기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할 예정이다.

금융상 제한

바레인중앙은행(Central Bank of Bahrain, CBB)은 금융기관의 인·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바레인중앙은행은 국제적 회계 기준을 도입·적용하여 바레인 내 금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바레인은 자본금이나 이윤, 배당금 등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데 대해 외환관리 제한(exchange control restriction)이 전혀 없으며, 100% 송금을 보장한다. 환율도 미화에 고정되어있다(BD 1=$2.6596).

세제상 제한

세제 관련법은 바레인기업과 외국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국 투자가들도 현지 기업과 동일한 법규에 따라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6~2017 국가경쟁력평가" 에 따르면 바레인은 세계에서 4번째로 경쟁력 있는 세금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GCC국가들 중 가장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

○ 바레인은 가스와 석유관련 회사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소득세도 없다.

○ 바레인은 자본이익(capital gain), 배당금(dividends) 등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인지세(stamp duty): 부동산매매 또는 부동산에 의해 발생하는 이윤과 관련한 서류업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BD 70,000까지는 부동산 매각 혹은 매입액의 1.5%, BD 70,001에서 BD 120,000까지는 2%, BD 120,000 초과 시는 3%가 부과된다.

○ 지방세(municipal tax): 부동산(사무실, 주택 등) 임차료에는 7~10%의 지방세가 부과되며, 임차인과 임대주 중 지방세를 어느 쪽이 부담할지를 임대차 계약에 명시한다.

○ 사회보장세 : 연금 및 의료 보장, 실직보장을 위해 바레인 정부는 월급의 일정 비율을 사회보장세로 납부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 바레인인 고용 시, 고용인이 12%, 피고용인이 7% 부담.
- 외국인 고용 시, 고용인이 3%, 피고용인이 1% 부담.

○ 훈련부담금(Training Levy): 50인 이상 사업장 중 피고용인에게 훈련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바레인 정부는 월급의 일정비율을 훈련세로 부과한다(바레인인: 1%, 외국인: 3%).

○ 외국인 노동자세 : 외국인 노동자세는 회사가 외국인 고용 시, 한 명 당 매달 BD1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BD5)의 기여금을 노동시장 규제기관(LMRA: Labour Marker Regulation Authority)에 지불하도록 한

것으로, 2008년 처음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현지노동자 고용을 장려하며, Tamkeen이라는 정부산하기관에서 현지 노동자에게 직업훈련을 시킬 목적으로 시행한다.

- 상업등기(CR)비 인상 : 주재국 산업통상관광부와 상공회의소(BCCI)는 상업등기비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영세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2017년 9월 실행예정이던 상업등기(CR)비 인상을 2018년 3월까지 6개월 연기에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바레인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정은 2013년 4월 26일 발효되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양국 과세당국은 상대국에 자국 탈세혐의자에 대한 금융 및 과세자료 요청이 가능해졌으며, 양국 기업들이 상대국에 진출할 경우 이중과세가 방지되어 세금부담이 완화되었다.

-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에 10%, 이자에 5%, 사용료에 10%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배당소득 제한세율은 5%이다.
- 양국은 상대국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하기로 합의했다.

경쟁 정책

살만 왕세자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레인 경제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Board)는 민영화 정책과 경쟁 기조를 바탕으로, 교육, 노동, 비즈니스, 연수/훈련 등의 분야 개혁을 위한 Economic Vision 2030을 발표하였다. 준정부 기관들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체제를 바꾸기 위해 바레인 정부는 민간분야와의 경쟁을 통한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2002년 국왕 칙령에 의거하여 관광, 정보통신, 교통, 전기, 수도, 항구와 공항 서비스, 석유 및 가스, 우편 서비스 등의 민영화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2006년에 설립된 Bahrain Mumtalakat Holding Company는 바레인 정부의 투자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2017년 8월 현재까지 약 30개 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14,6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록하였다.

기타 장벽

노동관련

(1) 자국인화 정책(Bahrainization)

바레인에서는 기업이 전체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바레인인(人)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10명 미만의 회사일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는 Bahrainization 쿼터가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될 경우에도 금융 및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10% 내외이다.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25~30%의 자국인 의무고용률이 적용된다.

2016년 5월 바레인 노동시장규제기관(LMRA: Labour Marker Regulation Authority)은 자국인화 정책에 명시된 쿼터를 초과하여 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하기를 원하는 고용주에게 초과 고용 외국인 노동자 1명당 BD 200(2년 노동비자 발급 기준)의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상기 분담금은 기존 외국인 고용 등록세(BD 200, 2년 노동비자 발급 기준)와 매달 납부하는 외국인 노동자세(BD 10)와는 별개이다.

- 주요산업 자국인화 고정비율: 석유관련 산업(20~30%), 화학약품 제조(10~30%), 알루미늄(15~30%), 건설(0~8%), 호텔관광(0~25%), 부동산(10~40%), 금융(30~50%)

(2) 최저임금제도

2014년 8월, 숙박업계 종사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BD 300로 보장(단, 바레인 국적자에 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다른 분야 노동자들에

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BD 300) 보장 법안은 2014년 1월 하원의 투표만 거친 채 계류 중인 상태이다. 법적으로 명문화 되지는 않았지만, 바레인은 학사학위 이상은 BD 400, 그 이하는 BD 300의 최저임금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민간 및 공공분야)의 경우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소 BD 150를 최저 임금으로 지불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다.

(3) 노동법의 주요내용

○ (법정 근무시간) 주당 48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마단 기간 중에는 주당 36시간, 하루 6시간)

○ (야간 근무시간) 야간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이다.

* 단, 여성 고용자에게는 야간 근무를 지시할 수 없다.

○ (초과근무) 주간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당 임금의 1.25배, 야간 초과 근무 수당은 1.5배를 지급하며 이 경우에도 하루 총 근무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근무중 휴식) 최소 30분의 중간 휴식 없이 연속으로 6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다.

○ (연차)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매달 2.5일씩,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매년 3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 (병가)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15일간은 임금 100%가 지불되고, 이후 20일간은 임금 50%가 지불되며, 추가적으로 무급 병가를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출산휴가) 60일간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무급 출산휴가를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바레인 진출과 관련된 사항

바레인 금융시장 현황 및 특성

(1) 중동의 금융허브

2016년 3월 기준 바레인에는 405개의 은행과 금융 기관이 있다. 금융 분야는 전체 GDP의 약 16.7%를 차지하며, 금융자산 규모는 1,891억달러, 금융종사자는 14,000명(이 중 2/3은 바레인인)으로,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카타르와 두바이도 금융 분야를 발전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고급 금융 전문인력과 걸프에서 가장 발달된 금융관리 및 조정 제도, 사우디와의 인접성 등으로 인해 여전히 바레인은 걸프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지키고 있다.

(2)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

ICD-Thomson Reuters의 IFDI(Islamic Finance Development Indicator)에 따라 2013, 2014 2년 연속 이슬람 금융 시장 부분 세계 2위(조사대상 92개국)에 오른 바레인은 세계에서 이슬람은행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며, 총 52개의 이슬람 금융기관과 25개의 이슬람은행이 있다. 이슬람 금융자산은 251억 달러로 바레인 총 금융자산의 약 13%를 차지한다(2015년 2월). 샤리아에 부합하는 이슬람금융의 기준을 제시하는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AAIOIFI)와 같은 세계적인 이슬람금융 관리·감독기관이 바레인에 자리 잡고 있다. 바레인은 샤리아 기준과 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을 어떻게 조합시킬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성장하는 보험 산업

최근 보험에 대한 관심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른 각종 보험 수요가 증가하여 자동차, 건강 보험 등 일반 보험 시장이 성장 중이며, 이슬람 보험인

Takaful도 영업 분야를 확장해 가고 있다. 보험 시장 종사자는 2013년 기준 약 1,700여명(이중 2/3는 바레인인)으로 금융업 종사자의 약 12%를 차지한다. 총 35개의 보험 회사가 바레인에서 영업 중이며, 이 중 8개가 이슬람 보험사(Takaful 및 Re- Takaful)이다.

(4) 바레인의 금융기관

바레인 중앙은행(CBB: Central Bank of Bahrain)은 바레인 금융 분야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06년 바레인 통화기구가 바레인 중앙은행으로 바뀌면서 걸프지역의 주요 금융센터의 입지를 이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바레인 중앙은행은 특별히 이슬람금융 분야의 규제와 감독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이며 바레인을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 그 외에도 종속 보험회사(captive insurance), 지불능력(solvency), 리스크 매니지먼트, 금융범죄(financial crime), 이슬람보험 등에 대한 개혁을 논의 중이다.
바레인 증권거래소는 과거 100% 정부소유였으며 바레인 중앙은행에 의해 감독을 받았으며, 국제적 지역적 투자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0년 민영화되었다. 이후 2011년에는 Bahrain Bourse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바레인 증권거래소는 상장 기업에게 Bahrain Financial Harbour에 있는 바레인 증권거래소 건물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기준 45개 회사가 상장되어 있다.

바레인의 주요 금융기관

금융기관 종류	이름
소액거래 은행	AUB (Ahli United Bank)–바레인에서 제일 큰 은행이며, 중동에서 제일 큰 은행중 하나
	BBK (Bank of Bahrain and Kuwait)
	NBB (National Bank of Bahrain)
도매 은행	ABC (Arab Banking Corporation)
	GIB (Gulf International Bank)
이슬람 은행	Al Baraka Islamic Bank
	Bahrain Islamic Bank
	Ithmaar Bank
	Gulf Finance House
이슬람 금융조정 기관	AAIOFI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Islamic Finance Market
	Islamic International Rating Agency
보험사	Bahrain National Insurance
	Takaful International
	AXA Insurance (Gulf)

사우디아라비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는 통치기본법(Basic Law of Governance) 제20조에 의거, 내각에서 세율을 결정하고 왕령에 의거 확정된다. 관세 적용 품목의 분류는 HS(2002)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HS 8단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우디 관세는 기본적으로 HS 방식 기준의 종가세제도로 통상 관세율은 무관세, 5%, 12%, 20%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국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특수한 품목의 경우 세율을 100%로 적용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평균 관세율은 5% 또는 12%로 개발도상국 평균 관세율 15%~20%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편이다.

사우디 국내 제조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시멘트, 계란, 윤활유, 철망, 카펫, 펜스 및 철조망, 철관 및 황산 등 유치산업 보호품목은 20%의 관세를 적용한다. 쌀, 설탕 등의 기본 식품, 의약품을 포함한 생활필수품과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기자재 수입은 대부분 무관세이며, 일반상품의 경우 5%, 자국생산 등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품목은 12%로 책정된다. 이외에도 대추야자는 40%, 담배는 100%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걸프지역 국가나 아랍국가들에서 40% 이상의 가치가 부가된 상품의 경우, 국산품으로 인정하여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관세행정의 미비 등으로 최저 관세, 관세부과 가격산정, 관세환급에서 불합리한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래 관세는 송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가격 기준 또는 국내 제조업자와의 상의 등을 통해 최저 수입 가격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세관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수입 시에는 관세 및 통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외에 별도 부담금은 없었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 부가세(5%)를 부과하고 있다.

2006년부터 사우디 국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수입물가 안정을 위해 6~25% 수준이었던 식음료제품, 건축자재 및 일부 소비재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2008년 4월 1일부터 3년간 0~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2009년 6월 동 품목을 포함 총 85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추가 인하 또는 면제했으며, 2010년 12월 11일 화학제품, 향수류, 샴푸, 치약, 면도크림, 살충제, 플라스틱제품 등 총 122개 품목의 관세도 7.6%~25%에서 5.5%~ 6%로 인하했다. 이러한 조치와 관련해 사우디 정부 당국은 2011년 4월에 수입관세 검토후 관세를 재부과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재부과를 유보하였다.

2014년 6월 유가하락후 저유가 추세 지속으로 따라 막대한 재정적자를 기록하자 非오일 수익원 다각화, 2020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2008년 4월에 한시적으로 인하한 관세율을 2016년 12월에 인상하였으며 가금류, 고기류, 낙농품, 소비재, 비료 및 화학재, 전기 기기, 케이블 및 건축자재 등 193개 제품들이 관세율 인상 대상 제품에 해당되었다.

세부 품목별로는 식품 및 음료(가금류, 고기류, 낙농품, 캐 제품등)는 기존 5%에서 6~25%, 비료는 5%에서 12%, 화학제품은 5%에서 20%로 소비재는 5%에서 10~20%, 건축자재는 5%에서 12~15%로 인상되었다.

계절관세

사우디 관세청은 수확기에 자국산 농산물의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비수확기 수입관세를 면제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농산물에 계절관세를 도입하고 있다. 사우디는 사막 환경으로 인해 농작물 재배가 힘든 특성을 지니고 있어 대부분의 농산품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계절관세 적용품목이 많은 편은 아니다.

계절관세 적용 품목 및 기간

적용 품목	적용기간	기간	수확기 관세율	기존 관세
애호박	6월 1일 ~ 7월	2개월	25%	0%
아욱	6월 1일 ~ 8월	3개월	25%	0%
감자(파종용 제외)	1월 1일 ~ 5월	5개월	25%	0%
토마토	5월 1일 ~ 8월	4개월	25%	0%
식용 양파(파종용 제외)	6월 1일 ~ 10월	5개월	25%	0%
당근, 순무	2월 1일 ~ 5월	4개월	25%	0%
오이(피클용 오이 포함)	5월 1일 ~ 8월	4개월	25%	0%
수박	5월 1일 ~ 8월	4개월	25%	0%
머스크 멜론	5월 1일 ~ 8월	4개월	25%	0%

자료: 사우디 관세청

수입부과금

수입 시에는 관세 및 통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 별도 부담금은 없었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 부가세(5%)를 부과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사우디 유통을 위해서는 사우디 표준청(SASO)의 인증이 필수이다. 아울러 Label 부착은 각별한 유의를 요하는 분야로 특히 식품류, 개인위생구류, 의약품 라벨은 SASO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세심한 관심이 요망된다. 통관 문제가 사소한 일회성으로 발생하여 선적품 통관 보류 시에는 선적품을 수

출국(한국)이나 제3국으로 백쉽(Back Ship)해야 하므로 수출업체에게 부담이 너무 크다. 또한 관계법령을 위반해 불공정 수출업자로 등록된 경우 1년 이상 수출입 절차가 까다롭게 적용되므로 사소한 사안이라도 유의해야 한다.

중고자동차는 수입통제품목에 포함해 엄격한 통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0년부터 사우디는 5년 이상이 경과된 중고승용차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5년 이상 경과된 중고자동차 부품에 대하여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통관 시 필요서류

- 원산지증명서 3부(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 INVOICE(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 BILL OF LADING
- 보험증명서(CIF의 경우)
- 수입검사인증서(SASO 적합 인증서)
- 유전자변형식품 시 GE마크 필히 부착
- 위생검사서(SFDA 인증서 / 의약품, 식품인 경우에만 해당)

통관 시 주류(알코올), 돈육 및 그 성분의 함유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므로 식품, 의약품을 수출할 경우 동 성분의 포함 여부 및 가능비율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손목시계, 액세서리 등은 샘플이라도 과세 통관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양이 많은 샘플의 경우 통관이 어렵다. 방사선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사우디 내에서 관련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업만 취급을 할 수 있으므로, 통관 시 취급 및 운송이 가능한 사우디 기업을 선정해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최근 우리 제품 수출 시 사우디 관세청에서 제품의 원산지 각인과 포장지의 원산지 내역이 상이해 통관이 금지된 사례가 있었다. 즉, 제품 자체는 중국

등 제3국의 원산지가 표시돼 있으나 포장에는 “made in Korea”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원산지 확인, 제조비율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수입 규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는 수량제한 등 일부국가에서 볼 수 있는 수입규제 사례나 비관세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특정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거나 관계부처의 승인 또는 검열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수입금지: 주류, 돼지고기, 음란물, 마약 등 非할랄 제품 92개 품목
- 관련부처 특별승인 요구: 식물의 종자, 비료, 무기, 보안용품 등
- 수입 검열: 미디어제품

2009년 6월부터 사우디 정부는 환경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5년 이상 된 중고차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다. 세부 내역을 보면 5년 이상 지난 승용차, 버스 및 경트럭(Light truck)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대형트럭(Heavy truck)의 경우 10년 이상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했다. 아울러 모든 차량은 침수, 화재, 충돌, 전복 등의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며, 택시 혹은 경찰차로 사용되었던 차량도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2010년 8월 사우디 교통부는 학생보호차원에서 제조한지 10년 이상의 노후 스쿨버스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사우디는 2011년 6월 110~127V의 전압만을 사용하는 제품과 기기에 대한 수입과 자국 내 제조를 2012년 5월 22일부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우디 정부가 향후 25년에 걸쳐 자국에서 공급하는 전압을 국제기준인 230V, 400V로 통일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추가적으로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직접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상품인증제도 개요

사우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소비자 보호, 종교 및 공공도덕 유지, 환경보호 및 비정상적인 거래방지를 위해 국내외 제품 여부에 상관없이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품질표준을 정하고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사우디 내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표준은 국가기관인 사우디 표준청(Saudi Arabia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SASO)에서 제정하고 관리한다. SASO는 2018년 10월 기준으로 사우디에서 유통되는 약 28,708개 상품에 대한 표준 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걸프국가 표준 채택 상품 10,599개 중 사우디 표준 채택 상품은 8,767개, 아랍 표준 채택 상품 9,247개 중 사우디 표준 채택 상품은 5,426개이다.

2005년 WTO 가입과 함께 무역에 관한 WTO 기술장벽협약(TBT: Technical Barriers on Trade) 사항을 준수해 기술적인 표준을 정비했으며 관련 변경사항을 지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사우디 표준규정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제도의 운용은 수입상품의 경우 상무투자부(Ministry of Commerce & Investment: MoCI), 국내 상품의 경우 자치부(Ministry of Municipalities),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와 상무투자부 등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사우디 내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을 제도화하면서 수출국 입장에서는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입상품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상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유통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특별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국가적 특수 사정을 고려해 WTO에서도 합의한 사항이다.

2013년 11월 한국기술표준원은 사우디 리야드 소재 걸프 지역 표준화기구

(GSO)를 방문하여 6개 걸프 국가들과 예멘에 국내 인증기관 발급인증서를 통용할 수 있게 하는 상호인정 프로그램(MRP)의 체결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이행계획(Action Plan)을 체결했다. 이행계획을 체결하면서 양측 대표는 KATS와 GSO의 MRP 체결을 조속한 시일 내로 체결할 것을 다짐했다. MRP 체결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인증기관에서 걸프지역 강제인증제도의 인증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인증서는 역내 7개국에서 통용돼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지역 수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2018년 10월 현재까지 MRP는 체결되지 못했다.

對사우디 수출인증제도: 강제 적합성 인증제도

사우디아라비아 상무투자부는 수입상품을 비롯해 국내 유통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에 대해 사우디 규격과 표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반입 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입상품의 사우디 표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검사 및 인증과 관련된 제도가 수출품인증제도(강제적합성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 for the Goods Exported to the Kingdom of Saudi Arabia)이다.

(1) 제도 개요

종전까지는 수출인증제도를 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ICCP)으로 명명하고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인증서(International Certification of Conformity: CoC)를 요구했다. ICCP는 1995년 11월 사우디 표준청(SASO: 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과 상무투자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에서 도입해 최초 76개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 적용했다. 1998년 8월에는 적용품목을 단순화해 식품(별도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완구, 오락장비를 추가해 총 66개 카테고리로 정비했으며, 다시 2001년 8월에는 자동차 부품, 가스조리기구, 휴대폰 등을 추가하면서 총 69개 품목 카테고리로 ICCP를 운영해왔다. ICCP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Intertek Testing Services)에서 인증서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에 상공부 시행령 제6386조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해 적용품목을 의료기구, 의료용품, 식품, 군 관련 제품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제인증제도(ICCP)를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를 도입했으며, 주무부서의 경우에도 사우디 표준청(SASO)에서 상무투자부(Ministry of Commerce & Investment: MoCI)로 상위 이관되어 현재 운영 중이다.

사우디 정부는 2006년 5월 새로운 규정에 의거 사우디로 수입되는 제품은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CoC)를 첨부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KATS)은 사우디 표준청(SASO)과 협의를 거쳐 2008년 6월 KATS-SASO MRP(상호인정 프로그램)를 체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의 KOLAS 등록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2008년 12월 적합성 인증서 발급기관 지정 내역을 사우디에 통보하였다. 당시 MRP 체결로 인해 양국의 기술장벽(TBT)이 낮아지고, 무역이 원활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우디의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검사제도인 국제인증제도(ICCP)는 외국 수출업체들에게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을 주고, 국가 간 교역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사우디 측은 동 인증제도가 수입규제 측면보다는 국민의 건강이나 국가의 안전 보호 등과 관련되고 모든 국가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제도로써 수입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 인증 대상 품목(Regulated Products)

2004년 8월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는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소비재 상품의 경우에도 표본 또는 데모용, 사우디 내 비매품인 경우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기자재, 임시 수입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증서가 면제된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은 선적 전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좋으며, 다만, FOB 가격으로 3,0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현지 하역 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료장비(Medical equipment), 의약품(Medical products), 식품(Food), 화장품 등은 사우디 식약청(SFDA)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 사우디 상품 적합성 인증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으며, 검사도 보다 강화되고 있어 사우디 수출 전 해당 품목의 인증 여부가 필요한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다.

환경관련 규제

사우디는 환경관련 규제가 심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1991년 걸프전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최근 사우디 담수공사(SWCC)와 사우디 전력공사(SEC)는 프로젝트 추진시 각종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사우디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MOEIM)는 수반가스(Associated Gas) 및 폐열의 회수·산업단지 공급, 석유광물 생산시 환경보호기준 준수, 무연휘발유 및 저유황경유의 생산·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 주무기관은 기상환경보호청으로서, 1989년 제정된 환경보호기준에 의거하여, 산업시설 계획 또는 운영 시 기상환경보호청이 대기와 물에 대한 보호지침을 부과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사우디 정부는 농업부문을 장려하기 위해 농산품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WTO 가입 시 협의에 따라 2016년부터 정부보조금을 폐지하였다.

2006년 농업보조금 규모는 977백만 달러 규모였으나, 2015년까지 10년간 매년 규모를 축소하여 2015년에 858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2016년부터 폐지하였다.

한편, 식량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부터 잠정 시행해오던 수입쌀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을 최근 쌀값 안정을 감안하여 2009년 12월부터 중단하였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 제약

사우디는 2005년 12월 WTO가입 시 1년 이내에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협상 개시를 약속하였다. 2007년 12월 사우디는 GPA위원회 옵저버가 되었다.

사우디 정부는 왕령(Royal Decree)에 따라 정부조달을 실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우디 국방 분야 계약은 이 법령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안별로 협상한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방위산업, 통신, 항공 및 전력 등 주요 조달계약(약 1.3억 달러 이상)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일정비율의 계약액 보상투자(Off-set) 프로그램 의무이행을 시행하고 있다. 보상투자 규모는 계약금액 중 technical value의 25~35%(방산물자 및 관련 서비스는 통상 35%)이며, 이때 건설비, 인건비 및 사우디산 구매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보상투자 방법은 전체 Off-set 의무량의 25%는 현금 출자하고 통상 사우디 현지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우디 정부는 이러한 Off-set Program의 장려를 위해 합작 기업 추천, 산업개발기금(SIDF) 장기 융자, 수입물품 관세 혜택,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사우디는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따라 정부조달 물품의 경우 자국산 구입가격을 동일 외국산에 비해 10% 비싸게 구매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가 승인하는 플랜트 설비 등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원청자가 공사의 30%를 의무적으로 현지기업에 하청을 주도록 하고 있다. 공사용 자재, 장비의 직수입을 금지하여 자국에서 생산된 조달이 가능한 공사용 자재 및 장비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수송, 보험, 금융, 토지 및 건물임대와 Catering에 대해서 현지 용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항목별 세부예산내역 등 정부조달 관련 정보공개가 미흡해 외국 업체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으며, 입찰 공고 기간이 짧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외국 업체의 입찰참여 제한

사우디의 정부조달은 전문 입찰 주관기관이 없고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필요시 입찰을 공고하고 있다. 조달 방법은 기본적으로 입찰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특정 분야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입찰을 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 회사의 정부입찰 직접 참가는 제한되어 있어 상무투자부에 현지회사로 등록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우디 에이전트를 통해야만 응찰이 가능하다.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 정부는 물론 Saudi Aramco(사우디 석유공사), SABIC(사우디 기초산업공사), SEC(사우디 전력공사), STC(사우디 통신공사) 등 공공기관의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 시 까다로운 사전기술심사(PQ)를 하며 입찰 참가대상을 발주처에 등록된 Vendor 또는 Contractor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업체선정 시 응찰가격을 제외한 평가기준으로는 사우디 의무고용정책(Saudization), 사우디 재투자, 외국인 고용비율 등과 참가업체의 국제적 신인도, 재정상태, 독특한 기술력, 동종 프로젝트 이행실적 등이 있다.

자국산 기초 군수물자 구매

2010년 2월 사우디 국방부는 자국 군수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자국기업에게 무기를 제외한 기초 군수물자 입찰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외국기업만 참여하던 것을 자국기업에게도 입찰참여를 개방하는 조치로서 입찰참여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파이프 등 약 15,000개에 이른다.

지식재산권 보호

사우디아라비아는 1971년 7월, 파리에서 개정된 1886년의 문학과 예술작품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베른협정과, 1883년의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정에 조인했으며 2004년 3월 이래로 두 협정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특허권 보호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회원국의 개인 및 회사까지 확대하는데 동의했다.

사우디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목적을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규정에 적합하게 모든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TRIPS 협정 제1조에 의거해 사우디는 자체 법규와 절차에 따라 동 협정을 이행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은 상표법(Trademarks Law), 특허법(The Law on Patents), 저작권법(Copyright Law)이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담당 정부부처는 다음과 같다.

- 특허법(The Law on Patents): KACST (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
- 저작권법(Copyright Law): 문화정보부
- 상표법(Trademarks Law): 상공투자부

* 상표권 신청 시 사우디 국민이 아닌 경우 반드시 사우디 에이전트를 통해서 신청해야 한다.

국제 지적재산권연맹(IIPA)는 2010년 2월 그간 사우디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 및 정책적 진전을 감안해 美무역대표부(USTR) 블랙 리스트에서 제외해 줄 것을 해당 기관에 요청했고, 2010년 USTR 사우디를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위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화, 음악 등의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비롯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인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지적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2011년 2월과 2012년 2월 IIPA는 사우디의 높은 지적재산권 침해율,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미미한 제재 등을 사유로 사우디를 블랙리스트로 재지정 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비스 장벽

사우디는 금융, 보험, 유통업 등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 개방정도가 미미하였으나 2005년 12월 WTO 가입과 함께 서비스 부문 개방을 약속했다.

보험 분야의 경우 2003년 10월 보험업조정통제법을 제정하여 외국 보험회사의 진출 및 직접 영업을 허용하고 상업적인 국내 보험회사(주식회사, 조합, 법인 또는 외국합작)의 설립을 허용하였다(외국인 지분은 25~49%까지 허용). 2018년 10월 기준 약 30개 외국보험/재보험회사가 정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했다.

금융 분야의 경우 사우디 은행법은 은행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상업은행의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12월 WTO가입을 계기로 사우디 중앙은행(SAMA)은 2018년 10월 기준 16개 외국계 은행에게 면허를 발급했다.

2004년 2월 제정된 사우디 자본시장법은 외국인의 사우디 내 투자은행 및 중개회사의 설립이 가능토록 했으며, 합작기업의 외국인 자산보유한도를 60%까지로 제한했다. 중개회사의 최소자본은 13.3백만 달러로 규정하는 동시에 잘못된 정보의 배포 및 내부거래에 대한 벌칙도 규정했다.

2008년 8월에는 주식시장에서의 사우디 내 비거주자(GCC국가 국민 제외)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즉, 비거주 외국인 투자가에게 사우디의 주식을 스왑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한적인 주식투자가 가능해졌다.

2014년 7월 각료회의에서 사우디 주식시장(타다울)을 제3국 외국인투자자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증권감독당국(CMA)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적격외국인투자가(QFI)의 사우디 주식시장 직접투자가 허용됐다. 외국인투자가는 사우디 주식시장의 10% 보유만 허용 가능하며, 단일 QFI가 보유 가능한 주식은 단일 기업의 최대 5%이고 복수 QFI의 최대 보유 상한은 20%이다.

투자 장벽

사우디 정부는 1956년에 외국인투자법을 최초로 제정했으며, WTO 가입을 위해 2000년 4월 전면으로 개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 자본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이다. 개정안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국가산업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내 자본에 대한 모든 혜택을 부여할 것을 명시했다.

2000년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외국인투자자 인센티브, 보증 등에 있어서 내국민 대우
- 외국기업 단독 투자 시에도 보조금 성격의 개발기금 이용 가능
- 수익과 자본의 자유송금 보장
- 투자허가 절차의 간소화, 법인세 인하 등이 포함

이외에도 외국인투자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사우디 투자청(SAGIA)을 설립하고 투자 유치·승인·허가 기능 수행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투자법 개정 전 사우디 정부는 국가발전 계획에 부합하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외국인투자를 허가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법 개정 이후 Negative List 제도를 도입해 투자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투자를 개방했다.

WTO가입 후 사우디아라비아는 유통업종에 있어서 사우디 기업의 최대투자지분 25%를 보유한 합작투자만을 허용하였으나, 2016년 5월에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책을 발표하면서 유통업(Trading 표기)에 조건부 100% 단독 외국인투자를 허용했다.

유통업에서 100% 외국인투자 허용을 위해 △초기 납입자본금은 최소 30백만 리얄(8백만 달러), △5년 내 최소 자본 기여액(투자액)은 2억 리얄(53.3백만 달러), △사우디 노동부에서 정한 사우디제이션(사우디인 의무고용)율에 따른 사우디인 채용 및 향후 5년 내 관리직에 사우디인 고용 계획 수립 및 실행, △연간 사우디인의 30% 교육 훈련 실시, △설립 5년 이내 3개 사항(제조-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30%를 현지 생산, R&D-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판매되는 총 판매액 중 최소 5%를 R&D 투자, 유통 및 물류 지역본부 설치-회사의 판매 및 애프터서비스의 지역본부 설립) 중 최소 하나로 사우디 내에서 부가가치 창출 등 실현하기 다소 어려운 전제조건을 규정하였다.

2017년 5월 9일 기준 사우디 외국인 투자청 라이센스 발급 부서에 따르면 5개의 글로벌 기업이 유통업(Trading 표기) 100% 외국인투자 라이센스를 획득(유통업 분야의 100% 외국인투자기업 : 화이자, 애플, 3M, 삼성, 화훼이 등 5개사) 하였다. 추가적으로 5개의 신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총 10개의 글로벌 기업이 유통업 분야에서 100% 외국인투자 라이센스를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지의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업무 등으로 현지 진출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터무니없이 높은 자본금을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 승인을 거절하는

등 간접적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추세이다. 특히 정확한 승인 거절 사유를 밝히지 않고 관련 규정이 개정됐는지 여부 등을 통보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금지분야

사우디 최고경제위원회(The Supreme Economic council, SEC)는 2007년 3월, 원유생산부문, 군사부문, 수송부문, 이슬람교의 정서를 침해하는 부문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금지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업분야

- 원유탐사, 시추 및 생산(국제 산업 분류코드에서 정하는 CPC5115+883 리스트의 광산 부문 관련 서비스 제외)
- 군사장비, 장치, 유니폼 제조업
- 민간 폭발물 제조업

○ 서비스 분야

- 군사 부문 음식납품(Catering)
- 보안, 탐정 서비스
- 메카 및 메디나(이슬람 성지) 지역 부동산 중개업
- 성지순례(Hajj 및 Umrah) 관련 여행안내 서비스
- 현지 직업 사무소를 포함한 직업채용 및 고용 서비스
- 부동산중개업
- 인쇄출판업(관련 국제 분류 기준에서 정하는 일부 항목 제외)
- 전처리인쇄(88442), 인쇄기(88442), 그림 및 서예(84501), 사진(875), 라디오 및 TV 방송 스튜디오(96114), 해외 언론 사무실 및 특파원(962), 판촉 및 광고(871), 홍보(86506), 출판(8442), 보도 서비스(88442).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산, 판매 및 임대(88), 미디어 컨설턴트

및 연구(853), 타이핑 및 복사(87505 + 87904),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유통 서비스(96113)는 예외적으로 허용

- 국제 분류기준에서 정하는 일부 위탁업(국제 산업코드 621)
- 시청각 및 미디어 서비스
- 도시 간 철도여객 운송을 제외한 육상 운송 서비스
- 국제 분류에 따른 조산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준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일부(국제 산업코드 93191)
- 어업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사우디는 그동안 보험, 금융, 통신서비스분야의 외국인투자지분은 50%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나, 2005년 사우디의 WTO협정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제한조치를 완화하여 2010년 9월 보험업은 60%, 금융업 60%, 통신서비스업은 70%, 도소매업은 75%까지 외국인 투자지분율 상한을 확대했다.

보험회사의 최소자본금은 1억 리얄(26.7백만 달러), 재보험회사의 경우 2억 리얄(53.3백만 달러)이며, 양 보험 업무를 모두 취급하는 경우 3억 리얄(80백만 달러)이다.

한편 모든 외국인 투자는 사우디 투자청(SAGIA) 산하 투자자지원센터(ISC: Investor Service Center)를 통해 SAGIA에 서류를 제출,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합작 투자 당사자는 동 기관에 출석하여 사업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합작 투자 심의에서 허가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사업 성격과 심의기관에 따라 다르나 약 4~6주가 소요되고 있다.

허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무투자부에 신설회사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확인서를 발급받는데, 합작당사자들은 허가서 발급 6개월 이내에 공장 설립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타당한 이유 없이 지체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허가서에 기재된 합작공장 설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와 함께 연장 신청서를 사우디 투자청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관련 서류는 영문 이외에 현지어인 아랍어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서류작성 등에 애로사항이 많으며, 사소한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에 허가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법인·지사 설립상의 제한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자 시 크게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으며 진출 희망 분야에 따라 투자허가 평가기준이 다르다. 사우디 투자청(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이 명시한 활동 분야는 △산업 △상업 △농업 △계약수주업 △부동산중개업 △전문서비스 △자문서비스 △외식산업 △경공업 이다.

(1) 법인

법인의 종류로는 생산법인, 판매법인, 서비스법인이 있으며, 2016년 개정된 사우디 신회사법(The New Companies Law)에서는 회사설립 형태를 총 5개로 구분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합명회사(Joint Stock Companies,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에 해당하며, 이하 편의상 주식회사로 표기),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합작회사(Joint Venture) 등 5개이다.

그 외 합작투자(Joint Venture), 유한합자회사(Partnerships limited by shares) 등의 형태로 투자를 하기도 한다. 상기 형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형태는 샤리아법(Shari'a Law)에 의거 외국인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주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투자진출을 한다.

(2) 지사(Branch)

외국 회사의 지사는 두 가지 형태로 진출이 가능한데 하나는 법인 형태의 지사이며, 다른 하나는 사우디 고객의 스폰서십 지사 형태이다.

법인 형태의 지사는 일반적인 투자법인 형태인 유한책임회사(LLC)와 유사하나 책임의 범위가 다르고, 단독으로만 진출이 가능하다. 즉 LLC가 주주별 지분비율만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면, 지사의 경우는 해당 기업의 본사에서 무한 책임을 진다.

반면, 스폰서십 제도는 사우디 고객의 스폰서십 하에 별다른 등록 없이 활동하는 방식이나 합법은 아니지만 오랜 관행으로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스폰서 기업의 직원 형태로 취업해 사우디 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한국 기업의 지사는 대부분 이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이 방식의 경우 진출 시 사우디 투자청 승인 등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현지 계좌 개설, 거주증 발급 등 현지 활동 및 생활면에서 많은 제약 있다. 또한 스폰서와의 관계 악화 시 지사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외교부에 의해 승인된 합동증명서(Incorporation Certificate)와 회사정관(Article of Association)은 해당 회사 설립 국가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검증한 뒤, 공증 절차를 거쳐서 아랍어로 제출되어야 한다. 지사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역할이 국한되고 상업활동은 수행할 수 없으며, 모회사는 자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임시 지사는 최소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는 정부기관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될 수 있다.

(3) 연락사무소

사우디 회사법에 의거 법인 형태 이외의 외국 기업의 지사는 연락 사무소(Liaison Office) 및 기술 서비스 사무소(Technical and Scientific Services Office)만 허용되는데 그 활동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상사, 제조업 등 일반무역 관련 지사 설치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

외국인 진출 선호 형태

대부분의 외국 기업은 법인 형태로 진출할 때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형

태를 선호하는 편이다. 지사 설립의 경우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설치가 용이한 스폰서십 지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최소자본금 약 130만 달러)이 크고, 유한책임회사에 비해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어 실제로 외국 기업이 주식회사로 진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산품 의무구매 등

사우디 정부의 조달물품 구매 시에는 국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는데, 국산품에 대해서는 동일 외국산에 비해 10% 높게 구매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가 승인하는 플랜트 설비 등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원청자가 공사의 30%를 의무적으로 현지 기업에 하청을 주도록 되어 있다. 공사용 자재, 장비의 직수입을 금지하고, 수송, 보험, 금융, 토지 및 건물 임대와 Catering에 대해서 현지 용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GCC국가 국민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생산하고 역내 부가가치가 40%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5%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해당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는 사택이나 피고용인의 주거 제공을 위한 것도 포함된다. 판매나 임대를 위한 투자목적으로 부동산(건물 및 건축을 위한 대지) 취득 시 대지 및 건축 모두를 합친 프로젝트 비용은 최소 3,000만 리얄(800만 달러)을 초과해야 하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을 실시해야 한다. 외국인은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으나, 비사우디 무슬림은 2년간 동지역 부동산 임대 및 2년 주기 갱신이 가능하다.

또한, 투자신청 시 투자목적이 부동산 개발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사후에 이 사실이 발견될 경우 투자허가를 취소하고 취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부인되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 거주자가 개인 주거용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으며, 취득 가액의 하한선은 없으나 내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합작기업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이 가능하며 합작선과의 합작계약이 종료 또는 파기될 경우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여야 한다.

세제상 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20%인데 이는 외국인투자 지분에 대해서만 청구된다. 세계은행이 발간하는 Doing Business 2014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총 세율은 이익의 14.5%로 세율이 낮은 편이다. 사우디에는 또한 자카트(Zakat)라고 불리는 종교세가 있는데 사우디 내국인에 한해서 순 수익의 2.5%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지만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우디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8년 1월부터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5%를 부과하고 있다.

사우디의 외국인 자영업자나 외국기업(합작기업 포함)에게 20%의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내국인에게는 Zakat라는 종교세 2.5%외에 다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계제도상 차이

사우디의 회계제도는 기본적으로 국제기준에 준거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의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과 달리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고, 은행을 제외한 유한회사는 그 주주에게 대출할 수 없다. 유한회사의 손실이 그 자본금의 75%를 초과할 경우 출자자회의를 개최해 회사의 해산여부를 협의해야 하는 등의 차이점이 있다.

경쟁정책

국가개혁프로그램(NTP) 2020 추진

2016년 4월 15일 사우디 정부는 저유가 추세지속에 따라 석유의존 경제를 탈피하고자 사우디 국정운영 정책인 “Saudi Vision 2030”을 발표하고, 동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각 정부부처가 소관분야 전략 목표를 설정하여 202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인 국가개혁프로그램(NTP) 2020을 추진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경제개발위원회(CEDA)가 수립하고 각료회의가 승인한 국가개혁프로그램(NTP)은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으로 각 분야 24개 정부기관의 목표를 설정하고, 2020년까지 이를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향후 2020년까지 5년간 총 543개의 개혁 프로젝트를 이행하며 2,680억 리얄(약 72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정부재정 분야 주요 내용은 비석유수입을 현 1,635억 리얄에서 5,300억 리얄(약 1,410억 달러)로 확대하고, 국가 자산을 현 3조 리얄에서 7조 리얄(약 1조 8,700억 달러)로 증대, 공공부문 인건비 지출을 현 4,800억 리얄(1,280억 달러)에서 4,560억 리얄(1,216억 달러)로 감축, 수도·전기 보조금 삭감(총 533억 달러의 재정 절감 효과), VAT 도입 및 담배 등 유해제품에 세금 부과(내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 계획은 현재 없음), 개혁 프로젝트 예산의 40%를 민간부문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경제·투자 부문 주요 내용은 총 45만개의 일자리 공급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현 23%에서 28%로 확대, 비석유수출을 현 1,850억 리얄(493억 달러)에서 3,300억 리얄(880억 달러)로 확대, 외국인직접투자를 현 300억 리얄(80억 달러)에서 700억 리얄(187억 달러)로 확대할 예정이다.

에너지 부문 주요 내용은 산유량은 일일 1,260만 배럴 수준을 유지하나, 가스 생산량을 현 일일 120억 입방피트에서 178억 입방피드로 확대, 정유능력을 현 일일 290만 배럴에서 330만 배럴로 확대, 전체 전력 생산의 4%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이다.

2018년도 예산 내역

2018년도 사우디 정부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약 9.8% 증가한 2,608억 달러, 수입예산은 약 13.2% 증가한 2,088억 달러로 재정적자 520억 달러의 적자 재정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재정적자는 신규 채권 발행과 외환보유고 활용으로 충당되었으며, 이는 GDP의 약 7.3%를 차지한다. 2018년 사우디 정부

예산은 2020년까지 균형예산 달성을 목표로 비석유부문의 수입 증대, 지출 사업의 효율성 제고, 재무 개혁을 통한 투명성 향상 등 개혁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석유부문 재정수입은 1,044억 달러로 2017년 예상치보다 감소하였으며, 비석유부문 재정수입은 626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개발위원회(CEDA)에 소속된 경제부처에 의해 국가개혁계획(NTP)하에 제시된 리스상의 프로젝트만이 승인되며 경제개발위원회(CEDA)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미미한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다. 사우디는 경제개발위원회(CEDA) 산하 지출 및 합리화국(Spending and Rationalization Office)은 자본과 경상 지출을 검토하고 지출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주요 부문별 예산배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 행정

전년 대비 4% 감소한 전체 69억 달러가 배정되었고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46개 신규 프로그램에 집행될 것이며, 동 예산은 법무부, 하지 및 움라부 및 지방자치부를 포함한 국가개혁계획(NTP) 2020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사용된다. 기존 재원 효율성 제고와 품질 생산성의 최대화함으로써 동 부처들의 실적 제고가 목표다.

(2) 국방

전년 대비 10% 증가한 국방예산에 560억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신규 프로젝트 및 기존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하여 국방 증진을 위한 장비, 시설물 ,무기 및 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3) 보안 및 지역행정

전년 대비 4% 증가한 전체 269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신규 프로젝트에 집행되며 대부분이 국경수비를 위한 해군 기지 설치와 통합 보안 연계(TETRA)의 두 번째 단계 추진에 관련이 있다. 기존 프로젝트 추가 확장에 32억 달러가 배정, 이 중 21억 달러는 정보부 및 보안부처의 활동에 배정될 것이다.

(4) 교육

공교육, 고등교육 및 훈련에 전년 대비 4% 하락한 512억 달러의 교육 예산이 배정되었다. 부문별 예산은 교육관련 모든 활동의 신규 프로젝트와 기존 프로젝트 확장에 충당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킹압둘라 압둘라지즈 공공교육 프로젝트 개발에 24억 달러, 전국의 여자 대학 리노베이션에 13.3억달러, 국왕 해외 장학금 프로그램은 교육부 감독 하에 207천명(가족 포함)이 해외로 유학을 시행할 예정이며 44억 달러, 교육관련 국가개혁계획(NTP)의 프로그램 예산이 16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5) 보건 및 사회개발

전년 대비 22% 증가한 392억 달러가 보건 및 사회개발 부문에 지출될 예정이다. 동 예산은 신규 프로젝트와 건축 완료 및 전국의 병원 및 보건 센터의 장비 비치에 사용되며, 전국 38개의 신규 병원 건축 및 9,100병상 건설 및 2,350개의 병상을 갖춘 2개 의료단지 건설에 사용되었다.

(6) 인프라 및 운송

인프라 및 운송 프로젝트에 전년 대비 4% 증가한 144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동 부문의 예산은 프로젝트, 프로그램, 116개의 신규 프로젝트에 44억 달러가 배정되어 도로, 항만, 철도, 공항, 우편 서비스 및 산업단지 건설에 사용되었다.

(7) 공공 프로그램 (국가개혁계획(NTP) 2020)

국가개혁계획(NTP) 2020을 수행하기 위해 2020년까지 715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이 중 2017년에는 112억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2016년에는 2.4억 달러가 집행되었고 2018-2020간 국가개혁계획(NTP) 2020을 실행하기 위해 579억 달러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연도별 정부예산 현황

(단위: 억 미국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예산	증감(%)	예산	증감(%)	예산	증감(%)	예산	증감(%)
수입	1,632	▲41.1%	1,384	▲15.2	1,856	34.1%	2,088	13.2%
지출	2,669	▲12.3%	2,213	▲17.1%	2,469	11.6%	2,608	5.6%
수지	▲1037	▲480%	▲829	20.1%	▲613	26.1%	▲520	15.2%

※ 자료원 : Ministry of Finance of Saudi Arabia, Arab News
주: 정부예산 편성계획 기준

기타 장벽

사우디인 의무고용 정책(Saudization)

사우디인 의무고용제(Saudization)란 외국 인력의 급증에 따른 사우디 실업률 증가로 자국민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회사 내 고용자의 일정 비율을 사우디인으로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현재 사우디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인력은 2018년 2분기 기준 약 989만 명으로 전체 노동 인구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 인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사우디인의 실업률은 증가하고, 청년들의 취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사우디인 의무고용제(Saudization)를 추진하고 있다. 직종에 따라 의무고용 비율은 상이하지만 최대 75%에 이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임금이 비싸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우디 근로자들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인 의무고용제(Saudization) 성공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례로 2016년 9월 사우디인을 고용하지 않는 레드 존(red-zone) 기업 17,000개사에 대한 캠페인을 계획하며, 그린 존(Green-zone), 플래티넘 존(Platinum-Zone)으로 외국인 노동자 이동을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외국인 고용이 많은 레드 존(Red-zone) 기

업에 대한 조치로, 사우디인 고용 비율을 높이려는 의도다. 사우디 내 레드존(red-zone)에는 총 17,314개사가 외국인 노동자 241,53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2,000명의 외국인 불법 노동자가 적발된 상태이다. 또한 2014년 10월 25일부터 옐로우 존(Yellow Zone) 소속 외국인 노동자 체류 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역시 민간부분에서 외국인 고용비율을 줄이고 사우디인 고용비율을 높이려는 의도이다. 옐로우 존(Yellow Zone)에 속하는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 고용할 시, 비자, 스폰서십, 취업허가 등에 있어서 제약이 따른다.

2017년 9월부터 새로운 시행법을 통해 사우디인의 비율을 회사 규모에 따라 조정했다. 기존 4단계의 분류에서 2단계가 추가되어 Red, Yellow, Green(high, medium, low), Platinum(blue에서 변경) 등 6단계로 나뉘었다. High Green과 Platinum만 우수 등급으로 분류되어 우호적인 비자 프로세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업들은 Medium Green까지의 등급을 유지해야 한다. Low Green, Yello, Red 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직원들이 더 높은 등급의 회사로 이직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또한, 2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사기업들은 'Saifi'제도에 의거해 사우디인 학생들(17세 이상)에게 인턴십을 제공해야 한다. 인턴십은 4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월 최소 1,500리얄(400 달러)을 급여로 제공해야 한다.

카테고리별 인센티브 및 제재 내역

구분	인센티브 및 제재 내역
Platinum (VIP category)	ㅇ 모든 국가의 근로자 자율 채용 ㅇ 비자발급 과정 간소화 ㅇ 전자 시스템을 통해 소속 근로자들을 사우디인으로 한정된 직업으로도 변경 가능 (공무원, 접수담당자, 정부 연락관, 재무부 직원, 경비원 제외) ㅇ 무(無)조건 비자 전환 : 기업주의 동의 없이 Yellow, Red 기업 내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가능 ㅇ 두 달에 한 번 이상 노동부 웹사이트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비자발급 및 채용 가능 ㅇ 두 달에 한 번 외국인 근로자 채용 직종 변경 가능 및 2년 미만 근무 외국인 근로자 스카우트 가능(사우디 내 외국인 근로자는 첫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이직 가능) ㅇ CR 등 각종 면허갱신 1년간 유예

구분	인센티브 및 제재 내역
High & Medium Green (Excellent Category)	ㅇ Yellow, Red 기업주의 동의서 없이 외국인 근로자 스카우트 가능 및 비자 전환 가능 ㅇ 두 달에 한 번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 비자신청 가능 ㅇ 취업 허가증 갱신 가능 ㅇ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 사우디인으로 한정된 직업 외 타 직종으로 변경 가능 ㅇ 외국인 근로자 2명이 귀국했을 경우 새로운 비자 1개 취득 가능 ㅇ 외국인 근로자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비자갱신 가능 ㅇ 수입증명 및 종교세 납부기한 6개월 유예
Low Green	ㅇ 외국인 근로자 채용 직종 변경 가능 ㅇ 취업 허가증 갱신 가능 ㅇ Yellow, Red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스카우트 및 비자 전환 가능 ㅇ 수입증명 및 종교세 납부기한 6개월 유예 ㅇ 신규 비자 신청 불가
Yellow	ㅇ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 비자신청 불가 ㅇ 6년 이상 근무 외국인 근로자 비자 갱신 금지 ㅇ 외국인 근로자 2명 귀국 시, 새로운 취업 비자 1개 취득 가능 ㅇ 외국인 근로자 스카우트 불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직종 변경불가
레드	ㅇ 새로운 외국인근로자 비자 신청 불가 ㅇ 외국인근로자 비자 갱신, 취업 허가증 갱신, 스카우트 및 채용직종 변경 불가 ㅇ CR갱신 금지 및 지점 개설 금지

스폰서 제도

사우디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사우디 스폰서를 바탕으로 각종 법률행위(Visa 취득, 은행거래, 운전면허증, 이까마 취득) 및 각종 영업행위 등 현지 활동이 가능해 진출 기업의 부담이 크다. 스폰서십을 제공받는 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연간 일정 금액을 스폰서에게 지불해야 한다. 또한 스폰서와의 관계 악화 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현지 외국진출 기업 및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 스폰서 관련 외국인 취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단행되고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고용자까지 불이익을 받는 등 그 제도가 강화되고 있어 프로젝트 진출로 대규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우리 기업들은 특히 스폰서 관련 정책 및 정부 방침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각종 불공정 관행 상존

정부공사의 경우 공사 계약 및 집행 시 국제 관행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사 대금 지급의 지연, 추가 공사경비 불인정 등은 관례화된 상태이며 발주처와의 법적분쟁 시 회교법 및 관행을 들어 외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전통 및 관습에 적합한 포장 필요

상품 포장지 또는 상자, 상품 설명서에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된 사진이나 그림 또는 非이슬람 종교 그림이 있으면 이를 검은색으로 덧칠한 이후 세관 통관을 허락하므로 별도의 포장지, 포장상자, 상품설명서를 제작·수출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

사우디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지 면허증을 신규발급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 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혈액, 시력 검사증(약 SR 100), 이까마(Iqama, 거주증) 사본 및 원본, 여권 사본, 한국 운전면허증 사본 및 원본, 공식 번역 업체에서 영어와 아랍어로 번역한 한국 운전면허증 확인 서류(50 SR), 면허 신청서, 신청서에 첨부할 운전면허용 사진(여권 사진 권장),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판매하는 초록색 파일 등이 필요하다.

또한 운전면허 신청 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신청에 따라 2년-SAR 80 / 5년-SAR 200 / 10년-SAR 400의 금액을 ATM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영어와 아랍어로 번역한 한국 운전면허증 확인 서류의 경우 비용 없이 대사관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이다. 혈액형 검사증과 시력 검사증은 면허 신청서 목록에 작성하는 것으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미리 병원에 가서 운전면허용 시력검사와 혈액 검사를 마친 이후 받은 검사 완료증을 운전면허장에 제출하는 편이 좋다.

리야드 운전면허 시험장 중 Takhassusi street에 위치한 'Takhassusi Dallah Driving School'을 주로 이용한다. 리야드 중심에서 자동차로 약

10~15분정도 거리에 있다. 시험장 도착 후 정문 왼편의 사무실에서 초록색 파일을 살 수 있으며, 여기서 간단히 서류구비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받은 뒤 안내에 따라 혈액, 시력 검사증 확인, 간단한 운전 테스트, 서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 후 운전면허증 신청 건물로 가서 번호표를 받고 차례가 오면 창구로 가서 준비한 파일을 제출 하면 신청과정은 끝난다. 면허증은 신청을 완료하고 10~20분 뒤 신청장 중앙에서 관계자가 이름을 호명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다른 운전면허 시험장으로는 King Fahad Branch Road에 위치한 Driving School이 있다. 리야드 중심에서 자동차로 10~15분 정도 거리에 있다. 입구 앞 왼쪽에는 시력검사, 혈액검사, 아랍어 번역 사무소가 있어 모든 준비서류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뒤, 운전면허증 신청 건물로 가서 번호표를 뽑고 창구로 가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과정은 끝난다. 이 경우 미리 현지계좌를 통해 신청비용을 부담하면 편하다. 면허증 신청을 완료 후 면허 시험을 치르고 다시 등록 건물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 된다.

시험장의 직원들은 대부분 영어를 하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 기타 확인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면허 신청 후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천차만별이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장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며 일을 처리하려면 2~3시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근무시간도 오후 2시까지이기 때문에 빨리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7시 30분) 가는 것이 좋다. 공휴일을 전후로 관련 담당자가 아무런 통보 없이 휴가를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미리 숙지해두면 좋다.

운전면허증 신청 시 종종 담당자가 시스템상에 사진이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공항에서 입국심사 시, 지문 스캔과 얼굴 사진을 찍는 과정을 통해 이 정보가 현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발생한다. 이 경우 킹 파하드 로드(King Fahad Road)에 있는 여권 관리국에 찾아가면 지문등록과 사진촬영을 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준다. 이후 다시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사전에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운전학원에서 1개월 이상 수강을 해야 하고 기능시험을 봐야 한다. 수강료는 약 SAR 500(USD 133) 정도이며, 주중 3시~9시에 수업을 듣고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 여성의 운전이 금지된 세계 유일 국가로 여성(외국 여성 포함)의 운전면허의 취득이 불가했지만, 2017년 9월 26일 사우디 국왕의 왕령에 따라 전격적으로 사우디 여성의 운전이 허용되었다. 왕령에 따라 여성운전 관련 여러 제도 및 준비 절차를 걸쳐 2018년 6월 24일자로 여성 운전이 시행되었다.

수 단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경제 개요

수단은 지난 2011년 남수단 독립으로 유전수입의 70~80%를 상실하여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이후 2017년 10월 미국의 대수단 경제 제재 해제 등 경제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유동성 부족,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여전히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IMF 추정 경제성장율 2018년 -2.3%, 2019년 -1.9%).

수단의 환율은 변동환율제를 표방하나 중앙은행의 대달러 수단파운드화(SDG) 환율은 사실상 확정 고시체제이다. 2017년 6.7파운드를 기록하던 환율은 2018년 현재 47.5파운드로 치솟았으며, 암시장 환율은 60~70파운드선에 달하는 등 공식환율과 시장환율간 괴리도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외환보유고는 지난 2011년 남수단 독립이후 공개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

2011년 이후 연평균 30%를 상회하던 인플레이션은 2015, 2016년 10퍼센트 후반대로 다소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2017년에는 다시 29.8%로 상승한데 이어 2018년에는 68.93%에 달하며 베네수엘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였다. 실업율도 지속적으로 약 2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2011년 남수단 독립이후 대부분 거시경제 지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해 정부가 장기적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해

단기간내 경제 회복은 난망한 상황이다. 또한 낮은 성장률, 높은 실업률 및 물가상승률, 부족한 외환보유고, 외환수입원 부재, 밀수 및 부패 등이 수단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외교역 현황

과거 남수단 독립 이전 수출은 2010~2011년 연속 100억 달러를 넘었으나, 남수단 독립 후 석유자원의 75% 내외를 상실하면서 2012년 41억 달러로 급감, 2016년 30억 달러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7년 40억 달러를 회복했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매년 50억 달러 내외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 같은 적자폭은 2012~17년 GDP의 5%에 달하는 규모이다.

2017년 기준 주요 수출대상국은 UAE (40%), 중국(15%), 사우디(15%), 이집트(11%) 순으로 이들 4개 나라가 전체 수출의 81% 차지한다. 대한국 수출액은 250만 달러로 수단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38위 수출대상국이다.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24%), UAE (12%), 인도(8%), 사우디(7%) 순으로 이들 4개 나라가 수단 전체 수입의 50% 차지한다. 대한국 수입액은 1.6억 달러로 우리나라는 수단 수입시장 점유율 10위를 기록 중이다.

수단 대외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수출	44.5	31.7	30.9	40.1
수입	92.1	95.1	83.2	91.6
수지	-47.6	-63.4	-52.3	-51.0

출처: 수단 중앙은행

산업구조

2017년 수단의 산업별 GDP 구성을 보면 농업이 약 39%, 산업 2.6%, 서비스업이 58%를 차지하고 있다(CIA). 남수단 분리독립으로 보유 유전의 75%

를 상실한 이후 수단 정부는 광업과 농업을 수출 산업 육성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따라 산동물·가죽/고기, 참깨 및 면화의 농축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한편, 수단 정부는 석유 대체를 위해 금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15년 수단 광물부는 자국의 금 매장량이 남아공, 가나에 이어 아프리카 3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2012~17년 기간 중 금수출은 수단 전체 수출의 1/3을 차지할 정도도 수단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단은 농축산업 종사 인력이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산업인프라와 자본, 숙련노동력이 부족하여 설탕, 시멘트, 일부 자동차조립, 플라스틱 제품 생산 외 산업기반이 취약한 상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수단은 2018년 현재까지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회원국이 아닌 옵저버 자격에 머물고 있어, 고율의 관세율 및 기타 세금이 복잡하게 부과되고 있다. 평균관세율은 20%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

다만 곡물류, 의약품, 원자재, 농기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 농업용 투입재 8백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는 세수 확대, 자국 조립산업 등 보호를 위해 40% 이상의 고율관세가 매겨지고 있는데, 이는 Sub-Saharan Africa(SSA) 국가들의 평균관세율(12.5%) 및 저소득 국가들 (lower-middle-income country group)의 평균관세율(11.4%)보다 크게 높은 상황이다. 또한 품목별 관세율 편차도 커서 의료기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이 부여되나 사치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와 함께 기타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농산물 보호를 위한 관세율도 높은 편으로 농산물 평균관세율은 19.5%인데 반해 非농산물 평균관세율은 15.7%로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높게 책정하고 있다.

수단은 2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COMESA(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초대 회원국으로 이들 국가와 교역시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동시에 범아랍자유무역지대(GAFTA) 회원국으로 동 18개 회원국에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부가세 등 기타 세금

수단은 수입, 수출 품목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며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12% 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한다. 이외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발세(Developemtn Tax), 영업세(Business Profit Tax), 특소세 성격의 기타세금(Additional Tax) 등이 있다.

이들 세금은 자국산업 보호, 사치품 제한 등이 목적이라지만 이로 인해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40%임에도 실제 수입부담율은 100%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관세 납부시 별도 적용되는 환율, 자의적인 품목 분류 등으로 인해 실제 관세 등 납부시 고율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통관

수입상은 import declaration, commercial invoice,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검역확인서(quarantine license, 필요시), Sudanese Standards and Metrology organization(SSMO) 확인서(필요시), 은행거래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관련 관세 및 부가금을 납부하면 해당제품을 통관시킬 수 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외환부족에 따른 수입 통관이 엄격해져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고, 제3국을 통한 수입대금 결제건의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취해져 수입상들이 통관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품목 분류, 필요 서류 등에 있어 규정의 제정 및 인식 부족으로 자의적인 해석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요구하는 서류도 까다로운 편으로 수입 통관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수입대금 결제 및 외환 통제

2017년 10월 미국발 경제제재가 20년만에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은행을 통한 수입대금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제도적으로는 금융거래 제재가 해제되었다고 하지만 미국이 수단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려놓은 탓에 서방 은행들이 수단 관련 거래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국, 인도, 아랍권 국가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를 포함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수단과 외환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수단 수입상들은 우리나라 제품 구매시 두바이 등 제3국을 통한 결제방법을 주로 활용해 왔으나, 외환부족으로 지하자금의 제도권 유입을 바라는 수단 정부는 제3국을 통한 수입대금 결제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 L/C는 수단내 주요 대기업에만 제한적으로 개설되고 있으며, 수단내에서 외화송금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제3국을 통한 수입대금 결제를 완전히 막을수는 없는 상황이다.

수입규제

산업화 미비로 인해 대부분의 공산품 소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단은 관세법상 금지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알코올, 음란물, 돼지고기 등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품목, 이스라엘로 부터의 수입은 금지하고 있다.

특정 중고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도 강력히 유지 중으로 출고후 1년이 지난 중고차, 중고의류, 중고 전자제품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2010년 9월부터 수입억제, 자국 조립산업 보호 명목하에 출고된지 1년

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개인 물품을 포함해서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중고부품류 수입만 허용하고 있다.

이외 외환사정 악화에 따라 반복하여 불요불급한 비필수재에 대해 수입금지 품목으로 발표하기도 한다.

주요 인증제도

수단 정부는 자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강, 보건, 기술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군에 대해서는 수입판매전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례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은 바이어를 통해 NMPB(National Medicines & Poision Board, 우리의 식약청에 해당) 제조시설, 품목 등을 등록해야 하며 농기계, 자동차, 전자제품 등은 우리의 표준청에 해당하는 SSMO(Sudan Standard & Metrology Organization)에 그리고 동물용 사료, 의약품, 사료 첨가제 등은 동물자원부 (Ministry of Animal Resources)에 등록해야 한다.

이들 등록시는 제조사, 판매사, 제품을 등록토록하고 있으며, 수단 자체 인증제가 없는 만큼 미국, 일본, EU, 한국 등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UL, FDA, CE, ISO) 등을 획득한 경우 등록이 수월한 편이다.

투자 장벽

1951년 영국, 이집트로부터 독립한 이후 수단은 오랜 내전과 미국으로 부터의 제재로 인해 경제, 인프라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한 여파로 현재 미국의 대수단 경제 제재 해제에도 불구, 서방 국가의 對수단 투자는 활발하지 못한 상태로, 따라서 중국, 아랍권 국가들의 제한된 투자에 의존해 왔다. 게다가 2011년 남수단 독립으로 석유자원의 75%를 상실하고 중국, 아랍권의 경기도 둔화되면서 對수단 투자는 더욱 위축된 상태이다. 서구, 아

시아 국가들의 투자가 저조한 가운데 수단의 외국인투자유치는 사우디, 카타르 ,두바이, 터키 등 아랍권 국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대우그룹이 수단정부 지원과 협력하에 대규모로 진출, 의약품, 섬유, 타이어 제조 및 호텔, 금융업까지 영위한 바 있으나, 대우그룹 해체로 현재 진출기업은 포스코대우-신풍제약(제약), 삼성전자(연락사무소), LG전자(연락사무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테러지원국 지위 유지에 따른 금융 제약, 열악한 인프라, 불투명하고 일관되지 못한 행정과 세무, 경제위기 지속에 따른 정국 불안 등이 수단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에 더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시 외국기업의 對수단 투자가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는 바, 투자대상국으로서 잠재적 가치는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

참고로 세계은행이 발표한 'Doing Business Report 2018' 자료에 따르면 수단은 조사 대상 190개 국가중 170위로 사업환경이 최하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분야별로는 재산등록(89위)을 제외한 채무해결(154위), 국외무역(185위), 계약강행(146위), 소수투자자보호(186위) 납세(163위), 자금조달(173위), 건설허가(133위), 전력확보(110위), 창업(159위) 등 거의 모든 평가분야에서 비교대상국 중 하위 내지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투자법 및 장려 업종

수단은 1999년에 투자법을 제정했으며, 세차례에 걸쳐 개정 지금은 2013 투자촉진법 (National Investment Encouragement Act 2013)을 적용중이다. 동법규는 농축산, 제조, 에너지, 광업, 교통, 관광, 사회인프라 등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촉진,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장려 업종은 아래와 같다.

- 제조 : 기초원자재 가공, 기계 엔지니어링, 석유화학, 건설중장비
- 광산업 : 금, 은, 크롬, 철 등 광물자원 개발, 관련 광산장비

- 농축수산 : 검아라빅 ,참깨 관개농업, 축산, 수산양식
- 기타 : 사회인프라, 관광 등

사회보장제도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는 종업원을 위한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는 우리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총 부담률은 총급여의 25%로 이 중 17%를 고용주가 부담하고(8%는 직원 급여에서 공제)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장에 가입한 경우 직원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면제된다.

단 외국기관에 속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가입이 면제되며, 외국인의 경우도 수단 기업에서 급여의 일부나 전체를 수령하는 경우 사회보장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노동유연성

수단 역시 저개발 국가로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영국식민지의 영향을 받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규는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 노동자 보호에 집중된 노동법 운영으로 노동유연성은 낮은 편
- 노동법에 적시된 폭력, 횡령, 범죄 등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해고시 해고 6개월 분의 통상임금 지급 필요
- 근무 연차에 따라 최저 20일 이상의 연차 휴가에 더해 병가, 원거리 고향 방문 휴가 제도 운영

지분 소유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제도적으로 보면 그린필드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무역, 도소매업, 공공부문의 경우 외국인 단독투자는 불허, 아직까지 한-수단간 투자보장협

정이나 이중과세방지 협정도 발효되지 않은 상태로 직접투자 방식의 진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편이다.

현지법인 및 수출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투자법외에 관련 부처의 내부 규정에 의한 외국인 규제가 존재하기도 하는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외환부족으로 인해 수출입 관련 규제가 강한 편으로 수단내 판매 목적의 수입활동을 위해서는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수입회사는 내국인 지분율이 51% 이상이어야 한다.

부동산 취득

투자촉진법 상 촉진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정부 소유 산업단지를 낮은 가격에 임대할 수 있다. 공장 등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투자청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다. 일반적으로 투자청에서 대상 토지를 추천, 투자가가 적격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조세 제도

수단은 세율 인하 등 세무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산화 미흡, 과세항목 및 표준 비세분화로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아직까지 문제로 꼽히고 있다. 세율 인하의 대표적인 예로는 2007년 법인소득세율을 기존 30%에서 15%로 낮추고, 법인세를 국세청 기준에 의한 일방적 세액 통보 부과 방식에서 기업 자체 신고 후 사후 감사 방식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변경은 기업활동 활성화, 외국인 투자유치 장려 등이 주 목적이나 광업, 석유개발, 유통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3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수단 조세 제도의 주요 세목은 법인세(Business Profit Tax),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부가가치세(VAT) 등이 있으며, 사안별로 인지세(Stamp Duty), 이슬람 세제(Zakat) 등이 부과된다.

법인 부과 세금 요약표(연간 기준)

세제	과세기준	세율
Business Profit Tax	순이익	15%
VAT	판매액	17%
Zakat	(유동자산-유동부채) X 무슬림 Share	2.579%
Capital Gains Tax	이익	5%

수단 법인세법은 2007년 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30%에서 15%로 대폭인하 되었으며, 인하 배경에 관해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극대화를 위한 조치일 것으로 생각된다. 단, 광업, 석유개발 및 유통기업은 35%의 고세율이 적용된다.

Zakat(이슬람세)는 회사 주주 중 무슬림이 있는 경우 부과되며, 주주 중 무슬림의 자본비율에 따라 2.579%의 세금이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되고, 이 중 높은 세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 계산의 복잡상으로 인해 통상 ①번의 방법으로 계산하며 세무당국도 관례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① [유동자산 -유동부채] × 무슬림의 지분 소유율 × 2.579%

② [자본금 + 이익잉여금 + 준비금 + 충당금-순자산] × 무슬림의 지분 소유율 × 2.579%

일반적인 부가가치세(VAT)는 17%이나 의약품에는 영세율, 정보통신업에는 20%가 적용되는 등 차등 적용한다. 수단은 신용카드 미사용 국가로 이로 인해 부가세 신고가 많은 편이다.

개인소득세는 15% 이며, 단 건설노동자, 일용자 노동자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사회보장은 실업, 의료보험 성격으로 총급여의 25%를 부과, 이중 17%는 고용주가 부담, 8%는 직원 급여에서 공제해 고용주가 납부한다.

수단 정부의 노력에도 세무행정의 전산화는 미약한 편으로 각종 서류 처리, 보관이 수기로 이뤄지나 보니 누락, 오류가 많고 담당자 변경도 자주 발생하는 바, 제출한 서류 사본을 철저히 보관하여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장벽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른 제한

유엔 안보리 결의(1566, 1591)는 다르푸르 지역 반군과 수단정부 및 교전단체에 대한 무기금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기업이 수단에 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산물자수출 관련 고시를 제정하여 對수단 방산물자 수출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수단 내 주요인사에 대한 자산동결을 시행중이므로 우리 기업이 이들과 거래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한

미국의 수단에 대한 기존 경제제재 중 대통령 행정명령(E.O. : Executive Order)에 의거한 포괄적 경제제재는 2017년 10월 해제되었으나,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재 및 다르푸르 학살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한 표적 제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 가운데 수단 경제에 가장 포괄적인 영향을 미쳤던 행정명령(E.O.13067, 13400, 13412)에 의거한 제재의 경우, 2015년 이후 미국과 수단간 2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2017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영구적으로 해제하는 조치를 내림으로써 20년만에 적용이 중단되었다. 동 조치는 미국인의 수단에 대한 무역, 투자, 석유산업과 관련된 일체의 거래를 금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수단 내 일부 지역(다르푸르, 남부2개주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위치한 금융기관과의 달러화 거래 일체를 금지하고 있었다. 특히 금융거래 제재의 경우 상당수의 국제적 외환 거래가 달러화로 이루어지는 현실에 비추어,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은행들로 하여금 수단 은행과의 코레스 거래를 중단할 수 밖에 없게 함으로써 수단 내 위치한 기업들이 수단 내 금융기관이 아닌 제3국에 위치한 협력사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등 정상적 기업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동 제재가 해제된 것은 미국의 수단에 대한 제재 중 가장 광범위한 제재가 사라진 것으로,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미국인의 대수단 무역 및 투자, 금융거래가 허용되어야 하나, 실질적으로 많은 은행들이 아래 테러지원국 지정 등 많은 리스크를 이유로 수단 은행과의 거래 재개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아직 남아 있는 미국의 제재 중 수단 정부가 강하게 해제를 희망하는 것은 테러지원국 지정인데, 이는 테러지원국 지정이 현재 수단의 국제사회로부터의 차관 도입을 가로막음으로써, 외환의 대규모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내법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서 테러지원국 지정 대상 국가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어떠한 우호적 논의에 대해서도 반대하게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주요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에서 수단의 막대한 외채(559억불, GDP 60% 가량)에 대한 해결 논의 자체가 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이유로 미국이 주요 이사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IMF, WB 등 여타 국제금융기구 또한 수단에 대한 차관 혹은 자금 공여를 추진할 수 없어서, 수단 정부의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한 각종 자금 및 경제개혁을 위한 안정화 자금 도입 등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수출 산업 부재로 인한 만성적 무역적자, 막대한 보조금 및 군사비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 열악한 투자여건으로 인한 외자 유치 부족 등 자금 확보 수단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단 정부는 현재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통한 외부 자금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은 위와 같은 수단의 거시경제 여건에 대한 부정적 영향 뿐 아니라, 복잡한 수출통제 규정을 통해 방산 물자 및 기타 이중용도(dual-use) 품목의 대수단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소재 법인 보유 등 미국과 관련성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수단에 대한 수출 물품이 상기 규제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 상무부 수출관리규정(EAR) 등을 꼼꼼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지재권

수단은 유엔 산하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회원국으로 관련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지재권에 대한 정부, 소비자의 인식은 약한 편이다. 특허, 상표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침해 사례가 다수 보이며 정부의 규제도 허술한 편이다. 수단내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로는 특허법(Law No.58/1971), 상표법(Law No. 8/1964), 저작권법(Law No. 49/1974), 산업디자인법(Industrial Designs law No 18/1974) 등이 있지만 실제 적용은 느슨한 편이다.

부패 문제

수단은 Transparency International이 발표한 201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176개국 중 170위를 차지할 만큼 사회 전반에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정부 유력 인사의 가족들이 기업을 운영하며 각종 정부 사업들의 이권을 챙기는 일이 다반사이고 경찰이나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행위도 흔히 발생한다.

또한 정부에 대해 정보를 공개토록 요구할 수 있는 정보 공개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기업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수단 정부가 응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외국 투자 기업이 필요한 정보가 있더라도 정부 측으로부터 신속하고 공신력 있는 답변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타 장벽

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외국인의 경우, 거주비자가 없으면 은행구좌 개설이 불가능하고(거주비자 취득자의 경우에도 구좌 개설 절차가 까다로움), 자동차 매매가 불가능하다.

또한 주택 임대 시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현지인들이 임대계약 체결을 꺼린다.

수단으로의 입국은 현지 업체의 초청으로 일반 상용비자로 입국한 후, 취업 거주비자(일반 근로자의 경우 1년, 대표자급은 5년 유효)로 전환 가능하다. 전환절차는 수단 내 법인의 재직증명서와 법인의 비자 발급 요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고, 보건부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에이즈 검사)를 마친 뒤에 거주비자를 취득하면 된다. 취업 거주비자를 받아 현지 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할 경우 세무서에 해마다 일정 금액의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석유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면제된다.

일반 상용비자로 입국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3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이민국에 입국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한 달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매달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현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한국면허증으로는 운전이 불가하며, 한국운전면허증을 아랍어로 번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기능시험을 거쳐(필기시험 면제) 교통국 면허과에서 현지면허증으로 교체하여 준다. 다만 이러한 정책에 대한 현지 경찰의 무지로 필기시험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수단은 20년간 (1997~2017)년간 지속된 미국발 경제제재, 1993년 이후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테러지원국 지정, WTO 미가입 상태로 인해 무역투자, 금융거래 관행이 국제 기준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특히 현재 무역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제약사항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이로 인해 정상적인 외환거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파이낸싱 및 차관 지원이 막혀 있는 상태이다. 특히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서방계 은행의 기피현상으로 인해 수단발 외화 직접 송금이 제한된 가운데, 수단 정부는 제3국을 통한 수입대금 결제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금지 입장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L/C 개설이 일부 공기업, 대기업에 국한된 가운데 외화송금도 제약된 상황에서 제3국을 통한 송금외 마땅한 수입대금 결제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수단정부는 외화, 현지화의 제도권 유입을 위해 애쓰고 있으나 아직까지 환율은 정부가 고시하는 공식환율과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환율로 이분화되어 양 환율 간 차이가 큰 상태이며, 2011년 남수단 독립후 환율은 계속 치솟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수입상들은 현지화 환산 수입단가 상승, 국내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바이어들은 금생산 증가, 미국관의 관계 개선, 남수단 평화협정 이행 등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으로, 수단 기업과 거래를 희망하는 경우 주수단 한국대사관이나 KOTRA 무역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최대한 파악후 거래, 진출 추진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UAE는 세계 6위의 석유 및 세계 7위의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방적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여 정치적 안정, 친기업적 시장 환경, 양질의 인프라, 주변국 시장으로의 접근 용이성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석유 공급국인 UAE의 경제는 세계 유가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UAE 정부는 포스트 오일(Post-oil)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다각화 정책과 동시에 중동지역의 무역, 금융, 통신, 교통, 관광의 중심지(hub)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UAE는 지난 10년간 이어진 산업다각화 노력에도 여전히 석유에 의존해 있는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 기조로 경기침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UAE 정부는 저유가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로 각종 보조금 폐지, 연방법인세 도입 등을 검토 중이며, 2018년 1월 부가가치세(VAT)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인근 중동지역의 정치·사회적 불안과 비교하였을 때 UAE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Safe-haven)으로 평가되며, 분쟁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와 소비문화를 바탕으로 무역, 관광 산업 등이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2018년 5월 美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협상(JCPOA) 파기와 8월 및 11월에 복원된 대이란 제재로 인해 대이란 무역투자가 성행했던 두바이

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한편 두바이는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 준비로 건설, 물류, 관광, 제조업 등의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UAE의 성장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동향

Trade Map에 따르면 UAE의 2017년도 수출액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3,085억 달러로 추정된다. 증가요인은 주요 수출 품목인 오일&가스의 가격 상승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입액은 2,697억 달러로 전년 대비 0.4% 감소하였다.

UAE의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수출	333,362	-46,978	298,651	-34,711	308,537	9,886
수입	287,025	-11,586	270,882	-16,143	269,735	- 1,147
수지	46,338	-35,390	27,769	-18,569	38,802	11,033

자료원: Trade Map

UAE의 2016년도 최대 수입대상국은 중국이며 이어서 미국, 인도, 일본 등의 순이다. 중국의 대UAE 수출은 무선통신기기, 컴퓨터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항공기 및 부품, 기계류, 자동차,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출 비중이 높다.

2017년 UAE의 주요 수입국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금액	비율(%)
1	중국	48,246	17.9
2	미국	23,308	8.6
3	인도	20,232	7.5
4	일본	13,983	5.2
5	독일	11,882	4.4

순위	국가명	금액	비율(%)
6	베트남	9,755	3.6
7	대한민국	7,963	3.0
8	터키	7,611	2.8
9	사우디아라비아	6,903	2.6
10	이탈리아	6,814	2.5

자료원 : Trade Map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UAE 수출액은 54억 달러 기록, 제21위 수출대상국으로 중동지역에서는 2년 연속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 건설업체들의 프로젝트 수주와 자동차, TV,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 호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對UAE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수출	6,077	△15.7	5,870	△3.4	5,389	△8.2
수입	8,615	△46.8	6,941	△19.4	9,557	37.7
수지	-2,538	△71.7	-1,071	△57.8	-4,168	289.2

자료원 : 관세청

무역제도

UAE가 1996년 4월 WTO 회원국이 되면서 UAE의 무역제도는 국제무역규범에 따르고 있다. UAE의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이다. 무역정책 입안을 위해 경제부는 관련 정부부처는 물론 각 에미리트 행정당국과 협조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의견수렴을 위해 상공회의소나 직종별 협회와도 교류하고 있다. 무역정책 수립절차는 관련 부처의 입법안이 연방평의회(FNC)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연방최고회의(Supreme Council)의 비준을 거쳐 공포된다.

석유, 가스, 석유화학을 제외하고는 프리존(Free Zone)이 UAE의 수출 중심지로서, 수출 및 재수출 기업에게 물류, 행정,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프리존의 기업들은 UAE 국내에서 적용되는 일부 라이선스, 스폰서 고용 등의 의무에서 면제된다.

UAE의 인증제도는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 여러 에미리트 기관들이 각기 다른 품목을 관장하거나 특별한 규제 없이 수입품의 유통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연방차원의 통일된 기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부터 UAE 연방 표준측량청인 ESMA(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2년간 플라스틱 포장재, 조명기구, 가전제품, 화장품 등 신규 규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따라서 UAE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ESMA의 규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특히 전자제품 관련 신규 규제가 늘어났다. 2017년 8월부터 UAE에 수출하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라벨링(EESL)과 RFID 통합태그 부착을 의무화하여, 시리얼 번호 관리 및 상품 추적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7년 9월에는 드론 제품 등록에 필요한 안전 및 기술적 요건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드링크, 유제품 및 주스의 유통 및 가공 단계와 설탕 농도의 제재 필요성에 대해 제기되어 2017년 9월 관련 신규 규제가 도입되었다. 2018년 1월부터는 의료기기를 포함한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RoHS)이 단계적으로 도입 중이다. 더불어 2018년 6월부터는 수입 저전압 기기에 적합성인증(ECAS) 로고 부착을 의무화하였다.

UAE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GCC 차원의 최초 수입규제 조치로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6월 25일부터 5년 동안 약 12%에서 2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더불어 2018년 5월 15일부터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해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향후 3년간 부과되며, 1차년도 169 USD/톤에서 시작하여 3차년도에는 137 USD/톤으로 점차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걸프협력회의(GCC)는 2017년 9월 콘크리트, 시멘트 및 타일 가공첨가제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조사에 착수

하기도 하였다. 향후에도 UAE가 산업 다각화를 위해 기초 소비재 생산설비 확충, 석유 화학 및 다운스트림 고도화를 추진함에 따라 관련 수입 규제 조치의 증가가 예상된다.

UAE를 포함하여 이슬람국가에서는 식품류에 적용되는 '할랄(Halal)' 인증 제도가 있다. 할랄인증은 전 세계 공인된 인증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UAE로 육류, 가금류 포함 가공식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수입승인을 위한 할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증명서는 UAE 표준측량청(ESMA)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한국 할랄인증 공인 이슬람협회인 한국이슬람교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가 발급하는 인증도 수입통관시 요구되는 할랄인증서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7월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UAE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 10월 1일 발효되었다. 종합인증 우수업체(AEO)는 법규 준수,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 관리 등의 적정 기준에 따라 관세청에서 공인한 업체이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 수출입시 세관 절차상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시 우선 조치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MRA 체결로 상대국인 UAE에도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현재 UAE는 우리 수출기업 제품의 약 5%를 검사하였으나 공인된 우수업체의 경우 2.5%로 축소된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 제1위 수출대상국인 UAE와의 교역량 증대가 기대되며,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를 해소하는데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관세와 통관제도

관세와 관세 환급

UAE는 개방적 시장경제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해 무관세 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왕실, 정부, 외교관의 용도로 수입하는 상품이나 병원, 자선단체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과 원산지가 GCC 회원국인 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이다. 담배는 100%, 주류는 50%의 특별 고관세가 적용된다. 기타 가축류, 기초 식품류, 약품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UAE 내 수입된 물품이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출되는 재수출용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BE(Bill of Entry) 상에 재수출용 물품임을 기재하고 일단 부과된 관세액을 납부한 후, 관세환급 신청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시 또는 시연 샘플의 일시수입에 대한 전시품 관세면제 제도가 있다. 인보이스 원본과 원산지 증명서, 패킹리스트, 개최주최로부터 받은 참가확인서를 첨부하여 입국세관에 신고하면 출국 시 환급받을 수 있다.

통관절차

UAE의 수입 통관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투명하지만, 수입업자는 반드시 관세청으로부터 유효한 수입업자 코드를 획득하여야 하며, UAE에 등록된 회사(UAE 국민이 또는 기업이 지분의 51% 이상 소유)만 자격이 있다. 수입물품 통관 시 상업송장(Invoice) 및 원산지 증명서(C/O)에 해외주재 UAE 영사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수관 물품 보세구역 반입

■ 2단계: Bill of Entry(BE) Form 작성 및 제출(아래 부속서류 첨부 요)

- Invoice
- Delivery Order(D.O.)
- Bill of Landing/Air Bill(B.L.)
- Packing List
- Certificate of Origin(C.O.)

- 수입상 Trade Licence 사본
- 수입상의 위임장(Authorization Letter to Shipping Co.)

■ 3단계: 관세 납부 및 통관물품 보관장소 확인

- CIF 기준 5% 관세 부과
- 관세 납부 후 수입물품 보관장소 확인

■ 4단계: 수입물품 검사 및 확인 스탬프 날인

- 수입품 검사소에 관련 서류를 제시, 검사일시를 지정받음
- 지정된 검사 날짜/시간에 하주 또는 대리인 입회하에 수입물품 검사가 이루어지며, 이상이 없을 경우 BE에 'Cleared'라는 확인 스탬프를 날인
- 마약, 주류, 음란물, Under Value, 원산지 등을 검사함.

■ 5단계: 반출 확인서(Out Gate Pass) 및 운송차량 통과증(Vehicle Pass) 발급

■ 6단계: 반출

수입규제

UAE는 자유무역경제를 지향할 뿐 아니라 생필품, 소비재, 산업자재 등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수입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 환경, 안전, 종교, 도덕적 관점에 반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을 금지 및 규제하고 있으며, 수입금지와 규제품목은 대체로 GCC세관 규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스라엘 보이콧 규정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이스라엘산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국기나 이스라엘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제품도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UAE에는 환경보호, 국민보건 및 이슬람 교리와 관련하여 약간의 규제가 있다. 특히, 돼지고기 함유 여부 등은 성분검사가 까다로우며, 제조업체에서 영문으로 표기된 성분 분석표를 첨부시켜 샘플 테스트를 통과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도축 식품, 할랄(Halal) 음식 수입에 대해서는 특별 부과료가 있으며, 매년 갱신료도 있다.

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회사는 생산국 및 제3국에서 취득한 의약품 등록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보건부의 의약품 수출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모든 의약품은 반드시 보건부의 사전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도 식품과 같이 포장에 반드시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성분, 사용처 등을 아랍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주로 보건위생상의 이유로 WTO 규정 등에 다른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 소의 광우병 발생 파동에 따라 2009년에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 관련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며, 2011년에 유럽발 E.coli 박테리아 오염 파동에 따라 독일,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 등으로부터의 오이 수입을 금지한 바가 있다. 또한 UAE의 기후변화환경부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위해 살충제 및 유해물질 과다 검출된 품목의 원산지에 수입 금지를 시행, 2017년 5월 이집트, 오만, 요르단, 레바논, 에멘 5국의 농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해당국의 가금류 수입금지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6월 벨기에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이 세계 동물 보건 기구에 등록됨에 따라 벨기에산 열처리 되기 않은 가금류 및 부산물 수입을 금지였다. 2017년 8월에는 필리핀산 가금류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제를 취하였으며, 식품대상 사용제한 살충제인 피프로닐(Fipronil)이 검출된 네덜란드산 계란의 수입을 금지했다.

2017년 8월 기후변화환경부는 일본의 키코만 간장 관련 양조과정에서 알코올 성분(1.5~2.0%) 검출과 제품의 제조일자 표기 오류 등의 문제로 일본에서 제조된 제품에 한하여 수입을 금지하였다. 재고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소비자들에게 기구매 제품의 처분을 권고하기도 하여 우리 기업이 식품 수출 시 알코올 성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조달

일반적으로 UAE의 정부조달 규모는 연방 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구매예산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각 에미리트별로 수행하는 다양한 산업개발 프로젝트, 국영기업의 구매예산도 포함될 수 있다.

UAE 정부는 정부조달에 있어 현지업체나 중소기업에 가점을 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외국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UAE는 WTO 정부조달협정 서명국이 아니다. 정부조달은 대부분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입찰 방법은 일반 공개입찰, 제한입찰, 경쟁견적, 수의계약의 4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입찰은 국제입찰과 국내입찰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 입찰 모두 UAE 국적 파트너와 함께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국제입찰의 경우에 외국인의 명의로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가격 결정 등 외국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입찰의 경우에 UAE 국적을 가진 파트너의 명의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동 파트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석유가스분야 플랜트 발주가 많은 UAE 아부다비 에미리트 정부는 2018년 4월부터 아부다비석유공사 발주사업에 국내가치(ICV: In Country Value) 인증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ICV는 자국내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 증가를 유발하여 GDP 다변화를 이끌어내고, 민간분야에서 자국민 고용기회를 확대하며, 핵심 공급망의 현지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ICV 프로그램은 의무화가 아닌 권장사항이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기술성 평가, 상업성 평가와 함께 주요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ICV 인증서가 없으면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되어 사실상 의무화나 다름 없다. ICV 평가 및 인증은 ① 제조, ② 조달, ③ 하도급, ④ 투자, ⑤ 현지인 고용, ⑥ 외국인 공헌 등 6가지 항목으로 이뤄진다. 아부다비석유공사가 선정한 6개 컨설팅업체에서 인증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서를 받으면 12개월간 유효하다. ICV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이 사업 수주에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지적재산권 보호

UAE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WTO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등 국제협약에의 서명국이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다.

국내적으로도 1992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방법(40/92)을 제정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가 충분하지 못하여 상표도용,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특허출원이나 의장등록은 연방 경제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을 개정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크게 강화하였다.

❑ 상표권(Trademark): 1992년에 법률 제정

- Ministry of Economy에 신청 및 등록
- 상표권 보호 기간: 10년

❑ 저작권(Copyrights): 1992년에 법률 제정

- Ministry of Economy에 신청 및 등록
- 저작권 보호 기간: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단, 응용 미술(applied art) 및 방송용 저작물의 경우 인쇄 및 방송일로부터 각각 25년 및 20년

❑ 특허/의장/실용실안권(Patents, Design & Models): 1992년에 법률 제정

- Ministry of Economy에 신청 및 등록
- 보호 기간: 특허 20년, 실용실안 10년, 의장 10년

상표권 침해의 경우 경찰 상업범죄 담당 부서(Commercial Crime Department)에서 원본과 위조 상표의 대조·확인 작업을 실시하며, 상표권자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 전 또는 소송 기간 중 동 위조 제품에 대한 사전 압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위조 상표가 포함된 포장, 라벨 등도 압류 요청이 가능하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위조 제품 폐기와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액에 대한 배상 명령을 받아낼 수 있으며, 법원은 위조 상품 제조자에게 위조품 생산 중지 명령과 함께 지역 신문에 동 재판 내역을 공지할 수 있다. 또한 위조품 생산자는 판결에 따라 15일에서 6개월간 거래면허가 중지되며, 이 기간 동안 UAE 내에서의 영업활동은 금지된다.

저작권법 침해의 경우, 일시적인 조치로서 법원은 관련 저작물의 생산·발간·게시 등을 규제하거나, 저작물에 대한 상세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침해 내역에 따라 구속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특허, 실용실안 등 공업소유권 침해 적발 시 당해 물품은 압수되며, 구속 또는 5천 디르함 이상 10만 디르함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업소유권 침해 물품에 대한 몰수 및 폐기가 실시된다.

투자환경

투자여건

세계은행에서 매년 발간하는 기업환경평가 2019년 순위에서 조사대상국가 190개 중 11위를 기록, 중동지역에서는 1위로 지역 허브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UAE는 오랜 기간 동안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미 달러화에 고정된 디르함(AED)의 안정성과 투자 후 과실 획득 시 외환 송금의 편리성 등 UAE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투자진출 지역 중 하나로 여겨진다.

또한 해외기업의 회사설립에 관하여 석유 및 가스 산업,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개방되어 있어 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비용 등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환경과 더불어 중동지역 중 정

치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꼽히면서 UAE는 중동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 주목, 매년 수많은 외국회사 또는 개인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아울러, UAE는 프리 존이 매우 발달해 있으며, 이들 프리 존은 면허, 외국인 소유조건, 스폰서 지정, 자국인 고용조건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동안 두바이를 중심으로 프리 존이 크게 발달해 왔으나 최근에는 아부다비 등 다른 에미리트들도 프리 존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대외환경

UAE는 민간부문이 외국으로부터의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받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절차 간소화를 위한 회사법 및 외국인투자법의 제·개정, 카르텔 방지 등에 관한 경쟁법 제정 등을 추진 중이며, 최근 두바이 경제위기로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절실해지자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소유지분율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UAE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조정 대상은 첨단기술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될 것이며, 석유, 가스와 같은 국가 전략산업 분야는 소유지분율 상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UAE는 1994년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1996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있어 UAE와의 양자간 무역협정은 특정 상품들에 대하여 시리아(2000년 11월), 요르단(2001년 3월), 레바논(2002년 3월), 모로코(2002년 3월) 및 이라크(2002년 4월)와 체결했으나, 현재 UAE는 모든 FTA 협정을 GCC 차원에서 협상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현재 GCC 차원에서 FTA를 체결한 국가는 범아랍자유무역협정(1998년 1월 발효, PAFTA), 싱가포르(2013년 9월 발효), EFTA(2009년 6월 서명), 뉴질랜드(2009년 10월 서명)가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일본, 호

주, EU, 인도, 터키, 파키스탄, MERCOSUR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GCC측 내부입장 정리를 위해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회사설립 및 사업 시작

(1) 사업면허와 스폰서 제도

UAE는 외국인 투자법이 독립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 소유의 법인설립이 불가능하다. 법인 설립 시 현지인 51%, 외국인 49%의 지분 참여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지사 설립 시에는 현지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단 예외적으로 자유무역지대에서는 100% 외국인 소유의 회사설립이 가능하다. 2018년 10월 30일 개정된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에 따르면, UAE 정부가 허용하는 일부 분야에 한해 외국인투자 지분율을 최대 100%까지 인정한다. 허용 분야는 2019년 1분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관련 투자 프로젝트는 현지인 고용 및 교육 등의 요건과 UAE 정부가 특정하는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외국인투자 지분율 완화가 허용되지 않는 분야는 석유·가스, 보안·방산, 은행·금융, 보험, 수전력, 우편, 통신, 육상 및 항공교통, 인쇄·출판, 상업에이전트, 의료소매 분야 등이다. 이번 외국인투자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UAE가 산업다각화를 위해 외투 및 기술 유치를 모색하는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UAE 투자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UAE 회사법은 1984년 제정된 회사법(UAE Commercial Company Law, Federal Law No. 8 of 1984)과 2015년도에 개정된 회사법(Federal Law No. 2 of 2015)을 토대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각 에미리트의 경제개발부(DED), 관광청 또는 산업단지관리청 등으로부터 사업면허(Trade License)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면허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가 있다.

사업면허의 종류	사업 내용 및 요건
상업면허 (Commercial License)	- 수출입, 판매, 유통, 저장 / 은행, 보험 / 호텔, 운송 등 활동 기업 - 활동 개시 전에 경제부에 상업등록을 하여야 함
산업면허 (Industrial License)	- 제조업 등 산업 활동 기업 - 최소자본금 : 25만 디르함
전문면허 (Professional License)	- 회계·법률 등 전문직서비스 및 예능서비스 활동 기업 - 전체 직원의 수가 제한될 것임
관광면허 (Tourism License)	- 호텔, 숙박, 여행사 등 관광활동 - 활동 개시 전에 경제부에 상업등록을 하여야 함

프리존 밖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로컬 스폰서/파트너 또는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하여야 한다. 어떤 형태를 선임할지는 사업면허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가끔 스폰서를 잘못 지정하여 영업기밀 누설, 사업지체 등 투자자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사전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스폰서(회사 또는 개인)의 경험, 인지도 및 보수 등을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로컬 스폰서/파트너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
요구 면허	- 모든 상업면허	- 모든 전문면허 - 외국기업의 지사, 대표 사무소
지분 소유	- 회사 자본금의 51% 이상 지분 소유	- 없음(단, 토목회사의 경우 1%라도 지분을 소유해야 함)
역할	- 비자 취득, 노동카드 취득, 면허카드 취득, 기타 회사경영 활동 지원	- 비자 취득, 노동카드 취득, 면허 발급 등 지원
급여	- 계약에 정한 바에 따름	- 총액 또는 이익 또는 판매액의 일정비율

(2) 회사의 형태

①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 소유권

- 1인 유한책임회사 설립 가능

- 주식은 제3자에게 양도 가능
- 외국인의 지분은 최대 49%까지로 제한
- 일반 국민으로부터 주식청약을 받는 행위 불가

❑ 경영진

- 5명 이하의 매니저(외국인 매니저 가능)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② 지점(Branch Office) /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소유권

- 100% 외국인 소유 허용(단,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하여야 함)
- 모기업의 일부이며, 독립적인 법인격이 없음(UAE내에서 별도 영리활동을 하여서는 안 됨)
- UAE 로컬 스폰서는 지분을 소유하지 않음

❑ 경영진

- 외국인이 매니저일 가능성이 높음

❑ 최소 자본금 요건: 250,000디르함(아부다비)

③ Public Joint Stock Companies(PJSC)

❑ 소유권

- 정부가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10명 이상의 창립주주(유한책임)
- 자국민이 최소 51% 이상 소유

❑ 경영진

- 3~1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회장은 UAE 국민이어야 함)

❑ 최소 자본금 요건: 1,000만디르함

• 자본금의 25~45%는 상장될 수 있음

④ Private Joint Stock Companies

❑ 소유권

• 최소 3명 이상의 창립주주(회사 자본금 전액을 분할 소유, 유한책임)

• 자국민이 최소 51% 이상 소유

• 주식은 일반국민에게 공개될 수 없음

❑ 경영진

• 3~1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회장은 UAE 국민이어야 함)

❑ 최소 자본금 요건: 200만디르함 이상

⑤ Partnership Limited with Shares

❑ 소유권

• 1명 이상의 일반 파트너(공동 무한책임) + 1명 이상의 참여 파트너(유한책임)

• 일반 파트너는 UAE 국민이어야 함

❑ 경영진

• 일반 파트너가 경영을 맡아야 함

❑ 최소 자본금 요건: 50만디르함

• 자본금은 주식 형태로 분할되어야 함

⑥ Limited Partnership Company

❑ 소유권

- 1명 이상의 일반 파트너(무한책임) + 1명의 이상의 유한책임 파트너
- 일반 파트너는 UAE 국민이어야 함

❑ 경영진

- 일반 파트너가 경영을 맡아야 함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⑦ Joint Venture

❑ 소유권

- 2명 이상의 외국인 및 국내 파트너가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기로 계약 합의
- 1명 이상의 파트너가 자신의 이름으로 상업 활동을 영위하고, 다른 파트너는 나서지 않음

❑ 경영진

- 외국인은 경영자가 될 수 없음

❑ 최소 자본금 요건 : 없음

⑧ Sole Proprietorship / Individual Establishment

❑ 소유권

- 1명의 소유자(무한책임)에 의해 100% 소유
- 전문 면허이고,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하는 경우 외국인이 100% 소유 가능

❑ 경영진

- 외국인도 경영자가 될 수 있음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⑨ Civil Company / Civil Works Company

❑ 상법에 따르면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컨설팅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독립된 법인체인 Civil Company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소유권

- 많은 수의 파트너(무한책임)
-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하는 경우 100% 외국인 소유 가능

❑ 경영진

- 경영진이 모두 외국인이어도 무방함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⑩ General Partnership

❑ 소유권

- 2명 이상의 일반 파트너(무한책임)로 구성
- UAE 국민들만 파트너가 될 수 있음

❑ 경영진

- 일반 파트너가 경영권을 행사하며,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만장일치에 따라 의결하는 구조를 가짐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3) 프리존 안에서의 회사 설립

프리존은 에미리트별 Free Zone Authority가 관할하고 있으며, 각각의 프리존에 대한 규정이나 법령은 차이점이 그리 많지 않다. 프리존에서는 UAE의 회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프리존에서의 회사형태는 아래의 네 가지 회사구조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Free Zone Establishment(FZE)

- 주주 1명으로 구성
- 무역, 유통, 저장 등 사업활동 영위 회사

❑ Free Zone Company(FZCo)

- 2~5명의 주주
- 원재료 수입, 가공, 수출 사업활동 영위 회사

❑ 외국회사의 지점

-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며, 모회사의 활동을 다름
- 프리존 내에서 사업경영, 마케팅, 컨설팅, IT 등 사업활동 영위 회사

❑ Freelance Permit

- 모든 프리존에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프리랜스 전문직 활동만 수행 가능
- GCC 소유 지분이 최소 50% 이상이고, UAE내에서 부가가치가 최소 40% 이상 창출될 때 허용

프리존에서 발급하는 사업면허는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활동의 성격에 좌우되며, 그 형태는 크게 아래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Trading License

- 이 면허는 증서에 명시된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Trading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만약 프리존 내 회사가 UAE로의 판매를 원한다면 UAE의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야만 가능함

❑ Industrial License

- 상품의 생산이나 원자재를 수입하여 프리 존 내에서 제조한 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제조업자에게 필요한 면허임

❑ Service License

-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게 필요한 면허임

(4) 제3기관의 각종 인·허가

UAE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특정된 제3의 정부기관으로부터 목적하는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 업 활 동	인허가 담당기관
은행, 한전, 금융 컨설턴트	The Central Bank of the UAE
보험	UAE Insurance Authority
산업 활동	Ministry of Economy The Environment Department (각 에미리트)
병원, 사립클리닉, 의료실험, 약품	Ministry Of Health
자동차 렌털	Traffic & Transportation Department (각 에미리트)
미디어 관련 활동(광고, 온라인 거래, 홈쇼핑, 인쇄, 방송 등)	National Media Council
회계감사, 외국기업 지사	Ministry of Economy
육아, 간호	Ministry of Social Affairs
노동 서비스	Ministry of Labor
식물재배, 농장, 가축 거래, 종자 거래, 검역, 수의	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Agriculture or Environment Department (각 에미리트)
종교 관련 활동	Islamic Affairs and Awqaf
법률 회사	Ministry of Justice
사립학교, 유치원, 체육관	Ministry of Education
항공운송, 항공화물	Department of Civil Aviation General Civil Aviation Authority
통신장비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엔지니어링, 건설	Relevant Municipality (각 에미리트)

(5) 회사설립 절차와 소요시간

UAE 내에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절차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다. 각 절차마다 쉽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서류 확인 보완, 설명 등의 부가절차를 거치면서 설립절차가 복잡해지고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회사 설립 후 실제 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회사 설립 후 2달 이내에 경제부에 상업등록(Commercial Registration)을 하여야 한다.

①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LLC를 설립하는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은행에서 받은 불입자본 증명서
- 납입자본금 등을 증명하는 UAE등록 회계법인의 증명서
- 기타 회사설립 신청서에 명시된 서류

② 지사 및 연락사무소

지사 및 연락사무소의 설립을 위하여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회사(본사)의 정관
- 회사(본사)의 과거 2년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위임장(Power of Attorney)
-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 사업자 등록증
- 회사 사업목적 등 내용이 담긴 소개서(Company Profile)
- UAE에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 에이전트의 동의서(없는 경우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위의 서류는 모두 영어로 작성(번역)하여 국내에서 공증을 받은 후 상공회의소 및 주한 UAE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인증에 약 3일 소요). 참고

로 두바이에서 중견규모의 LLC를 설립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업자등록증을 받기까지 약 15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 표는 DIFC에서 작성한 'Doing Business 2011'에 따른 회사설립 절차별 소요시간이다.

단계	추 진 내 용	소요 기간	소요금액
1단계	회사명에 대한 승인_DED	1일	AED 100
2단계	정관의 공증_DED	1일	자본의 0.25% 페이지당 AED 5
3단계	경제개발부(DED)에 신청서 제출 및 Trade License 획득	6일	부동산 계약금액의 5% + AED 1,000~3,000의 Waste Fee + AED 480 회사등록비 + AED 500 회사명패 승인비
4단계	상공회의소에 등록	2일	AED 1,200
5단계	회사명패 제작	2일	AED 1,000
6단계	노동부 등록	1일	AED 2,000
7단계	현지인 인력 노동부 등록	1일	-
8단계	현지인 인력 General Authority for Pension and Social Security에 등록	1일	-

(6) 즉석 사업자등록증(Instant License) 제도

두바이 경제개발부(DED)는 즉석 사업자 등록 제도를 도입해 신규 기업의 사업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되었다. 기존 상업 및 산업 라이선스 등록 절차는 회사 사무실 공간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 서류로 요구되는 반면, 즉석 허가증은 첫해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서가 면제되며 회사설립계약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다. DED에서 등록 허가하는 모든 산업 활동의 사업자 등록을 서비스 센터, 행복 라운지, 스마트 라운지, 온라인 서비스 등의 경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단, 종합 무역 상사는 전자 무인기기를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최초 비용 AED 10,000은 고정 금액이며 최초 승인, 사업자 증 발급, 상표명 보호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수 서류는 없으나 그 외의 경로를 통해 즉석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야한다. 외국 회사 경우, 현지 사업 파트너 와 매니지먼트 중 한 측의 직접 방문과 함께 양 측의 여권 사본, 외국인 매니지먼트의 거주 비자 사본, 현지 스폰서가 작성한 No Objection Letter 등이 요구된다.

단계	절차
1단계	법적 유형 선택
2단계	산업 활동 선택
3단계	법적 유형에 따라 파트너를 추가하고 파트너 할당의 자본과 양측 간의 손익 분배 내역을 증빙
4단계	상표명 보호
5단계	자본의 가치를 상업 등록 정보에 기입 (타 항목은 자동 기입됨)
6단계	전자 기기 내에 정관 발급 관련 옵션이 제시되며, 신청자는 이를 선택 혹은 건너 뛸 수 있음.
7단계	납입 요청서 발급
8단계	지불

2017년 10월 아부다비 또한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자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산업다각화를 촉진하였다. 라이선스 유효기간은 약 2년으로 토지 매매 및 창업 계약서 없이 취득 가능하다. 동 제도는 UAE 예비 사업자의 회사 설립과 프로젝트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허 소지자는 프로젝트 설립을 위한 부지 물색, 타당성 조사 시행, 직원 취업 비자 취득, 은행 계좌 개설, 해당 정부 부처에 필요 서류 승인 등의 절차를 2년간 진행할 수 있다. 라이선스 신청은 아부다비 비즈니스 센터(ADBC) 방문 혹은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비용은 AED 500~12,000로 산업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7) 아부다비 이중 사업자등록(Dubal License) 제도

2018년 9월 15일 아부다비 경제개발부는 아부다비 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들에게 자유무역지대 외부 본토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중 사업

자등록(Dual License) 시행을 발표하였다. 적용 대상은 일단 아부다비 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점차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회계제도

(1) 회계기준

UAE는 자국의 회계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 Standard(IA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IFRS))을 그대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2) 감독기관 및 회계정보의 신뢰성

UAE의 공개자본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경우는 DFM 및 ADX의 상장규정에 따라 재무제표 등 주요 재무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증권거래소의 감독기관인 DFSA 또는 ESCA을 통해서 상장회사들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등 회계 및 재무정보의 투명성을 나름대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회계감사 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회계감사에 있어 느슨한 부분이 없지 않다.

예들 들어, UAE의 주력업종인 부동산개발 및 건설회사의 경우에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고, 건설기간이 장기간임에 비추어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에 따라 회사전체의 수익성이나 재무건전성이 급격하게 변동하여 회사의 가치산정 및 계속기업의 판단 등에 있어 실질과 다른 결과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3)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상장된 회사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비상장 법인의 경우는 제출의무가 없다. 단지 실무적으로 회사는 Trade License를 매년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한 프로젝트의 입찰참여 등의 경우 입찰서류의 일부로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고, 본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번역 후 간단한 검토를 받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프리존 내 일반회사의 경우에는 프리 존 당국이 자체적인 규정 및 법령을 가지고 있으며, 회계감사의 의무는 프리존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Jebel Ali 프리존과 Dubai Airport 프리존의 경우는 매년 감사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Dubai Technology and Media 프리존의 경우에는 제출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조세 제도

(1) 일반 환경

UAE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부가가치세(2018년 1월 도입)와 담배·에너지음료·탄산음료에 대한 개별소비세(2017년 10월 도입)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에 연방국세청(Federal Tax Authority)를 설립하고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절차법 등 관련 세법도 제정하였다. 연방정부 차원의 소득에 대한 과세(법인세, 개인소득세)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각 에미리트별로 별도의 세법 또는 관련 규정을 가지고서 이를 통해 법인 및 개인소득의 수준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실제 개인소득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법인세는 오일관련 회사 및 외국은행의 지점에 한하여 부과되고 있다.

(2)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담배·에너지음료·탄산음료)

① 부가가치세(VAT)

UAE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2018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를 시행하였다. 당초 GCC 6개국이 공동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먼저 시행하게 되었다. 표준 세율은 5%인데, 우리나라가 10%, 유럽 국가들이 20% 수준의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다.

UAE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영세율 및 면세, 환급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출, 운송, 주거용 부동산, 교육 및 헬스 케어 등에 대해서 영세율이나 면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필수 식료품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지 않고 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5%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준비 기간을 거쳐 2018년말부터 시행).

영세율, 면세 및 환급 제도

구분	내용
영세율 (zero rated)	GCC 국가 밖으로의 수출, 국제 운송, 귀금속 투자, 신축 주거용 부동산(건축 후 3년 이내), 교육 서비스, 헬스 케어 서비스, 원유 및 천연가스 등
면세 (exempt)	금융 서비스(수수료는 면세에서 제외), 주거용 부동산(건축 후 3년 이후), 나지(bare land), 국내 승객 운송 등
환급 (refund)	외국인 관광객, 자국민의 신규 주택 건설, 외교사절단 등

UAE 내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과세대상 상품 및 서비스 공급액이 AED 375,000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Tax Registration Number)를 발급받아야 한다. 과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 공급액이 AED 187,500을 초과하고 AED 375,000이하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 등록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등록을 한 사업자는 연방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큰 사업자(연간 매출액 AED 1억 5천만 초과)는 월별 단위로, 매출액이 작은 사업자는 분기 단위로 신고한다. 한편 2018년 11월부터는 일부 소기업,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 등에게 반기 단위 신고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UAE의 부가세 세율은 전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법인세, 소득세 등이 없었던 지역이라 신규 세금 부가는 내구소비재 및 건설기자재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등 2분기 정도의 적응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IMF에 따르면 부가세 도입에 따라 2018년 UAE의 인플레이션율이

3.5%로 전년 대비 1.5%p 상승하였다가 2019년에는 1.9%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개별소비세(담배·에너지음료·탄산음료)

UAE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2017년 10월부터 건강 증진을 목표로 담배 및 에너지음료에 100%, 탄산음료에 50% 세율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다. 동 개별소비세도 GCC 6개국이 공동 도입키로 한 것이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가 2017년 6월 가장 먼저 도입하였고, UAE가 2017년 10월 GCC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도입하였다.

(3)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① 개인소득세

현재 UAE에서는 연방차원이든, 개별 에미리트 차원이든 소득의 형태(개인 급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로열티 등)를 불문하고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법인세

UAE 연방차원에서 부과되는 법인세는 없으며, 개별 에미리트에서 석유회사 및 외국은행 지점에 한해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부다비 등 에미리트에서 생산되는 석유, 석유에 대한 권리 및 기타 탄화수소 물질을 거래하는 회사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5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지만, 실제적인 납부세액은 회사의 영업이익을 기초로 하여 합의된 회사와 해당 에미리트와의 사업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각 에미리트별로 부과되는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법인세는 대체적으로 20%이며, 이 세율은 에미리트마다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두바이, 샤르자, 푸자이라는 외국은행의 지점에 대한 세금징수를 위한 세칙을 가지고 있으나, 아부다비를 비롯한 기타 에미리트에는 외국은행의 지점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기타

① 관세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GCC 회원국 간의 관세동맹에 따라 UAE 및 GCC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 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5%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프리존은 관세동맹에서 지정한 무관세 해당지역에 속하지 않는다.

② 사회보장연금 지출

연금 및 사회보장법인 연방법 No.7(1999)에 따라 UAE 국적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회사 및 해당 피고인은 급여의 일정비율을 GPSSA(General Pension and Social Security Authority)에 납부하여야 한다.

- 고용인 : 12.5%, 피고용인 : 5%
- 외국인을 위한 규정은 없음

③ 개별 에미리트가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수수료

개별 에미리트에서 세금(tax)이라고 명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수료(fee)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이전 수수료(Property Transfer Fee), 부동산 임차 수수료(Municipality Fee for annual rent) 등을 부과되고 있다. 부동산의 이전(transfer)시 매매가격의 일정 비율(두바이는 4%, 아부다비는 2%)에 대해 이전 수수료(매도인 및 매수자가 분담 비율을 합의)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용 부동산 임차와 관련해서는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임차인에게 연간 임차료의 5%를 Municipality Fee로 부과하고 있다. 사업용 부동산 임차와 관련해서는 두바이는 연간 임차료의 2.5%를 market fee로 부과하고 있다.(2018년 6월 5%에서 2.5%로 인하)

호텔 및 부대 시설(레스토랑 등) 관련해서는 각 에미리트별로 그 수입에 대해서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두바이는 municipality fee로 10%를 부과해 왔는데, 관광산업 진흥차원에서 2018년 중반부터 7%로 인하하였다. 아부다비도 10%의 수수료(tourism fee 6%, municipality fee 4%)를 부과해 왔는데, 2018년 중반부터 5.5%(tourism fee 3.5%, municipality fee 2%)로 인하하였다.

(5)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Treaty)

UAE는 한국과 2003년 9월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한-UAE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내용은 한국 및 UAE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10%의 제한세율로 과세되고, 한국기업이 UAE에 제공하는 기술, 산업장비 등의 사용료 소득은 한국에서 일괄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UAE는 알제리, 모로코, 수단, 이집트와 같이 원청징수세율이 높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과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맺고 있어, 아프리카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게 UAE는 아프리카 투자의 매개체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노무관리

(1) 노무환경

UAE 정부는 전체 인구 대비 자국인의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다. 최근 Dubai Municipality 전망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로 2020년까지 갈 경우 민간부문의 외국인 근로자비율은 99%, 공공부문의 외국인 근로자비율은 91%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기관 및 민간부문에서 점차 자국민 고용우선 원칙(Emiratization)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숙련인력이 부족하고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에 임금 격차도 커 민간부문에 취업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이 향후 UAE 정부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인력 편중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UAE 자국민 고용을 장려함과 아울러 일정 인원의 UAE 자국민 고용을 의무화하는 노동관계법을 일부 직종에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UAE 은행부문에서는 1998년부터 UAE 자국민 고용증대를 통해 은행업종에서는 UAE 자국민 비율이 40%를 점하도록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금융산업 내에서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국민의 부족으로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관계 기본법인 연방노동법은 Federal Act No.8(1980) 및 No.12(1986)이며 관할 정부기관으로는 연방 노동부가 있다.

노동법에서는 근무시간, 휴가, 의료혜택 등 기본적인 노무자 및 사용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노동법의 규정은 고용계약서상의 어떠한 내용도 노동법의 규정보다 피고용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 이것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계약은 크게 고용기간이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다.

UAE의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을 둘 수 없으며, 노사 간의 분쟁이 있거나 노동법의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UAE 노동부가 1차적인 중재자로서 분쟁해소를 위해 간섭하게 된다.

노동부의 중재에 불만이 있는 경우 노사 공히 이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노사중재를 위한 행정적 장치는 단계적으로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ttee)와 노사중재원(Supreme Arbitration)이 있으며 각각 14일 및 30일 이내에 검토 및 중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UAE의 주택 임차비가 매우 비싼 현실 하에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사례 등이 인권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인력 알선 전문업체와 인력 공급 사업자간에 계약이 체결되고, 이 과정에서 실제 내용과 계약 내용이 상이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2016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고용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UAE 노동법이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개정 내용에는 통합 근로 계약서의 규정, 이직 관련 규정, 근무조건, 고용주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등의 내용 등이 추가되었다.

(2) 노동법의 주요내용

① 고용 계약서

고용 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한 계약(limited period)과 만료기간이 없는 무한 계약(unlimited period)으로 나뉠 수 있다. 무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법으로 허용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기간의 통지를 주고 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고용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은 1) 임금과 보수, 2) 계약 체결일, 3) 근무 시작일, 4) 계약의 성격 및 고용 기간(유한 혹은 무한), 5) 업무 내용, 6) 근무 장소 등의 정보가 적혀 있어야 한다. 계약서는 노동청에서 준비한 아랍어와 영어의 기본 양식이 있으나, 반드시 이 노동청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어(영어)와 아랍어로 작성된 경우 두 언어 사이에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 아랍어 해석을 우선한다.

② 노동조합

현행 UAE 노동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단체 교섭(Collective Bargaining)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임금

임금은 기본임금과 각종 보조금 등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나누어진다. 중요한 차이는 퇴직금 계산 시 전체임금이 아닌 퇴직 직전 근로자에게 지불된 기본임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법정근무시간

최대 1일 8시간 또는 1주일에 48시간을 넘지 못한다(라마단 기간 중 1일 2시간 감소). 단 무역, 호텔, 경비, 레스토랑을 포함한 노동부 장관이 정한 직

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추가 1시간(1일 9시간) 연장 근무를 시킬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은 휴식 없이 5시간 이상 연속으로 일할 수 없으며 휴식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시간(저녁 9시~새벽 4시) 중에 근무한 경우 정상근무시간 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한다.

⑥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업무상 발생한 재해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보험 및 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요하다. 유의할 점은 현재 노동법원은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⑦ 계약 종료

고용 계약은 언제든지 상호 합의하에 또는 당사자 중 한편이 최소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 종료될 수 있다. 통지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은 그대로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이 통지기간 동안에도 고용계약은 유효한 상태이므로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무통지 즉결해고

근로자가 노동법 120조에 열거된 행동을 하여 고용주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를 제공한 경우 사전 통지(30일 기간) 없이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또한 반대로, 고용 상황이 법 121조에 해당하는 경우(예: 임금의 미지불 혹은 고용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우) 근로자 또한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통지 절차 없이 종료할 수 있다. 근로자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의 종료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법원은 근로자의 최종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3개월분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피해를 보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⑨ 퇴직금 지급

1년 또는 그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고용 기간 처음 5년 동안 매년 21일 동안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 (2) 근무 6년째부터는 매년 30일 동안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단, 퇴직금 총액은 2년 동안의 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외에 해고 통지 기간에 상응하는(예: 30일간의) 임금,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예: 최대 3개월간의) 임금, 또한 미사용 연차 일수 및 추가 수당 등의 잔액 등을 받을 수 있다. UAE 법원의 판례법에 의하면 생활 보조금 및 특별 보너스 등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나, 고용 계약서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임금의 한 부분으로 합의된 영업성과 보너스나 커미션 등은 퇴직금액 산정 시 임금으로 간주된다.

⑩ 노동계약 기간 연장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특정한 일의 종료 후에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갱신된 계약은 그 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⑪ 근로자 연금 제도

국민연금법(The Pensions & Social Securities Law, Federal Law No.7 of 1999)에 의하여 근로자가 UAE 국민 또는 GCC 국적을 가진 근로자 중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에게 연금을 제공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UAE 국민의 경우 월급의 특정 비율을 연금공사에 지불하게 되어 있다(민간 기업인 경우 고용주 부담액은 15%이나 국가가 이중 2.5%를 보조함). 아부다비의 경우 조금 더 수월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며, 근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⑫ 분쟁 조정

고용 관계에 있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 해당 사업체가 등록된 에미리트에 있는 노동부로 분쟁 해결 신청을 해야 하며, 모든 민원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분쟁에 대한 민원이 노동청에 접수되면 당사자는 노동청으로 참석이 요청되어 서로의 입장을 진술하고, 대략 2주 이내에 노동청의 권고안을 제시 받게 된다. 당사자들이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분쟁안은 노동법원으로 접수되며, 법원의 분쟁 조정일 날짜를 기다리게 된다. 고용 분쟁과 관련된 민원/소송 신청은 분쟁의 원인인 해당 금액이 지불되어야 할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1년이 지나면 그 시효가 만기되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⑬ 노동법 비적용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정부, 공무원 등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⑭ 급여수준

일반적으로 UAE 자국민의 임금은 외국인 대졸자 임금의 2~3배 수준이며, 대학졸업 후 금융 및 엔지니어링 등 전문 직업에 대한 경험 또는 자격이 있는 자국인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다.

⑮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 제63조에서는 근로자의 직종, 작업장 등에 따라 자국민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공표되지 않고 있다. 단, 2006년 4월 노동부는 Ministerial Resolution No.286에 의거하여 UAE 자국민에 대해 최저 임금제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 대학 졸업자: 월 12,000디르함
- 전문대학 졸업자: 월 7,000디르함
- 고등학교 졸업: 월 5,000디르함

두바이의 경우 Dubai Government Human Resources Management Law No.27(2006)에 의거하여 두바이정부 소속 공무원의 최저임금을 월 4,250디르함으로 책정하였으며, 이는 두바이 정부 공무원이면 UAE의 자국민 및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참고로 월급이 4,000디르함 미만인 근로자는 이후에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스폰서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는 노동법의 규제라기보다는 이민법상의 규제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가정부를 고용(비자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 월급이 6,000디르함 이상이어야 한다.

⑯ 정기급여 이외의 보상

정기급여 이외에 통상적으로 연간 100~200%의 상여금(마케팅 분야 종사자의 경우 연간 약 200~400%가 관례) 및 1년에 1회 이상 피고용자의 본국까지의 왕복항공권을 지급하고 있다.

⑰ 가정부 보호 노동법

외국인 가정부 학대 및 처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며 2017년 9월 가정부 보호 노동법이 승인되었으며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 내에는 노동시간, 연차, 여권을 포함한 개인서류를 소지할 권리 등이 명시되어있다. 또한 18세 미만인 자의 고용, 계약서 외의 업무 지시, 가정부의 신체적 상해 노출을 금지하고 아래 사항을 의무화 하고 있다.

-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기준 10일 이내의 급여 지급 의무화
- 주 1회의 휴일
- 8시간의 연속 휴식을 포함하여 총 일일 12시간 이상의 휴식
- 의료 보험 및 2년에 한번 고국으로의 왕복 항공권 제공
- 적당한 식사 및 주거 환경 제공
- 연간 30일의 휴가 및 병가 제공
- 여권과 신분증을 포함한 개인 서류를 소유할 권리

중재와 청산 제도

(1) 중재 (Arbitration)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파트너들이 지불을 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최후의 해결방법은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다. UAE에서의 소송은 일반적으로 제1심 법원에서 시작하는데, 소송 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아랍어이고 이러한 소송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그러므로 보다 쉽고 간편한 문제해결 방법으로서 UAE에서도 중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계약의 쌍방이 중재에 동의를 하면 계약 관련 분쟁은 중재 법원에서 해결하게 된다. 계약 체결 시 쌍방은 중재에 사용될 언어에 합의해야 한다. 또한 계약의 쌍방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재자에 동의를 해야 하는데 중재자가 복수일 경우에 쌍방은 서로 같은 수의 중재자를 둘 수 있다. 만약 계약의 쌍방이 1명의 중재자에 동의했다면 분쟁 발생 시 법원은 그 중재자를 지명한다. 만약 계약의 쌍방이 3명의 중재자에 동의했다면 쌍방은 그 중 각자의 중재자를 1명씩 지명하고 그 중재자들이 상호간에 합의하여 제3의 중재자를 지명해 의장의 역할을 맡게 한다. 또한, 최대한의 공평함을 위해 중재 법원은 단독 중재자나 중재 의장의 국적이 쌍방의 어느 국적과도 같지 않게 한다. 그러나 중재에 있어서 유리하려면 명확하고 잘 계획된 중재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중재 조항에는 중재자의 수, 중재의 언어, 중재의 장소와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중재 조항에는 패소인이 중재 비용과 승소인의 변호인 수임료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불한다는 내용도 명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승소인은 중재에 필요한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UAE 정부는 2018년 5월 신규 중재법령(Arbitration Law)을 발표하였다. 해당 법령 제정 전에는 기존 사법시스템 외에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분쟁해결 과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오랫동안 연방 중재법 제정이 지연된 바 있다.

신규 법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UAE의 중재제도는 1992년의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Law; CPL)에 의해 규율되었으며, UAE는 1982년

부터 국가간투자분쟁해결협약(ICSID)의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바, 그에 의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해 왔다.

신규 중재법령은 국제상업중재에 관한 UNCITRAL Model Law의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동 법안에는 중재재판의 관할권, 재판관의 구성과 법원의 관여 정도, 중재 절차,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 등의 규정이 담겨 있다.

UAE내에서 발생하는 중재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중재 센터의 개설도 크게 늘었는데, 현재 UAE내에는 다음과 같은 중재 센터들이 활동하고 있다.

- The Duba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 The DIFC-LCIA Arbitration Centre
- The Abu Dhabi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entre
- The Sharjah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
- Ras Al-Khaimah Commercial and Arbitration Centre

(2) 청산(Exit)

연방법 No. 8(1984)에 의하면 UAE에 설립된 회사는 △정관에 기재된 존속기간의 만료, △회사 사업목적의 소멸, △회사의 자산이 소멸되어 나머지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 불가능, △합병 등의 청산사유가 발생하면, 정관에 명시된 의결정족수로 또는 의결 정족수 조항이 없는 경우 주주 또는 파트너(Partner)들의 만장일치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을 의결할 수 있다.

회사의 청산기간 중 회사의 형태는 유지되어야 하며 모든 회사의 문서에는 '기업 청산 중'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기입되어야 한다. 회사청산 직후 실질적인 이사회의 권련은 사라지나 모든 청산업무가 끝날 때까지는 회사를 운영하는 책임이 주어진다. 이사회의 권한은 청산개최기간 중에도 남아있고, 청산인의 권한과 중복되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권한은 인정된다.

UAE의 경우 산업 및 경제구조가 아직 성숙단계에 있지 않아 회사의 청산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청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채권자동의 절차, 청산사

실 공개 절차, 노동부·경제부 등 관련부서로부터의 허가 절차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UAE의 현지 법무법인을 통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UAE의 청산 관련 절차와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법원에 의해 파산이 선고되면 모든 채권자들에게 고지하고, 채권을 등록하도록 한다.
- 국내 채권자들은 파산 공지 후 10일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외국 채권자들은 파산 공지 후 1달 내에 등록하면 된다.
- 파산법원 판사는 채무자들이 제출한 기록들을 검토한 후 법원 결정으로 채무변제금액과 기일을 다시 정하여 그에 따라 정리한다.
- 파산기업인은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법원에 알리지 않고는 UAE를 떠날 수 없다.

2016년 12월 현대화된 파산법 제정으로 미청산대금으로 인한 구속 혹은 형사절차를 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지 진출 및 투자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알제리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일반 경제 현황

세계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알제리의 2017년 명목 GDP는 1,754억 달러,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960불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국제유가 하락이 석유·가스 수출에 크게 의존(외화수입의 95%, 정부재정의 60%)하고 있는 알제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준 결과, GDP 성장률은 2015년 3.8%, 2016년 3.6%, 2017년 1.7%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7년 하반기 이래 유가 상승에 따라 2018년 GDP 성장률은 3.5%로 예상된다.

소비자 물가의 경우 알제리 정부의 식료품 가격 안정화 등 인플레 억제정책의 효과로 2012년 8.9%에 이르던 물가상승률이 2014년까지 안정세(2.9%)를 이루었으나,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 2017년 5.9%까지 증가하였다. 실업률의 경우, 2000년대 초반 20%대에서 2017년 11.2%대로 크게 둔화되었으나, 청년층(16~24세) 실업률과 여성 실업률은 여전히 평균 실업률 보다 훨씬 높은 26%와 20%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 및 석유 생산량 감소로 인한 수출액 감소로 알제리의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 증가하여 2018년에는 180억 달러를 기록(수출 325억, 수입 505억)하였다. 외환보유액은 작년 대비 240억 달러 감소하여 총 973억 달러로 지속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2018년 상반기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까지 상승함에 따라 2018년도 알

제리의 무역적자는 2018년 1월~7월간 32.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도 동기 대비 53.5%% 감소하였다. 동 기간 중 수출액은 236.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08%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26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하였다.

알제리 정부는 저유가 기조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 △환율상승(알제리 디나화 가치 하락) △재정적자 심화 △외환보유액 감소 등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경제다변화를 목표로 한 수입대체 △투자환경 개선 △조세개혁 등을 포함한 '신경제성장모델'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2017년 9월 광산업, 관광, 농업 등 석유·가스 이외 부분에서의 수출 증진을 위하여 △기업환경 개선 △투자 촉진 △기초인프라 개발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하였다.

알제리 국제기구 가입 및 협정 동향

알제리의 WTO 가입 추진 동향

알제리는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길 희망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추세에서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여 WTO 가입을 크게 서두르지 않고 소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오고 있다.

그동안 WTO 가입작업반회의 등을 통해 미국과 유럽을 주축으로 하여 WTO회원국이 질의한 96개 항목 중 19개가 알제리의 현황과 WTO의 요구수준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간의 의견차이가 큰 대표적인 이슈들은 수입허가, 가스에 관한 이중 세율, 수출보조금, 특히 연료에 대한 가격정책, 위생 및 검역에 관한 정책, 그리고 무역에 관한 주요 장애물(규범문제), 중고자동차수입 등이다.

제12차 가입 작업반 회의(2014년 3월 31일)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제11차 작업반회의(2013년 3월)에서 제기된 170개의 항목에 대한 협의

를 진행하였으나, 투자지분 제한, 금융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2014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알제리 경제도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알제리 내부적으로 알제리의 WTO 가입에 대한 신중론이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다. Belaib 통상장관은 2015년 8월 WTO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여 알제리가 WTO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국내적으로 알제리 국민들 사이에서 WTO 가입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알제리는 WTO 가입협상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하고 있는 국가로 그간 6명의 가입작업반 의장이 임명되었으며, 12차례의 가입작업반 회의, 120차례 이상의 양자협상을 통해 6개국(쿠바, 브라질, 우루과이, 스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과 양자협상을 타결하였다. 알제리 가입작업반은 1987년 개설되었으며, 12차 회의를 끝으로 차기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10월에는 알제리 가입작업반 신임 의장으로 Balbela 주제네바 우루과이 대사가 선임되었으며, 이에 대해 알제리 정부는 Balbela 대사의 의장직 수임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알제리의 WTO 가입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2017년 11월 현재까지 차기 작업반 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있다.

알제리-EU 제휴협정에 따른 무역자유화 일정 연기

알제리는 EU와 자유무역협정을 2005년 9월 발효하여, 동 양허일정에 따라 점진적 관세인하 및 철폐를 진행 중이며, 당초 2017년 까지 완전 자유무역지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협정발효 이후 알제리 정부는 알제리-EU간 제휴협정 이사회 등을 통해 양자간 석유가스 부문을 제외한 무역 불균형의 심화 및 알제리내 EU 직접투자의 부진 등의 동 제휴협정 체결 이후 양자간 발전적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무관세를 위한 일정계획의 수정 등을 요청하여 수차례의 당사자 협상을 진행한 결과 2012년 9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

라 농산물, 산업제품의 관세철폐 효력 발효 시기를 2017년에서 2020년으로 3년간 연기하였다. 알제리-EU 무역자유화 관련 새 협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산품 분야〉

- 25가지의 해당 농산품 의무수입 할당제 취소
- 우유, 마가린, 치즈 등 유제품 분야의 농산품에 대한 신규 의무수입할당제 추가
- 2010년 추가 협상을 통해 당초 협정안의 36개 농산품 의무수입할당제 폐지

〈공산품 분야〉

- 2012년 9월 관세철폐 예정이던 1058개 공산품에 대한 재검토
- 자동차·부품 등 82개 민감품목의 부분적 관세복원 및 철폐 시기도 4년을 연기하여 2009년에서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
- 절단기, 식기세척기 등 185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사 시기 2년간 유예
- 페인트류, 샴푸, 플라스틱, 목재가구 등 174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시기를 2071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하고 부분적 관세 복원
- 화장품, 종이, 의류, 신발 등 617개 품목 관세인하를 2012년에서 2015년 까지 3년 유보

또한, 협정발효시기 연기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알제리 정부는 협력합의서 하에 맺어진 알제리가 부여한 특혜관세는 EU국가들이 100% 활용하지만, 알제리는 EU가 부여한 특혜관세 41개의 물품 중 단지 6개만 활용하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는 투자부문에서 특히 석유가스 이외 부분에서 알제리에서 유럽인들의 투자가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다. 유럽인들은 알제리의 법적 불안정성과 기업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상기 무역 불균형은 협정의 문제가 아닌 표준 문제이며, EU의 대 알제리 직접투자의 부진은 알제리의 외국인 투자 환경 특히, 기업 환경이 열악하고 보호주의적인 것이 기인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알제리에 상주하는 Laura Baeza EU 대변인은 알제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에 대해 '알제리 기업이 유럽 표준을 맞춰야 함'을 강조하였다. EU와 알제리 간에 합의된 특혜관세가 알제리 기업에 의해 크게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유럽 표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동 분야에 대한 양자간 협력을 제의하였다.

상기 관세철폐 발효시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의 대EU 무역 불균형이 지속되자 EU와의 제휴협정에 대한 추가개정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알제리는 EU측에 동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양측간 공동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2015년 9월 알제리를 방문한 Mogherini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제휴협정 개정 관련 사항도 알제리측과의 협의 의제에 포함되어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동 사안도 Lamamra 외교장관과의 회담시 분명히 논의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알제리측이 동 협정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어 내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강력한 개혁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Bouteflika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2015년 10월 6일)시에도 EU측의 대알제리 투자 미비 등을 이유로 EU측과의 제휴협정을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수입 정책

관세 및 수입부과금

현재 대부분의 상품수입은 자유화되었으며, 수입규제는 공공질서 유지, 공중보건 및 환경보호 등의 목적에 국한되어 있다. 특히 관세부과를 통한 수입규제는 2005년 9월 EU와의 제휴협정 발효 이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입상품 분류는 국제기준(HS CODE)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자재 5%, 반가공제품 15%, 완제품 30% 등으로 단순화하였다. 이러한 관세율 조정은 외국자본을 생산활동과 투자에 유도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고 생산단가의 인하를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2002년 1월 이후 알제리 세관당국은 동일 품목이라도 생산공정에 사용할 품목이면 5% 또는 15%를 적용, 알제리내 조립·생산을 유도해 국내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수입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관세인하와 Valeur Administrative (세관 당국이 책정하는 과세표준가 적용세율) 및 추가 특별세(TSA)의 폐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500개 품목에 도입한 추가임시세

(droit aditionnel provisoire)는 2001년도부터 매년 12%씩 세율을 낮추어 왔으며, 2006년 재정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다만, 외환보유액 감소를 막기위해 2018년 9월 말 신규 임시추가수입관세 부과 관련 행정령이 발표되었으며, 대상 품목 및 품목별 과세율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對알제리 수출시 수입자가 부담하는 관세세목은 관세특소세 등이 있으며, 세율은 품목마다 다르다. 각 품목별 세율 등 자세한 정보는 알제리 세관 홈페이지(www.douane.gov.dz)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관세 등 수입시 부과되는 조세

세 목	세 율	비 고
관세(tarif douanier)	0%, 5%, 15%, 30%	원자재 5%, 반제품 15%, 완제품 30%
특별소비세(TIC)	10~100%	추가특별세(TSA) 폐지로 인한 세수손실 보전목적
부가가치세(TVA)	7%, 17%	식량 7%, 차량·전자제품 등 17%

주: 세관수수료(RD) 및 세관서류양식세(RFD)는 2004년부터 폐지

통관

알제리는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세관당국에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많아, 회사별로 담당직원을 두거나 통관 수속 대행회사를 이용하여 통관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경우가 많다.

알제리 세관당국은 1999년부터 통관자동관리시스템(SIGAD)을 도입하였으며, 2003년 4월에는 알제항에 컨테이너 스캐너를 설치하는 등 통관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알제항의 접안시설 및 컨테이너 처리시설의 부족 및 관료주의로 통관에 애로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통관에 필요한 구비서류 미비 시 수입품은 세관창고에 보관되고 보관기간 중에는 일단위로 보관료가 부과된다. 또한 통관절차가 종료되고 제반비용

납부 후 15일 이내에 수입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수입품은 세관당국에 압류되어 경매에 붙여진다.

세관당국은 공공의 안녕질서, 사회관습, 공중보건,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국내규정에 의거하여 통관을 거부할 수 있으며, 검역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물, 기타 물품은 재반출되거나 폐기된다. 즉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종교상,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소위 '아랍 보이코트'로 불리는 이스라엘 생산품의 수입금지는 계속되고 있다.

한편, 2013년에 한국과 알제리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이 체결되었으며, 2016년 6월부터 발효되어 양국간 세관분야 전문가 교류, 법규·제도 관련 정보교환 등을 통해 점차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알제리 세관당국은 전자세관(E-Custom) 구축에도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수입금지 사례》

- 수입금지 품목: 돼지고기류 및 중고자동차
- 수입업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제반 수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수입 물품이 제반 증명서상에 표기된 종류와 불일치하는 경우
- 수입 물품이 관세법상에 명기된 제반 규격 및 규정과 합치하지 않을 경우
- 동물 수입 시 공공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식물 수입 시 검역상의 문제
- 유통기한이 너무 짧거나 이미 기한이 도래한 경우
- 서적, 영화 수입 시 사회풍속이나 종교적 가치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환경에 유해한 경우
- 위험 화학제품에 대해 하역 시 모든 안전상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

휴대품	통관기준
주류	○ 포도주 2리터 또는 증류주 1리터 이하
담배	○ 담배 200개피 또는 작은 여송연 100개피 또는 여송연 50개피 또는 담배 총합계가 250g 이하일 것

휴대품	통관기준
향수	○ 향수 50g 또는 화장품 1/4리터 이하
면세한도금액	○ 휴대품 환산금액이 총50,000DA(디나르) 이하 ○ 휴대품 외관 및 수량이 판매용 특성을 지니지 아니할 것 ○ 휴대품의 내용물이 반입금지품목, 국제적 보호품목 및 신고의무화 품목이 아닐 것 ○ 알제리내 반입가능한 지불수단 및 여행자 수표 ○ 100㎎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용 보석류
외국환신고	○ 모든 외화는 입출국시 신고의무화
의약품	○ 처방전에 언급된 품목 및 수량과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 면제
식품	○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초과할 경우 세금 부과
반입불허품목	○ 마약류, 무기·전쟁용 물품 또는 위조 물품 ○ 중고 부품(부품별로 1개만 허용) ○ 중고 물품(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가전제품, 가구 및 의류) * 자동차는 3개월 범위내 사용조건으로 통관허가를 취득한 경우 한시적으로 반입 가능 ○ 미풍양속 저해 물품 ○ 알제리 화폐(디나르, Dinar)의 수출입 ○ 동반자가 없는 가방 또는 허가증 미동반 품목
기타 유의사항	○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수준 초과시 세금 부과 물품 - 의류 및 악세사리, 화장품, 보석류, 빗·모자 및 유사물품, 사진필름, 오디오·비디오 테이프, 양탄자, 식료품, 가축사료, 과일(통조림 포함), 도자기 ○ 알제리 정부로부터 반입 허가가 필요한 제품 - 도서류·필름·녹음테이프(문화부), 위생사설살충제 및 동물의약품(농업부·보건부), 방송기자재(정통부) ○ 국제협약상 보호물품 - 멸종 위기 동물, 보호 동식물, 고고예술품 ○ 레저용 선박 및 제트 스키의 경우 여행목적 및 3개월내 사용조건으로 통관 허가증을 취득하고 세관에 보증금을 납입한 경우 반입 가능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등

모든 국가에 대해 원산지 증명 제출(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신고서와 함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9년 추가재정법 시행 이후 원산지 증명과 더불어 수입품에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아랍어) 하였다.

○ 동·식물 수입 : 검역관계 확인 서류, 보건당국의 수입허가증

○ 의약품 수입 : 보건당국의 허가

○ 화학약품 수입 : 관련당국의 수입허가, 안전하역 방안

○ 정기간행물·특별간행물 : 관련당국의 허가

○ 영화 : 관련당국의 허가(필요시 검열)

○ 측량단위 수입 : 관련당국의 사전 검토

○ 전쟁물자가 아닌 무든 무기류 수입 : 관련당국의 허가

○ 폭발물 수입 : 관련당국의 허가

○ 식품 수입 : 품질보증서, 균질보증서

2009년 추가재정법 시행 이후 원산지에서 제조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은 알제리에 수입이 금지된다(원산지 직수입 자동차 부품만 수입 가능). 이러한 규제는 여러 분야에 걸쳐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복제품 퇴치 목적의 일환이다.

그러나 원산지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이후 제3국에서 제조되어 알제리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은 예외로 간주된다. 따라서 수입자들은 원산지로부터 라이센스를 득한 후 제3국에서 자동차 부품이 제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규제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부품들은 통관 시 screen되어 반입이 금지된다.

현재 알제리로 수입되는 자동차부품의 80% 정도는 중국, 프랑스, 이태리, 대한민국, 독일에서 수출 되는데, 이 가운데 중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부품이 가장 많다. 자동차부품 복제품에 대한 법안은 2002년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안이 의도한대로 통관 시 screening이 정상적으로 될 지 예의주시 할 부분이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알제리 세관법 제8조는 덤핑 수입상품 또는 원산지국(또는 수출국)의 수출 보조금을 수혜한 모든 상품과 정상가격 대비, 수입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수입품 등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역업 규제

2009년 7월 26일 대통령 칙령(Ordonnance 09-01)을 통해 공포한 '2009 수정재정법(2009년 7월 26일 공포, Loi de Finances Complémentaire pour 2009)'은 알제리 법인격을 보유한 외국수입업체에 대해 보유 지분의 30% 이상을 알제리 국적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상기 규정은 법인격을 보유한 외국수입업체중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한 후 동 상품에 대한 별도의 가공과정 없이 알제리 국내 시장에 수입한 상태 그대로 상품을 공급하는 수입업체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한 후 알제리 국내에서 별도의 가공과정을 거쳐 제3의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건설공사 등을 목적으로 장비를 반입하는 경우 등 상품 수입 및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2017년 10월부로 수입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알제리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 법인은 2,000만 디나르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2018년 행정령 18-51에 따라 수입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품의 특성에 맞는 저장유통 인프라를 갖춰야 하고 2년에 한번씩 사업자 등록을 갱신해야한다.

수입제한조치 도입 움직임

알제리 정부는 2016년부터 수입허가제를 전격 도입(Executive Decree No. 15-306, 2015년 12월 6일)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액 급감(2014년 600억 달러→2015년 346억 달러→2016년 291억 달러) 및 외환보유액 감소(2014년 1,774억 달러→2015년→1,426

억 달러→2016년 1,129억 달러)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산업 다변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자동차, 시멘트,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봉(reinforcing bar) 등이며, 이 가운데 수입허가제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자동차 수입이다. 알제리 정부는 2016년 5월 자동차 수입 쿼터제(총 83,000대, 금액 기준 10억 달러)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주요 수입품목중 하나인 자동차 수입액(2014년 기준 42만대, 57억 달러 수입)을 현격하게 축소시킴으로써 무역수지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알제리 정부는 이러한 수입규제 조치를 여타 산업 및 농업제품으로까지 확대하여 2017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가공수프, 소스, 빵, 피자, 파스타면, 견과류, 과일주스, 탄산수, 잼, 초콜릿 등의 식료품과 수도·가스 밸브 부품, 변압기, 대리석·화강암 완제품, 벽돌, 타일, 카펫, 플라스틱 완제품, 가구 등의 공산품에 대한 임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더해 2018.1월 치즈, 제과제빵 제품, 육류, 종이류 등 식료품 및 소비재를 대상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알제리 정부는 자신들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대외유동성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는데 대한 긴급보호조치(safeguard)라면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알제리 금융당국은 2017년 10월 22일부로 현지가공을 위한 원부자재 및 부품을 제외한 수입품에 대해 선적 30일전까지 수입액의 120%를 예치토록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분야에서도 새로운 비관세장벽을 세웠으며 이에 따른 국내가격 인상 및 교역규모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수입제품 품질검사

알제리는 2005년 10월 12일 행정명령 제05-467에 의해 수입제품의 품질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수입경로(육지, 해양, 항공 등)에 따라 수입제품의 품질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품질 검사는 통관절차 전에 시행되며, 최초 수입품인 경우 검사사항은 △구비서류 및 증명서 검사, △제품 외관검사, △제품 샘플검사 등이며, 정부의 관련 검사기관을 통해 품질검사가 이미 통과된 제품의 반복 수입일 경우는 △구비서류 및 증명서 검사, △품질규정준수 인증서 등이다.

품질규정 준수 검사를 위해서는 수입자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수입신고서, 상업등록 증명서 사본, 송장사본, 기타 검사를 위한 문서의 원본 등을 관련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48시간 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수입허가증이 발급되며, 적합성 검사에 불합격하면 수입거절증을 발급하고 알제리 세관에 통보된다.

수입업자는 적합성 검사에서 불합격 될 경우 2005년 10월 12일 행정명령 제05-467에 의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로 수입업자는 알제리 각 시도의 상업 집행부에 수입거절 통지를 받은 후 8일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수입거절 원인에 대한 검증을 통해 수입거절 취소결정이 유지된 경우 수입업자는 2단계로 알제리 지역 사업집행부에 부적합 판정제품의 용도에 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의제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유예기간 동안 이의제기 신청이 불가한 경우 3단계로 알제리 중앙행정기관의 소비자 보호 부서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기타 표준 · 검사 · Labeling

현재 표준·검사·라벨링 등과 관련하여 우리제품에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만한 제도는 없으며, 품목별로 유럽 각국에서 통용되는 검사 및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자동차 검사 및 규격 등)가 있다. 알제리 정부는 최근 '국가 표준검사센터'를 설립, 각종 표준제품 인증제도를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체제로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알제리로 수입되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는 관련당국의 기술규격 사전인증과 세관통과 시 사후 검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각종 의약품은 수입 전에 안전성에 관한 사전 인증제도인 비자(le visa technique)를 획득해야 한다. 담당부서는 보건부(Ministère de la Santé)이며 비자 획득에는 1~2년이 소요된다(관련법령: Regulation №. 92-284 of July 6, 1992 Article 12).

이외 가축용 의약품도 알제리 농업개발부의 인증을 받아야 유통될 수 있다(관련 법령 Décret Exécutif №. 90-240 du 4/08/90). 또한 식품류도 위생법에 의한 위생검사를 거쳐야 유통될 수 있다. 이외에 위험물·일부 화학제품이나 산업용 가스제품들도 산업부의 사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관련 규제

과거에는 환경관련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했으나, 점차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4년에는 '환경과지속가능발전위원회'(High Council o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환경에 유해한 품목(식물, 화학약품 등) 수입 시에는 관련당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이라고 판명된 화학제품 및 기타 물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2002년 재정법으로 환경보호 관련 세율을 인상(담배 1갑당 2.50디나르) 또는 신설(휘발유 1리터당 1디나르)하고, 환경오염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소각장치 등 환경보호설비를 갖출 것을 의무화 했다. 향후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보호

소비자 보호 관련, 선진국 수준의 세부적 규정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식료품 등은 수입허가가 까다로운 편이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물품의 가격, 판매자의 계약상 책임한계 및 판매의 제반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법적의무는 없다.

국민건강과 관련된 환경분야, 의약품의 안전성, 축산품의 위생문제 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으며, 정부, 언론 및 민간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알제리는 1966년부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며, 1975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한바 있다. 제도적으로는 지식재산권 보호제도가 마련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법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

산업발명(industrial inventions), 산업설계, 디자인과 상호(trademarks and service marks or appellations of origin) 등이 보호된다.

산업발명은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된 특허규정에 의해 보호된다(관련법령: Ordinance №. 03-07 of July 19, 2003 및 Decree №. 05-275 of August 2, 2005).

특허대상 품목은 식료품, 화장품, 의약품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리고 특허기간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연장이 불가하다. 아울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등을 통해 보호된다.

산업특허는 Algerian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nstitut National Algérien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INAPI)에 출원하고, Official Bulletin of Patent(Bulletin Officiel des Brevets)를 통해 공표된다.

상표(Trademarks)는 Ordinance №. 03-06 of July 19, 2003 및 Executive Decree №. 05-227 of August 2, 2005에 의해 규정되며, INAPI에 등록해야 한다.

상표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6개월~2년의 징역과 250만~1,000만 디나르의 벌금이 함께 부과되거나, 벌금 혹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문학적 · 예술적 재산권(literary or artistic property rights)

문학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영화, 음반 등의 문학적·예술적 재산권은 Ordinance №. 03-06 of July 19, 2003에 의해 보호된다. 경제적 권리는 작가의 사후 50년까지 보호된다. 저작권 관련 사항은 National Office of Copyrights and Related Rights (ONDA)에서 관리한다(www.onda.dz).

외국인 투자 환경 및 관련 제도

투자 여건

투자관련 법령은 'Ordinance №. 01-03 of August 20, 2001이며, 투자의 정의는 제4조에 그리고 내국민대우 조항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 제14조에는 내국민대우 조항을 규정한 것 외에도 외국인과 외국법인은 투자국과 체결한 조약의 규정에 따른 대우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제 금융 위기 이후 2009년 추가재정법의 제정을 통해 수입시 L/C 제출 의무화 및 원산지 규정 강화, 송금 및 과세 부문 관리 강화, 외국인 투자시 합작

투자 의무화(51/49 규정, 자국 기업 51% 지분 보장), 공공사업 입찰시 자국 기업 인센티브를 15%에서 25%로 상향 조정 등 자국 기업 육성 의지를 표명하는 등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아울러 알제리 정부는 2016년 7월 알제리 내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투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투자법은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혜택 부여 및 행정절차 축소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투자 프로젝트에 투입될 재화 및 용역 수입시 모든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10년간 재산세 면제 및 투자 프로젝트 개시 이후 3년간 수익세 면제 △투자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간시설 건설의 경우 알제리 정부가 전부 혹은 일부 재정부담 △산업, 농업 및 관광업을 핵심 투자대상분야로 선정, 투자자들에 대한 추가 혜택 부여 △투자 관련 원스탑 승인 프로세스 개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알제리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주요 규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51/49 규정의 경우, 투자법 자체에서는 삭제되었지만, 매년 의회에서 통과되는 재정법에는 여전히 포함되어 있으며, 또 다른 핵심조항 중 하나인 선매권(preemptive right, 알제리 내 외국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매각할 경우, 알제리 정부에 이를 우선 구매할 권리 부여)도 철폐되지 않고 그대로 투자법에 남아 있다.

투자 보호

상기 투자법령 제15조에 따르면, 투자가 이루어진 후 발생한 법의 개정 및 폐지는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이미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어 제16조는 징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의한 징발은 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당하고 공평한 보상(fair and equitable compensation)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투자자와 알제리 정부와의 분쟁발생시 재판 관할권은 알제리 법원에 있으나, Legislative Decree №. 93-09 of April 25, 1993에 의해 투자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알제리 정부는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다음 협약에 가입하였다.

- Convention of June 18, 1965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pertaining to investments between countries and nationals of other countries(Ordinance №. 95-04 of January 21, 1995)
- Convention of September 1986 pertaining to the creation of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Ordinance №. 95-05 of January 21, 1995)

과실 송금

Ordinance №. 01-03 of August 20, 2001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본 유입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투자된 자본과 과실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과실 송금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 사용된 모든 자산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의 가치를 구분해야 하며, 투자를 위해 알제리로 유입된 자본만이 송금 가능한 자본과 수익 산출의 근거가 된다.

알제리에서 얻은 이윤을 국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알제리 내 회계사무소가 발급하는 자본납입증명서, 연말회계감사 보고서, 이사회의 이윤배분 결의서 및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외환관리국에 제출하여 송금 허가를 얻어야 한다. 외국인 직원의 임금 및 정당한 수익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송금 및 과세 부문 관리 강화

알제리 국내생산 장려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려는 움직임 역시 몇몇 분야에서 포착된다. Bouteflika 대통령 취임 이후 몇 년 동안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왔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사 이익 선점 등으로 인하여 알제리 국내 산업발전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자 2010년 추가재정법(LFC)에서 보호주의적인 정책 다수가 입안되었으며, 아래 몇몇 조처들은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다.

(1) 대외송금 절차

대외송금의 경우 송금 30일전에 송금검증신청서를 제출해 송금검증서를 발부받아야 대외송금이 가능하다. 만약 검증서가 발부되지 않는 경우 송금액의 25%를 벌금으로 징수가능하다. LFC2009가 배당금 송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LFC2010에 명시된 조항은 자재구입, 서비스 용역 등을 포함한 모든 송금에 대하여 알제리 당국의 관리수단 및 직권 조정 권한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입건설기기에 대한 특별 종량세 부과

2010년 9월 1일자로 알제리로 수입되는 건설기기에 대해 품목별로 30~70만 디나르의 특별 소비 종량세가 부과된다.

*** 특별소비 종량세**
- 건설기기를 알제리로 수출 시 관세를 납부하고 VAT 17%까지 완납 후 최종소비자가 품목별로 약 4,000~9,000 달러의 특별소비세를 부담을 규정

- 과세액 30만 디나르

품 목	HS CODE	기 타
원심펌프, 모터펌프 등	841370	
기타펌프	841380	관세 30%
수지식취관	846810	
가스용접기, 가스자동절단기	846820	
납땜용, 용접용의 기기	846880	
납땜용, 용접용의 부분품	846890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2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	8504	
전기식 레이저 또는 광선식 납땜 또는 용접용의 기기	8515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870540	

- 과세액 50만 디나르

품 목	HS CODE	기 타
증기, 모래취사부 제트분사기	842430	
갱구용 와인딩 기어 및 윈치	842531, 842539	
타워 크레인	842620	
문형 또는 정지형 지브 크레인	842630	
기타 크레인	842641, 842649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	842810	
뉴매틱식 엘리베이터, 컨베이어	842820	
물품 또는 재료용의 기타 연속 자동식 엘리베이터, 컨베이어	842831~9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	842840	
텔레페릭, 의자 양하기, 스키용 드래그 라인, 퓨니쿨러용 견인장치	842860	
광산용 왜건푸셔, 기관차 또는 화차의 트레버서, 화차 경사기 및 철도화차 취급 장비 등 기타의 기계	842890	
항타기와 항발기	843010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러어	843020	
시추기	843049	
선별기, 기계식 체, 분리기, 세척기, 파쇄기, 분쇄기, 혼합기, 반죽기, 조괴기, 형입기, 성형기 등	8474	
썰매	871680	관세 30%

- 과세액 70만 디나르

품 목	HS CODE	기 타
불도저와 앵글도저	842911, 842919	
그레이더와 레벨러	842920	
스크레이퍼	842930	
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842940	
프론트엔드 셔블로더	842951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 기계	842952	
기타 메커니컬 셔블	842959	
탬핑용, 콤팩팅용 기계	843061	

주: 상기 리스트는 가이드라인으로 더 세부적인 사항은 HS Code 자릿수별로 상이할 수 있음. 또한 리스트에서 별도 표시가 없는 한 관세율 5%, VAT 17%

(3) 수입의약품 규제 강화(국내 생산 의무화 등)

2011년 1월부로 알제리 내 의약품 수입 시 국내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의무가 부과된다. 기존에 수입업자들은 통관 시 수입품목 유사성 및 거래물품을 무역등기소에 등록을 해야 하고, 필수적으로 알제리 국내에서 재정활동을 정당화하는 이전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수입비용 지불을 위해 필수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해야 한다.

한편, 알제리 보건부의 규제안은 알제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의 일환이다. 의약 관련 공기업인 SAIDAL의 생산능력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그 제반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의약품의 알제리 국내생산을 70%까지 높이려는 계획의 초안이다. 실제로 2009년에 알제리 국내 생산이 27%에서 38%로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14억5365만 유로로 대폭 감소하였다.

투자진출 제한분야(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

알제리 정부는 고유가의 지속 등 에너지 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른 석유 자원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2005년 4월 28일에 제정된 탄화수소법을 2006년 7월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유 탐사 및 개발(정유 및 송유관을 통한 수송 포함)에 국영석유회사인 Sonatrach의 참여를 체계화하고 의무화하여 외국회사와의 합자회사 설립 시, Sonatrach의 지분을 최소한 51%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05년도 법은 Sonatrach이 20~30%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 아울러 개정법령은 고유가의 지속에 기인한 예외적인 수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생산량에 따라 5~50%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인 수익의 기준은 Brent 유가의 월평균 가격이 배럴당 30달러를 넘는 경우를 상정하였으며, 세부 적용절차와 조건은 하위법령에 규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2006년 탄화수소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기업의 투자가 급격

히 감소하자 2017년 10월 석유·가스 생산량 확대하였다. 또한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석유·가스 신규 탐사 및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초과이득세 조항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2018년 동 법을 재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합작투자 의무화

정부발주 공공사업 영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알제리 기업과 합작투자가 요구된다. 컨소시엄은 투자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며 알제리 파트너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알제리 국적의 기업이 지분의 과반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51:49).

아울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주 시 투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응찰서에 적시하여야 하며, 현지 파트너와의 협약서 등을 첨부하여 투자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제상 혜택이 부여된다.

- ○ 투자목적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TVA)를 면제
- ○ 투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자산취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다음의 혜택들은 알제리 정부가 관여하는 투자사업과 항만, 공항, 도로, 수자원관리 등 중요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환경 친화적 기술을 사용하는 투자사업에 부여되며, 투자이행 단계와 투자이후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1) 투자 이행 단계

- ○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한 양도세 면제

○ 회사 물품과 자본금 증액의 등기비용에 낮은 세율 적용

○ 투자의 이행에 직접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2) 투자 이후 단계

○ 법인세, 종합소득세, 급여세, 직업세, 부동산세 등을 10년간 면제

○ 결손금 이월(loss carry-over), 감가상각 연장(depreciation extension)을 통한 추가 혜택도 가능

공공 입찰시 자국 제품 인센티브 확대

2010년 10월 7일 관보 58호에 게재된 13조, 23조에는 "건축, 타당성조사 등의 공공입찰 시 알제리산 제품 및/또는 알제리인이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알제리 법인 제품에 대해서는 25%의 특혜 마진이 부여됨" 조항이 신설되었다.

투자촉진 기관

(1) 국가투자위원회(Conseil National de l'Invetissement)

총리가 주재하며 투자관련 부서(재무부, 통상부, 산업부, 관련 지자체 등)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투자진흥 전략 및 우선순위 결정

○ 투자관련 인센티브 선행조건 수립

○ 특별 인센티브 등 투자지원과 촉진을 위한 결정 및 조치를 제안

국가투자위원회는 독립된 행정기구는 아니며, 위원회의 결정과 권고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투자 관련 법령의 이행을 담당하는 투자개발청(ANDI)에 영향을 미친다. 투자위원회의 구성·조직·임무는 Decree №. 01-281 September 21, 2001에 규정되어 있다.

(2) 투자개발청(ANDI)

ANDI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투자촉진 · 개발 · 후속조치를 담당한다.
- 내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투자의 투자약속의 이행을 확보한다.
- 투자관련 업무처리를 위한 단일창구 역할을 한다(one stop service).

(3) 단일 창구(Le guichet unique; One-stop shop)

기업의 등기 절차와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중요한 기관으로 윌라야를 중심으로 지방에 분산하여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ANDI, CNRC, 국유 재산 관리국, 세관, 세금, 도시화, 토지 개조, 노동 환경의 각 지방 대표자와 단일 창구가 위치한 지역의 APC 대표자가 담당한다. 법령 06-356에 의하여, 각 대표자들은 자기가 속한 분야와 관련된 일을 책임지게 된다.

비거주 투자자는 입법자의 특정 대상이 된다. 첫째로, 지방의 단일 창구(GUD) 대표는 비거주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교섭 상대를 구성한다. 둘째, GUD 대표는 투자자를 책임져야하며, 투자 신고금과 이익 부여권을 만들고 지급하며 보증해야한다. 셋째, GUD 대표는 GUD에서 조사한 서류에 책임이 있으며, 관련 서비스 종료까지 보장해야한다.

GUD가 발급한 모든 서류와 행정 절차를 따라야한다. 그러나 2009년부터 투자법이 정정됨에 따라 GUD는 CNI 및 ANDI를 통해서만 절차에 개입할 수 있다.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Ordinance №. 95-22 of August 26, 1995가 제정된 이후 6년만에 공기업의 조직, 경영 및 민영화에 관한 과감한 정책(Ordinance

№ 01-04 of August 20, 2001)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민영화에 있어서 전략분야의 기업과 경쟁분야의 기업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고, 두 가지 분야의 공기업이 공히 민영화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에 인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래의 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로는 민영화를 통한 경영개선, 신기술도입 및 부채축소를 들 수 있다. 민영화를 통한 새로운 재원 마련을 위해 지주회사(Société de gestion des participations)를 통해 심도 있는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제리 경제에 기여하는 민영화(beneficial privatization)를 선호한다. Ordinance № 01-04 of August 20, 2001의 제17조는 '공기업을 인수한 자가 이윤을 내고, 기업을 근대화하고 종업원의 일부 혹은 전부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 사안에 따라 특별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영화에 앞서 민영화 대상기업에 대한 가치평가(evaluating enterprises)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치평가는 주로 다음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 현재가치에 기초한 자산기초평가(asset-based valuation)
-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할인(discounted future cash flow)
- 주식시장에 기초한 평가

이 가운데 민영화의 약 90%가 자산기초평가에 의해 가치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영화가 항상 이러한 가치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경제적 고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각의에서 채택된 민영화 계획의 이행은 산업부장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민영화 절차

공기업의 민영화는 다음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1) 주식 시장을 통한 민영화

주식 시장에의 상장 혹은 상장된 주식의 거래를 통한 민영화 방법이다. 주식이 이미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주식을 개인이나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나, 알제리의 경우 현재까지 Hotel El Aurassi, 제약회사인 Saidal Enterprise, 밀가루 제조회사인 Eriad de Sétif 등 3개 기업만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상장 주식도 전체주식의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식은 상장되어 있지 않고, 민영화 대상기업의 주식관련 정보가 사전에 투자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알제리 주식거래위원회(Algerian Securities Exchange Comnission, COSOB)가 양도할 주식의 가격과 수량을 결정한다.

(2) 입찰

대부분의 민영화의 경우 기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종료된 후 해당 기업을 입찰에 부치고 잠재적 구매자와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종업원 500명 미만 기업의 민영화는 지주회사(SGP)의 감독하에 민영화 협상이 진행되고, 500명이 넘은 기업의 경우는 산업부장관의 감독하에 협상이 진행된다. 협상을 통해 민영화 조건이 합의되면 동 합의는 투자위원회에 제출되고 위원회에서 제안의 수락여부가 결정된다.

알제리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입찰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다. 동 사이트들은 유료로 운영되며,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가입절차가 필요하다(가입 관련사항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함).

- http://www.algeriatenders.com
  (알제리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국제입찰정보 검색 가능)
- http://www.baosem.com(에너지·자원 분야의 입찰정보 검색 가능)
- http://www.anep.com.dz/bomop/bomop/bomopp.html
  (에너지·자원 분야를 제외한 해외입찰정보 검색 가능)

(3) 투자자와의 계약

국가가 투자자와 직접 협상하여 기업가치를 결정하고 민영화 조건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4) 공모주

사전에 결정된 가격에 일반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토지의 조차 및 양도

과거에는 투자 목적으로 제공되는 국유지에 대해 22년 간 조차를 허용하고 투자프로젝트를 실현한 후 2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요청할 경우 소유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2008년 9월 1일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토지 조차기간은 늘리되 소유권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목적으로 제공되는 국유지를 1회 33년(갱신가능), 총 99년 간 조차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아래 토지에 대해서는 조차를 금지하고 있다.

- 농업용 토지, 광물 탐사·개발 지역, 석유 및 가스 탐사·개발지역, 전기·가스 시설물 보호구역,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건설 및 토지개발 진흥구역, 문화·고고학적 보호구역

또한, 추가재정법 2010에 따라 기존의 2001~2003행정명령 조항을 보충하여 양도 계약 시 국가의 선매권 행사토록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외국 기업이 소유 지분 양도시 국가가 선매권을 행사를 결정하면, 기업은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실행포기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행해진 양도계약의 경우도 국가 선매권에 따른 권리 포기증명서 발급의무를 제정하였다. 동 증명서는 제출요구 기한 한 달 내에 공증인을 중개로 교부받아야 한다. 양도 총액 한계 초과 시, 이 거래는 해당 기업의 지분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선매권 행사는 국가가 취득자를 대신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동 선매권에 따른 매입가격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소유권 양도와 부동산 권리이전과 관련, 조항 10조에 따르면 소유물 양도세의 1/2를 법무사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는 기존에 소유주와 법무사 사이에 거래된 총 양도세가 1/5에 불과하는 등 납세자들이 납세의무를 회피하여 국가재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 이 밖에도 회사 지분의 양도, 설립과 변경, 무상교부, 외자에 의한 설립, 자본 증가 등에 있어서도 양도세 납입 의무를 확장하였다.

내·외국인 고용절차

(1) 내국인 고용

알제리 진출 기업 및 기관이 알제리 현지인을 고용하기 위한 특별한 고용절차는 없으며 신문광고, 지역소재 전문인력양성 기관의 추천의뢰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현지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알제리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소재지 관할 사회보장 기관에 신고하고, 사회보장기금(CNSS)에 가입 후 현지 고용인을 등록해야한다.

현지 고용인에 대해서는 35%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하며, 고용주가 25%, 피고용자가 9%를 적립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알제리 정부는 자국내 실업률 해소를 위해 주요 국책 프로젝트를 수주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자국인 의무고용제(전체 투입 근로자의 총 약 80% 수준)를 부과하고 있다.

(2) 외국인 고용

기업 및 기관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주는 먼저 주(Wilaya) 노동국을 통해 해당 직무에 적합한 현지 근로자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노동부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허가 또는 임시노동허가(3개월 이내 근로의 경우)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을 위해서는 블록비자→취업허가→노동비자→노동허가 등 4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1단계로 고용주는 주 노동국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유, 사업장 설치 근거서류(상업등기부 등), 사회보장세(CNAS) 및 조세 납부관련 서류, 고용예정인 현지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수 및 자격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블록비자를 신청해야한다. 블록비자 발급에는 통상 2~4개월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다.

2단계로 고용주는 주 노동국에 근로자의 자격 및 경험 등을 입증하는 서류, 여권,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취업허가를 신청해야하며, 발급기간은 3~6주가 소요된다.

3단계는 해당 근로자가 자국 소재 알제리대사관에 취업허가서, 고용계약서, 본국귀환 보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비자를 신청하여 비자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알제리에 입국하여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4단계로 근로자는 사진, 건강검진증명서, 여권 사본 등을 첨부하여 노동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 외사계에 여권과 은행구좌개설 확인서를 첨부하여 거주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거주허가 신청시 취업의 경우 고용계약서, 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타의 경우 거주허가신청 사유서 및 생활능력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장벽

비자 발급

알제리 입국을 위한 비자는 주한알제리대사관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약 2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알제리 사업 파트너나 초청기관이 없는 경우에 비자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주알제리한국대사관 또는 KOTRA 알제리 무역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행정 처리

알제리에서 영업활동에는 행정처리 업무가 많고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치안상의 문제

1990년대 초부터 알제리의 테러문제는 국내적으로는 사회불안 요소로 대외적으로는 이미지 손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2005년 9월 '평화 및 국민화합 헌장'을 통한 화합정책을 통해 테러위협이 상당히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테러세력들이 주로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만큼 지방 이동 시에는 사전에 대사관과 협의를 하고 알제리 관계 당국에도 적절히 통보하여야 한다.

언어 문제

알제리의 공용어는 아랍어이나 상업활동에는 불어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만큼, 시장조사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 불어통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불 통역의 경우 알제리 현지에서 우수한 통역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통역은 가급적 한국 또는 프랑스에서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부 입찰의 경우 영어로 입찰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경우가 있으나 불어로 작성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실정이다.

교역관련 국가기관

알제리 수출의 98%를 석유·가스 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 일반상품의 교역비중이 낮아서 교역관련 국가기관 중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부서는 알제리 에너지부이며 국영석유공사인 Sonatrach이 알제리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이다. 아울러 알제리내 무역·투자 관련 주요 기관은 아래와 같다.

무역·투자 관련 주요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주요기능
알제리통상부 (Ministère du Commerce)	www.commerce.gov.dz	대외무역진흥 정부부서
알제리수출진흥기관 (ALGEX)	www.algex.dz	수출진흥지원, 해외시장정보전파 등
알제리투자개발청(ANDI)	www.andi.dz	투자정보제공
관세청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www.douane.gov.dz	관세율, 수입제도 변경 등
에너지부 (Ministère de l'Energie)	www.energy.gov.dz	원유가스 산업정책 국제입찰
국영석유회사 (SONATRACH)	www.sonatrach.dz	원유가스 생산 판매 유통
지식재산권보호기관(INAPI)	www.inapi.org	지식재산권보호 특허등록

알제리의 주요 법령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 http://www.lexalgeria.net/
- http://www.joradp.dz/HFR/Index.htm

앙골라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개관

공식국명	앙골라공화국(Republic of Angola)
수도	루안다 (Luanda)
면적	1,246,700㎢ (한반도의 약 5.6배)
인구	2,900만명 (2018, CIA Fack book)
주요도시	Luanda, Cabinda, Malanje, Huambo, Benguela州
언어	포르투갈어
민족	오빙분두 37%, 킴분두 25%, 바콩고 13%, 기타 25%
종교	가톨릭(55%), 토속종교(25%), 개신교(10%), 무교(9.4%), 이슬람교(0.4%), 유태교(0.2%)등
기대수명	61.4세(2017년 기준)
독립일	1975.11.11.(포르투갈)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간선제, 임기 5년, 1회 연임 가능)
국가원수	주앙 로렌쑤 대통령
입법부	단원제(220석, 임기 5년)
기후	ㅇ 열대성 기후(우기 : 10~4월, 건기 : 5~9월) ㅇ 루안다 : 하계(2~3월) 평균기온 28℃, 동계(7~8월) 평균기온 23℃, 연평균 강우량 400㎜
시차	- 8시간 (한국시각 오전 9시가 현지시각 오전 1시)

주요 경제 지표

기초지표	ㅇ GDP 1,242억달러 (2017년 추정) ㅇ 2017년 성장률(WB) : 1.2% ㅇ 구성 : 제조업 61%, 서비스업 28%, 농업 10% ㅇ 1인당 GDP : 4,170달러 (2017년 추정)
정부부채	GDP대비 71%(2018)
소비자물가	20.6%(2018년)
화폐단위	Kwanza(Kz)
환율	1 USD = 307 콴자(18.10월 현재)
외환보유고	127억불(2018년)
교역액	122억불(2016년, 추정)
수출입	ㅇ 2017년 (수출 339억달러, 수입 229억달러) ㅇ 2016년 (수출 311억달러, 수입 190억달러) ㅇ 2015년 (수출 331억달러, 수입 206억달러) ㅇ 2014년 (수출 591억달러, 수입 285억달러)
주요수출품	원유, 다이아몬드, 정유제품, 커피, 수산물 등
주요수입품	기계류, 전자제품,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 식료품 등

앙골라 경제 동향

경제 개요

앙골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제 2의 원유 생산국(1위는 나이지리아)으로 풍부한 노동력(전체 인구의 70%가 25세 이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원유, 가스, 다이아몬드, 철광석 등 지하자원도 풍부한 자원 부국이다.

앙골라 경제는 2002년 30년간의 내전 종식이후 국제 유가 상승세와 신규 유전개발에 따른 원유 수출 증가, 다이아몬드산업 회복세에 힘입어 201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9%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남부 아프리카의 새

로운 지역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수출의 90%에 이르는 압도적 석유의존도로 인해 2014년 이후 저유가로 인한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취임한 Lourenco 대통령은 현재 경제다변화(economic diversification) 정책 및 각종 규제개혁조치 등을 통해 현 위기를 극복하고자 적극 노력 중이다.

세계은행은 최근 유가상승세 등에 힘입어 앙골라의 2018/19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7%/2.2%로 전망하고 있으며, 앙골라, 나이지리아, 및 남아공 3개국의 경제성장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IMF는 2018/19년도 경제성장률을 2.2%/2.4%로 전망)하였다.

물가상승률은 전반적으로 감소세에 있지만, 여전히 고물가 문제가 심각하다. 2014년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 및 환율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추세(2014년 7.3%, 2015년 10.3%, 2016년 32.4%)를 보이다가, 최근 국제유가 회복세에 따른 외환보유고 증가 및 해외부채 감소 등으로 다소 감소 추세(2017년 31%, 2018년 27%, 2019년 17% 예상)를 시현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 이전(2014년 초)의 앙골라 외환보유액은 300억 달러 수준이였으나, 수출 및 FDI 유입 부진에 따른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2018년 5월 기준 앙골라 외환보유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19% 하락한 166억 달러이며, 2018년 2월에는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저치인 120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최근의 경기악화에 따른 외환 수입 감소와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 매각, 해외직접투자 축소 등이 외환보유액 감소 요인이며, (2014년초 311억불→ 2018년초 166억불 이하), 외채 수준 역시 상승 중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통상 정책 및 장벽

앙골라의 수입상이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무부(Ministério do Comércio)의 수입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 수출입업의 대행업자 또는 사무소는

상무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모든 수입상은 수입면허 및 납세자 ID 카드를 받아야 상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면허는 매년 갱신할 수 있으며 수입상이 구매하는 모든 품목이 해당된다.

앙골라는 1996년 WTO에 가입하였으며, 자국 경제발전에 필요한 상품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다. 복수국가간 정부조달협정(GPA)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며, 무역원활화 협정을 아직 비준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앙골라는 우리나라의 일반특혜관세(GSP) 공여 대상국가 중 하나이다.

2017년 기준 앙골라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기존 11.9%(2016년)에서9.9%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입관세율을 기록하였다.

최근 관세율 하락은 지난 수년간 경제다변화 정책(Economic Diversification) 시행과 세계 무역시장에서의 앙골라의 무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앙골라는 궁극적으로 수출관세 대부분의 폐지, 비석유 및 비농산물 분야의 관세장벽 제거 등 세계적인 교역 자유화 추세에 발맞추어 가기 위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다.

한편 앙골라 정부가 2017년에 제정한『2017 관세법』이 2018년 8월 9일 발효되었으며, 동 개정안은 앙골라 제조업 및 농업 활성화를 위해 2,475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세수 증대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126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밀수·가품 거래 방지를 위해 635여개의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재수출 상품에 대한 수출세 20% 부과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관세면제 대상 세부 품목(『2017 관세법』)

기본생필품	콩/식용유/우유/옥수수/쌀/설탕/소금/밀가루/분유 등
보건	모든 의약품/수의(동물 관련) 약품/병원용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탈지면·거즈·붕대·마스크·위생장갑)등
제조업	산업용 원자재/산업 및 제조 장비(소형), 건설·채굴·토목용 장비 등

농업	농업용 장비(트랙터, 콤바인, 로더 등)/종자/살충제/비료 등
차량	18인승 이상 승객수송용 차량
섬유	방적되지 않은 순면코튼·린넨 등

관세인상 대상 세부 품목(『2017 관세법』)

원예·화훼	원예·화훼 용품
음료	생수/음료수/과일 주스
주류	맥주/와인/위스키
육류	소고기/염소 고기 등

수입 금지 대상 품목(『2017 관세법』)

화학	몬트리올 의정서에 규정된 해로운 화학물질
제조	중고 및 재생 타이어/중고 모터
동·식물	Welwitschia mirabilis(웰위치아) 화석식물/ 자이언트세이블영양
목재	비가공 원목

2018년 8월 발효된 『2017 관세법』에 따르면 앙골라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하였으며(맥주 60%, 물 70% 등), 특히 농업 부문 국내 자급률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해 호밀·보리·밀·귀리 등의 종자 및 농업용 기계 등의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폐지하였다. 또한 밀수 방지 및 소비 촉진 등의 목적으로 담배·악기류·화장품 등의 사치품에 대한 수입 관세는 인하되었다.

석유 분야 제품의 수입관세는 앙골라 정부와 외국 석유회사간 개별적 협상에 따라 결정되며, 상당부분 면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및 수입규제 조치

앙골라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관련 법령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유통기한에 따른 수입제한을 두고 있으며 식품은 유통기한 1/4 이하, 의약품은 1/2 또는 6개월 이하일 경우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자동차는 제조일로부터 3년 이상, 트럭은 5년 이상의 경우 수입이 금지된다.

수입부과금/내국세

수입부과금으로는 clearing cost(2%), 소비세(2~30%), 수입인지세(0.5%)와 함께 세관인건비, 통관수수료, 창고보관료 등이 있다. 2015년 10월 앙골라 정부는 외환 반출 통제를 목적으로 국내산/수입산 품목에 80%(국내산 65%)의 특별소비세를 추가 부가하기로 발표하였으며, 특히 수입산 제품에는 국내산보다 높은 세율(담배 80%, 맥주 60%, 물/쥬스 40%,)이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석유 및 석유가공제품에 대해서도 2~5% 안팎의 소비세가 추가될 계획이다.

한편 2015년 6월부터 해외로부터의 기술·서비스 제공에 대한 세율이 10%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 세율은 16.5%에 달하게 되었다.

최근 추세 : 수입제한 강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폭락으로 인한 외환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앙골라 정부는 2015년 1월 일부 품목 대상 수입할당제 및 수입제한조치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수입할당 적용 품목은 국내생산량이 국내소비 수준의 60%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품목으로 주로 식품 및 음료로 구성되어 있다(단, 상금 수입할당제 미시행).

또한, 시멘트의 경우 2017년 4 발표된 수입제한조치 시행계획에 따라 정부기관(Cement Sector Commission)의 사전허가 및 승인 없이 수입이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시멘트 수요가 많은 3개주(Cabinda, Cunene, Cuando

Cubango)에서는 시멘트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2015년 시행계획과 달리 동 3개주에 대한 종전 수입 허용량(15만 톤)제한도 폐지하였다.

고철 폐기물의 경우 2018년 3월 앙골라 산업부는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고자 고철 폐기물에 대한 수출을 금지 하였다.

통관절차상 장벽

수출입 절차

수출입 종사 기업들은 2013년 이후 상무부(MINCO)로부터 각 사업별 허가증(5년마다 갱신)을 취득해야 하며, 앙골라 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앙골라인을 고용해야 함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수출입 등록증과 각 선적별 선적전 수출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수입절차와 관련하여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Proforma Invoice를 받고 상무부에서 발행하는 수입 허가 번호를 받아야 한다. 앙골라에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는 수출지에서 앙골라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Angola National Shipper's Council)에서 발행하는 선적증명서인 CNCA (Conselho Nacional de Carregadores de Angola)를 받아야 한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부처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보건부는 의약품 원재료, 사카린 및 그 파생품을, 내부부는 총기와 화약제품을, 농림부는 식물, 근채류, 과일, 씨앗, 미생물 제품을 사전 승인이 필요한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통관

통관을 위해서는 세관에 관세계산서(Documento Unico), 물품소유증명서(proof of ownership),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수입권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

다. 또한, 1,000미불 이상의 제품은 통관 회사(clearing agent)통해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항구설비 부족과 관료주의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통관 지연에 따른 벌금 부과도 있어 우리 기업 진출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앙골라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2010년 10월 앙골라 최대 항인 루안다 항구의 통관 평균 시일은 약 2주로 감소되는 등 많은 개선이 있었다. 또한 앙골라 정부는 물품 통관 처리 개선을 위해 로비토항과 루안다항의 하역 터미널 및 컨테이너 저장소 확장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공사는 2011년 3월에 완공되었다.

다만, 일부 품목(특히 식료품 등)에 대해서는 하역 후 13일이 초과되는 경우 공매 처분 하는 등 통관 물품의 접안 전부터 지속적인 관찰과 노력을 통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추가적인 비용 발생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앙골라 정부는 선적전 검사(PSI: Pre-shipment Inspection) 제도가 상품 운송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다고 판단, 선적전 검사 법령을 2013년 6월 11일 개정하여 동 제도 적용을 완화 하였다. 선적전 의무 검사는 7월 17일자로 폐지되었으며, 수입·수출에 관계 없이 자발적인 검증 절차의 경우 요청자에 한해 검사 관리부(ADV)에서 실시하고, 정부는 가격 조건, 수량, 기술, 상업, 위생분야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보다 빠른 통관을 위해서는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계약을 정부 지정 검사기관(Bromangol)과 높은 비용으로 체결해야 하고 있어, 여전히 통관상 제약이 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수출지 컨테이너 선적 전 검사

원활한 통관을 위해 자동차, 가축, 동식물, 곡식, 씨앗, 식료품, 의료품, 화학

제품, 주류, 유제품 등 앙골라에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대부분에 대해 선적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Bromangol 이라는 사기업이 앙골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안전 검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라벨링

앙골라로 수입되는 제품은 의무적으로 포르투갈어로 라벨링이 되어 있어야 한다.

검사절차

수입업자는 앙골라 소재 검사 기관(SGS, COTECNA, BIVAC)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무부 발행 수입허가번호를 지정한 검사기관에 접수하고, 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사번호(일명 PIP)를 수출업자에게 통보해 준다. 수출업자는 이 번호를 가지고 지정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후 검사기관은 검사 상태를 앙골라 소재 검사소에 통보 하게 되며, 앙골라검사소에서 통관에 필요한 CRF라는 검사증명서를 발행해 준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앙골라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정보공개 부족, 입찰과정의 불투명성 및 국제기준 미준수로 인해 기업들의 입찰 참여비용이 크다. 정부입찰 공고는 관보(Diario da Republica)와 대표적 일간지인 "Jornal de Angola"에 주로 게재되고 있다. 1,800만 달러 이하 계약은 수의계약이 적용되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7,300만 달러 이상 계약의 입찰에만 참여할 수 있으나, 그 이하에 대해서도 국내 입찰자가 없으면 해당 부처 승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의약품 조달의 경우, 정부 지정 소수 기업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절차가 복잡/불투명하기 때문에 앙골라 내 관련 시설과 네트워크를 갖춘 유럽계 업체(GSK, Bial 등)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적으로 앙골라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지식재산권 보호

앙골라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이며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TRIPS), 공업소유권협정(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및 특허협력조약(WIPO 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국이다. 앙골라는 최빈국으로서 2013년까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완전 이행에 대한 시한 연장권을 가지고 있으며 의약품 특허 적용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앙골라는 아프리카지역지적재산권기구(ARIPO)에는 옵저버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파리산업지식재산권보호협정과 특허협력조약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을 하지는 않았다. 앙골라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산업부(상표, 특허, 디자인)와 문화부(저작권)에서 관할하며 산업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법(3/92)'에 의해, 저작권은 "저작자 권리에 관한 법(Law No.4/90 of March 10, 1990 on Author's Right)"에 의해 보호된다.

앙골라법은 지재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도 지재권보호 강화를 위해 많은 입법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 법집행은 정부당국의 능력 부재로 쉽지 않은 형편이다.

투자 정책 및 장벽

앙골라의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규모는 2013년 183억 달러 대비 70% 감소한 5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와 같은 감소 추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금 본국 송금 어려움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며, 직접 투자의 상당 부분은 중국 정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앙골라는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에 가입하고 있으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앙골라는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관세 혜택 등을 담은 무역협정인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AGOA)의 수혜대상국이자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회원국이다. 또한, EU-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지역 그룹(ACP)간 무역협정에 가입되어 있다.

투자 진출 관련 제한

최대 산업인 석유와 관련 탐사/개발/시추에 대한 권한은 앙골라 정부에 귀속되며 관련 투자는 반드시 국영석유공사(SONANGOL)와 합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외환거래법에 따르면 앙골라 내 모든 석유/가스 회사들은 앙골라 소재 은행을 통해서만 해외 송금을 하게 되어 있다. 한편 앙골라 노동법은 앙골라 현지 직원들에게는 현지화(콴자)로만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7년 4월 수정 발효된 dos Santos 전 대통령령(78/17)에 따라 현재는 비거주 외국인 근로자들 및 국내 근로자에 대한 급료는 콴자만이 아닌 외화로도 지급이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는 국방, 국내 공공질서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또한 중앙은행과 은행을 포함한 은행 업무는 참여가 불가하고 국가가 법으로 정한 기타 부문에서의 투자는 금지되어 있으며, 석유 및 다이아몬드 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는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앙골라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네거티브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품목은 무기 및 탄약, 통화, 음란물, 도박장비, 유독성제품, 의약품, 철광석 등이다.

앙골라 정부는 유전자 변형 곡물 및 종자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 처리된 곡물 및 종자는 반드시 제분 또는 단종 처리를 거쳐야 수입이 허가된다.

투자 관련 법규(2018년 신투자법)

그간 "2015년 민간투자법"에 기초하여 대앙골라 해외투자기업은 앙골라 투자청(UTIP)과의 투자계약 체결 및 앙골라 수출투자 진흥청(APIEX)의 승인을 통해 앙골라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동 투자 계약 체결시 앙골라 투자청 및 투자분야 관련 부처와 세액 공제, 투자액환급, 내국세 면세 등 투자 조건 및 인센티브 협상(Case by Case)할 수 있었으며 1,000만 달러 이하 투자는 앙골라 수출투자 진흥청(APIEX)의 승인이, 1,000만 달러 이상은 내각 장관회의 및 임시 국무회의(대통령주재)의 승인이 필요하였다.

2018년 4월 앙골라 정부는 투자유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5년 민간투자법"을 개정, "2018년 민간투자법"을 새로 발표하였으며, 동법은 2018년 6월 발효되었다. 신 민간투자법은 기존 앙골라 수출투자 진흥청(APIEX)을 앙골라 민간투자 수출진흥청(AIPEX)으로 대체하였으며, 5,000만 달러 이하 투자는 해당 부처에서 승인하고 5,000만 달러 이상은 종전과 동일한 내각 회의 및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의 승인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 참여시 필수 제출서류는 투자자 법적 서류/투자 협약제안서/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여권/기술·경제·재정적 타당성 조사 시행/회사 재정상태 증빙 서류 제출/앙골라 관세청(AGT)의 체납금액 여부 증명서 등이 있다.

(1) 외국기업의 자회사 설립

외국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앙골라 내 자회사 설립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5년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외투자 기업은 100만 달러 이상(국내투자자 50만 달러) 직접투자를 통한 단독 법인을 설립하거나, 앙골라 현지기업과 합작을 통해 합작법인을 세워야 진출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신투자법은 상기와 같은 해외투자기업의 투자 하한선을 폐지하였다.

(2) 투자 인센티브 부여

2018년 신투자법은 종전 해외투자자의 경우 최소 100만 달러 이상(국내투

자자 50만 달러) 투자 금액 조건을 폐지하여 모든 투자자들이 투자인센티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센티브 수혜대상 지역은 앙골라 정부가 지정한 3개의 산업개발지역(Development Zone)이다.

* Zone A: Luanda주 / Namibe주 / Benguela주 / Huíla주 / Lobito시
* Zone B: Cabinda주 / Bié주 / Huambo주 / Bengo주 / Cuanza-Norte주 / Cuanza-Sul주 / Malanje주 / Namibe주 / Uíge주 / Benguela주(주도 제외 모든 시) / Huíla주(주도 제외 모든 시)
* Zone C: Lunda-Norte주 / Lunda-Sul주 / Moxico주 / Cunene주 / Zaire주 / Cuando-Cubango주 /

Zone A의 지방세(취득세)는 2년간, 재산세는 2년간, 산업세는 각각 3년간 면제되고, Zone B의 지방세(취득세)는 3년간, 재산세는 2-4년간, 산업세는 3-6년간 각각 면제되며, Zone C의 지방세(취득세)는 4년간, 재산세는 4-6년간, 산업세는 6-8년간 각각 면제가 가능하다.

또한, 앙골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세제 혜택의 세부 내역으로는 ▲가속상각제도, ▲세금 면제(공제), ▲세금 납부기간 연장 혜택 등이 있다.

(3) 투자 승인 주체

2015년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1,000만 달러 이하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앙골라 수출투자 진흥청(APIEX)이 승인하고, 그 이상 규모는 내각 회의 및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8년 신투자법은 앙골라 수출투자 진흥청(APIEX)을 앙골라 민간투자 수출진흥청(AIPEX)로 대체하였다. 이제 5,000만 달러 이하 투자는 해당 부처에서 승인하며, 5,000만 달러 이상은 종전과 같으며, 외국인이 앙골라에 투자할 시 최소투자금액 요건은 없다.

(4) 현지 파트너 의무화

2018년 신투자법은 특정 부문(전기, 수력, 호텔, 관광, 로지스틱스, 건설, 통

신, IT)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앙골라 현지 파트너를 갖출 것과, 동 파트너는 투자법인의 35% 이상 지분을 갖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2개의 필수 의무 조항을 폐지하였다.

(5) 해외 송금 관련 제한

2018년 신투자법은 2015 민간투자법과 동일하게 해외투자자의 간접투자(주식 및 채권 등)규모가 전체 투자액의 30%를 넘을 수 없으며, 투자의 해외 환급(repayment)은 법인 등록 후 3년 후부터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익 및 배당금의 해외 송금 규모가 투자자의 기여도를 초과할 경우 15~50%의 부가세를 매길 수 있게 하였다.

투자 관련 애로 사항

(1) 전반적으로 열악한 사업 환경

세계은행의 2018년 "Doing Business Report"에 따르면 앙골라는 전체 190개 대상국 중 175위로 사업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계약이행(186위), 국경간 거래(180위), 대출(183위), 전력공급(165위) 등이 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계약 이행에는 무려 1,296일이 걸리고, 국경 통관처리에 180 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미수금 문제

2015년 이후 앙골라 경제가 큰 침체에 빠지면서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국내외) 상당수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많은 외국 기업들이 철수한 상황이다. 미수금 문제는 달러 환전의 어려움 및 해외송금 제한 등으로 더욱 큰 부담이 되고 있다.

(3) 신속하지 못한 외국기업 등록절차

앙골라 정부는 외국기업의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2003년 8월에 One-stop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면허 발급에 장시간

이 소요되고 있다. 앙골라 법률은 외국기업 등록절차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7년 9월 출범한 Lourenco 신정부는 기업지원원스톱센터(BUE)를 적극 활성화 시켜, 국내외 기업들의 사업 면허 발급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한편, 앙골라 상무부는 신속하고 경제적인 기업 등록절차를 위해 2017년부터 온라인 기업설립시스템을 시행해오고 있다.

(4) 관료주의

유관부서 또는 파트너와 사업 추진 시 관료주의 또는 현지 관행상 일정이 자주 변경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관료주의 등으로 인해 현지법인 설립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전기,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이 없거나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5) 국산화의무 부과

앙골라 정부는 현지 조립생산제품에 대해 국산화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재 앙골라 제조업이 음료, 시멘트, 석유화학제품, 선박구조물 등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부품 등 제조 산업이 부재 또는 미미해 국산화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6)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 투자법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나 부동산 소유권 관련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앙골라가 포르투갈로부터 1975년에 독립하면서 포르투갈인들이 포르투갈로 귀국하거나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소유권 귀속 관계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통한 부동산 취득 및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제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금융상의 제한

1) 송금 관련

현지에 투자법인을 설립한 업체들은 종종 본국으로의 외환 송금에 이유 없이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앙골라 현지의 외환사정에 따른 제한으로 현지 외환사정에 따라 송금규제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해외 송금 거래에 앞서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대상인지를 현지 거래 은행에 문의해 확인을 받아야 추후 발송할 송금 제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2015년 이후 앙골라 경제가 큰 침체를 겪으면서 정부가 공공연히 외환 환전 및 송금을 제한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약품, 식료품 등 필수재를 제외한 품목의 대금 지급을 위한 송금을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사업별로 다름)을 충족해야 하며, 국내 수취까지 4~5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2018년 신투자법에서는 해외 송금에 대해 투자의 해외 환급(repayment)은 법인 등록 후 3년 후부터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익 및 배당금의 해외 송금 규모가 투자자의 기여도를 초과할 경우 15~50%의 부가세를 매길 수 있게 하였다.

2) 외환 확보 문제

2014년 중반 이후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전환 및 석유 부문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환율상승에 따른 콴자화 가치 방어를 위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은 계속 감소하여, 2018년 현재 앙골라에서 외환, 특히 달러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2018년 8월에는 앙골라 순외환보유고가 최근 10년간 최저액인 127억 불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앙골라 내 외국인 근로자의 달러 해외 송금은 물론, 앙골라 내 본인 계좌 달러를 인출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졌다.

한편, 중국은 앙골라 거주 중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 및 외화 거래를 위해 2017년 6월 중국은행(Bank of China) 1호점을 앙골라 루안다에 개설하였다.

3)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

현지 기업들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애로사항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중소업체 및 수도 루안다 이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은 금융시장 접근이 보다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서비스 접근성의 애로사항은 주로 신청절차의 복잡성과 담보물 불인정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운영자금을 자체 유보이익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장기자금의 경우 대기업은 은행을 통하여 25%를 조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4%정도를 의존하고 있다.

기타 장벽

(1) 비자발급

앙골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앙골라 파트너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후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일반 비자유효기간은 1~3개월이며 추후 1년짜리 노동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노동비자의 경우 과거 서류 준비와 취득에 장시간이 소요(1~2년)되었으나, 2016년 들어 개선되어 빠르면 2~3주면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는 온라인 비자신청시스템이 도입되어 종전보다 신속하게 비자발급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앙골라 정부는 2018년 2월 대통령령 56/18을 통해 2018년 3월 30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0개 주요 협력국을 대상으로 앙골라 단기방문(관광)비자 간소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앙골라 입국희망자는 주한앙골라대사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온라인상으로 단기사증(30일)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급받은 입국승인증명서를 앙골라 입국시 제시하면 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현행과 같이 주한 앙골라 대사관을 방문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하다.

앙골라 이민청(SME)은 2018년 내에 투자자 비자발급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 시켜나갈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법안 초안이 마련 되는대로 국회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2) 인프라 미비

앙골라는 27년에 걸친 내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회 인프라가 황폐화되어 전력 및 식수 공급이 매우 불안정한 바, 외국기업들의 경우 자체 발전기 및 식수탱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기업의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3) 부품 등 중간재 부재

앙골라 국내 제조업은 음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무하여 부품 및 중간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4) 세계 최고수준의 물가 및 열악한 거시경제 지표

2018년 6월 MERCER가 발표한 『2018 세계 주요 도시 물가 순위』에서 앙골라 루안다가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도시 6위로 선정된 바, 앙골라에서는 해외 주재원 및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택 및 사무실 등의 유지비용이 크게 소요된다.

2017년도 앙골라의 경제성장률은 1.2% 수준으로, 정부는 2018년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2017년도 물가상승률은 23%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도는 19%로 전망된다.

2018년도 앙골라 1-3분기 비석유 부문 세입은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한 5천억 콴자(16억불)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 1-3분기간 석유 부문 세입은 72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7년 앙골라 공공부채는 전년 대비 5% 상승, 2012년 대비 57% 상승한 79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최근 재정건전성 강화 조치로 재정적자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13년 0.3%의 흑자를 기록한 이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분기에 각각 6.6%, 2.1%, 2.2%, 0.9%의 적자를 기록해왔다. 또한, 동 적자분이 외부 자금 차입을 통해 메워짐에 따라 현재 GDP 대비 누적 부채비율은 2013년도 24.5%, 2016년도 56%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71%에 달한다.

개선실적

앙골라 정부는 내전종식 후 안정적 정치환경을 기반으로 국가재건 및 국내 자체 제조업 발전을 위해 광업, 건설, 농수산업, 섬유, 유통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유치 및 인프라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법규정 개정, 투명성 확보, 부패 척결 등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극 노력 중이며, 통화당국의 적극적 노력으로 물가수준도 2012년 이후 한자리 수로 안정화 추세이며, 환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2014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대외수출이 급감하면서 앙골라 경제는 큰 위기(2016년 제로 성장, 인플레이션 40%)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환 통제를 강화하고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주의적 조치의 도입을 추진해 가고 있다.

2017년 9월에 출범한 Lourenco 신정부는 앙골라 중앙은행(BNA)과 협력하여 국내은행 및 금융시스템이 국제표준을 도입하고,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시중 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예방 및 퇴치 활동을 전폭 지원함으로써, 실물경제 회복과 외환확보를 위한 최선의 전략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Lourenco 대통령은 당선 직후 앙골라 비즈니스 환경의 전면적 개혁을 표방하였으며, dos Santos 전직 대통령 일가 및 측근 퇴출, 고정환율제 폐기 및 관리 변동환율제 등의 거시경제체제 도입 및 민간투자법 개정과 같은 규제 완화 정책 등을 시현해왔다. 특히 비석유 부문 산업(주로 노동집약적인 농/수산/식품 분야 제조업)을 육성, 원유 관련 내외부충격(국제유가 하락 및 국내 산출량 감소 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경쟁법 개정, 해외은닉자산 환수 조치,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 노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노력 등의 거시 경제 안정화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한 경제/금융 개혁 조치 등을 도입함으로써, 對앙골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 중이다.

Lourenco 신정부는 경제슬로건인 경제다변화 추진을 통하여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민간 수출 확대, 특히 농업 및 제조업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불균형 해소, 세수 확보 등을 통해 국제 유가 하락 및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에 직면한 앙골라 경제 극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자급력 향상을 위해 기계 및 장비류 수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현재 시행중인 생산지원・수출 다변화・수입대체 프로그램(PRODESI) 등을 통해 국내외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앙골라 경제를 지속가능하고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로 탈바꿈시켜 나갈 것이다.

Lourenco 신정부는 농업 부문에서 농업 현대화 사업, 가족 단위 농업 중요성 제고, 농산물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에 중점을 두고, 제조업 부문에서는 철강 산업, 건축자재, IT, 직물 제조업, 식품 부문의 자급률을 증대시켜 나감으로써,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Lourenco 신정부는 경제안정화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 IMF와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협상 중인바, 동 IMF 자금지원은 거시경제안정화(PEM) 정책 및 앙골라 5개년 국가개발계획(2018-22)의 각종 개혁조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사한 개혁조치를 통해 향후 앙골라는 석유 보증 없이도 국제금융기구와 자금지원 협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Lourenco 행정부는 출범이후 경제안정화 정책 추진을 위해 주요국 금융기관과의 자금협상에 주력해왔으며, 지난 1년간 영국의 수출금융기구(UKEF) 5억 달러・유로본드 35억 달러 발행・프랑스 Credit Agricole 은행 5억 달러・프랑스개발청(AFD) 9천 2백만 달러・독일개발은행(KfW) 5억 달러・포르투갈 보험회사(COSEC) 5억 달러・중국개발은행(CDB) 20억 달러・중국공상은행(ICBC) 35억 달러・중국수출입은행 6억 2천만 달러・AfDB 1억 1천만 달러 등 총 112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획득해오며 자금 조달에 힘써오고 있다.

Lourenco 대통령은 에너지와 수자원 분야의 태양 및 풍력에너지 등의 대체 에너지 개발과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한 에너지 생산 및 환경보호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바, 향후 에너지-기후변화 분야 간 협력 가능성도 기대 된다.

다만 Lourenco 신정부의 재정적 여력, 각종 거시경제 지표 등을 감안시, 상기 경제다변화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차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신정부는 미국, 한국, 일본 등과의 경제 협력의지를 적극 밝히며 중국 위주의 경제협력선을 다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앙골라의 각종 투자리스크 및 행정력 등을 감안시 해당 국가기업이 앙골라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기업·통상 환경이 조성되기 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에티오피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개관

에티오피아는 3,000여년 전부터 독립국가를 유지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국가 중 하나이다. 하지만 1차 세계 대전 당시 이탈리아와의 전쟁, 이후 멩게스투 정권 당시(1974~1991년)의 사회주의 정치·경제체제로 시장 경제가 많이 약화된 상태이다. 이후 멜레스 제나위 총리(1991~2012년)에 이은 하일레 마리암 총리(2012년~2018년) 및 현 아비 아흐메드(2018년~현재)의 집권 기간 동안 강력한 시장 경제 정책을 실시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가 되었다.

주변국가에 비해 석유 등 원자재가 부족한 편이지만, 아프리카 제2의 인구대국(나이지리아에 이어 2016년 기준 1억 495만명)이면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동시에 보이고 있어 그 시장 규모의 중요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꾸준한 환율상승(2017년 10월 15% 평가절하) 및 물가상승(연평균 10% 이상)은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아직 국유화 되어 있는 물류시스템 및 정보통신 서비스 등은 국가 인프라 구축에 문제가 되고 있다. 다만, 2018년 6월 현 정부는 국영기업의 일부 민영화 원칙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이행방안이 논의 중이다.

현재 2013년 9.9%, 2014년 10.3%, 2015년 10.4%, 2016년 7.9%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4월 취임한 신임 아비 총리가 주변국

과의 관계 안정, 경제개발을 위한 외화 확보 등에 집중하고 있어 향후 경제개발정책 추진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티오피아는 2025년까지 연평균 11%의 경제성장 및 중진국 소득 진입을 골자로 하는 에티오피아 국가성장전략인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GTP)를 발표(2010년)하여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의 경제적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 하에 각종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왔으며 2015년 하반기부터는 GTP II(2015~2020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건설중장비 및 부품, 자동차, 의약품, 석유 및 정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14백만 달러 규모를 에티오피아에 수출하였으며(전년대비 17% 증가), 커피, 참깨 등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62백만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했다(전년대비 16% 증가). 특히, 에티오피아는 커피 원산지로서 커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늘고 있으며 참깨 역시 새로운 수입품목으로 급부상하였다.

최근 동부 아프리카 물류의 거점으로서 에티오피아의 전략적 이점과 2018년 6월 에티오피아 항공의 인천-아디스아바바 직항(주4회) 개설을 계기로,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아프리카 범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

에티오피아는 2018년 3월 아프리카연합(AU)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아프리카 범자유무역지대(AfCFTA)의 서명국(미비준)이다. 동 협정은 아프리카내 물품 거래에 대한 관세 제거, 서비스 무역 자유화, 국경무역에 있어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발효될 경우(22개국 비준 필요) 현재 아프리카 전체 무역의 20% 미만인 역내 무역이 5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참여 동향

에티오피아는 전체 약 4억 인구의 19개 아프리카 국가가 참여하는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회원국이다. 지난 2000년 10월 31일 역내에 무역 자유화 지대를 창설해 단일 경제 공동시장(수입관세 및 장벽 철폐)을 결성하고, COMESA 역내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 기준도 종전 45%에서 35%로 인하해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일부 COMESA 회원국은 40% 기준 유지). 2009년 6월 13차 COMESA 정상회의에서 3년간의 경과 규정을 두고 COMESA 회원국 간 관세동맹을 출범키로 하였으며(일부 회원국들 유보적 입장 표명), 완전한 관세동맹 이행을 위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무기를 제외한 모든 교역 원칙(Everything But Arms)

유럽과의 교역에서 무관세 및 쿼터 제외를 보장한 원칙에 가입하여 유럽으로의 수출이 용이하다.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s, AGOA)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미국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에 가입함으로써 미국과의 교역이 용이하다. 또한 2013년 8월 AGOA 포럼이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어 이 법이 연장되었다. 이 법을 통해 10년간 에티오피아는 수익 할당량과 면세에 있어 혜택을 받으며 미국시장 진출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3)]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35%의 수입관세와 15%의 VAT를 부과하나, 신산업 육성 및 국내 산업, 제품 보호를 위해 관세 면제나 차등적 부과가 적용되기도 한다. 관세 면제 대상 업종 및 기계/장비는 아래와 같다.

---

3) Ethiopia: 10 US Firms Discussing With Ethiopian Officials, Businesses – All Africa

관세면제 대상 업종[4)]

제조업	외식, 주류, 기초 금속 물질, 운송·운반(ex.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산업 섬유, 가죽, 목재, 제지, 화학약품, 기초 제약,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합금, 컴퓨터 및 전자·광학, 전기, 기계·장비 생산품 농업 통합 제조업, 사무·가정용 가구, 기타 장비 제조
농업	작물 생산, 가축 생산, 혼합 농업, 삼림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
에너지 산업	발전, 변속, 전기 에너지 공급
호텔 및 관광산업	지정된 성급의 호텔·리조트, 모텔, 별장·식당 특정 관광산업
건설 계약	특정 수원·광물 탐사 시추
교육 및 트레이닝	학교 설립을 통한 고등교육 제고 스포츠 포함 기술·직무훈련 서비스
보건 서비스	병원 설립을 통한 의료 서비스
건축	건축·공학기술 관련 테스트 및 분석
수입 무역	액화석유가스(LPG), 역청

관세면제 대상 기계 및 장비

농업 투자사업	최초농지 조성을 위한 농업기계 및 농로 건설을 위한 중토 이동장비 토지 조성 또는 정지에서 작물 수확까지 운영, 농업 상품의 분리 또는 세척을 위해 필요한 장비 농공산업을 위해 필요한 생산 기계 및 장비 기계 및 장비 가격의 15% 이하의 예비 부품
제조 투자사업	상품 및 부대용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해당 기계 및 장비 가격의 15%까지의 예비 부품, 공장 건물 건설을 위해 필요한 철골 구조 및 재료
건설 투자사업	건설공사, 건설기계 임대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건설기계 및 장비, 해당 건설기계 및 장비 가격의 15%까지의 예비 부품
호텔 및 관광 서비스업	공원 및 사적지에 소재한 특급호텔과 산장에서 주방업무와 세탁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내구재는 투자위원회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함.

4) II – Appendix, Investment guide 2017 – Ethiopian Investment Commission

교육 서비스 사업	다양한 수준의 교육기관에 대해서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가 지정한 실험실 장비, 교육서비스와 기숙학교에서 주방업무와 세탁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장비
공공의료 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지정한 실험실 장비,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장비와 환자에게 숙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에서 주방업무와 세탁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내구재
운송 및 보관 서비스에 대한 투자	내륙 수로로 승객과 상품 수송을 위한 선박 및 소형 선박, 20인승까지의 항공기, 항공을 위한 기타 장비 및 부대용품 상품을 운송하기 위한 창고, 크레인 및 차량내부에 설치되는 서비스 및 공기냉각 장비와 장비가격의 15%까지의 예비부품
엔지니어링 및 기술자문 서비스에 대한 투자	엔지니어링, 기술 자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측량, 설계, 사진 측량, 지도제작 및 기타 장비와 부대용품
폐기물처리 서비스에 대한 투자활동	고체 또는 액체 폐기물을 들어 올리고 운송하는데 필요한 차량 및 부대용품, 그 가격의 15%까지의 예비부품
발전 및 석유정제에 대한 투자	발전, 송전 및 배전과 석유 정제를 위해 필요한 기계 및 장비와 부대용품, 그 가격의 15%까지의 예비부품
공업단지 설립에 대한 투자	공업단지 설립을 위해 필요한 기계 및 장비, 공업단지의 건물 건설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및 재료
통신 서비스에 대한 투자사업	통신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내구성 있는 기계 및 장비와 그 가격의 15%까지의 예비 부품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사업	연구개발(R&D) 목적으로 필요한 내구성 있는 기계 및 장비

자료: 에티오피아 투자청

한편, 다음의 투자 분야는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호텔(특급호텔 제외), 모텔, 커피숍, 바, 나이트클럽 및 식당(국제적이고 특화된 식당 제외)/ 도매, 소매 및 수입거래/ 유지보수 서비스/ 상업용 도로 운송 및 차량서비스/ 우편 및 운송 서비스/ 부동산 개발/ 경영관리 컨설팅 서비스/ 광고 서비스/ 영화 촬영 및 유사활동/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극장 및 영화관 운영/ 통관 서비스/ 세탁 서비스/ 여행사, 부대 무역 및 티켓 판매서비스/ 복권사업과 기타 유사 사업
그리고 수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자재 수입에 관해서는 차후에 관세가 100% 환급된다.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송장, 선하증권과 면세 신청서를 에티오피아 투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 터키, 중국, 인도, 러시아 등 30여개국과 BIT를 체결하고, 10여개국과는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맺어져있다. 우리나라와는 BIT 미체결 상태이며, 이중과세방지협정은 2017년 10월 31일 발효하였다.

수입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CIF기준)에는 관세, Excise Tax, 부가가치세, SURTAX, With-holding Tax(WHT)가 있다.

관세는 0~35%까지 6단계가 적용되며 품목에 따라 다르다. Excise Tax는 주로 사치재에 부과되며, 주류(맥주, 위스키 50%, 기타 알콜음료 100%), 담배(20%, 시가 75%) 등 이다. 부가가치세는 법에 명시한 특별한 경우(가령 종교적, 교육적 목적 등)를 제외하면 15%가 부과된다. Surtax는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보조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포함한 가격의 10%가 부과된다. Withholding tax는 CIF금액의 3%를 부과한다. 또한 세관 통과에는 약 한달 가량 소요된다.

자동차 수입 관련 규정

자동차 세금 규정

배기량 1000~1300cc 가솔린 자동차	관세 35%, Excise Tax 30%, VAT 15%, 기타 Sur Tax 등 13%
배기량 1300~1800cc 가솔린 자동차	관세 35%, Excise Tax 60%, VAT 15%, 기타 Sur Tax 등 13%
배기량 3000cc 이상의 가솔린 자동차	관세 35%, Excise Tax 100%, VAT 15%, 기타 Sur Tax 등 13%
배기량 1300cc 이하의 디젤 자동차	관세 35%, Excise Tax 30%, VAT 15%, 기타 Sur Tax 등 13%
배기량 1300~1500cc 디젤 자동차	관세 35%, Excise Tax 60%, VAT 15%, 기타 Sur Tax 등 13%
화물자동차	관세 10%, Excise Tax 0%, VAT 15%, Withholding tax 3%
15인 이상의 승합자동차(디젤)	관세 10%, Excise Tax 0%, VAT 15%, Withholding tax 3%

표준, 검사, Labeling 관련

에티오피아 품질표준 관리청(The Quality and Standard Authority of Ethiopia, QSAE)이 1970년에 설립되어 수입품 안정성 테스트(Testing) 및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를 담당하고 있고, 이 QSAE는 다음의 모든 국제표준기구의 멤버로서 국제표준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OIML)
-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CAC)
- African Reg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ARSO)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
- South African Quality Institute(SAQI)

에티오피아는 몇몇 제품(의약품 등)을 제외하고는 품질 인증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식의약품, 건축자재, 화학약품, 직물 등은 품질인증서가 필수이다.

또한 모든 수입 상품에는 분명하고 서류와 대조 가능하도록 라벨 및 마킹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벨 및 마킹과 관련한 규정은 에티오피아 품질표준 관리청(Quali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Ethiopia, QSAE, http://www. ethiomarket.com/qsae/)에서 담당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에티오피아는 농업이 전체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약 70~80%의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환경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에티오피아 환경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질 좋은 환경에서의 삶을 영위하고, 지속가

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미래 세대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법에는 토양, 숲, 생물 품종, 수자원, 에너지, 천연자원, 도시환경, 산업폐기물,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문화 및 자연 보존지역, 인구, 공동체, 토지, 성, 환경경제, 환경정보화 시스템,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ment, EIA), 환경교육 등이 망라되어 있다. 이 법안은 연방, 주, 시 구역별로 적용되며,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에 의해 법안이 정해지고 적용된다. 여기서 정해진 기후변화 준수 경제(Ethiopia's Climate-Resilient Green Economic, CRGE) Strategy에 의거하여 2025년까지 탄소배출 중립적 국가(Carbon Neutral by 2025)를 목표로 국가발전 방안 및 투자방안이 검토되어 진다.

지식재산권 보호

2003년부터 에티오피아 정부는 에티오피아 지적재산권 관리소(Ethiop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IPO)를 설립하고 상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현재 관광 및 서비스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표 등에는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

이에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를 비롯하여 여러 지적 재산권 관련 기구 가입 및 조항 서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매우 어렵다. 세계적인 표준보다는 국내 또는 지역법에 의해 보호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련 법안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에티오피아에 진출할 예정에 있는 대다수 외투기업 및 글로벌 기업들은 EIPO에 상표 및 로고를 선등록하여 지재권 침해에 선대응하고 있으며, 신문공고를 통해 등록 사실을 공표하는 등 이와 관련한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투자장벽

개관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뿔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에 에리트레아, 동쪽에 지부티와 소말리아,남쪽에 케냐, 서쪽에 수단과 남수단에 국경을 접하고 있다.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지나간다. 전체 면적은 1,127,127km^2 이며 세계에서 27번째로 큰 나라이다. 볼리비아와 크기가 비슷하며 알래스카 주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에티오피아의 주요 부분이 아프리카의 뿔에 해당하여 아프리카 전체의 가장 동쪽 부분에 해당한다. 또한 1억 명이 넘는 인구(나이지리아에 이어 아프리카 내 2위)와 인구 성장으로 인한 풍부한 젊은 노동력, 빠른 경제성장과 많은 인구가 만들어내는 시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비록 에리트레아 독립 이후, 직접적인 항구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인근 국가인 지부티 항으로부터 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국가 내에 Modjo 등 내륙 항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COMESA, AGOA, EBD 등의 회원국으로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2018년 아비 총리 취임후 에리트리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 및 국내 정치상황을 안정시키고 있으며, 치안도 비교적 안전하다. 또한 아프리카연합(AU)과 UN Economic Commission to Africa(UNECA) 본부가 있는 등 정치적으로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을 필두로 많은 도로와 철도가 건설 중이다. 2015년 9월에는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 32km 경전철이 완공되었으며, 주요 항구인 지부티와 아디스아바바를 잇는 756km 철도가 완공되었다. 또한 아디스아바바에서 주요 도시로 뻗어가는 고속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2014년 9월에는 Debre Zeit, Modjo, Dukem 등과 연결된 아디스아바바-아다마 고속도로가 완공되어 에티오피아 최초 6차선 고속도로를 보유하게 되었다.[5)]

5) Ethiopia's Addis Abeba-Adama Expressway Finally Open(Sep 14, 2015) - Addis Fortune

전력사정이 현재 열악한 편이지만, 에티오피아는 콩고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수력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약 45,000MW). 현재 잠재력의 4.4% 정도가 개발되었다. 또한 지열발전의 잠재력은 약 5,000MW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약 2,000MW만 발전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33%만이 전력소비가 가능하다. 이중 1,980MW는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전력 생산 능력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여타 저소득국가 대비 전력 생산에서 뒤져있다. 현재 1,870MW의 Gilgel Gibe III, 254MW의 Genale Dawa III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나일강 유역의 6,000MW의 대르네상스댐(GERD)이 완공되면 에티오피아 성장계획인 GTP에 명시된 75% 전력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6)]

세계 각국의 투자환경을 평가하는 Doing Business 2018 순위에서 에티오피아는 190개 조사대상국 중 161위에 랭크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에티오피아는 현재 산업단지 건설이 한창이다. 2013년말 Bole-Lemi 산업단지를 완공하였고, 섬유산업 업체 등이 입주하여 생산하고 있다. 또한 Bole-Lemi 산업단지 옆에 제2산업공단을 조성하고 있다. Bole-Lemi 산업단지 이외에도 Dire Dawa, Kombolcha, Amhara Regional State; Shinelle, Somali Regional State; Hawassa, Southern Regional State, Akaki Kality 등의 지역에도 산업단지 조성·확충중이다. 이 산업단지들에는 투자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렴한 토지 리스 비용, 건물 임차 비용, 세금혜택, 수도세 및 전기세 등에서 혜택을 준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 유치로 에티오피아 정부는 산업 발전과 기술 이전, 실업률 절감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또한 에티오피아 투자청(Ethiopian Investment Commision, EIC) 이 외국인 투자가에게 각종 상담 및 투자허가 등을 일체 지원해 주고(one stop service) 있다.
법인세는 30%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VAT)는 15%가 부과된다.

6) Increase in Electricity Tariffs Required to Realise Power Generating Projects – Addis Fortune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에티오피아는 우편, 송전, 항공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군수 및 통신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Joint Venture를 허용하고 있다. 커피, 유료 종자, 가죽 등과 같은 원자재 수출, 액화 석유 가스, 역청 등의 수입, 제과, 의류, 건축 자재, 인쇄 등 다양한 품목의 제조업은 국내 투자자들에 한정되어 있다. 은행, 보험 등 금융, 방송 등 대중매체, 법률, 재래 의학, 광고 및 번역, 항공 서비스, 운송 등에 대해서는 에티오피아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투자가 허용된다.[7] 다만, 2018년 6월 현 정부가 특별성명을 통해 일부 국경기업에 대한 민영화 원칙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구체 이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상의 제한

현재 정부의 인프라 투자로 인해 외환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외환 통제가 심한 편이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한다는 증명(여권 및 항공권 등)을 하고 미화 3,000달러까지 환전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외환의 부족으로 어려운 편이다.

노동법 관계

에티오피아 노동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45일 동안 수습생(probationer) 자격으로 고용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에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통상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사전 고지기간이 필요하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전, 9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2개월 전, 9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3개월 전 사전 고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간 상당의 보수, 연가보상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은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분쟁을 중재하거나, 중재자를 지정하거나, 산업법정(Industrial Court)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임금 관련,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노동자 최저임금도 동반상승 하여 실질임

7) I – Appendix, Investment guide 2015 – Ethiopian Investment Agency

금은 계속 상승세에 있다. 2016년 10월 현재 대졸 신입사원 사무직의 경우 미화 약 250달러 수준의 급여를 준다.

노동자와 고용주는 각각 노동자 기본임금의 15%씩을 퇴직연금(PF)으로 납부해야 한다. 에티오피아는 아직 의료보험이 없다.

연간 공휴일은 12일이며 연간 법정 유급 휴가 일수는 14일이다. 하루 법정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평일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급여에 1.5%를 더하여 지급하고, 공휴일 또는 휴일 근무 시는 1일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에티오피아의 토지는 정부 소유로, 원칙적으로 매매가 금지되어 있다. 정부 소유 토지는 짧게는 30년부터 길게는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다. 만약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장기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계약파기 및 개발권 환수, 패널티 부과 등이 있다. 임차권은 공공경매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고, 매매가 가능하다.

에티오피아 경제개황

구분	내용
위치	아프리카 동북부, Horn of Africa 에리트레아, 지부티, 케냐,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과 국경 접하고 있음
면적	1,104천㎢(경작 가능지: 68%, 삼림율: 3%) 한반도의 5배
인구	1억 명 (2016)
수도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New Flower의 뜻) 연평균 기온 20℃(우기에는 5~10℃까지 떨어지기도 함), 위도 9° 평균해발 2,355m로, 수도로서는 세계 제3위 고도 기록 면적: 530.14㎢(서울, 605.3㎢의 0.9배) 인구: 약 5백만명(서울, 약 1천만명의 0.5배)
언어	암하릭어(공용어), 영어 및 기타 지역부족어
GDP	800억달러(2017년)
1인당 GDP (PPP기준)	1,899달러(2017년)

구분	내용
GDP성장률	10.2%(2017년)
인플레이션	10.9%(2016년)
수출입 (2017년)	수출: 28억달러(커피, 깨, 화훼 등) 수입: 150억달러(원유, 덤프트럭, 의약품 등)
외환보유고	30억달러(2016년)
외채	235억달러(2016년)
환율	USD 1 = 27.25ETB (2018.6월 달러매수기준)

자료: EIU, IMF

에티오피아 입국시 유의사항[8)]

모든 외국인은 에티오피아 입국을 위해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황열병 예방 접종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콜레라 백신 접종 증명서 또한 에티오피아 입국 6일 전 발발 지역을 방문한 기록이 있다면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케냐와 수단을 제외한 국적의 모든 외국인은 에티오피아 외교부로부터 발행된 비자를 지참해야 하지만, 현재 40개국만 여행 비자 발급이 허용되고 있다,

※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쿠웨이트, 룩셈부르크, 마카오,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북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슬로바키아, 남아공, 대한민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미국

기타 정보

정부기관은 일주일 39시간 근무한다.(월~목요일: 8:30 a.m.~5:30 p.m, 점심시간: 12:30 p.m.~1:30 p.m., 금요일: 11:30 a.m.~1:30 p.m.)

대부분의 은행은 월~금요일 점심시간 포함 8:00 a.m.~4:00 p.m., 토요일 또한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운영한다.

상점은 대게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데, 식료품점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8) VI – Appendix, Investment guide 2014 – Ethiopian Investment Agency

요르단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요르단 경제 개관

경제 성장 과정

- 1970년대: 급격한 유가상승 속에서도 아랍 국가들의 원조 및 걸프지역 근로자 송금 확대 등으로 꾸준히 성장
- 1980년대: 대외 여건 악화와 국내 경제조정 실패 등으로 1989년 IMF의 관리체제 경험
- 1990년대: 이라크 전쟁 등 지역정세 불안이라는 악재 속에 1994년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 체결로 경제성장 동인 마련
- 2000년대: 대미 FTA체결 등 강력한 경제개혁·개방정책, 세제·투자관련 법규 개정 등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연 10% 이상의 수출신장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등 연 5% 이상의 고속성장
- 2008년부터 글로벌 경제위기로 타격을 입었고, 2011년부터 회복하던 중 시리아 내전으로 성장폭 둔화
- 2011년 초반부터 이집트 천연가스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 수입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
- 2012년 IMF로부터 경제 개혁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대기성 차관 20억 달러 수혜

○ 2015년 IS(Daesh, 이슬람국가)사태와 시리아 내전으로 대규모 시리아 난민(요르단 정부 추산 약 130만명)이 유입되면서 시리아, 이라크 국경 폐쇄로 직접 및 중계무역이 위축되면서 요르단 경제에 부정적 영향

○ 2016년 IMF로부터 경제 개혁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대기성 차관 7.23억 달러 추가 수혜

○ 2017년 8월말 요르단-이라크 국경 재개방, 2018년 10월 요르단-시리아 국경 재개방에 따라 이라크 및 시리아와의 직접·중계 무역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

○ 2018년 GCC(사우디, UAE, 쿠웨이트) 3개국이 요르단에게 약 25억 미불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동 지원이 실현되면 요르단 정부의 재정 적자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경제 구조적 특징

(1) 서비스 산업에의 의존

요르단 경제는 협소한 시장 및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서비스 산업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제조업 등 2차 산업은 20% 미만을 점유하고 있다.

* 주요산업 비중(2016년 정부 발표 기준) (* 중앙은행 연례보고서)

- 제조업: 18.5%, 농수산업: 4.2%, 광업: 3.3%, 금융·부동산: 20.4%, 운송·통신: 13.3%, 호텔·도소매: 10.6%, 정부 및 기타 서비스: 24.8%, 건설: 4.9%

(2) 만성적 적자재정 운영

요르단은 여타 중동국가와는 달리 원유·천연가스 매장량이 거의 없어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조세수입과 재외 국민의 본국송금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요르단은 세계 3위의 인산염(phosphate) 생산국이며, 가성칼리(potash) 매장량도 풍부하다.

반면, 기초 식료품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인건비, 국방·치안 및 국공채 이자 비용 등으로 정부지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재정적자 규모는 2012년에는

GDP의 10%를 기록하였다. 2012년 발생한 이집트 천연가스 공급 감소 및 중단으로 인한 재정악화는 IMF 긴급자금 공여와 보조금 감축 등 긴축정책을 낳았으며, 2013년에는 재정적자를 GDP의 8.7%로 줄였다. 2016년 이후 요르단 정부는 IMF의 확대신용공여(EEF) 프로그램에 따라 빵 보조금 폐지, 판매세 인상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요르단 정부의 재정적자는 GDP의 약 2~3% 수준이다.

(3) 대외 의존

요르단은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바, ① 해외 거주 요르단인의 국내송금액(연 평균 40억 달러), ② 관광수입(연 평균 10억 달러), ③ 외국정부로부터의 무상원조(연 평균 7억 달러 내외)로 경상수지 균형 유지하고 있다.

- 관광수입은 GDP의 7~10% 점유

* 주변국의 정세 불안으로 요르단의 관광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2016년 관광객 수가 2010년 관광객 수의 약 44% 수준으로 감소

- 외국정부로부터의 무상원조(grant)는 연 평균 6~7억 달러를 기록

최근 경제 동향

(1) 성장 및 산업 생산

요르단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2010년에는 2.3%까지 성장률이 하락한 후 회복세를 보여 2013년에는 3.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요르단 경제는 중동정세 악화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해외수요 감소에 의한 수출 감소로 어려움이 있지만, 통화확장정책과 걸프연안국(GCC)에 의해 지원된 재정을 사용한 정책들을 통해 국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2017년 경제성장이 지난 2011~15년 평균을 밑돌고 있는데, 이는 요르단 경제의 외부 수요 약화와 주변국의 경기 침체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유가 상승, 재정적자, 주변국 정세 불안 등이 2019년 이후에도 요르단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단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실질GDP성장률	2.8	3.1	2.4	2.0	2.0	2.2

* 자료원: 요르단 재무부, EIU Jordan report, IHS Markit

(2) 소비자 물가

요르단 물가는 2008년 국제 유가 급등과 유가 보조금 전면 철폐,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13.9%까지 상승했으나, 2009년에는 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과 미 달러화 강세에 따라 전년에 비해 0.7% 물가가 하락하였다.

2010년 반등세를 보이던 물가는 2011년에는 정부의 빈곤층 지원 정책과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의 효과로 다시 3.3%로 낮아졌다.

2012년에는 이집트 천연가스 공급 감소로 인한 유가상승으로 물가가 7.2%까지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유류 보조금 지급 중단 정책과 2013년 7월에 시행된 세율 증가 정책에 의한 효과로 2013년 소비자물가는 2.7%로 하락하였다.

2014년 물가상승률 또한 위 두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반영된 2.5% 를 기록했다. 수입품 가격상승과 수입의 증가로 인한 외부효과 역시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쳤다.

2015년에는 전 세계적인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요르단 물가 상승률은 -1.6%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유가 하락이 걸프지역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만큼 걸프 및 기타 해외 지역에 근무하는 요르단 근로자들의 해외 송금액 또한 2014년 대비 23% 감소하였다.
2018년 요르단 정부가 공공지출 억제와 만성적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빵 보조금 폐지, 판매세 인상, 면세 감축 등 세금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있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전년대비 증감률)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4.8	5.6	2.8	-0.9	0.04	3.3	3.8

자료: 요르단 재무부, EIU Jordan report, IHS Markit

(3) 고용

2013년 이후 시리아 난민 등의 노동시장 유입 등으로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 해소와 고용 창출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이 현 내각의 최우선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실업률 추이

(단위: %)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2.5	12.2	12.6	11.9	13.1	15.5	15.0

자료 : 요르단 재무부, EIU Jordan report (2017년은 전망치)

수출입

요르단의 수출입 및 수지 동향

(단위: JD백만,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순수출	4805.9	4,749.5	4,805.2	5,163	4,797,5	4,396	4,505
재수출	878.7	849.9	812,8	790	763,8	963	828
총수출	5684.6	5,599	5,618	5,953.2	5,561	5,359	5,333
수입	13440.2	14733.7	15,667	16,280	14,537	13,696	14,553
무역수지	-7755.6	-9,134	-11668	-10,327	-8,975	-8,337	-9,220

참고 : US$ 1 = JD 0.708
자료 : 요르단 통계청

2017년 주요 수출입 품목(HS 코드 2단위 기준)
- 수출 : 의류 및 봉제, 비료, 소금, 의약품, 소금, 석회 및 시멘트 등
- 수입 : 광물 연료, 광유 및 증류 역청 물질, 차량 및 부속품 등

우리나라 대 요르단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US$ 백만)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	1,396	1,317	1,383	849	388	647
수입	69	67	78	78	36	71
수지	1,327	1,250	1305	771	352	576

자료: 한국 무역협회

투자 동향

(1) 총 투자

2007년도 요르단 투자 규모는 총 31억4천만 달러를 기록, 2005년 중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3년간 폭발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09년 이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직접투자(FDI)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IS 세력 확장으로 인한 주변 정세 불안 및 저유가로 인한 걸프국가들의 對요르단 투자 감소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 해외직접투자(FDI) 동향

(단위: US$ 백만)

연도	투자금액
2011	1,477.4
2012	1,517.3
2013	1,809.6
2014	2,015.0
2015	1,385.8

자료: 요르단 중앙은행

한편, 요르단 투자청 자료(2014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산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총 1,448건에 13억 달러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이어 레져/리조트, 호텔, 병원, 물류/수자원/가스 및 오일, 해운/철도, 농업 순이었다.

2006년-2010년 원천국별 요르단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US$ 백만)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소계	비중(%)
사우디	792	146	128	228	200	1,494	29.1
바레인	0	414	21	303	0	738	14.4
영국	0	19	333	175	0	527	10.3
이라크	126	97	94	33	40	390	7.6
UAE	53	8	165	85	35	346	6.7
미국	30	118	6	34	12	200	3.9
쿠웨이트	94	9	2	72	14	191	3.7
카타르	0	71	2	0	0	73	1.4
인도	0	44	0	24	0	68	1.3
중국	0	44	0	0	0	44	0.9
팔레스타인	0	20	16	5	6	47	0.9
프랑스	0	0	12	0	0	12	0.2
한국	0	0	0	7	0	7	0.1
기타	96	492	339	59	8	994	19.4
소계	1,191	1,482	1,118	1,025	315	5,131	100.0

자료 : 요르단 투자청

(2) 우리나라의 대요르단 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대요르단 투자는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지만(투자 금액 기준 0.22%) 2006년부터 투자 건수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다만, 2011년에는 아랍의 봄 사태로 투자가 중지되었으나, 2012년 신고 2건, 2013년 7건을 기록하면서 투자 기조가 되살아나고 있다. 한국과 요르단은 2004년 7월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투자보장협정은 상호 투자에 대해 최혜국대우 부여, 송금의 자유 보장, 투자 분쟁 해결절차 등을 포함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요르단 투자에 대한 법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연도별 대요르단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0	3	2	1,635	2	78
2011	-	-	-	-	-
2002	1	1	71	1	71
2013	1	1	222	1	222
2014	2	1	611	2	611
2015	5	2	1,983	5	1,983
2016	2	1	3,064	4	1,997
2017	1	0	0	0	0
2018(7월)	8	0	3,025	7	2,460
합계(역대누계)	68	23	37,755	54	23,00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형태별 대요르단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현지법인	35	15	33,527	46	20,108
지점	11	1	821	1	50
지사	22	7	3,407	7	23,007
총계	68	23	37,755	54	23,00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업종별 대요르단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업종	신고건수	신고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총계		46	20	28,958	36	15,957
1980	사업시설관리	1	0	0	0	0
1981	건설업	1	0	0	0	0
1991	제조업	1	1	1,054	1	1,054
	사업시설관리	2	1	0	1	0
1992	제조업	1	1	1,415	1	1,415

연도	업종	신고건수	신고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1993	운수업	1	1	2,200	1	288
1996	제조업	1	0	6,000	0	0
1997	제조업	0	0	0	0	0
1998	제조업	1	1	271	1	271
1999	운수업	1	1	70	1	63
2000	제조업	1	1	2,000	1	990
2001	제조업	1	0	1,000	5	2,000
2002	제조업	2	0	3,000	5	2,919
2003	제조업	2	1	1,746	5	314
	사업시설관리	1	0	0	0	0
2004	도매 및 소매업	1	1	580	1	580
2006	제조업	2	1	52	1	52
	도매 및 소매업	0	0	0	0	0
2007	도매 및 소매업	1	1	1,000	3	212
2008	제조업	0	0	0	0	0
	건설업	1	0	7	0	0
	도매 및 소매업	1	1	5,000	1	5,000
2009	제조업	2	0	256	0	0
	전기,가스,수도	1	1	320	1	320
	시설관리	2	0	75	0	0
2010	제조업	1	0	120	0	0
	건설업	3	2	1,635	2	78
	도매 및 소매업	1	0	91	0	0
	사업시설관리	1	0	0	0	0
2012	광업	1	1	71	1	71
	기타	1	0	0	0	0
2013	플랜트건설업	1	1	222	1	222
	제조업	1	0	300	0	0
	건설업	1	0	0	0	0
	운수업	1	1	50	1	50
	송전, 배전업	1	1	28	1	7
	기타	2	0	279	0	0
2014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	1	400	1	400
	건설업	1	0	211	1	211
2015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2	2	310	2	310
	건설업	3	0	1673	3	1673
	기타 발전업	1	1	241	1	240

연도	업종	신고건수	신고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송전 및 배전업	1	0	2823	1	560
2016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2	1	3064	4	1997
2017	제조업	1	0	0	0	0
201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8	0	3,025	7	2,46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수입 규제 제도

개관

요르단은 2000년 WTO 가입 이후 2001년 수출입 법령(Imports and Exports Law No.21)을 WTO 규정에 따라 재정비, 원칙적으로 수입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군수품, 마약류 및 정부 소유 공기업의 수입독점 품목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을 어떠한 제약도 없이 요르단에 수출할 수 있다.

정기적인 수출입공고 제도가 없으며 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건별 지침이 발표되나 사실상 수입금지 품목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 8월 1일부로 연식 5년 이상의 중고차는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주요 수입 제한 또는 금지 품목은 ①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 ②폐플라스틱, ③디젤류 승용차, ④독극물 및 반보건성 제품, ⑥원유 및 정제유, ⑦시멘트, ⑧화약 및 폭발물, ⑨중고타이어, ⑩무기 등 방산제품이다.
지속적인 대외개방 및 무역·투자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여 경제 분야에서는 대부분 국제기준에 부합되며 EU와의 제휴협정(1998), 아랍자유무역지대협정(1998), WTO 가입(2000), 요르단-미국 FTA 체결(2001), 아랍자유무역지대 가입(2005) 등으로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후로도 아가디르 협정(Agadir FTA, 요르단-튀니지-이집트-모로코-팔레스타인 등이 참여 중)에 참여하고, 이라크, 터키 등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동 중개무

역지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다만, 요르단-터키 FTA는 2018년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수입관련 제도

(1) 원산지 규정

요르단 정부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바, 한국 내에서 수출하는 경우 주한 요르단 대사관(*2010년 10월 상주 대사관 개설)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2) 세이프 가드

2002년 National Production Protection Law No. 50 발동 이후 요르단의 세이프가드 발동실적은 카세트테이프, 파스타, 위생복 3회로 미미하였다. 다만, 2017년 7월 알루미늄바(HS Code 7604)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2020년 5월까지 진행하기로 하였다.

(3) 반덤핑, 상계관세

2003년 반덤핑 및 보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실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발동실적은 없다.

(4) 환경관련 규제

2007년 1월 1일부터 유해물질을 정화시키는 촉매 변환장치(catalytic converter)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관세제도

1997년 3월 2일부터 통합 관세법을 발효하여 관세를 단일화하고 관세율을 인하하는 수입 관리 정책을 추진하였다. 품목별로 0%, 5%, 10%, 15%, 20%, 25%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7년 7월 전 품목의 가중평균 세율

은 13% 수준이다. 2000년 4월 WTO 가입에 따라 최고 수입관세율을 35%에서 30%로, 2005년에는 25%로 재인하하였고 WTO와의 관세양허 일정에 의해 2010년까지 담배, 술 등 특별 소비용품을 제외하고 관세율을 20%까지 인하하였다.

수출용 원자재, 생산요소인 원부자재, 의료용품, 긴급 생필품의 경우 면세되며, 일반 소비 용품에는 보통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입 상품에 대해서 수입관세가 부과된 후 일반 판매세(General Sales Tax)가 부가세 형식으로 부과된다.

- 부과방식은 (CIF 수입가+수입관세)×일반판매세율
- 과거 일반판매세율은 10%였으나 99년부터 관세인하로 인해 야기될 재정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16%로 인상
- 다만, 대부분 농산품에는 10%의 판매세가 적용되고 일부 농산품에 대해서는 판매세 면제

요르단은 극히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서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고 64%, 주류는 20%, 담배는 10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한편 특별한 통관절차가 없으며 국제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일 이내에 통관이 완료된다.

영사인증제도

(1) 개요

요르단은 해외의 수출업체들이 요르단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에 상업송장(Invoice)과 원산지 증명 등 무역관련 서류에 대해 국내 상공 회의소 인증을 받은 후 각국 주재 요르단 대사관에서 별도의 영사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제도 도입 배경

1940년대 초반, 본격적인 무역활동이 시작되면서 요르단 수입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혹은 작성된 서류와 다른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제품 수입 전에 상업 송장이 실제와 동일한지 여부와 함께 송장에 기재된 서명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1947년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3) 제도 운영 주체

재무부 관세국에서 운영을 총괄하며, 실제 수수료 징수 업무는 해외 소재 요르단 대사관(영사관)에서 집행한다.

(4) 적용 범위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전체 수입품

(5) 수수료 부과 기준

법령 제20호(관세법) 제31조 및 영사 수수료 징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WTO 회원국 : 송장 건별로 수수료 부과 (일반 상업송장의 경우 JD 21 수준)
- WTO 비회원국 : 송장 금액별로 수수료 부과

인증 서류 없이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재량으로 물건 가액의 2%를 넘지 않는 범위 내 현금이나, 4% 범위 내 유가증권 예약을 통해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인증 서류 제출 시에는 60일 이내에 예탁금을 환불 조치 할 수 있다.

(6) 기타 조항

2005년 1월 1일부 범아랍자유무역협정 발효와 함께 협정가입 16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영사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영사인증은 수출업자가 소재한 국가의 요르단대사관(영사관)에서 받아야 하며, 한국에서는 주한요르단대사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입 검사제도

(1) 개요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은 2007년 8월 1일부 발효된 The Directorate of Testing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운영 목적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요르단 자체 혹은 국제 표준규정 혹은 라벨링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 적용 범위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4) 검사 방법

요르단 수입 세관에서의 샘플링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 진행 방법은 수입품 샘플 채취→소정의 검사소에서 검사→수입허가 혹은 불허 판정, 통보 등의 순서

(5) 운영 주체

○ JSMO (Jordan Standard and Metrology Organization)

- Call center : 962-6-550-6060
- E-Mali : jsmo@jsmo.gov.jo

(6) 검사 절차

○ 요르단 자제 검사기준이 없을 때

- 라벨링 기준을 적용

○ 요르단 자체 혹은 국제 기준이 있을 때

- 검사 결과 등 소정의 서류 구비 시: 라벨링,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소비자 혼동 야기 가능성이 등이 없을 경우 수입 허가
- JSMO는 2018년부터 ISO 라벨 부착 상품의 수입 통관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행정·기술적 문제로 이행을 유예한 상황
- 검사 결과 등 소정의 서류 미 구비 시: 샘플 테스트 후 수입 승인여부 결정
- 요르단 내에서 검사 불가능 시: 샘플과 라벨링 정보 상호 비교 후 수입승인 여부 결정

지식재산권 보호

개관

요르단은 국제지식재산보호기구(WIPO)에 가입하여 지식재산권 법령은 구비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이 엄격하지 못하여 많은 모조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데,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은 거의 대부분 복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특허권

특허관련 파리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전반적인 집행은 국제기준에 미달한다. 특허 및 디자인법(Patents and Design Law)에 의해 특허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출원주의를 채택한다. 인정된 특허는 ①특허인정과 함께 등록비를 납부하고, ②매 4년마다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를 받으며, 특허권은 관보에 게재되어 제3자가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경우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다.

상표권

상표법(Trademark Law)에 의해 규정되며, 출원주의, 관보게재, 이해관계자 이의제기 및 의장권 인정 등은 특허권 관련제도와 동일하다. 단,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서비스 관련 상표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저작권

1992년 발효된 Copyright Law No. 22가 기본법으로서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간 보호된다. 공동저작물 경우, 공저자 중 마지막 생존자가 사망한 이후 50년간 인정된다.

문화부의 저작물 발간 혹은 재발간 권고 이후 6개월 이내에 발간 또는 재발간이 없을 경우 문화부에서 소정액을 보상한 후 관련 저작물을 발간 또는 재발간할 수 있다.

투자관련 제도

투자환경

요르단 정부는 현 압둘라 국왕 취임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경제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요르단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기업들에게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요르단은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비즈니스 하기 쉬운 국가 순위(World Bank's Ease of Doing Business 2017 Index)에서 57.30점을 획득하며 189개국 중 118번째를 기록하였다.

2017년 요르단은 부분개각을 통해 Muhannad Shehadeh 전 왕실 경제수석을 투자 담당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 for Investment Affairs) 겸 투자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지난 20년간 요르단 정부는 외국 투자자의 소유권 제한 철폐, 각종 인센티브 제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호의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에너지, 대중교통, 항공 등 주요 인프라 개발사업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함으로써 요르단 국영기업과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영기업의 역할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공공민간파트너십(PPP)을 통해 철도, 정유, 해수 담수화와 같은 분야에서도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투자 환경 장·단점 비교

장점	단점
○ 1995년 투자촉진법에 의한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 지역에 따라 최고 20년간 법인세 면제 ○ 투자 규제 분야 대폭 완화 – 주식시장, 보험, 은행, 통신, 농업부문 투자에 대해 50% 실링 (제한) 해제 – 최소 투자금액 한도 인하: JD 100,000 → JD 50,000 ○ 지정학적 위치 –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는 관문 – 홍해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북아프리카를 연결 ○ 정치적 안정과 뛰어난 인프라 – QIZ, Free-zone ○ 양질의 노동력 – 낮은 문맹률(9%), 전 인구의 17%가 고등 교육 이수, 낮은 임금수준 ○ 개방, 자유시장 주의 지향 – 미국 등 20여 개국과 FTA 체결	○ 관료주의, red tape, 제도 및 법 집행과 정의 불투명 등으로 인한 "Hidden Cost"가 곳곳에 상존 ○ 좁은 국토와 적은 인구(약 1천만)로 인한 자체 시장 규모 미미 ○ 전문 분야에서의 숙련공 확보 미흡 ○ 노동자 중심의 노동법 – 장기 휴가, 병가, 소송 등 ○ 라마단(1달간), 종교휴일(이드 등) 비근로 공휴일과 종교 휴일 다수 ○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 온정주의, 부족국가 전통으로 인한 낮은 근로의욕 – 여성 노동 이용의 한계(결혼 후 직장 생활 계속 애로) ○ 세계 2위의 물 부족 국가로 선정될 정도의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 – 제한 급수로 제조업 투자 활동 제약 ○ 산업 기반 미흡으로 연관 산업 인프라 취약

주요 투자법 내용

(1) 투자촉진법 개요

1995년 제정 후 2000년 일부 개정하고 2014년 재개정 되었다. 2000년 상

반기 IT산업, 은행, 보험, 통신 등 분야에 외국인의 투자지분을 100% 허용하였고, 2014년 10월 개정 투자유치 촉진법(Investment Law)을 발효시키며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투자 관련 대표기구로는 총리실 직속의 투자위원회(Jordan Investment Commission)가 2015년 4월 발족되었다. JIC의 경우 기존의 One-stop shop을 대체하는 기구로서 투자자 인센티브 개선, 투자 투명성 확보 등 투자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투자촉진법의 주요내용

○ 외국인 투자가의 권리

- 외국인도 법에 따라 요르단 내 투자회사의 완전소유, 동업 및 지분참여가 가능
- 법적으로 하자 없이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는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계속 보장
- 경영활동에 필요한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당국에 필요사항 요청 가능
- 공공이익을 제외하고는 투자가의 재산을 수용할 수 없으며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도 투자가에 대해 정당한 보상
- 외국인 투자가는 투자자금의 원금회수나 과실의 자유로운 해외송금이 가능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봉급도 송금보장

○ 외국인 투자가의 의무

- 투자목적으로 고정자산을 확정하고 장비를 갖추면 “투자진흥공사”에 영업개시일 또는 생산 개시 일을 서면으로 제출
- 투자목적에 투입된 고정자산 목록의 상세한 기록과 요르단 공인회계사에 의한 정기적인 회계감사 수감
- 투자에 투입된 자산 및 인원 등에 대한 정보나 서류에 대한 투자진흥공사 요청 시 제공의무

○ 투자자산의 권리변동

- 투자자산에 대한 면세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한 경우도 후임자가 전임자

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바, 면세기간은 잔여 기간까지 적용

- 투자가는 구매가의 계속 사용을 조건으로 "투자진흥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면세 장비의 판매나 이전 및 재수출이 가능
- 면세장비의 제세부담 후 투자진흥위원회에 통보하고 타인에게 매각 가능
- 은행대출을 위해 면세자산의 담보가 가능하나 투자진흥공사가 동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기 위해 장부열람 요청시 응할 의무

○ 분쟁해결

- 투자가와 요르단 정부기관과의 분쟁은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
- 분쟁발생 후 6개월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에 해결 의뢰 가능

(3) 투자진출 절차

○ 비즈니스 라이센스 취득 절차

- 회사 등록 및 설립: 회사 등록 및 설립은 JIC의 투자창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회사 유형(개별, 합작법인, 지사 등)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비용 상이
- 지역(Zone) 및 규제 승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진 현장에 대한 승인을 얻는 것
- 분야 승인: 각 경제 활동 관련 법규 및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승인 절차로 활동분야에 따라 승인 조건 상이
- 건설 허가: 건설 허가증은 당국이 설계 및 도면을 확인 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발급
- 점유 허가: 건물 허가 및 도면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건물 검사 후 점유 허가 발급
- 직업 면허증: 직업 면허증은 지자체 경계 내 또는 그 외 지역에서의 경제활동 허가를 위해 발급

○ 변호사의 고용 : 외국인 투자자는 법률에 의하여 투자등록 신청으로 부터 3개월간 변호사를 고용토록 되어 있으며 동 변호사를 통해 투자 진출 절차 완료(진출 완료 이후로도 현지 변호사 고용 의무 지속)

○ 투자등록 승인 : 산업통상부가 투자자금의 적정성, 투자분야의 적합성 등을 심사한 후 허가

○ 상호등록 : 산업통상조달부

○ 회원등록 : 공업회의소 회원 등록

○ 지방행정기관에의 등록 : 공장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회사설립 등록

○ 거주증 취득 : 외교부

○ 노동허가서 취득 : 노동부

(4) 투자 관련 세제 정보

○ 법인세

- 요르단 법인세는 평균 20%이며 운영형태 및 업종에 따라 상이

구분	세율	비고
은행	35%	-
주요 기업	24%	통신, 전력, 광산, 보험 및 재보험, 중개 회사 및 금융리스를 실무하는 법인 등
산업 분야	14%	-
기타 모든 법인	20%	-

○ 원천징수세

구분	세율	비고
이자	10%	비거주자에게 지불된 이자에 부과
로열티	10%	비거주자에게 지불한 로열티에 부과
기술 서비스 수수료	10%	비거주자에게 지불한 기술 서비스 수수료에 부과
관리비	10%	비거주자에게 지불한 관리비에 부과

○ 기타 법인세

구분	세율	비고
급여	7-20%	
부동산세	15%	연간 임차료에 부과
사회보장세	14.25%	월 급여에 따른 사회 보장세 부과
인지세	0.3-0.6%	날인 계약서에 부과

(5) 투자자에 대한 혜택

요르단 정부는 자유지대(Free Zone), 개발지구(Development Zone), 그 외 지역의 투자에 대해 상이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2014년 투자유치 촉진법, 2015년 투자 인센티브 제도, 판매세법, 소득세법, 투자위원회의 규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 세부내용

경제 분야	혜택
모든 분야	- 정부에서 설정한 발전 필요 지구에서 10년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50%의 법인세(CIT) 감면 혜택 제공
특정 경제 활동	- 특정 경제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및 생산투입물에 대한 상품용역세(GST) 면제 혜택 제공
산업 및 수공예 분야	- 특정 품목에 대하여 관세 면제 혜택 제공
ICT 분야	- 특정 품목에 대하여 관세 면제 혜택 제공 - 특정 서비스, 특정 수입품, 현지 구매 품목에 대하여 상품용역세(GST) 면제 혜택 제공 - 5%의 법인세 감면 혜택 제공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	- 재생 가능 에너지원, 에너지 보존 시스템, 장비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 면제 - 재생 가능 에너지원, 에너지 보존 시스템, 장비에 관하여 상품용역세(GST) 0% 부과

○ 자유지대(Free zone) 및 개발지구(Development zone) 혜택

- 자유지대 투자자에 대한 혜택(요르단의 자유지대 숫자는 약 40~50개)

구분	비고
법인세 (CIT)	자유지대 내에서 상품의 수출, 운송 무역, 물품의 판매,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한 법인세 면제
상품용역세 (GST)	자유지대 내에서 판매되는 서비스 및 소비되거나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GST 면제
관세	자유 지역에서 수입 된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자유 무역 지역에 있는 회사가 다른 국가로 수출 한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토지세	자유 지대에 설립 된 건물 및 건축물에 대한 토지 면세
건물세	자유 지대에 설립 된 건물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 면세

- 개발지구 투자자에 대한 혜택

구분	비고
법인세 (CIT)	개발 구역 내의 경제 활동 및 제조 활동을 하는 경우 법인세 5%로 감소 또는 개발 지역 내에서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상품용역세 (GST)	개발 구역 내의 회사가 구매 또는 수입 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GST 면제 또는 개발 구역 내에서 생산되고 타 지역으로 판매된 상품 및 서비스에 GST 7%의 감소
관세	개발 지구에서 수입 된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 최소개발지역(Least Developed Area) 투자자에 대한 혜택

구분	비고	소득세 감면
A지역	Al-Aghwar Al Shamaliyyeh District, Deir Alla District, Shuna al-Janubiyya District, AlAghwar al- Janubiyya District, Al Rowashed District, Badiah Shamaliyah District, Badiah Gharbiyah District, Al-Azraq, Al Jizah District (excluding the boarders of Jizah Municipality), Muwaqqar, Aqaba Governorate, (excluding ASEZ)	100%
B지역	Tafilah, Kerak, Ajloun	80%
C지역	Jerash, Mafraq, Irbid (except Greater Irbid Municipality boarders)	60%
D지역	Madaba, Balqa, the Capital (except for the Greater Amman Municipality), Zarqa (except for Zarqa and Rusaifa Municipalities)	40%

(6) 투자 장려/제한/금지분야

장려분야

분야	산업 상황
전자 및 가정용기기	- 이라크, 시리아가 주요 타깃 시장 - 2005년 8월, IEC(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mission) 표준 규정 채택
자동차 및 부품	- 2개의 자동차 조립공장 운영 중 (버스와 군용 사륜구동 차량) - 8개의 부품공장 (라디에이터, 배터리, 유리, 필터 등) 운영 중
섬유 및 의류	- 고용인력 5만 명, 수출 10억 달러 - 미국 등 주요시장에 무관세 수출 - 요르단에서 소싱 중인 주요 바이어 : JC Penney, Levi's, Liz Claiborne, Gap, Gloria, Vanderbilt, Victoria's Secret 등
관광	- 2014 기준 관광객 540만 명 - 기독교 성지, 와디럼, 사해, Petra 등 세계적인 관광지 다수 - 의료 및 국제회의와의 연계 관광 확대 전망
제약	- 총 투자규모 4억 달러 - 아랍 최고의 수출규모 - 16개 제약회사에서 5,200명의 우수인력 고용 - 훌륭한 인프라 (약학 전문학교 8개, 연구소 4개, 병원 96개) - 연구개발 투자 장려 (Clinical Trial Law)
의료	- 아랍국가 중 최고의 의료 경쟁력 - 최우수 분야 : 심장외과, 콩팥이식, 안과 등 - 의료 관광객 수 약 25만명(아랍 국가 중 1위, 세계 5위)
정보통신	- 220개의 기업에서 1만 9천 명 고용 - IT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2004년 통신업종 완전 자유화 - 투자유망 분야 : Call Center, Education platforms, e-learning, Arabic language content, Animation

○ 제한 및 금지 분야

- 100% 허용업종 : IT산업, 리스, 은행금융서비스, 병원, 호텔, 통신, 보험, 환경, 케이터링, 선박소유, 비행기 보수유지 분야
- 50% 허용업종 : 건설, 도소매, 운송, 폐기물 처리, 수출입서비스, 환전, 식당, 광고 서비스 등
-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 보안 및 사설탐정, 건축용 석재 및 골재 채취, 통관 서비스, 택시/트럭/버스 등을 포함한 여객 및 화물의 육상 운송 서비스

(7) 주요 투자 장애요인

○ 물품대금 회수불능 문제

- 대금결제를 수표로 하는 경우, 수표하단 등 잘 안 보이는 부분에 “차기물품 도착 시 대금 지불” 등 이해가 안 되는 아랍어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으며, 동 수표를 받고 물품을 인계해 주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없고, 재판에서도 대부분 무시

- 또한 상당기간 대금을 잘 지불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외상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발생

- 계약 시 또는 대금 결제 시 변호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거나 공관 및 KOTRA 등에 확인하는 절차 필요

○ 노무관리의 어려움

- 요르단의 노동법은 유럽의 관계노동법을 준용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은 상태로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빈발

(8) 외국인의 요르단 내 시설 및 자산 취득

○ 군사적 목적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자산 취득 이외에는 내국인 대우를 부여

-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외국인의 자국내 법률이 요르단 인들의 현지 자산 취득에 제한이 없는 한 비 아랍계 외국인들도 요르단 내에서 자산 취득 및 리스 행위를 가능하도록 허용

○ 원칙적으로 비 아랍계 외국인은 농업용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외국인이 농업부분에 투자하여 요르단 회사로 등록할 경우에는 농지소유 등 모든 면에서 내국민 대우를 부여

경쟁정책

과거 요르단 국영 통신회사 등 대부분의 국영기업에 독과점적인 지위가 보장되어 타 기업들의 진입장벽이 되어 왔으나 요르단 국영 통신회사의 경우 2005년, 여타 국영기업들의 경우도 대부분 2010년까지 민영화를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상실하였다.

외환관리 및 조달

(1) 개관

외환의 거래와 송금, 외국기업의 현지 자금 조달 등에 특별한 제약은 없다.

(2) 금융 관련 제도

요르단의 인가 은행 수는 2017년 기준 총 25개로 국내 상업은행(13), 이슬람계 은행(3), 외국계 은행(9)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프라인 점포 수는 818개이다.

2017년 기준 요르단 인가 은행의 총 자산규모는 약 692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자본금 규모 기준 주요 은행은 Housing Bank for Trade and Finance(114.7억 달러), Jordan Islamic Bank(65.7억 달러), Arab Bank(48.6억 달러)이다.

2001년 국내 자본시장 육성법이 마련된 이래 mutual fund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경직된 금리정책과 2차 금융시장 미발달로 회사채 시장의 발달 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3) 현지금융 및 과실 송금

국내은행을 통한 대출 및 financing의 경우 내외국계 기업 간 차별은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 들어 중앙은행의 민간은행 대출 규제도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요르단 내 외국기업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투자와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송금하며 중앙은행에 통보 없이 투자 관련 자금 이체 및 이관할 수 있다.

노무관리

(1) 개관

1996년 노동법은 유럽의 관계 노동법을 준용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높은 상태이며 이러한 근로자 위주의 노동법으로 인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빈발하다.

(2) 노동법의 주요 내용

요르단 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고용시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대 채용 외국 인력은 전체 근로자의 30%(QIZ의 경우 50%)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1년 단위로 노동허가를 갱신해야 하고, 불법고용기업에 대해서는 월 50~100JD (약 141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정 고용시간은 주 48시간이며, 평일 125%, 휴일 150%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 최저근로 가능 연령은 만 16세이다. 인건비는 급여, 사회보장세(기본급여의 18.75%로서 고용주 12.25%, 근로자 6.5% 분납), 의료보험으로 구성된다.

유망 분야 시장 동향

건설 플랜트

2017년 기준 요르단의 건설 및 기계 플랜트 총 시장 규모는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하여 2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요르단의 건설 및 플랜트 시장은 자체 자금보다는 외부자금에 의한 인프라 건설 및 공공 플랜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이는 중동 내에서 흔치 않은 비산유국으로서,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건설 및 플랜트 발주 예산의 대부분이 국제기구 혹은 외국 정부의 차관, 원조자금, BOT 발주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발주되는 제조업 플랜트의 경우, 요르단의 주요산업 중 하나인 인광과 가성칼리, 시멘트, 비료 등 광업과 화학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시설 현대화 및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전력과 유류 저장용 탱크, 항만시설 확충공사 등의 발주도 늘어나고 있다.

중소형 규모의 제조업 플랜트 시장은 미미한데, 이는 2016년 기준 요르단의 제조업 비중이 GDP의 18%에 이르나 제조업 기반이 빈약하기 때문에 제조업 플랜트 시장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의 경우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섬유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건설된 섬유 생산 공장 자동화 설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설 붐을 반영하여 시멘트 프로젝트 발주도 이어지고 있다.

자원 · 광물 개발

요르단은 전 국토의 75%가 사막 또는 준사막 지역으로서 중동의 대표적인 비산유국이다.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요르단 원유 생산량은 300t 정도이고 천연가스 생산량은 약 3.6 Bcf를 기록했다. 하지만 두 자원의 생산량은 국내 소비량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인데, 2017년 요르단의 원유 및 천연가스 총 소비량에 대한 생산량의 비중은 6%였다. 이에 따라, 요르단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광물자원은 인광(Phosphate)과 가성칼리(Potash)이며, 최근에는 오일셸(암반유 약 600~700억 톤) 및 우라늄(확인된 매장량 기준 약 5만 톤)도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추정하는 요르단의 오일셸 매장량 규모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현 원유 매장량의 3배에 이르며, 미국의 현행 원유 소비량을 고려할 때 향후 4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매장량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세계원자력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요르단에 매장된 우라늄 규모는 5만 톤 정도이나, 요르단 정부는 잠재 우라늄 매장량이 약 1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발간한 International Water Poverty Index(IWPI)에 따르면, 요르단은 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세계 주요 물 부족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2015년 요르단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요르단의 연간 물 소비량은 약 1,400백만 큐빅미터이지만, 연간 물 생산량은 850백만 큐빅미터에 불과하여 연 550백만 큐빅미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인구 증가 및 관광 개발 등으로 향후 2020년까지 연간 물 소비량은 1,665백만 큐빅미터 이상까지 증가할 전망이나 공급은 1,276백만 큐빅미터에 그칠 것으로 전망, 향후 요르단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물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요르단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과 함께 홍해-사해 담수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09년 시작된 디시(Disi)-암만 Water Conveyor 건설 프로젝트는 2013년 완료되어 현재 관련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홍해-사해 프로젝트는 애초 50억 달러가 넘는 거대프로젝트로 추진되어 왔으나 자금난으로 인해 진척이 더딘 실정이다. 이에 요르단 정부는 사업 규모를 줄여 10억 달러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해수 담수화 시설, 수로 관로 건설, 수력 발전소 건설, 지역개발 사업을 포함하는 종합 개발 프로젝트로서 요르단이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주사업자(Master Developer)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디시-암만 수자원 운송 프로젝트는 총 11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공사로서 터키의 Gama Energy가 수주했다(2009년 6월 공사 개시, 2013년 7월 완공).

이외에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MEMR)는 최근 발표한 '중장기에너지 전략계획'에서 오일셸 발굴, 원자력발전, 송배전망 확대 등의 사업을 통해 향후 2020년까지 에너지 분야에 총 180억 달러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전체 에너지원 중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분별 투자예상 금액

(2007-2020년, 단위 : 백만 달러)

부문	투자 예상금액	부문	투자예상 금액
Power Sector	4,800-5,800	Oil Shale Exploration	1,400-3,800
Oil Sector	3,400	Renewable Energy	1,400-2,100
Natural Gas	2,400	Improving Efficiency of Energy Consumption	80-150

요르단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최근 몇 년 동안 9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요르단 정부는 다양한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61%까지 낮출 계획을 하고 있다.

최근 주요 한국 업체 진출 동향

개 요

우리나라의 요르단 건설·플랜트 시장진출은 1974년 한보건설의 진출로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초반에는 건설 진출 붐을 이루었으나 중반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시리아 및 이라크 시장진출 교두보로서 요르단 시장에 대한 우리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06년 한국의 대요르단 수출 규모가 약 361백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약 558백만 달러로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평균 수출 규모는 638백만 달러 수준이다.

주요 진출 현황

(1) 발전 분야

○ 알 카트라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한전)

- 2008년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2012년 2월 준공
- 4.5억 달러가 투입된 373MW 규모의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 한전이 80% 지분투자, Xenel(사우디)이 컨소시엄 참여
- IPP 사업으로 완공 후 25년간 전력 판매

○ 삼라 가스터빈발전소 3단계 프로젝트(한화)

- 지난 2009년 요르단 Samra 전력공사가 발주
- 사업비로 2억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2012년 2월에 285MW 규모의 2개 가스터빈 발전소 준공

○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대우건설)

- 우리나라 최초 연구용 원자로 수주
-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우건설이 컨소시움으로 참여
- 2016년 12월 5MW급 연구용 원자로 준공

○ 마안 태양광 발전소(한화)

- 2014년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
- 1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 알 마나커 중유화력발전소(한전)

- 2012년 수주하여 2015년 5월 완공
- 약 8억 달러가 투입된 573MW 규모의 중유화력발전소
- 한전이 60%의 지분투자 및 사업 전 과정을 주도하였으며, 미쓰비시 상사(일본), 바르찔라(핀란드) 등이 컨소시엄 참여
- IPP 사업으로 완공 후 25년간 전력 판매

○ 사해 변전소 프로젝트 사무소 개설(효성 중공업)

- 요르단 전력청(NEPCO)이 발주한 변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2015년 7월에 수주

○ 푸제이즈 풍력발전소(한전)

- 2017년 2월에 착공하여 2018년 10월에 가동 예정
- 89.1MW 규모의 풍력 발전소 건설사업
- 한국기업 최초로 중동지역에서 풍력 발전 전력판매계약(PPA)을 체결한 사례로 20년간 예상 매출액은 약 5억 7천만 달러

○ 타필라 풍력발전소(남부발전, 대림에너지)

- 2017년 하반기 착공하여 2019년부터 가동 예정
- 총 사업비는 약 1억 달러
- 51.75MW 풍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2) 건설·플랜트 분야

○ 알 카트라나 시멘트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STX, 2천만 달러 규모)

- STX 중공업이 2008년에 수주하여 2012년에 완공

○ 요르단 정유공장 LPG 저장 탱크 건설(롯데, 4천만 달러 규모)

- 롯데건설이 수주하여, 2011년 완공

○ MEC 가전제품 공장건설 프로젝트(대우전자, 8천만 달러 규모)

- 대우전자 및 협력업체들이 생산설비 및 기자재 등 공급 예정

(3) 하수처리 분야

○ 암만 남부 하수처리 시설 건설(코오롱, 1억 달러 규모)

- 코오롱이 2008년 5월 선정되어 2015년 10월 준공

2018년 10월 기준 요르단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 현황

기업명	형태	진출 연도	기타
LG전자	법인	1991	가전 판매
삼성전자	법인	1992	가전 판매
한전 QEPC	법인	2009	발전소 건설 및 운영
한전 AAEPC	법인	2012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남부발전	법인	2009	발전소 운영
한전 FWPC	법인	2015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대한풍력발전	법인	2006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코오롱글로벌	법인	2001	하수처리시설 건설
대우건설	법인	2012	연구용 원자로 건설
한전KPS	지사	2013	발전소 운영
LG화학(구LG생명과학)	지사	2010	의약품
포스코대우	사무소	1982	종합품목
대우전자	사무소	1998	가전 생산 및 판매

이라크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경제 개관

이라크는 1991년 걸프전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제조업이 육성되었으나, 걸프전 이후 UN의 경제제재로 인해 산업부문 역시 제재를 받아 제조업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기존 산업마저 파괴되어 석유산업 및 농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아울러 2014년 발생한 ISIS 사태와 국제유가 하락 (소위 이중 충격; "dual shocks") 등은 국방비 과다 지출 및 석유 판매수입 감소를 통해 이라크 정부재정 악화와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해 왔다. 2014년 이래 비석유 분야 경제는 21.6% 축소(세계은행 분석)되었으며, 16.11월 OPEC 회원국간의 감산합의(이라크: 일산 435.1만 배럴 이하) 이행에 따라 원유 생산도 줄어들어 2017년에는 마이너스 성장(-0.8%,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추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라크 내 ISIS 세력 축출(2017년 12월 전쟁 승리 선언) 및 2017년 하반기 이후 국제 유가 회복 기조 등에 힘입어 최근 이라크의 재정, 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가 일부 개선되는 중이다. 2018년 이라크 재정은 근 5년간 처음으로 흑자(GDP 대비 2.7%)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EIU), 경제성장률은 1.5%일 것으로 추정(IMF 평가)되고 있다. EIU는 OPEC 감산합의 종료(2018년 말)에 따른 이라크 원유 생산 증가, 본격적인 재건 시장 활성화 전망 등에 따라, 향후 이라크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19-23년간 평균 GDP 증가율을 3.1%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재건

사업을 위한 지출 증대 및 쿠웨이트 전쟁배상금 재개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도 흑자로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라크는 베네주엘라, 사우디, 캐나다, 이란에 이어 세계 5위의 원유매장국(1,472억 배럴, 세계점유율 8.8%)으로[9] 이라크 정세가 안정될 경우 매우 큰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정책

2003년 이라크전쟁 및 2014년 ISIS 발호 등 지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사회 인프라가 철저하게 붕괴됨에 따라, 이라크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석유가스 자원개발 및 전력, 상하수도, 의료, 주택 등 인프라 복구 등을 위한 경제개발 정책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및 수도의 심각한 부족사태 등 기본 인프라 결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일반국민의 생활의 질 하락을 초래함은 물론, 안정적 경제개발 등에도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이라크 2018-2022년 국가개발계획 발표를 통해 전쟁으로 파괴된 국토 재건 및 향후 발전 계획을 제시했다. 동 계획은 2018-2022간 예상 재정수입으로 총 약 3,722.5억 미국달러 (석유판매 수입 3,132억 미국달러 및 직접간세 590.5억 미국달러)을 추산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7.0%의 GDP 성장률 달성 목표(석유 부문 7.5%, 비석유 부문은 6.1%)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동 성장률 달성을 위해 5년간 총 약 1,867억 미국달러의 투자(공적, 사적)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문별 투자 비중: 석유 38.4%, 교통 및 통신 17.9%, 서비스 16.9%, 전력 및 수도 9.2%, 건축 5.5% 등). 다양한 재건 분야 중 이라크 정부는 특히 주택 건설, 교육 (학교 재건 등), 보건 분야 개발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목하고, 이 밖에도 금융 및 은행 부문, 인간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9) http://www.opec.org/opec_web/en/about_us/164.htm,
http://www.opec.org/opec_web/en/data_graphs/330.htm

한편, 이라크는 2003년 미국침공 이전까지 바트당 이념에 의거하여 중앙계획식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운용해 온 바, 앞에서 언급한 경제개발정책의 틀 안에서 이를 어떻게 민간위주의 경제체제로 이행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이다. 2003년 이후 들어선 연합국 임시행정처(CPA)는 외국인투자유치와 민영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인세율을 45%에서 15%로 낮추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지만, 경제 이외 치안, 국방 등 선결당면과제에 부딪히면서, 제대로 된 자유화를 완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CPA가 추진했던 정책을 이어 받아 후속 이라크 정부 역시 실업 등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을 인정, 2006년 투자법(Investment Law)을 제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치 및 사회 여건 상 석유 등의 일부 핵심자원 개발에 대한 일부 외국인투자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운 실정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8년 2월 쿠웨이트에서 개최된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국제회의(우리나라 등 76개국 및 유관 국제기구, NGO, 민간기업 등 참여)에서 이라크 정부 등 주최측은 이라크 재건을 위해 향후 10년간 총 880억 미국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민간투자 등 민간부문의 참여가 이라크 재건, 개발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불안한 치안 여건 개선 이외에도 이라크 행정상 만연한 관료주의적 행태 개선, 부패 척결, 선진적 은행 부문 도입 등 다양한 투자 장애 요소 해소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향후 관련 동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주요 경제지표

구분	지표 (단위)	2014	2015	2016	2017
대내 경제	GDP(경상가격, US$백만)	234,648	179,640	171,489	196,883
	GDP(경상가격, ID십억)	274	210	203	234
	실질경제성장률(%)	0.7	4.8	11.0	-0.8
	1인당 GDP(PPP기준, US$)	15,630	16,049	17,517	17,199
	이자율(연평균)	6.0	6.0	6.0	**
	소비자물가상승률(%)	2.2	-2.3	0.4	0.2

구분	지표 (단위)	2014	2015	2016	2017
대외 경제	수출(FOB기준, US$백만)	88,981	43,442	28,630	61,399
	수입(FOB기준, US$백만)	45,200	33,188	19,575	39,474
	무역수지(US$백만)	38,781	10,253	8,785	21,925
	대외부채(US$백만)	58,111	59,950	64,161	72,064
	외환보유고(US$백만)	66,349	53,470	44,924	48,876
	환율(연말) ID: US$	1,166	1,182	1,182	1,184

주1: **는 자료 없음
주2: 수출, 수입은 재화기준
자료: EIU(2018.10)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017년 한·이라크 교역규모는 78.3억 미국달러 수준으로 양국간 교역규모는 2012년 이후 지속 감소추세였으나, 2017년 원유수입 확대로 수입금액 증가(2017년 기준 수출 41위, 수입 17위)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수입은 거의 100% 원유에 집중되어 있는바, 동 원유 수입 규모가 우리의 대이라크 수출 규모에 비해 월등히 커서 우리나라로서는 이라크에 대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 기준 한국(11%)은 중국(23%), 인도(21%)에 이어 이라크의 세 번째로 커다란 석유수출시장이며,[10] 2017년 기준 이라크는 한국의 제4위 석유수입원(11.2%)이다.[11]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와 플랜트자재, 건설 중장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승용차를 비롯한 자동차류는 이라크 수입통계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격 대비 품질 측면에서 한국산 승용차의 이라크 시장내 지위는 매우 높은 편이다. 그 밖에 전기, 전자기기, 보일러 및 기계류 등은 우리기업의 플랜트 수주와 깊은 관계가 있다.

10) https://atlas.media.mit.edu/en/visualize/tree_map/hs92/export/irq/show/2709/2016/
11)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대이라크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	1,973	1,798	1,428	1,439	1,462
수입	9,261	6.686	6,266	5,036	6,371
규모	11,234	8,484	7,694	6,475	7,833
수지	-7,288	-4,888	-4,838	-3,596	-4,909

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제도

이라크의 수입규제 제도는 선적전 검사를 통해 시행된다. 모든 통관 절차 및 규제 항목에 관한 결정은 선적전 검사 용역을 맡고 있는 '표준화 및 품질검사 위원회(COSQC, State Committee of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의해 진행된다. 수입규제 제도가 2011년 5월 개정 발효된 이후 대이라크 수출업자는 세관을 통과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 이라크 세관의 사전 심사에 승복해야 한다.

수입규제 품목

이라크는 수입규제 관련 네거티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바, 수입 금지품목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전면적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전쟁이후 이라크 정부는 원칙적으로 비관세 수입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2000년도 이전에 생산된 중고 차량의 수입을 금지시킨바 있으며, 2005년 9월 1일부터는 2004년 이전에 생산된 중고차량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한시적 수입 제한조치를 취한 이후 동 조치를 매년 연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시점 기준 생산된 지 2년 이상 된 차량은 2013년 9월 기준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농업을 촉진하고 재건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1일부로 중고차 수입규정을 일부 개정, 10년 이하의 버스(20인

승 이상) 및 트럭(3톤 이상)과 15년 이하의 농업용 및 건설용 차량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차량 부품수입과 관련, 중고부품 수입을 금지했던 종전 규정을 개정하여 2009년 9월 1일부터는 중고부품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차량을 절단하여 반입하는 것은 불허키로 했다.

수입제한 법규

(1) 수입품 선적전 품질 검사제도 시행

2011년 5월 이라크 내각회의는 2004년 12월 1일 이라크 전쟁 이후 활동을 중지했던 '표준화 및 품질검사 위원회'의 기능을 빠른 시일 내 부활시켜 상품 수입에 앞서 반드시 동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결정하면서, 동 위원회가 발행한 승인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게 하였다. 2018년 10월 기준 관세청에서는 Bureau Veritas 등 2개사와 계약을 맺고 검사를 대행하게 하고 있다.

동 위원회 위원은 이라크 산업광물부(Ministry of Industry & Minerals) 전문가를 비롯해 국영기업 사장, 주요 제조업체 사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수입상품이 국제규격에 부합하는지, 인체에 해로운 제품은 아닌지, 불법복제품은 아닌지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라크의 자체적인 수입품 사전 품질 검사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불량 제품의 수입이 확산되자 이라크 정부는 2011년 5월부터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수입품에 대한 선적전 검사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시행 중이다. 품질 검사기관은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검사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수입품 통관시 품질검사 내용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8월 한국의 한 회사는 그동안 수출하였던 제품(면도기)이 이라크 표준품질검사 규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관이 거부되고, 한국 소재 검사 대행업체가 선적전 검사를 거절하는 등 이라크의 선적전 수입검사제도는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2) 수출입 허가제도

이라크정부는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저가 불량 수입상품 범람, 이라크 외 제3국에 사무실과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이라크 시장에서 수입업무를 하는 업체들에 대한 통제 등을 위해 사전 등록된 사람만이 수출입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입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전 등록방법과 기존에 허가를 받은 업체 리스트는 홈페이지(www.iraqitic.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관세장벽

이라크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의 기술장벽 관련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선적전 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라크 정부는 소비자 보호 및 환경보호를 위해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에너지라벨링 제도를 EU에서 차용해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2017년 4월 에어컨을 시작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 적용 중에 있다. 하지만, 세관 현장에서는 에너지라벨링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한 에어컨의 경우도 통관시 라벨부착 등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기도 한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과거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제한 조치 발동 전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으나, 저유가에 의한 적자예산이 지속되면서 최근 세입원 확대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비관세조치를 시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69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이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특별세 형식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또는 사전허가 형식으로 수입규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2019년에도 동 조치에 해당하는 품목은 확대될 전망이다. 상기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다.

#	품목명	세율	근거
1	Military Hats	75% 사전허가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88 / 2013, #329 / 2017
2	Men's Suit	2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90 / 2013, # 224 / 2018
3	Cornstarch	0% 2018.6.26 만료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90 / 2013
4	Medical cotton	10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57 / 2014
5	Ordinary cement	Import Prohibit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409 / 2015
6	Portland cement resistant to sulfur salts	Import Prohibit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409 / 2015
7	Concrete additives	15%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38 / 2015
8	Drip irrigation systems with plastic pipes parts Filter and fertilizer	15%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38 / 2015
9	Military Boots	5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38 / 2015
10	Prayer Carpet	6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38 / 2015
11	Military Belt	6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38 / 2015
12	Water Pump of Water Cooler	6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38 / 2015
13	Soft Drinks: Pepsi Cola, Diet Pepsi, 7 Up, Diet 7 Up, Miranda, Mountain Dew Shani	6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38 / 2015
14	Plastic Pipes	4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38 / 2015
15	Pottery Bricks	5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38 / 2015
16	Military Uniform	6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38 / 2015
17	Low Current Transformer with plastic cover	10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329 / 2015
18	Hydrochloric acid HCL	5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329 / 2015
19	Liquid chlorine	10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329 / 2015

#	품목명	세율	근거
20	Caustic Soda	25%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329 / 2015
21	Sodium hypochlorite	5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329 / 2015
22	Plastic woven bags	3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329 / 2015
23	Tents various sizes	5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99 / 2016
24	Polymeric asphalt Pads	2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99 / 2016
25	Processed Cheese (non-grated)	1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174 / 2016
26	Real Leather Jackets	21%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0 / 2016
27	Fiber Optic Cable	48%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0 / 2016
28	Freezer Size (10-13 feet)	5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0 / 2016
29	Cigarettes Sumer Brand	10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0 / 2016 The Council of Ministers took a decision # 162/2017 To freeze the additional customs duty
30	Aluminum cans for soft drinks, energy and juices	2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0 / 2016
31	Personal Military Shield	59%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1 / 2016
32	Military Helmets	59%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1 / 2016
33	Welded Iron pipes Welded Iron pipes coated with Polyethylene	4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1 / 2016
34	Oxidizing and non oxidizing aluminum clips	1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2 / 2016
35	Wire winding transformers and electric motors	1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2 / 2016
36	Aluminum sheets and strips	15%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2 / 2016
37	Low voltage electric cable	2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2 / 2016
38	Coaxial cable	19%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2 / 2016

#	품목명	세율	근거
39	Single, double and triple household wiring (2-13 millimeter)	17%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2 / 2016
40	Safety Boots	5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2 / 2016
41	Sulfuric acid concentrate	1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2 / 2016
42	Mechanical carpet	25%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337 / 2016
43	Men's socks (for summer & winter)	14%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337 / 2016
44	Raw Cloth	2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337 / 2016
45	Blanket	2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355 / 2016
46	Liquid battery type: (150,135,100,60,55) AMP	15%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355 / 2016
47	Pox vaccine for sheep	6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66/ 2017
48	KO vaccine Baghdad Intestinal poisoning vaccine	6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66 / 2017
49	Plasters (for building)	21%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66 / 2017
50	Reinforcement Steel (10-32 Millimeters)	5%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132 / 2017
51	Slag-wool, rock-wool and similar mineral wools	2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2 / 2017.8.30.
52	Grinding balls & similar articles for mills	22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2 / 2017.8.30.
53	Polyester cloth imported to Iraq	15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2 / 2017.8.30.
54	Juices	10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2 / 2017.8.30.
55	Amoxicillin 500 mg capsule	21%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2 / 2017.8.30.
56	Suprax & Cefixime 400&200 mg capsule	23%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2 / 2017.8.30.
57	Panadol Extra Tablet	23%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82 / 2017.8.30.
58	Military Hats	75%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329 / 2017.10.12.

#	품목명	세율	근거
59	All kinds of dairy yogurt	25%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328 / 2017.10.12.
60	Aerial Wires	15%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328 / 2017.10.12.
61	Energy drinks imported to Iraq	82%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101 / 2018.3.15.
62	Industrial Sponge imported to Iraq	28%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101 / 2018.3.15.
63	Protruding fence for roads	2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102 / 2018.3.15.
64	Products of distribution transformers, electric switches and power transformers	1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103 / 2018.3.15.
65	Imported Men's Suit	2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24 / 2018.6.5.
66	Imported Detergents: White bleach & liquid detergent for plates etc.	30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24 / 2018.6.5.
67	Chicken products, chicken parts and all products	5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24 / 2018.6.5.
68	Compact Substation (Kiosk)	26%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24 / 2018.6.5.
69	Dairy cream products	10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24 / 2018.6.5.
70	Vaccines for veterinary medicine	10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24 / 2018.6.5.
71	Medicaments: THERMESTON BLOCK, and LANSOPRAZOL 15MGTABLET Imported to Iraq	27%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24 / 2018.6.5.
72	Printed books of primary & secondary schools imported to Iraq	200%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24 / 2018.6.5.
73	Imported potato chips	85%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 224 / 2018.6.5.

참고사항

이라크 정부는 수입물품 범람에 대한 대처를 위해 수입규제를 점차 강화시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수입면허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수입면허 자격 취득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기존에는 수입면허 취득시 모든 수입물품 취급이 가능하였으나, 규정 개정 후에는 수입품목별로 별도 수입면허를 취득해야 해당 품목의 수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에는 정부물자의 경우 수입면허가 불필요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입면허 발급이 의무화되고, 관세감면 절차와 기간도 매우 어렵고 복잡해졌다. 이라크에서 사업을 추진중인 한 업체의 경우 평균 관세 감면절차에 한 달 가량이 소요되었다.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이라크 내각회의는 지난 2005년 저렴한 중고차가 자살폭탄테러에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 유류난 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중고차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한국산 중고차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중고차 수입이 자유화되자 한해 약 90만대의 중고차를 수출한 바 있었으나, 2005년부터 시행된 상기 중고차 수입제한조치로 인해 중고차 수출에 큰 타격을 받아왔다. 2015년까지 한국내에서 렌터카로 사용된 연식 2년 미만의 차량이 연간 약 1,000여대 정도 수출되었는데, ISIS테러로 인해 대금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고차 수입은 큰 폭으로 줄었다.

관세제도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미 군정당국은 연합국 임시행정처(CPA) 포고령 54호를 발표하여 2004년 4월 16일부터 재건세(re-construction levy)라는 명목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관세는 원칙적으로 H.S. 세번 분류방식에 의거 C.I.F 이라크 도착 가격을 기준으로 5%의 관세(재건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해 왔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2010년 중 관세법을 마련하여

5~35% 수준(주류 등 품목에 대해서는 80% 관세 부과)의 차등화된 관세율표를 마련했으나, 여러가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시행시기가 연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2014년 이후 ISIS 사태로 인한 국방비 과다지출과 국제적인 저유가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2016년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됨에 따라 재정수입 확보 차원에서 그동안 연기해 왔던 차등관세법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차등관세법은 2016년 1월부터 전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관세 집행 시스템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차등관세가 강력하게 집행되지 못해 2018년 1월부터 관세를 품목군 별로 단순화했다.

한편, 이라크 중앙정부는 2015년 말에 KRG 지역으로부터 내려오는 운송트럭에 대한 특별통관소를 바그다드 주위에 설치하여, 관세차액을 징수하는 초강수 시책을 도입함으로써 수입업자들의 관세회피를 봉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수입관세의 면제 및 예외

이라크 정부는 새로 도입된 관세제도에서도 국가전략 투자사업으로 지정된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우리 플랜트 업체들의 경우 이와 같은 면세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세 부과대상 수입품목 중에서 식료품, 의약품, 의류, 서적, 인도물품, 재건용 반입품(CPA, 연합군, 재건공사 계약업체, NGOs, 국제기구, 외교관 및 Coalition Government, Oil for Food 계약 이행 물품 등)의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지방정부(KRG) 지역에서는 이라크 중앙정부가 정한 관세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자체적인 수입관세 및 통관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라크 정부는 총리훈령 제295호를 통해 승용차를 포함한 주요 품목의 관세 인상을 2016년 11월 1일부로 단행했다. 하지만 세관 현장에서 관세 집행 시스템 부족으로 차등관세 부과가 어려워 총리훈령 제393호에 따라 관세를 인

하해 2018년 1월 1일부로 자동차는 15%, 기계류는 30%, 의료용품 10%, 화장품은 10%로 정했다.

관세율 확인

이라크의 관세업무를 총괄하는 정부부처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이고, 관세의 징수관리는 산하 관세청(General Commission of Custom Authority)이 맡고 있다. 2017년 총리훈령 제393호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로 세부 HS코드별 관세율 부과 대신 품목군별 관세율 부과로 단순화했다. 하지만 변경된 법이 세관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고, 일부 품목의 경우 공무원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율 정보는 주무부처나 한국 소재 선적 전 검사 대행업체에 품목별 최신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결정 기준

별도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출국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인증제도

이라크는 인증제도의 시행을 포함하여 인증획득을 위한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적법한 절차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물품 자체 또는 기업의 인지도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및 진행 절차가 변칙적이기도 하다. 국제 기준의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인증 획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이라크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가맹국(1976년 WIPO 가입)인바, 원칙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2003년

이후 연합국 임시행정처(CPA) 주도로 선진국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법을 개정하여 최소한의 법적 장치 면에서는 여타 국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치안질서도 확보하지 못한 현재 이라크 상황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유효한 행정적 집행수단을 갖는다는 것은 요원한 상황으로 실제 지적재산권 보호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관련 법규로는 2004년 4월 29일 CPA 행정명령 29호로 공포된 지적재산권법이 있으나, 이 법규의 효력과 집행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지켜줄 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는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모조품, 불법복제 CD, 전자제품, 담배류 등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제품들로 인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으며, 특히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의 많은 제품들이 중국산 모조품 등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의 행정력 미비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통관절차 및 운송제도

일반 통관절차 개요

이라크 세관의 통관서류 및 절차는 인근 국가와 유사하다. 상업송장과 원산지 증명서, 포장 명세서, 적합성평가서를 필요로 하며, 세관원은 서류가 완벽히 준비된 경우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에 통관 절차가 종료된다. 서류를 미비한 경우 통관시 50만 디나르의 보증금을 납부한 뒤 사후 보완해야 한다. 적합성평가를 미실시한 경우 이라크내 관할 시험소에서 시험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이라크 내 세관 가운데 우리나라 화물이 가장 많이 반입되는 이라크 남부 트레빌 세관 등의 경우, 투명하지 않은 세관 행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항만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만성적인 적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일 제품이라도 수일 내에 통관되기도 하고 수개월이 걸리

는 경우도 있다. 통관과정에서 관료주의도 심하고 부패, 독직 등의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투명한 세관 행정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행정력 미흡과 시설 부족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관의 종류

(1) 약식 통관

이라크 세관은 화물 송장 등의 각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품 검사는 세관이 지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구역인 부두나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하기가 곤란한 플랜트 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물자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검사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정해진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정식 통관

이라크에서는 농수산물과 식품도 원칙적으로 일반 제품과 동등한 관세, 통관, 검역제도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 농수산물과 식품의 위생검역 제도 및 절차는 일반 제품에 비하여 다소 까다로운 편으로 부가적인 통관서류(수출허가서나 위생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의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입제도는 수입통관, 관세, 위생검역, 수입규제 제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모두 이라크 내 선적전 검사업체의 자체 규정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라크의 통관 신고서 양식은 검사업체에서 지정하며 통상적으로 선적계산서, 항공계산서, 용기 적하목록, 송장 등이다. 특히, 2012년 10월부터 민간수입의 경우 예외 없이 수입면허 제출이 의무화 되었다.

(3) 우편 통관

국제 우편협약에 따라 배송자는 반드시 관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지정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우편통관시에도 특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방치된 화물

방치 화물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고 화물 보관료만을 징수한다. 세관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화물은 세관장에 의해 정부가 지정하는 보세창고로 강제 운송된다. 이때 발생하는 보세트럭 운송비, 항만 체제료, 선박이나 항공 운송비 등 모든 경비는 추후 수입업자가 통관을 신청할 때에 완불해야 한다.

이라크에서는 국가 재건 프로젝트에 사용될 건설 기자재를 실은 화물의 경우에도 세관의 억류조치로 인해 화물이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는 해당 프로젝트 소관 부처에 공식 레터를 요청하여 방치 화물에 대한 반입 또는 귀송 승인을 얻을 수 있다.

통관본드(Entry Bond)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반출허가를 받기 위해 사전에 통관본드를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입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본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관본드의 보증인(Surety)은 원칙적으로 세관이 사전에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한 보험회사 및 기타 법인체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입자가 이들 회사로부터 본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별도의 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한 통관본드는 세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통관본드는 일회의 통관을 위한 본드(Single Entry Bond)와 지속적인 통관을 위한 본드(Continuous Bond), 두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후자가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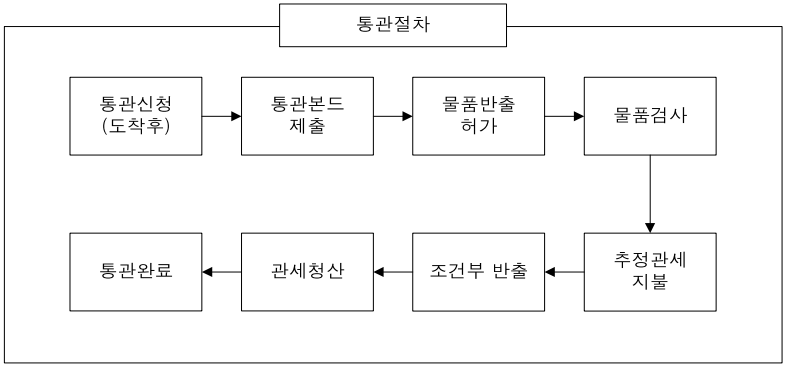
지속적인 통관을 위한 본드 금액은 일반적으로 당해 수입품의 성격, 관세 및 기타 수입 수수료의 연간 납부예상 총액, 수입자의 과거 납부성적 및 본드조건 준수 성적 등을 감안하여 본드 주기 내의 총 수입가액과 관세 및 기타 수

입 수수료의 총 합계금액 선에서 관할 일선 세관장이 결정한다. 금액이 충분한지 여부는 본드 주기마다 검토한다.

물품검사, 보류 및 압류

선적전 검사제도는 수출국 소재 검사 대행업체를 통해 하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선적전 검사를 마치고 적합성 검사결과를 세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통관절차 흐름도



세관은 선적전 적합성 평가를 미실시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수입품으로부터 샘플을 채취(또는 이미 반출된 경우는 수입자로부터 받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수입자는 세관이 인가한 관할 시험분석소에 시험 분석을 의뢰해서 세관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관은 모든 수입 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검사 목표에 따라 수입품을 선별하여 검사하는 정책(Cargo Selectivity)을 펴고 있다.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1) 상업송장 및 포장리스트

통관에 관한 모든 절차는 이라크 검사 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통

관 물품의 종류, 수량, 목적 등에 따라 적용 방침이 상이하므로 상업송장, 포장리스트, 세관 조사항목 및 통관 경비 등 관련 세부 사항은 한국 내 선적전검사 대행업체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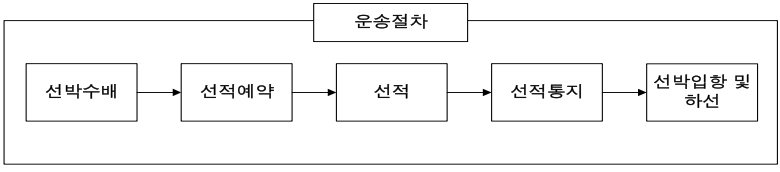
(2) 통관절차 안내 및 문의

이라크 관세청과 계약을 맺은 선적전검사 기관은 2개사이며 한국 내 선적전검사 대행사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Bureau Verits
대표 전화: +82-2-555-8922
http://www.bureauveritas.co.kr

○ TUV Rheinland
대표 전화: +82-2-860-9860
홈페이지: http://www.tuv.com/ko/korea/home.jsp
이메일 문의: info@@kor.tuv.com

운송절차 및 흐름도



○ 선박수배

- 본선인도(FOB: Free on Board) 조건인 경우 수입상,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인 경우 수출상이 담당
- 선적 일정을 선사를 통해 확인하고 선박을 수배

○ 선적예약

- 화주는 선사의 소정양식인 선적의뢰서(S/R: Shipping Request)를 발송하여 선적 예약을 완료

○ 선적

- 수출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항 야적장(Container Yard) 또는 터미널에 마감시간 전까지 반입
- 선하증권(B/L) 수령
- 선적 완료 후 화주는 선사로부터 B/L을 수령
- 운임이 선불인 경우에는 운임을 B/L 수령과 동시에 지급

○ 선적통지

- 선적 절차가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지체 없이 선적통지를 하고 B/L 사본을 송부

○ 선박입항 및 하선

- 수입화물을 부두에서 직반출하는 경우, 해당 선박 입항 전에 선사에 해당 화물을 부두 내 하선하거나 본선에서 차상 반출하도록 부두하선 요청
- 하역업자는 적하 목록 하선신고서에 따라 물품을 반입

운송비용

이라크에서는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따라 상품의 통관과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내륙 운송의 경우 이라크의 불안한 치안 상황으로 추가의 보관 및 보안 경비가 소요된다.

국제항구로는 남부의 바스라항과 움카사르항 2개가 있으며, 상업 화물은 주로 움카사르을 통해 수입된다. 기본적으로 한국 부산항에서 이라크 움카사르항까지 선박 운임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2,000달러 상당이며, 두바이항에서 움카사르항까지는 1,000달러 상당이다. 움카사르항에서 바그다드까지 육로 운송 요금은 1,000달러 상당이나 운송과정의 도난, 파손 등의 위험으로 보관 및 보안 경비는 추가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출발한 화물이 이라크로 반입되기 위해 활용되는 항구로는 요르단의 아카바항, 시리아의 타르투스항,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항을 거치는 이라크 움카사르항 등 3곳이 있었으며, 그 동안 어느 항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통관시점 상황에 따라 달랐다.

2003년 전쟁 직후에는 요르단 아카바항을 이용하는 것이 운임 경쟁력이 있어 운송 지연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되었으나, 2014년 ISIS 사태로 인하여 요르단 및 시리아와의 국경이 폐쇄되어 움카사르항을 이용하는 바이어들이 늘어났다. 이후 두바이 경유 운임이 하향 조정되면서 움카사르-바그다드 간 운송 기간이 짧고, 내륙 운송 시 국경 통과의 번거로움이 없는 두바이-움카사르 루트가 많이 이용되었다. 2017년 10월 요르단-이라크 국경이 재개 되었으나 아직 물동량은 180대/일에 그치고 있어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한편, 움카사르 항구의 접안 및 하역시설 부족으로 근래 화물 적체가 심각하여 장기간 통관이 되지 않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류부족 수입품 통관 시 50만 디나르를 보증금으로 납부 후 사후보완, 적합성평가를 미실시한 경우 이라크 내 관할 시험소에서 시험평가 등 관련 조치를 발표하고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이라크 정부는 움까스르 항구의 개·보수 및 인근 알파우(Al Faw) 지역에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항구 건설을 진행중인데 방파제 공사가 2019년 6월 완공되면 화물 터미널 건설 등 본격적인 항만 건설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항 현황

국제공항은 바그다드 공항, 바스라 공항, 아르빌 공항, 술레마니아 공항, 나자프 공항 등이 있으며, 가장 주요한 공항은 바그다드 공항이다. 모술, 키르쿠크등에는 국내선 공항이 있으나, 현재 모술 공항은 ISIS사태로 파괴, 운영중단 상태이고, 키르쿠크 공항은 ISIS사태로 인한 운영 중단 후 현재 개통을 위한 시험 운영 중이다.
국제공항들은 계속된 전쟁과 UN 경제제재로 인해 노후화되었으며 2003년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정상 운영이 곤란해졌다. 바그다드 공항은 2004년 8월에 관리 권한이 이라크에 이양됐으며, 이라크 국영항공사(Iraqi Airway)가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두바이) 등 인근 중동국가에 운항을 재개했다. 외국 항공사로는 Royal Jordanian Air와 터키 항공에 이어 Gulf Air, Etihad(아부다비 항공), Emirate 항공, Fly Dubai 등이 운항중이다.

주요운송회사 및 통관서비스 회사리스트

- 회사명: AlMasar Al-Iraqi Co. L.L.C for Shipping & General Transport
  전화: +964-771-255-4677, +964-770-492-6113
  이메일: operation@iraqilogistic.com,

- 회사명: BERTLING
  전화: +964-750-736-6432
  이메일: ali.majid@bertling.com, jim.mcgovern@bertling.com, serdar.polat@bertling.com

- 회사명: Wilh.Wilhelmsen Group
  전화: +964-780-139-8406, +964-770-310-5578
  이메일: wss.basrah@wilhelmsen.com

- 회사명: SKA AIR AND LOGISTICS
  전화: +964-790-190-9871
  이메일: basrah@ska-arabia.com

- 회사명: AL-BADER SHIPPING & Gen.Cont CO
  전화: +964-780-911-6249, +964-780-141-6415
  이메일: hazimalali@absc-iraq.com, capt.aziz@absc-iraq.com

- 회사명: Saba International Group
  전화: +964-780-102-3955, +964-780-109-897
  이메일: saba.iraq@sabaint.net, Bilal-shakir@sabaint.net

투자 환경

투자 개황

이라크는 8년에 걸친 이란과의 전쟁(1980~1988년), 쿠웨이트 침공(1990년) 및 쿠웨이트 침공 이후 12년간의 유엔 경제 제재, 미국의 이라크 침공(2003년) 및 ISIS 발호(2014년) 등으로 산업 시설이 크게 파괴되고 노후화되어 개발 수요가 매우 큰 편이다.

2003년 이후 이라크 정부는 비교적 폭넓은 투자 개방정책을 채택하여 외국인 투자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추진하였다. 종전 이후 미 군정 지배 하에서 이라크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허용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등 이전의 외국인 투자 제한 정책에서 투자유치 개방정책으로 전면 전환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인과 동등 대우를 부여하고 외국인의 단독 투자, 이라크 투자자와 공동 출자 등을 허용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사 설치, 과실송금, 기타 영업과 관련한 정상적인 활동도 허용했다.

또한 쿠르드지방정부는 2006년 8월 중앙정부와 별도로 독자적인 투자법을 제정하여 개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여건을 조성했으며, 이라크 중앙정부도 2006년 12월 투자법을 제정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테러에 따른 치안불안, 열악한 기본 인프라 상황, 부정부패, 관료주의적 행태 등으로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아 외국기업들의 이라크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국기업들은 대부분 원유 등 자원 개발 분야에 대해서만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 분야는 이라크 정부에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모든 자원을 국유화하고 있어서 단순 서비스계약 이외에는 외국기업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상기 투자법 시행을 담보하는 하위 법령도 제정되지 않았고 투자 지원체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2003년 미국의 점령에 대항하는 수니/시아 무슬림의 봉기, 그 뒤를 이은

종파분쟁에 이어 2014년 ISIS 사태에 이르기까지 이라크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외국인투자 여건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2월 쿠웨이트에서 개최된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국제회의에서도 확인된 것과 같이 이라크 정부는 향후 이라크 재건, 개발을 위해 민간투자 등 민간 부문 참여에 최우선적 역할을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향후 이라크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 성공 여부에 따라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설립

이라크는 외국기업의 이라크 내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현지법인과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현지법인,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이라크 내에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무역부 산하 외국기업 등록처(Registrar of Company)에 등록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등록방법 및 절차는 형태별로 상이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된다. 다만 이라크 내에서 소매유통업을 하는 외국기업은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지정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외국기업이 이라크 내에 투자를 원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류를 국가투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 결과를 통보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대규모 투자 없이 이라크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할 경우에는 외국기업 등록처에 등록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사업여건(투자 매력도)

이라크는 상기와 같이 2006년 12월 투자를 자율화하고 기업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기본 틀을 갖추었으며, 각종 규제 철폐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민간 제조업 육성을 적극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2017년 발표한 국가별 비즈니스 여건(투자매력도) 조사(Doing Business Survey)에서 이라크는 190개국 중에서 168위를 차지한 바, 이는 인근 중동국가에 비해서도 최하위 수준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코자 하는 이라크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실재 비즈니스 여건은 그리 매력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라크 국내 치안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정정 및 치안 불안 등으로 투자 리스크가 아직도 높기 때문에 투자지역으로 선정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북부 쿠르드 지역 및 남부 바스라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며 개발수요가 높아 유가스전 개발 및 상하수도, 주택건설,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추진 등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세관, 세무, 노동관청의 행정 투명도

2017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조사에서 이라크는 전체 180개국 중 169위를 차지하였는바, 부패 정도가 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투자위험도(신용평가)

OECD는 1996년 이래 현재 까지 이라크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Fitch사는 2017년 3월 이라크가 향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현재의 정치적인 혼란과 불안정한 치안 등을 감안하여 이라크에 대해 투자부적격 등급인 B-를 부여한바 있다.

투자유치 기관

중앙정부에서는 투자법에 따라 2007년 11월 총리 직속기관으로 설립된 국가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가 투자 유치 및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나자프주, 바빌주, 바스라주, 살라아딘주 등 지방정부도 주별 투자위원회를 설립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정부 투자위원회는 아직 내부 조직이 정비되지 않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쿠르드지방정부는 2006년 8월 제정된 자체 투자법에 의해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를 구성하여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투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5년 임기, 내각 추천으로 국회 승인) 및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다. 주로 국가 투자정책 기획, 투자규제 조치, 투자규제 감독, 연방정부의 전략적 투자프로젝트 담당한다.

투자 제한 및 금지 분야

소매 분야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 기간 동안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이라크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과 채굴 분야는 정유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7년) 등에 근거하여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은행업과 보험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는 2009년 11월 주택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토지 소유를 허가하는 등 투자법을 개정하였으나, 외국인에 의한 토지 소유 조건은 여전히 까다롭다. 현지 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공동 명의로 토지를 임대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만이 허용된다.

투자 인센티브 제도

(1) 투자 인센티브(조세 감면)

외국 투자 기업에는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 주며, 합작 법인일 경우 이라크 파트너의 지분이 50% 초과 시 이라크 파트너의 지분이 늘어남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 준다. 그러나 프로젝트 자산을 이라크 법에 반해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세금(관세 포함)을 추징하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 프로젝트용 수입 자산이 투자 승인 후 3년 내에 수입될 경우 해당 자산의 수입관세를 면제해 주며, 투자 프로젝트의 확대를 위해 수입한 자산은 위

원회에 신고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수입할 경우 해당 관세를 면제해 준다. 또한 투자 자산 가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도 수입 관세를 면제해 준다.

(2) 인센티브 지급기준

이라크 정부는 지원사업 여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정식 사업 등록 절차를 거친 외국기업에 한하여 각종 조세 특혜를 제공한다. 이라크에서의 인센티브 지급 유형은 협상형에 속하며 지급 규모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평가 요소는 정부 추진 핵심사업 여부, 공익 증진성, 외자 지분 비율 등이다.

(3) 투자 인센티브 지급절차

해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절차는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정식 등록된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조세 혜택은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을 삭감하거나 과세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된다.

(4) 투자인센티브 적용사례

(가) 한국투자기업 사례

한국기업으로서는 한국가스공사와 석유공사가 이라크내 석유/가스 개발을 목적으로 투자진출한 바 있다. 이 밖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이 이라크 내에 지사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한화건설의 경우 현장인근에 Prefabricated Concrete 공장을 신설하면서, 상기 투자인센티브 등을 받았다.

(나) 외국투자기업 사례

이라크 내 주요 투자국가는 인근 중동국가이고 일부 미국계 기업이 포함된 경우가 있지만, 인센티브 적용사례와는 관련이 없거나 미미하다.

투자법 주요 내용

(1) 목적

투자법은 이라크 발전에 기여하는 현대적 기술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 프로젝트 달성에 필요한 외국 투자와 이라크 민간부문 지원, 국내외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 촉진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시장요구에 부합하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이라크인에게 고용기회 제공하는 한편, 투자가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여 수출 증대 및 이라크 무역수지 확대 등을 추구한다.

(2) 지원 수단

특혜 조치와 경쟁력 증진 지원 조치 및 각종 관세와 각종 세제의 면제, 부가적 혜택 제공한다.

(3) 절차

○ 투자 신청서 접수 후 45일 이내 허가 결정(단, 투자 금액이 25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내각의 승인 필요)

○ 구비 서류

- 소정 신청서(application form prepared by the Authority)
- 은행의 재정보증(Financial guaranty from an accredited bank)
- 투자가의 기 투자프로젝트(Projects undertaken by the investor in or outside Iraq)
- 투자프로젝트의 명세서와 경제 효과(Details of the project to invest in and its economic usefulness)
- 프로젝트 추진 일정(Schedule fo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4) 투자가에 대한 혜택과 권한

○ 국적에 관계없이 동등한 특혜 부여

○ 승인 된 투자프로젝트에 합목적적인 토지·건축물 소유권 보유 가능

○ 외국인의 토지 임차 허용

○ 투자 자본 반입과 과실 송금 허용(투자법과 이라크 중앙은행의 규정)

○ 이라크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주식과 채권 거래, 주식과 채권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국내외 보험회사의 투자 프로젝트 참여

○ 보험, 국내외 은행에 이라크 디나르화 외국환 계좌 개설 보장

○ 투자 프로젝트에 적합한 이라크 근로자 없을 경우, 외국 근로자 채용

○ 투자가와 관련 근로자의 이라크 체재 및 출입국 허가

○ 법원 판결 없이 투자 프로젝트의 국유화, 몰수 금지

○ 투자법 상의 보장, 면제와 권리들에 대한 소급 적용 배제

(5) 투자가의 의무

○ 투자 자산의 도입과 설치, 프로젝트의 사업 시기 등 신고

○ 이라크 회계법인에 의해 감사를 받는 상설 계좌 보유

○ 프로젝트의 경제 및 기술적 혜택 보고서, 위원회 요청 자료와 서류 제출

○ 투자 프로젝트용 수입 물자와 면세 물자에 대한 기록 유지

○ 환경 보호와 품질관리시스템 준수

○ 임금, 면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이라크 법률 준수

○ 차질 없는 투자 프로젝트 수행(6개월 이상 지체 시 벌금이나 허가 취소)

○ 이라크 근로자 교육 및 훈련, 이라크 근로자 우선 채용 등

출입국 및 비자제도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이라크는 2007년 8월부터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었는바, 입국을 위해서는 여권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득해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영주, 취재 및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에 한하여 이라크 방문 및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만약 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라크를 방문하고 그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라크 사증 신청 시 반드시 사전에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로부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 목적, 사업 절차, 기업 정보 및 신변 안전을 위한 경호 업체 고용 사실확인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호 서비스를 제공 받을 방안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최초 허가 시

- 소관부처에 기업진출 신청 및 여권사용 허가신청(신청자)
- 안전대책 검토(국정원)
- 허가여부 심의 (외교부 여권정책심의위원회)
- 신청자에게 심의결과 통보(외교부)
- 필요 시 안전교육(국정원)
-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서 교부(외교부)

○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 시

- 외교부에 여권사용 허가신청(신청자)
- 허가여부 심의(외교부 여권 정책심의위)
- 심의결과 통보(외교부)

- 필요 시 안전교육(국정원)
-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서 교부(외교부)

○ 유형별 자체 안전대책 (장기체류)

- 무장 경호원 확보: 이라크 출장기간 동안 전 일정을 무장 경호원이 동행
- 이동 시 안전대책:
  - 경호운송수단 확보하고 정부에 신고된 지역으로만 이동
  - 경호원 동행 등 이동 시 안전수칙 수립
- 숙소, 사무실, 공사현장 안전대책
  - 숙소, 사무실, 공사현장의 안전지역 위치
  - 거주 및 체류 지역 외곽 방어벽 설치 및 경비초소 운용
  - 거주 및 체류 지역 출입통제 관리 (출입자·차량 신원 확인 및 검문)
- 안전대책 최소기준
  - 총 경호 인력 수: 36명(현지경찰 25명, 자체고용 경호원 11명)
  - 자체고용 현지 경호원: 11명 (팀장 1명, 팀원 10명)

○ 유형별 자체 안전대책 (단기체류)

- 무장 경호원 확보: 이라크 출장기간 동안 전 일정을 무장 경호원이 동행
- 이동 시 안전대책: 경호 운송수단 확보 및 사전 신고된 지역으로만 이동
- 숙소 안전 대책: 안전이 확인된 호텔 등을 숙소로 활용
- 비상연락망 구축
  - 현지공관과 비상연락망 구축 및 일일 체류현황 보고
  - 진출기업 본사와 정부간 비상연락망 구축 계획
  - 현지정부 및 치안기관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 본사 및 직원간 비상연락망 구성

○ 소관기관의 사업타당성 등 검토를 위한 제출자료

- 여행금지지역 기업진출 신청서 및 서약서: 대표자 1인이 작성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현지정부 및 관련 기업의 초청장 및 안전보장 각서

○ 외교부의 허가여부 심의를 위한 제출자료

-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및 서약서: 방문인원 전원 작성
- 활동계획서 : 안전대책, 총 여행 인원 정보 포함
- 재직증명서, 여권사본

비자(사증)

외국인의 경우 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국 전 사증 발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다른 나라의 예에서와 같이 선입국 후 사증을 발급 받는 등의 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라크 내무부의 발급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증 발급신청 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요건 등을 미리 꼼꼼히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외교부에서 발급 받은 예외적 여권사용허가서와 함께 사증 발급을 위해서는 주한 이라크대사관 제출용 신청서 및 혈액 검사 증명서 (간염 및 에이즈) 및 외교부에 허가서 발급을 위해 제출하는 사업 내용 및 기업 소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면 제출이 완료 된 후 일주일 후 사증 발급이 완료 된다.
단기(1개월) 단수 사증은 예외적여권사용허가서와 비자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주한이라크대사관 또는 제3국 주재 이라크대사관을 통해 취득하고 입국 후 7일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별도의 체류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체류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공항에서 최대 500 달러의 벌금을 지급한 후에 출국이 가능하다.

장기(3개월, 6개월, 1년) 복수 사증은 이라크 내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

(Visa Cable)를 발급(2018년 8월부터 보증금으로 10만 디나르 납부 필요) 받아야 취득이 가능하며, 이라크 내 소관부처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사증발급인정서 취득 후 주한이라크 대사관에 신청하고 입국 후에는 별도의 체류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국방법

(1) 항공편을 통한 입국

국제공항은 바그다드, 바스라, 아르빌, 술래이마니아, 나자프 등 5곳이고 키르쿠크와 모술에는 그보다 규모가 작은 국내공항이 있다. 이라크 내 모든 공항은 지난 수년간 유지보수 중단과 장비 부족으로 노후화 되었다.

1945년에 창설한 이라크 국적 항공사 Iraqi Airways는 2003년 전쟁 직전까지 13년간 국제선 운항을 중단했다가 2004년 11월부터 요르단, 시리아 노선 운행을 재개했으며, 2017년에는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젠, 바레인, 중국(베이징, 광저우), 이집트, 조지아, 인도(델리, 뭄바이), 이란(테헤란, 마스하드, 이스파한),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앙카라, 이스탄불, 안탈리아), UAE(두바이), 영국(런던, 맨체스터), 파키스탄(카라치), 독일(베를린,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덴마크(코펜하겐), 스웨덴(스톡홀롬) 등 21개국에 취항중이다.

(2) 육로를 통한 입국

항공편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으며, 현지 치안상황상 현지인들만 육로를 이용하고 있고, 외국인들에게는 육로 이용이 매우 위험하다.

(3) 항구를 통한 입국

이라크 내 국제 항구는 움카스르 및 바스라 두 곳으로서 [두바이-움카스르] 구간에 고속 페리선이 운행 중이나 [움카스르/바스라-바그다드] 육로구간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용을 삼가야 한다.

이 란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수입정책상의 장벽

개요

이란 정부는 2015년 6월 제6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2016~21년) 까지 지난 1990년부터 경제·사회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나친 석유 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산업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2년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UN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제재를 받아온 이란 정부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핵협상에 임하여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합의하였고, 2016년 1월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2018년 5월 8일 JCPOA 탈퇴를 선언하고, 2018년 8월 7일 자동차부문 교역등 제재 복원, 2018년 11월 5일 이란 원유, 항만, 해운 등에 대한 제재 복원 조치를 취했다[12].

다만 한국 등 8개국은 한시적인 원유 수입 제재 예외국 인정을 받아 이란산 원유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원화결제시스템을 활용, 양국간 일정부분 교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12) 제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sanctionssearch.ofac.treas.gov) 참조

이란정부는 자국 제조업 보호 및 육성 차원에서 관세 및 비관세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수입정책의 경우 국내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제품, 기계류, 부품,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5% 이내의 저관세 및 수입완화 정책을 적용하는 반면 완제품, 자국 내 생산 가능한 품목 및 사치성 소비재인 경우 100% 이상의 고율 관세 혹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산업화정책에 부합하는 석유화학, 농업, 광업, 자동차, 철강 산업 관련 기계류의 경우 수입허가 면제
- 국내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원재료 및 시설재 중 일부 품목은 산업광물무역부 사전 수입허가 면제 품목으로 고시, 수입을 완화
- 한편, 이란 정부는 2016년 하반기 이후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인상조치 및 밀수입금지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무역제한정책 시행

비관세 정책으로는 주로 산업광물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Mine and Trade) 등 수입허가 부처에서 사전 수입허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란의 산업화에 필수 불가결한 자본재의 경우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수입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품목

이란 산업광물무역부의 수출입규정(Export-Import Regulations 2016)[13]에 따르면 (1) 이란 법률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거나 이스라엘에서 수입되는 수입금지품목(prohibited goods), (2) 특별한 수입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조건부 승인품목(conditional goods), (3) 일반적인 수출입규정에 따라 수입이 가능한 수입허가 면제품목(authorized goods)로 구분된다. Positive system에 의해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외 품목은 조건부 승인 품목으로 산광무역부를 통해 관계부처의 수입허가를 얻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허가 면제품목은 산업기자재 등이다.

13) http://eng.tpo.ir

○ 조건부 승인 품목(conditional goods)

- 산업광물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부 등 해당부처가 건별 심사 후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품목으로 화장품 등이 포함되며 일부 수입금지 품목 외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이에 해당됨. 해당 부서 수입허가 결정시 동종품목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여부 및 생산량이 고려됨.

○ 금지품목(prohibited goods)

- 무기류, 폭발성물질, 마약, 술, 도색출판물, 도박관련물품, 돼지고기, 승용차 완제품 등

수입절차

이란과 상품의 수출입거래를 하려면 이란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상업카드(commercial card)가 필요하며, 상업카드(commercial card)는 이란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한하여 부여되므로, 이란에 상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란에 법인을 직접 설립하여 commercial card를 취득하거나 이란 국적의 대리인(에이전트)을 선임하여야 한다. 물품수입을 위해서는 commercial card와는 별개로 산업광물무역부등으로부터 수입허가를 얻어야 한다.

① 산업광물무역부에의 수입 신청서 제출

- 조건부 승인 품목 중 약 80%는 산광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의 별도 수입허가 절차는 필요 없음.
- 조건부 승인 품목 중 나머지 약 20%는 산광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접수시 지정하는 관련부서에서 수입허가를 획득해야 함.

② 산광무역부, 보건부 등 해당품목 관할 부서의 수입허가

- 실질적인 수입허가 여부 결정
- 해당부서에서는 건별로 수입허가 여부를 심사

③ 상업은행을 통해 L/C를 개설

- 수입자는 품목 및 수입자의 업체 규모, 신용도에 따라 수입 대금의 최고 60%까지 은행에 사전 예치하고 L/C를 개설

관세정책

이란의 관세제도는 국내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세는 HS분류 방식을 채택(관세법령 : Export and Import Regulation Law : 1993)하고 있다. 이란 관세법령에 따르면, 상품 세관 신고금액은 INCOTERMS와 관계없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로 변경되며, 해당신고금액에 이란 세관에서 부과한 선착금액을 더하며,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합산금액은 CIF비용과 동일하다.

2003년 7월 터키,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0개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이슬람경제공동체) 회원 국가간에 관세의 점진적 감축 및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ECOTA(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Free Trade Agreement)가 서명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다.[14] 대신에 이란은 터키,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튜니지아, 시리아, 쿠바, 보스니아·헤르제고비나, 벨라루스 및 아프가니스탄 등 9개국과 양자간 특혜관세율(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적용하고 있다.

이란 관세법은 수입품이 덤핑이나 부당한 혜택 하에 이란에 반입됨으로써 이란의 동종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과거 수입된 수입가격과 Pro forma Invoice상에 명시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추정가격에 의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반덤핑 관세 부과의 투명성이 낮았다. 이란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7년 8월 이란 정부내 주요 부처 장관협의 인준에 따라 관계부처 차관 및 국장급으로 구성된 반덤핑 예비조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생산자의 청원이 있을 경우 서류심사, 사실조사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한 예비조

14) wits.worldbank.org/GPTAD/PDF/archive/ECO.pdf

사를 실행하고, 이 결과에 따라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반덤핑 예비조사 협의체에 참여하는 부처와 정부기관에는 산업광산무역부, 외교부, 농업부, 조합부, 관세청, 상공회의소, 무역진흥청(TPO) 등이 포함되며, 간사는 TPO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다만, 현재까지 이란 당국이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이란 관세 규정에 의하면 이란의 수출품목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란 정부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이어의 탈세 조장 또는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덤핑 또는 비정상적으로 수입품 가격을 조정 인하할 경우, 이란정부는 동 특정품목에 대하여 관세인상 등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세 환급은 재수출용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 가능하다. 수출 촉진 목적으로 수입되는 기계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며 관세면제 대상 품목은 산광무역부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관세 산정방식은 CIF 가격(US $) × 1달러당 환율(Rial) × 해당수입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관세율 정보는 이란 무역청(TPO: Trade Promotion Organization) 홈페이지(eng.tpo.i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율은 제품신고시 완제품(CBU:completely built-up), 반제품(SKD:semi knock down), 반조립제품(CKD:complete knock down)별로 서로 상이하다. 평균 관세율은 완제품을 제외하고는 17~23% 수준이다.

2017월 4월 이란 정부는 자국 생산자 보호와 산업육성을 위해 중간재 수입에 대한 새로운 관세부과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입되는 중간재에 대하여 자국 생산자의 최종 생산품에 대한 기여와 참여 정도에 따라 수입관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률은 이란 생산자 참여율이 20%이하인 경우는 40%의 수입관세를 부과, 20~30%인 경우는 32%, 30~40%인 경우는 26%, 40~60%는 20%, 그리고 60% 이상인 경우는 15%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통관절차

수입품은 검수관의 감정 및 평가 절차에 의해 철저히 검사되며 세관신고서에 의거, 신고 되지 않은 품목은 밀수로 간주된다. 수입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허가대상품목으로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한 품목)을 수입한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의 동의하에 수입상은 CIF 가격의 5~25%에 해당하는 벌금(penalty)을 지불하고 상품을 통관할 수 있다. 이란의 통관절차는 상품도착→수입물품 보세창고 하역→통관수속→물품검사 및 선적서류 확인→샘플테스트 및 가격확인→관세지불→통관확인서 발급 순으로 이루어진다.

통관 수속과 관련된 서류는 견적송장(registered P/I), 회사등록증(copy of commercial ID card 또는 company registration), 신용장 또는 송금영수증,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선하증권, 검사증명서, 표준증명서 등이다. 유의할 사항은 세관에서 통관확인서(green paper) 발행 후에도 통관증명서 뒷면에 통관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한 특별 스탬프나 도장이 찍혀져야만 완전무결한 통관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견적송장(P/I)상의 금액과 상업송장 상의 금액에 차이가 나거나 또는 중량 증명서상의 중량과 실제 중량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할 때까지는 통관이 완료된 경우라도 통관확인서(green paper) 뒷면에 최종확인 스탬프가 찍히지 않는다.

수입 통관 시 실중량 측정과 관련, 철강, 종이, 파이프 등 제품의 경우 제품 무게를 측정하여 invoice에 명기된 중량과 비교하는데, 이란세관은 국제적 관례로 인정하고 있는 중량의 오차 범위(약 5% 내외)를 인정치 않고 있으며, 고중량 측정저울의 일반적인 오차 한계도 인정치 않고 있다. 이란은행은 이란세관에서 측정한 중량이 invoice에 명기된 중량에 미달할 경우 통관을 지연 또는 거부하고 있다.

수입검사

이란으로의 수출 시에 선적전 검사와 영사인증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란 정부는 2001년부터 선적전 검사와 선적서류 영사인증을 의무

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란은행에서 수입자의 신용에 따라 자체 산정한 금액 이상 수입 시에는 수입자에게 선적전 검사와 선적서류 영사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한국에서 수출 시는 L/C 개설 이전에 수입자와 동 서류 필요여부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선적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란표준산업연구소(ISIRI : Institute of 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of Iran : www.isiri.com)가 지정한 이란 또는 ISIRI에 등록 허가된 외국검사기관에서 수입검사를 받아야 하며, 한국 내에 ISIRI가 지정 및 허가한 검사기관[15]도 운영 중이다.

원산지 증명제출 및 영사확인

선적서류 영사인증 의무는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어 수입자가 영사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한국 업체에서 주한이란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L/C 개설 이전에 수입자와 영사 인증조항 삭제를 요구한다면 우리 수출업체는 영사인증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위생 안전 허용 기준

위생, 의료 및 의약 관련 품목은 보건부 내의 표준규격심사에 합격해야 하며, 선적전 견본이나 샘플을 보건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이란어로 제품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위생, 안전 허용기준은 보건부에서 정하며 동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수입이 허용된다. 화장품 등의 경우 현지 공장 실사 등이 승인검토 절차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니 품목별 확인이 필요하다.

샘플 통관

해외에서 이란으로 발송하는 샘플 및 카탈로그 통관 시 소액, 소량인 경우라도 현지에서는 통관수수료 및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세관 담당관이 별도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통관 소요기간도 1~2주 정도로, 현지

15) 관련 정보는 사단법인 한국검수검정협회(cafe.daum.net/kts6934?q=kts6934 ; ☎ 02-737-693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인의 도움 없이는 통관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공항 입국시 소지하는 견본도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항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통하여 처리하게 되며, 이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표준 인증관련 장벽

이란표준산업연구소(ISIRI: Institute of Standards & Industrial Research of Iran ; www.isiri.com)는 각 제품의 표준규격을 결정하는 이란내 유일한 기관으로 품목별 표준규격을 결정한다. 필수표준규격 적용대상 품목은 반드시 invoice에 관련 규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수입상은 반드시 수출상에 표준규격을 통보해야 하며, 만일 규격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통관 시 지장을 초래한다.

주요 품목별 수입 장벽

이란관세청은 2017년 4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새로운 수입관세정책을 발표하였다. 완제품의 수입관세율은 자국 생산자의 제품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즉 자국내 부품조달 비중이 높을수록, 수입 완제품의 관세율은 낮아진다.

domestic manufacturing depth	import tariff
less than 20%	an equivalent of 80% of tariff on finished product
20% to 30%	an equivalent of 70% of tariff on finished product
31% to 40%	an equivalent of 60% of tariff on finished product
41% to 50%	an equivalent of 50% of tariff on finished product
51% to 70%	an equivalent of 40% of tariff on finished product
70% and above	an equivalent of 20% of tariff on finished product

철강

수입 통관시 실제중량 측정을 실시하여 송장상에 기재된 중량과 비교하게 된다. 물품의 특성상 제조업체에서는 일부 특정 물량에 대하여 실제중량(actual weight)을 측정하지 못하고 이론중량(theoretical weight)으로 대신해 중량을 책정하여 수출하고 있으나, 이란 세관에서는 실제 물량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특정품목: 판재류, 종이, 철강, 철근, 파이프 등).

이론중량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당초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상에 명시된 대로 이론중량을 수용하여 분쟁을 방지(대부분 수입자는 이론중량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나 이란세관에서는 항상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음)하고 있으며, 통상 이론중량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당초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발행 시 반드시 명기하고 있다.

제조상품의 경우, 국제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중량의 오차 범위(약 5% 내외)를 인정하지 않으며, 고중량 측정 저울의 일반적인 오차한계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전기전자 제품

제품 생산을 위해 CKD(completely knock down) 형태로 부품을 수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품의 30%를 현지화하지 않았다면 완제품으로 간주, 완제품 관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2017년 7월 이란 통신정보기술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는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 등 21개 기술제품의 수입제한 또는 관세율 인상 등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16]

자동차 부품

과거 이란에서는 완성차 및 중고차의 수입금지로 공급의 부족 현상이 초래되었으나, 2004년 이후 공급초과 현상이 나타나 1994년부터 금지되었던 완성차 수입을 2004년부터 허가한 바 있다. 최근 미국 경제제재 시점에서

16) http://financialtribune.com/articles/economy-sci-tech/67970/imports-of-21-tech-products-banned

또다시 완성차 수입은 금지되었으며 단, 반제품(CKD) 및 반조립(SKD) 방식으로 수입은 가능하다. 현재 CKD 부품은 해당 차종의 현지화 비율에 따라 관세를 20~70%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최근 이란 정부는 자국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외국회사들의 이란내 직접/공동투자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자국내 완성차 업체에게만 외국산 자동차 수입면허를 부여하는 정책을 사실상 추진하고 있다. 외국 브랜드 완성차를 제조하는 업체만이 해당 브랜드 자동차를 CKD 및 SKD 방식에 한해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부품이 이란제재에 따른 수출금지품목이 아닌지 전략물자관리원(www.yestrade.go.kr) 등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섬유·직물류

이란 정부는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완제품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섬유직물류 및 기타 완제품 의류 등의 對이란 수출에 제약이 있다. 또한, 이란 내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고급원단 직물류의 경우도 사치재라는 이유로 이란 정부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대부분의 물량이 공식 수입보다는 두바이 등을 통한 비공식 경로로 수입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 상의 제약

100만 달러 이상의 구매 및 공사의 경우 원칙상 국제입찰에 의해 발주하고 있으며, 공사입찰의 경우 발주처에서 입찰공고 이전에 적정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리 주요 발주처 관계자와의 협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업체가 공사 총액의 51% 이상 지분을 갖는 consortium을 구성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 시 51% 이상의 품목은 반드시 국내 자재를 조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내 자재가 없는 경우는 고위 정부 관료의 결정을 득하여 해외 자재를 조달할 수 있다. 나아가 2017년 8

월 이란 산광무역부는 국내 자재 및 서비스 조달 극대화가 요구되는 10개 산업분야(자동차, 섬유, 기계 장비, 금속성 광물, 비금속성 광물, 식품 건강 제약, 전자 통신, 화학, 소프트 웨어)의 구체 품목을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정부 조달 시 발주하는 입찰에는 공개입찰(open tender)과 제한입찰(pre-qualified)이 있어 단순 아이템이면서 기술, 사양이 복잡하지 않고 또한 신속성을 요하는 구매의 경우 제한입찰로 발주하고 있다. 현재 정부 구매의 약 80%는 Inquiry Invitation Tender(제한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조달청)와 달리 각 부처별 조달기능이 있어 개별, 독립적인 조달절차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8월 한국수출입은행과 이란 12개 시중은행간 체결된 수출금융 기본여신약정(Framework Agreement, 유효기간: 2년)은 개도국 정부 또는 정책대행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프라 개발사업, 대규모 플랜트 등 공공부문 프로젝트 지원에 유용한 제도이다. 주로 수입국 정부(정부기관, 중앙은행 포함) 또는 주요 국영은행 등을 차주로 하여 일정 신용공여한도 및 주요 조건 등을 사전에 약정한 후, 개별 수출거래에 간소화된 개별대출계약(LA: Letter Agreement) 체결로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당초 FA체결로 한-이란간 개별수출거래의 금융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이란 정부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시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수주활동이 가능해져 우리나라 기업의 수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2018년 5월 미국의 대이란 핵협정(JCPOA) 탈퇴 결정 및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복원에 따라 FA를 활용한 금융 지원은 현재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 장벽

외국인 투자 정책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본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매년 약 80만 명에 달하는 신규 노동인력에게 제공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란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각종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2017년 8월 출범한 로하니 제2기 정부는 제재로 인한 이란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란은 Kish섬, Qeshem섬, Chabahar항구 등 지역에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를 설치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산업별로 16개의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를 지정하여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분야 및 지분

이란에서의 지분투자를 통한 외국인투자는 3가지 방식으로 허용되고 있다. 첫째, 「외국인투자촉진및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투자허가 취득절차를 거친 후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 둘째, Free Industrial-Trade Zone이나 Special Economic Zone의 특별 규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 셋째, 이란 상법에 근거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이다.

이란은 전 사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대체 사업, 석유화학, 석유, 가스개발,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석유, 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었으나 1996년 이후 Buy-Back방식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해 오다가 2016년 8월부터는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란 석유계약제도(IPC : Iranian Petroleum Contract)를 통해 국제 석유회사들이 지분투자를 통해 이란 원유 및 가스개발 사업에 장기간(20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제도를 발효하였다. 이란정부는 2017년 7월 프랑스 Total사가 이끄는 콘소시엄과 이란 사우스파스(South Pars) 가스전 개발을 위한 48억 불 규모의 대형 계약을 IPC제도로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다[17].

17) 다만, Total사는 2018년 8월 미국의 이란제재 영향을 우려, 이란시장에서 철수한다고 선언.

외국인 투자촉진 및 보호법(FIPPA)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는 민간부문의 활동이 허용된 모든 영역에 투자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지분 보유 비율을 제한하지 않는다. 즉 외국인의 투자 허용 분야도 현지인이 투자 가능한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하였다.

외국인 투자촉진 및 보호법 시행령(Implementing Regulations)에는 투자 방식과 범위, 승인 방식, 외국인 투자 서비스 센터 업무범위, 외국인 자본 유입, 과실송금 등에 관련된 세부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 일반 감면제도

- 내국인과 동일한 조세 감면제 적용
- 공장설립 지역별 감면: 테헤란 중심지에서 120km 이상, 이스파한에서 50Km 이상 등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5년간 법인 소득세 면제
- 투자 장려업종 감면: 테헤란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 과세 소득의 15% 공제

○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 면세

- 산업, 광산 및 서비스(병원 및 호텔) 업계의 모든 사업 활동에 대해, 총 과세소득이 등록 자본에 이를 경우 5년간 소득의 50% 세금 면제, 저개발 지역내 산업, 광산 및 서비스(병원 및 호텔)업계의 모든 활동에 대해 총 과세 소득이 등록된 자본의 2배에 이를 경우, 10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등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 Qeshem섬, Kish섬, Chabahar 항구 등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 법인 등록 절차의 간소화

- 20년간 면세 혜택 및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 자유무역지대에서의 모든 생산라인 기계 및 원자재 관세 감면
- 상품의 재수출이 유리한 기반 환경 조성, 이란 본토로 상품 수출 허용
- 자본 및 임금에 대한 송장 보장, 100년간 장기 부지 임대 허용, 노동법 적용 완화
- 무비자 출입국 허용 등 각종 편의 제공
- 외국은행 설립 허용

외국인 합작투자 승인절차

○ 산광무역부 및 품목별 관련 부처에 투자 의향서 제출

○ 투자지원청(OIETAI: Organization for Investment, Economic and Technical Assistance of Iran)에 합작 투자 승인 신청(총 심의 기간 45일)

○ 구비서류

- 합작투자 승인신청서
- 계약서(현지 파트너와의 계약서)
- 사업개요(Project Summary)
- 기타(신청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자료도 무방)

○ 외국인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Board: 경제관련 차관으로 구성) 심의 및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 승인

현지법인 승인절차

국내법률상 해외지사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해외사무소(연락사무소 : liaison office)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지점(branch)으로 구분된다. 이란 직접세법에서는 별도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는 외국회사의 지점(국내법률상 연락사무소와 유사)에 대한 과세 관련 규정을 두고 있

지만 양자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란 상법등에서도 연락사무소와 지점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란에서는 지점이라고 하건 연락사무소라 하건 그 설립절차와 법률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란에 연락사무소 또는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이란등기소에 설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소를 통해 관보 및 지정된 신문에 연락사무소 또는 지점 설치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점의 활동은 마켓팅, 정보 수집 및 판매후서비스(A/S) 등으로 국한되며 L/C개설이나 상품매매, 서비스 제공 등 영업활동은 예외적으로 허가되는 사유를 갖추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이란내에서 법인세도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란 내에서는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이나 사무소가 적지 않고, 이란과 관세청도 지점이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영업활동으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지점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란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회사는 이란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법인, 즉 자회사로 하여금 이란내 사업을 영위하게 할 수 있다. 100% 자회사로 설립할 수도 있고, 이란인 또는 이란법인과 합작하여 합작법인으로 설립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국내법인과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현지법인의 매출이 곧 바로 본사의 매출로 인식되지 않으며, 현지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현지법인의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법인설립은 상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능하다.

(1) 상법에 의한 법인설립

- 절차: 필요서류준비/제출(등기소) → 회사명 등록(등기소) /자본금 납입(은행) → 자본금 납입증명서 제출(등기소) → 관보 게재, 법인등록 완료
- 장점: 외투법에 의한 설립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음.

○ 단점: 종전에는 이란상법에 따라서만 법인을 설립할 경우 외국인투자지분비율이 49%이하로 제한되었으나, 2008년 12월 관련규정이 변경되어 FTZ나 SEZ가 아닌 이란본토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도 외국인이 100% 지분보유 가능.

다만, 투자분야에 따라서는 이란정부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설립

○ 절차: 투자허가신청(투자청) → 투자위원회 심의 → 투자허가 초안 수령 및 검토 → 투자허가서 발급(투자청) → 필요서류 준비/제출(등기소) → 회사명 등록(등기소) / 자본금 납입(은행) → 자본금 납입증명서 제출(등기소) → 관보 게재, 법인등록 완료

○ 장점: 지분 100% 확보 가능하며, 투자허가서에 투자금 보장, 기타 인허가(노동허가 취득 등) 업무를 투자청 협조 하에 진행가능

○ 단점: 소요기간 및 필요서류가 상대적으로 길고 복잡

○ 참고사항: 각종 인허가 취득 및 등기업무 등 행정절차 시 믿을 수 있는 이란인 업무대행자 필수(법무법인 등 대행시 소요기간 및 비용 증가)

(3) 자유무역지구(FEZ) 또는 특별경제지구(SEZ)를 활용하는 방법

○ 이란정부는 7개의 FEZ, 16개의 SEZ를 지정하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면제, FTZ 제조물품의 이란본토 반출시 FTZ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면세, 20년간 근거법률에 따른 법인세 면제, 자유로운 과실송금, 외국인 고용제한 완화, 노동규제 완화, 일부 FTZ의 경우 이란인 및 외국인을 상대로 소매업무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어느 FTZ 또는 SEZ 내에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에 따라 그 절차나 혜택이 달라짐

(4) 유한회사(LLC)/비공개주식회사(Private JSC)로 설립

○ 이란 상법의 회사 형태중 외국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형태는 유한회사(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와 비공개주식회사(PJSC : private joint stock company)임.

○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이란의 경우에도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각종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유한회사 설립이 선호됨. LLC의 경우 2인 이상의 발기인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며, 필수기관으로 이사만 두면 됨. 이사회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이사가 회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다만, 비공개주식회사(JSC)에 비하여 정부기관발주에 참여하거나 은행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비공개주식회사(private JSC)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며, 이사회 및 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함. LLC로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Private JSC로 설립할 것인지 여부는 합작을 할 것인지, 합작을 한다면 소수지분을 취득할 것인지 아니면 지배지분을 취득할 것인지, 현지법인의 주된 활동이 무엇인지(정부기관발주에 참여할 것인지)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음.

노동법규

이란의 고용 및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주요 법령은 1990년에 제정된 노동법, 이란장관회의 및 조합노동사회복지부에서 발령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란의 노동법규정 자체는 상당히 근로자 친화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근로관계 관련분쟁은 노동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이 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매년 이란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고시하는데, 2016/17 회계연도 월최저임금은 823만 리알, 2017/18 회계연도 월 최저임금은 14.5% 인상된 930만 리알이다. 2018/19 회계연도 월 최저임금은 19.8% 인상된 1,114만 리알

이다. 달러로 환산시 대체로 현지 대졸사업 임금은 800~2,000달러, 고졸사원 500~700달러, 생산직 및 잡급 400~600달러 수준이다.

○ 고용계약

- 현지법인의 경우 외국인 1명당 현지인 3명 이상 고용 원칙
- 수습기간: 비숙련공 및 반숙련공 최대 1개월, 숙련공 및 전문직 최대 3개월
- 계약 종료: 피고용인 사망, 퇴직, 사직, 임시직 계약 기간 만료
- 계약에 의한 작업완료
- 퇴직금: 일반적인 경우 근무연수 × 1개월(최저) 또는 2개월(최대) 급여, 피고용인 사망 시 근무연수 × 3개월분 급여 × 근무 연수

○ 노동세

- 외국인 근로자 연소득 30%에 상당하는 노동세(Labor Surcharge) 납부 의무(2008년부터 유예 상태)

○ 사회보장제도

- 피고용인의 급여에 대한 사회 보장세 납부
- 세율 30%(근로자 7% 부담, 고용주 23% 부담)
- 한-이란간에는 1978년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이란 주재 우리 국적자에 대한 사회보장세는 감면

○ 노조 관계

-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단체협약 및 계약 체결 가능
- 당사자 간 합의에 실패하여 파업 및 조업지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하고, 아예 불응시 중재 법정에서 최종 판결

국산화 의무

국내산업보호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정책 일환으로, 현 외국인 투자허가시 국산화 의무 및 일정 비율의 수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란 내에서 생산된 또는 생산 공급될 수 있는 장비, 자재, 서비스는 모든 정부 부처 및 기관, 은행, 공기업 등의 엔지니어링, 건설공사, 설비, 서비스 수행 시 사용되어야 하며, 각 계약의 총 가치중 적어도 51%는 이란내에서 조달(50% content law)되어야 한다.

투자 허가 지연

투자허가 단계가 복잡하고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나,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관련법 개정, 절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 과실송금

- 외국인 투자보호 및 촉진법(FIPPA)에 의해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으나,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에 대한 행정규제(대차대조표 검사,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의 통지 및 재정경제부장관 승인 등)가 일부 상존하고 있다.

○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 차입상 특별한 규제는 없다.

○ 현지 금융조달의 제한

- 기본적으로 이란은행은 외국계 업체에게 금융지원을 하지 않으며,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정부조달에는 수주자 측에 Buy-Back 또는 Financing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금융은 외국은행과 이란 은행의 상호 보증협약이 있을 경우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이란통화의 환전성 결여로 금융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 이란내에서 신용카드의 발급 및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이며, 대신 은행의 직불카드(debit card) 발급은 급격히 증가 추세이다. ATM등 자동화 기기 보급률도 높아지고 있다.

○ 외환거래는 의약품, 식료품 등 필수품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필수품에 대해서는 이란중앙은행에서 우대환율을 적용, 외환을 공급하고 있으며, 원부자재 등은 산업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긴요한 소비재 수입에 대해서는 통합외환거래시스템(NIMA: Integrated Transaction System of Foreign Currency)에서 외환 수요(수입자)와 공급(수출자)에 따라 정해지는 환율로 거래된다.

세제상의 제한

외국기업을 포함한 이란 내 모든 기업이 과세대상이며,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해 이란 내에 설립한 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지점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인소득세율은 25%이다.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소득에 대해 다양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0~25%의 세율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0~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기업의 주재원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작성한 기준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부과한다(인정과세).

외국지사는 사무소 형태와 무관하게 영업상의 이익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피고용인(이란인)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이란 SSO(Iran Social Security Organization)에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장세는 피고용인 급여의 30%에 해당하며, 고용자 23%, 피고용자 7%를 부담한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VAT)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수입에 부과되며, 2017년 부가세율은 9%이다. 공식세관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수출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관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 환급받아야 한다.[18]

지사 ·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기업은 이란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제재를 받게 된다.

---

18) 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84)

○ 지사·사무소 설치 허가 취득 의무화

- 외국 회사가 이란 내 지점(Branch)이나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 산하 회사 등록청에서 설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설립허가 요건이 강화되었다.

○ 지사·사무소 설치허가 절차

- 지사·사무소 설치허가 신청서(재정경제부 산하 회사 등록청)
- 설치 예정인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본사의 정관
- 본사의 재무제표
- 지사·사무소 설치 타당성 조사보고서(회사 영업 범위 및 내용, 설치이유, 인력, 운영자금 조달 등 포함)

이란 내 지사·사무소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자국 회계검사를 받은 연간 재무제표를 이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장벽

체류허가 출입국 제한

외국 상사 주재원들에 대해 1년간 유효한 노동허가를 주며 매년 허가를 갱신해야 하고 갱신시점에서 인정과세 되는 개인소득세의 완납 및 현지직원 추가 채용 또는 일정 비율이상의 수입 등을 점검하며, 제3국 출입국 시에는 세금 미납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출국허가를 발급한다.

신용장 거래 및 송금

이란과의 교역시, 원화결제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주거래은행(외환창구) 또는 해당금융기관의 신용장 개설 및 송금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표권 등록

많은 해외의 유명상표들이 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란 현지에 진출해 있으나, 이들 상표들에 대한 무단 사용 및 유사 상표 사용으로 인해 현지에서 심각한 상표권 침해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2007년 제정된 「특허·산업디자인 및 상표 등록에 관한 법률(“Patents, Industrial Designs, and Trademarks Registration Act)」에 따라 모든 등록 및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권리자들을 보호된다. 그런데, 위 법규정의 해석상 이란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침해에 대해서는 해당 상표의 보유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즉 이란에 등록되지 않은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 단 국제적으로 유명한 상표일 경우는 예외로 둔다. 현지 시장 진출시 자사의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MFN 관세 및 FTA 관세)

이스라엘의 관세는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따른 세제(MFN 관세)와 FTA 체결국에 대한 세제의 이중체계이다. 이스라엘은 1985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최초로 체결한 이래 2017년 현재까지 EU, EFTA, 캐나다, 멕시코, 터키, MERCOSUR, 콜롬비아 등 44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2017년 11월 현재 중국, 베트남, 인도, 우크라이나 등과 FTA협상 또는 관련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한국과는 2016년 6월 협상을 개시하고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FTA체결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MFN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관세분류방식으로는 HS코드를 채택하고 있다.

이웃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또한 이스라엘의 중요 현안으로 관세 및 쿼터면제 특별구역(QIZ-Qualified Industrial Zone) 설치 협정을 요르단(1997), 이집트(2004)와 체결하였다. 이스라엘이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시장이 개방된다 하더라도 자국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자국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MFN 관세 평균은 6.4% 수준이며, 제조업 제품에 대한 관세율

(평균 4.6%)에 비해 농산품에 대한 관세율(평균 24.5%)이 높은 편이다. 농산품 중 낙농제품에 대해 관세율은 10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관세 및 구매세는 재화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된 수단이다. 재화를 정확하게 분류해야 적용할 세율을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과 관련하여 적용해야 할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다양한 허가, 특허, 면허, 기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이스라엘 관세 당국은 요청할 경우 3가지 품목까지 무료로 분류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요청을 할 때는 해당 재화에 대한 정확한 설명, 기술 및 기타 정보에 관한 카탈로그를 포함해야 한다. 그밖에 관세 당국은 원료나 제품의 샘플, 실험실 분석결과, 연구기관 또는 공인된 대행기관의 허가, 수입 면허 및 특정 관세 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011년 여름에 이스라엘에서 발생하였던 대중 시위 이후에 이스라엘 정부는 급격한 물가 인상과 이로 인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식품 위원회를 설립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edmi 위원회」가 설립되고 동 위원회는 관세율을 더 낮추거나 영세율을 적용할 수백 개의 식품 리스트를 2012년 4월 2일 발표하였는바, 이스라엘 내 경쟁자가 없는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40% 내지 100% 감면하고 현재 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신선 소고기육과 같은 농산품 및 참치, 과일주스 같은 패키지 상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감면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를 토대로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이 2012년 7월 식품 등을 포함한 수백 개의 상품에 대한 관세와 구매세를 감면 혹은 면제하는 부령에 서명했으며 꾸준히 관세 및 구매세 폐지를 추진 중이다.

2017년 4월 재무부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빈부격차 완화 및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Family Net Plan을 발표하였다. 중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및 소득 지원과 휴대폰 등 일부 생활용품 시장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 구매세 15%가 4월부터 폐지되었으며 휴대폰 판매가격도 같은 수준으로 인하되었다. 추가적으로 유아의류(관세 6%), 신발(관세 12%) 관세율 폐지를 추진 중에 있다(*출처 현지 경제일간지 The Marker).

TAMA

이스라엘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TAMA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TAMA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서, 구매세와 연동되어 있다. TAMA의 가산율은 수입업자의 평균수익율과 국내산 상품가격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TAMA 및 구매세는 관세율표에 표기되어 있다.

예컨대, CIF 가격이 100달러이고 이에 대한 TAMA가 50%, 구매세가 10%일 경우, 구매세는 CIF 가격에 TAMA를 가산한 150달러에 대하여 부과되므로 최종적으로 가격은 165달러가 된다.

수입부과금

이스라엘 정부는 수입품의 CIF 가격에 대하여 1.02%를 부과하던 부두 사용료를 지난 2010년부터 폐지하였다.

수입규제

이스라엘 정부는 농산물의 경우, WTO, FTA 또는 기타 조약에 따라 쿼터 없이 무관세를 약속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복잡한 TRQ(Tariff-Rate Quota: 관세율할당)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 공중도덕, 환경, 안보상의 이유로 이스라엘 정부는 아래와 같은 17개 제품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주로 생물, 채소류, 과일류, 식품, 음료수, 가스, 위조지폐/동전, 해적판 동영상물·서적류, 무기, 폭발 물질, 마약 및 제조원료 등 사람의 생명, 보건, 공중도덕, 안보에 관련된 품목이 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자유수입명령(Free Import Order of 2008)의 특정 제품군(동식용육, 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스크랩(scrap), 자동차, 비행기 등)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허가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수입허가는 품목에 따라 경제부,

농업부, 보건부, 환경부 등에서 발급된다. 일반적으로 수입허가 발급까지 약 10일이 소요된다.

수입금지품목

- Wine, spirits products and grape juice with incorrect geographical indications
- Matches made from white or yellow phosphorus
- Licentious or indecent films
- Currency note, bank notes or coins which are legal tender in any country or which have been at some time legal tender in any country, whether counterfeit or imitation
- Tickets or publicity items for lottery or gambling
- Sales invoice from that is a form or other paper which purports to be a form which is possible to fill in blank spaces so as to use it as a sales invoice for goods from foreign countries
- Used bags for packaging vegetable material
- Knives, cutlasses, spears and swords having a serrated point or sharp blade, except for knives which are of a kind for professional work or domestic use
- Disruptive instruments of laser special measuring meters
- Firearm resembling a pen, starting pistols, items activated by gas etc
- Nerve gas container resembling a gun
- Games of chance or part of them as defined in the Penal Code
- Goods of all types which carry a false commercial description as defined in the Comsumer Protection Law of 1981
- Postal package containing live creatures such as vipers, explosives, inflammable materials and other dangerous packages.
- Used equipment for bee farming
- Goods that can be used as tools for preparing or consuming dangerous drugs as defined in the Dangerous Drug Order
- Goods that can be used to incite violence, terror or racism as defined in Chapter H of the Penal Code

출처: 이스라엘 경제부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가 많으며, 무역 상대국에 관한 제약이 있다.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아제르바이잔 등 5개국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는 있으나 일부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UAE, 이란 등 28개국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가 없으며 이스라엘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려면 경제부로부터 수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스라엘 정부가 수입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국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는 있으나, 품목에 따라서는 수입허가를 요구하는 국가
동티모르,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스라엘과 외교관계가 없으며,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
UAE, 인도네시아, 이란, 알제리,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튀니지,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수단, 시리아, 오만,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차드, 카타르, 쿠바, 북한, 캄보디아, 예멘

출처: 이스라엘 경제부

수출통제

수출 금지 품목은 없으나, 일부 식품, 신선농산물,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유대교 문헌 등 일부 품목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수출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령(Free Export Order of 2008)의 제1부속서와 제3부속서에 수출통제가 되는 품목이 적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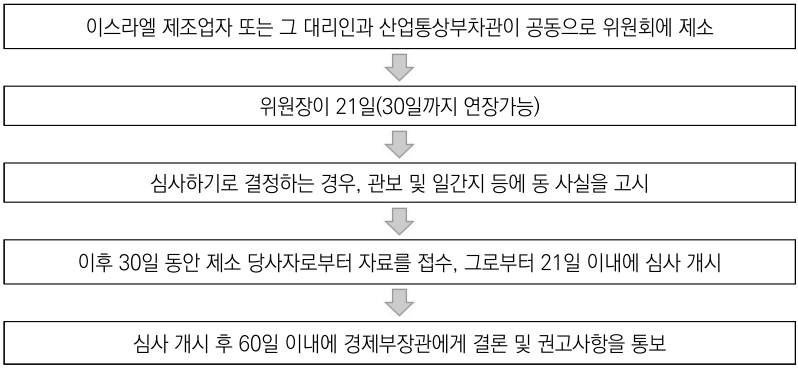
이스라엘은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rrangement) 가입국은 아니나, 2006년 8월 정부령으로 군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품목(dual-use item)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부가 발행하는 특별수출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특별수출허가 취득 대상품목은 바세나르 협약에 바탕하여 경제부가 작성하며,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또한 적성국 교역령(Ordinance on Trade with Enemy State)에 따라 이란, 레바논, 시리아에 대한 교역이 금지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이스라엘은 1991년 제정된 무역과세법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가 운영하며, 위원회 심사는 비밀리에 진행된다.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절차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라벨링 관련 장벽

이스라엘은 매우 엄격한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수입업자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스라엘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소비자보호법(The Consumer Protection Law)은 모든 소비재제품에 부착되어야 할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다. 부착 정보는 제품명, 원산국, 생산자나 수입업자의 이름과 ID number, 주소, 제품의 중량, 상표(있을 경우) 그리고 원료 등이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라벨은 히브리어로 표시되어야 하며, 영어로 추가

표기할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히브리어 글자 크기보다 작아야 한다. 물품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표시내용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제품이나 원료가 유전적으로 변형될 경우에 적극적인 라벨링이 요구된다. 독극물, 살충제, 마약, 화기성 물질, 탄약, 폭발물, 파충류, 곤충, 박테리아, 방사능 물질과 같이 위험한 품목을 담은 용기는 명백하게 마킹하여야 한다.

표준, 검사

특정 수임품은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표준원(SII: Standards Institution of Israel)의 검사가 필수적인 데, 4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는다.

규격 충족 여부 검사대상 품목 그룹

1그룹	공중보건 또는 안전에 높은 수준의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품목
	완구, 가전제품, 압력용기, 휴대용소화기 등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해서는 모든 해당 화물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함.
2그룹	공중보건 또는 안전에 중간 수준의 잠재적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품목
	선글라스, 각종 밸브, 관 이음쇠(pipe fitting), 카펫, 지붕방수시트 등
	한 번 검사를 받은 후에는 수입업자가 그 후의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은 품목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신고하면 검사가 면제됨.
3그룹	공중보건 또는 안전에 낮은 수준의 내재적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품목
	도제벽 타일 등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규격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수입업자가 신고할 필요가 있음.
4그룹	일반소비자용이 아닌 산업용 품목
	전기산업용 부품 등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한 별도의 증명이 필요 없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안전규격을 자국의 안전규격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표준원은 최근에 유럽 표준화 위원회(CEN)와 유럽 전기기술 표준화 위원회(CENELEC)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스라엘의 표준화법(Standards Law of 1953)은 이스라엘 표준원이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 제조업자 대표 및 소비자 대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스라엘 표준원이 제정하는 표준은 모두 임의표준이며,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수렴 및 관보 게재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를 이행이 의무화되는 강제표준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 이스라엘 표준원은 약 3,260여개의 표준을 공포하였는데 이중 550여개는 공식표준이며 200개가 강제표준이다. 2007년부터 표준원은 국제표준을 도입하였다.

식품에 대한 코셔 인증서 취득문제

유대교 율법의 음식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른바 코셔(kosher) 인증서는 별도로 유대교 랍비(율법학자)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해외에 있는 외국기업이 이를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육류 및 육류제품의 경우 코셔 인증서가 없을 경우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코셔 인증서가 없는 육류의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하고 있어 외국산 육류에 대한 차별조치를 취하고 있다. 육류 및 육류제품을 제외한 음식물을 이스라엘로 수입할 때 코셔 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수요자들이(식품 소비자의 60%~70%) 코셔 인증서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상 반강제적인 성격이 있다.

통관 절차

통관 서류

이스라엘 통관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증권, 포장명세서, 수입 허가서, 원산지 증명서, 특별확인증 등이다.

- 선하증권: 환적 가능하고 도착지 내 에이전트명 및 연락처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 포장명세서: 필수 서류는 아니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필요하다. 포장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상업 송장에 포장 내용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상품은 가능하면 팔레트에 포장하거나 컨테이너에 적재하도록 되어 있다. 팔레트나 컨테이너 별 별도 패킹 리스트가 필요하다.
- 수입허가서: 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등 수입허가서 취득이 의무인 품목의 경우 반드시 수입허가서를 사전 취득해야 한다.
- 원산지 증명서: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경우 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나 한국은 아직까지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포장박스, 상품포장 등에 Made in Korea를 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 특별확인증: 산 동물, 주류, 과일, 채소, 광물 합성제품 등 일부 품목에 해당된다.

수입 통관

이스라엘 항구에 도착한 화물은 관세청이 지정한 국가 보세창고나 기타 지역에 보관할 수 있다. 창고료는 10톤 이상의 상품 보관의 경우 10일까지 면제된다(10톤 이하 30일).

관세청 통관 담당자에게 통관 신고만 하면, 환적 및 재수출 하역도 가능하며 90일 이내 재수출이 되어야 한다.

컨테이너 및 포장용 물품은 다음 항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임시 수입이 가능하다.

- 재수출이 돼야 한다.
- 외국인 공급자(수출자)의 소유물로 최종 귀착(사용료 지불 불문)
- 보관세 징수가 가능해야 한다.
- 12개월 이상 혹은 관세청 연장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없다. (담배원료, 항공 및 여객용 스토어 물품, 특권층이나 특수 집단에게 수여되는 물품→ 외화 낭비 제거 차원)

- 인화성, 폭발성분의 물품은 관세청이 특별 지정한 창고에 보관한다.
- 환적 및 임시 보관용 통관은 사전에 관세청, 통관 당국과 인증 은행의 외환 관리국에 통보해야 하며 하역료, 보험료, 항구세 등을 외화로 지불하지 않고는 재수출이 불가능 하다.
- 수입 시 선박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 상품 표시는 Printing, Engraving, Stamping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라벨 부착이 가능하다.
- 색깔을 달리하여 쉽게 구별 가능해야 하며 각 포장별 상품 표시를 해야 한다.
- Sub packages를 포함한 최종 포장지는 다음의 명세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Sub packages의 개수와 내용물
  - 총 중량과 순 중량
  - 물품 특성상 중량 손실가능성에 대비 예상 최대치

통관시 유의사항

대 이스라엘 수출 시 유의할 사항은 선박이 이스라엘 항구 입항 전에 이집트와 요르단을 제외한 사우디, 예멘, 리비아 등의 아랍국 항구에 입항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목적지로 한 수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중개인을 통해야만 통관되므로, 통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절충교역

경쟁입찰법(Mandatory Tenders Law, 1992)에 의거하여 공공기업이나 정부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달은 반드시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공개입찰은 이스라엘에서 발행되는 2종의 신문에 입찰공고 시 게재되고, 정부조달협정상의 입찰의 경우는 영자신문에도 관련 정보도 게재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WTO 정부조달협정 서명국이나, 국방부의 조달에 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정부조달협정은 절충교역(offset) 계약체결의 반대급부로서 현지조달, 기술이전, 투자, 구상무역(counter-trade) 등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이스라엘은 WTO 가입 교섭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절충교역이 인정되었다.

이스라엘은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 조달의 경우, 계약금액의 35%(GPA 서명국일 경우 20%)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닌 조달로서 거래금액이 5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방산 물자는 계약금액의 50%, 비방산물자는 35%(GPA 서명국일 경우 28%)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경제부 산하 산업협력청(Industrial Cooperation Authority)이 관할하고 있는데, 외국기업의 절충교역 의무이행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국제협력계약을 통하여 이행되며, 동 계약에 따라 외국기업은 이스라엘의 정부조달사업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이스라엘 산업에 대한 투자,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개발·공동생산,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하청 또는 이스라엘 기업으로부터의 구매의 방식으로 상쇄(offset)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정부조달 입찰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과의 거래가 많은 유럽이나 미국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절충교역 의무이행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나, 이스라엘과의 거래가 많지 않은 한국기업의 경우 절충교역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자국기업 우대

이스라엘 국회는 1995년 정부의 이스라엘 제품 우대규정(Preference for Israeli Products and Mandatory Business Cooperation Regulation)을 승인한바, 동 규정에 따라 정부조달 입찰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스라엘 제품이 외국산 제품보다 응찰가격이 15% 이내 범위에서 높더라도 이스라엘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투자장려법(Law for the Encouragement of Capital Investment) 상의 우선지역(Priority Area)에 소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의 경우, 5~15%의 추가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제품 우대규정 적용요건

- WTO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닐 것
- 이스라엘산 부품 사용비율이 최소 35%일 것
- 가격이 355,000SDR 이하일 것

다수의 정부조달 입찰사업에서 이스라엘 발주처가 무한책임조항(unlimited liability clause)을 삽입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권(Patent)은 특허법(Patent Law of 1967)에 따라 보호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의약품의 경우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허 출원상황은 매월 발행되는 'Patents and Designs Journal'에 게재되며, 제3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파리조약 가맹국이며, 1996년 6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도 가입하였다. 연평균 약 6,817개의 특허가 신청되며 그중 50% 이상이 등록된다. 특허 신청의 85% 이상이 외국인 신청이고 이스라엘인 신청은 15% 미만에 해당한다(출처 Israel Patent Office 발간자료).

의장권(Design Right)은 특허의장권령(Patent and Designs Ordinance)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물건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기간은 5년이지만 5년 단위로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연평균 약 1,866개의 신규 의장권이 신청되며 그중 75% 이상이 등록된다(출처 Israel Patent Office 발간자료)

상표권(Trademarks)은 상표권령(Trademarks Ordinance of 1972) 및 상표권규칙(Trademarks Rules of 1983)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7년이며,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한 1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연평균 약 9,474개의 신규 상표권이 신청되며 그중 80% 이상이 등록된다(출처 Israel Patent Office 발간자료)

저작권(Copyright)은 영국통치시대의 저작권령(Copyright Ordinance of 1924) 외에 저작권명령(Copyright Order of 1953)에 따라 보호되었으나, 2007년에 저작권법(Copyright Law of 2007)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후 2011년 7월 28일 개정된 바 있다. 보호기간은 음악 및 예술품의 제작일로부터 50년, 여타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한 후 70년까지다.

투자 장벽

투자 환경

이스라엘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국가 안보 영역의 산업과 일부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외국의 투자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다. 특히 기업의 인수, 합병, 강제매수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나 여과장치가 없다. 외국인 투자자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민영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나 보험과 같은 규제 산업에 대한 투자는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특정 부문은 정부의 면허가 필요하다. 또한 통상 국가간 조약에 기초하여 다른 규제가 적용될 수도 있다.

외국인 투자 장려책

이스라엘 정부는 1959년 제정된 자본투자장려법(Law for the Encouragement of Capital Investment, 5719~1959)에 따라 인가한 투자안건에 대하여 경제부 투자센터가 제공하는 투자보조금 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제세감면의 투자우대조치를 제공함으로써 국내투자 촉진과 외자도입을 도모하고 있다.

투자우대조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부 투자센터(Israel Investment Center)를 통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동 센터는 이스라엘의 발전된 인프라, 고학력이 근로인력, 개방 경제, 미국 및 유럽과의 유대 등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에서 이용 가능한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안건의 인가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고부가가치 여부, 최소투자액 충족 여부, 이스라엘에서의 회사등록 등이다.

상기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이 된 투자기업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투자보조금 혜택에 중점을 둘 경우, 투자센터로부터 인가기업(Approved Enterprise) 자격을 받고, 제세감면 혜택에 중점을 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선호기업(Preferred Enterprise) 자격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 정부의 투자우대조치 내용은 투자대상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을 우대지역과 그외 지역, 두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투자 및 개발 촉진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투자우대조치 내용에 차등을 두고 있다

※ 투자우대지역: 갈릴리 지역 북부, 요르단 계곡, 네게브 지역, 예루살렘(하이테크 기업만 해당)

세금혜택은 보조금 수령 여부, 투자지역, 외국인 투자비율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최소 30만 셰켈을 투자우대지역에 투자하면서 보조금 수령 권한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법인세의 투자지역구분에 따라 2년에서 10년까지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비율 높을수록 세금 감면 비율이 크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비율이 90% 이상 되

는 기업의 경우 7년간 23.5%의 세금만 부담한다.(일반 비인가기업의 경우 50.5% 부담)

투자 분쟁 조정

분쟁 조정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은 수정된 영국 회사법(1948년)에 기초하여 문서화되고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법은 기업의 파산이나 청산을 규율하는 표준규정을 두고 있다. 개인 파산은 별도의 파산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화폐와 관련된 재판은 항상 현지화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 간의 투자 분쟁에 대한 국제적 중재의 구속력을 존중한다. 이스라엘은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와 외국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관한 1958년 뉴욕협약의 회원국이다.

이스라엘에는 투자성과에 대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은 없으나 국가와의 구매계약에는 투자요건을 포함한 성과요건이 종종 포함되어 있다. 부문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국민이 기업의 일정 부분을 소유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이 있다. 이스라엘에서 비자와 거주 조건은 다소 까다로운 측면이 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수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은 TRIMS(무역관련투자조치)를 따른다.

외국인 토지거래

이스라엘 토지의 10%만 사유지이며 나머지 90%는 이스라엘 토지청(Israeli Land Administration)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토지의 경우 매매가 아닌 장기임대 방식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다.

외국인 회사는 국내인과 동일하게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토지를 매입하기 전 이스라엘 토지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업

외국은행이 이스라엘에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스라엘 은행법 5741-1981에 따르면 국내외 은행을 불문하고 은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자본 1천만 NIS(약 270만 달러)이어야 한다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와 은행허가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① 허가신청자의 사업계획, ② 주주와 이사회의 적절성, ③ 이스라엘 정부의 경제정책, ④ 공익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은행이 이스라엘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은행의 이스라엘 진출을 위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

- 母銀行이 설립할 은행의 업무 및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고도의 능력 및 시스템을 갖출 것
- 母銀行이 거래액, 안정도, 경영, 평가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리고 있을 것
- 母銀行이 있는 국가가 자국 내에 이스라엘 은행의 지점 설립을 인정하고 있을 것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은행 소유자의 국적은 불문하나, 경영 현지화에 관한 기준이 있다. 그 주요내용은 이사의 2/3가 이스라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CEO는 항구적인 이스라엘 거주자일 것 등이다.

이스라엘은 상업은행 Bank Hapoalim, Bank Leumi 등 16개가 영업 중이며, 외국계 은행으로는 Barclays, BNP Paribas, Citibank, HSBC, State Bank of India 등 총4개 은행이 지점을 개설하고 있다(출처 이스라엘 중앙은행 발간 자료)

보험업

이스라엘은 1981년에 제정한 보험법(Insurance Law)으로 외국기업의 보험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보험회사를 설립한 외국기업은 자본을 해외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내에 투자해야 한다.

1998년에 제정된 보험거래규제(Insurance Transaction Regulation)는 보험회사의 최저자본액을 생명보험 3,500만셰켈, 일반보험(손해보험) 4,000만 셰켈, 생명·손해보험 6,000만셰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광업

이스라엘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의 호텔이나 여행사는 이스라엘 정부에 등록해야만 한다. 또한, 여행사는 이스라엘 정부가 공인한 여행에 관한 전문가를 최소 1명 이상 고용해야만 한다.

출자비율 제한

이스라엘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단, 군수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통신 분야에서는 외국인 지분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자본 거래

이스라엘은 1993년 외화교환규제를 폐지하였으며, 1998년에는 준비기금, 보험 및 연금기금에 의한 외화자본거래 그리고 비거주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자본거래규제를 철폐하였다. 나아가 2000년 10월에는 보험회사나 연금기금도 외화나 외국자산(외국 부동산 및 증권 포함)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비거주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가 이스라엘에 30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제도 철폐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완화에 따라 외화자본거래는 마지막 규제가 폐지된 2003년 1월 1일에 완료되었다. 이로서 외환 통제는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스라엘 셰켈(Shekel)은 자유롭게 환전가능한 통화가 되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외국시장에 투자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스라엘 기업이나 증권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Shekel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이 Shekel 계좌를 외환으로 교환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대부분의 거래는 승인받은 외환딜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승인받은 외환딜러란 고객을 위해 외환거래를 주선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승인받은 외환딜러는 대규모 외환거래를 외환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윤, 부채 서비스 및 자본이득의 송금에 특별한 제한이나 심각한 지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정부는 2000년 6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의 금융활동작업반(FATA: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이 이스라엘을 돈세탁·부정 방지 비협조국 명단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2000년 8월 돈세탁방지법(Prohibition on Money Laundering Law, 5760-2000)을 국회에서 가결시켜 돈세탁 및 부정 방지를 위한 국제협조체제에 협력하게 되었다. 동 법에 따라 2002년 2월 17일부터 출입국자는 출입국시의 자금이동을 아래 기준에 따라 세관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2002년 6월 이스라엘은 OECD의 돈세탁·부정 방지 비협조국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나, 동 신고 의무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스라엘 출입국시 자금이동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자

- 총 5만셰켈을 초과하는 자금(현금, 은행수표, 여행자수표, 양도성 증권, 무기명 채권, 재충전카드)을 소지하고 있는 자

  ※ △Nitanza 국경, △Taba 국경, △Jordan River 국경, △Yitzhak Rabin 국경, △가자 지구로 연결되는 모든 국경의 국경 검문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1만 2천 세켈 이상의 자금을 소지할시 신고해야 함.

또한,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이 아래와 같은 거래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법무부 산하 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청(Israel Money Laundering and Terror Financing Prohibition Authority)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청에 대한 의무적 신고대상

- 5만셰켈을 초과하는 외화교환
- 해외로부터 이스라엘로의 100만셰켈을 초과하는 송금
- 이스라엘에서 해외로의 100만셰켈을 초과하는 송금
- 기타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기타 장벽

외국인의 취업에 대한 규제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취업비자 종류는 단 하나로 (B1) 비자로 불린다. 취업비자 발급 해당 업종으로는 건설업, 농업, 요식업(요리사 자격증 소유자), 전문가(대학 교수 또는 강사, 다국적기업 대표 또는 이사, 연구소 연구원, 의학전문가 등), 간병이다. 건설, 농업, 요식 간병 업종의 경우 이스라엘 자국민 취업 비중이 낮은 업종으로 분야의 해외 인력을 채우려는 목적에 따라 비자 발급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는 기업은 외국인 전문가에게 최소한 8천 셰켈을 월급으로 지불해야 한다. 단,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규정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 관계자, 보건부가 지정하는 의료 관계자, 예술가, 운동선수, 이스라엘 평균 월급(2018년 10월 기준 10,302.7셰켈; 출처: 이스라엘 통계청)의 2배 이상을 받는 급여 취득자, 이스라엘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는 특수한 전문분야 종사자, 외국기업의 매니저 또는 대표자, 언론 관계자, 외국정부기관 관계자, 외국항공사 관계자, 3개월 미만 체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체류허가 및 발급절차

이스라엘에서 노동을 하면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고용주가 내무부 산하기관인 Population and Immigration Authority에서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취업허가 취득 후 비자 발급 요청을 신청하게 된다. 취업허가에서 비자 발급까지 통상적으로 3개월 가량 소요된다. 취업비자의 유효기간은 보통 1년이 부여되며, 최장 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취업비자 신청절차는 신규 및 갱신 모두 관련 서류가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고, 절차가 번잡하면서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이용하여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외국인 전문 인력을 채용한 고용주는 취업 허가 신청 시 수수료로 1인당 1,190셰켈을 지불해야 하며, 매년 비자 신청비용 9,500셰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을 위한 비자취득 절치 및 비용은 고용주 부담이기 때문에 자국민 노동력이 다소 낮은 업종 또는 특별한 전문성을 지닌 외국인을 제외한 일반 채용의 경우 비용 및 소요기간을 고려해 자국민 고용을 선호한다.

2007년 2월 15일부로 이스라엘 정부는 매니저급 직원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자와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서는 취업사증 갱신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정당한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1년 징역 또는 11만 세켈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집트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이집트 정세

역사적으로 중동지역의 선도국 중 하나였던 이집트는 1952년 공화정 출범 이후 장기간 군부인사의 집권하에 있었다. 2010년 말 튀니지의 민주화 운동으로 촉발된 중동 민주화 바람은 이집트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당시 이집트 국민들은 무바라크 대통령의 30년 독재 아래에서 가난과 실업, 빈부격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2011년 1월 25일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고 2월 11일 무바라크 대통령이 전격 사퇴하였다.

무바라크 퇴진 이후 정권을 위임 받은 군부는 2012년 5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고, 이슬람교 기반 야권 세력이던 무슬림형제단의 후보였던 호스니 무르시가 51.7%의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실질적인 첫 민선 대통령으로 정통성을 보유한 무르시는 충분한 수권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사실상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군부는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다. 결국 무슬림형제단의 지지에 기초한 무르시 대통령은 권한 강화를 위한 '신헌법'을 제정, 2012년 12월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함으로써 실권을 가진 대통령이 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나 무르시 정권하에서 이슬람 세력이 신헌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무슬림형제단원들이 주요 정부 요직에 임명되어 이슬람 정책을 추진하는 데다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후 2년이 넘도록 계속된 외환보유고 감소, 실업률 증가, 재정적자 심화, 전력 및 연료 부족 등의 경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자 결국 민심은 무르시 대통령을 뒤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반(反) 무르시, 반(反) 무슬림형제단 정서가 고조되면서 야당과 이집트 국민들은 무르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13년 6월 30일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군부는 무르시 대통령의 사임을 압박하다가 같은 해 7월 3일 결국 무르시 대통령을 강제 축출하게 된다. 이에 반발한 무르시 지지자들의 항의 시위가 시작되었고 이는 반 무르시(세속주의) 세력과 친 무르시(무슬림형제단)간 유혈 충돌로 비화되었다. 양세력간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군부는 2013년 8월 14일부터 나흘간 친 무르시 시위대를 강제진압 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식집계로만 8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무르시 대통령 축출 후 군부는 아들리 만수르 헌법재판소장을 임시 대통령을 내세워 국정을 운영하면서, 정치 로드맵 3단계(개헌-대선-총선)에 따라 2014년 1월 개헌, 2014년 5월 대선을 실시하여 무르시 정권하에서 국방장관이었던 압델 파타 알시시를 9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된다. 2015년 10~12월간 의회 선거가 진행되어, 2016년 1월 신의회가 구성되어 정치로드맵 3단계를 마무리하였으며, 현 알시시 정권에 우호적인 의회가 구성되었다.

2014년 6월 알시시 정부는 과거 이집트혁명 과정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의 상처를 봉합하고, 군부 및 세속주의 세력,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무슬림형제단 및 이슬람 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또한 테러단체로 낙인 찍혀 불법단체가 된 무슬림형제단이 무르시 전 대통령(수감하에 여러 죄목으로 재판 진행중)의 정통성과 복권을 주장하며 일부는 극단세력화됨에 따라 대테러 역시 신정부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였다.

알시시 대통령은 집권 이후 시나이 반도 대테러 작전 등을 통하여 이집트 내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중동지역 현안들에 대한 이집트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하여 이집트의 대내외 정치적 안정 회복에 주력하였다. 또한 2016년 11월에는 이집트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외환부족, 재정적자 가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IMF로부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12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받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변동환율제 시행, 각종 보조금 삭감, 부가가치세 도입과 같은 과감한 경제개혁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알시시 대통령 집권 하 이집트는 2011년 아랍의 봄 혁명을 겪은 국가 중 유일하게 안정을 되찾았으며, 알시시 대통령은 2018년 3월 실시된 대선에서도 97%의 득표율(투표율 41.05%)로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 2018년 6월 출범한 알시시 집권 2기는 대테러와 국가안보를 중시하며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집권 1기의 정책 노선을 큰 틀에서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 안정을 위하여 대입 시험 개편, 의료보험 도입, C형 간염 퇴치, 저소득층 보호 등 교육, 보건, 사회분야 개혁에도 힘쓰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이집트의 관세율 조정은 일정 계획보다는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에 따라 품목별로 조정하는 형태를 주로 취하고 있으며, 이집트는 시장개방 정책과 WTO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 개방 폭을 확대하면서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자동차, 주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1992년 최고 관세율이 100%였으나 1993년에는 80%, 1994년 70%, 1996년 55%, 1997년 50%, 1998년 43%로 점진적으로 인하하였으며, 2003년 3월에는 공업원료, 생필품 및 일부전자제품, 디지털위성방송수신기 등 23개 품목에 대해 2~30% 범위로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였다. 중간 생산재 및 산업설비의 경우 수입규제를 완화하고 최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04년 7월 출범, 경제개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Nazif 총리 내각은 2004년 9월 6,500개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파격적으로 평균 40% 인하한데 이어 2007년 2월 1,114개 품목의 관세를 25% 인하, 2008년 4월 급등하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주요 생필품과 가정용 가전제품, 의료용품 및 중간재

11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2~30% 인하하였다. 또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성장 촉진 및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으로 2009년 1월 중간재 및 자본재 25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기존 5~10%에서 0~5%대로 인하를 단행하였다.

이집트 정부의 지속적인 관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40~135%), 화장품과 위스키(최고 3,000%)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40% 이상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2013년 3월 이집트 정부는 썬글라스, 시계, 비디오게임기, 해산물, 선박 등 100개의 사치 품목에 대해 5~40%의 관세 인상을 취하였다.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심 악화를 우려해 이집트 정부는 관세인상 대상 품목을 이집트 일반 시민에게 필요하지 않는 비필수수입품목으로 한정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수입억제를 통한 무역적자 개선 및 자국 제조업 육성 목적으로 2016년 1월에는 대통령령(No.25, 2016)으로 소비재를 중심으로 관세를 종전 10~30%에서 20~40%로 일괄 인상하였다. 2018년 9월에는 대통령령(No.419, 2018)으로 전체 관세부과 항목 중 약 40%인 5,791개 항목에 대해 관세율을 조정하였다. 원자재, 자본재 및 식품, 약품 등 기초소비재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완제품과 공산품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관세율이 인상되었다.

이집트 관세율은 국내시장 규모 및 산업구조가 비슷한 타 개도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이집트 투자청(GAFI)에 의하면, 이집트의 총 수입통관 절차 소요기간은 알렉산드리아, 다미에타, 포트사이드 항 14일, 아인소크나 항이 16일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항구들이 평균 24일 및 OECD 가입국가들의 평균 10일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우수한 편으로 평가된다.

이집트 세관 당국은 관세가액 평가 시 송장에 기재된 CIF 가격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과세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송장가격보다 10~30% 정도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집트는 세계관세기구(WCO) 및 WTO

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관세과세가격 산출시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제9조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식품 등 대부분의 수입 통관 시 품질조사 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통일된 통관 검사 규정의 미비로 일선 행정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한편, 바이어 평가, 상담용, 전시회 등으로 수입되는 견본품의 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상당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사원 이삿짐 반입시 상품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자의적인 판정을 남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2009년 6월부터 이집트 세관이 원산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정의 변화는 없으나 규정의 집행이 엄격해진 분야는 △Double Origin의 경우 수입 불가,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및 △주한 이집트 대사관 인증 등이다. 중국에서 선적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2009년 2월 이집트-중국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중국내에서 선적 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및 관련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이집트 관계 당국(Central Customs Authority 및 General Organization for Export and Import Control)은 중국 공산품의 이집트 수출 시 Pre-shipment Inspection을 규정한 이집트-중국 간 협정 외에는 통관 관련 변경된 규정은 없고, 원산지 관련 규정도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밝히고 있다.

Double Origin 문제는 원산지 규정상의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집트 원산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품 표면, 선적서류, 원산지 증명서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이 가운데 불일치한 사례가 있으면 Double Origin을 사유로 원칙적으로 통관이 불가하다.

한국에서 선적된 제품의 일부 부품에 타국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으면 원칙

적으로 해당 부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국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

한편 중계 무역의 경우 그리고 부품 중 일부를 주변국에서 아웃 소싱하는 경우는 Double Origin에 해당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그 동안 Double Origin을 세관에서 지적한 사례는 있었으나, 대부분 현지 수입업체와 세관간의 협상을 통해 큰 문제없이 물건이 통관되고 있는 실정이다(물건 중 일부부품에 표기된 타국 원산지 표기를 수작업으로 삭제하고 통관한 사례도 있음). 그러나 최근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상의 여지가 없고 ship back이나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는 주한 이집트 대사관의 인증이 들어간 원본의 제출이 필요하나 그간 사본으로도 통관에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원본 및 대사관 인증이 없는 경우 통관 보류 및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주한이집트대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쳐야 한다. 특히 이집트 세관당국은 원산지증명서 분실로 인해 당사자에게 다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비용으로 몇 부를 더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신용장 개설 통제

현재로서는 신용장 개설에 관해 정부나 중앙은행의 규제가 없다. 따라서 각 은행은 신용장 개설 의뢰자의 신용을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외환보유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 상당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수입규제

이집트는 1986년 7월 210개의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한 이래 수입금지 품목을 계속 축소하면서 관세율 인하와 함께 수입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질적인 외환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무역적자 해소차원에서 각종 수입억제책이 발표/시행되고 있다. 예를들어 이집트 정부는 2016년부터 모든 수입건에 대한 대금결제시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수입대금의 100% 은행예치, 선적서류의 은행간 송부 의무화, 자국내 제조기반이 있는 소비재 25개 품목에 대한 공장등록제, 수입을 담당하는 회사의 지분 중 51% 이상이 이집트인의 것이어야 한다는 수입업자 등록법(Importer's register Law No.7/2017)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집트는 수출입관리법(Import and Export Law No.118/1975)이 명시하고 있는 수입규제 및 관리품목에 따라 가금류 등 아래 9개 품목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101개 품목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 중고 제품의 경우 별도로 수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아래 13개 품목 이외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수입 금지 9개 품목

1. 이슬람 신념에 반하는 디자인이나 상표가 부착된 제품
2. 닭고기 내장 및 다리
3. 가금류 내장
4. Oil Injection 펌프를 장착하지 않은 Two stroke Motor-bike
5. 모든 종류의 석면
6. 석면으로 제작된 브레이크 패드
7. 유전자 조작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참치
8. DDT등 127개 종류의 화학제
   - 농업용 살충제 및 살균제는 농업부 장관 허가를 받은 후 수입 가능
   - 수입금지 살충제 및 화학제 내역은 별도 리스트로 관리

9. 중고 제품

- 수입가능 중고제품은 별도 리스트로 관리하고 있으며 총 13개 품목 군은 수입 가능

수입가능 중고 품목

1. 중고 생산 라인, 기계 및 부품

- 가정용 중고 전자제품 및 부품은 수입 불가
- 컴퓨터 및 부품은 제조 후 10년 이내의 제품만 수입 가능
- 환자용 침대를 포함한 의료용 기계, 장비는 보건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입 가능
- 제조과정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이 사용되지 않는 품목이어야 함.

2. 차량 및 부품

- 중고 오토바이는 수입금지
- 차량 부품은 특정품목만 제한적 수입가능 : Fenders, doors, engines, gearboxes, body parts, damper, differentials, rims, dashboard, springs
- 승용차: 제조 후 1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9톤 이하 화물차: 제조 후 1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9톤 초과 화물차: 제조 후 5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특수목적용 차량: 제조 후 5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Road Tractor: 제조 후 7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차량, 크레인 차량, 콘크리트 펌프 차량은 차령에 관계없이 수입 가능
- 항공기 및 부품은 민간 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의 허가필요

- 어업용 선박은 교통부 장관의 허가 필요
- 관광·화물용 선박은 교통부 등 주무 장관의 허가 필요

3. 기계, 장비, 스포츠 장비

4. 컨테이너

5. 무기류
- 내무부 장관 허가 필요

6.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
- 이집트 공군이 구입하는 경우만 허용

7. 철로용 Metal 스크랩 및 폐기물
- 철도 차량용 부품에 포함 불가능
- 통관 전에 사용할 예정인 철로가 철거되어야 함.
- 수출 당국으로부터 내용물의 위험성이 없다는 내용의 공식 인증필요

8. 합성 플라스틱 폐기물, 스크랩
- 환경부로부터 허가 필요

9.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재 및 제품
- 투자청(General Authority for Investment)의 허가 필요

10. 폐지 및 폐잡지
- Ministry of Information의 허가 필요

11. 섬유를 사용한 밧줄 및 넝마
- Industrial Control Authority의 허가를 필요

12. 예술품

- 문화부 허가 필요

13. 금속 및 목재 기둥 및 지지대

- 이집트 기업의 건설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경우만 가능

14. 전기차

- 2018년 3월 산업부 장관령으로 허용

품질 검사 대상 품목 현황

의약품 및 의료기기, 화장품 등은 별도의 수입승인과 더불어 까다로운 성분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일부 전기, 기계제품의 경우에도 국제공인 인증 규격이나 품질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품질 검사 대상 품목은 총 101개 품목으로 수출입관리기관인 GOEIC의 검사와 검사 수수료를 납부한 후 통관이 가능하다. 의료기기의 경우 CE 마크가 없는 경우 판매가 어려우므로 이집트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CE 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이집트 정부는 WTO 무역 체제하에서 외국의 불공정한 수출 관행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선진국의 반덤핑 제재 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덤핑 제재조치법(1998년 6월 11일 발효)을 시행 중이다. 동 법은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불법 수입된 덤핑 상품 및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수출 보조금을 받아 유입되는 상품에 대해 이집트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동 법 집행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Foreign Trade) 산하에 반덤핑, 보조금 및 세이프가드 국을 두고 있다. 이집트 기업이 신고하면 우선 조사 개시 여부를 판정하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피 제소업체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자료

검토 후 해당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제재 여부가 판정된다.

동 반덤핑 제재법은 주로 직물, 설탕, 제지, 철강산업 등 분야에서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주요 대상국은 EU, 중국, 브라질(설탕 수입), 인도, 사우디, 리비아, 우크라이나(철강 수입) 등이다. 동 반덤핑제재법의 시행에 따라 금호, 우성, 한국타이어 등 우리나라 타이어 수출업체 제품과 일본 및 EU산 타이어 또한 제소를 당해 1999년 10월 업체별로 덤핑마진 최종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07년에는 한국산 화학제품(D.O.P) 제품이 반덤핑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07년부터 무차별적인 중국 상품의 유입을 겨냥하여 이에 대한 규제 움직임과 함께 동유럽, 터키, 우크라이나 등의 저가 철근, 전구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산의 경우 소비자 보호와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수입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0년 10월 한국타이어 및 우성 타이어(현 넥센)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결되었고 2012년 7월 3일 부로 DOP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도 종결되었다.

2018년 상반기 기준 현재 이집트의 우리기업에 대한 수입규제는 전체 1건(반덤핑 1건)이며, 품목은 화학품목인 프탈산디옥틸이다. 또한 對 세계 수입규제는 7개국 10개 품목에 대해 14건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중이며, 이 중 반덤핑은 15건이 규제 중이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이집트는 많은 수입품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2014년 12월 기준 검사대상은 101개 품목으로 식료품, 부품, 건설용품, 전자기기 및 많은 소비재들이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집트와의 무역에 있어서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요건이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수입검사제도의 운영 강화

이집트 통상당국 및 세관 당국은 공산품 품질관리 규정에 의하여 수입 배터리 및 타이어에 대하여 규격별 품질검사(quality control tests by size)를 시행하고 있다. 이집트 당국은 이와 같은 품질검사를 함에 있어서 품질검사에 필요한 수량 이상의 배터리 및 타이어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검사용 손실이 과다하다는 관련업계의 불만이 있다.

품질검사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검사자의 자의성으로 검사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검사결과가 신청자에게 즉시 회신되지도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더욱이 일본공업표준(JIS), 독일표준기구(DIN) 규정 등 국제규격에는 Capacity 결과가 95% 이상이면 합격품으로 인정하나, 이집트는 98%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 중 일부 배터리 및 타이어가 품질미달로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그밖에, 1996년 11월 수출입 통계청이 타이어의 품질실험과 관하여 Drum Tester의 미비치를 이유로 외국산 타이어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중지하면서 우리나라 타이어 업체의 수출이 중단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그 후 이집트 관계기관과의 접촉을 통해 1997년 2월 수입타이어 테스트가 재개되어 우리나라 타이어 수출이 가능해졌지만, 이러한 사례의 재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특히, 2012년 10월부터는 신정부의 정책에 따라 통관 검사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집트 정부는 통관 서류와 L/C 개설 및 은행 송금 등과 연계시킴으로써, 세수 확대 차원에서 외국 기업에 대해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샘플

관세청은 등록된 수입상의 원료, 중간재, 비내구성 소비재, 엔지니어링의 Sample 통관 시 별도 수입허가를 요하지는 않지만, 가액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된 Sample이 1년 이내에 재수출 되거나 수입당시 재수출할 것을 서약할 경우 관세가 환급된다. 간단한 휴대 Sample은 통관이 용이하나 별도로 발송하는 것은 4~5일의 통관절차가 소요되고 잘못 배송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샘플링

수입품 검사 시 샘플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세관당국에서 전량검사를 실시하여 통관경비 과다발생, 물품의 도난 및 파손, 세관원과의 부정거래행위를 유발시키고 있다.

소포우편

소포로 수입된 화물도 동일한 수입절차를 밟으며,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인쇄물, 전자제품, CD, 서적 등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라벨 규정

식료품, 의약품, 섬유류 및 화장품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나, 그 밖의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상의 요구에 따른다. 2006년부터는 모든 수입품에 수입상의 주소와 전화번호, 제조일자, 수출자 등을 아랍어와 영어로 병기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

통관·보세 장치

통관은 하주, 하주의 대리점, 통관사 등에 의해 수속이 이루어지고, 일반화물의 경우 7일간 무료장치가 허용되며 보세창고 또는 냉장시설로 이송도 가능하다. 화물보관 최장기간은 3개월이며, 이후에는 경매처분이 가능하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는 나일강 오염방지법(법 제48호/1982)과 동 시행령(제649호/1982)이 있다. 나일강 유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폐수 방출 가능성이 있는 공장건설이나 건물, 상점, 관광시설 및 기타 상업용 시설 등은 사전에 보건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공공사업 및 수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부는 정기적으로 이들 허가시설이 배출하는 폐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넘을 경우 행정조치 한다.

나일강 오염방지법은 배수시설 설치의 필요성, 공공 배수시설과 사유재산 배수시설간의 연계설치 관련 기본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동 시행령은 폐수 방류 신청방법, 폐기물 종류에 따른 저장탱크 설치규정, 유해물질 방류 금지 및 자체정화 시설 설치 규정 등에 관한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1992년 World Bank의 도움으로 환경보존계획을 만든 이래 1994년 1월에는 새로운 환경보존법(법제4호/1994)을 제정하여 환경문제 전반에 걸쳐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투자프로젝트의 승인절차에 환경청(Egyptian Environmental Affairs Agency)이 관여하여 환경적합성을 심사한다는 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환경저촉평가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가기술 미흡으로 강력히 시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품목별 장벽

자동차

승용차 수입관세는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배기량 1,600cc 미만은 40%, 1,600cc 이상은 135% 관세 외에도 승용차 구입 및 소유에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판매세는 1,600cc 미만에 15%, 1,600cc 이상 2,000cc 미만에 30%가 부과되며 2,000cc 이상의 승용차의 경우 45%의 판매세와 더불어 연간 2.5%의 보유세도 부가된다(차량가격은 세법에 따라 매년 10% 감가상각).

또한 면허세의 경우 승용차의 생산지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수입차량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기아 등 우리나라 이집트 진출 자동차 업체는 소나타급 이상 차량의 대 이집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승용차 생산지 및 배기량에 따라 면허세를 차등 부과한다(수입차량에 높은 세율 적용).

WTO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협정에 따라 국제 수입관세 표준인 0~40% 대로 승용차 관세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집트 정부는 이를 2019년까지 점진적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EU와의 AA(Association Agreement)에 따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유럽산 차량에 대한 관세를 폐지해야 하며 이집트 정부는 EU 수입차량에 부과하는 관세를 해마다 10%씩 관세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2017년초부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통합관세율 10% 부과 및 국산부품 비율, 생산량, 수출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일명 자동차 전략, Automotive Directive)을 의회에 제출해 둔 상황이나 EU 및 국내외 자동차업계의 이견 제기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타이어

우리 기업이 1999년 10월부터 반덤핑 판정을 받아 오다, 2010년 10월 반덤핑 조치가 종결되었다.

철강

이집트 정부는 국내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철강제품 생산비용의 일부(re-olling, coating 관련 비용의 최대 15%)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여 한국 제품 수출시 가격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집트 정부는 로컬 제조업체들의 보호를 명목으로 0% 이던 강철봉에 관세를 7.3%를 부과 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바 있다.

배터리

이집트 정부는 이집트 배터리 제조사인 클로라이드사의 제소로 이집트로 수입되는 배터리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검토하였으나 조사결과 요건 미흡으로 2015년 12월 12일자로 취소하였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국제입찰

이집트에는 별도 입찰 전담기관이 없고 각 정부부서 및 기관별로 입찰 전담부서를 두고 필요시 입찰을 공개 공시하여 조달하는 방식이다. 제조업 관련 국영기업은 117개사로서 제조업 총생산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 국영기업에서 대부분의 산업용 기계류와 장비를 수입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입찰을 통한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입찰 공고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지역 일간지 혹은 영자신문 등에 게재된다. 이집트는 아직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입찰제도

입찰 법령에 따르면 이집트 정부는 자국 업체 보호를 위해 국제 입찰시 외국 업체가 제기한 최저 입찰 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국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규모 입찰 시 단일 품목보다는 여러 가지 품목을 함께 공고하는 경우가 많아 단일회사가 공급키 어려운 편이다. 이에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응찰하기도 하는데 이태리,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이 이러한 컨소시엄 형성에 능숙한 편이다.

공공기업은 통상 비중이 큰 자본재 뿐만 아니라 일반상품 구매에서도 신용제공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한데 요구조건을 보면 계약 시 10% 지불, 선적서

류를 받을 때 10%, 나머지 80%는 반년 단위로 납기에 따라 분할 지불을 고집하여 구매액이 큰 경우 3년에서 5년간의 분할 상환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공여 조건을 수락할 경우 차후 응찰에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지만 응찰 시 가격, 품질, 인도기일, 이자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처해야 한다. 최저가 낙찰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낙찰 후에 2~3개 업체와 재협상을 하여 보다 값싼 가격을 받아내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낙찰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집트는 공공입찰(거설중장비, 발전기자재, 의료기기 등)에 있어 미국, 일본, 유럽 등 일부 국가 제품으로 원산지를 제한하거나 원산지에 따른 점수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어, 한국산 제품의 입찰 참여가 원천 봉쇄되거나 입찰 참여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입찰전략

이집트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외국기업이 현지 회사와의 합작 또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입찰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찰시 외국회사는 Project Manager, Cost/Schedule Manager 및 QA/QC Manager 등 일부 기술적인 견해가 필요한 부문에만 인력을 충당하고 실제적인 현장시공과 관련된 인력은 현지 회사를 통해 충당해야 하나, 능력부족으로 인해 공기지연 등의 위험성이 높아, 현지 회사의 능력에 맞게 공정을 조정해 준다거나 공사수행 중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현지 회사와 협력하여 참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실력 및 신뢰성 있는 현지 업체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이들 업체 주요인사와의 공적 및 개인적 친분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입찰 공고 전부터 입찰내용을 사전 입수하여 응찰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입찰기관의 주요 인사와도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입찰정보는 Al Ahram 및 Al Gomhuria 등 주로 일간신문을 통해 수집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 구축한 현지 회사의 주요인사(구매담당자)를

통해 입수하기도 한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원조제공, 공급자 신용제공 등의 방법으로 이집트 내에 기반을 착실히 닦아왔기 때문에 비교적 유리한 유치에 있으며, 우리기업의 경우에는 낙찰을 위해 관련기관에 회사홍보(신뢰성 공사 실적 등)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응찰가격 제시 시에도 과거 유사 입찰 실시결과를 빠짐없이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경쟁적인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기업의 직접 입찰 참여시 현지 행정 절차상의 까다로움이나 언어적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찰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하여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집트는 법적으로 에이전트의 활동이 보장되어 있다(상업 에이전시 법 120항, 1982).

국방부 입찰을 제외한 계약에 참여 희망 해외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나 중개업체를 통하여만 가능하다. 공개 입찰 참여 희망 해외 기업이 에이전트와 벤더 등록에 합의를 하면 에이전트는 합의 계약에 동의하여야 한다. 합의서는 에이전트의 종사 분야, 활동에 필요 재화, 서비스, 대행비용, 지불 방법, 지불 화폐, 합의서 용어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에이전트 계약은 공증 절차를 거치는데, 한국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주한 이집트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이집트 회사와 한국 회사의 서명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 후 이집트 에이전트가 이집트 외교부로부터 합의 공증을 받는다. 공증의 절차를 마치면 해당 기업은 이집트 내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국방부 입찰

이집트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연간 약 25억 달러이나 미국의 군사원조까지 합한다면 실질적 국방비 지출 규모는 3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군 병력이 약 45만 명이며, 군수산업 종사자가 약 5만 명에 이르고 있어 방산시장으로서의 가치는 높은 편이나 대부분의 최신예 장비는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FMS 형식을 통해 도입되거나 합작생산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시장 진입의 틈새는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된다. 2001년 이후 한국 업체들은 중구경탄 생산기술 이전 플랜트 사업, 이집트 공군의 활주로 조명 시스

템, 활주로 청소차, 항공기 급유차, 굴삭기 등 1억 3천만 달러 이상을 수주하였으며, 2012년 이후에는 K-9 자주포의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향후 주목할 점은 항공기, 전차, 함정 등 대형 프로젝트는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고 있어 발주 기회가 희박(미국업체에게 우선권 부여)할 것이나, 이집트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작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육상무기인 화포 및 탄약, △사막지형에 적합하면서도 기동성 있는 차륜형 장갑차, △최신화 된 훈련장에서 사용하는 시뮬레이션과 관련한 컴퓨터 및 커넥터 부품, △야간 감시 장비, △군복이나 군화 등 방산물자 분야 등의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공군 및 방공분야에서는 대부분 미 군원을 통해 전투기, 헬기, 미사일 등을 현대화하는 중이며, 해군분야에서도 잠수함, 함정탑재 헬기 및 미사일 등을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합작하여 현대화하고 있는 중이다. 국방부 입찰 시 주의할 점은 품질 요구 수준이나 가격협상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요구되며,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방부 입찰 추진 절차는 병기국(Armament Authority)으로부터 의향서를 접수 → 주 이집트 한국대사관 무관부 경유 제안서 제출 → 1차 기술 평가(3~4개월 소요) → 입찰 초청서 접수 후 개별 협상(통상 10회 이상 개별 가격 협상, 조건 합의) → 입찰 참가 → 낙찰 후 가격 재협상 순이다. 따라서 무역관 및 무관부와 긴밀한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제도 개황

이집트는 특허, 상표, 저작권 관련 국제 협약(TRIPs)에 가입해 있는 상태이나 국내 법규 및 규정이 미비하고 법원의 최종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실제적인 보호 정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불법 도용한 상표나 불법 저

작물이 상당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우리기업의 경우 역시 상표권이 도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해결이 쉽지 않아 설득과 협상에 의한 해결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92년 제정된 지식재산권 보호법(제38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포함하는 등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1994년 3월 동법 개정이 이루어져 불법 복제보호 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했다. 2002년에는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법을(제82호/2002) 제정 하였으며 컴퓨터 프로그램 관할권을 문화부에서 정보통신부로 이관하였다.

2004년부터 이집트 제약회사가 복제 의약품을 생산하며 지적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피해국인 미국 측에서 강력히 침해방지 대책을 요구했으나, 이집트 정부는 국내 영세민에 대한 저가 의약품 공급을 이유로 복제 의약품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집트를 지식재산권 우선감시 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하면서 지식재산권 준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적절한 피해구제장치가 없어 아직까지 보호수준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2009년 WIPO는 이집트의 특허청을 아랍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국제 특허 기관으로 승인을 하였으며, 이집트는 타국으로부터의 특허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상표권

상표권의 인정기간은 신청 후 10년간이며 보호기간 만료 마지막 연도 내에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보호기간이 10년 연장된다. 등록 후 소유권이 인정되며 상표권 획득 5년 이내에 이전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지속된다. 만약 등록 후 5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제3자가 등록무효신청을 제기할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등록비는 각 상표 신청서 50이집트 파운드(LE)*, 등록 수수료 60이집트 파운드, 출판 50이집트 파운드이며 연장의 경우도 비용이 동일하다.

산업디자인

2002년 법률 개정으로 반도체 설계 디자인도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보호기간은 등록 요구일로부터 10년간이며 보호기간 만료 마지막 연도 내에 연장하는 경우 5년간 추가 연장된다. 등록 비용은 건당 신청서 30이집트 파운드(LE)이며, 관련 부속디자인이 있으면 건당 15이집트 파운드가 추가되고 등록 수수료는 75이집트 파운드이다. 연장 신청의 경우 75~100 이집트 파운드를 지불해야 하며 출판비용으로 30이집트 파운드가 추가로 소요된다.

저작권

예술, 문학, 컴퓨터 프로그램, 영상물, 음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서적과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보호된다. 영상 및 음반은 제작일로부터 50년간 보호되며 응용미술저작물은 창작일로부터 25년간 보호된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5,000~10,000이집트 파운드의 벌금 또는 1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침해가 반복될 경우 10,000~50,000 이집트 파운드의 벌금 또는 3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이집트는 저작권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적판을 구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연합 (The Software Alliance, BSA)의 세계 불법 소프트웨어 조사 2018에 따르면 불법 소프트웨어의 비율은 59%를 기록하였다.

특허권

특허권은 법으로 보호되고 있으나 특허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보호기간은 15년에서 법규 개정으로 20년으로 변경되었으며, 특허침해가 심했던 의약품의 경우 특허 보유업체의 정보 및 마케팅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 단, 연간 특허 등록비 미납 또는 등록 후 2년 이내 특허권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특허권은 자동 소멸된다.

특허권 침해 시 2만 이집트 파운드 이상 10만 이집트 파운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허권 침해 상품은 몰수되며 하나 이상의 일간 신문에 특허권 침해 사실을 게재해야 한다.

이집트 특허청

○ Cairo Egyptian Patent Office, Academy of Scientific Research & Technology

- 주소: 101 Kasr Al Ainy st., Cairo, Egypt P.O. Box 11516
- Tel: +20 (2)2792-1291/2792-1274/2792-1272
- Fax: +20 (2)2792-1272
- 이메일: patinfo@egypo.gov.eg
- 홈페이지: http://www.egypo.gov.eg

투자 장벽

투자진출제한 분야

이집트 정부는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외국인 투자 문호를 개방하는 여러 조치들을 취해 왔다. 2000년에는 1997년에 시행한 통합투자촉진법(제 8호/1997)을 개정하며 투자대상 분야를 24개 부문으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그동안 36개 정부 관련 부서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분산 담당하던 것을 2004년 3월부터는 '투자 및 자유구역청(GAFI)'이 전담토록 함으로써 업무를 대폭 간소화 시켰다. 무르시 전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부 장관직을 다시 부활시켰다.

이집트는 투자허용분야를 법규상 명시하는 방법(Positive list)을 사용하고 있어 별도 투자금지품목(Negative list)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투자 허용 분야를 제외하고는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 및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의 경우 투자청 승인 전 해당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투자가 가능하다. 이스라엘과 근접한 시나이 반도에 투자할 경우 이집트 보안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투자가 가능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집트는 국제 중재 협정에 가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법원은 국제사회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집트 내에서 분쟁 발생 시 상당한 시일과 과정이 소요된다.

투자청 승인 전 해당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투자진출 허용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집약 프로젝트
2. 알루미늄 원료
3. 메탈합금 프로젝트
4. 담배산업
5. 군수산업(국영 및 관련기업과의 합작은 가능)
6. 시나이반도 내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시추를 제외한 프로젝트

* 시나이반도에서 사업 추진 시, 총리실 산하 시나이개발청장 승인 요망

2000년에 개정되어 시행중인 통합투자촉진법상 24개 투자허용분야는 아래와 같다.

1. 황무지나 사막 개간 및 경작
2. 동물, 가금류 및 생선 품목
3. 공업 및 광업
4. 호텔, 모텔, 하숙집, 관광 마을, 관광 및 교통

5. 운송용 냉장트럭, 농산품 보존 냉동 창고, 공산품 및 식료품용 컨테이너, 곡물저장기

6. 항공교통과 서비스

7. 수상교통

8. 석유 탐사 및 시추, 가스 운송

9. 주거용 주택 사업

10. 식수, 배수, 전기, 도로와 통신 관련 인프라

11. 병원과 클리닉

12. 금융리스 업

13. 안보 유지

14. 위험자본(Risk Capital)

15.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16. 사회발전기금에 의한 프로젝트 펀드

17. 신도시 개발

18. 소프트웨어와 전자 콘텐츠 개발

19. 기술단지 설립과 운영

20. 신용 분류(Credit classficiation)

21. 공장 가동

22. 강을 이용한 도시 간 물자운송 개척 및 운영

23. 산업 및 유틸리티 프로젝트 수행

24. 쓰레기수거 및 관련 서비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청의 승인을 얻고 상업등기소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지사는 이집트 현지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이집트 회사법규를 따르며, 납세, 사회보장, 노동법 적용 등 지사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가 현지법에 따라 규율된다. 지사는 이집트 회계사가 감리한 재무제표를 매년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사는 외국인 고용 인력을 총 고용원의 10% 이내로 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인건비 비중을 총 지급 임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이집트 내 영업이익의 20%를 법인세로 납부하고, 순익의 10% 이상을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의무도 부담한다.

연락사무소 설치의 경우에는 주한이집트대사관으로부터 영사확인을 받은 회사정관, 사무소 설치에 관한 이사회결의서, 책임자 임명에 관한 서류 등과 등록신청서를 이집트 기업 심의국에 제출하고 등록한다.

국산품 사용 규정상의 제약

2011년 10월 이집트정부는 부품 국산화율을 45%에서 60%로 상향조정하여 이집트에 직접투자하려는 외국인기업들에게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이집트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에게는 40~45%가 적용되고 있다. 국산원료 사용 비율에 대한 심사는 투자 프로젝트 승인 시 이루어진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일반적으로 특별한 의무조항은 없으나 외국인 투자금지 분야에 대한 특별허가 시 재투자 및 수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그동안 36개 정부 관련 부처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분산 담당하던 것을 2004년 3월부터는 '이집트 투자청(GAFI)'이 전담토록 함으로써 업무를 대폭 간소화시키는 등 이집트 정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허가 업무에도 많은 관리들의 서명확인, 처리 지연 등 종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투자계획서 제출 시 공장부지 위치를 명시하여 투자청에 제출하면 투자청에서 건설 구역을 검토한 후 하자가 없는 한 승인된다. 이집트 문화유적을 피하거나 군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공장 건설지역에 대한 커다란 제한은 없으나 시나이반도나 국경지역에는 전략적인 중요성을 들어 공장건설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공장부지 불하 승인의 경우는 산업통상부산하 산업개발청(IDA) 소관하는 사항이나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동 인허가권을 투자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 ○ 외국인 투자 활동을 위한 토지 및 빌딩 소유 가능(제8호/1997)
  - 농지의 경우 외국인 단독소유 불가능 하며 이집트인 지분 51%이상의 합작을 통해서만 소유가능(제15호/1963, 143호/1981)
  - 이스라엘과 인접한 시나이 반도의 경우 보안상 문제로 외국인부동산 소유 불가능(제56호/1988)
- ○ 외국인의 부동산 및 토지 소유 가능(토지의 경우 일부 제한 조항이 있음 (제230호/1996)
  - 토지의 경우 아랍계 외국인은 시내 토지 소유 가능하나, 비 아랍계 외국인 시내 토지 소유는 불가능
  - 주택 건설용 토지 소유만 가능하며 2개 구획 각 4,000S/M 이내여야 함.
  - 외국인 토지 소유에 대한 제한은 총리 허가를 통해 면제될 수 있음.
  - 토지 획득 후 5년 내 건물을 완공하여야 하며 등록시점부터 5년이 지나야 매각할 수 있음.

금융상의 제한

이집트는 그동안 별다른 외환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나, 통합금융법(제88호/2003) 및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제80호/2002)을 마련, 외환관리 규제 근거법을 마련하였다. 25,000달러 이상 해외송금을 하거나 자금결재 시에는 거래은행의 신분확인을 거쳐, 중앙은행에 통보된다.

2012년 외환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외국기업이 10만 달러 이상 송금 시에는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며 법인의 1일 송금액은 3만 달러로 제한되고 있다.

2015년 2월 이집트 정부가 불법적인 암달러 시장을 일소하겠다며 취한 달러현금 입금제한 조치(월 5만 달러 이상의 달러 현금의 계좌입금 제한)로 암달러 시장을 통해 환전되어, 수입대금 결제에 사용되던 달러화의 통용이 어렵게 되면서 이집트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은 수출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최근들어 생필품, 의약품, 생산용 원부자재 등에 대해서는 입금제한 조치가 해제되었다.

세제상의 제한

이집트의 주요 세제로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 가치세, 사회보험적 성격의 사회보장세 등이 있다. 이집트는 2005년 6월 전면적 세제 개혁을 통해 32~40%에 이르던 법인세를 20%로 통일하여 대폭 인하하는 대신 기존 투자법에 명시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철폐하였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해 세제 감면폭을 넓히고 최대 세율도 2015년 25%에서 22.5%로 인하하였다. 부가가치세는 2016년 10월1일부터 종전의 판매세를 대체하여 시행(13%)되고 있다. 이집트의 세제 인하 배경은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탈세 현상이 만연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탈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법인세

2005년 개정된 소득세법(제91호/2005)에 의거하여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ies), 유한회사(Limited Liablity Companies), 합작회사(Partnership

Limited By Shares) 등은 물론 공공기업, 은행, 외국기업의 현지 지점(Branch) 등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부과하며 특정 업종을 제외하면 외국인 투자회사와 내국 회사에 20%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특정 업종인 원유 및 가스개발 생산기업의 세율은 40.55%, 수에즈 운하 수익, 이집트 석유청, 이집트 중앙은행의 세율은 40%이다.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나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내 설립된 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일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의 경우 창고업은 CIF 가격의 1%, 제조업은 FOB 가격의 1%, 서비스업은 이윤의 1%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경제구역 입주기업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이윤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2014년 연소득이 1백만 이집트파운드 이상인 사람에게 5%의 세율을 추가로 거두던 부자세(wealth tax)는 정부의 결정으로 1년 만에 종료됐다. 개인소득세의 범위와 세율 또한 2015년 8월 20일 발표된 대통령령(제 96호/2015)에 의해 변경되었다.

면제를 받는 연소득 범위는 기존의 0~5,000이집트파운드(LE)에서 6,500 LE로 늘어나 저소득층의 혜택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연소득 범위는 250,000 LE에서 200,000 LE로 하락하으나, 최대 세율은 기존의 25%(부자세가 적용될 경우30%)에서 22.5%로 감소하였다.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이집트 정부는 보조금을 삭감하고 부자세 부과 등을 시행하였으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투자를 높이고자 개인소득세 부과율을 완화하였다고 이집트 정부는 밝혔다.

연간 소득 (이집트 파운드)	세율(%)
0~6,500	0%
6,501~30,000	10%
30,001~45,000	15%
45,001~200,000	20%
200,000 이상	22.5%

주: 2015년 개정 기준 (2018년 10월 기준 가장 최신자료)

이집트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 거주자로 이집트인과 동일한 법적용을 받는다. 한국과 이집트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이집트에서 연간 183일 이상 체류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집트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83일 미만 체류 시에는 공제 혜택 없이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이집트는 그동안 시행되던 판매세 제도를 2016년 10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 제도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세율은 소비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금번 회계연도까지는 13%를 부과하고 2017/2018 회계연도부터는 14%를 부과하고 있다.

이집트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도입을 지난 2005년 이래 수차례 시도한 바 있으나, 도입시 세수 확대 및 탈세 방지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삶을 더욱 궁핍케 한다는 부정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어 번번히 무산되었다. 그러다가 현정부 들어 외환부족 등으로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을 재추진하게 되었고, 때마침 IMF 및 World Bank의 자금 지원조건으로 동 제도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실현하게 되었다. 다만 면제대상 분야가 많아 세수는 당초 기대치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보장세

의료보험,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 보장세(Social Insurance)를 통합운영하고 있다. 종업원의 정년퇴직, 사망, 실업, 부상, 질병 시 보상을 위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종합보험 성격으로 고용자가 원천 징수 후 납부해야 한다. 이 규정은 이집트인 전일 근무자에게 해당된다.

○ 사회 보장세 요율

고용주 및 근로자 부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고용주 부담: (기본급 × 26%) + (가변소득 × 24%)
- 근로자 부담: (기본급 × 14%) + (가변소득 × 11%)

- 기본급은 700 이집트 파운드까지 인정되며 그 이상은 가변 소득으로 간주
- 기본급 한도액은 매년 회계연도 시작일에 발표

단, 건설회사에 고용되는 임시직은 전체계약가액 중 인건비의 18%를 사회보장부담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으로 할당해야 한다.

로열티

로열티는 원천징수 되며 세율은 통상 20%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우선하므로 협정 내용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다. 제조업 활동에 기여하는 로열티는 면제 대상이며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은 15%이다.

이자소득세

일반 이자 소득세율은 20%이나 한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부과 세율이 15%이다.

재산세

이집트 정부는 부동산 부분 외자유입과 거래 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대를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2008년 6월 15일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현재 이집트 부동산 관련 세제는 소득세와 보유세로 구분되고 있는데 소득세는 부동산 매도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각 대금의 2.5%를 과세하고 있으며 보유세는 기존의 46%에서 10%로 변경됐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은 도시지역에 국한된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재산세(Property tax) 세율을 기존 46%에서 10%로 인하하며 2,000,000 EGP 이하의 주택은 세금이 면제된다.

이집트는 세금 납부 의식이 희박하고 세무행정의 낙후로 증빙서 보관이 안돼 종종 납부고지서 재발부로 이중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바, 세금 납부 시에

는 반드시 커버 레터와 함께 수표로 납부하도록 하며 은행 명세서 보관 증빙서를 확보해야 한다.

노동시장

임금수준

이집트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낮은 편이다. 일용직이나 단순 노동자의 경우에는 월 1,000 이집트 파운드 내외의 저임금으로도 채용이 가능하다.

노동자 임금은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숙련공과 비숙련공,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 격차가 현지 기준으로 볼 때는 큰 편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직 종사자의 임금은 아41515래와 같으며 고용주와 노동자가 월 사회보장보험을 부담해야 한다.

○ 임금수준

- 월 150~200달러(비숙련공)
- 월 200~350달러(숙련공)

○ 일반기업체 임금 평균

- 월 150~300달러(일반근로자)
- 월 400~1,500달러(초급 관리자)
- 월 1,500~5,000달러(고급 관리자, 경영진)

대형 기업이나 외국계 회사 근로자의 경우 일반 기업체보다 월급여가 높은 편으로 이는 10%대의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고급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집트 정부는 2015년 3월 새로 도입된 공무원법에 의거 공공부문(Public Sector)의 최저임금을 1200 EGP(약 108 USD)로 인상하였다.

이집트의 대형기업, 외국계 기업 근로자 월급여

직종	월급여
Sales and Marketing Director	L.E 35,000~40,000
Financial Director	L.E 30,000~35,000
Human-resources Director	L.E 30,000
Manager	L.E 15,000~20,000
Production manager	L.E 10,000~12,000
Accountant	L.E 5,000~10,000
Personal assistant to director	L.E 7,000
Secretary	L.E 4,000

주: 1달러늑 8.00 L.E(이집트 파운드) 2015.11.03 이집트 중앙 은행 (2018년 10월 기준 최근자료)

임금 규정

최저임금 규정은 700EGP(공공부문 870EGP)로 매년 기본임금을 7% 인상할 의무가 있다. 기본임금은 고용주와 종업원 간 근로계약 시점 상호 합의하에 정하는데, 통상 기본임금은 전체 임금의 70~80%로 정하는 것이 관례이며 사업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인상 강제규정은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편이다.

유한책임회사를 제외하고 순이익의 10% 이상을 근로자 연봉 범위 내에서 이익을 배분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주는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라마단 종료 후 월급여의 50%를, 연말에 월급여의 50%를 보너스로 지급하고 있다.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사회보장세 미납부자의 경우 근무 최초 5년은 월급여의 50%, 5년 초과 시 월급여의 100%에 근무 연수를 적용해 지급한다. 사용자 측의 사유로 인한 해고 시에는 퇴직금 최저액이 2개월 이상의 월급이어야 한다.

노동조건

이집트는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나 고급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생산성과 노동의욕이 우리나라나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과학적인 노무관리가 필요하다. 외국 투자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방법은 목표 부여제, 철저한 성과급제, 팀 단위 공동연대책임제 등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1) 고용조건

시보기간은 3개월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며 고용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무기 계약으로 간주된다. 기간제 고용은 최대 5년을 넘지 못하며 다시 갱신이 가능하다.

(2) 노동시간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8시간이며 1주 1일 이상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해 일 9시간, 주당 54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초과 근무 수당은 통상 근무 수당에 비해 낮 시간 135%, 밤 시간 170%, 휴일 및 공휴일은 200%를 지급 한다.

(3) 휴가

1년 이상 근무 근로자는 연 21일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1년 미만 근무자는 근속 기간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무 연수가 10년 이상 또는 50세 이상의 근로자는 연간 3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병가의 경우 최장 6개월간 유급으로 주어지며 급여 비율은 75~100%로 결정된다. 출산 휴가의 경우 10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무 기간 중 한 번만 유효하다.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는 성지 순례휴가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 5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100% 유급 조건으로 1개월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 성지순례 또는 이스라엘을 다녀올 수 있으며 근무기간 중 한 번만 유효하다.

해고

이집트 노동법은 회사의 긴급한 경영상의 위기나 휴업, 폐업 사유 이외의 자의적 해고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종업원이 부적절한 근무 자세를 보이거나

실책을 저지른 경우에는 서류상으로 책임을 규명하는 증빙 서류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증빙이 축적된 이후에야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노동법 제69조에 명기된 9가지 해고 사유가 되는 경우 지방 조정 위원회에 해고 결정을 요청하면 15일 내 결과를 통보받는데 실제 해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근로자 해고 결정시 10년 이상 근속자는 최소 90일 전에, 10년 미만 근속자는 최소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노사분규

이집트는 그간 집권층의 정권유지를 위해 노동쟁의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노사관계는 안정적인 편이었다. 2003년 이집트 노동법 개정을 통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평화적인 노동 파업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노동조합과 이집트 정부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과격한 노동 운동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1년 1월 25일 시민혁명이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기업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버스·철도 등 운송분야 노동자, 의사, 교사, 하급경찰 등 각계각층에서 파업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집트에는 23개의 산업노조가 형성되어 있고, 모두 이집트 노동조합 연합회(ETUF: Egyptian Trade Union Federation) 소속이다. SWP berlin에 의하면 ETUF의 노조원 수는 2012년 기준 약 380만 명에 이르며, 이들 중 대부분이 공기업 근로자다. 1998~2003년 사이 총 노동쟁의 건수는 743건이며 2005년의 경우 시위 16건, 파업 43건, 태업 53건이 있었다.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노동쟁의 건수가 1,137건에 이르는 등 파업이나 노동쟁의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형 노동쟁의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기업 민영화를 꼽을 수 있다. 이집트 노동조합 연합회 소속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이집트 정부의 민영화 정책 과정에서의 고용 불안이 노동쟁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로자와의 분쟁 해결 방안

이집트는 법규상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보장되어 있지만 해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노동법 시행규칙에 명기된 세부 규정을 적용해 근로자의 월급 일부 삭감, 보직의 이동 등 간접적 방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한국 투자기업 근무 종업원 중 고용자와의 분쟁으로 기업 회계 서류를 정부 관공서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사례가 있어 기업에 큰 손실을 안겨준 사례가 있는 만큼 간접적 방법 또는 일부 금전적 보상을 통해 이직을 권유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다.

2011년 1월 시민혁명 이후 이집트 정부의 공권력은 약해진 틈을 이용하여 강성 노조가 부상하면서 이집트 진출 우리 기업 작업 현장에서도 노사분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쟁정책

금융, 보험, 관광, 해운,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주요 국가산업이 국영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1991년부터 2차에 걸쳐 이행되어온 IMF 개혁프로그램에 따라 민영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2004년 7월에 출범한 Nazif 내각은 그동안 민영화에서 보류되어 왔던 은행, 통신 보험 회사를 대거 매각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며, 주요 국영기업들의 지분 매각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많은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이집트 정부는 '경쟁 보호 및 독점 금지법' 및 동 시행령을 제정하여 2005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2011년 들어 이집트 행정법원은 그간 민영화되었던 3개회사(Shebeen Al-Koum Spinning사, Nasr Steam Boiler사 및 Tanta Flax & Oil사)에 대해 민영화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유화 조치 판결을 내렸고, 전 무르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는 신

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현 정부는 당분간 민영화 사업 추진보다는 민간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현재 이집트 경쟁당국이 조사하고 있는 관심 사안은 차량공유업체인 UBER와 Careem간의 인수합병건이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

주한이집트대사관에서 사전 비자를 취득하거나 관광비자(유효기간 1개월)로 입국 후 1년 유효의 체류비자를 1년마다 갱신 신청할 수 있다.

※ 이집트에서 신청 시 절차: National Security 신원확인서 발급→GAFI (Work Permission Office)의 Work Permit 발급 → Ministry of Interior (Passport & Visa Section)에 비자신청의

이집트는 최근 도착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46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집트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전자비자 포털(www.visa2egypt.gov.eg)에서 사전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비자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전자비자 시스템 안정화와 주재국 방문자들이 전자비자 신청에 익숙해 질 때까지는 현재의 도착비자 제도와 병행하기로 하였다.

운전면허 취득

이집트 정부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어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수월하게 현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도 있는데, 국제도로표지판의 의미와 차량 부품의 기능에 관해 시험관에게 구두로 설명(영어 가능)하는 이론 시험과, 주차방법 및 시험장내에서의 간단한 주행시험을 통과하면 10년 유효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는다.

국제운전면허증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이집트에 올 경우 유효기간 내에는 사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이집트 진출과 관련된 사항

금융시장 현황

2003년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위한 통합 금융법안이 제정되어 금융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이 착수되었고, Nazif 총리 내각은 2004년 7월 출범 후 세계은행, IMF,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후원아래 금융개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영은행의 민영화 등 은행구조조정과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통합 금융법안에 따르면 이집트계 은행은 최소 자본금을 5억 이집트 파운드(8700만 달러), 외국계 은행은 5000만 달러로 법정 자본금을 대폭 증가시켰다. 아울러 이집트 중앙은행은 이 규정에 따라 각 은행들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제시하고 2005년 7월 14일까지 최소 자본금 이상으로 증자하지 않는 경우 강제합병이나 폐업 등 강경 조치함으로써 이집트 중앙은행에 의하면 67개에 달하던 은행이 2012년 5월 기준 39개로 대폭 축소되어 5개의 국영은행, 27개의 민간은행 또는 합작은행, 7개의 외국은행 지점이 있다. 또한 이집트 중앙은행에 따르면, 당분간 은행 설립에 대해 인허가를 내줄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외국계 은행 중 우리나라 외환은행 등 시중 5개 은행이 현지 은행과 합작 설립한 극동은행은 Audi 은행에 지분을 매각하여 2006년 이집트에서 철수하였다. 또한, 국영은행의 민영화정책으로 정부는 2006년 10월 4대 국영은행 중의 하나인 Bank of Alexandria의 80%의 지분을 이태리계 은행(SanPaola IMI)에 매각함으로써 금융개혁에 가속이 붙었다. 대형 국영은행인 Banque du Cairo도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국회, 민간단체, 노조가 대량해고 및 금융의 자주권 수호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적절한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2008년 7월로 연기되었다가 세계경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향후 적절한 시기로 미뤄졌으며 그 후 동 은행의 민영화 추진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상기와 같은 은행개혁과 국영은행의 민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소형화, 비효율적인 은행 운영시스템과 간섭과 규제를 일삼는 금융행정, 고객이나 수익성을 무시한 은행영업 태도 등이 수익성 추구와 고객서비스를 본질로 하는 금융 산업의 글로벌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진지한 노력들이 병행되고 실질적인 결과들이 도출되어야 비로소 이집트 금융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이집트 진출과 관련된 사항

이집트 중앙은행은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하면서 신규 금융기관설립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계 은행이 이집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은행기관의 민영화에 따른 매각지분을 인수하거나, 이집트 은행을 합병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Abu Dahbi Islamic Bank 컨소시엄이 National Bank for Development의 지분 51.3%를 인수한 바 있고, 2008년 4월 쿠웨이트 국립은행이 Al-Watany Bank을 10억달러에 인수하여 이집트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등 자본이 풍부한 아랍계 은행들이 이집트 진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슬람 금융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자금을 투자 운영하는 이슬람 금융(Islamic banking)의 성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는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물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것은 가능한데, 이슬람 금융은 율법이 허용하지 않는 사업부분(주류·돼지고기·도박 등)을 제외한 사회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고 거기서 얻은 수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이슬람권의 오일 머니가 급증하면서 급성장하였다. 한편 세계금융위기로 급속히 위축된 바 있으나 유가가 회복되면서 중동지역의 경기가 서서히 회복됨에 따라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집트에는 Banque Misr을 통해 이슬람 금융 상품이 처음 소개됐으며

Faisal Islamic Bank와 Egyptian Saudi Finance Bank 2개 금융기관이 이슬람 금융을 지배하고 있고 기타 은행들도 이슬람 금융을 취급하고 있다. 3개 국영 은행의 이슬람 금융 비중은 약 10% 정도로 타 이슬람권에 비해 덜 활발한 편이다. 이슬람 금융 상품은 샤리아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상품 판매 이전에 이슬람법 판결기관의 감독을 수시로 받는다.

투자 환경

투자의 장점

(1) 거대시장에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

이집트는 거대 시장인 EU, 오일달러가 넘치는 아랍권, 외부에서 접근이 어려운 아프리카 시장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EU, 아랍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대서양 인도양을 잇는 수에즈 운하 등 물류의 중심으로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집트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명칭	발효일	주요 내용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COMESA)	1994. 12. 8.	- 아프리카 최초이자 최대의 경제공동시장(인구 3억 8천 명) - 회원국: 동남아프리카 21개국 - 남아공은 옵서버 - 21개국 중 11개국은 상호 무관세
범아랍자유무역협정(GAFTA)	1998. 1. 1.	- 회원국: 아랍연맹 17개국 - 이집트는 걸프7개국과 별도 협정 체결 - 국가별관세수과 및 면제대상 상이
EU-이집트 연합협정* (EU/EGYPT ASSOCIATION AGREEMENT)	2004. 6. 1.	- 15개 EU회원국과 이집트 간 FTA - 이집트, 대EU 공산품 무관세 수출 - EU 15개 회원국, 2019년까지 4개 품목군에 걸쳐 점진적 인하 및 철폐 * (예) 자동차 관세는 2010~2019년간 매년 10%씩 인하 - 농산품 일부 쿼터해제 및 관세인하 또는 철폐

명칭	발효일	주요 내용
중앙 아프리카 경제 통화 공동체 (CEMAC)	논의 중	- CEMAC 국가 ; 카메룬,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콩고 - 브라자빌, 가봉 및 적도 기니)
서 아프리카 경제 통화 연맹 (UEMOA)	논의 중	- 2004 년 6 월 이집트는 이집트와 서 아프리카 경제 통화 연합 (UEMO) 간의 기본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음 - UEMOA 국가 : 서 아프리카 8 개국 (베닌, 부르 키나 파소, 코트 디부 아르, 기니 비사우, 말리, 니제르, 세네갈 및 토고)
QIZ 협약 (Protocol on Qualified Industrial Zone)	2005. 1. 1.	- 이집트, 이스라엘, 미국 3국 간 협약 - 이집트가 이스라엘 원부자재 10.5%(11.7%에서 2008년 1월 1일부로 10.5%로 변경) 이상, 국내산 원부자재 35% 이상 사용 시 대미 무관세 수출 가능 - 이집트 내 QIZ 수혜기업은 500여 개, 2011년 이집트 QIZ의 대미 수출액은 103억 달러 - USTR은 이집트 내 3개의 QIZ(카이로, 알렉스, 수에즈)를 지정했고, 2005년 12월 4번째 QIZ로서 중앙델타지역을 지정한 바 있음.
Agadir 협정	2006. 7. 1.	- 회원국: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모로코 - 농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철폐 - EMFTA내에서 남남협력을 통해 EMFTA 통합을 가속화하는 장치로 간주, EU로부터 수혜
이집트-터키 FTA	2007. 3. 1.	- 대 터키 수출: 협정발효 즉시 무관세 - 대 이집트 수출: EU-이집트 FTA에 준해 4개 품목군에 따라 2020년까지 점진적 관세 인하 및 철폐
이집트-EFTA FTA	2007. 8. 1.	- EFTA: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 대EFTA 수출: 16개 품목을 제외하고 발효 즉시 관세철폐 - 대 이집트 수출: 2020년까지 4개 품목군에 따라 점진적 인하 및 관세 철폐
이집트-남미공동 시장(MERCOSUR)	2010. 8. 2. 서명	-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육류, 밀, 옥수수 등: 대해 즉시 관세면제 - 우유, 산업제품: 4년 내 관세 면제 - 기타 협상 품목: 8~10년 후 관세 면제
아프리카 대 자유무역협정 (African Grand FTA)	2015. 6. Triparite Summit (삼엘세이크)	- COMESA, SADO(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EAC(동아프리카 공동체) 간 FTA - 인구 6억 3천 명으로 아프리카 전체인구의 57% - 아프리카 전체 GDP의 58%(1조 3천억 달러)

명칭	발효일	주요 내용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 (AFCFTA)	논의 중	- 2011년 12월 가나 아크라 개최 아프리카 통상장관 회의 시 2017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창설 및 2019년까지 관세동맹 달성 로드맵에 합의 * 이집트는 동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적극적 - 아프리카 대륙 55개국 중 44개국이 서명함
이집트 - 나이지리아 양자자유무역협정	논의 중	- 이집트-나이지리아 자유 무역 협상 중
이집트 - 탄자니아 양자자유무역협정	논의 중	- 이집트-탄자니아 자유 무역 협상 중

(2) 잠재력 있는 내수 시장

이집트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약 9,773만 명(2018년 10월 기준) 그 중 약 10%(800~1,000만)는 연 소득 1만 달러 이상의 탄탄한 소득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의 61%가 30세 미만으로 시장 선점 효과가 있는 미래 시장이다.

(3)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사회간접 시설

이집트 통계청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실업률이 11.0%이며, 실제로는 30%를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인력 채용이 용이하고 인건비가 저렴하다. 에너지 및 원자재 조달 요건이 양호하고 에너지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에 조달이 가능하다.

(4) 이집트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

2017년 6월 27일 발효한 신투자법은 인지세, 사업부지 등록세 면제, 투자비용 감면 등 일부 비조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 10월 28일 공표된 동법 시행령도 외국인 투자자의 거주, 외국인 노동자 고용, 과실 송금 등과 관련하여 완화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다만 동 투자법령의 실제 효과성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투자의 단점

(1) 세계 최하위의 노동 생산성 및 까다로운 노동법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2018년에 의하면, 이집트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137개국 중 134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매년 기본임금 7% 인상 강제규정 및 근로자 해고가 불가능한 법체계와 관행이 존재하고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를 제외한 주식회사, 지사는 회사 순이익의 10% 이상을 연봉 이하 범위 내에서 종업원에게 배분해야 해야 의무 규정이 있는 등 노동법규가 까다롭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전체 종업원의 1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이집트 노동자 9명 고용 시 지상사 주재원 1명 허용)하고, 취업비자 신청 시 외국인 종업원 수 비율에 따라 한국주재원의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2) 관료적 행정절차

세관절차가 복잡하고, 담당자마다 적용 규정이 상이하며, 각종 행정 절차에 관료주의(Red Tape)가 만연하며 담당 기관별 법적 해석이 상이하고 동일 문제 발생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 취약하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설립 등 행정절차에서 개선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아직 개선이 미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집트 사업 개시 절차 및 기간

소요비용	절차 수	기간
1인당 소득의 7.4%	8.5개	14.5일

자료 : Doing Business 2018

(3) 투자 인센티브 미흡

2005년 세법 개정으로 특정 분야를 제외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전혀 없다. 외국인만을 위한 투자 유치 인센티브가 없고, 모든 투자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일 취급하며 투자 인센티브가 극히 제한적이다. 일반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센티브가 많은 자유무역지대의 경우도 2008년 5월 5일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에너지 집약기업에 대한 혜택을 전면 폐지했다.

이집트 투자환경 SWOT분석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
○ EU, 미국 2대 거대시장 무관세 수출 및 자유무역 협정 체결국 증가 ○ 지속적 시장개방으로 효율성 증가 ○ 젊은 층의 높은 인구 비중	○ 비효율적 대학교육 시스템 – 시장수요에 비해 고급인력의 수준 낮음. ○ 치안불안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 유럽, 아프리카를 잇고 지중해, 홍해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 ○ 외국인 회사에 호의적인 이집트 정부정책과 법규 ○ 적극적 정부 민영화 정책	○ 낮은 정부 투명성(163개국 중 70위) ○ 낮은 노동생산성과 지나치게 경직적인 노동법규 ○ 고용과 해고의 어려움

비즈니스 운영 환경

(1) 포스트 브릭스 특징

이집트는 향후 포스트 브릭스로 평가 받을 만큼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LG 경제연구소는 포스트 브릭스의 특징을 아래 5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 다양한 사업 기회
저가 생필품 시장에서 중저가 보급형 시장 및 고급형 시장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자국 특성에 맞는 제조업 발굴 육성 정책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기회가 존재한다.

○ 경쟁 격화
시장 선점을 위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BRICS 국가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며 에너지, 건축, 이동통신 분야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 경제 민족주의 확산
자원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

다. 자원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유통, 서비스 등도 패키지 딜 투자 방식이 유행한다.

○ 투자 리스크 존재
투자환경이 개선 중이나 단기간 경제성장으로 열악한 경제기반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예측에 어려움이 많으며 인프라 부족 등 투자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딪쳐야 할 직간접적 장애 요인이 많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투자환경 개선 노력 추구에도 불구 여전히 미흡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8에 따르면 이집트는 사업개시 소요기간이 14.5일로 여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MENA) 평균 18.6일에 비해 대폭 단축되었다. 건축허가 취득기간이 145일 수준이며, 재산등록 소요기간도 75일 수준이다.

2018년 세계은행이 평가한 이집트의 사업 환경 지수는 조사 대상국 189개국 중 128위로 나타나 순위가 전년의 131위에 비해 좋아졌다. 이집트 정부가 외자유입 및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방 정부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어 비즈니스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 이집트의 국가 경쟁력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는 「2017~2018년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 2011년 시민혁명 이후 정정 불안을 겪고 있는 이집트의 국가경쟁력을 종전 115위에서 100위(전체 대상국은 137개국)로 상승시켰다. 이밖에 건강 및 기초 교육 분야 87위, 거시경제 환경 132위, 상품시장 효율성 90위, 노동시장 효율성 134위, 시장 규모 25위, 혁신역량 109위이다.

동 보고서는 이집트에서 비즈니스하기 문제가 되는 요인으로서 ① 정치적 불안정 ② 인플레이션 ③ 부패 등을 지적했다.

적도기니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경제 개관

중부아프리카 기니 만에 위치한 적도기니는 인구 약 126만명(2017년)에 영토면적 28,051㎢의 작은 소국이다.

그러나 영토면적 10배 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314,000㎢)을 보유하고, 1990년대부터 해상에서 석유와 가스를 발견하여 산유국이 되었다.

적도기니 원유/천연가스 생산량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원유 생산량 (단위: 1,000 b/d)	210.0	199.8	185.3	160.1	128.6
천연가스 시장생산량(marketed production) (단위: million standard cu m)	6,550	6,160	6,200	8,740	9,600
천연가스 수출량 (단위: million standard cu m)	5,090	4,790	5,010	8,635	9,556

출처: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2018)

탄화수소(석유/가스) 생산 수익에 힘입어, 적도기니는 1인당 GDP (PPP)가 38,389 달러(2012년)로 높았으나, 국제유가하락 여파로 24,817 달러(2017년)로 하락하였다. 정부는 "국가 경제/사회 개발계획(PNDES : Plan Nacional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을 수립(2007), 2020년까지 신흥경제국으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개발계획의 1단계(2008-12)는 교통(도로/항만/공항), 전기(발전소/송전망) 및 공공건물(병원/학교) 분야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비교적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게 되었다.

2013년 시작된 2단계는 수익과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5개 분야(농축산, 어업, 석유화학/광업, 관광 및 금융서비스)의 인프라를 개발, 석유/가스(GDP의 90%에 근접) 일변도의 경제 구조의 다양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다양화 정책은 아직 큰 진전이 없으며, 일반 국민들의 생활 여건도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같다. 적도기니는 1인당 GDP(PPP, 24,817달러 / 2017년)가 세계 55위로 높은 편이지만, 인간개발지수(HDI)는 189개 국가 중 141위(2017년)로 매우 낮으며, 부패지수(CPI)는 180개국 중 북한, 리비아와 동등하게 171위(2017년)를 기록하였다.

2018년 10월 기준, 경제관련 적도기니의 주요 보직을 수행하는 광산탄화수소부 장관, 항만청장, 관급공사 발주청(GE PROJECT) 운영위원장은 모두 오비앙 대통령의 자녀이며, 국영석유회사(GEPETROL) 이사장은 대통령의(영부인) 조카사위이다.

관세장벽

수입 관세

적도기니는 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ommunauté Économique et Monétaire de l'Afrique Centrale/CEMAC)의 회원국으로서, CEMAC에 공통 적용되는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CEMAC의 관세율은 웹사이트에서 참고 가능하다(http://www.sydonia.cemac.int/).

그러나 위 공통 관세율과 제도는 적도기니에서 적용되는 과정에, 담당기관 또는 담당자들의 불투명한 업무처리 방식과 역량 부족으로 규정과 달리 적용되는 일이 잦다. 이러한 현실이 적도기니 수출입의 큰 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다.

관세 적용 기준에 다음과 같은 관세를 납부한다.

1. 관세: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분류에 따라 납부
   - ○ 제1 분류: 생활필수품 5%
   - ○ 제2 분류: 장비 및 원자재 10%
   - ○ 제3 분류: 중간재(준 가공품) 20%
   - ○ 제4 분류: 소비재(최종 생산품) 30%

2. 국고에 입금되는 세금(Impuesto)[19]
   - ○ 부가가치세: 15%(경감세율 6%와 0%)[20]
   - ○ 상업세: 1%
   - ○ 특별세: 최대 50%(특정 품목에 한정: 주류, 담배, 개인위생 물품)[21]

3. CEMAC 세금(Tasa)[22]
   - ○ 공동체 통합 세금(TCI) 1%
   - ○ 통합을 위한 공동체 세금(Contribución)[23] (CCI) 0.4%

세금은 수표나 현금으로 세관에 납부한다. 세관은 CEMAC에 해당하는 세금도 징수하고 중부아프리카 은행(BEAC)에 납입한다.

---

22) 세금(Impuesto): 스페인어에서는 세금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 하는데 'Impuesto'란 반대급부 없이 납부하는 세금을 지칭한다.

23) 경감세율 및 면세 대상 상세 품목은 별첨 1, 2, 3을 참조할 것

24) 특별세 부과 대상 상세 품목은 별첨 3을 참조할 것.

25) 세금(Tasa): 'Tasa'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용역의 대가로 납세자들이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지칭한다.

26) 세금(Contribución): 'Contribución'이란 정부의 특별한 활동이나 공공 지출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가 이득을 얻었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지칭한다.

〈CEMAC 개요〉

○ 공식 명칭
Communauté Économique et Monétaire de l'Afrique Centrale
(중부아프리카 경제 통화 공동체)

○ 설립 조약
Traité Instituiant la Communauté Économique et Monétaire de l'Afrique Centrale
(차드 은자메나, 1994.3.16) / 2008.6.25 개정(카메룬, 야운데)

○ 회원국
6개국(가봉,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 차드, 카메룬, 콩고)

○ CEMAC 추구 주요 목표
- 사람, 재화, 자본 및 서비스의 자유왕래에 기반하는 공동시장 창설
- 공동통화(XAF)의 안정적 관리확보
- 경제활동 및 일반적 비즈니스의 안전 환경 조성
- 국가별 산업정책 규범의 통일

면세 제도

CEMAC 회원국(카메룬, 차드, 콩고 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및 가봉)으로부터의 수입은 관세가 면제된다.

적도기니 투자법의 특별 제도에 의거하여 관세를 면제받는 회사의 장비는 세금이 면제되며, 또한 적도기니 정부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에 대해서도 관세와 세금이 면제되기도 한다. 탄화수소 분야 회사의 장비도 세금 면제대상이 된다.

비관세장벽

수출입 면허제도

수입 수량 제한, 비관세 보호 및 수출입 면허 제도는 적도기니 정부가 1992년 세계은행이 지지하는 공공 투자 계획을 도입하면서 해제하였다. 적도기니 정부는 몇몇 공영기업을 매각 하는 등 투자에 호의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투자법 또한 고용창출, 직업 훈련, 비전통 수출품의 수출 장려,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혜택을 보장 하고 있다.

무역 규정은 중부 아프리카의 세금 및 관세 개혁법에 맞춰, 수입 수량 제한을 폐지하고 관세 적용범위와 금액을 낮추면서 훨씬 더 자유로워졌다.

임시수입제도

적도기니 수입 세법은 물품의 임시 수입을 허가하며, 관할 세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 사업을 수주한 회사들에게 임시 수입 허가 제도를 통해 수입된 물품들은 관세를 면제 받지만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매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 목적을 이룬 후에는 수출 국가로 반송하여야 한다.

라벨링

라벨링과 패키징 필요조건은 적도기니 무역 규정으로부터 삭제되었으나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로 라벨링 할 것을 권장한다. 적도기니는 CEMAC의 회원국으로서 CEMAC의 세관 법에 의거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고 회원국들 간의 무역은 무관세이지만 "Vente en la CEMAC"이라는 식별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수입규제

특정 위생 물품, 화학, 독성 폐기물, 특정 화장 품 및 식용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수입 금지 품목은 제외될 새로운 상품이 확인될 때마다 수정될 수 있다.

수출통제

적도기니에서의 수출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5만 XAF 이상의 수출은 허가받은 은행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입금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2018년 세계은행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적도기니로의 수입은 표준 컨테이너당 7가지의 서류와 평균 USD 1055 미화의 비용이 들어, 사하라이남 국가

평균 USD 990미화달러에 비해 많은 편이며, 서류준비 소요기간은 240시간으로 사하라이남 국가 평균인 103시간보다 2배 이상 길다. 적도기니는 무역 환경 편의성에 있어서 190개 조사국가 중 173위에 머물며, CEMAC 회원국인 가봉(167위), 카메룬(163위), 콩고 공화국(179위), 중앙아프리카(184위)와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적도기니의 실질적인 통관절차는 효율적인 시스템부재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태도 등에 기인하는 장애들로 통관 소요기간(약 480시간, 사하라이남 국가 평균 240시간, OECD 고소득국가 평균 12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박 및 하역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관련 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는 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 가격과 운송비용을 포함한 총액을 세금 산정 기준 액으로 인정하나, 동 기준 액 설정에 있어서 적도기니 세관원과 소모적인 협상을 해야 할 경우가 잦으며, 하역 이후에도 세관 측 검열 등 규정된 절차 이외의 절차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도 하여, 규정 외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된다.

수출 기간과 비용

수출 절차	기간(시간)	비용 (미화)
서류 작성 및 준비	154	85
통관 절차 및 기술 관리	132	100
하역 및 화물 취급	132	660
내륙 운송 및 취급	2	345
총계	420시간(약18일)	1190

수입: 기간과 비용

수입 절차	기간(시간)	비용 (미화)
서류 절차	240	70
통관 절차 및 기술 관리	240	325
하역 및 화물 취급	240	660
내륙 운송 및 취급	2	345
총계	722시간(약30일)	1400

투자환경

투자 유치 정책 및 규제

적은 인구의 적도기니는 그 내수시장에 대한 매력은 매우 떨어지나 CEMAC, ECOWAS의 회원국이며 "아프리카의 싱가포르"이라고 불리기 위하여 다방면에 걸쳐 노력하는 등 중·서부 아프리카의 경제 허브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아 수출/물류 기지로서의 매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적도기니 정부는 석유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 개발을 다양화하고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11월 중장기 경제개발계획(Horizonte 2020)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Horizonte 2020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Agencia Nacional 2020 기관을 설립하여 경제개발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14년 9월 Holding Guinea Ecuatorial 투자청을 설립하여 농업, 축산업, 수산업, 서비스업 분야에 초점을 맞춘 투자 가이드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적도기니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Ley Número.7/1.992/적도기니 내 투자관련 특별법)하여 외국기업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적도기니 내에 외국인이 설립한 기업 또는 적도기니 진출 외국기업의 내국인 지분을 최소 35%를 보장하여야하고, 또한 이사회 내국인 구성원의 수 관련, 최소 3명에 이사회 구성원의 1/3이상을 보장해야 하는 관계로 그간 외국인투자의 제약요인이 되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 석유분야 투자 시 외국기업의 내국인 지분 보장 및 이사회 구성원 내국인의 의무적 참여를 철회한 새로운 투자관련 법률(Decreto Número 72/2018)을 2018년 4월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적도기니 재정수입 90%를 의존하고 있는 석유분야는 여전히 내국인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투자사업허가

외국자본에 금지된 분야의 사업을 제외하고, 적도기니 투자법이 보호하는 모든 투자 사업에 대해서 재정경제기획부[24]는 투자기업이 재정경제기획부 조건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신청한지 60일안에 자동적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사업과 발기인을 서술하고 투자자들의 신용보고, 상업 전력 및 도덕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재정경제기획부는 사업에 관여된 해외 투자자의 전력조사를 시행한 이후에 사업의 승인 증명서 혹은 기각 증명서를 발행하며, 승인증명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주어질 혜택과 이익을 명시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의 모든 필요를 묘사하고 확정하며 수입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부동산 세금

1) 농촌 부동산 세(稅)

○ 세의 성격: 경작여부에 따라, 농지에 대한 실수익 또는 잠재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모든 자산은 과세 대상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세금은 매 6개월마다 납부.

○ 세율

- 고정세율: 1헥타르 당 100 XAF 부과. 반기별로 합산하여, 2/4 및 4/4 분기에 납부
- 변동세율: 소득에 따라 부과. 자연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통하여 납부

○ 세금 면제와 공제

- 면제: 5 헥타르 미만의 농지, 공공서비스 또는 지자체의 할당된 국가행정 토지, 마을의 공동자산

24) 2018년 2월 개각 시 기존 투자사업허가 관할 부처 경제, 계획 및 공공투자부는 재정예산부와 통합되어 재정경제기획부로 조직명이 변경됨.

- 공제: 커피, 카카오, 먹거리 및 팜유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5% 공제

2) 도시 부동산 세(稅)

○ 세의 성격: 대지와 건물의 가치에 근거한 도시 자산에 대한 실수익 또는 잠재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매 6개월마다 납부

○ 세율: 대지와 건물 가치의 0.4%

○ 세금 면제와 공제: 과세표준액이 100만 XAF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2) 법인세

○ 세금의 성격: 기업이 적도기니에서의 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세율: 35%

○ 세금 면제와 공제

- 농업분야 회사, 협동 및 노동조합 그리고 그 연맹.(단, 물품구매/조달 협동조합은 예외)
- 농업상호신용은행
- 상호지원 조합
- 제한된 기간의 상품전시회, 전시회, 스포츠행사, 공중 대상 시연행사
- 과세대상 수익이 세법 192조에 규정된 최소금액 이하인, 개인 또는 가족 특성의 유한책임회사(SRL)
- 농촌개발 담당하는 공익성이 인정된 기업 또는 조직

(3) 개인 소득세(IRPF)

○ 세의 성격 : IRPF는 CEMAC권내에 통일되어있다. 개인이 적도기니에서 얻은 총 순수익(Ingresos globales netos)을 대상으로 부과

○ 세율: 과세대상 소득 별 세율은 아래와 같음

과세대상 년 소득	GRAVAMEN (적용세율)	IMPUESTO (원천징수 세금)
0~1,000,000 XAF	면제	면제
1,000,001~3,000,000 XAF	10%	200,000
3,000,001~5,000,000 XAF	15%	500,000
5,000,001~10,000,000 XAF	20%	1,500,000
10,000,001~15,000,000 XAF	25%	2,750,000
15,000,001~20,000,000	30%	4,250,000
20,000,000 이상	35%	

○ 세금 면제와 공제: 100만 XAF 미만의 수익. 외교관(상호주의 조건)

(4) 석유/가스 생산관련 로열티

○ 로열티의 성격: 탄화수소(석유/가스) 생산량에 부과하는 금액

○ 세율: 최소 13%. 일 생산율을 기초로 계약에 의거 로열티의 증액 가능

○ 부과기준: 계약서상의 일 생산량 비율이 달성되는 날부터 추출 저장된 탄화수소의 전체 량

○ 관련 법: 적도기니 탄화수소법(제58조)

(5) 부가가치세(IVA)

○ 세의 성격: IVA는 CEMAC 회원국 통일된 세금

○ 세율: 15%. 단, 아래 품목은 예외

- 세법 부속서 ANEXO II에 명시된 재화[25]: 6%
- 세법 부속서 ANEXO I 부가 가치세 면제 생활 필수 품목[26]: 0%
- 세법 부속서 ANEXO I(bis) 부가 가치세 면제 장비[27]: 0%

28) 별첨 3 참조

29) 별첨 1 참조

30) 별첨 2 참조

○ 과세대상

- 재산권의 매각
- 서비스 공급
- 재화와 서비스 소비
- 자연인 또는 법인의 영업활동, 전문직 활동, 개인 활동 및 모든 종류의 추출활동으로 행해지는 모든 거래(* 추출활동: 석유, 가스, 광물 등 채굴 활동을 의미)
- 재화의 수입(輸入)

○ 면제: 아래 "바"항 참조

(6) 부가세(IVA) 및 특별세(Derecho Especial)면제 대상

1) 농민, 목장주, 어민, 사냥꾼 취득하고, 그 소유주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1차 상품

2) 특정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거래

○ 토양 및 지하로부터 추출되는 재화 판매

○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닌 개인에 의한 부동산 양도거래로서, 재산양도세(Impuesto Sobre Transmisiones Patrimoniales) 부과 대상인 부동산 양도거래

○ 외국 차관에 대한 이자

○ 금융 또는 신용기관의 일반 고객의 예금에 대한 이자

○ 여행객의 50만 XAF 를 초과하지 않는 재화의 수입(輸入)

○ 특정 세금의 부과 대상인 은행거래, 보험거래 및 재보험 거래

○ 재산양도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세금 부과대상인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 양도 그리고 영업권 교환(mutaciones de fondos de comercio)

3) 부상자 및 환자 수송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유사시설의 의료, 의료진 또는 의료보조자에 의한 의료

4) 세법 부속서(Anexo I)[28] 명시된 생필품

5) 공사립 교육기관 또는 유사기관에 의한 교육 분야 서비스 제공

6) 학교 또는 대학교 책 수입 및 판매

7) 광고수익을 제외한 일간지 및 정기간행물 판매

8) 가구가 없는 주택의 임대(료)

9) 다음 주체에 의한 국제수송관련 거래

- 공해에서 산업 또는 무역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또는 배
- 구난용 배 또는 지원용 배
- CEMAC의 세관 법(Le Code des Douanes de la CEMAC) 제158조 규정과 제158조 이후 후속 규정에 따른, 국가간 왕래하는 항공기 및 선박, 이러한 왕래관련 서비스

10) 사회, 교육, 스포츠, 문화, 자선 또는 종교적 성격을 갖는 서비스 또는 거래로, 그 운영이 자선적이고 헌신적인 비영리 기관에 의해 그 회원에게 제공되고 그리고 이러한 거래가 그 회원들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이익을 집단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직결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되, 이러한 거래가 민간분야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세금부과

11) 세법 부속서(Anexo I bis)[29]에 명시된 자본재

12) 관세유예 제도 : 세금부과를 연기하거나 잠정 중지하는 것으로, 광업, 석유 및 산림 분야 기업에 적용가능. 단, 탐사, 시굴, 연구 활동 수행에 꼭 필요한 투자재에 한정.

31) 별첨 1 참조

32) 별첨 2 참조

13)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공공기관 활동관련은 과세 대상에서 면제 (단, 산업 및 상업분야 거래 시는 과세대상).

투자 인센티브

1) 적도기니에 투자 외국기업의 세제 혜택: 1992.4.30 법률(Ley Núm. 7/1.992/적도기니 내 투자관련 특별법)

○ 신규고용 창출관련, 과세대상 소득에서 내국인 직원에 지불된 급여의 50%를 공제

○ 내국인 직원교육관련, 과세대상 소득에서 내국인 교육비(급여제외)의 200%를 공제

○ '비전통적 상품의 수출(*)지원관련, 적도기니에 있는 은행에 외화로 입금된 비전통적 상품수출의 FOB 가격의 15%에 상당하는 신용증서 수혜(동 신용증서는 세금 또는 관세 지불에 사용)

- 신용증서: Certificado de crédito

* 비 전통상품 수출(Exportaciones no tradicionales): 가공 등의 과정 을 거쳐 부가가치를 높인 상품

○ 지역개발관련, 대도시와 떨어진 지역에서 승인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 수혜

- 지불된 인프라 비용 총액 감가상각. 동 비용 지불 회계 연도에 적용하며, 손실 발생 시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 가능

- 모든 종류의 납세의무 면제. 단, 소득세, 판매세, 관세 및 회사사업에 적용되는 기타 세금은 제외

○ 내국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회사의 경우, 내국인 보유 회사지분 금액에 계수1%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2)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순익의 외국송금과 그 자본의 본국 송금이 가능

3) 면세 항구(지역)

가) 위치

○ 말라보: K5 Oil Center 항구(석유분야 기업의 보관, 수리, 조달 등 물류 기지)

- Luba: Luba Freeport 항구(석유분야 기업의 보관, 수리, 조달 등 물류 기지)

나) 면세지역의 모든 기업은 아래 세금 면제

○ 면세지역에서 사용할 모든 재화 또는 석유분야용 모든 재화에 대한 수입 세금 면제

○ 법인세

○ 부가가치세(IVA)

○ 개인 소득세(IRPF)

○ 배당금에 대한 세금

* 이러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도기니 정부에 신청필요

정부조달 장벽

정부사업은 관보에 게재하고 공개경쟁 입찰 제도를 통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개의 정부 발주 사업은 적도기니 기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입찰 정보를 제공하여 제한적 경쟁 입찰을 통해 발주하거나, 기업이 인프라 부나 GE Proyectos(국책사업 발주/관리 담당기관)에 제안하고 협상에 따른 수의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자의 요청이나 개입으로 발주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절차와 상관없이 발주가 되는 사례도 있다.

정부발주 사업은 적도기니에 법인 설립이후에 참여가능하며, 동 법인(기업)은 적도기니인 몫의 5~10%의 이익배당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적도기니 재정(財政)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3개년(2014~16) 경제·재정 보완 대책 / Decreto Num. 72/2014 : 2014년 5월 21일자 대통령령〉은 아래 요지의 "정부 발주, 공사/용역의 수주와 이에 대한 적도기니 정부의 대금 지불관련 내용" 규정하고 있다.

- 세금면제 절차
- 공사/용역수주와 경비지불 조건 : 납세번호(NIF)구비 필수, 국가계약법 절차 준수, 사전타당성 조사필수, 기 수주 공사 중 미 실행 공사 재검토 대상
- 공공투자 공사경비 지불 : 년 3회로 제한

* 위 대통령령 상세내용 : http://blog.naver.com/sompat/220057498272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협약 가입

- 베른 협약
- WIPO(World International Property Organization)
- PCT Union(국제 특허 협력 연합)
- OAPI(아프리카 지적 재산권 기구)
- Bangui 협약
- 산업 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

OAPI

적도기니는 OAPI 회원국으로, 적도기니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 받기위해서는 OAPI 등록 필요

지적재산권관련 OAPI 설립협정의 10개 부속서 개요

○ 부속서 Ⅰ : 발명특허

○ 부속서 Ⅱ : 실용신안(實用新案)권

○ 부속서 Ⅲ : 상표와 서비스표

○ 부속서 Ⅳ : 산업디자인

○ 부속서 Ⅴ : 상호(商號)

○ 부속서 Ⅵ : 지리적 표시

○ 부속서 Ⅶ : 문예저작권

○ 부속서 Ⅷ : 부정경쟁방지

○ 부속서 Ⅸ : 집적 회로(集積回路) 배치설계

○ 부속서 Ⅹ : 식물신품종보호(2006년 1월 1일 발효)

지식 재산권 보호 현황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협약과 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담당기관(CICTE/적도기니 과학기술연구위원회)을 1987년 설립, 제도적인 틀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 부재로 인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결여와 행정역량의 부족으로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뤄 지지 않고 있으며, 약품,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등 불법 복제품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다. 서적의 경우 출판사의 부재와 수급의 어려움으로 불법적인 복사가 만연하다.

기타 장벽

지사 설치상의 제약

적도기니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외국 회사의 지사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적도기니 국내에서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외국 회사는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지사는 무역부 부령으로 면

제받지 않는 한, 지사설립 2년 이내에 적도기니의 법에 의한 법인등록을 하여야 한다(OHADA 관련 규정 참조)

○ OHADA 관련 규정: “회사와 경제이익그룹 관련 통일법 (ACTE UNIFORME RELATIF AU DROIT COMMERCIAL)제120조

- 적도기니 포함 아프리카 17개국에 적용되는 규정

법인 설립 제약

기업 활동에 내국인 참여 강화하는 보완규정 관련 대통령령(Decreto Núm 127/2,004)에서는 적도기니에 설립되는 외국인 회사에 대한 적도기니 국적인의 최소 참여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외국회사의 독단적인 법인 설립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2018년 4월 비 석유분야 투자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내국인 참여 없이 단독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석유분야 투자는 내국인 참여 의무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회사 지분: 적도기니 국적인의 지분이 최소 회사자본의 35%로 규정

○ 주주: 적도기니 국적인 최소 3인

○ 이사회 구성: 전체 이사회의 최소 1/3 이상

법인 설립 절차상의 제약[30]

적도기니의 법인 설립 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 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증인이 말라보에 1인, 바타에 1인 소재하며, 부재중일 경우가 많아 예상 소요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공증 비용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기존에 가장 중요한 절차였던 총리실로부터의 회사 설립 허가는 최소 기간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소요되었는바 법인 설립이 적도기니 진출에 있어서 가장 2큰 장벽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었다. 한편 적도기니 정부는 총리실 허가

33) 별첨 5, 6 참조

절차를 철회하여 기존 법인설립 소요기간 135일에서 56일로 대폭 축소하였지만, 여전히 17개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법인설립 간소화 목적으로 2017년 9월 12일 기업원스톱창구(Ventanilla Única Empresarial)설립 법령(Decreto Número 67/2017)을 제정 공포하였지만, 2018년 10월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지 않아, 전반적으로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그룹의 법인설립 편의성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190개국 중 적도기니는 2017년 182위를 기록하면서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비자 및 거주 증

적도기니 입국에는 입국비자 혹은 입국허가(Autorización de Entrada)를 소지하여야 한다. 적도기니 비자는 주 중국 적도기니 대사관에 비자 발급 신청해야하며, 적도기니 입국허가는 적도기니 내 초청기업 혹은 단체에서 피초청인을 위한 입국허가를 적도기니 국가안보부에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적도기니 1개월 단수 비자 공식 수수료는 50,000XAF(약 100USD)이나, 현실적으로는 대행비용을 포함하여 약 500~1,500 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입국허가는 피초청인이 적도기니 입국 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고, 비자공식수수료 50,000XAF 지불하면 도착비자(체류허가기간 1개월)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법 제 21조에 의하면 적도기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 노동 및 거주비자(Visado de Trabajo y Residencia)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노동비자나 장기체류비자는 일반적으로 발급하지 않는다. 이에 적도기니 진출 기업이나 현지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경우 현지에서 체류비자(Permanencia)혹은 거주증(Permiso de Residencia)을 국가안보부에 신청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부에 노동허가를(Permiso de Trabajo)신청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으며, 노동허가는 거주증 신청 시 구비해야할 필수요건 중 하나이다.

2012년 8월부터 적도기니 정부는 합법적 체류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외국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자에게는 체류자격 미비 근로자 1인당 5천만XAF의 과태료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국인 근로자수 제한 (Expat Quota)

적도기니 내 일반 민간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전체 근로자의 10%까지 제한되어 있으며, 탄화수소, 광업, 농업분야 종사 기업의 경우 노동고용촉진사회보장부에 사전허가 신청으로 30%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별첨1〉세법 부속서 ANEX0 I 부가 가치세 면제 생활 필수 품목

1	인슐린과 그 결정성 분말
2	키니네와 그 결정성 분말
3	항생제
4	제약(의약품)
5	비료
6	치과용 왁스
7	방사선 판 및 테이프
8	방사선 필름
9	살충제
10	고무 재질 위생 및 의약 제품
11	(외과)수술용 장갑
12	교과서
13	안경 렌즈
14	실험실(연구소)의료-외과용 소독기
15	휠체어와 기타 장애인용 이동수단
16	휠체어와 기타 장애인용 이동수단의 부품
16	보정 렌즈
17	의료-외과용 기구
18	치과용 의자
19	기타 의학 ·수술용 기구들
20	기타 농업 소비재

〈별첨2〉세법 부속서 ANEXO I (bis) 부가 가치세 면제 장비 목록

7308	주탑, 교각, 교량 등 철골 구조물과 그 자재
84021100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증기를 생산하는 다관식 증기 보일러
84021200	시간당 45톤을 증기를 생산하는 다관식 증기 보일러
84021900	혼합식 보일러를 포함한 기타 증기 보일러
84022000	"온수 보일러"로 칭하는(알려진) 기타 보일러
84031000	기타 보일러
84051000	가스 발전기
84061100	선박 추진을 위한 증기 터빈
84061900	기타 증기 터빈
84071000	항공기용 모터
84072910	10,000kg 혹은 그 미만의 선박의 피스톤 (연소) 엔진(선외 엔진제외)
84072920	10,000kg 이상 선박의 피스톤 (연소) 엔진
84081091	10,000kg 혹은 그 미만 선박의 디젤 엔진(선외 엔진 제외)
84081092	10,000kg 이상 선박의 디젤 엔진
84091000	항공기용 양수기
84101200	1000에서 10.000kw의 동력을 지닌 수력 터빈과 수차
84101300	10.000kw를 상회하는 동력을 지닌 수력 터빈과 수차
84111100	25kn를 넘지 않는 터보제트엔진
84111200	25kn를 초과하는 터보제트엔진
84112100	1,000kw의 동력을 초과하지 않는 터보 추진기
84112200	1,100kw의 동력을 상회하는 터보 추진기
84118100	5,000kw의 동력을 초과하지 않는 기타 가스 터빈
84118200	5,000kw의 동력을 초과하는 기타 가스 터빈
84122100	터보제트엔진 이외에 반동추진엔진
84122900	수평 운동 유압 엔진
84122900	기타 유압 엔진
84123100	수평 운동 공압 엔진
84123900	기타 공압 엔진
84128000	기타 엔진과 원동 기계
84131100	주유소와 수리공장(정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 공급을 위한 펌프
84131900	주유 측정 펌프
84132000	841311 혹은 841319외에 레버 핸들 펌프
84133000	스파크 혹은 압축 점화 엔진에 필요한 연료, 오일 혹은 냉각수 펌프
84134000	콘크리트 펌프
84135000	기타 왕복식 펌프
84136000	기타 다른 회전식 펌프
84137000	기타 원심 펌프
84138100	기타 액체 펌프

84138200	해당 번역 없음
84141000	진공 펌프
84143000	냉동 장비에 사용되는 컴프레셔
84144000	이동식 에어컴프레셔
84161000	액체 연료 연소기(소각기)
84132000	혼합을 포함한 기타 연소기
84163000	자동 전구
84171000	광물과 금속 제련 전기로
84172000	제빵과 제과용 비 전기 오븐
84178000	기타 비 전기오븐
84191100 부터 84198900 까지	조리(요리)나 볶음과 같이 온도의 변화가 필요한 작업용 기구와 장치
84201000	압착 인쇄기와 박판기
84211100	원심 분리기; 액체의 정련이나 여과를 위한 기구
84213900	혹은 가스의 정련이나 여과를 위한 기구(상동)
84223000	병, 용기, 자루(saco)에 내용물을 채우고, 봉하고 대조하거나 라벨을 붙이기 위한 기계나 기구, 음료 탄산가스 혼합기
84221000	상품 포장 기계나 기구
84241000 부터 84248990 까지	기타 방출, 분산, 분쇄기 류
84251100	전기 모터 기구
84251900	기타 기구
84252000	갱도 내의 이동 칸(jaula)과 광차의 상하 이동을 위한 핸드윈치
84253100	핸드 윈치 와 전기 윈치
84253900	기타 핸드윈치와 윈치
84254100	정비소용 차량 리프트
84254200	기타 잭과 유압잭
84254910	기타 잭과 기압 잭
84261100 부터 84269900 까지	견인기(견인차)와 기중기
84271000 부터 84279000 까지	지게차와 운반차
84281000 부터 84289000 까지	적재, 선적 혹은 운반을 위한 기계와 기구
84291000 부터 84295900 까지	굴착기, 그레이더, 불도저, 로드 롤러차
84031000 부터 84306900 까지	기타 토지의 절성토 및 운반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
84331900 부터 84336000 까지	농산물을 수확 혹은 탈곡 기계

84341000 부터 84342000 까지	착유기 및 착유장의 기계 및 기구
84351000	인쇄
84361000 부터 84368000 까지	농업, 원예 조림과 양계에 필요한 기타 기계와 기구
84371010 부터 84378000 까지	밀가루 제조 혹은 곡물 가공 기
84381000 부터 84388000 까지	음료 및 식품 제조기
84391000 부터 84399100 까지	섬유 재질 펄프나 종이나 판지 생산기계 와 기구
84401000	제본기
8441140 부터 84418000 까지	기타 종이나 판지의 펄프 작업과 관련된 기계
84421000 부터 84423000 까지	인쇄판 생산기
84431100 부터 84433600 까지	인쇄기
84440000	섬유 방적기
84451100 부터 84459000 까지	직물기 (섬유추출, 방적, 직물)
84471100 부터 84479000 까지	니트 기계
84490000	펠트 또는 비 직물의 생산기나 재봉기
84514000	세탁, 표백, 드라이 클리닝을 위한 기계
84515000	직물을 되감고 절단하고 부수기(빻기?) 위한 기계
84518000	기타 방직기
84522100 부터 84522900 까지	가정용 이외의 제봉기(84521000제외)
84531000 부터 84538000 까지	가죽의 생산이나 무두질 혹은 작업을 위한 기계
84541000 부터 84543000 까지	금속가공과 제강 및 정련에 필요한 기계, 변환기
84551000 부터 84553000 까지	금속 압연기
84561000 부터 94569000 까지	레이저 혹은 초음파로 작동되는 기계나 도구
84571000 부터 84573000 까지	금속 가공을 위한 복합 공작 기계
84581100 부터 84589900 까지	고철 처리 크레인
84591000 부터 84597000 까지	금속 천공, 신축, 가공기 등

84601100 부터 84609000 까지	금속 마무리 작업 기계
94611000 부터 84619000 까지	금속 광택, 절단 기계
84621000 부터 84629900 까지	기계(금속을 단련하거나 모양을 가하기 위한 것을 포함)
84631000 부터 84639000 까지	기타 금속 가공기계
84641000 부터 84649000 까지	요업 제품의 석재 가공을 위한 기계
84651000 부터 84659000 까지	목재, 경질 고무, 플라스틱 재질 작업 기계
84681000 부터 84688000 까지	용접기계
84702100	프린터 전자회로기
84741000 부터 84748000 까지	선별, 구별, 분쇄 및 분말기 혹은 기구
84751000	형광등 조립기
84752000	유리 제조 혹은 가열기
84771000 부터 84778000 까지	플라스틱 원자재 고무 작업 기계
84781000	담배 조제 기계
84791000	공공사업과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계
84792000	오일을 추출하거나 조제하는 기계나 기구
84793000	입자 패널 생산 압착기
84794000	전선 기계
84798100	기타 금속 가공 기계(권선기 포함)
84798200	기타 혼합, 분쇄 기계
8480	거푸집

〈별첨3〉6%의 부가가치세 적용 상품 품목

1	육류 및 식용가금류
2	우유 및 설탕이나 감미료 첨가 되지 않은 크림
3	우유 및 설탕이나 감미료가 첨가 된 크림
4	빵
5	쌀
6	어린 아이들의 영양 섭취를 위한 것들
7	책 혹은 교과서

〈별첨4〉특별세 적용 상품

장, 관, 항	제품 설명	CATEGORIAS 범주	특별세	CEMAC 기여금
2203.00.00	품목 20.90의 주스류를 제외한 기타 무알콜 음료	Ⅳ	20%	15%
2203.00.00	6.5%이상의 알콜량을 포함한 맥주와 품목 2203.00.90의 맥아음료	Ⅳ	25%	15%
2204.10.10 2204.10.90 2204.21.10 2204.21.20 2204.21.30 2204.29.10	스파클링 와인과 기타 와인. 그 용기의 용량이 2리터를 초과하는 2204.29.20 과 22.04.29.330항목의 경작 포도주 및 다양한 포도주	Ⅳ	40%	30%
2205.90.00 2207.10.90 2208.00.00	베르무트와 다른 포도주 및 기타 주류. 발효주(사이더); 에틸알코올 혹은 변성 알코올. 그 함류량이 80%나 그 이상인 약용 주류 생산용(식수, 포도 독주, 위스키, 럼주, 비변성 에틸알코올 함류량 80%, 아니스 증류주와 기타 15% 알코올 함량의 주류)	Ⅳ	50%	35%
2401.00.00	가공되지 않거나 제조되지 않은 담배, 담배 잔재	Ⅱ	50%	25%
2402.00.00	시가, 담배/ 큰 담배 혹은 담배 대용품	Ⅳ	50%	25%
2403.00.00	기타 담배와 담배 대용품	Ⅱ, Ⅲ, Ⅳ	50%	25%
3301.00.00	정유, 합성수지, 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	Ⅱ	20%	10%
3202.00.00	향 물질 혼합물과 이 물질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물질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하위 생산품	Ⅱ	20%	10%
3303.00.00	향수 및 화장수	Ⅳ	32%	25%
3304.00.00	미용 제품 혹은 화장품, 의약품이 아닌 피부 미용 제품, 태양열 차단 제품과 태닝제품, 매니큐어 혹은 페디큐어 제품(모든 하위 품목)	Ⅳ	32%	25%
3305.00.00	모발 제품(샴푸, 파마제품, 헤어 스프레이 및 기타)	Ⅳ	32%	25%
3306.00.00	구강과 치아 위생 관련 상품과 치아 청결을 위한 크림(모든 하위 품목)	Ⅳ	32%	25%
3307.00.00	면도제품 또는 아프터쉐이브, 방취용 화장품,제모용품, 크림, 바디로션과 기타 향수 제품 혹은 살균제 포함 여부에 상관없는 화장품 및 기타 (모든 하위 품목)	Ⅳ	32%	25%
7101.00.00				

장, 관, 항	제품 설명	CATEGORIAS 범주	특별세	CEMAC 기여금
7116.00.00	진주, 장신구, 보석 혹은 준보석, 귀금속과 그 세공품 모조 보석, 경화 (모든 하위 품목)	Ⅳ	20%	
8521.10.00	동영상 촬영 및 재생기기 혹은 자기 테이프	Ⅳ	20%	
8521.90.00	기타 동영상 촬영 및 재생기기			
8525.30.00	텔레비전 카메라	Ⅱ	20%	
8528.10.10	컬러 모니터 및 비디오 영사기	Ⅳ	20%	
9006.40.00	플래시 장착카메라	Ⅳ	20%	
9006.51.00	35mm를 넘지 않는 영화용 카메라	Ⅳ	25%	
9006.52.00	35mm미만 영화용 카메라	Ⅳ	25%	
9006.53.00	35mm 영화용 카메라	Ⅳ	25%	
9006.59.00	기타 카메라	Ⅳ	25%	
9007.11.00	길이 16mm 혹은 더블8mm 미만 영화용 카메라	Ⅳ	25%	
9007.19.00	기타 카메라	Ⅳ	25%	
9007.21.00	장편영화 영사기	Ⅳ	25%	
9007.29.00	기타 영화 영사기	Ⅳ	25%	
9008.10.00	영사기	Ⅳ	25%	
9008.30.00	기타 고정 영사기	Ⅳ	25%	
9008.40.00	확대 및 축소 카메라	Ⅳ	26%	
9301.a9307	무기, 탄약 및 부속품	Ⅳ	27%	

〈별첨5〉적도기니 법인 등록 구비 서류

1. 모회사의 정관 공증 사본, 스페인어 공증 번역본.
2. 모회사 이사회의 적도기니 내 법인 설립 결정 관한 의사 결의안 사본, 스페인어 공증 번역본.
3. 적도기니 내 법인장 선임에 관한 모회사 이사회의 의사 결의안 사본, 스페인어 공증 번역본-주의: 본 법인장은 현지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제시하여야 하며 모든 필요 서류에 대해 서명을 해야 한다.
4. 변호사 혹은 법률 회사를 회사 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 한다는 스페인어 위임장(모회사가 변호사/법률회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회사에서 1차적으로 지사장에게 위임장을 주고 지사장이 변호사/법률회사에게 재차 위임 가능함.)

5. 적도기니에서 제공할 용역 목록
6. 회사의 기술이나 집행 능력에 대한 기술서류(전년도Financial Report 등)
7. 적도기니 법인장 및 이사들의 여권 복사본
8. 적도기니 은행 계좌 번호
9. 적도기니에서의 투자 기획 안(간략하게 작성 가능)
10. 회사에서 고용할 외국인 및 내국인 수(남녀 구분)
11. 내국인 고용안과 양성계획안
12. 지사장의 여권사진 8매
13. 분할하여 지급 할 자본금(〉 XAF 10,000,000)

〈별첨6〉적도기니 법인 설립 절차 및 예상 소요 시간

절차	절차 내용	예상소요시간	예상비용
1	신원 조회서 발급	1일	-
2	공증인이 회사 정관을 공인한다.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관례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회사 정관을 작성한다. 법으로 공증인이 회사 정관을 공증해야 하고 공공증서를 발급하며 공증인은 말라보에 1인, 바타에 1인 주재)	9~14일	자본의 3~6%
3	상업 등기소에 회사 정관 (공공증서)을 등록 (등록을 위하여, 사업자는 회사정관 공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유일한 회사명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전조회를 하지 않고 해당회사명이 이미 존재한다면 상업등기소에서 등록 신청을 거절한다.)	2~3일	자본의 3%
4	법인 계좌 개설 및 은행 지불 증명서 발급 (법적으로는 회사등록 이전에 최소자본을 예금해야 하지만 법인구좌를 열기위해서는 공증정관과 등록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1일	-
5	지불능력증명서(Certificate of Solvency) 발급 (지불능력증명서는 재정경제기획부에서 발급받는다.)	2일	XAF 10,000 ~ 15,000 (수입인지)
6	* 통상중소기업진흥부의 비지니스민간투자국에 등록 신청. 연 납부금은 회사에 따라 변동	1일	XAF 100,000
7	* 통상중소기업진흥부의 상무과에 등록 신청. 연 납부금은 회사에 따라 변동	1일	XAF 150,000
8	* 세금 등록 신청 - 회사 설립 허가서와 회사 공인 정관 사본 첨부해야 한다. - 납부금은 재무부 (public treasury)의 구좌에 입금해야 한다. - 재무부로부터 납부금 입금 확인증을 받은 후 세금등록관할	1일	자본의 1% (납세자번호) + 자본의 1% (최소 회계

절차	절차 내용	예상소요시간	예상비용
	당국에서 납세자번호를 취득한다. - 모든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허가 신청 혹은 신고한 후 해당 납입금을 입금하고 재무부의 입금 확인 발급 받아 각 관계부처에 제출하고 최종 허가를 받는 방법이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납부금) + XAF 2,000 (납세자 번호)
9	* 노동고용촉진사회보장부에 운영 개시 신고 - 운영을 개시하면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임금의 1%, 피고용인은 0.5%를 노동자보호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 표기된 납부금은 공식적인 납부금으로 실제로는 더 높을 수 있다.	1일	XAF 300 (서식) XAF 6,750 (소규모) - XAF 12,500 (중)
10	* 재무부의 구좌로 납입금 입금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납입금은 민간은행을 통해 재무부구좌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	1일	8~9번 절차에 포함
11	재무부로부터 납입금 확인증 수령	4일	-
12	통상중소기업진흥부의 비지니스민간투자국에 납입금 수령증을 제출하고 허가증을 취득	14일	-
13	통산중소기업진흥부에 납입금 수령증을 제출하고 허가증을 취득	14일(12번 절차와 동시 진행 가능)	-
14	납세자 번호 취득	2일	8번 절차에 포함
15	노동고용촉진사회보장부에서 등록번호 취득	1일	9번 절차에 포함
16	피고용인 사회보장번호 취득	1일	-
17	사회보장(INSESO) 등록 - 기업은 종업원 첫 급여 지급 월에 사회보장 등록을 해야 하며, 사회보장납부금은 고용주 피고용인 월급의 21.5%를, 피고용인이 월급의4.5% 부담한다.	1일	페이지당 XAF 300

주: * 표는 동시에 진행 가능

카메룬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경제 개관

공식국명	카메룬(Cameroon)
수도	야운데(Yaoundé)
면적	475,442㎢
인구	2,500만명(2017, CIA 기준), 인구성장률 2.56%
주요도시	Douala 213만명, Yaoundé (수도) 181만명, Garoua 57만명 Bamenda 55만명, Maroua 44만명, Bafoussam 38만명, Ngaoundéré 31만명, Bertoua 30만명
언어	프랑스어, 영어
종교	천주교/기독교(45%), 이슬람교(22%), 토속종교(25%) 등
기대수명	58.5세(2016년 기준)
인터넷 사용율	20.68%
건국일	1960.1.1 카메룬 공화국 수립
정부형태	공화제
국가원수	폴 비야 대통령미
입법부	양원제 280의석 (상원 100명, 하원 180명), 임기 5년
기후	ㅇ 남부에서 북부로 올라갈수록 열대우림기후에서 사바나, 사하라 사막성 기후로 바뀜 ㅇ 야운데: 건기(6-9월, 11월말-3월), 우기(4-5월, 9월말-11월)
시차	- 8시간 (한국시각 오전 9시가 현지시각 오전 1시)

주요 경제 지표

기초지표	ㅇ GDP : 340억달러 (2017년, IMF) ㅇ 경제성장률(GDP) : 3.2% (2017년, IMF) ㅇ 구성 : 농업 21.3%, 제조업 30.8%, 서비스 47.9% ㅇ 1인당 GDP : 1,446달러 (2017년, World Bank)
정부부채	GDP대비 35.7% (2017)
소비자물가	0.6%(2017년)
화폐단위	CFA Franc
환율	1EURO = 655.957CFA (유로화 고정)
외환보유고	32억불(2017년)
수출비중	GDP대비 19.5%(2015년)
교역액	122억불(2016년, 추정)
수출입	ㅇ 2017년 (수출 억달러, 수입 억달러) ㅇ 2016년 (수출 56억달러, 수입 66억달러) ㅇ 2015년 (수출 58억달러, 수입 65억달러) ㅇ 2014년 (수출 67억달러, 수입 69억달러) ㅇ 2013년 (수출 45억달러, 수입 66억달러)
주요수출품	원유, 원목, 코코아, 알미늄, 커피 등
주요수입품	기계류, 전자장비, 자동차, 석유류, 식료품 등
주요수출국	중국(16.7%), 인도(15.7), 스페인(6.2), 프랑스(6.1), 벨기에(6.1)
주요수입국	중국(27.9%), 나이지리아(13.9), 프랑스(10.9), 벨기에(4.1)

한-카메룬 경제 관계

무역

(1) 최근 교역 추이

카메룬은 주로 원자재와 농산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1차 산업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도 미미하여 수출 47백만 달러, 수입 3백만 달러(2017년 기준, 한국무역협회) 수준에 불과하다.

對카메룬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18	47	72.7	3	-95.4
2017	27	14.3	58	1,890.1
2016	24	-22.6	3	-93.1
2015	31	-35.6	43	659.1
2014	48	9.9	6	-43.2
2013	44	-19.5	10	-7.2
2012	54	-22.8	11	-74.6
2011	70	45.4	42	316.8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섬유제품, 컬러TV, 석유화학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은 원유, 보석, 금 등 에너지·자원 관련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2015년 12월 카메룬으로부터 40백만 달러 원유 수입으로 전년대비 수입 증가율 대폭 상승

카메룬은 원유 생산국이나 소규모 정유시설로 인해 석유류 제품 공급이 부족한 바, 관련 제품의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가 강점을 지닌 전자정부 시스템 등 ICT 관련 제품 수출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카메룬 정부의 방산물자 현대화 및 산업다변화 정책에 대응하여 방산물자 수출 및 제조업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강화 필요하다.

한편 카메룬 수입시장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약 20%(2016)를 차지하는 등 중국의 對아프리카 대규모 투자와 연계하여 중국과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카메룬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구분	2015	2016
일본	3.0	3.0
중국	22.4	20.4

자료: 카메룬 재무부

(2) 수출입 품목

우리나라의 대카메룬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기타사무기기, 기타석유화학제품, 기타섬유제품, 합성수지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품목은 연괴및스크랩, 원목 등이다.

주요 수출 품목(MTI 4단위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17		201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기타사무기기	0	0	24,696	·
2	기타석유화학제품	3,397	65.5	4,624	36.1
3	기타섬유제품	3,817	-46.6	3,607	-5.5
4	합성수지	5,472	24.8	3,268	-40.3
5	무선전화기	289	773.3	1,551	436.2
6	승용차	1,013	-3.5	1,071	5.7
7	칼라TV	1,417	-29.5	913	-35.6
8	기타정밀화학제품	845	159.6	854	1
9	위생용품	101	63.6	562	456.9
10	기타정밀화학원료	364	52.5	426	17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요 수입 품목(MTI 4단위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17		201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연괴및스크랩	1255	191.2	1095	-12.8
2	원목	192	-43.7	273	42.2
3	컴퓨터부품	230	818.8	212	-7.7
4	기타조명기기	0	-95	94	214177.3
5	개별소자반도체부품	2	0	86	3592.6
6	프린터	0	0	83	0
7	연결부품	0	-49.1	81	35917
8	스프링	0	0	76	0
9	컴퓨터주변기기	0	-99.6	66	315861.9
10	직물제의류	14	35.3	64	351.8

자료: 한국무역협회

우리기업의 투자 진출

(1) 우리나라의 대 카메룬 투자진출 현황

현재 카메룬내 국내 투자진출 법인 수는 4개사이며, 2013~14년 투자 실적은 없었으나, 2015년 한국자원투자개발이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주석·금 광업권을 인수하면서 신규로 진출했다(약 1백만불 규모). 다만 CNK 다이아몬드 사건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효성 논란 등에 따라 현재는 카메룬 광업 분야에 대한 우리기업 진출이 부진한 상황으로, 카메룬에서 활동중인 국내 기업은 4개사로 집계된다.

※ 주요진출기업 : 한국자원투자개발(KORID), CNK Mining, MGI Partners Cameroon, Greenstone Cameroon

對카메룬 투자진출 현황

투자	'08 이전	'09	'10	'11	'12	'13	'14	'15	누계
신규법인수	2	1	1	1	1	0	0	1	7
투자액(천USD)	399	21	105	4,406	60	0	0	990	5,981

(2) 대 카메룬 투자진출 부진 사유

카메룬으로의 투자 부진은 부정부패, 정치적 불안정 등 투자 유인 요인이 부족함에 기인한다. 2017년도 기준으로 부패지수가 세계 153위로서 매우 높고 조세제도 등 기업 운영에 너무 많은 불투명성 존재한다. 조세징수에 법령이 준수되지 않고 징수자와 납세자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징수된 세금의 60% 이상이 징수원에 의해 착복된다. 또한 현 대통령의 고령화 및 건강악화에 따른 정세 불안 요인도 상존한다.

카메룬의 부실한 인프라 및 열악한 생활 환경도 부진 이유로 들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전력보급율이 20% 수준에 그치고 지방의 경우에는 5%에 불과하며, 도로 포장율도 전체 5만 km 중 8.6%에 불과한 4,300km만 포장되어 있어 물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연간 2,50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

망하고 있다. 카메룬내 철도망은 1,009km에 이르나 협궤로서 목재의 운송 등에 주로 사용되며, 승객 이동용으로의 사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카메룬 경제 동향

경제 개요

카메룬은 농업에 유리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고, 각종 광물, 석유·가스, 산림 등 천연자원도 풍부하다. 카메룬 경제는 농산물 및 천연자원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1차 수출품의 국제가격 등락은 카메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카메룬의 경제개발은 정부의 관리 미숙, 부패의 만연 등과 같이 비우호적 기업환경으로 인해 부진한 상태이다. 카메룬은 세계은행의 연례 국별 기업환경 여건조사 (Ease of doing Business)등에서 세계 최하위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정부의 부패 문제가 늘 지적되고 있다.

최근 카메룬의 연평균 경제성장률(2010~2015년)은 산유량 증가 및 국제 고유가로 인해 연평균 5%대의 성장률을 이루었으나, 이는 당초 이 기간 중 기대했던 연평균 5.5%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2016년도에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해 4.45% 성장에 그쳤으며, 2017년도에는 3.18%로 더욱 하락하여 2035년도에 신흥성장국으로 부상한다는 'VISION 2035'의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카메룬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에디오피아, 세네갈 등 여타 아프리카 국가보다 높은 편이나, 교육, 보건 등 주요 사회·경제지표에 있어서는 이들 나라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인프라 수준은 최저 수준이면서 부패지수는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카메룬은 독립 후 25년여간 아프리카에서 가장 풍요로운 국가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카메룬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 코코아, 커피, 면화 등의

국제가격 폭락, 통화가치의 과대평가 문제, 경제관리 실패 등의 제 요인이 겹쳐 10년 이상의 장기 불황을 경험했다. 1986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 중 실질 GDP가 무려 60% 이상 감소하였으며, 반면 경상수지 적자, 재정 적자 및 대외 부채는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카메룬은 1980년대 후반부터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를 시행해야 했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며, 1994년 1월에는 카메룬을 중심으로 한 CEMAC 국가들이 사용하는 세파프랑(XAF) 가치가 50% 절하되었고 1995년에는 공무원 봉급이 65% 삭감되는 일까지 있었다. 2005.10월 IMF가 승인한 3년 기한의 빈곤감소 및 성장프로그램(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PRGF)은 2008년말 종료되었다.

공식 통계상 인플레는 잡혀가고 있으나 카메룬 국민들은 곡가, 유가 등 생활물가 앙등에 좌절하였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이 2008년 2월 Douala, Yaoundé 등 대도시에서 일어났던 유혈폭동·소요사태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2008년 3월 카메룬 정부는 기초 생활용품 물가인하를 위해 식품류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국영기업의 민영화 역시 부진한 상태이다. 종래 국영수도회사(National Water Utility: SNEC)는 2개의 사업체로 분리되어, 수도 인프라를 관장하는 CAMWATER는 아직 정부 소유로 남아 있으며, 동 부문을 제외한 SNEC는 현재 모로코수도회사(Moroccan Water Utility)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소유하고 있다.

국영항공사 CAMAIR 및 국영통신회사 CAMTEL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은 이 분야의 정치적 민감성과 외국 투자자들의 카메룬내 부패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CAMTEL은 정통부 감독 하에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CAMAIR는 공식적으로 사망선고를 받고 2008년 5월 모든 취항을 중단했다가 2009년도에 Camair-Co를 재설립하여 2011년 3월부터 취항을 재개했다.

카메룬의 대외교역에 있어서 프랑스 등 유럽연합국가들이 전체수출입의 상

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아프리카 진출로 중국과의 교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은 최근 카메룬 중·저가 공산품 시장을 석권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카메룬산 목재를 대량 수입해 감으로써 카메룬의 신흥 교역 상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타 지역 주요 무역상대국으로는 나이지리아, 미국 등이 있으며, 특히 미국은 카메룬의 주요 투자국으로서 차드-카메룬 송유관과 등 에너지 분야 및 플랜테이션 농작물 재배(Del Monte)에 진출해 있다. 카메룬은 천혜의 농업환경 및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아프리카에서 자연조건이 가장 유리한 국가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카메룬 정부는 선진국의 외채 탕감 또는 상환기간 연장, 민영화 정책 지속 추진, 부패방지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장기간 누적되어 온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외국인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되어 온 정부의 비능률적인 경제관리, 관료주의와 부패, 대외부채의 증가 등을 향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부가 카메룬 경제·사회 발전의 관건이다. 'VISION 2035' 달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가장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EU, 프랑스, 중국 및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통해 전력, 도로 분야에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프라 구축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카메룬은 중앙아프리카 지역 6개국(카메룬, 차드,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 적도 기니, 가봉)이 속한 중앙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CEMAC) 총 GDP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해당 지역 내 경제주도권을 지니고 있으나, CEMAC을 통한 지역경제 통합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2018년 카메룬 정부 예산

카메룬의 2018년 예산은 작년보다 3.2% 증가한 9조 300억원 규모이며, 주로 2019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개최를 위한 인프라 시설 확충, 2018 대선 및 부채상환등에 배정되었다.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최근 보호무역주의 경향, 저유가, 테러리즘의 장기화 및 중국경제침체로 인해 카메룬의 경제성장률 하락 및 대외부채 증가하고 있다. 원유·원자재가 하락 및 보코하람 테러에 대한 재정지출 증가로 인해 2017년도 경제성장률은 3%대로 하락했다. 2018년 6월부터는 과도한 정부 부채로 인해 IMF로부터 약 6.7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진중인 경제구조 조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금년 성장률은 3.7%, 내년도 성장률은 4.2%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IMF는 전망하고 있다.

카메룬 GDP 성장률 추이(IMF)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망)
4.4	4.9	5.0	5.1	4.45	3.18	3.7

카메룬 주요 수출입 품목(2010-2014)

구 분	주요 수출품목(비중 %)	주요 수입품목(비중 %)
상 품	원유 (25.6) 코코아 (6.8) 목재 (6.4) 석유 및 윤활유 (6.3)	석유 및 윤활유 (19.9) 공작기계 (6.8) 곡물 (5.9) 자동차 (4.9)
서비스	교통 서비스 (7.0) 호텔 및 식당 (5.6)	교통 서비스 (9.5) 호텔 및 식당 (5.4)

카메룬 정부부채 규모가 위험수준인 GDP의 30%를 초과함에 따라 2017년 6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카메룬의 재정상황은 대외부채를 통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비효율적인 재정집행 및 단기 유로화 채권 증가로 인해 악화되고 있다. 카메룬 경제는 원유·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대외 환경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유럽 및 중국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당초 예상한 경제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카메룬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를 통한 산업구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전력, 도로 등 기본 인프라 구축 및 영

농 분야 기계화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2016년 12월 IMF 총재가 중앙아프리카 경제공동체(CEMAC) 6개국[31] 정상과 회담을 갖고, 6개국 공통화폐(세파프랑)에 대한 평가절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6개국 정상들의 강력한 반대로 해당 결정을 보류하였다 IMF는 유가하락으로 CEMAC 경제가 급속 악화되고 있어 원활한 해외투자 등 친기업적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세파의 평가절하를 권고하였으나, 각국은 물가상승과 정국불안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였다. 최근 UN의 아프리카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카메룬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추진 사업에 대한 해외 원조 및 투자자금을 적극 유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카메룬이 부가가치 제품 생산 및 글로벌 가치사슬내 편입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설 기반확충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조언한 바 있다.

경제 악화에 따른 IMF 구제금융 지원

IMF는 2017년 6월말 경제혁신을 조건으로 카메룬에 약 6.7억불 경협 차관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1차로 1.71억 달러를 제공한 바 있으며, 2차로 지난해 12월 1.17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등 현재까지 총 2.88억 달러의 경협 차관을 제공하였다. 3차 경협 차관 약 78.8백만 달러가 2018년 중으로 제공될 예정이었으나, IMF와 카메룬 정부간 경제 개혁 성과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경협차관은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1) IMF 경제 평가 및 전망

IMF는 카메룬이 국제유가 하락 및 보코하람으로 인한 테러 위협으로 인해 2014년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뿐 아니라 대외부채 증가 및 외환보유고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IMF는 최근 유럽 및 중국의 경제회복이 가시화됨에 따라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상향조정하였으나, 원유/원자재가 하락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경제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고 하면서, CEMAC 6개국 중 카메룬, 가봉, 차드는 이미 IMF로부터 경제협력 차관을 지원받은 상황이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31) 카메룬,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가봉, 적도기니

콩고(브라자빌), 적도기니는 차관지원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IMF는 향후 카메룬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대외부채 감소 ▲석유 판매수익 이외의 재정수입(non-oil revenue base) 확대 ▲우선순위에 따른 공공인프라 건설 ▲합리적인 재정지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카메룬이 IMF가 제시한 경제혁신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출의 효과성을 최대한 제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이 작성되면 IMF 권고사항들(긴축재정 및 세수기반 확대 등)이 동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경제위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외부채 증가규모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IMF 차관이 지원되는 3년간(2017~19) 대외부채 증가규모는 최대 2조 세파프랑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공분야 부채와 관련해서는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간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은행을 통해 민간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를 조속히 변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2) 카메룬 경제 주요 현안

(정국 불안 가능성) ▲2018년 10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과의 이견으로 인한 정국 불안, ▲최북단 지역의 보코하람 테러, ▲중앙아프리카 난민 유입, ▲서부 영어권 지역의 소요사태 등은 매우 가시적인 불안요소들이며, 특히 서부 영어권 지역의 소요사태는 동 지역의 경제활동을 마비시켜 주재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구조 혁신) 정부재정을 건전화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규세원 발굴 및 대외부채 규모 축소 등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IMF의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정부 지출 부문에 전반적인 혁신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해 카메룬 정부는 IMF에서 요구하는 경제구조 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화폐 평가절하 가능성) IMF가 제시한 경제혁신 방안에는 주재국 화폐 평가절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세파프랑의 평가절하는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며, 관련국들은 평가절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이 다원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화폐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국민 생활경제에 엄청난 고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IMF와 카메룬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대외부채 경감 등 경제구조 혁신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산업발전 전략

(중장기 발전방안) 카메룬 정부는 중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전력망 구축 등 기본 인프라 건설에 주력할 뿐 아니라 기업환경 개선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카메룬내 풍부한 수력발전 잠재력(DR콩고에 이어 아프리카내 2위) 및 재생에너지 자원 등을 활용한다면 '20년까지 카메룬내 전력수급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수도 야운데에서 북동쪽으로 65km 떨어진 Sanaga 강 유역에 Nachtigal 수력발전소를 건설중으로 2020~2021년 사이 완공시 카메룬 전력수요의 상당부분(30% 이상 예상)을 수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발전 전략) 카메룬 산업기술부는 최근 산업발전 전략 초안을 공개하고 국가발전 핵심전략으로 '21년까지 제조업 분야에서 총 GDP의 24%를 생산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전력망, 도로 등 주요 인프라 구축 및 기술인력 중심의 노동력 양성 등과 같은 3대 분야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농업연관 산업, 에너지·자원 산업 및 디지털 정보통신 산업 등 3대 산업분야를 중점 육성함으로써 연관 산업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

(환율) CFA 프랑은 €1=CFAfr655.957의 고정환율로 유로화에 연동되어 있다. 최근 유럽경제의 회복으로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유로화에 연동되어 있는 현지화폐도 평가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1$당 600 CFA이상 → 2018년 하반기, 1$당 577 CFA 전후).

(물가) 카메룬 정부는 물가수준을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는 있으나 카메룬은 매년 전체 수입액의 10~15%인 5~6억 달러 가량이 쌀과 밀 및 어류 수입에 쓰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품목의 국제시세에 따라 물가가 크게 좌우되고 있다. 세계적인 곡물가격의 상승은 카메룬 경제에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유가 인상의 영향으로 2015년 물가상승률이 2.8%까지 상승하였으나, 정부의 휘발유 등 주요품목에 대한 강력한 물가단속으로 2016년 2.2%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2017년에는 0.6%로 하락하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카메룬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물가 안정) 2014년 인상된 정유가격 인상(14~15%) 및 교통비(택시 기본요금 인상 200 => 250 CFA) 인상으로 인해 2015년 소비자 물가가 2.8%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6년부터 주요 생활물가가 안정되어 2016년에는 2.2%, 2017년에는 0.6% 상승에 그쳤다.

(기업환경 및 국가경쟁력 최하위권) 카메룬은 World Bank에서 매년 실시하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 평가에서 2016년 167위(전체 189개국)에 이어 2017년에는 163위(전체 190개국)로 순위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메룬 국내 기업환경뿐 아니라 국경간 무역을 위한 제도기반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다. 예컨대, 수출과 수입을 위한 절차에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수출에 평균 23일 소요되고, 수입에는 평균 25일이 소요되어 OECD 국가 평균 4일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컨테이너 당 수입화물의 경우 지불되는 비용이 2,267불로 OECD 평균인 1,100불 보다 2배이상 높은 수준이다. 2018년 World Economic Forum 보고서에 따르면, 카메룬의 국가경쟁력은 전체 140국중 121위로 이는 낙후된 인프라, 부족한 전기, 교육 및 일자리 부족, 열악한 기업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코하람) 카메룬 최북부지역과 인접한 나이지리아내 이슬람 반군인 보코하람에 대해 2017년 3월 주재국은 나이지리아 정부군과의 연합작전으로 보코하람 테러리스트 60명을 사살하고 인질 5천여명을 구출하는 등 보코하람 세력에 대한 군사작전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코하람은 단순한 테러에 따른 치안 불안을 넘어 카메룬과 차드 및 나이지리아의 국경 무역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중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치안이 안전한 지역으로 꼽혔던 카메룬이 치안 불안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른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관세

카메룬은 중앙아프리카경제통화동맹(CEMAC) 회원국 가운데 최초로 1994년 관세 및 투자법령을 시행한 바 있는데, 새로운 법령은 수입에 대한 수량제한을 없애고 비관세 보호장치와 많은 수입면허요건을 철폐하였으며, 관세산정 방식을 단순화하였다. 이에 따라 이론상으로는 1998년 1월부터CEMAC 회원국 간 교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철폐되고 부가가치세(VAT)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 달성은 지연되고 있어서 CEMAC 회원국에 대해서도 관세와 VAT가 모두 적용되고 있다.

카메룬의 관세는 수입품목의 CIF 가격에 대해 부과된다. 카메룬에서는 관세사기가 팽배하며 SGS(수출입품검사기관)의 산정 대상이 되지 않는 수입품목의 가액을 둘러싸고 세관원과의 시간을 오래 끄는 협상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

카메룬 정부는 2001년 7월 관세 산정에 관한 WTO 협정을 2001년 7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1994년 지역재정개혁프로그램(Regional Fiscal Reform Program)은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6가지 관세 및 세금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공동대외관세(Common External Tariff), 일반화된 특혜관세(Generalized Preferential Tariff), 잠정적인 추징금(Temporary Surcharge), 물품세(Excise Tax),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기타 서비스세(Service Tax)

공동대외관세(불어 약자로 TEC)는 대상 상품을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5~20% 사이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카테고리	내용	TEC 세율
I	필수품목(장관령에 의해 정하며, 필수식품, 의약품 등과 같은 품목임.)	5
II	원료 및 기구	10
III	중간재 (반가공제품)	20
IV	최종제품 (소비재)	30

부가가치세(VAT 또는 불어로 TVA)는 소비세이며, 카메룬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의 CIF 가격에 관세를 더한 것으로서 위의 카테고리 I에 속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19.25%의 비율로 부과된다.

간접세로서 25%를 부과하는 물품세는 장관령이 정하는 리스트에 포함된 사치성 물품에 부과되며, 마지막으로 지역통합세(Regional Integration Tax: 불어 약자로 TCI) 1.0%가 부과됨. 물품세와 지역통합세는 수입품의 CIF 가격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이러한 관세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므로 카메룬에 수출하려고 하는 업자들은 관세청(Customs Administration) 또는 카메룬 정부를 위해 하적 이전의 화물을 검색하고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을를 받는 즉시 수입신고서를 발급하는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SGS: 화물의 선적 또는 제조 물품의 성능에 관련된 전통적인 검사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기업)를 접촉해야 한다.

수입 정책

수입 면허

1994년부터 카메룬 정부는 수입면허 취득 절차를 단순화하였다. 수입업자는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에 등록하고 가액이 200만 CFA 이상되는 모든 수입품을 SGS에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특별 수입허가가 부여된다. 수입업자는 재무부 세무국(Tax Department)으로부터 납세자카드(Taxpayer's card)를 받아야 하며, 공공사업과 관련된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건설업자는 동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동 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의 일부로 간주될 경우에는 재무부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EMAC은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역 면허 제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임시 수입허가는 카메룬 시장에서 판매하기를 원하는 몇 명의 대형 수입업자에 대해서만 부여되는데 최장 1년간 보관이 허용되며, 보통 보증금이 요구된다.

보관료는 화물이 상륙한 날부터 산정되며, 수입업자는 전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보관물품이 나갈 때마다 관세를 지불한다. 정부는 임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창고를 제공하며, 일부 몇 대형수입업자와 화물 운송회사도 임시 수입을 위해 정부가 감독하는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과 같은 내륙국가로 보내는 물품은 카메룬 세관에 가액을 바탕으로 산정한 수입세를 재수출의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화물 운송업자의 창고에 보관되어 물품이 행선지로 발송되기 위해 창고에서 반출될 때 보증금은 반환된다.

수입 허가 관련 서류

카메룬에서의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상업견적서(commercial invoice)와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을 제시해야 한다. 선박부호와 번호는 견적서와 물품에 표시된 것과 부합해야 한다. 육상운송을 위해서는 견적서 3부가

필요하며, 항공운송을 위해 견적서가 4부 필요하다.

수입물품 가액이 200만CFA를 초과할 경우에만 은행 거래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SGS로부터 검사 결과 이상한 점이 없음을 요구하는 선적 이전 검사합격증을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고의류와 같은 특정 수입품의 경우에는 미감염 증명서(certificate of non-infestation)가 요구되기도 한다. SGS는 중고 자동차 수입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수수료를 도입하였다.

특정한 범주의 수출의 경우에는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다. 커피와 코코아 수출의 경우에는 2개의 정부가 인정하는 품질검사회사 가운데 한 곳으로부터 품질 등급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금과 다이아몬드와 같은 "전략적" 제품과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품목(예를 들어 살아있는 동물 및 약용식물을 포함한다. CITES 협약에 규율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면허가 필요하다. 한편 카메룬 정부는 환경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몇 가지 형태의 임산물 수출은 금지하고 있다.

2000년 12월부터 통관 절차를 한 군데에서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선박 도착 48시간 이전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처음에는 이러한 혁신적인 조치가 서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었으나, 세관 관리들의 부패로 인한 절차 지연으로 정상적인 처리가 계속 방해를 받고 있다. 국제해사 취급촉진위원회(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Facilitation Committee)는 세관과 관련된 지연을 어떻게 하면 더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수입 규제

수입 제한 분류

카메룬은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 자유화가 되어 있으나 내수 산업 보호 또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 제한 또는 전면

수입 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카메룬에 수입되는 품목은 제한 정도에 따라 3개 분류로 구분된다.

1) 수입 자유화 품목: 제한이 전혀 없음

2) 수입 부분 제한 품목: 수입시 사전 승인이나 허가증 필요

3) 수입이 완전히 금지되어있는 수입 금지 품목

선적전 검사 제도 운영

카메룬은 원칙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을 수출국에서 선적하기 전에 수입검사기관(SGS)을 통해 품질, 수량, 가격을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FOB 기준 2,000,000CFA 미만일 경우에는 선적전 사전검사도 면제하고 있으나, 전체 수입 승인액이 2,000,000CFA 이상이고 이중 일부만이 수입되어 2,000,000CFA 미만이 된 경우에는 사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액 2,00,000CFA 미만으로서 SGS의 선적전 검사가 면제되는 품목으로는 귀금속, 예술품, 살아있는 동물, 철 스크랩, 신문, 중고차를 포함 개인 생활용품, 6개월 이상 사용된 관광용 중고차, 상업용 샘플, 석유시추용 장비 및 물품, 외국기관 수입물품, 기부용품, 군에 의한 수입물품, 자유무역지대 수입물품 등이 있다.

수입 제한 품목

수입 제한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고체 비누로 규정에 맞지 않는 것
- 담배-건강 손상 문구 및 니코틴 함유량 등을 삽입해야 함
- 의약품-사용법과 사용 증상을 영어와 불어로 동시 표기해야 함
- 수의약품-수의사를 통해서만 수입 가능
- 식용 육류

- 바다 생선 또는 양식 어류
- 의약용 비누
- pyrotechnic articles, beacon rockets 등 폭발물
- 전파 송수신기
- 무기와 탄약
- 귀금속 물질(금, 플래티늄, 사파이어 등)
- 우라늄, 토륨, 드테륨 등 방사선 물질과 방사선 요소를 포함한 장비
- 이소다인을 최대 100ppm 함유하거나 또는 100mg/kg 포함한 소금
- 밀가루: 성분 검사 강제
- 녹화된 비디오테이프

수입 금지 품목

수입 제한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모조품
- “IBERO” oil and “Turkey Brand” vegetal oil
- “McRAY SCOTCH Whisky”
- 유독성 또는 산업 폐기물
- 비 이소다인 소금
- 나이지라로부터의 밀 수입
- Bovine meat of European origin
- intetrix p granules 포함 의약품
- phenolphthalein 포함 의약품: MUCINUM, PURGANOL

○ 아시아로부터 우유 수입

○ 비누류

- Jabiru antiseptic soap germicidal
- HG 12 germicidal soap
- Mipipo germicidal soap
- Roberts Medicated soap
- skingard antiseptic soap
- crusader Medicatd Soap
- Tropex Medicated Soap
- Bicu Soap

○ 소독용 살충제
Cock brand, double cock brand, DDT를 함유한 cock brand superior

○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농업용 살충제
Captafol, Binapacryl, Cyhexatin, Haipen, Merpafol, Chemox general, Dapacryl, Endosan, Octalox, Octalene, Aldrex, Aldrite, Drinox, Subitex, Vertac, Ambox, Caldon, Phenotan, Basanite

○ 하기의 스킨 트리트먼트 크림
Mipipo Medicated Cream, IKB Medicated Cream
IKB Medicated Extra Cream, MIC Medicated Cream
Crusader Skin Toning Cream, Elegance Skin Toning Cream
Symbi Cream, Skin clear Cream, Nice Super Cream
Tura Medicated Cream, Amba Cream

통관 및 운송

통관

카메룬에서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에 등록하여 납세번호(Tax Payers Card Number)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 후 통상 2~3일이 걸린다.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항공화물의 경우 최대 이틀, 해상화물은 2~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통관지체가 심해 이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특히 2014년도의 경우에는 항구에 누적 장치된 콘테이너로 인해 화물의 선적 발송에 최소 3~4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수출선적기일 미준수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수입물량의 하적도 지연된 바 있다. 또한 10~12월 중 도착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화물 적체로 인해 통관에 소요되는 시일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음. 수입상 또는 수입 에이젼트는 상품 도착 72시간 전까지 SGS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Commercial Invoice
- List of parcles
- Import declaration and payment receipt
- Insurance Certificate
- Certificate of origin
- Fumigation certificate
- Copy of Bill of lading

통관 절차는 납세번호 발급 → 전산 등록 → 화물 x-ray 검사 → 체크아웃으로 진행이 되며, 통상적으로 납세번호 발급 및 전산등록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최초 수입의 경우에 납세번호 발급에는 적게는 2일에서 많게는 10일 이상 소요되기도 하므로 화물 도착 전에 납세번호 발급 등 필요서류를 미리 구비해야 통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015년 9월 4일, 카메룬 관세청은 우리나라 관세청과 MOU를 맺고, 우리나라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을 도입하기로 한 바, 향후 3년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후 12년간 유지보수하기로 하였다(총 2억 3천만 달러 규모). 이에 따라 카메룬 정부와 우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엽합회(CUPIA)는 2017년 1월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 진행하여 2018년 말 완료 예정이다. 우리 UNI-PASS 시스템이 도입되면 카메룬의 통관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간 관세행정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관세 시스템뿐 아니라 그 동안 축적된 관세 행정 노하우까지 전수함으로써 카메룬 관세행정 선진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운송

카메룬에는 5개의 민항기 취항 공항이 있으나, 국제공항은 두알라, 야운데, 가루아 등 3개이며, 두알라와 야운데 공항이 외국 취항 항공노선 검점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카메룬에는 Douala, Limbe, Kribi 등 3개의 항구가 있으며, 상선의 90% 이상이 두알라항을 통해 입항하며, 두알라 항을 통해 연간 800만톤 이상의 화물이 처리되고 있다. 두알라 항은 11개의 선석을 보유하고 있고, 컨테이너 처리가 용이하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수심이 6미터로서 매우 얕아 3만톤 이상의 대형 선박 입항이 불가하여 수심이 깊은 Limbe항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카메룬까지의 해상 운송 비용은 보통 1 컨테이너 당 4,000달러 수준 이며, 운송 소요 기간은 50~60일 정도 소요되나 운송 비용 등 옵션에 따라 소요기간이 10여일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카메룬은 세계지적재산기구의 회원이며 회원국과 협력하여 특허 및 상표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16개국으로 구성된 아프리카지적재산기구(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불어약자로 OAPI) 회원국이다. 카메룬에서 특허는 처음에는 10년간 유효하다. 동 특허가 OAPI 회원국 가운데 적어도 한 나라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매 5년마다 갱신된다. 계속 사용되지 않으면 강제적인 허가는 3년 후에 할 수 있다. 상표보호는 처

음에는 20년간 유효하며, 그 후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저작권의 경우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동안 보호받게 된다. 카메룬은 또한 공업재산에 관한 파리협약,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당사국이나, 작은 시장규모,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정부 관리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부족, 일반인들의 지식재산권 존중의식 부재 등 때문에 카메룬에서 지식재산권은 실질적으로 준수되고 있지 못하다. 카메룬은 WTO의 TRIPs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상표와 저작권 침해는 통상적으로 볼 수 있다. 미국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카메룬 정부 관리들은 지적재산,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abelling 및 표시 요건

카메룬에 수입되는 통조림 제품의 상표 붙이기와 표시 요건은 제조일자와 만료 일자를 깡통 위쪽에 새겨 넣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고 명료하게 읽을 수 있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포장하여야 한다. 또한 영어 및/또는 불어로 언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소비해야 하는지 명기하여야 하는데, 라벨에는 불어와 영어로 원산지, 제조자의 성명 및 주소, 상품명, 미터법에 의한 중량, 및 사용 원료 등을 명기하는 것이 권장된다. 추가적으로 카메룬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의무적으로 미리 라벨을 붙여야 하는데, 수입인지와 같은 형태의 이 라벨비용은 담배 선적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수입업자가 미리 지불해야 한다. 담배갑에는 “흡연은 당신의 건강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한편 카메룬에서 판매되는 어떠한 유전자조작식품(GMO)이라도 전부 그런 사실을 밝히는 방식으로 포장하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동 라벨을 붙인 상품을 찾을 수는 없어 아직 엄격하게 시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품질 표준 및 규제에 대한 사항은 2009년에 설립된 ANOR(Cameroon Standards and Quality Agency)가 관할을 하고 있으며, 다만 식품에 대한 것은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서 관할하고 있다.

규제시스템의 투명성

카메룬의 사업 관련 법은 이론적으로는 명확하나, 이러한 법의 이행은 단순하지가 않다. 현재와 같은 사법제도 하에서 국내외 투자자가 계약상의 권리를 이행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으며 엉터리 같은 제소에 대항해서 자신을 방어해 나가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카메룬은 2000년 아프리카에서 사업 관련 법률을 조화시키기 위한 기구(OHADA) 규정을 도입하였다. 프랑스어 사용지역에 대한 투자자는 OHADA 지침의 유용성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OHADA 규정을 영어사용 지역에서 이행하는 데는 문제가 많으며, 카메룬에서는 아직도 OHADA 규정을 해석하는 데 이견이 있다.

카메룬 투자 여건

강 점	약 점
- 중서부 아프리카 공략의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 풍부한 자원 - 강력하고 안정된 정국	- 회사설립에 많은 경비와 장시일 소요 - 취약한 조세 및 관세 시스템 - 만연한 부정 부패 - 열악한 인프라

카메룬내 기업 운영 여건

Ease of Doing Business in Cameroon

분 야	2016년 순위	2017년 순위	순위 변동
전체	167위/189개국	166위/190개국	⬆1
창업 환경	140	149	⬇9
건축 인허가	145	141	⬆4
전력 확보	114	89	⬆25
자산 등록	176	177	⬇1
신용 확보	127	133	⬇6
투자자 보호	136	137	⬇1
납세	177	180	⬇3
국경간 무역	186	186	-
계약 체결	160	160	-
분규 해결	120	122	⬇2

자료: World Bank

카메룬은 World Bank가 조사한 「Ease of Doing Business in Cameroon」에서 지난해 보다 약간 순위가 상승한 163위에 랭크되었으며, 특히 전력확보 및 건축인허가 분야에서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지수도 2016년도에 100점 만점에 26점으로 145위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더욱 하락하여 25점, 전체 175개국 중 153위에 랭크되었다. 또한 World Economic Forum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카메룬의 국가경쟁력은 전체 140개국 중 121위로 평가되었으며, 지난해 118위보다 3계단 하락하였다. 전반적으로는 지난 몇 년간 카메룬의 순위는 큰 변동없이 최하위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만성적인 전기 부족, 낙후된 인프라 수준, 교육기관 및 직업의 부족, 열악한 기업환경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현재 양국간 투자보호에 관한 조약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 공화국간의 투자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발효(2018.4.13.) 중이다.

투자 관련 법령

○ Investment Code 1990

- 카메룬 투자의 기본법령
-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소유권에 한도 규정

○ Investment Chapter

- Investment Code의 후속 절차로서 2002.4월 채택하였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Investment Code와 달리 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규정 삭제

○ 2002년 투자헌장의 효력발생시 외국인 투자승인은 3가지로 분류가 예정되나 어떤 종류의 투자에 어떤 절차가 적용될 것인지 불확실

- automatic regime: 정부의 사전 승인절차 없이 투자를 허용
- returns regime: 투자 신청 후 별도의 거부 없이 2일 경과시 투자를 허용
- approval regime: 투자 신청 후 15일이 경과할 경우 투자를 허용

○ 분야별 투자 관련 부속 법령

- 투자헌장이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분야별 시행령을 입안할 23개의 위원회를 설치함
- Forestry Sector Code(1994), Petroleum Sector Code(1999) 및 Mining Sector Code(2001) 등 몇 가지 시행령은 이미 채택이 되었음

○ 대형 투자자 사전 고지

- 투자금액: 1억CFA 이상 직접투자자

- 고지기관: 기획재정부(MINEFAT)
- 고지시기: 실제 투자 신청 30일 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 지분 소유 제한 없음

- 외국인 100% 지분 소유 회사 설립 가능

○ 외화 송금 자유

- 투자자본, 이익금 및 청산 잔액의 해외송금 자유

○ 투자기업 생산 재화 수출 면세

- 카메룬내 생산된 제품(반제품)의 수출시 세금, 보험료, 운송료 면제

○ 조세 혜택

- 카메룬내 투자기업은 설립 후 2년 동안 세금 면제

○ 노동법 적용 일부 배제

- 노동법에 따르지 않고 직원 채용시 계약 자유권 부여
- 다만, 최저 임금(28,215CFA) 수준은 준수를 해야 함

산업자유지대 (IFZ: Industrial Free Zone)

(1) 지정 지역

- 1990년 1월 29일에 제정된 법(Free Trade Regime)에 규정
-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Industrial Free Zone의 입주 조건을 갖춘 기업 입주지역을 말함

(2) 입주 자격

- 카메룬에서 생산된 제품 중 80% 이상을 카메룬 이외에 수출하는 기업

(3) 입주 절차

ⅰ) IFZ 신청서를 관할 기관인 NOIFZ(National Office for Industrial Free Zone)에 신청

ⅱ) NOIFZ에 의해 완성된 신청서가 소관부처 장관에 의해 30일 이내에 승인을 받으면 IFZ로 인정. 30일내에 별도의 결정통보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

ⅲ) IFZ 승인 서류

- Developer's Permit/Oprator's Permit, Certificate of Compliance

(4) 입주시 혜택

* IFZ 승인이 이루어지면 입주 혜택 자동 부여

○ 행정 절차 간소화

- 신청일로부터 30일내 각종 인허가 완료 원스톱 서비스

- 수출입 화물 현장 세관 검사 및 수화물 항구 직통 연결

○ 영업 통제 완화

- 수출입 관련 면허, 쿼타 제한 배제, 승인 면제

- 가격 및 마진 통제 면제

- 연간 생산량 중 일부를 현지 기업에 관세와 세금을 내고 판매 가능

○ 세금 혜택

- 10년간 세금 부과 않음(tax holiday)

- 11년차부터 이익의 15%에 대한 일괄 세금 적용

○ 재무적 혜택

- 현지 은행에 외환계좌 개설 보유권 부여

- 외환 매도수 및 환전 자유

○ 무역관련 혜택

- 수출증명 프로그램 적용 배제
- 로칼 구매제품을 활용 생산제품에 대한 판매세 등 면제

○ 고용 관련 혜택

- 노동법상 임금 기준 테이블 적용 배제
- 고용주와 노동자간 고용 협상 자유권 부여
- 가동 5년후 전체 근로자의 20% 이내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노동허가권 자동 부여
- 현지 국민연금관리공단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체 플랜 적용 가능

(5) NOFIZ (National Office for Industrial Free Zone)

- 기능: Industrial Free Zone 관리 심사 기관

투자 관련 지원 기관

(1) API (Investment Promotion Agency)

○ 설립년도: 2010년 1월 22일

○ 기능

- 카메룬 투자 환경 홍보
- 투자유치 활동 전개

(2) SNI (The National Investment Corporation of Cameroon)

○ 설립년도: 1964년

○ 기능: 저축 촉진, 국내 자본과 해외 자본의 연결 기능 수행

(3) APME (SME Promotion Agency)

○ 설립년도: 2013년 9월

○ 기능: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기능 수행

(4) Le Comitee Paritaire (투자모니터위원회)

○ 설립년도: 2013년

○ 기능: 국무총리실 산하 자문기관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분석

외국기업의 투자 진출 현황

연도별 카메룬에 대한 외국의 직접 투자 금액

구분	2015	2016	2017
순투자유입(USD백만)	627	664	672
누적투자액(USD백만)	5,138	5,801	6,474
그린필드 투자 건수 (건)	15	9	8
GDP 대비 누적투자액 비율	18.1%	19.8%	21.9%

자료: UNCTAD

주요 외국 투자 진출 기업

투자국	투자자
프랑스	Orange : 통신 (Orange) BOLLORE : 철도 (CAMRAIL) CASTEL : 음료 (CASTEL) COMPAGNIE FRUITIERE : 설탕제조 TOTAL : 정유 (TOTAL) PERENCO : 정유 (PERENCO) LAFARGE GROUP : 시멘트 CFAO : 물류 SGBC/CREDIT LYONNAIS/BICEC : 금융 AXA/AGF/GRAS SAVOYE/SOSUCAM : 보험 VINCI/BOUYGES/RAZEL/SCET : 건설

투자국	투자자
미국	COLGATE : 생활용품 (COLGATE-PALMOLIVE) GEOVIC : 자원개발 CDC : 플랜테이션(Del Monte)
캐나다	RIO TINTO ALCAN : 알루미늄제조 (ALUCAM)
영국	ACTIS : 전력 (ENEO) Standard Chartered Bank Cameroon : 금융
독일	Allianz : 보험
스위스	Nestle : 식품
남아공	MTN : 통신 (MTN)
중국	Sinosteel/China Harbour Engineering Company : 건설 China Petrochemical Corp/sinochem : 화학 Huawei : 통신 CNMEC/CNEEC/Sinohydro : 전력·기계
베트남	Viettel : 통신 (NEXTEL)

투자 결정시 유의 사항

○ 투자 타당성 분석시 투자수익률

해외투자는 기본적으로 각종 정보와 수치를 기반으로 투자수익률을 따져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합당하나 카메룬을 비롯 아프리카에서는 다양한 외부변수는 물론 예상치 않은 비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익률은 보수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제도와 운영은 별개

카메룬도 각종 관세제도 및 조세체계를 갖추어져 있으나 이들 제도에 따라 반드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제도와는 전혀 별개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시스템을 벗어난 상황 발생에 따른 시기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

○ 비정상적인 위험요인 고려

아프리카는 다양한 기업운영상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들 요인들은 언제 기업 운영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카메룬 투자시 고려해야 할 위험요인으로는 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 카메룬

내 활화산인 몽카메룬의 폭발, 기타 각종 제도의 급작스런 변동에 따른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소요사태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여야 한다.

투자 절차

투자 법인 형태 및 특징

법인 형태 및 특징

법인 형태	Societe Anonyme (S.A)	Societe a Resoponsibilite Limitee (S.A.R.L)
투자가 책임한도	무한책임	납입 자본내 유한책임
최소 파트너/주수 수	2인	7인
최소 자본금	1,000만세파프랑	100만세파프랑
주식 액면가	10,000세파프랑	5,000세파프랑
설립시 출자금액	최소 자본금의 1/4	최소자본금 전액 출자

현지 법인 설립 절차

□ 구비서류

○ 국내 서류: 모든 서류는 영문 공증 필

- 본사(법인)정관
- 비파산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년도 회계 증명서
- 현지법인설립 결정의사록
- 범죄기록증명서

○ 현지 서류

- 현지 법인 정관

- 이사회 명단(신분증/여권 사본 첨부)
- 현지법인설립 위임장
- 현지은행 계좌 개설(본사 명의)
- 자본금 납입증명서 등

□ 설립절차

1) 서류 공증 및 자본금 입금 계좌 개설

○ 현지 공증인(변호사 등)에게 위 구비서류의 공증을 받고 자본금 입금을 위한 임시 계좌(창업중 회사 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

2) 자본금 납입 및 영수증 발급

○ 법인 형태에 따른 최소 자본금 납입 후 영수증 확보

3) 정관 작성 및 서명

○ 현지 공증인(변호사 등)을 통해 정관과 해외법인 설립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소요비용 130,395세파프랑)

4) 대표자의 범죄경력증명서 징구

○ 최근 3년간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징구함(소요비용 5,000세파프랑)

5) 법인 등록

○ 필요 서류

- 해외법인설립결의록: 각면 정부 인지 부착(인지대 각 1,000세파프랑)
- 정관 : 각면 정부 인지 부착(인지대 각 1,000세파프랑)
- 현지화 계획서 및 부동산 계약서
- 이사진의 범죄 경력서
- 결혼증명서와 사진

○ 등록 기관: 관할 법원 법인 등록센터

○ 등록 비용

자본금 규모	등록비
750,000세파프랑 이하	2%
750,001~1,500,000세파프랑	1.5%
1,5001~3,000,000세파프랑	1%
3,000,001~5,000,000세파프랑	0.5%
5,000,000세파프랑 초과	0.25%, 최대 2,500,000프랑

6) 법인 설립 공고

○ 게재 일간지: Cameroun Tribune

○ 소요비용:

- 공고비용: 76,000세파프랑

- 신문 게재비용: 50,000~97,000세파프랑

7) 사업자 등록증 발급

○ 납부 기관: 관할 세무서

○ 소요 비용: 67,200세파프랑
- 등록세는 예상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

8) 납세증 발급

○ 발급 기관: 관할 세무서

○ 소요 비용: 1,500세파프랑

○ 소요 기일: 14일

9) 지방 노동청 등에 법인설립 통보

10) CNPS(연금 및 고용보험공단)에 직원 등록

○ 직원별 급여액수에 따라 CNPS에 매월 보험료 납부
(사용자 부담분: 기본급의 16.2%)

□ 변호사 및 공증 비용

○ 현행 제도하에서는 자본금이 1천만세파프랑인 주식회사의 경우, 비용은 공증인 및 변호사 비용(업무대행료)이 약 250만세파프랑,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시 80만세파프랑이 소요됨.

공장 설립 절차

(1) 토지 대장 입수

○ 발급처: 법원 지적과(Cadastre)

○ 소요비용: 1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1일

(2) 토지 등기부등본 입수

○ 발급처: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 소요비용: 2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1일

(3) 도시계획서 입수

○ 발급처: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 소요비용: 2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1일

(4) 지질 평가서

○ 발급처: 평가 인증 회사(Labogenie, Geofor, Apave 등)

○ 소요비용: 1,20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일

(5) 건축 허가

○ 관할기관: Urban Council

○ 소요비용: 3,92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45일(공식적인 소요기간은 최장 90일)

○ 필요 서류
- 허가 신청서
- 소유권 증명서
- 도시계획증명서
- 위치도

(6) 현장 실사

○ 실사 기관: 관할 지역 Urban Council

○ 소요비용: 15,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1일

(7) 정화조 시설 검사

○ 실사 기관: Hygine Department

○ 소요비용: 15,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1일

(8) 건축계획서 최종 제출

○ 제출 기관: Ministry of Public Works

○ 소요비용: 15,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1일

(9) 준공 검사

- 검사 기관: Ministry of Public Works
- 소요비용: 15,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45일

(10) 전화 가설

- 가설 기관: Camtel
- 소요비용: 30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15일

(11) 전기 신청 및 개통

- 해당 기관: AES-SONEL
- 소요비용: 45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52일

(12) 용수 연결

- 검사 기관: CAM WATER
- 소요비용: 40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75일

토지 구입 절차

(1) 토지 명부 입수 소유권 확인

- 발급처: 법원 부동산 등기과(Services des Domaines)
- 소요비용: 1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1일

(2) 공증인을 통한 매매계약서 작성

○ 소요비용

자산 가격	공증료
1백만~3백만세파프랑	4.5%
3백만~10백만세파프랑	3.0%
1천만~2천5백만세파프랑	1.5%
2천5백만~5천만세파프랑	0.75%
5천만세파프랑 초과	0.5%

○ 소요기간: 3일

(4) 매매계약서 세무서 등록

○ 등록처: 관할 세무서(Centre divisionnaire des Impots)

○ 소요비용: 자산 가격의 15%

○ 소요기간: 7일

(5) 자산 소유권 이전

○ 등록처: 법원 부동산 등기과(Services des Domaines)

○ 소요비용: 자산 가격의 2%

○ 소요기간: 60일

투자기업 운영

OHADA(the organization for the harmonization of business laws)법

○ 아프리카 불어권내 기업 운영을 위한 기본법으로 1997.4월에 제정

○ 노사관계는 물론 회계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카메룬에서도 OHADA 법이 내국 상법에 우선

○ 관련 사이트: http://www.ohada.com

조세 제도

□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12월 31일

□ 법인세

- ○ 법인세율: 38.5%(순수 법인세 35% + 법인세율의 10%)
- ○ 과세대상: 카메룬내 발생 법인 소득에서 해당 경비를 공제한 이익
- ○ 경비공제: 현금으로 100만세파프랑 이상 집행액은 경비 불인정
- ○ 최저한세: 이익에 대해 38.5%를 적용한 금액이 연매출액의 1.1% 보다 작은 경우에는 연매출의 1.1%를 법인세로 부과

□ 개인 소득세

- ○ 대상소득: 급여,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연금 등
- ○ 과세대상: 소득 총합계에서 500,000세파프랑을 공제한 금액
- ○ 소득세율: 소득별 4단계 누진세제

자산 가격	소득세율
0~2,000,000세파프랑	10%
2,000,001~3,000,000세파프랑	15%
3,000,001~5,000,000세파프랑	25%
5,000,001세파프랑 초과	35%

- ○ 거주자-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 비거주자-카메룬내 발생소득만 과세

* 거주자(레지던스): 개인(1년에 183일 이상 카메룬 거주)

□ 기타 제반 세금

- ○ 배당/이자소득세: 소득액의 16.5%(비거주자는 원천징수)
- ○ 부가가치세: 19.25%
- ○ 재산세: 재산가액의 0.11%, 매년 납부

고용 및 근로 조건

○ 노동법 주요 내용

- 법정 근로시간 : 주 40시간, 농업분야는 48시간
- 연간 휴가 : 월 1.5일
- 최저임금 : 28,246세파프랑/월
- 복지 경비 : 고용주는 국민연금공단에 기본급의 12.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 부담분으로 매월 납부

외환 송금

(통화 정책) 카메룬의 통화정책은 인플레 통제 및 CFA 프랑의 유로에 대한 고정 관리 등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역할을 하는 지역중앙은행인 중앙아프리카국가은행(BEAC)에 의해 결정된다.

투자 과실 송금정책은 배당금, 투자이익, 이자, 외채 원금, 임대료, 로열티, 관리수익, 청산수익 등은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만 해외 직접투자의 청산은 30일 이전에 재무부와 BEAC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1억 세파프랑 이상의 사업거래를 위한 상업적 외환 송금을 위해서는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1억 세파프랑을 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이 송금을 하기 전에 이러한 거래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투자 및 재정관련 규정을 준수할 경우에는 통상 승인되며, 단지 처리하는데 12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한편 BEAC은 전자거래를 위해 새로운 중앙집중식 전산화 시스템(SYGMA)을 도입하여 2007년 9월부터 US$ 20만 이상의 거래를 취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상업은행의 보상금을 감독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또한 승인이 떨어진 때로부터 실제 송금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24시간 또는 하루 이내로 단축시켰다.

카타르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무역동향

카타르는 국내총생산(명목GDP)대비 에너지 산업(천연가스 및 석유) 규모가 30%에 이르는 에너지 의존형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농수산업·제조업·서비스업 등 비에너지 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카타르정부는 2008년 지속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을 발표하였으며, 4개의 중점 발전분야(인적자원, 사회, 경제, 환경)를 통해 선진국으로 거듭나고자 노력중이다.

국내총생산(명목GDP)은 2002년 이후 2008년까지 매년 15~20% 성장하여 1,152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2009년은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978억 달러로 줄었으나,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에 힘입어 2014년에는 2,062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 시작된 저유가로 인해 2015년, 2016년 국내총생산은 각각 1,646억 달러, 1,524억 달러로 다시 감소하였다.

한-카타르 교역규모는 2011년 이후 카타르의 건설붐과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 및 에너지수입 증가로, 2014년 266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4년말 시작된 저유가로 인해 교역액이 점점 감소하면서 2016년 양국 교역량은 2016년 10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8년 교역량은 168억원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과거 수준에는 미

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카타르로부터 천연가스, 원유, 석유화학제품 등 에너지 자원을 주로 수입하였으며, 카타르는 한국으로부터 승용차, 건설중장비, 전자제품 등을 주로 수입한다.

우리나라의 對카타르 교역동향

(단위: US$백만,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교역	26,726	26,627	17,149	10,617	11,702	16,820
수출	852 (16.7)	904 (6.2)	674 (-25.5)	536 (-20.5)	435 (-18.7)	526 (20.8)
수입	25,874 (1.4)	25,723 (-0.6)	16,475 (-36.0)	10,081 (-38.8)	11,267 (11.8)	16,294 (44.6)
무역수지	-25,022	-24,819	-15,801	-9,545	-10,832	-15,768

* (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일반 및 수입정책 상의 장벽

관세 및 절차

카타르는 걸프협력협의회(GCC) 6개국이 합의한 공동관세율을 2003년부터 채택, 적용(Law No.41/2002)하고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카타르에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카타르상공회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가능하다.

- 카타르 기업이며 카타르 정부로부터 수입라이센스(Import License)를 받고, 수입 라이센스에 명시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법에 명시된 영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기업으로서 주재국 정부와 계약을 맺고 계약 수행에 필수적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공통관세율

카타르는 GCC 관세동맹국들이 합의한 공통관세율을 2003년 1월부터 채택, 적용하고 있다. 기준관세율은 일반적으로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 조건) 가격의 5%이다. 철근 등 철강제품 및 시멘트에 20%, 요소(암모니아류)는 30%, 악기류는 15%, 술과 담배는 100% 관세를 부과한다. 정부주도 프로젝트 및 카타르개발은행(QDB)이 기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계류, 원료 등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관세 면제

카타르를 포함한 GCC 국가들의 면세품목은 다음과 같다.

- 육류, 채소류, 해산물, 곡류, 조미료, 종자, 분유 등을 포함한 400여개의 상품
- 외교관 및 영사 소요 물품
- 군대 및 국토안보 필요 물품
- 개인소유물 및 가재도구
- 승객 소지 물품
- 자선단체 필요품
- 승객운송에 필요한 선박 및 부양 플랫폼
- 산업용 프로젝트에 필요한 공장 및 설비, 부품, 원료, 반제품, 포장재 등

관세장벽

카타르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또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 예외적인 관세장벽은 GCC의 결정에 따르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원산지증명서를 우리업체에게만 차별적으로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카타르 세관은 수입통관 시 제출서류로 원본 인보이스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수출업체는 상공회의소의 웹 인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C/O)를 신청, 승인 받은 후 자체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카타르 세관측은 스탬프가 직접 날인된 원본서류만을 인정하고 있고, 전자 원산지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카타르 당국과 주카타르 한국대사관이 협의하여 전자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해 주기로 협의하였다. 하지만, 세관업무 담당자의 미숙지로 인해, 원산지증명서 원본미비의 사유로 통관이 거절된 사례가 종종 발견되었다. 이 경우, 바이어측에서 주카타르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인터넷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공증을 받아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카타르는 2011년 9월부터 차량부품 수입 시, 원산지에서 발행한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증명서는 카타르 표준청(Qatar Standard)이 공고한 품질표준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이외에, 타이어 수입 시에도, GCC(걸프협력회의)표준 준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더불어, 2013년 4월, 카타르는 통관 규정을 강화하여 원산지표시가 제품에서 제거가 가능한 방법(스티커 부착 등)을 이용하여 표기할 경우 통관이 원칙적으로 거절된다.

수입규제

수입쿼터제 등 수량제한, 수출이행의무 부과 등은 없다. 다만 국영기업이 생산하지 못하는 특정품목을 수입할 경우에도 세관은 동 국영기업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 사례: 2008년 카타르 D 건설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 한 특정규격 철근(BS4449 2005 Grade 500C)이 카타르 철근 독점생산 기업인 카타르철

강회사(QASCO)가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인 바, 당 품목 수입 추진과정에서 세관에서는 먼저 QASCO의 수입동의서를 취득하라고 요청

카타르는 2016년 5월 1일부터 75W, 100W 범주의 백열전구 수입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2016년 11월 1일부터 40W, 60W범주도 금지하였다.

또한, 카타르 자치환경부(Ministry of Municipality and Environment)는 2016년 7월 1일부터 에어컨 제품에 대해 지정 인증기관의 표준화 인증테스트, G-Mark 부착, 에너지효율등급표시(Star Rating)라벨 부착을 의무화 하였다. 이에, 에너지효율등급 8.5(별3개) 미만인 에어컨 제품은 카타르에서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었다.

한편, 한국 기업이 카타르에 수출할 경우 상업송장 금액별 주한 카타르 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상업 송장 수수료

송장 금액(USD)		인증료(KRW) C/I & C/O & C/S 〈Total〉
1	4,121	296,000
4,122	27,473	481,000
27,474	68,681	1,036,000
68,682	274,725	1,961,000
274,726	이상	영사과 문의

자료: 주한 카타르 대사관(2017.9월 기준)

식품 및 농산물 수입 규제에 관하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식품 및 농산품은 원산지 표기에 따라 반송되거나 2주 내로 파기될 수 있다.

일반 비닐봉지(폴리에틸렌)는 규정에 어긋나며, 두께가 최소 40 미크론 이상인 포장재(GS 654/1998, GS 839/2001, GS 1024/2001)를 원칙으로 한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상업송장
- 물품 상세서
- 적재 화물 운송장
- 원산지 증명서
- 원산지로부터의 신선도 확인서
- 향신료: 농약과 제초제 0% 증명서
- 밀가루, 곡물, 씨앗: 식물 위생 증명서
- 소고기와 가금류를 포함한 모든 수입 육류 수출 국가가 발행한 해당국의 인가된 이슬람 센터가 발행한 '(할랄)' 도살증서

라벨 또한 중요한데, 식품 내용 표시 위반(라벨 변경, 유실, 손상·오기되었거나 덧붙여진 생산/만기 날짜)은 수입 거부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카타르의 검역관들이 무작위로 식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서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불일치 적발 시 상품은 압수조치 되어 수입자에게 연락 조치를 취한 후 파기된다.

큰 규모의 호텔, 식당과 기관으로 바로 이송되는 경우 라벨 규제는 엄격히 적용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관이나 사용자에 의해 직접 수입되는 경우 아랍어 라벨 표기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오리지널 라벨은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아랍어를 포함한 2개 언어로의 표기 또한 허용된다. 다른 모든 정보 또한 기본적으로 아랍어 표기를 요구한다. 육류 및 가금류의 경우 살모넬라 성분이 20%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수입이 거부된다.

다이어트, 건강, 유아관련 식품 같은 경우 식·약관리부서(Food Control Division, PHD, Medicines Control Department, NHA)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식품의 경우 100그램을 기준으로 한 상세한 성분 표기가 필요하다.

카타르는 약 75개의 식품에 정부규제의 유통기한기준을 적용하고, 걸프기준 No.150/1993에 명시된 유통기한기준을 적용할 것을 명시했다. 생산일자/유통기한(이하 P/E)날짜는 반드시 처음의 라벨 또는 물품에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변조방지용 잉크를 사용하여 표기되어야 한다. 스티커 부착을 이용한 표기나 U.S.바코드는 규정에 어긋난다. 여러 개의 P/E 날짜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과일, 야채, 빵에 대해서는 P/E날짜 표기가 요구되지 않는다.

개인소유물 및 수입제한

카타르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무관세로 개인 소유물을 수입하는 것은 허용되나 주류, 무기류(장식용 포함), 마약 및 유독화학품, 폭발물, 방사능물질, 오존파괴물, 약품, 암호기기, 돼지고기, 음란물, 무선 송수신기, 상아로 만들어진 것 등은 수입이 제한된다.

수입 시 필요한 세관서류

카타르에서 수·출입 시 명확한 원산지표기와 카타르 대사관 인증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수입업자는 수입 시 세관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세관은 유효한 수입면장을 발급한다.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카타르에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업자로 등록한 후, 추가적으로 카타르 상공회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 시 아래와 같은 세관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2011년 5월 11일부터 카타르로 발송되는 모든 비서류 물품에는 상업송장과 원사지증명서 상에 주한 카타르대사관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을 경우, 수취인에게 상업송장 인증료가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세관서류

해상운송	항공운송
선하증권(Bill of Lading)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원산지증명서(CoO)	원산지증명서(CoO)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Commerical Invoice)

관세부과

카타르는 GCC 6개국이 합의한 공동관세율을 2003년부터 채택하여 적용(법 No.41/2002)하고 있으며, 기준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CIF) 가격의 5%이다. 아울러, GCC국가 간 수출입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임시수입

설비를 포함한 특정 품목에 대해 임시수입이 가능하나, 세관 담당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기간은 보통 6개월이지만 6개월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때 정규 수입관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은행보증 또는 수표를 관세청에 예치해야 한다.

수출관세

수출시 관세는 부과하지 않으나 이스라엘로의 수출은 금지된다.

수입업자 제한

개인 또는 법인이 수입할 수 있다. 외국법인은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형태로 적법하게 카타르에 등록한 경우 수입할 수 있다. 수입업자는 세관에 수입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매, 리스, 대리인 협정서, 또는 수입업자와 외국 공급업자 간 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업자(화주) 또는 관세사만이 세관신고를 할 수 있다.

수입면장

수입업자는 세관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수입면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관세사 및 운송대리인

수출입 및 환적 시 세관신고와 절차 완료는 물품의 소유주 또는 세관장이 명

시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인가된 대리인, 세관에서 허가한 관세사가 수행할 수 있다.

제출 서류의 형태

반드시 원본이 필요하다. 세관 허용 시 일부 서류는 복사본 또는 팩스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나 세관은 기업 또는 관세사가 통관 후 90일 이내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물품 결제수단

결제 통화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나 카타르 리얄 이외의 통화로 결제할 경우 관세사에게 이를 공지하여 세관신고 가격결정 시 정확한 환율로 계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카타르는 통화, 자금의 국내외 이동, 신용장 이용 등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품목분류

카타르는 GCC 관세율표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제정한 HS(Harmonized System) 품목분류를 적용하고 있다. 카타르는 GCC 관세협약에 따라 8단위의 품목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목분류는 97 챕터, 21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Labeling

라벨링은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카타르 세관은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는 제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환경관련 규제

화학제품, 화학폐기물, 유독물질 및 유해물질 수입 시, 선적에 필요한 세관 서류 및 안전수치 자료 등을 관세사와 협의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인화물질, 방사능물질, 무기 및 폭발물,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반하는 물품, 마약류 수입 시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다.

정부보조금

카타르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은 없으나, 보건 부문 투자에 대한 장려금은 존재한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정부는 대부분의 상품과 용역의 주요 최종 수요자이며, 정부 조달 계약은 Law No.26(2005)에 따른 입찰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단, 국방부, 경찰 및 카타르 석유공사(QP)는 규정이 대동소이하나, 자체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다.

정부의 표준조달 입찰절차는 2개 방식으로 구분되며, 1백만리얄(274,725 달러) 이상의 조달은 재무부 정부조달규제부서(Government Procurement Regulatory Department, Monaqasat)에서 관장하며, 그 이하의 소규모 조달은 현지 업체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며 각 부서의 부내 입찰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무부장관은 CTC의 Recommendation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만일 입찰규모가 50백만리얄(13.7백만달러)을 초과하는 계약은 총리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CTC의 관장 하에 있지 않은 국방부는 방산물품 구매를 관장하고, 카타르 석유공사(QP)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를 관장한다.

2015년 11월 24일 공고(공고 후 6개월 후 발효)된 입찰에 관한 규정 Law No.24(2015)은 총리가 각 정부부처 소속의 5인에서 7인으로 구성된 입찰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구매 프로젝트의 경우, CTC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자격 심사(PQ: Pre-Qualification) 서류를 받는다. 입찰자격을 통과한 업체는 주어진 입찰일에 기술(Technical) 입찰서 및 상업(Commercial) 입찰서를 별도로 제출하며, 기술입찰서를 우선 개봉하여 심사한 결과 통과된 업체만을 대상으로 상업입찰서를 개봉하여 심사하며 상업입찰서에서 최저가 입찰을 제출한 회사에 일반적으로 낙찰된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 뿐만아니라, GCC지역내 경험을 고려한다.

정부 입찰 시 은행보증서 혹은 신용장(L/C) 형태의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입찰보증서 금액은 입찰조건에 금액으로 명시되며, 이행보증서 금액은 10%선이 일반적이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의 비율이 이보다 높다. 입찰 및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현지 에이전트 이용 의무는 없으나 현지 경험이 없어 실정에 어두운 경우 현지 에이전트 이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경우, 입찰을 취소하거나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다.

- 단독 입찰인 경우(여러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타 업체들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단독 입찰 효과 발생한 경우도 포함). 단, 재입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경우, 충분한 이유를 첨부하여 단독 입찰자가 추천되는 것도 가능
- 기술적으로 최고점수의 입찰자 금액이 시장가격을 초과 할 경우
- 모든 입찰자 혹은 대부분 입찰자가 조건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정부와의 계약서에 별다른 규정이 명기되지 않는 한, 계약서상의 모든 분쟁은 카타르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자(시공자)는 프로젝트 수행대금으로 은행의 무조건부 보증서 제출조건하에 우선 계약금의 일정비율(입찰조건에 주어짐)의 선수금을 지불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프로젝트의 진전 상황에 기초하여 표준 지불계획표에 따라 추가대금 결제가 이루어진다. 표준 지불계획표는 대부분의 경우 프로젝트가 완결된 후까지 대금의 일부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 측에 허용하며, 대금지불이 연기되면서도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될 경우 최고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발주처는 계약자(시공자)와의 총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설계변경(Variation Order)하여 임의로 추가 발주 혹은 감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자재조달과 관련, 현지 법령 1987 Law No.6(정부 조달 시 National Products와 GCC Products of National Origin에 우선권을 주는 통일된 규칙)에 따라,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National Products)에 대하여 가격측면에서 유사 외국제품 대비 10%의 우선권을 주며, GCC 회원국 중의 하나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GCC Products of National Origin)에 대하여는 5%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자국 및 GCC 국가 생산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권

특허는 2006년 특허법(No.30/2006) 제정에 따라 20년간 보호된다. 걸프협력기구(GCC) 특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있는 특허청에서 부여받을 수 있다. 2011년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하여 2012년부터 PCT 출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15년 9월부터는 ePCT 출원 시스템을 통한 PCT 출원이 가능하다.

상표권

상표권은 카타르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형태의 권리이다. 등록된 상표는 상표 공보에 공표되며, 이의 제기는 공표 후 4개월 이내로 반영되어 검열된다.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10년간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10년 동안 갱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5년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법원에 취소신청 할 수 있다. 상표권 소유자는 등록 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그 권리는 상표권의 독점을 상징하며, 이에 따른 법률위배 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저작권

2002년 저작권법(Law No.7 of 2002 o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에 따라 문학작품, 예술품, 컴퓨터소프트웨어, 비디오 및 오디오테잎 원본 등의 저작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자 사후 50년 후 소멸된다. 법 위반 시 3만~10만리얄의 벌금 부과 또는 최소 6개월 최장 1년까지 구금될 수 있다.

투자장벽

투자 및 영업환경

카타르는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 No. 13 of 2000)을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에 사용될 원자재 및 반제품 등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거나, 세금면제위원회(Tax Exemption Authority)가 국가 및 사회적으로 유익하다고 판단한 경우, 세금을 면제하는 등 각종 외국인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15년 8월 카타르 정부는 회사법(Commercial Companies Law)

을 개정하여, 신규 진출기업에 대한 법정최소자본금(20만 QAR) 조항을 삭제하는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및 지분소유 제한

금융, 보험, 무역대리점, 부동산 분야 등에는 외국인투자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금융 및 보험업에의 투자는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

Law No.8(2002)에 의거, 개인이든 법인이든 외국인은 상업대리점업에 종사할 수 없다. 외국인 무역업자는 카타르에서 스스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카타르인 관계자에게 물품을 판매해야 하며 오직 이러한 공급행위를 통해서만 이익이 발생된다. 외국인은 상기 분야를 제외한 모든 영업 분야에 참여할 수 있으나, 카타르 기업(인)과의 합작회사 설립 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은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 못한다.

하지만 농업, 보건의료, 교육, 관광, 천연자원 개발, 채광산업 분야 등에서는 경제상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100%까지 외국인투자가 인정된다. 이때 경제상무부 장관은 아래 프로젝트를 고려한다.

○ 국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 아래 프로젝트

- 카타르 원자재 사용
- 수출목적 제조품
- 신제품 또는 선진기술 제품 생산
- 카타르에 기술 및 노하우 이전
- 카타르 인적자원 개발 기여

외국인투자자의 조직설립 제한

외국인투자자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조직설립만 가능하며, 인정된 형태 이

외의 조직운영 시, 법 No.25(2004)에 의거하여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

- 장관령을 얻고,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지사 설치
- 카타르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이때,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은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 못함.
- 100% 외국인 자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에서 회사 설립. 이때, 투자프로젝트는 경제상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영업개발 및 마케팅 수행 대표사무소 설치. 대표사무소는 무역이나 계약을 할 수 없음.

지사,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Law No.13(2000)에 의거, 외국 기업은 경제상무부 장관령에 따라 카타르에 지사를 설립, 지정된 분야에 투자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원자재(비슷한 품목이 카타르 시장에 없을 경우)를 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젝트는 공공이익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는 경제상무부에서 파악할 수 있다. 공공이익을 수행하는 하청기업도 지사 설립이 가능하다. 지사는 보통 프로젝트 수행에 소요되는 기간만 설치, 운영될 수 있다.
지사운영을 위해 카타르 국적의 대리인(스폰서)과 함께 할 필요는 없으며,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의 임무는 비자 및 인허가 취득 지원과 노동력 및 숙박시설 제공 등에 한정된다.

지사 설립 시 프로젝트 계약서, 법인등록증, 회사정관, 본사 위임을 받은 대표자의 경우 적법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위임장, 주계약자의 편지 등을 경제상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아랍어 공증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법인등록증, 정관, 위임장 등은 주한카타르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The Pearl Qatar, West Bay Lagoon, Al Khor Resort Project 등 특정 개발 지구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카타르에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배정된 토지는 장기임대차계약에 의거, 최초 50년 동안(추후 갱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은 최장 99년 동안 상기 개발지구중 거주구역의 아파트를 구입, 사용할 수 있다.

GCC 시민권자는 Lusail, Al Kharaij, Jebel Thiyab 지역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국영 부동산회사(Qatari DIAR)에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은 하기 18개 지정지역의 부동산을 99년 동안 임차 가능하며, 상업 및 개인용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임대, 또는 권리를 넘길 수 있다.

- 18개 지정지역: Musheireb, Rrij Abdul Aziz, Doha Jadeed, Ghanem Al Qadeem, Al Rifa Al Hitmi, Al Salata, Bin Mahmoud, Rawdat Al Khail, Mansoura and Bin Dirham, Najma, Umm Ghuwailina, Al Khulaifat North and South, Al Sadd, New Mirqab and Al Nasser, Areas around the Doha International Airport, Dafna and Onaiza, Lusail, Al Kharaij and Jebel Thiyab

금융상의 제한

외환규제가 없으며 카타르에서 발생한 지분, 대부금 및 모든 소득의 송금에는 제한이 없으나,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매년 발생된 이익금의 10%씩을 자본금의 50%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자기자금으로 영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금 부족 시 카타르 또는 GCC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투자이익금의 송금이나 투자와 관련된 자금의 이동상의 지체나 제한이 없다. 또한 이익금, 부채 지불, 자본, 자본 이익금 등의 송금에 제한도 없다. 현지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비용은 기업 신용도에 따라 다르나, 한국 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

세제상의 제한

카타르의 소득세 제도와 세금 신고 절차는 법 No.11(1993)에 명시되어 있다. 동 법에 의하면 카타르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 활동(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직업, 서비스, 무역 및 계약의 실행 등)은 과세 대상으로 간주된다. 소득세는 카타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개인, 파트너십 및 외국기업에만 부과된다.

외국인 소유 기업은 과세하고 카타르인 소유 기업은 과세하지 않는 등 과세 제도는 외국 기업에 대해 차별을 둔다. 법 No.9(1989)에 의거, 걸프협력협의회(GCC) 국민들은 소득세에 있어 자국민 대우를 받고 있어 걸프국 국민 소유 외국기업들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카타르에서 지급되는 임금에는 대인세, 사회 보험료 또는 기타 법적 공제액이 없다. 1995년 4월에 발표된 소득세 실무지침에 따라 법무, 컨설턴트 및 자영업 영위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간 순수익의 1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한도는 연간 20,000QR까지다.

(1) 법인세

소득세는 카타르에서 아래와 같은 활동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소득에 부과된다.

a) 카타르에서 수행된 모든 프로젝트에서 실현된 수익

b) 회사 자산의 판매로부터 실현된 수익

c) 대행약정 또는 중개에서 비롯된 수수료

d) 컨설턴트, 중재 또는 전문기술 및 관련 서비스에 지불된 요금

e) 부동산 임대

f) 판매, 임대, 양허 및 상표권, 디자인, 노하우 또는 저작권 사용으로 받은 금액

g) 채무로부터 받은 금액

h) 청산으로 실현된 수익

이외에도, 카타르 국외에서 수령한 이자와 은행 수입이 납세자가 카타르의 활동에서 비롯된 경우 카타르 세금이 부과된다.

민간 기업을 설립했을 경우 과세소득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적용 받는다. 여기서 과세소득은 카타르내의 자원을 이용해 얻은 소득으로 카타르 인을 통해서 얻은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농업이나 어업은 세금이 면제되며 석유, 가스 사업과 관련된 분야는 최소 35%의 세금이 적용된다. 상장기업은 카타르 사회공헌기금(문화, 체육, 자선 분야)으로 특별펀드에 수익의 2.5%를 사용해야 한다.

납세자는 공공수익 세금부(public revenue&taxes department)에 기업 활동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회계기간이 끝나고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회계기간이 더 필요한 기업은 조세당국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조세당국의 판단 하에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이는 해외부지사와 법인에도 적용된다.

(2) 세율

카타르 정부는 2009년 11월 신소득세법(Income Tax Law, Law No.21/2009)을 공포하였다. 신소득세법의 핵심은 종전의 누진세제(0~35%)를 사용하던 법인세를 10% 단일 법인세로 조정,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2010년 1월에 발효되었다.

한편, GCC국가들은 2015년 7월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루었으며, 카타르는 2018년부터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3) 세금면제

법은 특정한 조건하의 특별 프로젝트에 대하여 세금면제를 허용하고 있고, 세금면제 적용 여부는 세금면제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재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세금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제조업, 법률, 농업, 의료, 바이오, 교육, 관광, 신재생 에너지, 첨단기술 산업에 지원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또는 카타르에서 필요로 하고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이나 계약
- 국가개발 계획 및 경제 목표에 부합하고 관련 정부의 승인을 득한 프로젝트
- 아래 사항을 고려한 국민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젝트

  (a) 상업적 수익성

  (b) 타 프로젝트를 보완하는 범위

  (c) 국내생산 자재 활용 정도

  (d) 무역수지 균형에 미치는 영향
- 첨단기술 사용 프로젝트
- 자국민 고용창출 프로젝트

세금면제 기간은 재경부 장관 단독 승인 시 5년부터 내각 승인 시 10년까지이다.

(4) 과세 조약

카타르는 한국, 알제리, 아르메니아, 중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요르단, 파키스탄, 루마니아, 러시아, 세네갈, 스리랑카, 시리아, 튀니지, 터키, 불가리아, 파나마, 세이셸, 베네수엘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벨라루스, 예멘, 터키, 아제르바이잔, 레바논 등 64개국과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발효 중이다.

(5) 특별경제구역

2005년 9월 제정된 카타르 경제구역설치법에 따르면 경제구역 내에 기업 설립 시 스폰서, 또는 서비스 에이전트가 필요 없으며, 100% 소유권 및 0% 세율혜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3개의 특별경제구역 프로젝트가 진행중이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 예정이다.

특별경제구역 개발 현황

구분	위치(규모)	중점유치분야	완공시기
Ras Bufontas	하마드공항 근교 (4.01km²)	보건의료, 자동차, 항공우주산업, 물류, 비즈니스서비스	2019년 3분기
Um Alhoul	하마드항구 근교 (34km²)	해양산업, 식음료, 건설기자재, 금속가공 및 기계, 석유화학, 물류	2020년 1분기
Al Karaana	사우디국경 근교 (38.43km²)(잠정)	건설기자재, 금속, 화학, 플라스틱	2021년 1분기

(6) 카타르 과학기술단지

2009년 설립된 카타르 과학기술단지(Qatar Science and Technology Park, QSTP)는 에너지, 환경, 보건, IT분야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개발·연구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입주를 위해서는 첨단기술 개발 및 전수, 50% 이상의 인력이 기술 개발에 종사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며, 입주기업에는 면세가 적용된다.

(7) 카타르 금융센터

2005년 제정된 카타르 금융센터법(No.7)에 의거, 금융센터의 영업허가를 받은 외국기업은 2008년 5월 1일까지 3년간 법인세 면세 혜택을 받아왔으나, 신 소득세법 시행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는 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사업가능분야는 투자은행,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 보험, 자산관리, 컨설팅, 법률자문, 리크루팅, 프로젝트 관리, 설계, 교육, 세무회계, 광고홍보 등이 있다. 2017년 8월 기준 약 410개 사가 입주해 있다.

경쟁 정책

카타르 정부는 1971년 독립 이후 석유 및 가스의 생산과 정제, 석유화학 산업 및 통신 등 핵심 경제 부문을 통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카타르 정부는 특정 사업부문 개발의 소유권과 책임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전하는 등 투명 한 정책을 채택해 오고 있다.

1995년 7월 3일 도하증권시장(주식거래소)의 설립을 승인하는 법령이 발표되었다. 1997년 5월 공식 영업을 시작한 주식거래소는 자국 공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하면서 민영화를 촉진하였다.

2003년 5월, 카타르 정부는 Industries Qatar Q.S.C. 주식 30%의 초기 공모를 완료하였다. Q.S.C.는 새로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석유화학, 비료 및 철강 산업분야 회사들의 대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또한 최근 수년 동안 전기 및 수도, 통신, 석유 제품의 유통을 포함한 상당수의 핵심 부문들도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Ooredoo(구 QTEL), QAFCO, QAPCO, QCHEM 등을 민영화 하는등 다른 많은 부문들도 점차 민영화할 계획이다. 전력 및 담수 분야의 경우, QEWC(Qatar Electricity & Wataer Company)는 1990년 전력부문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과거 카타르수전력부가 보유하고 있던 발전/담수화 시설을 이전 받아 사용하며 카타르수전력청(Kahramaa)에 전력과 담수를 공급하고 있다.

카타르는 국가전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립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보건 부문 민간 투자에 대한 장려금도 도입하였다.

경제상무부는 국가개발계획(농업, 제조업, 의료, 교육, 관광, 에너지, 자연자원, 채광산업)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대해 10년간 소득세를 면제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사업을 위해 수입해 오는 기계·장비의 관세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지역시장에서 구매 할 수 없는 사업에 필요한 반가공품과 수입품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를 농업, 산업, 여가, 관광, 건강, 교육, 천연자원 개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장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파크(QSTP)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도 주고 있다.

카타르 정부의 장기 전략은 외국 기업이 자유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카타르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 관행과 규정은 아직도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기타 장벽

입국

카타르는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도하하마드국제공항, 육로로 입국할 경우 카타르와 사우디의 경계에 있는 아부 삼라(Abu Samra), 항구로 입국할 경우는 도하항, 메사이드항, 라스라판항, 루와이스항을 통해 입국할 수 있다.

※ 단, 2017년 6월 사우디 등 일부 아랍 국가의 카타르에 대한 단교 선언으로 상기 사우디 및 UAE, 바레인 등 국가와의 직항 교통편이 제한되어 있음.

출입국 심사는 한국을 포함 선진국 여행자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편이 아니다.

통관심사는 역시 까다로운 편이 아니나, 회교국인 카타르는 회교 가르침에 위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으로 규정하고,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비자

카타르에 근로목적으로 거주하려는 자는 고용주의 스폰서십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은 뒤, 입국 후 거주허가증(Residency Permit: RP)을 발급받고 있다.

관광 및 단기체류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입국 시 현지에서 도착비자(On

Arrival Visa)를 받는다. 도착비자를 받으려면 왕복티켓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체류허용기간은 기본적으로 30일이다. 비자연장기관을 통해 1회(30일)연장이 가능하다.

취업자의 경우, 카타르 현지에 있는 스폰서를 통해 비자 발급을 진행 한 뒤, 취업자가 출국 전, 주한 카타르대사관에서 입국비자를 수령할 수 있다. 카타르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6개월 이상 유효한 복수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상용비자(2주 유효, 2주간 연장가능)는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카타르 방문자에게 발급되며 이들은 유효한 여권과 왕복 티켓을 소지해야 한다. 동 방문이 비즈니스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카타르 스폰서가 서명한 진술서를 도착 48시간 전에 공항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6개월까지 유효한 방문비자는 카타르에 거주하는 스폰서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으며 스폰서가 반드시 카타르인일 필요는 없다. 방문비자는 반드시 왕복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유효한 GCC 국가 거주허가증을 지닌 사업 또는 전문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방문비자가 필요 없으며 카타르에 도착하면 2주 동안 유효한 입국비자를 교부 받게 된다.

1~5년간 유효한 거주비자는 카타르 고용 계약 소지자에게 허가되며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회사가 스폰서가 된다.

거주 및 가족 방문비자 발급을 위하여 한국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에서 발급된 증명서 또는 공문서(가족관계등록증명서, 혼인관계등록증명서, 기본증명서, 대학졸업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를 영문 번역하여 우리나라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에서 영사확인 후 주한카타르대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친 다음, 카타르 외교부 영사과의 영사 확인 후 카타르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대 소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보유한 외국인과 그들의 직계 가족은 해당 소유지에 대한 소유권 기간 동안 스폰서 없이 갱신이 가능한 조건으로, 5년간의 거주 허가 자격을 갖는다. 또한, 외국자본투자법

No.13(2000)에 규정된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도 투자 기간 동안 갱신할 수 있는 조건으로, 5년간 입국비자와 거주허가 자격을 갖는다.

거주허가(Residency Permit)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허가(RP)를 받아야 하며,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카타르 국적의 스폰서가 필요하다. 노동허가는 스폰서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거주 노동허가는 카타르 내에서 노동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부여되며 최대 3년간 유효하며 매년 1천 리얄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카타르 도착 후 현지 스폰서가 이민국에 거주허가증(RP)을 신청하며, 보통 6주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일반적으로 스폰서가 제반 서류작업 및 수수료 납부를 부담한다. 동반 가족 역시 카타르에서 취업한 가족 구성원의 스폰서 하에 거주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방문 및 거주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강 검진 및 지문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취업 비자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카타르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단, 취업을 목적으로 받은 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거주 권한이 없다.

근로자의 노동허가는 고용주 또는 스폰서가 갱신해야 하며 가족의 거주허가는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다. 가족거주허가는 여권, ID, 사진1장과 수수료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면 3일 이내에 갱신 발급된다. 필요한 서류는 고용주의 동의서한 및 월급 증명서, 은행의 월급명세서, 결혼 및 출생증명, 학위증명, 노동계약서, 전기요금 납부영수증이다. 과거에는 스폰서십 아래에 있는 모든 근로자가 출국을 위해 스폰서에게 출국비자를 요청해야 했지만 최근 법령 개정에 따라 고용 계약에 근거하여 사전 통보 후 출국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은 출국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거주허가증

카타르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자들은 거주할 권한이 주어지며, 비자를 가지고 카타르에 입국 후 고용주를 통해 거주허가증(Residency Permit)을

발급받을 수 있다. 거주허가증은 보편적으로 ID카드라고도 불리고 있다. 거주허가증 내에는 ID 번호, 생년월일, RP유효기간, 국적, 고용주, 이름, 증명사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카타르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거주자들은 카타르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거주비자 취득 후 여권사진 2장을 지참하고 안과에서 시력검사 후 시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운전면허 신청서, 사진3매, 여권원본 및 사본, 운전면허증 원본 및 번역본(면허증의 영어번역을 대사관 공증)을 교통국(Traffic Department)에 제출하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카타르 교통국 방문 시, 절차 진행 신속성을 위하여 아랍어가 가능한 직원 동행을 추천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주재국 도착 후 6개월간 주재국 운전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국제면허의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시)하나, 일선 경찰 및 보험회사, 렌트카 회사 등에서 사고 발생 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바, 주재국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 보다 좋다.

단, 카타르 RP(장기체류비자)를 취득한 자는 반드시 카타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개정된 신 스폰서십법(Law No. 21 of 2015 및 No. 1 of 2017)

카타르 정부는 카타르 스폰서법에 대해 노동자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일자, 2015년 10월 27일 출국허가 및 이직과 관련한 조항 등 을 개정하여 '입국 및 출국 규제 및 외국인 거주에 관한 법(Law No. 21 of 2015 on the regulation of entry, exit and residency of expatriates)'을 공포하였으며, 이는 2016년 12월 발효되었다.

기존에는 노동자들이 여행 및 모국방문 등을 위해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노동자들은 고용 계약에 기반하여 고용주에게 사전 통보 후 출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이직을 하고자 할 경우, 스폰서로부터 이의가 없음을 나타내는 서류인 NOC(No Objection Certificate)을 받아야 했으나, 변경된 노동법에 따라 계약 종료 후 이직 시에는 NOC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정해진 기간이 없는 노동자들의 경우 최소 5년간 근무할 경우 NOC없이 이직이 가능하다.

진료카드

외국인 거주자들이 하마드의료법인(Hamad Medical Corporation) 및 보건소(Primary Health Care Corporation)과 같은 공공 진료서비스를 받으려면 진료카드(Health Card)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분증, 증명사진(여권용), 전기수도요금고지서(Kahramaa Bill)을 지참하여 거주지에서 가까운 진료소(Health Center)에서 100QR을 카드로 결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의 카타르 진출과 관련된 사항

금융 시스템

(1) 카타르 중앙은행

카타르 중앙은행(QCB)은 카타르의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상업 금융시스템을 감시하는 정부 기관이다. 또한 국제금융기관을 상대하며, 정부의 은행으로서 화폐를 인쇄, 발행한다. QCB는 개별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준수 여부의 감독 등, 카타르의 국내외 은행 활동을 감독한다. 카타르에서 영업 중인 모든 은행들은 QCB가 공포한 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준칙들은 국제재무보고기준(IFRS)과 일치한다.

카타르 중앙은행(QCB)의 지속적인 고정 환율 정책 시행과 함께 일반은행들 또한 보통 QCB에 의해 결정된 환율을 기준으로 이행한다. 그러나 몇몇 일반은행들은 공공 거래 시 QCB고정 금액의 0.24%를 추가로 부가하기도 한다.

(2) 상업은행

카타르에는 총 15개 은행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7개가 국립은행(National Bank), 4개가 이슬람은행(Ismlamic National Bank), 4개가 외국계은행(Foreign Bank)이다.

정부 소유이면서 카타르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카타르 개발은행(QDB)은 1997년 8월 영업을 시작하였다. QDB는 프로젝트 초기자금 대여 및 맞춤형 프로젝트 거래조건 등을 제공한다.

(3) 이슬람 금융

카타르의 이슬람 금융시스템은 잘 정비되어 있다. 카타르 기업들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나 상거래에 투자한다. 샤리아는 이자를 금지하고, 상거래에서는 이윤을 분배(또는 손실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 카타르에는 4개의 이슬람 은행과 다수의 이슬람 융자거래소가 있다. 여러 전통 상업은행들은 독자적 이슬람 지사를 설치, 이슬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법상 특별 제한이 있으며, 동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

증권시장

1997년 5월에 개장한 도하 증권 시장에는 카타르의 공공 지주회사들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장기업 발행 주식 자본금의 최고 25%까지 투자할 수 있다.

카타르 금융센터

2005년 2월 16일 법 No.7에 따라 설립된 카타르 금융센터(QFC)는 외국계 금융기관 및 다국적 기업이 국제금융, 금융서비스, 보험 및 본사기능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QFC는 각각 독립적 활동을 하는 QFC 금융청과 QFC 규제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QFC의 허가를 받은 기업 및 기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 국유화, 몰수, 또는 개인 소유 제한으로 부터의 보호
- 이윤 본국송금 자유
- 자유로운 직원 고용
- 100% 외국인 소유

케 냐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개관

케냐 경제개황

구 분	내 용
위 치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동북부는 소말리아, 서북부는 에티오피아 및 수단, 서부는 우간다와 접경)
면 적	569,259㎢(한반도의 약 2.7배)
인 구	4,850만 명 (2016년)
수 도	나이로비(Nairobi, 인구: 약 350만, 해발고도: 약 1700 m)
언 어	영어(공용어), 스와힐리어(통용어)
GDP	705.2억 달러 (2016년)
1인당 GDP	1,455 달러 (2016년, *World Bank)
GDP 성장률	5.8% (2016년)
물가상승률	6.3% (2016년)
수출입	수출: 57.4억 달러 (차, 원예작물, 커피 등) 수입: 138.7억 달러 (기계류, 석유제품, 차량 등) *(Global Trade Atlas자료)
외환보유고	76억 달러 (2016년)
외채	226억 달러 (2016년)
환율	USD 1 = 102.49 케냐실링 (2016년 연평균)
외국인직접투자 (FDI)	24억 (2016년, *케냐투자청)

자료 : EIU 케냐 국가보고서(2017년 11월)

케냐는 사회주의 정치·경제체제를 채택한 주변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1963년 독립 이래 친 서방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 1980년대 말까지 매우 안정된 정치·경제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들어 엘니뇨에 따른 농작물 피해, 제조업 분야 위축, 나이로비 미국대사관 폭발 사건 등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으며, 2000년에는 독립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경제성장(-0.3%)을 기록하였다.

2004년 이후 관광산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의 호조, 정보통신산업 발전 등으로 2007년에는 7.0%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2007년 12월 27일 대선 이후 2개월여 간 계속된 종족 간 폭력사태로 인한 교통·수송망 등의 인프라 파괴, 관광산업 부진, 고유가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었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립정부 형태로 정치안정이 이루어지면서 2008년 1.7%, 2009년 2.6%, 2010년 5.8%, 2011년 6.1%등의 경제회복이 이루어졌다. 2013년 평화적인 정권이양으로 다시 5.7%, 2014년 5.3%, 2015년 5.6%를 기록하면서 호조세를 보여왔으나, 2017년 대선 결과가 대법원에서 무효화된 후 재선거 등 대선 관련 내부 혼란이 지속되며 경제성장률이 하락해 2017년 2분기 기준 5%를 기록하였다.

케냐는 2030년까지 연평균 10%의 경제성장 및 중진국 진입을 골자로 하는 케냐 중장기 국가성장전략인 'Kenya Vision 2030'을 발표(2008년 6월)하여 각종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말 기준 합성수지, 석유화학, 건설 중장비, 중고의류, 칼라TV 등을 중심으로 1억 6,232만 달러를 케냐에 수출하였다. 하지만 달러화 강세와 글로벌 경제 위축 등으로 케냐 전체 수입이 감소하면서, 케냐의 대한국 수입 금액은 전년대비 53.1% 감소하였다. 수입의 경우, 2015년에 동/알루미늄 스크랩, 커피, 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1,147만 달러를 수입하여, 전년대비 113.5%의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이 갑자기 증가한 것은 2015년에 수입된 농기계의 환적이 이루어진데에 기인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및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참여 동향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3국이 중심이 되어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가 창설(1967년)되었다가, 이후 1970년대 중반 각국의 국내사정 등으로 중단되었으나, 2000년 7월부터 부활, 발전되어, 2007년 7월에는 브룬디, 르완다가 EAC에 가입하여 명실공히 동아프리카 경제공동체로서 모습을 갖췄다. 또한, 2016년 9월에는 남수단이 EAC 가입 조약 비준서를 기탁하고 EAC의 6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 EAC 사무국은 탄자니아 Arusha에 소재한다. EAC는 2006년 1월 1일자로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2010년 7월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출범시켰으며, 2013년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단일화폐 통합추진을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향후 10년이내에 화폐통합(2024년 예정) 및 정치 통합화를 추진하고 있다. EAC는 2017년 남수단을 회원국으로 승인하면서 소비인구 약 1억 8000만명, 총 GDP 약 1,592억 달러 규모의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그 경제적 잠재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AC 관세동맹은 역 내외 국가를 구분하여 관세를 적용하는데, 역내 국가 간 거래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며, 역외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원자재는 0%, 중간재는 10%, 완제품은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케냐는 또한 전체 약 4억 인구의 19개 아프리카 국가가 참여하는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회원국이다. 2000년 10월 31일 역내에 무역 자유화 지대를 창설해 단일 경제 공동시장(수입관세 및 장벽 철폐)을 결성하고, COMESA 역내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 기준도 종전 45%에서 35%로 인하해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일부 COMESA 회원국은 40% 기준 유지). 2009년 6월 13차 COMESA 정상회의에서 3년간의 경과규정을 두고 COMESA 회원국 간 관세동맹을 출범키로 하였으며(일부 회원국들 유보적 입장 표명), 완전한 관세동맹 이행을 위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EAC와 COMESA, SADC(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를 통합하는 TFTA(Tripartite Free Trade Area)가 현재 추진중이다. 2017년 10월까지 26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TFTA추진에 동의하는 합의서에 서명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10월 기준) 회원국간 TFTA 시행세부조항을 조율하고 있다. TFTA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아프리카 26개국, 약 6억 3000만명의 인구가 포진해 있는 시장에 최대 85%에 해당하는 품목을 관세 제약 없이 수출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프리카 저개발국 경제 개발 지원의 목적으로 2000년에 시행된 AGOA(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는 2015년 3차 개정되어 2025년까지 연장되었다. AGOA를 통해 케냐의 적용 품목들은 대미 수출시 무관세, 무쿼터 적용을 받는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25%의 수입관세와 16%의 VAT를 부과하나, 국내 산업 및 제품 보호를 위해 설탕류의 경우는 최대 100%의 관세와 200%의 VAT를 부과하며, 농업용 자재 및 철강, 섬유 원사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요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대분류	소분류	관세(%)	VAT(%)
식품류	일반식품류	25	0
	유제품	60	16
	쌀	35	200
	종자류(씨)	10	0
	식용류	10	0
	설탕류	100	200
화학제품	원자재	0	0
	페인트류	25	16
	필름류	10	16
기계류 (전자제품)	공기청소기	15	16
	냉장고	25	16
	음식, 음료 제조	0	0

대분류	소분류	관세(%)	VAT(%)
섬유 및 의류	카펫 등 내장재	25	16
	일반의류	25	16
	가정용 린넨	25	16
	가발용 원사	0	16
교통·수송	기차	5	16
	승용차	25	16
	자동차 부품류	15	16
건축자재	타일류	15	16
	세라믹 제품	25	16
	유리제품	15	16
	제지류	25	16
	철강제품	0	16
	아연판	10	16

대통령, 외교관, 신체부자유자에 등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 어류·갑각류(새우, 게 등) 및 연체동물, 원양어선 어획물(동아프리카 3국에 등록된 어선에 한함), 상업가치가 없는 샘플류, 모기장 및 모기장 생산원료, 종자, 의약품 제조용 원자재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케냐에는 수입쿼터제 등 수량제한 제도는 없다.

수입품의 가격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수입품의 케냐시장 점유율이 현저하게 높아지거나 케냐의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반덤핑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품목별로 상이하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반덤핑관세를 적용한 경우는 없다.

수입품 통관은 케냐 관세청에 등록된 Agent를 거쳐야 하며, 관세청에서 발행하는 수입신고서(IDF: Import Declaration Form)를 작성해야 한다. IDF 비용은 최소 5,000 케냐 실링(미화 약 50달러 수준) 또는 CIF 가격의 2.25%를 적용한다.

통관절차는 케냐와의 무역 시 가장 커다란 애로 사항의 하나로 절차가 느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규정 적용이 매우 자의적이며 부정부패에 노출되어있다.

자동차 수입 관련 규정

케냐 표준청의 품질규정에 따라 생산된 지 8년 이상 된 차량은 수입할 수 없다. 가령 2017년도의 경우에는 2010년 이후 생산된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다. 자동차 수입 시에는 25%의 관세(CIF 기준), 20% 소비세(CIF+관세 기준), 16% 부가세(CIF+관세+물품세 기준), 2.25% 또는 5,000 케냐실링상당의 IDF 비용, 1.5%의 철도개발세 등 차량가격의 약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중고 자동차 수입 시에는 선적지에서 검증을 마쳐야 하며, 일본과 두바이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는 일본 또는 두바이에 있는 일본자동차평가원(Japan Auto Appraisal Institute)로부터 취득한 인증서를 통관 시 제출해야 한다.

표준, 검사, Labeling 관련

케냐는 2005년 7월 수입품에 대한 선적 전 사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폐지하고 ISO 12075를 취득한 검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출적합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제시토록 수출입법을 개정, 2005년 11월부터 적용해 오고 있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Route A 검사 유형을 거치는 만재화물에 대해 선적 전 수출적합자격검사(PVoC)를 수행한 후 곧바로 수입표준마크(ISM)를 발급받아 봉인해야 한다. 그러나, 선적 전 검사를 폐지하는 대신 케냐 표준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수출업자들은 국제표준을 철저히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케냐 표준청(KEBS: Kenya Bureau of Standard)의 기준도 사전에 파악하여 통관 시 문제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반덤핑 적용 등 직접적인 수입규제사례는 없으나, 최근 들어 케냐 표준청(KEBS)에서 일부 저가, 저품질 수입품 유입에 따른 제한조치로 수입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 제품과 관련된 사례로는 ① 케냐 표준청에서 라면에 대한 별도의 규격/성분기준이 없어 파스타 기준을 적용하여 판매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적이 있고, ②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의 수입통관 시 표준청에서 한국표준 준수 마크 미표기를 사유로 케냐 품질규정에 미달한 것으로 판정하여 환적한 사례가 있으며, ③ 2003년 한국의 젤타입 볼펜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현지 경쟁업체들의 사주를 받고 한국산 젤에 대해 여러 이유를 들어 기준 미달 처리한 사례가 있다.

상기와 같은 사례는 향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수출업체들은 현지 수입상과 거래 시 수입상을 통해서 표준청으로부터 품질 및 규격 승인 절차를 확인, 요청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bs.org)를 참조하면 케냐내의 품질인증 관련 기본 정보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2015년부터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역내외 물류통관을 단일화하는 싱글윈도 시스템 (Single Window System, 이하 SWS)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케냐의 경우 Kenya National Electric Single Window System(이하 KNESWS로 표기)를 구축하여 2015년 7월 1일부로 몸바사항 물류시스템 이용자에게 모든 통관절차의 전산화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이제 케냐에서의 모든 물류통관은 KNESWS의 관리 하에 케냐 관세청, 무역청, 보건당국 등 약 25개의 관계 부서로부터 라이센스, 무역허가 등을 일괄 취득하게 되었다.

중국이 건설한 표준궤 철도가 2017년부터 개통되었으며 화물철도도 2017년 연말이후 개시할 예정이어서 2018년부터는 우리 중소기업의 소비재 상품들의 동아프리카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몸바사까지 해상운송 시 최소 4주간 소요되었으며, 몸바사에서 나이로비까지 육로의 경우 길게는 1주 (통관 및 운송 포함), 우간다-르완다의 경우 최소 15여일 이상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50%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관련 규제

케냐 환경법은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환경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은 기업에 오염 활동을 중지하고 원상회복 및 복구를 명할 수 있다. 환경법에는 오염자 부담원칙, 자연보호지역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광산, 도시개발, 수송망, 농업, 전기 및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있을 경우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토록 규정하는 등 기본 법률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서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케냐는 2017년 6월말부터 케냐 내 환경보호를 위해 비닐 포장지와 비닐 쇼핑백의 사용을 전면 금지조치하였다. 케냐환경관리국(NEMA)은 본 규정 위반 시 개인은 최대 4만 실링의 벌금 또는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발표했으며, 제조기업의 경우 재고품 소지 적발 시 재고품 몰수 및 최대 400만실링 (원화 약 4억원)의 벌금형 또는 최대 4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발표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

케냐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이다. 2001년도에 제정된 지용신안(Utility Models),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s), 합리화모식재산권보호 관련법은 상표권(Trade Mark), 특허권(Patents), 실델(Rationalisation Models), 저작권(Copyrights), 식물육종가권(Plant Breeders Rights)등 7가지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각종 지적재산권은 기술연구훈련성(Ministry of Research, Technical Training and Technology) 산하 케냐산업재산권 사무소(Kenya Industrial Property Office)가 관리하고 있으며, 케냐 경찰국 산하 범죄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과 관세청에서도 상기 지재권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

케냐법은 지식재산권 침해 시 최대 800,000케냐실링(약 8,000달러)의 벌금 및 10년 기간의 징역, 제품 몰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위해 2006년 케냐산업재산권기구(KIPI) 산하에 집행담당부서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케냐인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당국의 법률 집행은 매우 미약한 편이다. 현지 시장에는 불법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이 범람하고 있으며, 불법 복제품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약 4.96억 달러에 달하고, 세금 징수 피해액도 약 83백만 달러에 달한다. 케냐정부는 최근 들어 불법 복제품, 모조제품 및 기준미달 상품의 자국시장 진입을 단속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 12월에는 3백만 개의 모조 Bic 펜을 몰수하여 폐기한 사례가 있다.

투자장벽

개관

케냐는 1963년 12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상당히 일찍부터 농공병진과 교육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그동안 7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내국인 투자 및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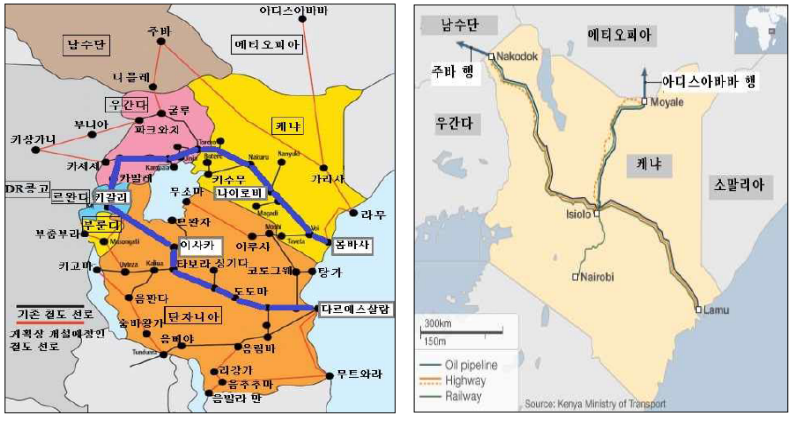
특히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발달한 산업기반과 인프라 시설을 보유하는 등의 장점이 있어 많은 외국계 기업이 동아프리카 진출 거점으로서 케냐를 투자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다.

케냐를 통해 인근국인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소말리아, 남부 에티오피아 및 남부수단, 동부 콩고 시장까지 상권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동남부 아프리카 경제 공동시장이 관세 인하 및 경제 공동시장으로 성숙되고 있다.

케냐는 세계은행 산하기관인 MIGA 및 ICSID 회원국으로서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물류 인프라에 있어서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총 연장 64,000km에 달하는 정규 도로망은 국토의 대부분 지역을 연결하지만, 현재 전체 정규 도로중 약 20~30%만이 포장된 상태이며, 비정규 도로의 총 연장이 133,800km에 달하고 있어 도로 정비가 필수적이다. 또한 인도양에 위치한 몸바사항은 케냐뿐만 아니라 중·동부 아프리카의 수송거점이지만, 부족한 화물 처리 시설, 부정부패로 인해 보통 2~3개월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라무항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케냐는 항만, 철도, 도로, 정유소, 송유관, 리조트 건설 등 약 200억 달러 규모의 LAPSSET: Lamu Port-Southern Sudan- Ethiopia Transport Project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아프리카 철도종합개발 지도 및 LAPSSET 프로젝트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케냐는 전력사정이 매우 열악한데, 케냐의 전력 단가는 0.19달러/Kwh로서 이는 멕시코(0.075달러), 중국(0.07달러), 한국(0.05달러), 남아공(0.04달러)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제조업 해외투자 유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현재 도로건설, 전력 및 항구개발 등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투자환경을 평가하는 Doing Business 2018 순위에서 케냐는 190개 조사대상국 중 80위에 랭크, 전반적으로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프리카 비즈니스 신뢰지수(Africa Business Confidence Index: 네덜란드에 소재한 African Business Panel에서 30개국 이상 아프리카 국가 800명이상 기업가 및 전문가 대상 조사) 조사에서 남아공, 나이지리아와 함께 최상위 국가로 선정된바 있다.

케냐는 탄자니아 등 주변국 대비 부진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청(KenInvest) 산하에 One Stop Service Center를 설치하고, 외국인 기업설립과 관련한 유관부서 공무원 50여명을 활용하여 법인설립기간을 최대한 기존의 90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케냐는 1964년 외국인투자 보호법(1981년, 1988년 소폭 개정)을 제정하고, 헌법에도 외국인 투자가의 소유권 침해 금지조항을 두는 등 외국인 투자 보호 및 유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을 확대해 오고 있다. 케냐 정부가 장려하는 외국인 투자분야는 국내 자원을 활용하는 수출산업(노동집약산업, 관광), 외화절약을 도모하는 수입대체 산업(식품가공업, 농산품, 화공제품 제조업) 등이며, 규제분야 업종은 전력, 통신, 철도, 항만, 공항, 국가방위산업 등 공공산업과 식품의 유통업 정도에 국한되고 있다. 2014년 6월 케냐 정부는 총 20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를 아일랜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다. 고수익을 쫓는 연기금 및 국채 펀드, 금융기업이 가세한 덕에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데 성공했다. 국채 금리도 예상보다 낮아, 5년만기 5억달러어치 국채금리는 5.875%로, 10년만기 15억달러어치 금리는 6.875%로 결정됐다. 나이로비에서 투자 매니저를 하는 알리-칸사추는 “이는 아프리카 국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강한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 점에 있어 케냐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 고 말했다. 고수익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진 것 외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가파른 경제성장도 케냐 국채에 대한 매력을 높여줬다.

외국인 투자허가는 1986년까지 상공부와 재무부에서 관장하여 투자절차가 번거로웠으나 1987년 IPC(Investment Promotion Center)가 설립되어 (2005년부터 Kenya Investment Authority로 변경) 외국인 투자가에게 각종 상담 및 투자허가 등을 일체 지원해 주고(one stop service) 있다. 특히 2002년부터 IPC는 해외 직접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종전의 50만 달러 이상이던 투자인정 최소금액을 약 10만 달러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2004년 말부터 종전의 23여 가지 서류 처리가 필요하던 투자승인 절차를 단 1개의 서류로 일괄 처리하도록 간소화시켜 해외 투자유치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케냐는 1986년 보세가공무역(MUB: Manufacturing Under-Bond)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보세가공 생산품은 100% 수출의 경우에만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세가공제도는 케냐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유치 및 수출활성화를 위해 1990년 수출가공지대(EPZ: Export Processing Zone)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EPZ 입주기업은 최초 10년간 세금이 면제(Tax Holiday)되며, 다음 10년간은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최초 10년간은 외국인 고용자에 대하여 소득 및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감면되며, 기계류 및 원자재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고, 외환송금에 대한 규제도 없다.

전국적으로 41개의 EPZ가 있는데, 나이로비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티리버(Athi River) EPZ가 가장 크며, 그밖에도 나이로비, 케리초(Kericho), 몸바사(Mombasa) 등에 EPZ가 있다.

법인세는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과세이익의 30%, 외국계 지사에 대해서는 37.5%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VAT)는 현지법인, 외국계 지사 공히 16%가 부과된다.

케냐 정부는 2015년 9월부로 경제개발특별구역법(SEZ 2015)을 발효하였다. 이에 따라 아티리버 수출자유공단 (Athiriver EPZ)을 통해 섬유산업 특화

(실제로 입주 제조업체의 60%이상이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을 통해 미국으로 의류수출 중임), 몸바사에 자유무역항 조성 (Free Export Zone, 일본에서 타당성 조사를 완료), 키수무 지역에 농업 및 수산물 특가공 수출 단지 조성 등의 사업이 행정적, 재정적으로 힘을 얻게 되었으며, 그 외에도 가죽산업특화단지, ICT특화단지 (콘자 IT 신도시), 대규모 농업단지 조성 (현재 갈라나 지역에 2만 에이커 관계농업단지 조성 중 임) 등을 대표적인 산업단지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SEZ법은 "SEZ내 제조품에 대해서 최소 50% (일반품목) 이상 최대 100% (Industrial Park Scheme 등을 통한 투자시)까지 현지 시장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현지시장'은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이하 EAC로 표기) 5개 회원국 시장을 모두 포함하며 종전에는 최대 20%만 허용되었었다. 케냐에서 원산지 증명을 받으면 동아프리카 1억 5,000만명의 소비시장에 제조품의 50%이상을 무관세로 진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케냐는 보험, 정보통신, 전력·항만 등 인프라, 언론 분야를 제외하면 자국인의 일정 지분 소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험, 정보통신 분야는 외국인 지분이 각각 66.7%, 70%까지 제한되어 있으며, 나이로비 주식시장(NSE: Nairobi Stock Exchange)에 상장된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75%까지 허용한다.

전력, 통신 등 공익산업과 농업용 토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규제되며, 기존 협동조합과의 유통망진출, 케냐기업 인수 등은 제한 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외국기업이 직접 소매상과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허가받은 도매상을 통해 내수판매만 가능하다.

금융상의 제한

1995년 6월 외환에 대한 완전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여 투자원금의 본국송

금, 이익금 및 배당금 송금 등은 완전 자유화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외환 구좌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공공수용 및 허가 철회

케냐법은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자산을 보호하며, 공공수용은 공공이익 및 국가안보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케냐는 국제투자보장기구(MIGA) 회원국 및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회원국이며, 1963년 독립 이래 외국인 소유 자산을 수용한 사례가 없다.

2004년 제정된 케냐투자증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은 투자 라이센스 신청 시 거짓 정보 및 진술을 제공하였거나 투자증진법 규정에 위배될 경우, 또는 케냐투자청(Kenya Investment Authority)에 허위로 대표를 등록할 경우 투자 라이센스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취소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민 · 노동법 관계

케냐는 케냐에서 7년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한다. 케냐에서 사업을 하거나 현지법인 및 지점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장기취업사증(Work Permit)을 취득해야 한다. 장기취업사증에는 12종류가 있으며 보통 2년 단위로 발급된다. 이중 회사 취직에 필요한 Class D(A에서 명칭 변경) 취득비용은 200,000Ksh(약 2,000달러)이며, 개인 사업을 위해 필요한 Class G(H에서 명칭 변경)는 100,000Ksh(약 1,000달러)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민국 직원들의 부정부패로 상기 공식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비공식 비용이 소요되며, 아울러 장기취업사증 취득에 평균적으로 6개월 전후가 소요된다. 케냐정부는 중간관리자 및 기술직을 케냐 현지인으로 채우도록 독려하는 정책을 쓰고 있으며, 자국인들의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장기취업사증 취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케냐 노동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6개월 기간 동안 수습생(probationary) 자격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수습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에 노동자 해고 시에는 7일의 통지기간이 있으며, 동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상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며, 1개월 상당의 보수, 연가보상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은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분쟁을 중재하거나, 중재자를 지정하거나, 산업법정(Industrial Court)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단 분쟁이 중재 등에 회부되면 파업은 불법이다.

케냐정부는 2007년 말 '고용법(Employment Act)', '노동관계법(Labor Relations Act)', '산업재해보상법(Work Injury Benefits Bill)'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노동법은 여성들에 대한 의무적인 3개월 출산휴가, 남성들의 육아 휴가를 도입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법은 영구불구의 경우 당초 60개월에서 96개월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보상액을 인상하였으며, 3일 이상 업무능력에 지장을 주는 장애가 발생한 노동자는 임금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고, 상기 임금 보전은 12개월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 대해 응급처치뿐만 아니라, 의료시설, 교통수단, 치료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가 작업장에서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부양가족들은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최대 32%를 청구할 수 있다.

임금 관련,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노동자 최저임금도 동반상승 하여 실질임금이 동남아보다도 더 높다. 최저임금은 정부, 고용주, 노동자가 참여하는 임금결정위원회가 일반산업과 농업부문으로 매년 5월 1일 최저임금을 결정하나 실제로는 직장별 고용주 연합과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으로 결정된다.

2016년도 최저임금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케냐 최저임금 현황 (2016)

(단위: 케냐 실링)

직업	나이로비-몸바사-키수무		기타 주요도시		그 외 지역	
	월급	시급	월급	시급	월급	시급
1. 일반 노동자 (청소부, 정원사, 유모, 가정부, 마사지사)	10,954	97.88	10,107	89.49	5,844	54.71
2. 광산 노동자, 요리사, 웨이터	11,831.23	106.62	10,496.81	90.66	6,752.48	61.04
3. 야간 경비원	12,221.10	110.21	11,330.09	100.30	6,970.43	64.34
4. 기계 관련 보조, 빵집 점원	12,415.98	114.41	11,553.86	101.25	9,364.71	84.17
5. 기계 숙련공, 트럭운전수	14,173.49	127.18	13,259.29	106.62	10,840.54	97.94
6. 인쇄공, 기계관련 도구 직공	14,785.74	133.06	13,646.36	121.41	11,279.52	100.24
7. 점원, 전화교환수	16,872.41	152.04	15,425.42	122.19	131,52.50	118.10
8. 재봉사, 운전수 (중간 크기의 차량)	16,355.19	165.48	17,090.47	152.21	15,239.11	136.64
9. 염색공, 트랙터 운전수, 외판원	20,528.76	184.52	19,154.02	171.58	17,286.86	152.43
10. 관리인(건물)	22,717.97	204.46	21,213.25	190.34	19,761.95	176.74
11. 출납원, 운전수 (대형 장비)	24,719.46	224.64	23,262.40	210.28	21,811.05	196.17
12. 예술가	14,785.74	133.06	13,768.20	121.41	11,279.52	98.06

자료: 케냐 노동부

노동자와 고용주는 월 대상 소득의 12%를 연금적립금으로 공동부담하며, 매월 이와 관련한 의무 기여액이 증가될 예정이다. 금액으로는 400KSh(고용인: 200KSh, 피고용인: 200KSh) 범위 내의 금액 50%씩을 국가사회안전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장기금(NSSF)과 국민의료보험(NHIF)은 케냐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NSSF는 2013년에, NHIF는 2015년에 납입료와 대상을 전면 개편하여, 고용인 및 피고용인 양측에 상당

한 부담을 주고 있다. 2013년 이전에는 최대 400실링($4.00)을 고용인이 50%, 피고용인이 50%를 각각 분담하였으나 개편 이후, 총 월 소득의 12%를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각각 50%씩 분담, 최대 2160실링($22)까지 부과하며, 기본적으로 고용주가 피고용의 분담금까지 함께 납입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어 결국 총 납입금의 최대치는 4320실링 ($43) 수준이다.

NHIF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제도로, 2015년 4월부터 납입요금 체제를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다. 종전 보험료는 정식 고용인(Former sector 종사자)은 소득에 따라 월 30~320실링 차등 납입, 임시직 종사자(Informal sector 종사자)는 월 160 실링의 정액을 납입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NHIF 요금은 케냐인의 소득을 반영함과 동시에, 세세한 소득 구분을 통한 공정한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여, 고소득자의 경우 320실링($3.49)에서 1700실링($18.54)으로 5배 이상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였다.

연간 공휴일은 12일이며 연간 법정 유급 휴가 일수는 최소 21일이다. 하루 법정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평일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급여에 1.5배를 더하여 지급하고, 공휴일 또는 휴일 근무 시는 1일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1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52시간이나 실제로는 37~45시간 수준이며, 2주당 최대노동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 120시간(야간근무자 144시간)이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케냐의 토지는 정부(공유지, 전체의 약 20%), 신탁(trust land, 전체의 60%로 county council 소유), 개인소유 3가지로 분류되며, 소유권의 종류에는 소유(freehold), 임차(leasehold, 99년 한도), 전통적 보유(customary tenure, 지역 및 종족에 따라 다름) 3가지 나누어진다. 정부소유 토지는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며, 임차권은 공공경매를 통해 획득할 수 있으나, 법률 남용 등의 부작용으로 일시적으로 추첨방식이 사용되기도 했다. 토지법에 따르면 케냐인 및 케냐인이 주주인 주식회사만이 커피 및 원예 농업 등에 필요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유할 수 있다. 대통령은 기본 농산물 재

배를 위해 토지가 필요한 농업제품 가공회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외국인의 농지소유를 허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및 절차가 없다.

또한 원칙적으로 케냐법은 모든 재산권(토지, 건물, 모기지 등)의 취득 및 처분을 보호하고 촉진한다고 규정하지만, 실제로 토지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렵고 불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케냐의 토지등록부 대장 관리 상태는 매우 열악하여 투자자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정당한 거래를 했더라도 관리대장이 전산화 되지 않아 토지대장 등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행요건 등 국산화의무 부과

케냐에는 현지조달률 규정(local content)이 있지만, 이는 단지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의 특혜관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코트디부아르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투자환경 일반

코트디부아르는 2011년 와타라 대통령 취임 이후 점차 안정되고 있는 국내 정세를 기반으로 2012년 36년만에 두 자리 수 경제성장(10.7%) 달성 이후, 2017년 7.8% 및 2012~16년 연평균 9.1%의 성장률을 기록,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평균(2017년 2.8%)을 상회하는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2011~2015년간 4천억 프랑세파(약 7억 달러) 예산의 대통령긴급계획(PPU)을 실시하여 지난 10여년의 내전으로 파괴된 상수도·보건·교육·전력·도시위생 시설을 긴급 복구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내전시기 튀니지로 임시 이전했던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본부가 아비장으로 복귀하는 등, 코트디부아르는 과거 내전을 딛고 점차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2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과다채무빈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y) 결정으로 국가 채무의 일정 부분을 탕감 받게 되었으며, 2012~2015년간 11조 760억 프랑세파(약 220억 달러) 규모의 제1차 국가개발계획(PND)를 시행하고, 2016~2020년에는 30조 프랑세파(약 600억 달러) 예산의 제2차 국가개발계획(PND)을 실시 중에 있는 등,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통하여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투자법 개정, 투자청(CEPICI) 단일창구(Single-window)

개설, 상사법원 신설 등을 통해 특별히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국내 기간산업 투자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총 60억 달러 상당의 유로본드를 4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발행하였으며(2014년 7월 7.5억 달러, 2015년 2월 10억 달러, 2017년 6월 20억 달러, 2018년 3월 17억 유로), 총 3천억 프랑세파(약 5.5억 달러)에 달하는 이슬람 채권(수쿠크) 또한 2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발행하였다(2015년 11월 및 2016년 8월 각각 1,500억 프랑). 또한 서아프리카 지역 금융시장 BRVM(서아프리카 공동증권거래소)에서도 국채(TPCI) 발행을 통해 약 4조 프랑세파(약 73억 달러)를 조달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평가에서 2015년 세계 147위, 2016년 142위, 2017년 139위, 2018년 122위 등 순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도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창업과 기업금융 제도에 가장 많은 개혁을 이룬 10개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향후 'Doing Business' 세계 50위권 진입을 목표로 추가 개혁을 진행 중에 있다.

관세·통관 장벽

코트디부아르 통관 업무는 관세청(DGD)과 수탁 민간회사 Webb Fontaine사가 맡고 있으며, 통관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단일창구(GUCE)가 신설되어 있다.

※ 통관단일창구(GUCE) https://guce.gouv.ci

관세

코트디부아르는 WTO(세계무역기구), UEMOA(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 ECOWAS(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회원국이다. 공동대외관세(CET)가 1998년

UEMOA 차원에서 발효된 데이어 2015년에는 ECOWAS 차원에서도 적용되면서, 서아프리카 지역 경제 통합이 진전되고 있다. ECOWAS 공동대외관세 제도에 따르면, 수입품은 △사회적 생필품(면세), △필수재화·원자재·자본재(5%), △중간재(10%), △완제품(20%), △경제개발을 위한 특수재(35%) 등의 5가지 대역으로 구분되어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관세가 △수산물(5~20%), △쌀(5~20%), △주류(7~35%), △담배(23~35%), △시가(30~35%), △일부 직물(20%), △석유제품(5~20%) 등에 부과된다.

수입 부과금

UEMOA 공동부과금(PCS), ECOWAS 공동부과금(PCC), 통계수수료(RSTA) 등이 별도 징수된다. PCS는 UEMOA 기금 조성을 위해 1%가 부과되며, △재수출용 물품, △통과용(transit) 물품, △국제협약에 따른 인도적 목적의 원조물품 등은 면제된다.

PCC는 ECOWAS 회원국 중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말리 등 CET 관세 징수가 불가능한 내륙국에 대한 보상기금 조성을 위해 0.5%가 부과되며, RSTA가 무역자료 정보화 기금 조성 목적에서 1%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모든 수입품에 대해 CIF 가격, 관세, 수입 부과금 등의 합산액 기준에서 18%가 부과된다.

수입 규제

수입 금지·제한 또는 사전허가가 필요한 품목으로는 석유 제품(petroleum products), 동물 부산물(animal products), 식물·종자, 무기, 플라스틱 가방, 증류 기구, 음란물, 사카린, 마약류, 폭약, 불법 약품, 독성 폐기물 등이 있다.

또한, 최소수입가격제도(MIPs)가 식용류, 시가, 설탕, 헌옷, 농축 토마토 페이스트, 파쇄미곡, 성냥, 제본 서적, 티슈, 폴리프로필렌 가방, 주류, 우유 등의 상품에 적용되고 있다.

화물위치추적서(BSC)

코트디부아르 등 프랑스어권 서아프리카 국가는 통관 절차에서 화물위치추적서(BSC)를 특별히 요구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해운청(OIC)에 온라인으로 선하증권(B/L), 세관신고서, 원산지 증명서, 포장명세서, 화물정보, 상업송장 등을 제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후 BSC를 발급받을 수 있다.

※ BSC(Bordereau de Suivi de Cargaison)는 영어로 Cargo Tracking Note 또는 Loading Certificate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개별 국가마다 명칭이 다소 상이

※ 코트디부아르 관세청(DGD) www.douanes.ci

※ 코트디부아르 해운청(OIC) www.oic.ci

수출선적인증서(VOC)

2018년 7월부터 코트디부아르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수출업자는 물품 선적 전 서류 확인 검사를 통해 수출선적인증서(VOC)를 발급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일정 가액(FOB 100만 프랑세파, 1,525유로 상당) 초과 물품은 모두 심사대상이 되나 귀금속, 무기, 동·식물, 정기간행물, 지폐, 수표, 여권, 중고차량, 상품견본 등 일부 품목은 심사가 면제된다. 발급은 코트디부아르 상업부 위탁업체의 한국 국내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 Vérification de la Conformité는 영어로 Verification of Conformity(VOC) 혹은 Certificate of Conformity(COC)로 표현

※ 코트디부아르 상업부 위탁업체 : Bureau VERITAS, COTECNA, INTERTEK, 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SGS)

표준·인증 관련 장벽

코트디부아르 표준인증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기기 통관시 적절한 요건에 부합하는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통신기기는 통신규제국(ARTCI)에서, 기타 전기·전자 제품은 표준원(CODINORM)에서 발부한 안전기준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코트디부아르는 국내 자체적으로 기술 시험소를 운영하지 않는 관계로, 대체적으로 국제 공인 기관의 시험 결과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수입품에는 원산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가공 식품의 라벨은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유통기한이 함께 명시되어야 한다.

※ 코트디부아르 통신규제국(DGD) www.artci.ci

※ 코트디부아르 표준원(CODINORM) www.codinorm.org

정부조달제도 관련 장벽

코트디부아르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비서명국이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을 위해 2009년 4월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공개입찰 방식 의무화, △계약 서명기간 명시 등 관련 절차 명확화, △공공조달 감독 전담기구 신설 등의 제도를 구축한 바 있다. 2015년 7월에는 관련 법규 재개정 및 '하도급·공동수급에 관한 헌장(Charte de sous-traitance et de cotraitance)' 제정을 통해 △자국 중소기업(연간매출액 10억 프랑세파 미만 및 피고용인수 200인 미만 사업장)의 정부조달사업 입찰기준을 종전 3,000만 프랑 이하에서 1억 프랑 이하로 확대, △자국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사업의 30% 의무할당, △공공조달 시행업체의 납부 보증금 비율을 종전 3%에서 1.5%로 인하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확대 및 공공사업 수행기업 간 관계조율을 도모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대체로 분권화된 정부조달체제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자체적으로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부처는 현지 언론을 통해 정부 조달 입찰을 공고하거나 국제적인 신문과 잡지를 통해 입찰 공고하기도 한다.

개발기술연구원(BNETD)은 국제기구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기술 평가, 감리 등을 맡고 있으며, 재정경제부 산하 조달국(DMP)은 국제적 입찰 관행에 부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달 과정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일부 외국 기업들이 정부부처 담당자들과의 인맥을 통해 내부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입찰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체 계약 중 수의계약에 따른 계약의 비중이 과거 정부에 비해 줄어들지 않았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 코트디부아르 개발기술연구원(BNETD) www.bnetd.ci

※ 코트디부아르 조달국(DMP) www.marchespublics.ci

지식재산권 관련 장벽

코트디부아르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 회원국으로, 비록 미국 재산권연대(PRA) 국제재산권지수(IPRI)는 세계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나(2017년 127개국 중 95위),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3차 개헌(2016년 10월)을 통해 지적 재산권 보호 관련 내용을 헌법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예술·학술 등 전문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산업부 산하 지적재산청(OIPI)은 특허, 등록상표, 산업디자인, 상호 등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저작권보호청(BURIDA)은 음악 등 예술 재산권, 영상물, 서적 및,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조품의 범람, △북부 국경을 통한 위조 직물, 약품, 차량 부품의 유입, △정부기관의 조직·예산 부족, △국

민의 인식 부족 등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며, 우수한 한국 전자·전기 제품에 대한 모조품이 간간이 유통되고 있다.

서비스 장벽

보건, 여행업, 법률,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분야 회사의 경우 외국인이 과반 이상 지분을 취득할 수 없어 코트디부아르 국적 회사와의 제휴관계가 필요하다. 이외의 분야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지분 취득 제한은 없다.

특정 분야에서는 국적에 따른 제한이 존재한다. 회계사의 경우 외국 국적자는 일정 기간 동안 코트디부아르 국적 회계 법인에서 근무하지 않고는 코트디부아르 회계사협회에 가입할 수 없다. 또한, 변호사 등록 및 법정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도 코트디부아르 국적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투자법에 따르면 운송업·무역업·건설업·공기업 및 금융계를 제외한 1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자에게는 최초 3년 동안은 면세·감세, 관련 기자재 수입 부가세 면제, 토지 불하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투자청(CEPICI)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금융시장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회사 설립부터 정리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단일 창구 설립을 통하여 간소화였으며, 필요시 투자자들이 정부 및 관련 기관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2년 개정된 코트디부아르 신투자법은 낙후된 지방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권역을 기존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여 지방에서는 법인세 감면 기간 연장, 대규모 투자에 대한 토지세 감면, 중소기업 특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타 장벽

외국 투자 기업들은 코트디부아르 투자에 있어 제일 큰 장벽으로 부패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2013년 11월 민관합동 '부정부패 방지 선정최고위원회(Haute Autorité pour la Bonne Gouvernance et pour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창설 및 2014년 4월 부정·부패방지법(Anti-corruption law) 채택 등을 통해 부정·부패 근절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ICP) 순위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는 2011년 세계 154위에서 2016년 108위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DR콩고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일반 동향

DR콩고 진출 여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은 면적 235만km^2 (한반도의 11배, 알제리에 이어 아프리카 대륙에서 두 번째 크기)의 광활한 국토에 2018년 기준 8,134만 명(출처: 세계은행)의 인구를 갖고 있는 사하라 이남(SSA: Sub Saharan Africa) 중서부아프리카 지역의 자원부국이다. 코발트, 다이아몬드, 구리 아연 등 비철금속 자원의 보고이며, 콩고강 유역의 풍부한 강우량으로 "아프리카의 물 저장고", 비옥한 땅으로 "아프리카의 곡창"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 제2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DR콩고는 1960년 식민 종주국 벨기에로부터 독립할 당시 우리나라는 물론, 남아공보다 더 부유한 나라였으나 32년에 걸친 모부투(Mobutu) 독재정권의 부정, 부패와 실정, 1990년대 들어서는 모부투 정권의 몰락과 함께 내전이 발발하면서 5백만명 이상의 사망자, 2천만명 이상의 난민을 발생시켰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참사로 내전을 거치면서 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국가 행정서비스 및 산업기반이 무너졌고, 도로망은 90% 가량 망실되었다.

하지만 국제 광물시장에서는 DR콩고에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구리, 금,

다이아몬드가 여전히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2차 전지의 필수 재료인 코발트, 콜탄 등 총 50여 종류의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잠재력으로 따지면 DR콩고가 단연 글로벌 최대 수준이지만, 현재 개발 중인 것은 7종에 그치고 있다.

특히 DR콩고 남부 카탕가주(Province du Katanga) 지역의 구리, 코발트, 우라늄 개발에 국제적인 자원개발기업들의 투자가 재개되고 있다.

조셉 카빌라(Joseph KABILA Kabange) 대통령은 2006년 12월 선거를 통해 집권한 이래 수도 킨샤사를 중심으로 국가 재건을 위한 안정적인 정치·경제적 기반을 조성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011년 11월 실시된 대선을 통해 조셉 카빌라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여 상대적으로 국내 정세가 안정되면서 미국, 중국, 프랑스, 벨기에 기업들에 의한 자원개발 및 인프라 건설 분야 진출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었다.

이후 대통령 선거가 두 차례 연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기도 하였으나, 2018년 12월 30일 마침내 대선이 실시되고 야당 후보인 펠릭스 치세케디(Felix TSHISEKEDI)가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DR콩고 역사상 최초이자 아프리카에서 보기 드문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후 정국이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이다

DR콩고는 2016년 기준 GDP US$ 403억, 1인당 GDP US$ 472의 세계 최빈 개도국이면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과 함께 유엔의 3대 아프리카 원조국이다. 2010년 7월 IMF 및 세계은행의 123억 달러 규모 부채탕감 및 2010년 11월 파리 클럽의 73억 달러 규모 부채탕감으로 DR콩고 정부는 국가 재건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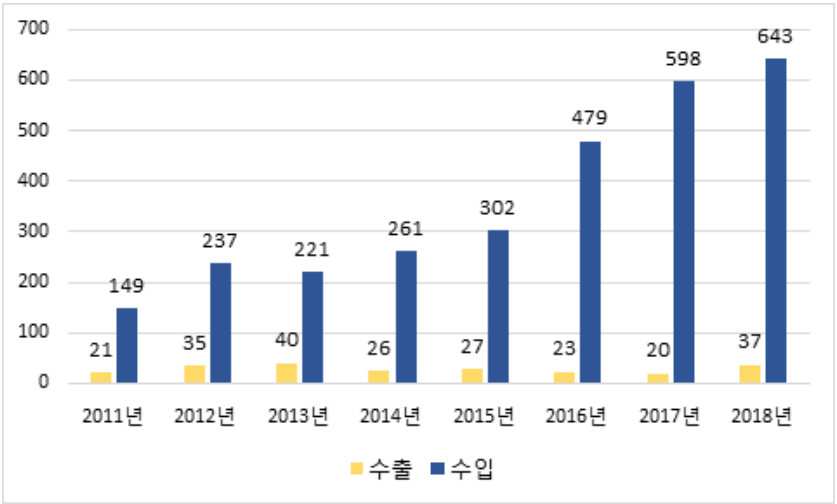
향후 DR콩고는 국가경제 발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경제적 성장 지속을 위해서는 정치 불안정 극복, 동부 지역의 정세 안정, 인프라 재건, 공공분야 구조개혁, 부패 방지,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증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요 경제상황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8.5%, 9.0%의 유례없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세계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해 광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DR콩고는 2015년 경제성장률이 6.9%로 낮아졌으며, 2016년에는 3.9%로, 2017년에는 3.7%로 지속 하락하였다.

한국의 대DR콩고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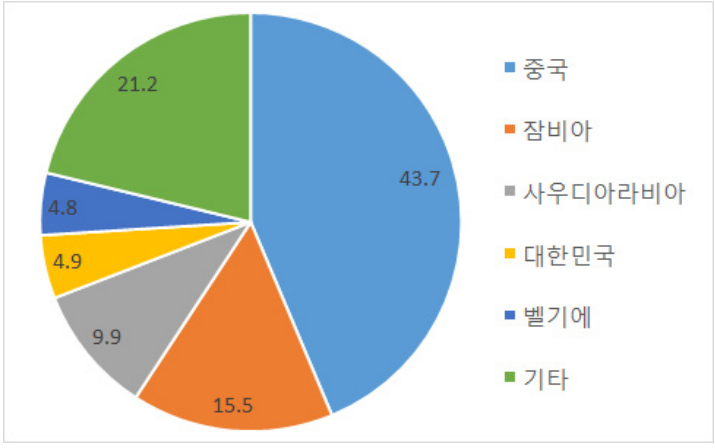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8년 기준 DR콩고의 주요 상품수출 대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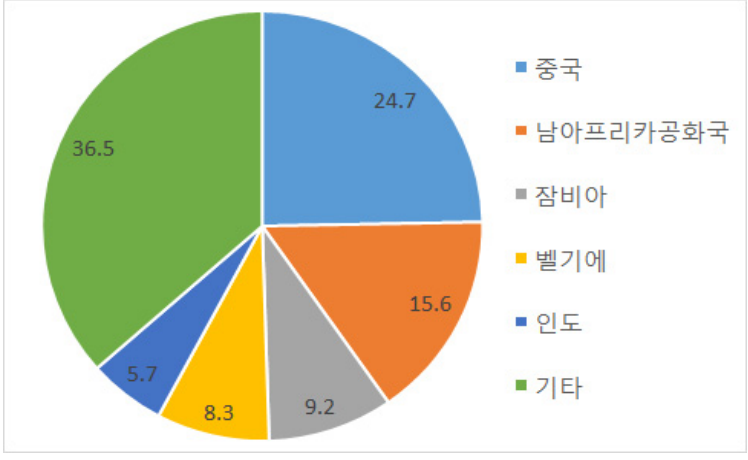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유엔산하국제무역센터(ITC)

2018년 기준 DR콩고의 주요 상품수입 대상국

(단위: %)



자료: 유엔산하국제무역센터(ITC)

세수 확보가 저조한 여건에서 무리하게 도입된 부가세(세율 16%)는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 2011년에는 1년간 평균물가상승률이 15.5%까지 증가했지만, 점차 안정되면서 2014년 0.8%, 2015년 0.6%의 안정 추세를 유지했다(출처 : 세계은행). 그러나 2016년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국제 광물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와 환율 불안으로 인해 대부분의 소비재를 외국산 수입에 의지하는 DR콩고의 물가상승 압박이 커졌다.

평균 환율은 2014년 US$ 1=FC 910에 이어 2015년 US$ 1= FC 915 으로 안정적인 상황이었으나, 국제 광물 자원가격의 지속 하락, 이에 따른 생산량 감소, 광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경제의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외국인 투자 부진 등 악재가 겹치면서 2016년부터 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하였다. 2018년 12월 현재 US$ 1=FC 1,620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2017년 8월중에는 환율이 US$ 1당 1,700 FC까지 하락한 바 있다.

DR콩고는 2019년 이후 정세안정에 따라 전통적 수출산업인 광업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통적 광업중심지 Haut-Katanga 주와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구 Oriental주(현 Haut-Uele주, Bas-Uele주, Tshopo주, Ituri주) 광업 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Tenke Fungurume 구리-코발트 광산과 Katanga Mining(Haut-Katanga주), Kibali Gold Mine(Haut-Uele주) 금 광산의 생산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outh-Kivu주 Twangiza에서 금 생산이 개시됨에 따라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금수출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영세업자들을 통해 정부에 신고 없이 이루어지는 금 수출 관행은 계속될 것이고, 물량은 연간 수천 온스(troy ounces)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광물분야 외에도 광활한 잠재 농지와 농업에 적합한 기후를 활용하여, DR콩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발전전략(2013~2020)에 따라 향후 농업부문도 주요 국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DR콩고 정부는 광물부문의 국가재정 비중을 2010년 9% 수준에서 2017년 2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 광업 발전을 위해 공

공부문 및 민간부문 투자확대(GDP의 10%), 정부의 관리 강화 및 경영투명성 제고, 수출 광물의 부가가치 증대, 미 탐사 광물자원 개발 확대, 지역별 특화 광물에 대한 투자 확대, 외국기업에 대한 독점 탐사권 부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재정 지원한 광업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중간재 및 자본재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입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DR콩고의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 US$ 11.24억에 이어 국제 광물시세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2015년 적자액이 US$ 19.47억으로 크게 증가했고, 글로벌 원자재가격 하락세로 무역수지 적자폭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출처: DR콩고 중앙은행).

DR콩고는 예산·투자·인프라가 절대적으로 열악하고 이에 따른 산업발전의 저하가 전체 국부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경우 풍부한 자원 및 노동력을 기반으로 견실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DR콩고의 경제 잠재력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 현재 심각한 인프라 부족, 열악한 행정·사법 체계 및 만연한 부정·부패 등으로 잠재력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2016년 기업환경평가(E ase of doing Business) 조사 결과에 따르면 DR콩고는 조사대상 189개국 가운데 184위를 차지했고,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6년 부패인식지수조사 결과, DR콩고는 176개국 가운데 156위, 캐나다 Fraser Institute의 2015년 경제자유도(Economic Freedom Ranking) 조사 결과 159개국 중 157위를 차지했다.

DR콩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국가개발 이행계획으로 6대 분야 목표를 제시하여 국가발전 의지를 표명했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국가기관 운영, 거시경제 안정 및 경제성장·일자리창출 지속, 기본인프라 구축 및 개선, 생활・사회 환경 개선, 인적자본 강화 등이다.

DR콩고 정부는 2030년까지 신흥경제국 진입, 2050년 선진국 대열 합류라는 목표를 내걸고, 국부의 증가, 인플레이션 하락, 화폐 가치 안정,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자체 재정 확보, 인프라 시설 확대 및 농업·광업 분야 현대화 등의 경제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2013년 5월 'DR콩고 지원을 위한 신전략'프로젝트로 US$ 12.6억 재정 지원을 승인하여 4년간 행정 개혁과 통치 개선, 민간분야 개발을 통한 고용 창출 및 경쟁력 제고,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인적 개발 지수 개선, 동부지역 분쟁 및 불안 해결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9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동 프로젝트 중간평가 보고서는 동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평가를 내렸으며, 세계은행은 바람직한 사업 성과 도출을 위해 2017년까지 프로젝트 기간을 연장해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DR콩고 정부는 2020년까지 빈곤의 50% 감소를 목표로 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유엔농업기구(FAO)의 개도국 농업분야 투자 확대 권고에 대한 부응을 통해 2030년까지 신흥경제국으로 부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연간 US$ 15억에 달하는 식품 류 수입 대체 방안으로 농업개발 7개년 계획(2013~2020)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US$ 4.4억이 투입된 Bukanga-Lonzo 농업단지에서 2015년 상반기 최초로 5,000톤의 옥수수를 수확함에 따라 농업발전 정책이 일정 부문 실효를 거두고 있다. DR콩고 정부는 2015년 착공한 Maluku 및 Ruzuzu 농업단지를 포함하여 전국 11개주에 26개 농업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DR콩고 정부는 현재 약 10% 수준인 전기 보급률을 2025년에 60%까지 높이기 위해 콩고강 Bundi 계곡 12km 구간에 Inga 3 수력발전소 건설, 4,800M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Inga 3 수력발전소는 남아공과 협력,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으로 2018년 이후 착공될 예정이다. 발전소 건설비용으로 최대 US$ 120억 투입이 예상된다. Inga 3 발전량 4,800Mw 중 남아공 정부가 2,500Mw를 구매하고 나머지 2,300Mw는 DR콩고 카탕가주 300개 광산을 비롯하여 현지의 부족한 전력을 충당하는데 사용된다.

DR콩고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실질 GDP 성장률(%)	8.5	9.0	6.9	3.9
총 고정투자 성장률(%)	7.7	9.0	-21.9	-16.7
소비자물가 인플레(평균, %)	1.6	1.2	1.2	1.7
정부 수지(% of GDP)	-1.7	-1.8	-2.1	-2.3
상품 수출(fob, US$백만)	11,613	12,982	12.398	12,352
상품 수입(fob, US$백만)	10,808	11,980	12,340	12,480
경상수지(US$백만)	-3,109	-1,723	-1,546	-1,632
경상수지(% of GDP)	-10.4	-7.4	-9.2	-9.8
총외채(연말 기준, US$백만)	6,082	6,562	7,027	7,268
평균환율(FC: US$)	920	925	927	1,080

출처: 세계은행 및 ITC

수입정책

관세

DR콩고는 WTO(세계무역기구), ECCAS(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 COMESA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ECGLC(대호수지역경제공동체), SAD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가입 회원국이다.

COMESA, SADC, ECCAS는 자유무역지대 창설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으며, 2015년 6월 10일 3개 공동체 대표가 회원국을 대표하여 TFTA(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다. TFTA는 3개 공동체 26개 회원국간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시차를 두고 점차 관세를 낮춤으로써 종국적으로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동 협정에 대한 회원국의 비준은 아직 4개국에 그치고 있으므로, 협정 발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DR콩고의 관세는 HS 2012에 기초하고 있고, 모든 관세의 기준은 CIF 가격

기준으로 5%(원자재, 농자재, 의약품, 수의(동물 관련)용품, 용기자재), 10%(중간재, 식료품, 병원 관련 품목) 및 20%(옷, 가구, 담배 및 완제품)로 분류된다.

영세율은 우표 등에 적용되고, 5% 세율은 자본재, 원료, 농업에 필요한 물자, 약품, 부속 및 액세서리, 반조립품, 우유 및 육아 준비물, 디지털회선용 기기 등, 10% 세율은 반조립 부품, 대량 소비용 식품, 장비 부품 등, 20% 세율은 기타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관세는 100%가 상한이며, 단순 평균 최고 관세율은 2014년 기준 96.1%(출처: WTO)로 농산물 98.1%, 비농산물은 95.8%이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수입부과금은 DR콩고 정부 예산의 주요 수입원으로, 2008년 총 7.2억 달러의 관세 및 수입부과금은 전체 정부 세입의 28%, GDP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MFN 실행관세율 평균은 10.9%로 2010년 실행관세율 평균 대비 하락하였으나, 광업 및 채석, 공산품 등에 대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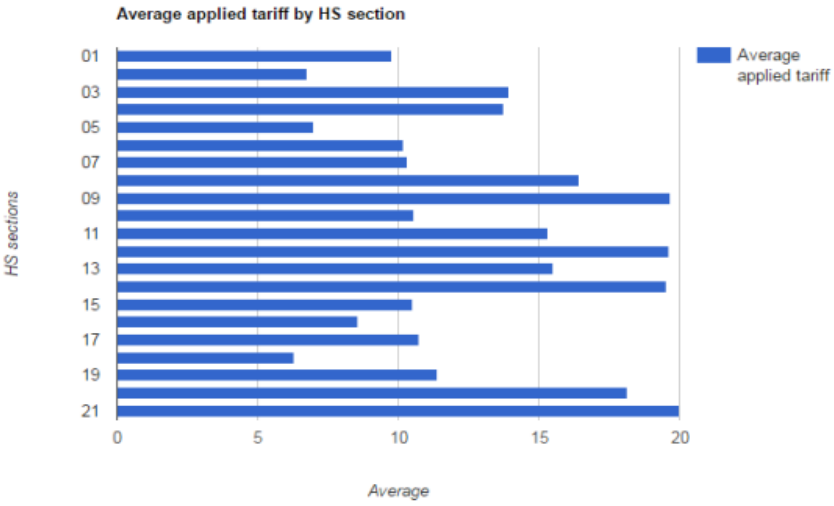
수입품종별 관세율 현황

(단위 : %)

	양허관세율(U/R)(OCC)	2010 실행관세율 평균(OCC)	2014 MFN 실행관세율 평균(WTO)
농산물	30.0	11.2	10.9
비농산물	15.2	11.3	10.9
광업 및 채석	0.0	7.1	10.8
공산품	26.3	11.4	12.4

출처: OCC 및 WTO

HS 2012 기준 섹션별 실행관세율 평균



출처:유엔산하국제무역센터(ITC)

콩고에 투자되는 장비의 부품가격이 원장비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동 부품에 대해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중고 중장비 차량, 선박과 항공기의 수입은 완전 면세가 허용되고, 면세되는 자본 및 수입장비는 최소 5년 동안 DR콩고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관세와 세금이 면제되는 품목은 CIF 가격에 5%의 행정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DR콩고는 오랜 내전과 정세 불안의 여파로 국내 생산기반이 심각하게 와해되어 높은 수준의 대외무역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국가로서 중장기 국가개발 계획에서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중점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한편, 밀수가 DR콩고의 수입시장을 교란하는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는데 밀수품은 수입시장의 70%까지 점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R콩고의 국경이 워낙 길어서 정부의 밀수 통제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보따리상들이 직접 반입하는 수입품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DR콩고 관세 행

정은 보따리상들이 고가의 제품을 반입하면서 통관 과정에서 일정한 뇌물만 주면 쉽게 통관이 가능할 정도로 허술하다. 반면 삼성,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은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관세를 납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외에 중국산 수입 '짝퉁' 제품도 큰 골칫거리이며 수입 규모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3년 르완다, 브룬디, 콩고공화국, 우간다 등과 개별 협정, 2014년 DR콩고-앙골라 협정, DR콩고-탄자니아 협정, 2015년 체결된 DR콩고-잠비아 협정 등 DR콩고가 주변국과 체결한 국가별 1:1 협정은 양국 무역 증진과 밀수 예방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DR콩고는 협정을 통해 주변국과 관세를 낮추고, 상대방과 자본, 상품, 노동력 이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밀수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수입규제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 영업세, 산업증진세 등 다수의 세금이 부과되며, 수입품에 대한 추가 부과금은 수입 경로에 따라 5~40% 수준에 달한다.

수입품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허가증을 구입(수수료 12불)해야 하며, 물자의 항구 도착시 △관세청(DGDA)의 통관요금(CIF 금액의 1%), △수출입통제청(OCC)의 검사비용(CIF 2,500불 초과 금액의 2%, 2,500불 미만은 금액의 1%), 하역요금(1톤당 5불), △산업증진청(FPI)의 산업증진세(CIF 금액의 2%), △상선운영국(OGEFREM)의 커미션(CIF 금액의 0.595%) 및 수수료(0.59%), △국가항만국(ONATRA)의 하역수수료(톤당 20불) 및 항만사용료(톤당 32불), 지방세(20피트 기준 컨테이너 1개 당 135불) 등이 부과된다. DGDA는 DR콩고 정부의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면세품목 수입자들은 통관 비용으로 최종가격의 5%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수입품, 자국 생산품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에는 2012년 1월부터 기존의 소비세(ICA)를 대체하여 부가가치세(VAT) 16%가 부과되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료는 선적 무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마타디-킨샤사 구간은 컨테이너당 1,500~3,000달러가 소요된다.

DR콩고의 수입통관 관련 기관은 관세국(DGDA, La Direction Generale des Douanes et Accises), 수출입통제국(OCC, L'Office Congolais de Controle), 국가항만국(ONATRA, L'Office National des Transports), 상선운영국(OGEFREM, L'Office de gestion de Fret Maritime), 산업진흥기금(FPI, Le Fonds de Promotion de L'industrie)이 있다.

수입금지 품목

DR콩고 무역법 제13조에 따르면 건강에 위험하거나 도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금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은 플라스틱 비닐(환경오염 방지), 원석상태의 광물(다이아몬드, 동, 코발트, 금) 및 총기류, 총탄, 부레옥잠, 성인용품 등이다.

수입허가 및 통제

국경무역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수입에 허가가 필요하다. 자동 수입허가는 통계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비자동 수입허가는 관세규정에 따라 수입제한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허가를 취득하는데 보증금이나 수수료가 불요하며, 물품 수입 또는 특정국가로부터 수입량 한도가 없을 경우, 수입업자의 편의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은 자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거부될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기타 관련 정보는 관보에 게재된다.

덤핑 및 반덤핑

DR콩고는 상품의 수입 통제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No 0011, 1997년 1월 22일)에 의거 WTO 기본원칙에 따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DR콩고는 아직 WTO 규정에 따른 자국 산업 보호체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통관절차

DR콩고 현지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복잡하고 난해한 규정, 관련 다수 기관의 개입 중첩, 책임 기관 부재 및 관료의 무능과 부패다.

특히 수출입업무와 관련, 규정상 다수의 기관이 관여하고 있어 행정업무 처리의 지연, 기관간 정보 공유 및 조율의 부재로 인해 통관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통관업체의 능력에 따라 통관기간이나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2013년 콩고의 OHADA(아프리카 비즈니스 법률조화기구) 가입 이후 통관 부문에서도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통관과 관련, 크게 달라진 점은 통관 절차 간소화인데, 통관 작업을 대부분 전산화함으로써 현재 자동차 통관에 3일, 컨테이너 통관에 5일이 소요되며 여러 종류의 세금 및 비용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고 있어 편리해졌다.

다만,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BOMA나 MATADI항이 협소하여 선박이 몰릴 경우 해상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급행료 명목의 뒷돈 요구 등 세관 공무원의 부패가 여전하며, 간혹 전산 장애가 발생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이외에 간혹 발생하는 마타디 항구 주변의 운송노조 파업도 물류 마비에 일조하고 있다. 2013년 1월 발생한 운송노조 파업으로 마타디-킨샤사 구간의 컨테이너 운행이 3주간 전면 금지되어 물류에 피해를 입는 등 매년 2~3회 가량 파업, 시위 등으로 물류에 지장을 초래되고 있다.

정부조달

2002년부터 도입된 DR콩고의 공공행정 개혁으로 인해 외국 사업자들의 정부 사업에 입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 조달 사업의 계약이 때때로 국제 기준에 맞지 않게 불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4월 새로이 제정된 정부조달 법률은 프로젝트의 준비, 정부조달계약 체결, 집행 및 감독과 정부조달 관련 분쟁 해결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정부조달 법률은 국가, 지방, 국영기업 및 정부기업이 조달하는 작업, 공급, 서비스 및 지식서비스의 조달에 적용되며, 차별을 철폐하고 경쟁을 조장하며 정부조달에 있어 사기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BCECO (Bureau Central de Coordination)이 정부조달 계약과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도록 정부조달과 공공서비스 권리의 부여 칙령 No. 10/27 (2010년 6월 28)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제 입찰 또는 국내 입찰 후 총리와 예산담당 장관이 조달을 승인한다.

정부조달 계약은 입찰 초청 또는 단독 입찰의 방법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단독입찰 방식은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사항이다.

입찰방식은 공개입찰, 제한입찰, 경쟁입찰이 있고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가 및 지역 우선권이 부여되며 입찰 모집시 명시되어야 한다. DR콩고 기업에 대한 용역, 서비스공급 또는 계약의 총가액 30%를 하청하거나 DR콩고 출신 전문가를 40% 이상 사용할 계획인 외국 입찰자에게도 우선권이 부여된다.

세계은행의 후원과 지원으로 제정된 DR콩고 정부조달 법률은 예산부 (Ministry of Budget)의 관할 하에 집행되며 2010년 4월 공포되었다. 동법은 DR콩고 현지 기업 및 투자진출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한편 DR콩고는 WTO 정부조달 협정 조인국은 아니다.

이러한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찰은 비공식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배후에는 비공식적인 힘이 작용하는 등 입찰 부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조달 외에 UN 산하기구가 원조를 목적으로 조달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DR콩고 정부를 거치지 않고, 현지 기업 또는 NGO기관을 통하여 조달업무를 추진하므로 비교적 공정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달의 경우 경쟁이 심하다.

투자

DR콩고에 대한 FDI 유입은 2011년 39.65억달러, 2012년 65.93억달러, 2013년 40.28억달러, 2014년 29.52억달러, 2015년 18.53억달러, 2016년 46.05억달러이다(출처: ANAPI: DR콩고 투자청).

투자법

2002 투자법은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재정, 관세 및 일반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법은 특별 입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광업, 석유, 은행 등을 포함한 부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법상 특혜로 기계류, 도구, 신 장비 및 필요 부품에 대해 5%의 행정수수료를 제외한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중고 중기계,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는 완전 면제하고 있다.

특혜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은 기획부 산하 투자청(ANAPI)에 승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ANAPI 검토에 따라 장관령으로 승인된다. 특혜기간은 3~5년으로 지역에 따라 차등화되며, 수도 킨샤사 권역에서 멀수록 특혜기간을 길게 부여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한다. 2005년에 투자자들이 사업체 설립을 위한 모든 절차를 신청, 완료할 수 있는 단일 창구가 투자청(ANAPI)에 마련되어 있다. 특혜제도 적용 기간은 투자지역에 따라 좌우되며 갱신될 수 없다.

한편 DR콩고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기업설립절차 단순화 및 관련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개월간 11단계의 설립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고 서류제출 창구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었으나, 기업설립을 위한 One-Stop Shop 서비스를 통해 3일 안에 3단계의 설립 프로세스을 거쳐 DR콩고에 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설립을 위한 제출 서류는 법인의 경우 정관 4부 및 관보게재용 파일, 자본금 지분 공증서류 (statement of subscription and payment), 기업명의의 은행구좌 사본, 대표이사의 서명 사본, 대표이사 및 이사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범죄기록증명서, 정관, 사업장 주소, 사업활동 보고서,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하면 된다.

아울러, 기업설립 신청서류 비용도 US$ 3,000에서 법인의 경우 US$ 120, 개인사업자의 경우 US$ 40로 대폭 축소되었다. 사업자등록 비용도 법인의 경우 US$ 200에서 US$ 50, 개인사업자의 경우 US$ 100에서 US$ 25로 하향 조정되었다.

투자유치진흥기관

DR콩고 정부는 내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2002년 투자진흥청(National 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API)을 설립하여 공공, 민간 분야 투자 유치 증진을 담당하고 있다.

투자분야 입법, 규정 등 홍보, 투자 관련 절차를 쉽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행정 장애 제거, 국내외 투자 증진, 투자자 유치 노력, 투자 자가 행한 약속의 이행 여부 감시, 지역별 다양한 부문의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투자현장에서는 투자관련 인프라(도로, 전기, 통신 등) 구축 등 상당한 부문을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추진하고 있어 아직 ANAPI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승인 절차

투자법이 규정하는 혜택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ANAPI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는 미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단일창구로서 ANAPI는 투자법에 따라 승인된 투자계획을 접수, 심사, 승인에 관한 결의를 한 후 기획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 송부하며 부처간 명령에 의해 승인 또는 거부된다.

투자승인 기준

투자승인 자격을 얻기 위해 투자자가 충족해야 할 기준은 현지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에 대한 투자이어야 하고, US$ 20만 이상의 투자 및 창출되는 부가가치 비율이 35%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자에게 승인 결정을 통보하는 시간은 신투자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실제 일한 날) 이내로 축소되었고, 정해진 시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승인되지 않는 모든 결정은 어떠한 이유로 투자 신청이 투자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투자청(ANAPI)은 권한 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투자를 감독하며, 이행 약속을 지키지 못한 투자자에 대한 승인 철회에 관한 의견을 듣고, 투자 승인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게는 통상의 법률체계가 적용되어 투자법에 의해 부여된 혜택이 박탈된다.

투자저해 요인

DR콩고의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요인은 정치 불안과 공무원의 심각한 부패, 인프라 부족, 쉽게 해고하기 어려운 고용문제 등이 거론된다. 또한 법인설립 후에도 계속해서 다수 부처의 갖가지 명목으로 소위 '뇌물 상납'을 요구하고, 노사분규에 따른 쟁송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2015년부터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공무원들이 외국기업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DR콩고를 떠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신규 투자 검토 기업도 투자진출을 망설이고 있다.

이외에 은행 대출의 까다로움, 만연한 부패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부대 비용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여전히 고충으로 자리잡고 있다.

투자환경 개선

DR콩고는 UN 부패방지협약 가입, 2004년 부패방지법 및 돈세탁방지법 채택, 회사설립절차 간소화, 무역등록 등기 수수료 인하, 주민등록번호 부여

소요 시간 단축, 건축허가비와 부동산 이전 등록세 인하 등 다양한 친기업 성향의 정책을 통해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광업, 산림, 농업 및 인프라 등 개발 잠재력이 큰 부문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법 체계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DR콩고는 2013년 OHADA(아프리카 비즈니스법률 조화기구)에 가입한 이후 강한 국가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투자유치 부문에서도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반 노력을 하고 있다. 콩고의 OHADA 가입은 기업 경영 및 국가간 상거래에 있어 변화를 가져왔고, OHADA 프로그램은 금전 거래, 회사 경영 권리, 회사 이윤 창출 권리, 회계 권리, 사법 중재 법정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개선된 분야는 기업설립 관련 절차의 단순화 및 관련 창구의 일원화, 건축허가 소요기간 단축, 세금 및 관세 조정, 불법 국경무역 근절, 투자자 보호제도 등이다.

DR콩고 정부는 종전에 사업자 등록, 무역업 등록, 국가인증번호(PIN) 발급, 수입 수출 허가, 납세증명 등을 5개 국가 기관에서 발급토록 하여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2013년 1월부터 기업설립 One-Stop Shop서비스를 실시하여 3일내 모든 기업설립 절차를 완료하는 등 비즈니스 환경를 개선하고 있다.

투자 유의사항

법적, 행정적, 물류 및 재정적 측면을 중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믿을 만한 변호사 등 법무법인, 국제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 물류업자 등 현지기업과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적, 법적, 세무 등 분야별 위기 관리에 있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지 파트너를 최대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성공적인 외국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민간 부문의 진지한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으로 현지 파트너는 고객 및 정부와의 관계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현지 파트너, 고객 및 행정당국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는 것도 사업의 성공과 위기관리의 관건이다. 현지 문화는 계급에 대한 존경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콩고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가능한 융통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경제특구 개발현황

DR콩고는 2013년 6월 민간부분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5개 특별경제구역(SEZs) 창설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승인했다. DR콩고에는 경제특별구역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5개 특별경제구역으로 남부 Katanga주, 중앙 Kasai주, 서부 Maluku, 북부 Kisangani 및 동부 Kivu주에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만, 아직 계획 단계로서 수도에 인접한 Maluku 시범지역의 성공 여부가 타 특별경제구역의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특구의 목적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과 외국기업의 유치, 외국기업의 투자 및 기술 이전을 통한 자체 제조업 육성이다.

Maluku 시범지역은 콩고강에 인접한 만큼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DR콩고와 세계은행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별경제구역에 기업을 설립할 국내외 투자자들은 최초 10년 동안 모든 세금을 면제받는다. 동 특별경제구역은 정부가 아닌 사기업에 의해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로, 전력, 수도 등 인프라 건설이 지연되고 있고 낮은 인적 역량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다.

광업법 특혜제도

광업법은 특혜적인 관세 및 재정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혜 제도는 광업권 또는 토석 채취권 소유자, 광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방계 회사, 광업권 소유자와 서명한 계약이 있는 광업 활동에 종사하는 하청업자에게도 적용된다.

광업법에 따라 허용되는 관세 인센티브는 △광업 프로젝트와 관련된 교역 가능한 물품의 수출에 대한 모든 관세 완전 면제 △역외가공을 위한 상품의 수출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및 부과금의 관세 면제 △광산이 실제 가동을 개시하기 전 광업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상품에 대해 2% 관세 그 이후 5% 관세 △프로젝트 기간중 광업을 위해 사용되는 연료, 윤활유, 시약 및 소모품에 대한 3% 관세 △재수출을 위해 수입되는 장비를 위한 6개월간(2차례 갱신 가능)의 면제 등이다.

재정적 인센티브로 광산 채굴권 지역내 소재 건물은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광업 프로젝트 지역내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 및 특별 고속도로세가 면제되고, 해외에서 차용한 외화대출금에 지불한 이자는 동산 관련 세금이 면제된다.

배당금에 대한 10% 세율 적용, 이윤세 30% 적용, 콩고 현지 가공시설에 대한 제품 판매는 매출세가 면제되고, 콩고 현지 다른 판매에 대해 10%의 세율 적용, 광업권 소유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가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 5% 매출세 부과, 광업활동과 관련된 현지 생산 제품의 구매에 대한 매출세 3%, 국외거주자 보수에 관한 특별세 10%이다.

특혜 신청 절차는 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광업권 소유자가 특혜 제도의 범위에 속하는 동산의 개소와 가치, 자동차, 장비 및 기타 투입물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광업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공동 명령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물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은 채굴 산업의 경우 7.1%, 비철광물의 경우 15.6%(최소 5%, 최대 20%)이다.

DR콩고 정부는 2012년 이후 광업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고, 현재 FEC(DR콩고 경제인연합회) 및 광산 업계가 DR콩고 정부와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은 자원 탐사 및 광산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권리를 10년간 보장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으나, DR콩고 정부는 동 기간을 4년으로 축소하고자 하여 FEC 및 광산 업계의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광산 업계는 현재 광산 수익금의 35%를 세금(profit tax)으로 납부하여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세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기업이 취득한 탐사허가(PR)를 채광허가(PE)로 변경시 정부지분을 5%에서 35%로 확대하고, 광업 로열티는 구리의 경우 4%, 금속 및 비철금속은 0.5%, 금 등 귀금속은 2.5%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와 업계의 의견이 상이하여 광업법 개정에 대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DR콩고 정부는 광업법 개정을 통한 국제기구 요구 수준 반영하여 국가 경제에 대한 광업의 기여도 증가, 유휴 광업권 억제, 광산 개발 지역 환경 보호 강화, 광업 조세 제도 개선으로 국가 수입 증대 등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 정부 부처 및 이해단체가 광업법 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개정 합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DR콩고의 Oriental주에서 Kibali 금광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동 광산은 영국계 Randgold Resources사가 투자한 금광이다. Kibali 금광은 2013년 후반기 3개월 동안에 88,200온스(약 2.7톤)의 금을 생산했고, 2023년까지 매년 60만 온스 이상의 금 생산 목표가 달성될 경우 세계 최대의 금광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DR콩고 동부 Oriental주 Ituri 지역 등은 오랜 기간 부족 분쟁 등으로 혼란을 겪었으나, 현재 Ashanti Goldfield Kilo(AGK), Kibali Gold Mine, Mwana Gold 및 Kilo Gold Mine 등에서 활발하게 금광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금이 대량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DR콩고의 구리 생산은 2014년 1,302천톤, 2015년 1,309천톤에 이어 2016년 1,204천톤으로 2015년 이후 생산량이 감소했다(출처: 광업부). 이는 전력공급 부족으로 구리 생산시설 가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DR콩고는 코발트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서 2013년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40%를 차지했고, 2013년 생산량 54천톤을 기점으로 핸드폰 전지 및 전기차에 장착되는 2차 전지의 수요량이 급증하면서 2014년 63천톤으로 늘어났고, 2015년 63천톤, 2016년 66천톤을 기록했다. 향후 세계 코발트의 40-50%가 DR콩고산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 규정상 제약

DR콩고는 최혜국 대우 예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규정상 제약은 없으며, 다만 귀금속(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황옥 등) 및 반귀금속(금, 은, 이리듐, 팔라듐, 라듐, 백금, 바나듐 등)의 특정 광산물의 수출은 광물 성분 분석기관인 귀금속·반귀금속 감정평가센터(CEEC)의 원산지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DR콩고는 중부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CAS),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등 지역협정에 따라 특혜적 원산지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WTO에 통보했지만 아직 각 협정에서 규정한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표준 및 여타 기술적 규제

DR콩고는 수입품 규제 관련 자체 제정 표준 법령이 없으며, 다만, DR콩고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WTO, ISO) 및 지역기구(COMESA, SADC, ARSO) 회원국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표준 규제 및 상품 평가에 관한 주무 부처는 산업부(Ministere de l'Industrie)로서 표준 규정의 집행은 산업부 산하기관인 수출입통제국(OCC: Office congolais de controle)에서 담당하고 있다.

OCC는 DR콩고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 및 수출입품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상품의 표준 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상품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CC는 DR콩고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기술규제집(Manuel Qualite: System de Management de la qualite de l'OCC)을 배포하고 있으며 수출 및 수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동 규제집을 참고해야 한다.

2009년 도입된 법령에 따르면 OCC는 제3자 적합성 평가 즉 검사, 증명, 시험 또는 분석, 도량형 및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표준에 관한 기술적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국가표준화위원회 기술사무국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OCC에는 기술통제 및 도량형국이 있으며, 독일 도량형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ISO 17025 공인 과정을 갖추고 있다.

DR콩고에는 산업부 장관령으로 식료품, 철, 측량, 산림, 시멘트 등 품목에 대한 217개의 표준이 공표되어 있으며, OCC내 인력 및 검증 시설의 제약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수입품이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반입되고 있다.

한편, 광물 자원을 수출할 경우에 관할 부처인 광업부가 마련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모든 광물 자원 수출시 귀금속, 반귀금속 감정증명센터인 CEEC의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3T(주석, 탄탈륨, 콜탄)와 금은 DR콩고 정부의 광업법, 광업규칙 및 대호수지역 국제회의 지역 인증 관련 광업부령 N°0057/CAB.MIN/Mines/01/2012(2012년 2월 29일)에 따라 CEEC가 원산지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

검역

DR콩고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Joint FAO/WHO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 회원국으로서, 위생 및 검역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DR콩고의 식물 및 동물 검역은 농업농촌개발부 주관으로 2005년 11월 설립된 국가 인증기관인 동식물검역서비스(SQAV, Service de Quarantaine Animale et Vegetale)에서 전담하며 사람과 관련된 문제는 보건부와 협의하여 수행하고 있다. SQAV는 식물의 종자, 원목, 농산물 및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물품, 축산물, 동물, 비료, 살충제 등에 대한 수출입 검역 및 증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에 있어 OCC(수출입통제국)의 품질 적합성 업무와 SQAV의 검역 업무 관련 농축수산물 관할 부처인 농촌개발부, 공공보건 관할 부처인 보건부 간 업무가 중복되어 있어 통관시 검역 지연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OCC의 활동은 주로 품질 및 적합성 관련 업무에 집중되고 있고, 농촌개발부는 동물 및 식물 검역에 관한 권한이 있다.

OCC Matadi사무소가 수입품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2주 이내 수입 업체에 통보해야 하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식물 위생검사

콩고의 법률에 따르면 모든 식물위생 제품은 수입, 포장, 국내시장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물, 식품제품, 동물 또는 광물을 원천으로 수입하는 식품의 수입에는 농촌개발부에서 발급하는 수입허가가 있어야 한다.

모든 농산물, 종자 등 식물 및 동물과 관련된 식품 등 수입 물품에는 원산지 국가의 식품위생증명서 또는 수출 국가의 원산지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농촌개발부가 시행하는 식물위생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식물 관련 수입물품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물건을 분리, 처리, 거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는 결정을 내린다. 환경부는 유전자 변형 관련 법률안을 검토

하고 있으며, 현재 유전자 변형생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연구 목적의 수입은 허용하고 있다.

콩고는 자국의 식물 보호를 위해 숙주로 기생하는 생물도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케냐산 커피의 DR콩고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우간다 카사바류의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 등 우려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검역인증서(certification de phytosanitaire) 발급수수료는 건당 50FC(콩고프랑)이며, 수입품 검역비는 100톤이하 1킬로당 0.005FC, 100톤이상 1킬로당 0.002FC, 수출품 검역비는 100톤이하 1킬로당 0.001FC, 100톤이상 1킬로당 0.002FC이다 . 수입 식료품 검역비는 100톤이하 1킬로당 0.003FC, 100톤이상 1킬로당 0.002FC이다.

라벨링 및 포장

상품의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규제는 ISO 및 국제포장기구(WPO)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교통부 산하 포장기준국(DNE : Departement de la normalisation des emballages)에서 관할하고 있다.

모든 상품에는 원산지(국내 생산품 또는 수입품 여부), 상품명, 생산자, 유통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명, 그리고 중량이 표시되어야 하며, 특정 상품에 대한 DNE측 요청시 기업은 15일 이내 라벨 및 포장의 적용 규격 준수 여부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기관

DR콩고의 금융기관은 중앙은행(BCC)과 18개 민간은행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은행은 모두 외국계 은행이다. 외국계 은행의 주 업무는 콩고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신

업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DR콩고정부가 외국계 은행의 진출을 자유화하고 있는 만큼 콩고의 경제규모가 커지면 외국계 은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현지 대부분 상업은행들의 활동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단기대출, 외환시장 활동과 수출입 서비스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DR콩고의 민간은행으로는 1937년 벨기에 식민시대에 설립된 BCDC를 비롯하여 BIAC, RAWBANK, TMB 등이 전국에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는 비교적 큰 은행들이다.

콩고내전 이후 유동성 위기는 대부분 종식되2 으나, 민간 개인들은 은행에 저축하려 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금융 감독은 불충분하고, 특히 채권회수 및 담보 문제에 있어서 법적 체계도 미비하다.

현지 상업은행은 은행계좌 개설에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은행은 개인 및 기업에 대해 최소한 US$ 100 이상의 저축을 요구한다. 시티은행과 스탠다드은행은 기업 및 기관만을 대상으로 거래하며 은행계좌 개설을 위해 최소한 US$ 2,500의 저축을 요구한다.

콩고중앙은행은 2012년 기존의 500FC(Congo Franc) 보다 큰 1,000FC, 5,000FC, 10,000FC, 20,000FC 지폐를 신규로 각각 발행했으며, 동전은 현재 유통되지 않고 있다. DR콩고 시장에서 5불 이상 거래시에는 주로 달러가 사용되고 있으며, FC가 시장에서 달러와 함께 유통되고 있으나 가치가 큰 달러화가 우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DR콩고 정부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입법을 개선하고 이행을 위한 역량 배양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현지에서는 지식재산권이 법적으로 보호되나 지식재산권 규정의 이행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현지 법률시스템과 공공행정은 지식재산 규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실정이다.

저작권 및 권리보호 업무는 문화예술부내 저작권 권리관리청(ONADA)에 위임되어 있으며, 현지 경찰도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관여하고 있다. 특허는 소유자에게 잠정적인 개발 독점권을 부여하고, 법률은 발명특허, 수입특허, 개선특허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발명특허의 보유기간은 20년이며, 약품에 관련된 발명특허는 15년간 보호된다.

특허는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특허가 부여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발효되어야 하며, 공업소유권은 산업중소기업부의 특허청이 관장하고 있고, 상표, 특허 및 발명을 보호한다.

지식재산권은 2006년 헌법을 통해 DR콩고에서 완전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있지만, 동 규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해적판 도서와 음원, 그리고 영상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킨샤사의 개인 운영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상영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미국 영화를 상영하는 사례 등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DR콩고로 유입되는 해적판 재화의 배급과 판매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나, DR콩고 정부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과 그 실행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DR콩고 공무원들은 미국 특허상표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이 기획한 다수의 미국 정부 지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했다.

노동법

DR콩고의 노동법은 2002년 국제협약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에 합치하도록 아동 노동 보호, 노동 강요 금지, 모자 보호, 고용에 있어 여성 등 차별 금지, 노조활동 보장 등에 관한 8개 조항의 노동 규정을 개정했다. 노동법은 노동관행의 엄격한 감독을 규정하고 채용, 계약, 여성 및 아동 고용, 일반적인 노동조건 등을 정하고 있다.

엄격한 노동법은 고용주의 해고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동일 노동에 대해 고향, 성, 나이에 상관없이 동일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노동법은 여성이 남편의 허락 없이 집 밖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고용주는 의료 및 사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대기업은 현장에 의료진과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회사의 의무도 증대한다.

고용주는 가족수당과 근무기간에 따라 유급 공휴일 및 연차 휴가를 제공해야 하고, 근로자를 위해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대중교통 수단이 운행되는 곳에서는 교통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부 산하 외국인고용위원회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파업할 권리는 인정되며 노동법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경우 화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법은 모든 기업 및 기관이 노동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의료 지원은 사내 또는 사외 의료 시설 이용도 포함토록 하고 있다.

기업 및 기관에서 고용한 노동자의 가족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고용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고용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자, 직업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나 기업의 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가능하며, 계약이 중지되거나 소송 중에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 혜택 분야는 치과 치료, 내·외과 치료 및 수술, 약값, 입원비, 병원 통원 교통비, 안경, 의족 등이며,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의료기구도 가능하고, 의료기구의 혜택은 보건부가 정하는 금액에 준하여 받을 수 있다.

모든 노동계약은 고용주나 근로자의 제안으로 해지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노동조합 가입 또는 미가입, 근무시간 이후 또는 고용주의 승인 하에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참여 활동
- 근로자 대표 임무를 청원하거나 수행
- 입법조항 위반을 사유로 고용주를 고소, 소송 참여 또는 관할 행정기관 청원
- 인종, 피부색, 성별, 혼인상태, 가족 부양책임, 임신, 출산, 종교, 정치적 견해, 조상의 국적, 사회 계층, 종족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무한정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근로자는 복직 권리가 있으며,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법이 정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은 근로자가 받은 최종보수의 36개월 치를 상회할 수 없다.

고용주가 해지 예고를 하는 경우 예고 기간은 통지일 익일부터 14일 이하가 될 수 없고, 근속연수당 7일씩 증가된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6개월까지 수습계약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최대한 2년간 임시계약이 가능하나 2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영구계약으로 인정된다.

DR콩고 진출 장벽

열악한 기초인프라 및 높은 물가

지난 수십 년에 걸친 내전, 정부 기관의 무관심, 정비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도로, 전력, 상수도 등 사회 기초 인프라가 열악하여 물자 운송비, 사무실 유지비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수도 킨샤사 및 루붐바시를 중심으로 주택 및 생필품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물가가 매우 높다.

불확실한 법집행

세계은행에 따르면 DR콩고는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계약의 의무를 강제해야 하는 사법부의 무능과 사법 절차를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높은 비용에 따른 것이다.

카탕가주내 외국계 광산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법적 비용으로 연 평균 약 500만 달러가 지출되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약 50만 달러, 캐나다의 경우 약 20만 달러 등 타 국가보다 훨씬 높다.

아울러, DR콩고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은 기업 당국의 무원칙적인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반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이와 같은 DR콩고 당국의 행태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

언어 장벽

DR콩고의 낮은 교육 수준으로 공무원 또는 기업인 사이에서 영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고 현실적으로 불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비불어권 투자자 입장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특히 불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지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현지인들은 불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어를 사용하는 인구의 경우에도 자국인간 대화에서는 링갈라어를 비롯한 토착어를 사용하거나 불어와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들에게 언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필요한 의사결정 구조 및 만성적 부패

장기간에 걸친 독재와 유혈 분쟁으로 권력에 대한 불신과 공포, 열악한 통신환경으로 인한 정보공유 부재 등 사유로 DR콩고 사회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생계형 부정 및 권력형 부패도 만연해 있다.

정부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역할이 불분명한 공무원 또는 중개인으로부터

크고 작은 뇌물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인 만큼, 투자자들은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취약한 행정능력 및 안전상의 리스크

수십 년간 독재와 민간에 대한 강제 자산 수탈로 인해 정부의 행정 능력은 매우 취약하며, 심각한 정보 부재로 인해 관할 관청의 담당 공무원조차 특정 사안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수도 킨샤사 또는 루붐바시와 같은 주요 도시 외의 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상 파악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치안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혁정책 추진

DR콩고 정부는 사법제도 등 제반 시스템 낙후가 기업의 발전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13년초 OHADA(아프리카 비즈니스법률 조화기구, Organization for the Harmonization of Business Law in Africa, Organisation pour l'Harmonisation en Afrique du Droit des Affaires)에 가입했다.

OHADA 가입이후 DR콩고는 여러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행정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투명화와 함께 행정기관 및 경찰 등 권력기관의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외에 비현실적으로 높은 법인세 및 관세의 현실화, 투자인프라 구축, 밀수 방지책 도입 등이 있다.

그동안 넓은 국경을 통한 밀수품 교역은 정상적인 대외교역을 방해하고, 국내 경제 질서를 어지럽혀 왔다. 특히 동부 및 북부 국경지대를 통한 광물의 불법거래는 국부의 심각한 유출을 초래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 부문의 대표 성과중 하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3일로 단축한 것이다.

투자 장벽

DR콩고는 여전히 비즈니스에 비우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 미개발된 인프라와 낮은 신용도, 동부지역의 불안정 지속, 지적재산권 보호 부재, 행정 비효율 및 관료주의 병폐, 부패 만연, 법의 비효율적 시행과 규제 등이 민간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현지어로 Guichet Unique라고 불리는 One-Stop Shop 서비스는 2013년 투자청(ANAPI)에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요구하는 절차을 한 기관으로 일원화하여 기업 설립 편의성을 제고했다.

그러나 One-Stop Shop 서비스는 사업 허가 등 행정 결정에 있어 권한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통상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일이 걸리는 단계는 presidential decree를 확보하는 것이다.

투자 진출 유의사항

외국인투자기업은 DR콩고 정부 기관의 회계 감사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 DR콩고에서는 정보의 부재, 익숙하지 않은 생활 여건, 부정, 부패 등으로 인한 사기 피해 등의 가능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충분한 사전 조사 등을 통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징후로 현지 사업 관련 고위층과 연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과거 고위직을 역임한 사람들과 각별한 친분이 있음을 강조하거나, 현지 기업의 광물 등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준다고 제안하는 경우, 현지 사업 진행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처음에는 소액의 금액을 요구하고, 일단 주고 나면 갖가지 명목을 들어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활동비 명목 또는 계약금 명목(구매 금액의 일정 부분)으로 소액송금을 우선 요청하여 급히 송금치 않으면 거래가 무산된다고 현혹하거나, 활동비를 받고 나면 주재국 사정으로 사업이 연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도 있다.

DR콩고에서 자원-인프라 건설 연계사업은 수 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광물 수출도 반드시 허가받은 자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공문서 위조 가능성이 상존하며 사업자등록 등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기업체의 등록 여부 등의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한 점 등도 조심해야 한다.

DR콩고 광업 활동지역은 주로 동부 Katanga주에 집중되어 있어 대부분의 광업회사가 수도 킨샤사에서 비행시간 2시간 이상 멀리 떨어져 있어 광산기업의 실사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DR콩고산 광물 수입과 관련 DR콩고 원산지 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우리나라 기업에 제시하고 대금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DR콩고산 광물의 원산지 증명서 등 서류 위조 여부 판별에 대한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위조 여부는 DR콩고 원산지증명서 발행 기관인 광업부 산하 CEEC(Center for Valuation, Expertise and Certification of Precious and Semi-Precious Mineral Substances, 귀금속 반귀금속 감정증명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쿠웨이트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최근 경제 통상 환경

쿠웨이트는 세계 5위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동의 대표적인 산유국이다. 70년대말까지 걸프만 최북단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걸프지역의 중개무역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80년대 이란과 이라크 전쟁 및 1990년 이라크 침공 이후 UAE, 카타르 등에 지역 경제중심지로서 선도적 위치를 내었고, 2006년 이라크 사담 후세인 사망이후에야 국가개발 및 투자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쿠웨이트는 경제와 산업의 대부분을 원유 생산 및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쿠웨이트 경제는 국제 원유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한 전형적인 석유의존형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2014년 시작된 저유가 현상 이전, 쿠웨이트는 GDP의 50~60%, 정부재정수입의 95%가량을 석유수입에 의존하였으나, 산업다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2017/18 회계연도 원유 수출에 따른 국가 재정 비율은 89%로 나타났다. 고유가 기간동안 15년간 연속으로 재정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약 5,240억 달러 규모(2017년 4월 기준)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임금, 각종 정부보조금 등 경상지출 증가에 따라 2017/18회계연도(2017년 4월 1일~2018년 3월 31일)에 48억KD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2014년 6월경 110 달러 대를 상회하던 유가는 미국의 셰일오일 혁명

에 따른 공급 과잉, 중국 등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정체에 따라 유가가 급락하여 2015년 12월 30달러 대까지 하락했으나, 2016년 11월 OPEC 국가들의 일일 원유 생산량 감산합의에 따라 국제원유시장이 균형을 회복하였으며, 2018년 10월 이란 제재 등과 같은 이슈로 유가가 80달러 대를 상회함에 따라 국제원유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쿠웨이트는 GCC 국가 중에서 재정균형유가(Break-even Oil Price)가 약 50달러 대로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석유수입이 재정지출의 원천이 되는 석유의존형 경제구조를 보유한 쿠웨이트로서는 저유가 여파로 2015/16 회계연도, 2016/2017회계연도에도 재정적자를 89억KD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OPEC 국가들의 일일 석유생산량 감산 합의 이후 국제원유시장이 균형을 회복함에 따라 예상보다 양호한 재정적자를 기록하였다. 최근 외부적인 요인으로 국제원유가 인상폭이 커지며 2017/18회계연도의 적자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한 4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쿠웨이트에게 이러한 저유가 사태는 재정적 위기를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지나치게 석유 의존적이고 정부주도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기도 한 것이기도 하다. 쿠웨이트 정부는 유가하락 및 저유가 지속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에 대응하여 최근 전기세와 수도세 인상 법안을 통과시켰고, 유류보조금을 삭감하여 쿠웨이트 내 석유가격을 인상하였다. 또한 각종 정부보조금 축소, 외국인에 대한 공공분야 의료비 인상, 국내 및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 2020년 부가가치세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쿠웨이트 제1호 민자사업(노스 알주르 1단계 민자담수발전사업)의 성공을 토대로 민간역량 활용, 민간부문 활성화 등을 위하여 발전, 담수, 철도, 메트로, 폐기물처리, 폐수처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책사업을 민간투자사업(PPP Project: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으로 추진중에 있다.

쿠웨이트 정부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고 걸프지역의 금융, 물류, 무역 중심지로서 지도적 위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비전 Kuwait Vision 2035'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4개년 개발계획(2010~2014)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2015년 2월에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망라한 1,160억 달러 규모

의 5개년 국가개발계획(2015년 4월 ~2020년 3월)을 수립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2017년 1월 쿠웨이트 최고계획개발위원회는 국가개발 비전인 'New Kuwait 2035'를 발표하며 계획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재정적자 폭이 큰 여타 GCC국가와는 달리 기존 투자계획을 취소하거나 지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실제로 2018년 개최된 쿠웨이트 투자포럼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New Kuwait 2035 계획 중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6건(쿠웨이트 국제공항 제 4터미널,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 연육교, 항공항법 시스템 개발, Shataya 신재생 에너지 1단계, Clean Fuel Project 마지막 단계,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회사 설립)이 2019년 1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발표하였다.

한편 쿠웨이트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2013년 6월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유치촉진청(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을 설립하고, One-stop shop 서비스 및 외국인 100%지분 회사 설립허용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아울러 쿠웨이트 북부 부비얀 섬의 무바라크 항만 및 실크시티(Silk City)를 개발하여 이를 북걸프지역의 금융, 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쿠웨이트시티와 북측 수비야 곶을 잇는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 건설 등 인프라 사업도 추진 중이다.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은 쿠웨이트시티와 수비야 곶을 잇는 메인링크와 쿠웨이트시티와 도하항만을 잇는 도하링크로 구성되어 있고, 메인링크와 도하링크의 교량연장을 합할 경우 48㎞에 달해 세계 최장교량이다. 자베르 해상교량은 2019년 2월경 완공예정이며, 자베르 해상교량이 완공단계에 가까워질수록 북측 개발도 점차 가속화될 전망이다.

쿠웨이트 정부는 자국 남성이 결혼을 할 경우, 1가구 1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주택 공급 전까지는 매월 500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신청 대기자는 약 11만 명이 누적되어 있는데 연간 주택공급은 평균 1,800호에 불과해 주택공급 부족문제가 쿠웨이트 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쿠웨이트 정부는 이러한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개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웨이트 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개발 경험에 커다란 신뢰를 보이며 우리나라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해 왔다. 그 결과 2016년 5월 쿠웨이트 총리의 방한을 통해 양국 정부간 "신도시 개발협력 MOU"가 체결되었고 이어서 2017년 4월 3일 쿠웨이트 현지에서 우리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쿠웨이트 주거복지청(PAHW)간에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 건설을 위한 마스터 플랜(Master Plan)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본격적인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압둘라 신도시는 쿠웨이트 최초로 환경친화적인 스마트 시티로 건설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지역은 쿠웨이트 시티에서 서쪽으로 불과 3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쿠웨이트 정부가 추진 중인 신도시 사업 중 입지가 가장 뛰어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체 면적이 64.5㎢로 분당 신도시의 3배 정도에 해당되는 압둘라 신도시에는 최소 2만5천 내지 최대 4만 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압둘라 신도시 마스터 플랜(Master Plan) 수립과 사업 타당성 분석(Feasibility Study)을 통해 2단계 투자 사업이 결정된다면, 양국 관계기관과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하여 2019년도에는 본격적인 신도시 건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무역동향

UN Trade Map 자료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2017년도 수출액은 약 548억 달러, 수입액은 335억 달러로, 약 21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들어 유가가 상승하며 수출액이 증가하며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하였다. 2017년에 비해 2018년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며 무역수지흑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웨이트의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출	115,858	103,361	55,315	46,255	54,806
수입	25,662	27,382	27,335	30,821	33,589
교역규모	141,520	130,743	82,650	77,076	88,395
수지	90,196	75,978	27,980	15,434	21,217

출처: EIU Country Report(2018.10월), UN Trade mao(2018년 10월 기준)

2017년 기준 쿠웨이트의 수출대상국 중 우리나라는 총수출액 대비 17.6%를 차지하여 수출대상국 중 1위를 차지하였고, 중국이 2위(16.4%), 인도(11.2%), 일본(10.9%), 대만(6.6%), 싱가폴(5.9%), 미국(5.6%) 순이다. 2017년도 쿠웨이트의 수입 대상국 중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액이 쿠웨이트의 총수입액 대비 4.6%로 수입대상국 중 8위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이 1위(16.4%), 미국(10.3%), UAE(8.7%), 독일(5.9%), 사우디아라비아(5.5%), 인도(5.1%) 순이다.

2017년 쿠웨이트의 10대 수입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금액	수입시장 점유율(%)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전체	33.589	100	4.4
1	중국	5.499	16.4	9.3
2	미국	3.443	10.3	5.0
3	아랍에미레이트	2.929	8.7	8.8
4	독일	1,992	5.9	3.2
5	사우디아라비아	1,836	5.5	5.5
6	인도	1,758	5.2	6.7
7	일본	1,720	5.1	-4.31
8	한국	1,554	4.6	7.1
9	이탈리아	1,516	4.5	4.0
10	영국	907	2.7	2.2

출처: UN Trademap(2017)

우리나라와 쿠웨이트의 교역규모는 2013년 200억 달러에 육박하여 2000년 대비 7배가량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5년부터 본격화된 유가하락으로 교역규모가 큰폭으로 감소하며 2016년 약 87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2017년 들어 유가가 인상되며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24% 증가하여 약 10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7년 수출은 11.6억 달러, 수입은 96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2018년에는 유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교역규모가 전년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품목은 공기조절기(열교환기), 승용차, 철강재용기, 화학기계, 주단강, 전선, 배전, 제어기, 밸브 등 플랜트기자재 위주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나프타, LPG, 암모니아수 등이다. 수출액은 VLCC 등 석유제품운반선과 프로젝트 기자재 수출여부에 따라, 수입액은 유가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쿠웨이트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	744	744	1,048	1,432	1,584	1,132	1,975	925	1,405	1,162
수입	12,129	7,992	10,850	16,959	18,297	18,725	16,892	8,973	7,260	9,606
합계	12,873	8,736	11,898	18,391	19,881	19,857	18,867	9,898	8,665	10,768

자료: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對쿠웨이트 원유수입동향

구 분	연간 총수입물량 (천배럴)	일평균수입량 (배럴/일)	수입금액 (천달러)	평균수입단가 (달러)
2017년	160,368	439천	8,353,302	52.09
2016년	159,273	436천	6,365,006	39.96
2015년	141,856	389천	7,188,853	50.68
2014년	136,546	374천	13,489,063	98.79
2013년	139,853	383천	15,051,273	107.67
2012년	137,647	377천	15,351,807	112
2011년	117,370	322천	12,549,763	107
2010년	103,079	282천	8,048,563	78.08
2009년	100,090	274천	6,220,261	62.15
2008년	104,593	287천	9,761,625	93.33

구 분	연간 총수입물량 (천배럴)	일평균수입량 (배럴/일)	수입금액 (천달러)	평균수입단가 (달러)
2007년	94,031	258천	6,383,996	67.89
2006년	92,620	254천	5,598,494	60.45
2005년	79,679	218천	3,905,338	49.01
2004년	64,659	177천	2,192,668	33.91

* 자료 :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 평균수입단가 CIF 금액

수입정책상의 장벽

쿠웨이트로의 상품 수출은, 정부 승인이 필요 없는 일반 공산품의 경우 수입상을 통한 직접 수출이 가능한 반면, 의료장비 등은 에이전트를 통해 수입승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쿠웨이트에서의 수입면허는 쿠웨이트 기업 및 개인에게 발급되며 합작투자기업을 제외한 외국회사와 외국인에게는 발급되지 않는다.

쿠웨이트 시장수요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정부 조달시장에는 쿠웨이트 기업과 개인을 에이전트로 내세워야만 참여가 가능하며, Oil & Gas 분야 프로젝트 등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를 통한 벤더등록을 선행하거나 또는 PQ에 통과하여야 한다.

관세 장벽

대부분 수입상품은 CIF 가격(cost, insurance, freight 포함 가격) 기준 5%의 단일 관세율이 부과되나, GCC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무관세로 통관되고 있다.

농산물 및 기본생필품 등 41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반면, 담배에 대해서는 100%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쿠웨이트 업체가 생산하는 공산품과 경쟁이 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자국 상품의 보호를 위해 CIF 가격 기준 25%까지의 보호관세가 부과되고, 쿠웨이트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없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선적 서류 도착 후 통관에는 약 2주가 소요된다. 컨테이너 등의 수입품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한 물품검사를 하며, 미국 및 유럽 통관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심사한다. 물품을 위장하였거나 서류를 위조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구류형과 벌과금을 동시에 적용한다.

세관은 화물손상, 배달지연,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쿠웨이트 현지의 수입업체는 통관 시 수입허가증(Import License) 및 제반 통관 필수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Full Container Load(FCL)과 Less Than Container Load(LCL)을 포함한 쿠웨이트의 모든 수입품은 팔렛트화(Palletized) 되어야 하며, 이를 미 준수한 화물은 통관 중지 및 검사를 받으며 80KD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규정상의 장벽

쿠웨이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업 송장, 선하 증권이나 항공 화물 수령증의 복사본 3장, 원산지 증명서 등 3가지 법적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의 부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지만 중동국가들은 원산지 증명에 대한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즉 제3국의 자재를 수입할 경우 해당 Invoice 및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 당사국에 있는 쿠웨이트 상공회의소나 쿠웨이트대사관에서의 공증을 받아 송부하여야만 현지에서 통관이 가능하다.(상공회의소 등의 실사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당사국에 관련 기관이 없을 경우는 GCC 국가의 대사관 또는 기타 아랍 국가 대사관의 공증을 요구)

송장과 기타 서류들은 상품이 쿠웨이트에 도착하기 전까지 반드시 쿠웨이트 수입업체에 송부되어야 하며, 서류가 미리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상품의 통관이 불가하다.

쿠웨이트의 개인 회사들은 보통 쿠웨이트의 시중 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발급받아 대금을 지불하나, 국방부(Ministry of Defense)를 제외한 쿠웨이트의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은 쿠웨이트 중앙은행(The Central Bank of Kuwait)을 통해 신용장을 발급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수출 관련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상품에 대한 자세한 명세서
- 총가격과 단위량
- 실중량과 총중량(미터법 사용)
- 포장 방식
-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주소와 성명
- 적하 목록에 표시된 상품의 상표와 개수
- 운송수단, 선적인의 항구와 원산국
- 정식인가기관에 의한 송장의 증명

수입 규제

수입 쿼터제 등에 의한 공식적인 별도 규제는 없다. 다만, 총포류, 약품 등의 반입 시에는 특별한 수입허가증이 필요하고 특수 화학물품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아랍국가 금지규정(Arab Boycott Rules)을 적용,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반입이 금지되며, 이슬람 교리에 따라 돼지고기 제품 및 주류, 미풍양속을 해치는 품목의 반입이 금지된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쿠웨이트는 미국, 유럽의 품질검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식료품의 경우 내용물, 제조일자 및 폐기일자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초 수입되는 식료품의 경우 보건당국 실험실의 사전검사를 요구한다.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쿠웨이트는 표준제도와 관련 모든 수입 제품은 KS(Kuwait Standard) 및 ICCP(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에 부합되어야 한다. 특히 쿠웨이트는 아래 제품군에 대하여서는 쿠웨이트 적합성 인증 프로그램(KUCAS: Kuwait Conformity Assurance Scheme)을 적용하고 있다.

- 전자장난감(1개), 가전기기 및 가스기기(43개), 자동차(3개), 화학제품(2개), 기타 제품(2개)
- KUCAS 우리나라 인증승인검사 기관 :
  Intertek 전화 02-775-5255, 팩스 02-775-5266,
  전자우편 info.seoul@intertek.com

아울러 가전제품 및 전력 기자재는 TER(Technical Evaluation Report), TIR(Technical Inspection Report) 인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KUCAS 인증 외에도, 쿠웨이트는 GSO(걸프 표준화 기구)에서 발급하는 G-Mark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인증을 보유한 제품들은 KUCAS 인증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해당 인증은 저전압 전기기기 및 장난감에 적용되고 있다.

- 한국 내 G-Mark 인증승인검사 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환경관련 규제

쿠웨이트 내 환경관련 주요 규제들은 다음과 같다.

○ 석면(Asbestos) 제품 생산 및 수입 금지

- 석면원료, 석면 파이프, 석면 시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수입 전면 금지

○ Nylon Fishing Net 사용 전면 금지

- 쿠웨이트 농수산청은 해양 환경 및 자원 보호를 위해 쿠웨이트 영해에서 트롤선, 어선 등이 Nylon Fishing Net을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Natural Fiber Fishing Net(Cotton Fishing Net) 사용을 의무화

○ 중고 중장비 수입규제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트럭, 버스, 트랙터, 포크리프트 등 중형 중고 중장비 수입 시 생산된 지 5년 이상 된 차량은 수입 금지

품목별 장벽

○ 담배 생산 금지 및 수입 엄격 제한

- 담배 생산을 금지하고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연구 목적이 아닐 경우 쿠웨이트 내에서의 잎담배(Tobacco) 및 제조담배(Cigarettes)의 생산과 담배 종자 및 묘목의 수입 금지
- 제조담배, 잎담배, 담배 종이, 기타 담배 제조 관련 원·부자재는 보건부가 명시한 조건 충족 필요
- 21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금지 및 담배 판촉을 위한 광고나 출판물 인쇄도 금지

○ 인공감미료(Cyclamate) 사용 식품 수입금지

- 쿠웨이트 상공부는 Cyclamate 및 파생품을 사용한 식품의 수입 전면 금지

○ 플랜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 및 부품

- 사전 벤더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정부조달 관련 장벽편 참조)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국내산 의무조달 비율 (국산품 특혜 제도)

입찰법에는 국내산이 수입물품과 품질이 동일하고 국내산 가격이 수입품에 비해 높지만 15% 이내 일 경우, 해당 국내산 물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산은 동일 현지 제조 물품에 비해 가격이 15% 이상 저렴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벤더 등록제도 운영

정부조달 등 공공부문에 참여코자 하는 외국업체들은 쿠웨이트 발주처에 벤더로서 사전 등록이 필수적이다.

다만, KOC(Kuwait Oil Company), KNPC(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등 국영기업 발주처는 벤더등록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VEC: Vendor Evaluation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으나, MEW(Ministry of Electricity & Water) 등 정부 부처는 별도의 전담부서 없이 해당분야 차관보(Asst. Under-Secretary)가 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록분야는 국방·보안·안전·위생·식품·화학 등이며, 등록대상 업체는 해당품목 제조업체에 국한하고 있다(단순 무역업체 등록 불가).

벤더등록 희망업체는 쿠웨이트 내 적격업체를 발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후 동 에이전트를 통해 해당 발주처에 벤더로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주처에 따라서는 동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신청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나 KOC는 1년에 2회(1월, 6월)로 국한하고 있으며, 기간은 통상 6개월~1년이 소요된다.

최근 쿠웨이트는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150억 달러 규모의 기존 정유공장 개선사업(Clean Fuel Project) 및 150억 달러 규모의 노스 알주르 4차 정유공장(New Refinery Project) 신설에 대한 프로젝트 발주 및 계약체결을 완료하는 등 Oil & Gas 플랜트 프로젝트, 민자담수발전사업, GCC연결철도, 메트로 등 대형 국책프로젝트가 향후 진행될 예정이므로 프로젝트의 추진과 연계한 사전 벤더등록이 필요하다.

정부 발주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외국기업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으나 외국기업이 석유개발 및 생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쿠웨이트化(Kuwaitization)정책에 따라 쿠웨이트 업체의 공사가 가능한 주택 및 도로건설 공사 등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쿠웨이트 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이 이뤄지기도 한다.

조달관련 법규 개요 및 특징

쿠웨이트는 중앙입찰위원회(CAPT; Central Agency For Public Tenders)라는 특별한 기관을 통해 정부부처 및 국영기업 등에 소요되는 물품 및 용역을 조달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일정금액(KD 5,000(약 16,300달러 상당, 1KD=3.26달러 기준))을 상회하는 모든 입찰 건은 거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입찰위원회(CAPT; Central Agency For Public Tenders)에서 관장하고 있다(국방부, 보안대를 포함한 내무부 등은 CAPT관할에서 제외됨). 낙찰방법은 PQ 심사를 거쳐 Short-list에 포함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회사는 입찰 참여를 위해 반드시 쿠웨이트 국적의 에이전트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물품과 용역의 제반 입찰 절차는 동일하나 입찰 참가자격 부여 및 컨설팅 용역 입찰 소관 부서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CAPT는 단독입찰의 경우 CAPT 규정상 동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하게 되어 있으며, 긴급한 경우 단독입찰을 내각의 결정을 거쳐 승인할 수 있다.

KNPC, KOC 등 석유화학 시설의 경우, 고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품 공급자는 사전에 심사를 거쳐 벤더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CAPT를 통해 소관 정부 부처 혹은 공공기관의 사전자격심사(PQ)를 통과해야 한다.

컨설팅 용역의 경우 CAPT 관할에서 벗어나 기획부 산하의 컨설턴트 선정위원회를 통해 입찰이 실시되며, 사전에 등록된 컨설턴트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사업부 및 주택청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은 용역업체가 건설전문지인 ENR지에 사전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보건부 입찰의 경우에도 의료장비, 의약품 등에 대한 사전 심사 및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 보증금은 2.5~5%, 이행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서 건설 공사, 물품, 일반 용역 시에도 적용된다(반드시 쿠웨이트 현지에 진출한 은행 보증서만 효력 있음).

건설업 허가 및 등록상 제약

건설업 허가는 쿠웨이트 업체만 받을 수 있는 바, 외국 건설업체는 쿠웨이트 파트너, 에이전트, 스폰서를 통해서 쿠웨이트 당국에 등록이 가능하다.

현지인(기업) Partner 또는 Agent, Sponsor 등을 통해 현지 당국에 등록을 필한 외국 건설업체만이 국제입찰 통과 후 쿠웨이트에서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부여된다. 현지 건설업체는 CTC에 업종별로 1~4등급까지 업체별 등록이 되어 있다.

매 건설공사 입찰 시마다 사전 자격심사(PQ: pre-qualificaion)를 통과하고 등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소개서, 재무보고서, 건설경력 특히 중동지역 건설참여 경력서류 등 해당 입찰 참여 적격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외국 건설업체는 국제입찰에 부쳐진 사업만 수행 가능하며, 응찰 시 5~10%의 입찰보증서(bid bond), 계약체결 후 10%의 사업수행보증서(performance bonds)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완료 후 유보금의 지불 불이행 또는 지연사례가 종종 있으며, 공공발주 사업 관련, 쿠웨이트 정부는 자재 수송 시 쿠웨이트등록 선박 또는 항공기 이용과 건설인력의 쿠웨이트 항공(KAC) 또는 해당국가 국적기 이용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발주 공사 현지 재투자제도 (오프셋 프로그램)

쿠웨이트는 정부 발주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계약금액 중 역외부문(offshore portion)의 최대 35%까지 쿠웨이트에 재투자할 것을 의무화하는 오프셋(offset)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으며, 2014년 6월부터 운영이 중지되었으나, 2015년 8월 24일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No.1212 of 2015에 따라 오프셋 프로그램은 폐지되었다.

동 프로그램은 정부가 발주하는 1천만 쿠웨이트 디나르(약 3천5백만 달러) 이상의 모든 공사에 적용되나, 방산계약의 경우에는 300만 쿠웨이트 디나르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는데, 국영석유회사(KOC) 및 국영정유회사(KNPC) 등이 발주하는 Oil & Gas 관련 플랜트 공사는 동 프로그램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동 프로그램은 지난 2005년 재 시행된 이래 주로 쿠웨이트 수전력부(Ministry of Electricity & Water)가 발주한 발전담수공장, 송배전·변전소 프로젝트에 적용되어 왔으나, 2012년부터는 병원, 대학교 건물, 공항시설, 도로, 교량 등에까지 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동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프로젝트 수행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찰 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계약금액 대비 약 5~10%의 비용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었다.

이와 같은 오프셋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여러 외국의 반대와 실효성 논란으로 인해 2014년 7월 20일 쿠웨이트 정부는 오프셋 제도의 주관부처를 기존 재무부 및 NOC(National Offset Company)에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3년말 설립된 상공부 산하 외국인투자촉진청(KDIPA: 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으로 이관하고, 향후 오프셋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새롭게 적용하기로 하고, 향

후 KDIPA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될 때까지 적용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증 등 요구

외국 업체가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경우, 발주처는 입찰 보증(bid bond)으로 5~10%(계약금액 대비, 이하 같다)를 시작으로 이행 보증(performance bond) 10% 및 하자 보증(retention bond) 10% 정도를 발주처가 지정한 은행의 보증서와 함께 수출입은행 등의 보증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등 복보증 요구가 일반화되어 있다. 현지 보증 수수료는 대략 1~2%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쿠웨이트는 WTO회원국으로서 WIPO(World International Property)에 1998년 4월 가입하였으나, 산업소유권(특허 및 상표)보호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Patent and Trademark)과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Copyright)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1999년 5월 국왕칙령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법안이 제정/발효되어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등의 보호되고 있다. 현재 특허권, 상표권 등은 대부분 10년 단위로 등록하고 있다. 저작권자는 TRIPs 협정에 따라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의 보호기간을 향유한다.

서비스 장벽

건설분야

건설공사는 현지 Agent를 통하여야만 영업(P/Q, 입찰, 시공 등)이 가능하

며, 공사에 필요한 인력수입·송출 및 장비·자재 수출입등도 모두 Agent를 통하여야 한다.

주요 건설자재의 쿠웨이트 제조업체의 독(과)점이 허용된다. 현지(혹은 GCC 국가) 생산가능 제품의 가격이 수입가격보다 20%(혹은 10%)보다 비쌀 경우에만 외국제품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 인력의 자국인력 대체, 민간부문 자국인력 고용촉진을 위해 업종별, 규모별로 각 회사의 쿠웨이트 자국인 인력 고용 최소비율을 정하여 위반회사에 대하여는 입찰참여제한, 벌금부과 및 외국인력 채용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2003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아래 사항은 현지인(기업)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GCC 국적인(기업)에게만 허용된다.

- 정부조달 계약 참여(단, 국제입찰 계약은 제외)
- 부동산소유(단, 제한적이나마 외국인에게 어떤 특정사업수행과 관련한 예외적 경우가 있음)
- 쿠웨이트에 등록된 회사로서 자국인 또는 GCC 국가의 국민이 100% 소유한 회사에 대한 소득세(income tax) 면제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2000년부터 쿠웨이트는 은행을 제외한 쿠웨이트 주식시장 상장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외국인간접투자법을 시행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외국인이 50%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쿠웨이트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2004년에 철폐되어 외국인도 쿠웨이트 은행의 10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쿠웨이트는 외국인직접투자법을 제정하여 석유산업을 제외한 인프라 분야에 외국인의 100% 지분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쿠웨이트 정부는 외국인의 투자 및 기업 활동에 대해 승인 또는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천연자원인 석유 생산(특히 원유 개발)에 외국기업의 독자적인 참여는 불허하고 있다.

2013년 쿠웨이트 정부는 6월 16일 자 쿠웨이트 관보(Kuwait Al-Youm, Issue No.1136)를 통해 기존의 2001년 8번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는 新 외국인투자법(Law No.(116) of 2013)을 공표하고, 기존의 Kuwait Foreign Investment Bureau를 폐지하고, 외국인투자촉진청(KDIPA: 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을 설립하는 한편,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했다. KDIPA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대상 기준에 따르면 아래 10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센티브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1) 기술, 선진경영, 마케팅 기법의 이전

2) 제품 및 서비스의 금액 및 질

3) 쿠웨이트 및 걸프지역에 산업다각화 기여 정도

4) 국가적 수출 증가 기여도

5) 일자리 창출, 자국민 교육 훈련 정도

6) 투자대상지역의 개발 기여도

7) 환경친화 여부

8) 투자프로젝트가 해당 분야 외에 미치는 서비스 제공 정도

9) 쿠웨이트 내 생산제품 구매 정도

10) 쿠웨이트 내 기술,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구매 정도

지사(Branches)설립의 제한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하고는 외국(법)인의 등록된 지사 사무소(registered branch offices) 설립을 불허하며 Commercial Agent나 Service Agent를 통해서만 쿠웨이트 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에이전트나 스폰서십 계약은 상공부에 등록해야 하며 상공부는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증은 신청서류가 아랍어로 되어 있고, 완성된 시기로부터 2주 내에 발급되며 에이전트 명단은 관보에 게재된다. 에이전트와 고객 상호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계약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에이전트에 대한 보수지불은 상호간의 합의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된다.

노동법규

2010년 2월 민간부문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민간부문 노동법(Law No.2010-6호)이 개정 공포되었다. 동 민간부문 노동법은 고용조건, 노동시간, 휴가, 고용해지, 근로 장소의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기존 노동법에 비해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규 노동법에 의한 일반적인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 및 조건: 하루 8시간, 주당 48시간 이상을 근로할 수 없으며,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주당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금요일은 휴무일이며 한 시간 이상의 휴식 없이 연속 5시간 이상을 근무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나, 휴식시간은 작업시간 계산시 포함하지 않음
- 초과근무 : 초과 근무는 하루 두 시간, 1년 총 180시간 또는 주당 3일, 1년 총 90일을 넘을 수 없음.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본 보수에 25%를 추가 지급하여야 함. 6근무일 후 24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유급 휴일을 보장 받으며, 고용주가 유급 휴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최소 50%이상의 초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대체 휴일을 제공하여야 함
- 보너스: 고용주들은 보너스를 지불할 의무가 없으나 일부 회사들은 1개월분의 연말 보너스를 지급

- 휴가: 총 30일의 유급휴가와 15일의 병가를 보장받음. 그러나, 최초 9개월을 근무하지 않고서는 첫해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며, 정기휴가를 나눠서 활용할 수 있음. 동일 고용주를 위하여 2년 연속 근무한 무슬림 근로자는 21일간의 Al-Haji(pilgrimage) 수행을 위한 유급휴가를 보장 받음
- 고용해지: 적절한 통고가 이루어질 경우 합당한 사유로 해고 가능. 적정한 통고기간은 월급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으로 강화되었으며, 해당 근로자 주위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최소 1개월 전에 통보되어야 함. 고용해지를 통보받은 근로자는 통보일로부터 최소 3개월 동안 주당 1일 또는 8시간의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한 유급결근이 가능

또한, 근로자는 다음의 상황에서 퇴직수당을 지급받는다.

- 고용주가 계약을 종료한 경우
- 계약의 갱신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여성근로자가 결혼일로부터 1년 안에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퇴직 수당은 시급, 주급 노동자의 경우, 첫 5년간은 각각 10일간의 보수액, 이후 매년 15일간의 보수액을 산정하며, 총 퇴직수당은 1년 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음. 월급 노동자의 경우, 첫 5년간은 각각 15일간의 보수액, 이후 매년 1개월간의 보수액을 산정하며, 총 퇴직 수당은 1년 반의 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노조관계

헌법상 노조활동이 보장되어 있으며 1967년에 최초의 근로자노조가 결성된 바 있다. 쿠웨이트 내 최대 노조는 "쿠웨이트 근로자 총연맹(General Federation of Kuwaiti Workers)"이며 대부분 정부부문과 석유산업 부문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가입 회원수는 12,000명 정도이다.

2011년 들어 정부부문을 중심으로 한 파업이 확산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주로 인금인상 및 복지혜택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장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쿠웨이트 고용주는 월 보수의 11%, 피고용인으로서 월 보수 2,250쿠웨이트 디나르(7,325달러 상당) 이하 보수를 받는 쿠웨이트 자국인에 대하여만 월 보수의 7%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가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치료비, 약값 및 교통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부상당한 근로자는 치료기간 중에도 통상 임금을 받으며 치료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완치 또는 사망 시까지 통상 임금의 50%를 받는다. 요양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보건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보건부의 중재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사회노동부는 직업병의 종류를 공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직업병에 걸렸거나 그러한 징후가 있을 경우 산업재해의 경우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고용주가 변경된 이후 직업병이 발생할 경우, 전고용주도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금융상의 제한

쿠웨이트 금융당국의 외환통제는 거의 없으며, 지분이나 주식매각대금, 대여자본(loan capital), 이자, 배당, 자유무역지대에 설립된 지사의 이윤(branch profits), 로얄티, 경영 및 기술서비스료, 개인예금 등은 제한 없이 자유로이 환전, 국외로 송금이 가능하다. 과실 송금의 경우에도 아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은 연간 영업이윤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보자금으로 적립 필요(납입자본금의 50%에 이를 때까지)
- 주식회사인 경우, 매년 연간 영업이윤의 5%를 쿠웨이트 과학진흥재단(Kuwait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s)에 기부

- 순자산이 50만 쿠웨이트 디나르(165만달러상당)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 상기 기부금 외에 매년 연간 순익의 2.5%를 자국인 고용촉진기금(National Labour Force Fund)에 기부
- 사회보장기금 출연

세제상의 제한

쿠웨이트인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회사(기업)와 GCC 국가 국민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쿠웨이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회사(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만 기업소득세가 부과된다.

외국인(기업)의 경우, 쿠웨이트에서의 기업활동 결과 취득한 소득(상기 적립금, 기부금, 출연금을 공제한 기업이윤 중 외국투자가에게 해당되는 배당금, 이자, Rent, Royalty등)에 대해 일정세율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외국기업 소득세 이외에 일체의 국내 조세는 없으며 동 세금은 외국기업이 쿠웨이트에서 상업활동 결과 취득한 소득(배당이윤, 이자, Rent, Royalty 등) 금액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적용, 징수하고 있다. 소득세율은 당초 55%까지였으나, 2008년 2월 9일 쿠웨이트 국회는 15% 단일 세율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2009년부터는 우리업체들의 기업소득세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있다. 한편, 쿠웨이트 정부는 아래에서 예시한 것처럼 외국 법인의 장부상 비용을 부당하게 부인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관행이다(인정과세 시도).

○ 해외 수입 기자재: 수입 기자재 비용의 일정 비율까지만 인정(손실은 불인정)

- 관계사 구매: 관련 공사 수입의 90~93.5% 인정
- 본사 제작: 관련 공사 수입의 85~90% 인정
- 제3자 구매: 관련 공사 수입의 93.5~96.5% 인정

○ 국외 발생 설계비

- 본사 발생: 관련 공사 수입의 75~80% 인정
- 관계사: 80~85% 인정
- 제3자 외부: 85~90% 인정

우리 건설업체가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해외 기자재 구입, 본사에서의 엔지니어링 설계 등 해외발생(offshore) 비용에 대해 쿠웨이트 세무당국이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당과세로 인한 세금부담 및 행정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 또한, 우리 업체가 건설공사 입찰시 향후 세금 부담액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므로 입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업체의 플랜트 공사 시 해외발생 비용은 전체 비용의 50~70% 정도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은 이중과세방지협약 의정서를 체결하여 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발생(offshore) 비용에 대한 부당과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그간 한-쿠웨이트 이중과세방지 협정 의정서 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7년 10월 2일 양국이 동 개정안에 대해 정식 서명하였고, 양국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2010년 12월 27일 동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로써 2011년 1월 1일 부터는 동 협정에 따라 이중과세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있는 것은 물론, 세금관련 리스크도 감소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보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과세방지 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쿠웨이트 현지 바이어는 한국 수출업체와의 계약에서, 이중과세 조약을 근거로 쿠웨이트 내 세금부과의무를 수출업체에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지에서 마케팅 및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한국 제조 수출업체는 이중과세 조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약서 내 세금부과 의무 항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경쟁 정책

에이전트 제도

쿠웨이트 내에서 외국 기업이 물품 공급, 용역, 건설 공사 수주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기업을 에이전트로 두어야 하며, 에이전트 계약 하에 발주처 등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에이전트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많은 커미션을 요구하거나 협력업체 추천 등을 하는 사례가 있으며, 자칫 불성실한 에이전트와 관계가 이루어 질 경우 오히려 수주활동 등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진출 외국기업과 에이전트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쿠웨이트 정부는 2016년 에이전트 법(Law No.13 of 2016, CAL:Commercial Agencies Law)를 개정하였다. 기존 독점 에이전트의 권리를 제한하고, 에이전트 계약관계 내 외국기업에도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며, 외국기업이 다수의 에이전트를 선임하여 마케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골자이다.

에이전트로 인한 분쟁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쿠웨이트 에이전트와 계약시 일정기간의 에이전트 계약기간(예: 3년)이 종료되는 경우 에이전트 관계가 자동폐기되도록 하고, 상호합의하에서만 에이전트 계약이 연장되도록 계약서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프로젝트 수행 시 쿠웨이트인 최소 고용의무

정부 부처 및 국영기업(군, 석유 부문 모두 포함) 프로젝트 수행 시 쿠웨이트 국무회의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 이상의 쿠웨이트 국적자 고용 의무가 있다. 2014년이전에는 의무고용비율이 2%였으나, 2015년부터는 의무고용비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으므로(의무고용비율은 사업종류에 따라 상이함), 사업추진시 해당 프로젝트의 의무고용비율을 확인하고, 의무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은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급하는지 여부를 미리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기타 장벽

운전면허 발급

운전면허 발급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우리 건설사 직원들의 애로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쿠웨이트 교통당국과의 오랜 협의를 거쳐 2006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 상호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이 같은 운전면허 상호인정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양국 부처의 호혜적인 행정명령에 의한 것으로서, 2012년 이후 쿠웨이트에 외국인 수와 자국인 대비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면서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여 상호인정 교환발급이 원활하지 않다. 슈웨이크에 있는 내무부 교통국 본부에서만 교환발급을 하고 있으며, 비자유형이 매니저, 엔지니어인 경우에만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 교환발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운전면허 상호 전환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비용은 약 40~45KD 소요된다.

- 운전면허 전환 신청서
- 한국대사관이 번역 공증하고 쿠웨이트외교부가 승인한 한국 면허증의 아랍어 번역문
- 유효한 거주 비자
- 여권 및 Civil ID사본
- 신체검사 통과 증명서(시력검사)
- 대학졸업증명서(외교부 및 주한쿠웨이트대사관의 영사확인 필요)
- 사진(4매) 및 수수료

동 면허증 상호 인정은 쿠웨이트 거주비자가 나온 이후에 가능하므로, 가급적 국제면허증을 국내에서 발급받아 올 필요가 있으며, 거주비자가 발급되면 국제면허증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쿠웨이트에 새로이 파견되는 건설사 직원 또는 가족은 대학졸업 증명서 등을 외교부 및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의 공증을 거쳐 미리 준비해 오는 것이 편리하다.

운전면허 상호인정(교환발급)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 개선하기 위해 2015년 3월 우리 대통령님의 쿠웨이트 국빈방문시 정상회담 계기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추진하기로 제안하였고, 쿠웨이트 국왕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현재 양측이 구체적인 협정문안을 협의 중에 있다.

운전면허 상호인정(교환발급)이 아니라 면허시험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이상 보유, 월 600KD이상의 고정급여, 쿠웨이트에 거주한 기간 2년이상 등 3가지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거주비자 발급

일반적인 방문이나 상용비자(business visas)의 경우 입국하기 전 단계에서 쿠웨이트 현지의 스폰서(보통 숙박대상 호텔 이용)나 사업파트너, 에이전트 등의 사전 협조가 필요하며, 건설사 주재원 등 취업활동의 경우에는 노동허가 및 거주허가가 필요하다. 거주허가에는 지문채취와 신체검사(혈액검사, 결핵여부 등) 과정이 있다. 이와 관련, 특히 제3국 인력수입에 따른 입국 및 거주비자 처리지연 또는 불허 등 관료주의 및 행정지연에 따른 적기 인력투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 거주비자 발급 절차

① 쿠웨이트 내 지사나 스폰서 측이 노동부에 WP(Work Permit; 취업허가서) 발급신청

② 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상기 취업허가서를 내무부 이민국에 제시, NOC(No Objection Certificate) 발급을 신청

③ 내무부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받은 NOC를 국내 해당인에게 송부

④ 해당인은 동 NOC를 주한 쿠웨이트대사관에 제시하고 비자신청

⑤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

⑥ 동 병원에서 발급받은 신체검사증을 제출, 동 대사관으로부터 임시 입국비자를 발급받아 쿠웨이트에 입국

⑦ 쿠웨이트에 입국한 후 노동부에 스폰서쉽 증명서 발급신청(동시에 의료보험 가입)

⑧ 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쿠웨이트 내 현지병원에서 신체검사(재검) 및 지문채취 후에 내무부 이민국에 거주허가(여권에 부착하는 스티커 형태의 거주비자) 발급신청

⑨ 거주허가 발급 후 1개월 내 내무부에 외국인 신분증(Civil ID) 발급 신청

통상 NOC 발급에는 3~4주, 거주허가는 신청 후 3~4일이 소요되며 거주허가는 도착 후 2개월 내 발급 받아야 하고, Civil ID는 거주허가 발급 후 1개월 내 신청해야 한다(동 기간 경과 시 벌과금 부과).

일반 방문비자로 우선 입국하고 난 뒤에 취업허가 및 거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다시 출국하여 상기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가급적 장기 체류를 하게 될 경우 국내에서 상기 ④, ⑤ 과정을 마친 후 쿠웨이트에 입국하는 것이 좋다. 보통 취업 및 거주허가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이며 연장이 가능하고, 취업허가는 다른 고용주(sponsor)에게 이전(transfer)될 수 있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건설공사 수행 시 한국으로부터 각종 자재 반입을 위해 쿠웨이트 국적의 항공 및 해상 운송편 이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 건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대부분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함, 쿠웨이트인은 전무) 고용 시 외국인은 스폰서 제도에 의해 쿠웨이트 국적자를 스폰서로 내세워야 한다. 이 경우 스폰서에게 스폰서 fee를 제공하여야 하며, 절차가 번거로운 경우가 일반적이다.

금융기관의 쿠웨이트 진출과 관련된 사항

쿠웨이트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쿠웨이트가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걸프지역의 금융허브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특히 최근 고유가로 인해 안정적인 재정수입과 효율적인 금융감독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 이슬람계 은행, 외국계 지사 등을 합쳐서 20여개의 은행이 영업 중에 있으며 인구 420만 명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다.

Kuwait Finance House와 같은 전통적인 이슬람계 은행이 그동안 우위를 선점해 왔으나 점차 일반은행과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각 은행들도 기존 업무 영역을 넘어서 투자, 자산관리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쿠웨이트 은행이 외국계은행과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외국 은행의 쿠웨이트 진입을 매우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 2004년 8월 외국은행으로서 최초로 BNP Parisbas의 지점이 쿠웨이트에 개설되었다. 외국은행의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자본금 1,500만 디나르(5,150만 달러)가 있어야 하고, 50% 이상 인력을 쿠웨이트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또한 단 1개 지점만이 허용된다는 제한이 있다. 현재 BNP Parisbas, National Bank of Abu Dhabi, Citibank, HSBC, Qatar National Bank, Bank of Bahrain and Kuwait, Doha Bank, Mashreq Bank 등 외국은행 지점이 쿠웨이트에서 영업 중이다.

최근 통상환경 변화 및 특징

쿠웨이트의 통상환경은 대체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비록 쿠웨이트가 포브스지가 2011년 10월 시행한 "Best Country for Business"에서 조사대상 총 134개국 중 58번째를 기록하였고, 아랍지역에서는 6번째로 랭크되었다고 보도된 바는 있으나, 통상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상당히 더딘 편이다. 한편, 최근 월드뱅크에서 조사한 Doing Business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순위는 2015년 86위, 2016년 101위로 더욱 악화되었고, 인근 GCC 국가 중에서도 가장 기업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UAE는 2015년 22위, 2016년 31위, 카타르는 2015년 50위, 2016년 68위, 사우디는 2015년 49위, 2016년 82위

에 랭크되었다. 쿠웨이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KBC(Kuwait Business Center)를 설립하여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국민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프셋제도 중지, 회사설립 최소 자본금 축소 등 각종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하며 외국 투자자들의 유치하기 위한 통상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쿠웨이트 정부는 2017년 1월 중장기 국가개발계획 'New Kuwait 2035'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 정책은 5대 전략과 7개 축(Pillar)를 핵심하며, 163개의 하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인적자본구축 분야에 전체 프로젝트의 1/3에 달하는 다수의 프로젝트가 집중되며,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미래세대 인적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있다.

또한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는 석유의존적 경제를 탈피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 보건의료분야, 친환경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므로, 우리 기업은 쿠웨이트 통상환경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3국인 유입증가에 따른 인구 증가, 교통 체증 및 혼잡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연간 10만명, 향후 10년간 100만명 감축목표 하에 전문인력을 제외한 3국인 잉여인력에 대한 대규모 감축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거주(근로) 비자 발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상호인정을 통한 운전면허증 발급 등이 일선 행정 창구에서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수행시 필요한 인력투입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현지 경제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한편, 지난 2010년 5월 '전력 및 담수생산을 위한 Public Joint Stock Company 설립법안(민자담수발전프로젝트법률, IWPP : Independent Water Power Project)이 제정되었으며, 여러 논란과 시행착오를 거쳐 2013년 12월 쿠웨이트 제1호 민자사업인 노스 알주르 민자 담수발전 1단계 프로젝트(1,500MW + 107MIGD규모)가 계약이 체결되었고,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어 2016년 11월 완공되었다. 이와 같은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외국기업 등 민자사업자 지분율이 40%, 쿠웨이트인 공모 50%,

쿠웨이트 정부기관 10%가량으로 정해져 있다.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로 불리는 민관합동투자는 쿠웨이트 정부가 민간부문 활성화,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더욱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메트로, 철도 등의 대형 프로젝트가 민자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바,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진출확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튀니지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수입 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튀니지는 WTO 회원국으로 현재까지 60여개국과 무역협정이나 특혜무역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며[32], 농산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품목에 한해 주요 교역대상인 EU(제휴협정), 일부 아랍국가, 유럽자유무역연합(AELE, Association Européenne du Libre-Échange)의 7개 회원국 및 터키로부터의 수입품목에 대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튀니지의 주요 교역상대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로서 튀니지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33]. 이러한 현실에는 지경제학적인(geo-economic) 여건도 작용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EU간의 공산품 대상 FTA 협정, 즉 제휴협정(Accord d'association / 1998.3.1 발효) 체결로 2008년 1월부터 쌍

32) 튀니지는 1994.4.15 마라케시 설립협정의 서명국(95.3.29 협정발효)으로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수혜국인 동시에, WTO 협정에 따른 법령(덤핑 및 보조금 등 불공정수입행위 방지 법안, 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법률, 지적재산권관련, 저작권보호 기관 설립, 관세평가협정관련 등)을 정비중임. 제2차 튀니지 무역정책에 검토회의(05.10월, 제네바)에서는 과거 10년간의 튀니지의 경제성과를 검토하고, 무역절차간소화 및 수입의 양적제한 관련 튀니지의 노력을 평가한 바 있음. WTO의 2016.8월「튀니지 통상정책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튀니지는 2008년 발효된 이란과의 특혜무역협정을 제외하고는 2005년 이후 다른 나라와 무역협정을 체결한바 없음.

33) 2017년 EU는 튀니지 수출입 시장의 64%를 점유하였으며, 특히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4개국이 튀니지 수출입 시장의 53.4% 차지함. 동 기간 중 한국의 비중은 0.8% 규모임(2017년 튀니지 총수출액: 34,426,600 천 디나르, 총수입액: 50,018.700 천 디나르).

방 간의 공산품에 대하여 관세가 철폐된 결과 EU 회원국 상품들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된 데 기인하기도 한다. 한국은 튀니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튀니지가 지역협력체 및 여타 인근 국가들과 체결한 아래의 대외무역 협정들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일종의 관세장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ㅇ EU와의 공산품 대상 FTA 협정

- 제휴협정(Accord d'association / 1998.3.1 발효)
- 2008년 1월 1일부터 "공산품"의 관세 철폐

※ 튀니지는 EU측과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임.

- 2015.10 쌍방 협상 개시, 2016.4 튀니지에서 제1차 협상진행
- 제휴협정의 한계(공산품만을 대상으로 한 관세 철폐)를 극복, 농수산물, 가공농산물, 지적재산권 분야 등 보다 광범위한 통상관계 수립이 목적

*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 DCFTA(영어 표기), ALECA(불어 표기)

ㅇ 유럽자유무역연합*과의 공산품 대상 자유무역협정

- 2008년 1월부터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

* 유럽자유무역연합 : EFTA(영어), AELE(불어).

ㅇ GAFTA 협정(범아랍자유무역협정)

- 2005년 1월부터 GAFTA(범아랍 FTA) 18개 회원국 간 '농산품 및 공산품'에 대해 관세철폐
- 관세철폐 제외 상품 : '회원 18개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협정 비적용 대상물품 목록' 상의 물품, 회원국이 특정 하는 기간의 특정 농산품, 회원국의 면세지역에서 제조된 상품
- 관세면제 대상 상품의 조건 : 협정상의 '아랍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으로, 협정상의 '직교역 조건' 충족 필요

아랍 원산지 규정	아랍 직교역 규정
o 회원 1국에서 완전히 얻어진 상품 o 상품생산가 기준 - 그 가치의 최소 40% - 조립산업의 경우 최소 20%가 협약 당사국에서 부가된 상품	o 비아랍 중개인의 개입이 없는 회원국가 간의 직접교역 o 교역과정상 중간 기착지가 있는 상품의 경우 - 중간 기착국의 세관 당국의 감독 하에 있던 상품으로, - 보관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가공이나 변화되지 않은 상품은 예외적으로 직교역 상품으로 인정

* GAFTA 회원 18 개국 :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 수단, 시리아, UAE,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o 아가디르(Agadir) 협정

- 2007년 3월 27일부터 EU와 제휴협정이 체결된 4개국(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요르단) 간 '농산품 및 공산품'을 대상으로 관세와 기타 세금 전액 면제

- 유로-지중해 원산지 규정(règles d'origines Euro-Méditerranéennes) 도입, 유로-지중해 증명서(certificat Euro-Med) 도입, 협정이행 실무 점검팀(요르단 암만 소재) 운영

o 이슬람협력 기구(OIC) 회원국 간의 특혜무역협정

- 2002년 회원 10개국의 서명 및 비준으로 발효.

o 양자협정: 터키(2005.7월), 모로코(1999.3월), 리비아(02.2월), 이집트(1998년), 시리아(2005.10월), 요르단(1999년)과 FTA를 체결했고, 알제리(1981.1월 서명/ 미발효상태), 모리타니아(1964.9월/추가의정서로 1988.7월 개정), 이란(2008.5월)과는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함.

- 터 키: 모든 공산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제한된 물량의 일부 농산품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대추야자의 경우 5천 톤)

- 모로코: 2007년 12월 종료된 이행기간 동안, 양국 교역상품에 대해서 관세 및 세금을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호혜적으로 철폐하며, 상호 합의된 상품목록 상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 17.5%를 적용

- 리비아: 양국간 모든 교역상품에 대해서 관세 및 세금을 완전히 호혜적으로 면제

- 이집트: 기종료된 이행기간 동안, 양국 교역상품에 대해서 관세 및 세금을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호혜적으로 철폐(단, 합의된 수입제한 품목상의 상품은 제외)
- 요르단: 기 종료된 이행기간 동안, 양국 교역상품에 대해서 관세 및 세금을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호혜적으로 철폐
- 알제리: 특혜협정(Preferential agreement)으로 양국 교역상품에 관세 및 세금을 호혜적으로 완전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알제리측은 동 협정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이 란: 합의된 2개의 공산품 목록(튀니지, 이란 각 1개) 제품대상으로, 원재료 50 %, 반제품 40 % 및 완제품 30 %의 관세 인하

한편, 튀니지는 관세인하 및 면세조치 추진 차원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1차 원료, 반제품, 장비 수입 시 최고 관세율을 기존 36%에서 30%로,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리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최고 관세율을 10%로 각각 인하 조치하고, 상기 장비 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에 대해서는 면세조치를 취한바 있다. 또한, 2012년 1월 1일부터는 관광차, 버스, 트럭 등의 특정 차량용 타이어에 대해 수입관세율을 15%로 인하하고 농업원료로 취급되는 특정 종자 및 식물을 면세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다만, 주류, 자동차, 사치품과 같은 소비재에 대해서는 관세와 별도로 수입쿼터제를 실시하거나 높은 소비세(일반 품목은 200%, 사치 품목은 700%까지)가 부과되어 수입 장벽은 여전히 높게 존재하는 실정이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튀니지는 무역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고 수입통관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을 위해 통관 전자화(No paper) 시스템 도입 외에도 관세 수취에 전자서명 및 전자결재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세관신고 전자화(TTN, Tunisie Trade Net 및 Liasse Unique 시스템)를 추진하여 세관신고서 및 수입품목에 대한 기술검사 서류 등의 전자 수·발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34]. 수출입

관련 모든 정보를 자동 처리하는 시스템은 '통관절차 자동화 정보 시스템(SINDA, Système d'Information Douanier Automatisé)'이며, 상기 TTN 및 Liasse Unique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

수출입 품목이 세관을 경유하는데 소비되는 시간은 평균 3.8일(2015년 기준)이며,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0.75일이다. 수입품목에 대한 기술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튀니지 통상부의 기준에 따르면 48시간(관련서류가 완전히 구비된 경우)이다. 또한, 튀니지 관세청은 모든 세관서비스를 유료화(2016년 기준 관세의 3%에 해당)한 바, 신고서 1장당 전산화 처리 명목으로 6디나르(2018년 10월 현재 환율 기준 2,39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한편, SINDA의 문서(기술규제에 부합하는 제품의 안정성, 소비자의 건강, 수입품목의 성향 및 가격, 원산지 및 수입업자 등에 대한 정보) 판독 결과, 기술검사(controle technique)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을 녹/주/홍의 3색 목록으로 분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제품은 총 관세품목의 약 11%에 해당한다. 기술검증 대상 품목은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 유통이 금지되며, 공업, 농업, 관광 부문과 관련하여 수입업자가 사용하는 원자재 및 반제품, 수입품 샘플, 일반 홍보용 물품, 전시용 상품, 외교단 및 적십자사의 수입품, 행정기관이 주문하는 선물용품, 반송품 등은 2010.7월부터 기술검사 면제 대상이다.

- Circuit Vert(녹색 리스트): BAE(Bon a enlever) 카테고리로 통관 직후 즉시 접수가 가능하다. 튀니지 관세청에 따르면 동 카테고리로 분류된 품목은 총 수입품의 71%에 해당(2015년 기준)됨.
- Circuit Orange(주황 리스트): 상품의 안정성이 중간으로 평가되는 품목들로 규격인증서 등 문서상의 검증을 위주로 한다.
- Circuit Rouge(적색 리스트): 상품의 안정성이 매우 낮음으로 평가된 품목들로 상품에 대한 직접검증(X-ray, 포장 개방)을 실시하며, 2015년 기준 총 수입품목의 8.75%가 이에 해당되었다. 직접검증 대상 품목

34)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EU 및 프랑스개발청은 튀니지 세관의 조세형식간소화 프로젝트를 지원, 2016.3월부터 일부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문서 30개를 삭제하는 등 기존 형식의 77%를 간소화함.

은 수취허가증 및 소비허가증이 발부될 때까지 세관 창고에 보관되며, 통상적으로 11일 소요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추가 기술검증이 요구된다.

튀니지 정부는 밀무역 근절 및 수입품목 가격의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수입업자가 준수해야할 신규 세관수칙을 2017년 9월 28일 발표(2017년 10월 30일부터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수입품목 특히, 식료품, 화장품 및 공업용 자재류의 통관절차를 위해서는 수출국 쪽에서 작성된 세관신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수출품목의 실질가치를 파악하여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관세율,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이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1) 원산지 일반규정

다른 나라에서 제조를 거친 제품의 수입 시 제품의 원산지는 초기 제조국이다. 그러나 타국에서 부분 및 완전가공을 거친 경우 가공한 나라가 원산지가 되며 가공이 불완전할지라도 가공 후 제품의 관세가 가공 전 제품의 관세보다 높을 경우 가공한 나라가 원산지가 된다. 튀니지는 교토협약 개정안(the Revised Kyoto Convention)의 부속 K에 의거하여 제정되어 2009년 2월 공포된 세관법에 따라 가공이 완료되었거나 상당부분 가공이 이루어진 나라를 원산지로 규정한다. 원산지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에 따라 결정된다.

(2) 원산지 특별규정

튀니지는 1996년부터 자국과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모리타니아,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요르단, 쿠웨이트)이나 對아랍자유무역협정 체결국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규정을 적용(가공제품 공장도 가격의 최소 40%를 지역부가가치세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 국가들을 원산지로 인정하여 수출입 시 감세 및 면세혜택(회원국간 누적 가능)을 적용한다. EU, EFTA, 터

키와의 자유무역협정의 경우에는 1995년부터 적용 대상이 확장된 PAN-EURO-MED(범유럽·지중해) 방식을 활용, 품목마다 원산지 특별규정을 적용하여 관세율이나 지역부가가치세에 변화를 주고 있다.

수입규제

튀니지는 1994년 제정된 수입 금지법에 의거하여 수입이 전면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목을 엄격히 관리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다. 총기류, 폭약(2013년 12월 20일부터 국내 생산, 판매, 수입 전면 금지), 투견 등 치안 및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품목과 마약류와 같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미풍양속 및 관습을 저해하는 품목과 동식물군 및 문화재 보존에 위배되는 품목 등이 수입금지 품목(총 관세품목의 7.2%)에 해당된다[35]. 단, 전량수출기업은 상기 수입금지 품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생산 및 투자에 필요한 모든 재화를 수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농산품, 자동차, 섬유제품, 전문 음향기기, 위성전화, 측량 및 측정기기 등 전체 수입 품목의 약 3%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서(Import license)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수입허가서 신청은 무역 계약서(Proforma) 및 계약 당사자, 수입품목, 원산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인 중개사를 통해 통상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통상부가 발부하는 수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허가 결정일로부터 1년이고 양도는 불가능하다. 수입허가증 발부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상품목의 민감성에 따라 다소 격차가 있는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1998.1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입보호조치에 따라 △시기적으로 농산물 등 대량수입에 의해 국내 생산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품목 △국내 시장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소비재 △정부보조금 혜택이 부여되는 품목에 한해 수입제한이 적용된다. 이 경우 통상부나 관계 기관에 대상 품목에 대한 수입 신청서를 제출한 후 통상부의 적격심사(통상적으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개월 이내이며 예외적으로 2개월 연장 가능)가 실시

35) 이스라엘산 제품은 전 품목이 수입 금지되어 있음.

된다. 수입보호조치는 수량제한이나 관세 인상의 형태로 적용되며 일시적 조치에 해당하는바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한편, 수입쿼터를 통한 외국기업의 시장 진입 규제가 있다. 일례로, 자동차의 경우 주재국 통상부는 공식 업체를 통한 수입쿼터를 약 60,000대를 기준으로 전체 규모를 책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자동차 업체에게 1년 단위로 할당하고 있어, 쿼터할당 교섭이 자동차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공식 업체를 통한 자동차 수입가격은 공식 업체의 세금부담 등으로 개별수입(주재국 재외국민에 의한)을 통한 판매가 보다 10-30% 정도 비싼 바, 주재국 자동차 시장의 당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높은 소비세, 2011년 혁명 이후 확대 추세를 보이는 개별수입 규모(2015년 기준, 약 8만대) 및 "개별수입에 대한 혜택 확대 조치" 등이 가중되어 튀니지 내 외국자동차 수입업체들은 시장개방, 쿼터제 폐지, 개별수입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 튀니지 자동차 판매시장 동향

- ㅇ 튀니지육상교통기술청(ATTT, Agence Technique des Transports Terrestres) 통계에 따르면 주재국 자동차시장의 연 평균 증가 규모는 7-8만대이며, 개인승용차 이용률은 11%(인구 9명 당 자동차 1대 소유에 해당)이다*.
  * 터키 11%, 루마니아 20.3%, 프랑스 48.2%

- ㅇ 경자동차의 경우, 구매가격 상승(유로 및 달러 대비 튀니지 디나르의 가치하락), 휘발유가격 인상,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래 지속적인 수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ㅇ 외국산 자동차 수입은 공식 공급업체와 밀무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식업체의 수입 외제차량 판매율은 총 판매량의 96%를 차지한다. 특히, 신형 자동차 판매의 경우 20여개 공식업체(30여개 브랜드 판매)가 경쟁을 하고 있으며, 총 1만여 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 ㅇ 한편, 신형 자동차 수입 쿼터 감소와 맞물려 중고 자동차 수입은 밀무역 거래를 통해 규모가 증가하면서(ATTT 집계에 따르면, 번호판을 재발급 받은 중고차 수 증가), 2016년 말 기준 주재국 자동차 판매시장에서 36%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 공식수입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외국산 자동차의 최근 수입쿼터(2017.9월 기준) 분포를 보면 Volkswagen 등 독일차(7,650대), Renault(6,450대), Peugeot (5,000대), Citroen(4,637대), 기아(4,100대), Fiat(3,600대), 현대(3,000대), Toyota(2,800대), Ford(2,060대), Mazda(1,700대) 등이며, 주재국 통상부는 신형 자동차에 한해 수입쿼터를 10% 감축 조치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품목의 가격이 원산지국의 덤핑 및 보조금 조치로 인해 정상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어 튀니지 시장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조사는 통상부 장관령에 의해 18개월 이내에 취해지며, 잠정적 반덤핑·상계관세는 조사 착수 60일 이전에도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명백한 손해 발생이 입증될 경우 최종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되며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표준

수출경쟁력 강화 및 품질 향상 차원에서 튀니지 정부는 국제표준화 달성에 주력하여 표준화정책을 추진 중이다. 튀니지의 표준 및 기술규격 관련 법규는 1983년에 제정, 2009년에 개정되었다. 튀니지 내 유일 표준 담당기관은 1982년 설립된 산업부 산하 INNORPI(Institut National de la Normalisation et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로 튀니지표준(NT, Normes Tunisiennes)의 등록과 공표를 주관한다.

표준 분야 관련 튀니지 국제협약 비준 및 국제기구 가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장벽관련협약(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제표준협회(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국제전자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아랍표준기구(Arabe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아랍공업개발·광산기구(AIDMO:Organisation Arabe de Développement Industriel et des Mines)
- 아프리카표준기구(Africain Regional Organis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법정계량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 유럽표준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 유럽전자기술위원회(CENELEC: 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 Electrotechnique)

튀니지에서 표준은 크게 '임의표준'과 '의무표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임의표준은 제품과 관련된 정부부처(주로 의약품, 농식품, 전자통신장비 등)가 규정하는 표준으로 제품의 표준화가 증명된 경우에 INNORPI에 등록이 가능하다. 의무표준의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술장벽관련협약(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추가조항 1에 제시된 기술지침과 SPS 협정(위생·식물병충해 방제에 대한 국제 표준)에 적합하다는 공식승인이 필요하다. 표준 승인이 의무화되어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표준 관련 법규 내에서 기준 및 참조 조항으로 활용될 가치가 있는 경우
-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 공공이익, 보건, 의학, 안전, 시민보호 및 환경 분야
- 분쟁 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 경우

튀니지표준의 생성과정은 국제표준의 생성과정과 거의 유사하며, 2015년 말 기준 INNORPI에 등록된 튀니지 표준의 96%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것

으로 집계되었다. 튀니지 표준화 절차는 표준화 제안을 INNORPI에 제출하면 기관에서 지명한 심사위원 그룹에 의해 서류상의 기술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기관 내 실험실에서 임상실험을 거쳐 최종 결과에 이르며, 동 결과를 바탕으로 INNORPI 청장이 표준화 승인 및 거부를 결정하게 된다. 승인 결과는 동 기관 웹사이트 게재를 통해 공식화 된다. 2018년 6월 기준 INNORPI에 등록된 튀니지표준(Normes tunisiennes)은 17,710개로 경제 전 분야에 분포되어 있다.

검사 및 인증

튀니지 관세청은 2010년부터 기술검사가 필수인 일부 품목(총 관세품목의 약 11%에 해당하는 양탄자, 의류, 음료, 제분품 및 일부 조리공정품 등)을 제외하고는 48시간 이내에 수입품목의 통관 완료를 위해 수입품목에 대한 기술검증 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에 있다.

수입 시 기술검증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크게 세 종류로 다음과 같다.

- List A: 철저한 기술검증이 요구되는 품목으로 1900여 개의 관세품목을 포함(총 관세품목의 11%)하며 주로 농경재, 화장품, 가전제품 등임. 농업부, 산업·에너지·광산부, 통상부 및 보건부 산하 검증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함.
- List B: 규격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품목으로 주로 의류, 직물, 종이, 판지, 철강제품, 기계 및 전자제품(현지생산품도 포함) 등임. 세관에서 검증 실시함.
- List C: 수입허가서에 제시된 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증명해야 하며, 주로 농·식품 및 광물 등으로 일정량의 저장고 확보(옥수수와 대두의 경우, 연간 수입량의 1/6을 저장·유지)가 필요하고 운송자재의 경우에는 애프터서비스 이행이 필요함.

동·식물성 제품은 위생검사를 필요로 하며 수입 시에는 특별허가서가 요구된다. 동물, 육류, 원피, 야채류, 식품첨가물, 동물사료(동물사육용 식료품과

식품 수입에는 비 방사능오염 증명서 또한 첨부), 음료 및 기타 식품 등은 보건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가, 식물성 제품은 식물보건 증명서가 요구되며 벌과 꿀 수입에는 원산지증명서 및 무해성증명서가 필요하다. 농업용 살충제의 제조, 수입, 제조, 포장, 판매 및 배포는 농학기사, 화학공학자격증 소지자, 약사 내지는 농업학교의 공중보건학 수료증 소지자에 한하여 인증서가 발부된다.

환경관련 규제

튀니지에는 비인체분야에 대한 유전공학 실험이나 유전자변형유기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활용 관련 법규나 규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GMO 문제와 관련하여, 튀니지는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 생물·기술학적 위험성 예방에 대한 카르타헤나 결의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에 서명한 바, 유전자변형 규제를 법률상으로 제도화하고 생물안전성을 감시·관리하는 국가위원회의 발족을 검토 중이다.

환경분야 국제협약에 따라 튀니지는 유해폐기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및 야생 동·식물 수입 등을 철저히 관리·규제하고 있다.

환경분야 관련 튀니지의 국제협약 비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과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유해폐기물의 아프리카 반입 금지에 대한 바마코협약(Bamako Convention on the Ban of the Import into Africa)
  - 튀니지는 동 협약에 따라 유해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튀니지는 동 협약에 언급된 화학물질(aldrine, chlordane, dieldrine, heptachlore, hexachlorobenzène, mirex, toxaphène, polychlorobiphényles(PCB), etc)의 생산, 사용, 수입 및 수출을 금지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대한 로테르담협약(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정(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동 협약의 첨부서1에 수록된 동·식물의 수입은 농산부의 수입허가서 취득 후 가능
-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 동 의정서 관련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는 품목들은 튀니지 국립환경보호청(ANPE, Agence Nationale de Protection de l'Environnement)에서 발부하는 수입허가증이 필요

석유, 중합체, 원심분리기, 건전지·배터리, 축전지 등은 수입 및 판매 시 5%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튀니지 국립환경보호청이 관리하는 "공해방지기금" FODEP, Fonds de Depollution)과 "환경미화보호기금"(FPEE, Fonds de la protection de l'esthetique de l'environnement)에 각각 70%와 30%씩 적립된다.

보조금 및 불공정 무역정책

2017년 4월 1일 발효된 튀니지 신규투자법(Nouveau Code de l'Investissement)[36]은 민간투자 장려,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수출 능력, 기술력 증진, 우선순위분야 개발,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역량강화, 통합적 지역개발 및 지속가능개발 등의 주요 정책 추진을 핵심 목표로 책정하고 있다. 특히 튀니지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그간 정부 인허가가 필수였던 분야의 일부에 대해 면제 조치를 취하고, 인허가 획득이 필요한 경우에도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시간지연을 방지토록 노력 중이다. 해외투자자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사법권 및 중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자본의 해외송금 허용, 투자계획 실행 초기단계(3년간)에 한해 기업 간부직의 30%까지 외국인 채용을 허용한다.

투자 장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은 ①투자장려금(지역개발 계획, 우선순위 분야 및 지역개발 차원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지출비용), ②농수산장려금(동 분야에 대한 대규모 및 소규모 프로젝트 투자비용에 대해 각각 15%와 30%까지 지원하며 최대 1백만 디나르까지 지급), ③수익증대장려금(신기술 습득 및 생산력 증진 차원의 장비 구매, 연구 및 개발 목적의 무형투자, 직원 교육 및 역량강화), ④고용능력증진 장려금(튀니지인을 고용(첫 고용)하는 경우, 기업측의 사회보장기금 분담 지원), ⑤지속가능개발장려금(수질관리 및 대기오염방지, 친환경·무공해기술 분야 관련 장비 구매 시 총 투자비용의 50%(최대 30만 디나르)까지 지원) 등으로 분류하여 지급한다.

튀니지는 조세압력 감소와 분야별·기업별 불평등 해소를 위해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35%에서 25%로 감세 조치했으나, 일련의 보조금 누적 혜택을 허용하기 때문에 국고에 타격이 크며,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는 기대치 이하인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보조금의 가장 큰 수혜자는 '비상주전량수출기업'으로 환전의 자유, 과실송금, 중대한 감세혜택 등이 주어진다.

36) 튀니지 신규 투자법(http://blog.naver.com/sompat/220919388054) 및 관련 시행령(http://blog.naver.com/sompat/220979988195) 전문이 상기 웹사이트에 한국어로 비공식 번역되어 있어 참고 가능함.

- ‘전량수출기업’은 수출로 얻은 수입이 기업 총 매출의 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부분수출기업”으로 분류됨.
- ‘비상주기업’(Offshore)은 국내에 상주하지 않는 기업으로 환전이 가능한 외환을 투자하여 기업지분의 최고 66%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비상주기업은 주로 전량수출기업의 형태, 즉 비상주전량수출기업의 형태로 혼재한다.

수출기업의 형태에 따른 조세 혜택과 과실송금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으며, 정부보조금 혜택 외에도 비상주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를 국내외 여타 비상주기업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각종 조세 및 관세 면제가 허용되며, 환전의 자유도 보장된다. 단, 상기 나열된 혜택은 상주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혜택	비상주완전수출기업	상주완전수출기업	상주부분수출기업
과실송금 의무	아님	의무	의무
법인세	• 1~10년간 면세 • 14년 1월부터 수출 이윤의 10% 부과	• 1~10년간 면세 • 14년 1월부터 수출 이윤의 10% 부과	• 1~10년간 면세 • 14년 1월부터 수출 이윤의 10% 부과
생산원료 및 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세	면세	2016년 재정법에 따라 장비 수입에 한해 면세
상기 생산원료 및 장비에 대한 입항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면세	면세	장비 수입에 한해 면세

튀니지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에 유통업(도소매 모두 포함) 접근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업활동의 경우에도 “외국인영업허가증”(carte de commercant étranger) 취득이 필수인데, 이는 공공조달, 1차원료 추출, 자동차 연료 유통 및 환전거래 부문 종사자에도 적용된다. 단, 알제리와 모로코 국적자에 한해서는 상기 외국인영업허가증이 불필요하다.

외국인의 경우 튀니지 정부의 사전 승인 하에 건설분야(건축 및 설계, 토목공사, 인프라, 부동산) 관련 업체 지분의 극소수 수준에서만 소유가 가능하다.

한편, 2015년부터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49개 분야(운송 및 교통, 철도, 해운, 항만, 통신, 교육 및 직업훈련, 부동산, 예술품 제작 및 출판, 세미나·회의·포럼·전시회 조직, 상업광고 및 경비업체서비스 등)에 대해 튀니지기업의 외국인 지분소유를 50% 이상, 최대 66.66%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총리실 산하 투자고등위원회(CSI, Commission Supérieure des Investissements)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갱신은 불필요하다. 반면, 상기 49개 분야 관련 외국인이 유가증권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는 튀니지기업 지분의 최대 50% 까지만 소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투자의 경우 전량 수출기업 형태를 제외한 대다수의 영업활동은 모두 튀니지 정부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한다.

외국인직접투자에 제한이 없는 분야는 주로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 부문(금융업, 보험 및 관광업)이나 제조업의 경우 정유, 의약품제조와 수출이 아닌 국내수요 충당을 위한 제조업(카펫 제작, 주류(맥주 및 와인) 제조, 제분업, 식용유 정제, 철근 제작, 생사, 담배 제조 등)의 경우,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수출장려 차원에서 조성된 비즈니스 파크(Parc d'activités économiques)를 활용할 경우(※ 아래 도표 참고)[37], 단지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전량수출기업은 조세, 금융 및 관세 혜택을 부여 받으며, 영업활동에 필요한 품목 수입 및 수입 시 기술검사도 면제된다.

위치	관련 분야	면적 규모 (ha)	고용자/기업 수 (2015년 기준)
Zarzis (남부)	노무직 활용도가 높은 산업 및 기술 관련 산업, 석유 정제 및 가스 생산 관련 서비스 등	60	182명/47개 기업
Bizerte (북부)	기계·전자·전기, 조선 및 마리나, 제약, 플라스틱, 직조, 섬유 및 피혁, 기타 무역서비스	100	4,300명/59개 기업

37) 이 외에도 기타 경제특구가 구축되어 있으며, 관련 정보는 한국어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sompat/220924832656)에서 참고 가능함.

통상부 산하의 수출진흥공사(CEPEX, Centre de Promotion des Exportations)는 수출지원 정책 및 방안의 파급효과 검토, 무역 데이터 관리(Tasdir Net), 무역분야 종사자 교육 및 각종 엑스포, 전시회 조직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 "수출진흥기금"(FOPRODEX, 1985년 정부가 설립)을 운용, 보조금이나 융자(상환기간 3년, 거치 1년, 평균이자율 조건) 형태로 수출업자 및 기업에 지급한다[38]. 농산물 수출의 경우, 운송비(해운 1/3, 항공 1/2) 지원, 수공예품의 경우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운송비의 25%를 분담한다. 또한 CEPEX는 수출기업들의 대졸자 고용 장려차원에서 이들의 임금(첫해 50%, 2년차 40%, 3년차 30%) 지불을 분담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수출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시장접근기금"(FAMEX II, Fonds d'Acces aux Marches d'Exportation)은 개인(최대 10만 디나르), 기업(50%) 및 전문협회(70%)의 수출전략수립 비용을 분담하고, 해외판로 개척 성공 사례의 경우 최대 보조금 15만 디나르를 지급한다. 세계은행에서는 튀니지 수출증대 지원 차원에서 "수출 경쟁력·개발 지원기금"(TASDIR+, Fonds d'Appui a la Competitivite et au Développement des Exportations)을 마련하여 제약, 보건 및 교육서비스, 전기전자산업, 자동차, 항공우주산업 등 고부가가치창출 분야 종사자에 보조금을 지급, 이들의 재화 및 용역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 바, 2015-2020간 지원 규모는 2,20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1984년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튀니지 무역보험공사(COTUNACE, Compagnie Tunisienne pour l'Assurance du Commerce Extérieur)는 수출에 필요한 보험 및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튀니지는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 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38) 2015년 기준, 수출진흥기금 예산은 1900만 디나르(CEPEX총 예산의 63%에 해당).

Agreement)에 가입하지 않은 바, 4대 개별협정 중 하나로 내국인 대우와 무차별원칙을 기본으로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상의 투명성에 초점을 두는 정부조달협정(GPA: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단, 1995년 체결한 EU와의 제휴협정 범위 내에서 정부조달 분야의 점진적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튀니지는 2014년 3월 13일자 총리령(Decree)에 따라 입찰규정서에 명시된 '응찰자격요건 충족 시 최저가격 낙찰"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기술요건이 중시되는 재화나 설비조달, 디자인 계약의 경우에는 가격보다는 품질을 우선순위로 두고 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상기 총리령은 발주처(정부, 지역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포함)가 아래 금액 이상(세금 포함)의 계약체결을 할 경우 공공조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5조).

- 토목공사(20만-50만 디나르)
- 컴퓨터 및 통신기술 분야 재화 및 서비스 공급과 감정(10만-20만 디나르)
- 기타 부문의 재화 및 서비스 공급(10만-30만 디나르)
- 기타 부문의 감정(5만-10만 디나르)

상기 금액 미만의 경우에도 공공조달 관련 절차는 밟지 아니하되, 공공자금 운영 및 효율성을 보장하는 투명성의 원칙을 토대로 서면절차에 따라 경쟁의 대상이 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KOICA 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1월 튀니지전자조달시스템(TUNEPS, Tunisian e-procurement system)을 발족, 정부 4개 부처(총리실, 교육부, 정보통신기술·디지털경제부, 인프라·주택·국토정비부)와 6개의 국영기업 등 총 10개 기관을 시범 사례로 사이트를 구축하여 공공조달 즉 공공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에 활용하고 있다. TUNEPS는 User management, e-building system, e-contracting system, e-catalogue system, e-shopping mall system의 5대 핵심분

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입찰건에 대한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준수 여부는 조달감독원(Commission de contrôle des marchés compétente)에서 검토한다. 국가 공공조달 정책수립 및 분석 등 법적·행정적 범위, 관련 향상 방안 등은 국가공공구매위원회(Conseil Nationale de la Commande Publique)가 담당하며, 하위조직으로 공공구매고등위(Haute Instance de la Commande Publique), 공공조달고등감독·감정위(Commission Supérieure de contrôle et d'audit), 공공조달조사·후속조치위(Comité de suivi et d'enquête des marchés publics) 등이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조달시장을 감독한다.

※ TUNEPS 튀니지 온라인 전자조달 시스템의 중요성

KOICA는 2011-2013간 570만 달러(약 65억 7천만 원)를 지원, 튀니지 총리실 산하 공공조달고등위원회(HAICOP)와의 협업으로 튀니지 온라인 전자조달 시스템 TUNEPS Tunisian e-procurement system) 구축에 기여했다. 튀니지 공공조달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와 기회균등을 원칙으로 구축된 동 시스템은 공공조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5.10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유엔의 '열린정부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회의에서도 아중동지역 공공서비스 개선 분야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는 등, 튀니지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서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공공조달의 투명성이라는 대의 아래,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두텁게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으며, 이는 튀니지 민주화 진전의 원동력 중의 하나인 사회연대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 TUNEPS 이용 관련 주요 통계

- 공공부문 발주처 : 130 개 기관
- 공급자 등록 : 1,499 건
- 전자 입찰 게재 : 699 건

※ TUNEPS 기술 향상 경과

- 2016.12.23 법령에 의거, 전자 장외구매 절차 개발
- 2014.3.13(2014-1039) 법령(공공조달 규제 관련)에 의거, 사전 선정에 따른 전자입찰절차 개발
- 콘소시엄 조성 관련 법률 도입
- 튀니지 은행 전체와의 외부링크 연결 및 이의 일반화, 추가 링크 구축
- 인프라·주택·국토정비부와 데이터베이스 인증을 위한 외부 링크 연결(추진 중)
- TUNEPS의 공공온라인구매시스템 이용 일반화

외국 업체의 입찰참여

2014년 신규 제정된 총리령에서도 튀니지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대한 우대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즉, 튀니지 기업이 제시한 공사가격이나 튀니지 제품의 가격이 외국기업이 제시한 가격(관세 및 각종 세금 포함) 대비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입찰 경쟁상 우대조건이 될 수 있으며, 산업분야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전문분야 입찰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은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응찰해야 한다. 튀니지 공공조달 시장에서 외국기업의 낙찰비율은 2011-12년 4%에서 2014년 33%로 급증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튀니지는 1975년부터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회원국이며, 아래와 같은 다수 국제협약을 비준한 상태이다.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의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Deposit of Industrial Designs)
- 표장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 원산지명 보호 및 국제 등록에 관한 리스본조약(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 상표의 상형요소 국제분류에 관한 비엔나협정(Vienna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he Figurative Elements of Marks)
-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 연주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튀니지의 지식재산권 담당 기관은 INNORPI와 문화부 산하 튀니지 저작권 및 예술인 권리보호단체(OTDAV, Organisme Tunisien des Droits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이다. 튀니지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저작권 및 유사 분야: 저작권의 포함범위는 문학·영화작품, 작곡, 사진, 소프트웨어와 전통문화표현물을 분류하여 보호기간은 각각 저작권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과 70년이다.
  - 사전 동의 없이 예술품을 이용할 경우, 1~5천 디나의 벌금형이 적용되며, 재발 시에는 벌금액을 2배로 가중
- 상표(제조, 판매, 서비스): 등록은 10년 주기로 갱신할 수 있으며, 재등록은 무한 가능하다.
  - 국가 위조품 퇴치 방안의 일환으로 위조품 적발 시 벌금형 1~5만 디나, 위조품 검사 거부의 경우 5천~2만 디나 상당의 벌금형과 1~6개월의 금고형 적용

- 원산지 표기: 국가명 및 지방명을 표기는 자연적 구성요소(토양, 수질, 식물군 및 기후)와 인적 구성요소(생산, 제조, 변형 및 특수처리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상품의 가치측정에 도움이 된다. 현재 튀니지에서 원산지 표기가 되는 상품은 포도주(7개의 라벨)뿐이나 향후 모든 농산품, 자연·가공식품(동·식물성 모두 포함)으로 표기분야를 확장할 예정이다.
- 디자인 및 공업용모델: 등록자의 선택에 따라 5년, 10년, 최대 15년까지 등록이 유효하다.
- 특허: 기술 관련 모든 분야의 발명품에 해당되며, 유효기간은 20년이다. 단, 국민보건(인체 및 동물의 건강 관련 검진, 치료, 수술 기술 등)분야는 특허화 가능 분야에서 제외된다.
  - 튀니지에서는 특허권의 국제소멸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서 특허상품 내지는 특허절차를 거친 상품이 특허권 소유자의 동의하에 시장판매될 경우, 튀니지 내에서는 동 상품의 제공, 수입, 소유 및 사용에 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서비스 장벽

관광, 통신, 운송 및 기타 전문서비스 분야

튀니지는 다자 및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서비스 분야 개방을 미루고 있는 바, 동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장벽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남아 있으며, 소수의 자국 서비스기업들의 내수시장 독점으로 서비스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도 지연되고 있어, 소비자 후생이나 생산성 제고에도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유통업의 경우 대다수가 튀니지 기업이므로 외국자본의 경쟁은 석유제품, 부속품 및 건축자재 유통 등의 소규모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나 2009년 8월 유통법 개정 이후 유통서비스 규율의 현대화, 상업분야 수준 향상 및 관련 업체들간의 불평등 해소를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신규 유통법에서 주목

할 점은 점진적 자유화 추세와 더불어 도입된 '프랜차이즈' 사업 및 '쇼핑센터' 분야로의 시장개방이라 할 수 있으며, '수직 조치'로 인해 외국투자가 투자고등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튀니지 기업지분의 50% 이상 소유가 가능하고, 전량수출기업의 경우에 외국인 직원 고용이 30%까지 가능하다.

관광산업

관광사업은 튀니지 경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관광부와 관광청(ONTT : Office National du Tourisme Tunisien)에서 관할한다. 국적에 상관없이 개인이나 법인이 호텔, 오락시설, 관광사, 온천관광, 학술관광 전문 튀니지기업이나 호텔 및 오락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지분의 50% 이상 소유가 가능하다. 단, 외국인의 경우 여행사 지분의 50% 이상 소유는 투자고등위원회, 관광부지 구매는 관할 지역 도지사의 승인을 각각 필요로 한다.

- 2017년 튀니지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673만 명, 관광수입은 26억9000만 디나르임.

튀니지 정부의 관광분야 투자 규모

(단위: 백만 디나르)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투자금	208.2	240.1	250.1	241.9	200.2

출처: 튀니지관광청 (2017년 5월 기준)

튀니지 관광산업 규모[39]

(단위: 백만 디나르)

연도	2014	2015	2016	2016/15	2016/14
관광수입	3,625.6	2,414.7	2,322.9	-3.8%	-35.9%
전체 숙박일	29,107,239	16,177,556	17,880,034	10.5%	-38.6%
입국자	7,163,437	5,359,309	5,724,021	6.8%	-20.1%

출처: 튀니지 관광부

39) 튀니지 입국자 통계는 관광목적의 방문객을 포함한 전체 입국자 규모인 바, 관광 관련 통계는 관광수입 및 숙박일 등 여타 통계의 추가적 분석을 필요로 함. 일례로, 2015년-16년간 입국자 규모는 증가(6.8%) 하였으나, 관광수입은 감소함(-3.8%). 튀니지 경우 리비아 등 인근 정세불안 지역에서의 입국자 증가 등 정세적 측면의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역개발장려지대(Zones d'encouragement au développement régional)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프로젝트의 경우 첫 10년간 수입세 100% 면세, 이후 10년간 50% 삭감, 피고용인들을 위한 주택자금 출자의 50% 면제(5년), 직업훈련 비용 면제, 사업 부지구매 비용을 제외한 총 프로젝트 투자액의 8%에 해당하는 상여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광산 재개발 지대 대상의 프로젝트 투자는 관광청 건의와 관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총 투자액(부지구매 비용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지불된다. 관련분야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사용기간 7년 이상) 중 현지에서 제작되지 않는 제품을 수입할 경우, 무관세 및 부가가치세 12% 적용(2015-2016년의 경우에는 특별히 6% 적용)의 혜택이 부여되며, 현지에서 제조되는 장비를 구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외의 지역 대상 관광서비스 영업에 대해서는 호텔세와 직업훈련세가 각각 기업소득의 2%씩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12%가 적용된다.

한편, 사하라사막 지역 대상 관광프로젝트 지원차원에서 정부는 튀니지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한해 고용주측이 분담하는 사회보장기금(CNSS)을 대신 분담(첫 10년간)하기도 하며, 지역개발장려지대의 경우 5년간 정부가 대신 분담한다.

여행사 영업용 차량 수입의 경우, 관세 및 소비세 면제 외에도 부가가치세 12%(기본 18%)적용 등의 혜택이 있으며 여행사나 호텔의 영업용 대형 차량(운전자 좌석 포함, 좌석 수 30개 미만) 수입의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현지 제작 대·소형 버스 구매 시 튀니지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제(프로젝트 창안의 경우)나 부가가치세 10% 적용(프로젝트가 실행 중인 경우)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통신산업

통신산업은 튀니지의 연간 GDP 7%를 차지하는 중요 성장분야로서 통신서비스(유선전화, 텔렉스, 인공위성 및 임차전신)는 국영기업인 Tunisie Telecom에서 독점권을 갖고 있다. 통신서비스 가격은 공식적으로는 튀니지 정보통신기술·디지털경제부의 권한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로는 Tunisie Telecom에서 모든 통신서비스가격을 결정하고 있다[40].

Tunisie Telecom은 2017년 1월 기준 유선통신에서 86.3%(이용자 853,000명), 무선통신에서 32.2%(4,600,000명)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2017년 1월 기준, 튀니지 무선통신 사용자는 총 14,286,000명이며, 1위 무선통신사업자는 시장점유율 40.2%를 기록한 Ooredoo(카타르의 Qtel 이 90%, 튀니지 정부가 10% 지분 소유), 2위는 상기 Tunisie Telecom(튀니지 정부가 65% 지분 소유), 3위는 Orange Tunisie(튀니지 정부가 61% 지분 소유)로 시장 점유율 25.9%(사용자 370만명) 순이다.

튀니지 3G 및 4G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1월 기준 Ooredoo Tunisie(39.9%), Tunisie Telecom (33.2%), Orange Tunisie(26.9%) 순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반면, 3G/4G 모바일 시장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고속인터넷(ADSL) 이용자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8월 현재 Topnet(50.4%), Globalnet(17.8%), Orange Internet (16.8%), Hexabyte(7.7%), Ooredoo Internet(4.3%), FSI Publics (2.0%), Tunisie Telecom(1.0%) 등의 공급업체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튀니지의 모든 인터넷통신은 Tunisie Telecom의 통신망 임대를 기본으로 하며, 국영기업인 튀니지 인터넷 관리청(ATI Agence tunisienne de l'Internet)이 관할한다. 또한, 통신시장 수요를 조절하고 통신서비스 공급업체들 간의 건전한 경쟁 보장을 담당하는 역할은 국가통신위원회(INT, Instance Nationale des Telecommunications)의 소관이며, 통신법을 위반한 업체에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통신서비스는 Tunisie Telecom을 통한 국가 독점률이 상당히 높은 분야인 바, 외국사업자의 경우 법인 지분의 49% 이상 소유가 불가능하며, 법인세 25%, 수출세 10%가 부과된다.

---

40) 유·무선통신 및 고속인터넷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튀니지 정부는 2009.6월 France telecom-Orange를 튀니지의 제2유선 및 제3무선 사업자로 선정했고, 2012.3월 Tunisiana를 제3 유선 및 3G 모바일통신 사업자로 선정한바 있음.

우편서비스

우편서비스는 체신청(Office National des Postes/Poste Tunisienne)을 통한 국가독점사업이다. 우편물수거 및 배달, 국·내외 발송(44%)과 자체금융서비스(40%), 신속배달우편(Rapid-Poste) 등의 신규서비스(16%) 등을 전담하며, 약 1만 여명을 고용(전국에 분포된 우체국은 1,114개)하고 있다.

외국 민영기업이 튀니지에서 신속배달우편서비스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튀니지체신청 산하 Rapid-Poste EMS사와의 합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튀니지 체신청은 보통예금, 적금구좌 관리 및 우편환, 환전업무 등의 금융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튀니지 금융서비스시장의 주체이기도 하다.

교통서비스

튀니지는 2001년 해상·육상교통서비스의 경쟁력 증진 관련 중대 개편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는 지속가능개발형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튀니지 교통정책은 인프라 및 도시고속철도망 개발,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저공해·저소비형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육상교통수단으로의 전환, 그리고 이를 통한 도시교통망 개선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 또한, 정부의 디지털경제 구축을 위한 교통시스템 개발을 위해 교통부는 정보통신기술·디지털경제부와 협업하고 있다.

(1) 해운서비스

해운서비스는 튀니지 교역의 주요 수단(98%)으로 유럽(주로 이태리와 프랑스)과의 무역에 핵심역할을 맡고 있다. 튀니지정부는 2005년부터 컨테이너 이용가격 절감, 민간선주 및 다용도운송전문 국제기업 참여 장려, 물류보급지대 개설 등을 통한 경쟁력강화 계획 수립에 착수, 2009년 해운법을 마련하였다. 튀니지 물류교역의 89~91%는 외국선박이 담당하고 있고 국영선박회사인 튀니지해운공사(CTN: Compagnie Tunisienne de Navigation)는 4개의 민간선박회사(Africa Marine Company, Gabes Marine Tankers,

Metal Ship, MTL Feeder)와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활동영역은 석유벌크 운송 사업이다. 튀니지의 해운서비스 시장은 1992년부터 개방되어 가격은 선주들의 자유의사로 결정되어지고 있으나, 연안 항해 부문은 여전히 튀니지 해운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다. 따라서 튀니지 해안 및 항구 내에서 발생하는 예선작업 또한, 특별요청을 제외한 경우, 튀니지 해운공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항만서비스

튀니지 무역의 98%가 해운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8개의 주요무역항(Radès, Sfax, Bizerte, Gabès, Sousse, Zarzis, La Goulette, Skhira 항)과 건설 완료 중인 Enfidha 심해항이 있다. 그리고 연간 물류 이동량은 2천8백만 톤 이상이다. 총 물류운송의 22%가 수도권 소재 국내최대규모의 컨테이너 항인 Rades항을 통한다. 튀니지의 무역항 관할은 튀니지항만청(OMMP: Office de la Marine Marchande et des Ports)에서 담당하고 있다.

(3) 육상운송서비스

1996년 개혁(국제 육상운송서비스업을 위한 튀니지국적소유 조건 폐지)이후, 육로를 통한 물류운반은 전면 개방되어 대부분이 국내 민간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 기업이 동 분야 영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튀니지 투자고등위원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기업 지분의 50% 이상을 튀니지인이 소유하고, 경영인도 튀니지 국적자에 한함). 단, 국제육상운송서비스업체의 경우, 튀니지 국적 소유 조건은 불요하다. 민간기업의 시장 참여에도 불구하고 일반육상운송서비스(철도, 시내 및 고속버스 운행) 관련 튀니지정부의 독점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철도운영의 경우, 2개의 국영기업인 튀니지철도회사(SNCFT: 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Tunisiens)와 튀니스운송회사(STT: Société de Transport de Tunis)에서 각각 전국(일반 철도이용자 및 물류수송 포함) 및 수도권 운영을 분담하고 있다. 최근 들어 튀니지 고속철도망(RFR: Réseau Ferroviaire Rapide) 구축사업(총 투자 규모 30억 디나)을 위해 Société Tunisienne du Réseau

Ferroviaire Rapide가 설립되어 동 철도망의 제1구간(Tunis-Manouba, Tunis-Ezzouhour 연결) 공사에 착공(2009년 12월 10일)하였고, 점차 D선(Tunis Barcelone-Gobâa연결) 11.3km, E선(Saida Manoubia-Cité Bougatfa 연결) 6.3km와 남북종단노선(Bir El Kassa-Bourjel연결) 115.5km를 구축, Tunis 교외선을 확장 중이며, Sfax 경전철 및 고속철도망 구축사업도 입찰 준비 중이다.

튀니지 정부는 철도운송을 다용도운송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3월부터는 Radès항구에 입항한 컨테이너의 전국 대도시 운송에 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튀니지 철도운송정책의 우선과제는 다용도운송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철도망의 전동화 및 품질개선, 수도권내 고속철도망 확장(교통체증 완화, 도로안전 향상, 온실가스배출 감소 목적) 등이며 동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12월 EU와 Don de la Facilité d'Investissement pour le Voisinage(FIV)를 체결한바 있다.

국제육상운송서비스(TIR: Transport International Routier) 관련, 튀니지는 체결된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협정 체결국들과의 육로접근에 대한 양자간 허용 시스템을 개설하였고 상호간 통관 허용 및 면세를 시행 중이다. 국제육상운송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튀니지인은 소수이며 물류 수송량도 매우 적은 수준이다. 튀니지회사의 참여가 적은 주요 이유는 영업을 하기 위한 비자취득이 어렵고, 유럽표준에 적합한 운송자재가 적으며, 실제 국제 육상운송업자들의 활동영역은 자국 내에서의 외국 세미트레일러 견인 정도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육상운송시장 점유율 증가 및 국제육상운송투자 개발을 위해 튀니지정부는 국제 육상운송용 차량 수입 시 관세 및 수입세 면제, 수입량제한 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4) 항공서비스

튀니지 경제개발 전략분야 중의 하나로 연간 외환소득이 GDP의 2%를 차지하며 1만2천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2004년 민간항공법 개정으로 민간기업의 항공서비스 분야 참여는 개방된 상태이다. 튀니지정부는 국내운항 및 화물항공기 활용을 통한 수익증대와 민간항공사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튀니지에는 Tunis-Carthage, Tabarka, Enfidha, Monastir, Sfax, Djerba, Tozeur, Gafsa, Gabes 등 9개의 국제공항이 있으며, 2009년 말에 개항한 Enfidha공항(튀니스에서 남쪽 100km)과 Monastir 공항(민간기업 TAV이 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들은 모두 국가에서 운영한다. Tunisiair는 튀니지대표 국영항공사로 튀니지항공서비스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70여개국으로 정기국제선을 운항하고 있지만, 혁명 이후 누적되어온 재정적자(과도한 간부·행정직 고용 및 임금 지불, 노사분규 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Tunisiair의 자회사인 Tunisiair Express (기존의 Sevenair)는 국내선 및 인근지역의 국제선(이태리 남부, 트리폴리, 말타 운항)을 담당하며 Karthago Airlines(유럽-튀니지 및 Djerba 운항)이나 Nouvelair Tunisie(패키지여행 전문) 등의 민간항공사와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에는 Freejet와 Syphax Airlines, 2개의 민간항공사가 국가민간항공위원회의 영업승인을 받은바 있으나, Syphax Airlines은 2015년 7월 영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다.

기타 전문서비스

튀니지는 회계, 감사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많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튀니지 회계표준은 국제회계표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매우 근접한 수준이며 대략 2,000개의 감리회사(엔지니어링 및 건축분야)가 있다.

투자장벽

튀니지 경제성장 침체, 디나르의 약세 등으로 튀니지 내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아래 도표 참조). 튀니지 정부는 투자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 시민혁명 이후 5년에 걸쳐 마련된 튀니지 신규투자법은 2016년 9월 17일 국회 승인을 거쳐, 2017년 4월 1일 발효되었다.

2016년 기준 튀니지에는 약 3,350개의 외국기업이 진출해 있고, 354,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외국투자비율이 가장 큰 분야는 에너지(9.6억 디나르), 제조업(7.9억 디나르), 서비스업(2.8억 디나르), 농·수산업, 관광업 순이다. 외국자본의 54% 이상이 Greater Tunis, 21.5%가 북동부 연안 지역에 투자되었다.

튀니지 투자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디나르)

	해당년도 9월 대비 기준				2016년 기준 추세(%)		
	2013	2014	2015	2016	2015	2014	2013
포트폴리오	122	88.4	356.9	44.2	-87.6	-50	-63.8
FDI	1373.5	1308.8	1408.7	1379	-2.1	5.4	0.4
에너지	819.9	700	730.2	780	6.8	11.4	-4.9
산업	359.6	373	442.3	473.7	7.1	27	31.7
서비스	183.8	229.6	227.3	115.6	-49.1	-49.6	-37.1
농업	10.1	6.2	8.9	9.7	9.3	56.7	-4.2
총계	1495.5	1397.2	1765.6	1423.2	-19.4	1.9	-4.8

출처: 튀니지 투자진흥청

튀니지 정부는 2011년 시민혁명 발발의 주요인 중 하나인 지역격차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를 고려하여, '우선지역'에 대한 외국 및 민간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동 지역은 북서부 및 중남부 전역으로, 수도 튀니스 및 연안 지역 고소득층 밀집지역, 공업지대인 Sfax, 리비아 국경지역인 Medenine 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국이 해당된다.

한편, 튀니지는 세계은행이 분류하는 소득별 국가분류에서 중소득국(MICs: middle income countries)에 해당된다(※2016년 1인당 국내총생산 3,304 달러). 2017년 10월 튀니지 정부는 2개 지역(Saaida, Kalla Kobra)의 대규모 댐 건설을 목적으로 이슬람개발은행으로부터 7천 2백만 유로 규모의 차관을 조달하였다.

투자진출분야, 지분소유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1994년부터 실행된 정부의 민영화 프로그램 추진에도 불구하고 광산, 에너지, 국내상거래, 금융서비스 등의 분야에는 특별투자법이 적용되며 사업허가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동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종류가 있다.

- 외국투자가 가능하나 활동조건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며 금융업이나 투자회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보험업, 부동산관리, 외판업, 주식중개업, 운송업, 해운업 분야 등에 외국투자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튀니지에서는 기계·전기·전자, 항공우주, 섬유·의류, 피혁·신발 등의 분야는 외국인도 사업지분의 100%까지 승인 없이 소유할 권리가 보장되지만 서비스업 분야(운송, 통신, 관광, 교육, 토목공사, 부동산, 전산서비스 등)에서 완전수출기업의 형태가 아니고 외국자본 참여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투자가들의 튀니지 기업지분 획득을 승인·관할하는 총리실 산하 투자고등위원회(CSI)의 승인이 필요하다. 농경지 경작, 수산·양식업(튀니지 북부) 등의 농수산업 부문의 경우, 외국투자는 기업지분의 66%까지 허용된다.

투자 인센티브

튀니지는 내 투자자에게는 통신, 우편, 소·도매 유통, 전기, 가스, 수도 등, 정부 및 국영기업이 독점권을 행사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투자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일반 인센티브와 특별 인센티브로 구분된다.

- 일반 인센티브 : 총 투자액수의 15-25%(최대 100-150만 디나르)를 정부보조금으로 지급하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자재 수입의 경우, 입항세,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특별 인센티브 : 완전수출기업과 지역개발권장지역('우선', '2차', '1차' 지역으로 구분)에 진출하는 기업(농업개발, 관광 및 중소기업 진흥 등)에

대해 총 투자액수의 30%(최대 2백만 디나르), 인프라 구축비용의 85%까지 정부보조금 지급

- 완전수출기업: 10년간 수출수익에 대한 면세, 10년 이후부터는 10% 감세, 재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해 면세,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제품 운송장비등), 1차 원료, 반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면세, 세금납세를 전제로 생산된 산업제품이나 농산제품의 30%까지 현지시장 판매가능
- 지역개발권장지역: 투자수익 재투자에 대한 면세, 지역에 따라 제조업, 관광, 중소기업 등의 이익에 대해 5~10년간 100% 면세, 운전 자본을 제외한 투자액의 8%(32만디나까지), 15%(60만디나까지), 25%(100만디나까지)의 보조금(premium)지급
- 농업개발: 투자수익 재투자에 대한 면세, 10년간 운영비용에 대한 면세, 튀니지 비생산 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최초 투자액의 7%의 보조금 지급, 기후악조건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추가로 투자액의 8%의 보조금 지급, 광산지역인 Gafsa에 대한 투자액에 대해서는 25%까지 추가 보조금 지급
- 환경보호[41]: 투자수익 재투자에 대해 50% 면세, 투자수익에 대해 10% 감세, 투자액의 20% 보조금 지급, 특수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인프라 구축 비용 : 우선개발지역, 2차 개발지역, 1차 개발지역 순으로 각각 85%, 75%, 25%의 인프라구축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

아울러 튀니지는 투자 계획 신고, 회사 설립, 튀니지 투자환경 관련정보 제공에 필요한 다단계의 행정절차 및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24~48시간)하기 위하여 'Guichet Unique'(One-Stop Shop)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튀니지는 'OECD 투자보호 및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비준하였고, 세계 54개 국가와는 '상호투자 보호에 대한 양자간 협약'에 비준하였다. 또한, OECD의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2012년 5월)에 가입하였으며, EU

41) 2015년 말 기준, 국가환경보호청(ANPE)은 5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보조금(3천 3백만 디나르)을 지급함.

와는 완전·심화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1989년 11월),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1975년 11월) 등을 체결한 바 있다.

수출진흥정책과의 연계성

튀니지 경제정책의 핵심은 고용창출, 사회·지역·세대·계층 간의 공정분배인 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가 수출진흥책이다. 민간자본투자 장려책(민영화, 양도, 기업창설절차 간소화 등) 개발은 국가 우선사업 중의 하나이며, 주요 관련분야는 제조업 및 관광산업이나 이외에도 안전성과 자급자족량 생산을 도모하는 농업정책, 자국민 및 정부가 주도하는 서비스업 정책도 수출전략분야로 전환 중이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이 튀니지 농경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외국인이 튀니지 법인 지분의 66%까지 소유하고 튀니지 동업자를 갖춘 경우, 영업활동에 필요한 공업용 부지 구매는 허용된다.

금융상의 제한

부분수출 상주기업의 경우, 수출로 획득한 수익전액의 과실송금 및 튀니지 은행에 위탁해야할 의무는 지속되나, 최근 외환시장의 개방조치에 따라 수익금 전액(2005년 이전에는 70%)의 외환구좌 예치가 가능하다.

경쟁정책

가격경쟁 제한 분야

2015년 도입된 신규 가격경쟁법은 모든 재화·용역의 가격이 자유경쟁 원칙

에 따라 책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미 가격에 정부보조금 혜택이 포함된 '1차 필수품', 국가가 독점권을 행사하는 서비스업(통신, 은행, 금융시장 및 보험), 경쟁력이 미진한 분야 등은 자유경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불공정 가격경쟁 사례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 기업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튀니지정부의 가격통제 분류는 다음과 같이 크게 3등급으로 나뉜다.

- A등급 (생산공정부터 유통과정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가격 및 가격변동을 정부에서 사전 결정하는 등급) : 1차 생필품(빵, 밀가루, 국수, 식용유, 설탕, 우유, 차 및 커피 ; 종이, 교과서 및 학습지 ; 휘발유, GPL ; 전기, 가스, 수도 사용료 ; 교통비 ; 의약품 및 진료비 ; 우편 및 통신 사용료 ; 담배, 성냥, 주류 ; 항만이용료) 등
- B등급 (생산과정에서 동일가를 책정하는 등급) : 소금, 베이킹파우더, 맥주, 금속포장 및 철통, 자동차, 석회, 시멘트 콘크리트 원반 등, 경쟁력이 미약한 제품
- C등급 (유통비용을 정부가 책정하는 등급) : 쌀, 과일(오렌지류, 포도, 대추야자 등), 채소(감자, 토마토, 고추, 양파 등), 닭고기, 계란, 제분 품목 및 버터, 토마토 농축액, 각설탕, 효모균, 인공시멘트, 자가용 차량, 트럭, 버스, 견인차, 학습용 잉크 및 공책, 압축가스 등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튀니지 사업자의 독점

경쟁의 자유 및 정당한 상업활동 보장방안으로 가격표 명기의 의무 및 손해판매·판매거부·최저가강요·차별대우·반경쟁행위(독점권, 영향력 행사, 비밀거래) 등의 부당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튀니지 정부의 독점 분야가 많은 이유로 민간 기업들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국가에서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는 분야로는 농업, 농식품, 화학, 인프라 및 주택, 광산, 상업, 건축자재, 통신, 에너지, 기계 및 전자산업, 서비스업(전기, 수도, 통신, 철도, 버스, 전철, 케이블카, 보트, 항공이용, 공항관리, 항공

운항 통제, 항만, 우편서비스) 등 이며, 성냥, 담배, 놀이카드, 화약 등의 제품 수입도 국가가 독점권을 행사하는 분야이다.

국영독점기업은 다음과 같다.

- 튀니지통상청(OCT: Office du Commerce de Tunisie) 독점: 설탕 수입을 독점하고 있으며 수입 품목이 아닌 차, 커피, 감자 등의 1차 식료품에 한해서는 도매 유통권을 가진다
- 튀니지곡물청(Office des Céréales): 국영기업으로 밀과 보리를 독점 수입하며 옥수수와 사료용 대두는 민간 기업에게도 수입이 개방된 상태이다.
- 튀니지석유공사(ETAP: Entreprise Tunisienne des Activités Pétrolières): 원유 및 석유제품, 천연가스 및 GPL(Gasoil)등을 독점수입하며 튀니지 정유회사(STIR: Société Tunisienne des Industries de Raffinage)에 일차 공급하고 남은 원유는 재수출한다. ETAP과 STIR는 석유제품 생산 및 국내 상권 독점기업이다.
- 튀니지중앙약국(PCT: Pharmacie Centrale de Tunisie): 의약품 및 기타 제약품의 수입독점권을 행사한다.
- 튀니지주류공단(Régie Nationale des Alcools): 주류 수입독점권을 소유,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 기업에 독점권을 양도하기도 한다.
- 튀니지 전기·가스회사(STEG: Société Tunisienne de l'Electricité et du Gaz): 튀니지 전기 및 가스의 생산, 유통, 공급까지 전과정에 대한 독점권을 지닌다.
- 튀니지 국립철도회사(SNCFT: 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Tunisiens): 튀니지 전국 철도 운행권(철도 이용자 및 물류 운송)에 대한 독점운영권을 소유한다.
- 튀니지 국립운송회사(SNTRI: Société Nationale de Transport Interurbain): 국내 및 국제 육상여객운송에 대한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다.

- 튀니스 도시운송회사(TRANSTU: Transport Urbain de Tunis): 수도권 내 버스 및 전철 이용에 관한 독점권을 소유한다.
- 튀니지 체신청(La Poste Tunisienne): 우편 · 및 관련금융서비스에 대한 독점운영권을 소유하고 있다.

민영화 정책

튀니지가 민영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은 1987년부터이며, 2015년 기준 국영기업은 104개(정부가 소유하는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은 이중 65개)이다. 주요 분야는 통신, 에너지, 교통 및 관련서비스, 금융, 농식품, 화학, 인프라 및 주택, 광산, 무역, 건축자재, 관광 등의 분야에도 상당한 국가 소유 지분이 존재한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기업의 생산수단과 관리절차의 현대화,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등의 긍정적 변화는 있었으나, 고용창출이나 금융시장 활성화 분야에서는 큰 파급효과를 얻지 못했다. 그간 민영화정책으로 튀니지 정부가 획득한 양도수익은 60억 디나르에 달하며, 민영화의 90%는 외국자본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2011년 시민혁명 이후, 민영화 부문에서 귀추가 주목되는 문제는 그간 누적되어온 튀니지 주요 국영기업들이다[42]. 이 기업들의 막대한 부채(2015년 4월 기준 18억 달러 규모)는 정부 보조금이나 부채전환으로는 더 이상 큰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바, 구조적 개혁, 투명성 제고 외에도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민영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기타 장벽

운전면허 교환

한국에서 발부된 국제운전면허증은 튀니지 현지에서 1년간 유효하며, 동 기간 중 튀니지 교통부에 한국면허증을 보관하고 튀니지 면허증으로 교환받을

42) Tunisair, El Fouladh 종합제철소, 튀니지전력가스공사, 튀니스 운송회사, 튀니지 해운공사, 튀니지 화학그룹 등

수 있다. 하지만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현지 체류 초기에 튀니지 면허증으로 교환 신청을 권장한다. 신청 시 서류와 함께 수속비 11디나르를 지불해야 한다.

현지 면허증 발급기관은 튀니지 육상운송기술청으로, 주소는 다음과 같다.

Agence Technique pour la Transport Terrestre(ATTT)

Avenue du Japon -6 impasse n°1

Montplaisir El Borgel

1073 Tunis

금융시장

튀니지 금융시장 현황

보험업계를 제외한 튀니지의 주요 대출은행으로는 튀니지 중앙은행(Banque Centrale de Tunisie)을 비롯하여 22개의 상주 은행 및 7개의 비상주은행, 9개의 장기신용임대차은행(Etablissements de leasing), 3개의 기업은행(Societes de factoring), 2개의 투자은행(Banques d'affaires) 등 총 43개 은행 및 튀니지 체신청과 같은 재정관련 기관이 13개 존재한다.

국가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국영은행은 주택은행(BH), 튀니지은행(STB), 농업은행(BNA), 연대은행(BTS), 중소기업은행(BFPME)이며, 민간 소유 지분이 50% 이상인 민간은행은 아랍은행조합(ABC), 튀니지아랍은행(ATB), 튀-프랑스은행(BFT), 아티자리은행(Attijari), 튀니지은행(BT), 아멘은행(AB), Citibank(offshore), 튀니지아랍국제은행(BIAT), 지투나은행(BZ) 등이 있다.

이외에 증권시장 관리와 안전보장을 담당하는 튀니스유가증권(Bourse des Valeurs Mobilières de Tunis), 금융시장 관리와 증권투자 보호를 감독하

는 튀니지 금융시장위원회(Conseil du Marché Financier), 유가증권 보상·예치전문회사(Société Tunisienne Interprofessionnelle pour la Compensation et le Dépôt des Valeurs Mobilières) 등이 있다.

보험 분야는 관련 법규가 매우 엄격하고 시장개방을 기피하는 성향으로 인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매우 약한 편이었으나, 2008년 보험법 개정 이후 외국자본 참여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규 보험법은 기존에 49%로 제한되어 있던 외국자본 참여율 제도를 폐지하였고 3개의 비상주 생명보험회사와 3개의 이슬람보험(Takaful) 회사 활동을 허용하였다. 튀니지 정부는 2016년부터 보험서비스 품질개선, 보험업계 재정 강화 및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 향상, 자동차보험의 재정상태 제고 등을 목표로 일련의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튀니지에는 22개의 보험 및 재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5개, 재보험회사 1개) 및 6개의 비상주 보험회사가 있다.

금융시장 진출 장벽

튀니지 정부는 외환관리법에 따라 상주기업(개인 및 법인 포함)의 외환송금 및 입금, 해외금융서비스 구매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으며, 비상주기업은 동 제한에서 제외된다.

비상주기업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7개의 비상주은행에는 특별법이 적용된다. 동 특별법은 비상주은행과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비상주기업에도 적용되며, 후자의 경우 주식회사나 튀니지 중앙은행 및 재무부가 비상주기업임을 인정한 기업 등이 해당되며, 특별법이 제시하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비상주 은행과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비상주은행과 상주기업 간의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는 기업의 지분 참여, 중·장기적 재정지원(외환자본, 수입·수출 거래, 현지화(디나르) 자본, 튀니지 내에서의 수익, 무역거래)이며, 해외차용 자본으로 상주기업의 상거래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상주기업이 비상주은행을 통해 외국자본을 차용할 시 외환 차용액에는 통상적으로 제한이 있으나, 차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며 연간 천만 디나 이상인 경우에는 자유거래가 가능하다. 은행예치도 총 예치액

의 1.5% 한도 내에서는 자유거래가 가능하며 2002년부터는 신용저당서비스 또한 허용되고 있다.

외국자본의 튀니지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는 튀니지 중앙은행과 재정부의 승인기준(외국투자가의 기술·재정적 능력 및 활동계획)에 따라 허용되며 외국자본의 유가증권 중개업 투자는 튀니지 금융시장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증권 중개상(개인 및 법인)은 법적으로 협상가 신분 및 유가증권 등록 권한을 취득한 튀니지 국적 소유자에 한해서 허용된다.

가 봉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일반 경제환경

가봉은 사하라이남 중부 아프리카에 속하고, 약 1.8백만 명의 인구에 비하여 한반도의 1.2배(267,667㎢)의 광활한 국토를 보유한 국가이다. 고온 다습하고 연평균 1,800mm의 높은 강수량을 가진 적도 열대 기후를 나타내며, 국토 85%가 열대우림이며 콩고 분지(Congo Basin)에 속해 있다. 가봉은 북쪽으로 적도기니, 카메룬과 접해 있고, 동남쪽으로 콩고와 2,251km의 국경선을 접하고, 서쪽으로 기니만(Gulf of Guinea)에 속한 885km의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가봉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US$ 7,741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소득 수준이 높고, 석유(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제4위 석유생산국), 망간(세계2위 망간수출국), 철광석, 목재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원 개발 및 원자재 가공 수출을 통한 경제 발전 잠재력이 크다. 가봉 정부는 최근 석유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다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목재, 원유, 망간 등 천연 자원을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화 수출을 장려하고, Nkok(목재가공, 제품 제조 등) 특별경제구역(SEZ)을 조성하여 제조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가봉은 중부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CEMAC) 및 중부아프리카 국가 경제공동체(ECCAS)의 회원국으로서 경제·통상(수입, 관세 등), 외환정책 등에 대해 CEMAC 법률을 따르고 있다. CEMAC 회원국은 가봉, 카메룬, 중앙아

프리카,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등 6개국이고 EECAS 회원국은 CEMAC 회원국 6개국 및 앙골라, DR콩고,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부룬디 등 총 11개국이다.

관세

가봉은 CEMAC 관세율을 적용한다. 관세당국은 상품 수입시 공동대외관세(Tarif Extérieur Commun: TEC), 일반특혜관세(Tarif Préférentiel Généralisé: TPG), 지역 통합을 위한 공동체 세금(Taxes Communautaires),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 TVA), 소비세(Droit d'Accise: DA) 등을 부과하고 있다. 관세는 수입품목의 CIF 가격에 대해 부과한다.

(1) 관세(Droits de douane)

공동대외관세(TEC)는 CEMAC 외부로부터의 수입제품에 적용하며, 아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카테고리 1(생활필수품 등/예: 우유, 크림, 쌀, 밀가루): 5%
- 카테고리 2(원자재 및 자본재 등): 10%
- 카테고리 3(중간재 등 /예: 냉동육류, 가공식품 등): 20%
- 카테고리 4(모든 다른 제품): 30%

(2) 일반특혜관세(TPG)

CEMAC 회원국에서 생산된 수입제품의 관세는 면제된다.

(3) 공동체 세금(Taxes Communautaires)

- CEMAC 공동체 통합세(Taxe Communautaire d'Integration: TCI): 1% (CEMAC 외부로부터의 수입제품에 적용)

- ECCAS 공동체 통합 기여금(Contribution Communautaire d'Integration: CCI): 0.04% (ECCAS 외부로부터의 수입제품에 적용)
- OHADA 부과금: 0.05% (OHADA 가입국 외부로부터의 수입제품에 적용)

(4) 부가가치세(TVA) 및 소비세(DA)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수입품이나 자국 생산품에 관계없이 부과한다. 소비세는 CIF 가격에 TEC를 더한 값에, 부가가치세는 수입품목의 CIF 가격에 TEC 및 소비세를 더한 값에 세율을 곱하여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 18%
- 소비세: 25~32% (특정품목에 한정 : 향수, 화장품, 캐비어(caviar), 푸아그라(foie gras), 연어: 25%, 맥주, 와인: 30%, 샴페인, 담배: 32%)

수입규제

가봉은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이 자유화되었으나, 국민의 안전과 공중보건, 국내산업 보호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을 수입 금지하고 있다.

수입이 금지된 품목은 무기, 폭발물, 탄약류, 마약, 음란물, 모조품, 설탕, 5~6년 이상된 중고차량(승용·승합차는 5년 이상, 버스·트럭은 6년 이상) 등이다. 추가로 2017년 7월 국내 시멘트 산업 보호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시멘트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가봉으로 수입되는 품목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CEMAC 원산지 품목은 관세가 면제된다. CEMAC 원산지는 주로 산업제품에 부여하며, CEMAC내 원재료(raw material)의 총가치가 전체 가치의 40% 이상 또는 역내 부가가치 기준 30%이상일 경우, CEMAC 원산지로 간주한다. CEMAC 이외 지역에 대한 관세우대는 없다.

통관 절차

가봉은 통관업체가 통관절차를 대행하고 있다. 가봉 수입품은 해상 운송시 선박 도착후 24시간 내에 적화목록(Cargo Manifest), 항공운송은 도착 즉시 적화목록을, 육상 운송은 도착시 수입품 목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업체는 통관업체와 운송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통관을 진행해야 한다. 통관 수속을 위해 세관에 품목 도착 후 72시간 이내에 수입통관서류(모두 불어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관 제출서류는 송장(Invoices), 선하증권(B/L), 운임영수증, 원산지증명서, 보험증명서, 포장명세서, BIETC(Electronic Cargo Tracking Note)이다.

통관업체는 세관에 서류제출, 통관수속, 관세·세금 결정 등 절차를 수행한다. 수출업체는 세관이 결정한 관세·세금을 납부하고, 운송회사를 통해 수입품목을 반송하게 된다. 물품 도착 후 항구에 11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보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가봉은 수도 리브르빌에 국제공항이 있으며, 해상운송은 대부분 리브르빌 인근 Owendo 항을 이용해 수입되고 있다.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항공화물의 경우 최대 이틀, 해상화물은 7일 정도가 소요되나, 해상화물의 경우, Owendo 항의 하역 사정에 따라 통관이 지체되어 장기간 소요되기도 한다.

보조금

가봉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유류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2015년 1월 유가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2016년 2월부터 가솔린과 경유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였으며, 가정용 등유와 부탄가스에 대해서는 유류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다.

표준, 검사 및 라벨링

가봉은 2007년 표준, 검사, 인증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가입하였고, 광물산업부 산하 국제표준기구(AGANOR: Agence Gabonnaise de Normalisation, 2014년 설립)가 표준, 적합 및 인증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봉은 2015년 국가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PROGEC)을 제정하여, 2016년 2월부터 수입하는 건설재료, 기계·전기설비·전자제품·유무선통신기기·화장품·의료기구·장난감 품목에 대해 통관서류로 적합성 증명서(conformity certificate)를 세관을 통해 AGANOR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적합성 증명서는 AGANOR과 계약관계에 있는 SGS, Bureau Veritas, Intertek의 3개 국제적 시험인증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해야 한다. 시험인증 증명서가 없이 수입하는 경우 AGANOR에 직접 신고해서 서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1회에 한하며, 2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의 벌금을 납입해야 한다. 인증서(아래 양식 참조)는 각 항목마다 불어와 영어가 동시에 표기되기 때문에 작성에 어려움은 없다. 수입 제품은 불어로 라벨링이 되어야 하고, 기타 특별 라벨링이나 표기 제한은 없다.

인증서 양식

OPERATEUR

REPUBLIQUE GABONAISE
REPUBLIC OF GABON

AGANOR

Certificat de Conformité
Certificate of Conformity

Importateur : (Importer) : **Adresse :** (Address) : **Tel. No. :** **Fax No. :** **Email :**	**Exportateur :** (Exporter) : **Adresse :** (Address) : **Tel. No. :** **Fax No. :** **Email :**
Pays d'évaluation de la conformité : (Country of Conformity Assessment)	**Site d'arrivée :** (Port of Arrival)
Facture No : (Invoice No.)	**Date de Facture :** (Invoice Date)

Code Douanier Déclaré (HS Code)	Quantité (Quantity)	Unité (Unit)	Description Des Produits (Product Description) (modèle, caractéristiques, marque : model, caracteristics, brand)	Route A, B OU C	Norme applicable (Standard Reference)

Remarques (Remarks) :

Signature Autorisée et Cachet (Authorised Signature and Stamp) :

Pour l'organisme d'évaluation

Signataire Autorisé
(Signature)

Bureau d'émission :
(Issuing Office)

Ce certificat n'est valide que pour les produits qui y sont mentionnés et pour une seule et unique cargaison. Ce document est émis dans le cadre du Programme Gabonais d'Evaluation de la Conformité (PROGEC), pour le compte de l'Agence Gabonaise de Normalisation (AGANOR), et n'est valide que pour une période de trois (3) mois suivant sa date d'émission, sauf expiration du produit. Cette durée pourra cependant être prolongée en cas de force majeure. Ce certificat ne dispense ni le vendeur ni l'acheteur de leurs obligations respectives, mutuelles et contractuelles par rapport à la quantité et à la qualité des marchandises listées ci-dessus. La responsabilité de l'émetteur de ce certificat se limite aux termes et conditions de l'accord qu'il a avec son client. Le fournisseur de service rejette ainsi toute responsabilité vis-à-vis de toute autre partie pour des pertes, des dépenses ou des dommages qui auraient été occasionnés par l'usage de ce certificat ; des stipulations contraires n'engagent pas l'OPERATEUR. Ce document ne certifie pas la cargaison ; il a été émis sur la base de l'information fournie à la OPERATEUR dans le pays d'exportation. En dépit de ce certificat, AGANOR et les autorités gabonaises se réservent le droit d'effectuer une vérification de la cargaison à son arrivée au Gabon, et de la rejeter le cas échéant.

위생검역(SPS)

위생 규제는 수입 식품과 국내 생산 식품에 모두 적용된다. 농식품·식물을 수입할 경우 농축산부 산하 식품안전기구(AGASA)에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sanitary certificate) 및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모든 식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정부조달

정부조달(Public Procurement)은 국제입찰과 국내입찰로 나뉘며 입찰 절차는 동일하다. 입찰 공고는 공공조달저널 또는 L'union 일간지에 게재하고, 해외 참여자를 위해 Jeune Afrique 등 국제지에 게재하기도 한다. 입찰 조건은 공고문에 제시되며, 자세한 입찰문서는 참가비(국제경쟁입찰: 50만 세파프랑, 국제제한입찰 및 국내입찰: 30만 세파프랑)를 납부한 자에 한해 제공한다. 입찰방식은 경쟁입찰과 제한입찰(후보자를 미리 한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한 입찰의 경우는 공고하지 않고 관계회사에 입찰내용을 전달(편지 형태)하고 웹사이트에 공지한다.

경제부 산하 정부조달청(DGMP)은 정부입찰 전담부서로 공공계약을 총괄한다. 각 정부부처에서는 필요에 따라 입찰을 일부(예산의 10% 한도내) 실시하고 있다.

정부 발주 사업은 기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입찰 정보를 제공하여 제한적 경쟁 입찰을 통해 발주하거나 정보통신인프라청(ANINF), 공공인프라공사청(ANGTI) 등 각 부처·청이 기업으로부터 프로젝트 제안을 받아 협상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발주사업 완료 후에 정부의 세수 부족 등 예산 사정 등의 이유로 용역대금의 지불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찰 참가시 예산 및 재원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서비스/투자

투자환경

가봉 세법은 CEMAC 회원국에 적용되는 CEMAC 규정에서 대부분 원용한 것이다. 정부예산 효율화, 세수 확대,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위해 가봉정부는 지속적으로 세법을 개정하고 있다. 과세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가봉 정부는 2014년 9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촉진청(ANPI)을 설립하였고, ANPI는 투자유치 및 수출장려, 기업 설립 및 성장 지원, 민관협력(PPP) 지원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조세제도

- 법인세(Impôts sur les sociétés: IS)
  표준세율은 30%이고, 예외로 석유(oil) 및 광물(mining) 관련 회사는 35%, 지적재산권, 관광, 저가임대 빌딩/토지 개발, 공공, 비영리법인, 가봉개발은행에 대해서는 25%을 적용한다. 법인세는 해당연도 매출액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법인세액은 100만 세파프랑이다.

- 개인소득세(Impôt sur le revenu des personnes physiques: IRPP)
  가봉에서 취득한 임금, 자본이득, 재산수익 등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소득별 아래 8단계 누진세제를 적용한다.

  - (1단계) 0~1,500,000 세파프랑: 0%
  - (2단계) 1,500,001~1,920,000 세파프랑: 5%
  - (3단계) 1,920,001~2,700,000 세파프랑: 10%
  - (4단계) 2,700,001~3,600,000 세파프랑: 15%
  - (5단계) 3,600,001~5,160,000 세파프랑: 20%
  - (6단계) 5,160,001~7,500,000 세파프랑: 25%

- (7단계) 7,500,001~11,000,000 세파프랑: 30%
- (8단계) 11,000,000 세파프랑 초과: 35%

ㅇ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es)

- 영세업자 소득: 부가가치세 납세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자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9.5%를 원천징수한다.
- 외국인·법인 소득: 가봉 내 발생한 외국인 및 법인의 용역활동·특허사용료·이자 관련 소득 또는 외국에 본사를 둔 가봉내 지사의 소득에 대해 20%를 원천징수한다.
- 배당(dividends): 가봉내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배당금의 20%를 원천징수한다.

ㅇ 부가가치세(TVA)

연매출액이 최소 6천만 세파프랑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에 적용되며, 벌목업(logging activities)의 경우 연매출액 기준이 5억 세파프랑으로 상향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TVA는 18%이고, 그 외 경감 TVA(10%, 5%) 또는 TVA 면제도 있다. 부가가치세 세율별 적용 품목은 아래와 같다.

- 18% 적용: 상품, 서비스, 수입제품, 재화 운송, 용역, 부동산 활동 등
- 10% 적용: 가봉생산 광천수(mineral water), 수입 고기 · 닭고기, 설탕, 수입 식용유, 땅콩, 세제, 채소·과일 통조림 등
- 5% 적용: 시멘트 판매 및 서비스
- 0% 적용: 국제운송, 수출품(통관 완료) 등
- 면제: 우유제품, 버터, 마가린, 시리얼, 의약품, 비료 등

ㅇ 소비세(DA)

소비세는 특정품목에 부과하며 세율별 적용품목은 아래와 같다.

- 향수, 화장품, 캐비어(caviar), 푸아그라(foie gras), 연어: 25%

- 맥주(수입 및 국내산), 와인: 30%
- 샴페인, 담배: 32%

○ 재산세(Impôrts sur la propriété)
건물과 토지 소유자는 건물과 토지의 임대소득의 15%를 세무서에 납부한다. 다만 재산 보유관련 세금은 법령(건물: 15%, 토지: 25%)으로 정해져 있으나 건물·토지 등록 체제 미비로 부과되지 않고 있다.

○ 인지세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날인하는 법적문서에 대해 비율 또는 고정금액으로 부과된다. 재산관련 계약, 양도 또는 임대문서는 거래가액의 1~8%를, 기타 문서는 5천~2만 세파프랑을 납부한다.

○ 국가결속기여금(Contribution Spéciale de Solidarité)
연 매출액이 3천만 세파프랑을 넘는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 매출액의 1%를 부과한다.(2017년 3월 시행)

○ 국가연금/의료보험 기금
- 국가연금: 고용주와 고용인은 각각 기본급과 수당의 16%, 2.5%를 납입해야 함.
- 의료보험: 고용주와 고용인은 각각 기본급과 수당의 4.1%, 2%을 납입하야 함.

회사 설립

가봉은 ANPI 소속 기업센터(CDE)가 회사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단일창구(single window)이며, 법인 허가 절차는 1개월이 소요된다.

회사 형태는 법인,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지사(branch), 파트너쉽(Partnership)이 있다.

법인은 주식회사(SA), 유한책임회사(SARL), 단순주식회사(SAS) 형태로 구분되며, 주식회사 형태는 대개 외국인투자자가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사용된다. 법인 설립은 CDE 및 상업등기소(RCCM) 등록, 납세번호 부여 및 사

회보장당국(CNSS) 등록 후에 허가받게 되며 등록비(2~10만 세파프랑) 및 인지세(8만 세파프랑)를 납부해야 한다.

연락사무소는 설립이 가장 용이한 형태로, RCCM에 등기하면 된다.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정보 수집 등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지사는 CDE에 설립 신청서(설립결의서, 모회사 정관)를 제출한 후 RCCM 설립 등기 및 세무서 등록을 마치고, 관보 게재후 절차가 완료되며, 절차는 3주 가량 소요된다. 지사의 존속기한은 2년(1회에 한해 2년 추가연장 가능), 자본금은 없다.

회사 설립 형태

	지사	유한책임회사 (SARL)	주식회사(SA)	단순주식회사 (SAS)
설립자본금	없음	1백만 세파프랑	10백만 세파프랑 (기업공개시 1억 세파프랑)	정관에 따름
주식 액면가	-	5,000 세파프랑	10,000 세파프랑	제한 없음.
주주/파트너수	-	제한없음 (최소 1명)	제한없음 (최소 1명)	정관에 따름
책임한도	본사 책임	납입 자본내 유한책임	납입 자본내 유한책임	납입 자본내 유한책임
존속기한	2년	99년	99년	99년
이사회	-	없음	이사(최소3명, 최대12명)	정관에 따름
대표자	법적 대표	Manager (1명/다수)	이사회 의장	President(1명)
감사	-	감사 선임	감사 선임	감사 선임
자산	-	125백만 세파프랑 이상	-	125백만 세파프랑 이상
매출	-	250백만 세파프랑 이상	-	250백만 세파프랑 이상
정규직수	-	50명 이상	-	50명 이상

고용 및 체류 비자 발급

비즈니스 목적(방문기간: 3개월 미만)으로 가봉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비즈니스 비자를 가봉대사관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한다. 가봉내 단기근로(3개월 미만)를 원하는 외국인은 비즈니스 비자 또는 단기입국 승인(short-term entry authorization)을 신청해야 한다. 가봉은 입국시 황열병(yellow fever) 예방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단기 근로 목적으로 입국시, 가봉정부 대사관을 통해 미리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받거나 가봉에 도착해 세관에서 단기입국 승인을 위한 입국(Entry) 비자를 발급받고, 가봉내 체류하면서 이민사무소에 단기입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기근로(3개월 초과) 정규직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국가노동사무소에서 해당 직무에 적합한 가봉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인에 대한 2년 기간 고용허가(Work permit)을 발급받으며 고용허가는 갱신 가능하다. 고용허가 후 노동부로부터 15일 이내 고용계약(계약기간은 2년 초과 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주는 이민사무소에 거주증(Residency Card)을 신청하고, 거주증은 2년 유효하며 갱신 가능하다. 외국인 고용인은 노동부에 외국근로자증(Foreign Worker Card)을 발급받아야 하며, 2년 유효하며 갱신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제한

가봉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는 80%이상 가봉 내국인을 고용해야 한다. 가봉 최저임금은 월 15만 세파프랑이다.

투자 인센티브

- 가봉에 투자 외국기업의 투자 혜택
  석유법, 광물법, 농업법, 특별경제구역법 등에서 투자관련 인센티브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석유 및 광물 분야의 경우 수입 설비 및 기계에 대한 관세 면제되고, 관광 분야는 최초 영업일부터 5년간 수입 관세 면제된다.

- 특별경제구역(SEZ) 투자 인센티브
  가봉 정부는 2011년 7월 수도 리브르빌 인근에 은콕 특별경제구역(Nkok SEZ)을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현재 2014년 12월부터 가동중인 은콕 특별경제구역(Nkok SEZ)의 입주기업에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신속한 행정절차 수행 및 각종 지원을 위해 Nkok SEZ내 행정절차 단일창구(single window)인 행정청(AAN) 설치·운영하고 있다.

은콕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다.

- 입주후 10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그리고 다음 5년간 법인세 10% 부과
- 부가가치세: 25년간 면제
- 배당세·자본이득세·영세업자 원천징수세: 25년간 면제
- 원재료 및 사업기자재(수입설비, 기계, 소모품) 수입품에 대한 관세, 세금, 로열티, 수수료에 대해 모두 25년간 면제

부동산 취득

소유 부동산은 토지등기소(Land Property Conservation Office, 경제부산하)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후 15일 이내 관보에 게재되고, 부동산 권리증서는 68일 이내 발행된다.

환율 및 외화송금

가봉 외환 정책은 CEMAC 외화 환율 및 조절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가봉 통화정책은 인플레 통제 및 CFA 프랑의 유로에 대한 고정 관리 등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아프리카국가은행(BEAC)에 의해 결정된다.

가봉 화폐는 CEMAC내 공동화폐인 fCFA(세파프랑, the franc of the Communaute Finaciere Africaine)로서, 유로(Euro)에 연동(1유로 = 655.957 fCFA)된 고정 환율로 운영되며, 세파프랑 대비 달러는 500-600

세파프랑 범위에서 매일 변동되고 있다.

투자이익, 배당금, 이자, 로열티, 외채 원금, 임대료, 관리수익, 청산수익 등은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가봉 외부로의 외환송금은 1억 세파프랑을 초과할 경우 경제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제부 신고후 30일간이 소요된다. 1억 세파프랑을 넘지 않는 거래는 은행에 거래를 증명한 후 송금가능하다.

기타

가봉내 은행은 CEMAC 법규를 따르고 있다. 가봉은 BEAC 회원국이고, BEAC 산하 금융위원회(COBAC)가 CEMAC내 은행을 허가 및 감독하고 있다. BEAC는 금융기관 설립을 허가하고, 대출기관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러한 대출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식재산권

가봉은 아프리카 지적재산권기구(OAPI),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베른협약(Bern Conven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국제특허협력 연합(PCT Union), Bangui 협약(1999년) 등에 가입해 있다. 또한, WTO 회원국으로 TRIPs 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 2006년)에 가입되어 있다.

가봉은 지식재산권에 대해 OAPI 규정을 채택하고, 발명특허, 실용신안권, 상표와 서비스, 산업디자인, 상호, 지리적 표시, 문예저작권, 부정경쟁방지, 집적회로 배치설계, 식물신품종 보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가봉내 투자·진출 업체는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OAPI 또는 무역부 산하 가봉산업재산권센터(CEPIG)에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을 등록해야 한다. 보호기간은 특허 20년, 상표 10년(10년마다 갱신), 산업디자인 5년, 저작권은 작가 사후 70년이다. 등록비는 특허당 59만 세파프랑, 상표당 40만 세파프랑, 산업디자인당 11.5만 세파프랑(단순) 및 18만 세파프랑(복잡)이다.

경쟁정책

경쟁정책은 CEMAC 규제(1999년)에 의해 시행되고, 기업간 불법적 경쟁제한 행위, 시장 독점 지배 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한 시장 경쟁을 금지한다. 경쟁 정책은 경제부 권한 하에서 조정된다.

환경

환경법(Environment Code)은 폐기물(처리, 재활용, 폐기 등) 관리, 천연자원의 보호 및 보존, 환경오염 방지, 유해물질사용 등을 다루고 있다. 공해방지법에 따라 산업 및 생산 시설 설치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부 허가후 3년내 시설이 가동되지 않거나 2년 연속 운영되지 않은 경우 승인은 취소된다. 폐수투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기름 및 윤활유, 세제(detergent) 및 농가 폐수 투기는 엄격히 금지된다.

모든 산업 시설은 건설 개시전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Study) 승인을 거쳐야 한다. 석유가스 탐사,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항만건설, 공장·가공시설 등 산업활동, 광산 탐사, 공항건설, 도로철도 건설 등 프로젝트의 경우, 환경부의 환경영향조사(EIS)를 받아야 하며, 프로젝트 설명, 사전평가, 환경영향조사, 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환경부가 최종 승인한다. 또한, 2009년 산림법 개정으로 통해 원목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2018 외국의 통상환경

- 아프리카·중동 -

◈ 인 쇄 | 2018년 12월

◈ 발 행 | 2018년 12월

◈ 발행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 ㈜나모기획 (044-998-6998)